

PUBLIC DESIGN GUIDELINE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최종보고서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2022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주식회사 디자인팩토리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Contents

가이드라인의 개요	004
1. 개요	006
2.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	007
3. 구성체계	013
4. 가이드라인의 활용	016
Part 1. 공공공간	020
기본방향	022
적용대상	023
공통중점사항	024
A. 가로	028
B. 공원	050
C. 광장	068
D. 수변	082
Part 2. 공공시설물	094
기본방향	096
적용대상	097
표준디자인 및 인증제품 규정	099
공통중점사항	100
A. 도로시설물	104
B. 편의시설물	156
C. 녹지시설물	182
D. 공급시설물	190
E. 범죄예방시설물	206

Part 3.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212

기본방향	214
적용대상	215
표준디자인 및 인증제품 규정	217
공통중점사항	218
A. 교통관련 시각매체	224
B. 보행관련 시각매체	250
C. 편의시설 시각매체	264
D. 안전관련 시각매체 및 용품	280
E. 영상정보 시각매체	294
F. 환경연출 시각매체 및 공공미술	304

Part 4. 공공건축물 및 광고물

314

기본방향	316
적용대상	317
공통중점사항	318
A. 공공건축	328
B. 민간건축	350
C. 광고물	368

공공디자인사업 체크리스트

382

개요	384
1.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386
2. 야간명소 사업	394
3. 색채디자인 사업	401
4.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	408
5. 모두를 위한 디자인	416
(유니버설디자인/표준디자인) 사업	
활용하기	424

가이드라인의 개요

1. 개요	006
2.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	007
3. 구성체계	013
4. 가이드라인의 활용	016

1. 개요

- ‘2017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기본 범주로 하되 환경적, 사회적,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인천형 도시디자인’의 정의 및 방향성 재구성
- 인천의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성 회복을 위한 디자인 방법론 제시
-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경우는 민간영역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누락된 도시 구성요소를 추가

2.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성 제시

- 인천의 인구 특성, 고유 문화, 사회문제 등 공공성 회복을 위해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 방향성 및 원칙 제시
-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등 정합성 확보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

비전

더 나은 미래 인천

A Better Future, Incheon

목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시정목표 및 방침

5대 추진과제 및
도시디자인 미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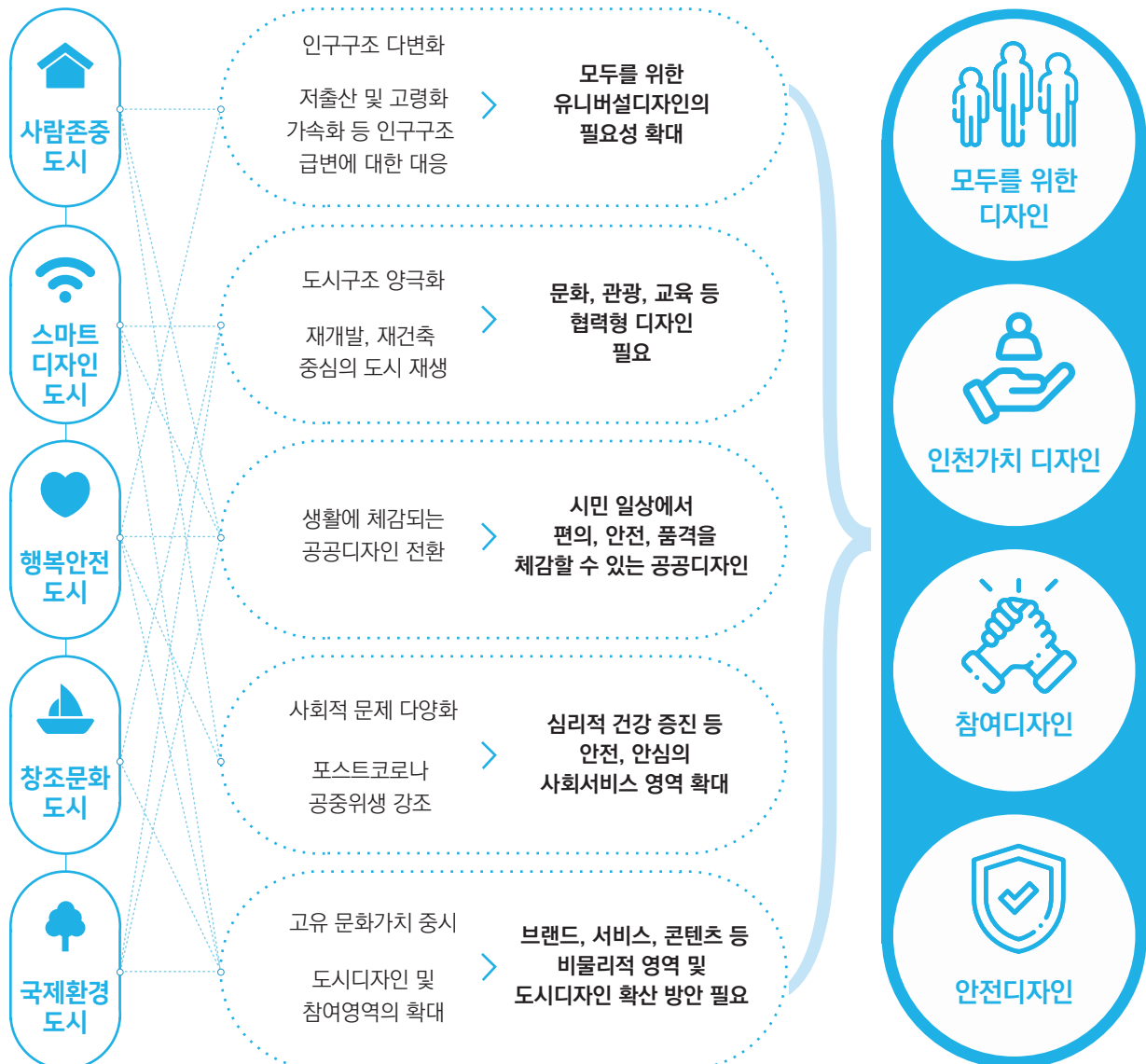
세부전략

- 시대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맞추어 인천의 도시문제 최소화 및 해결을 위한 사회·환경 변화 요소 도출
- ‘인천형 도시디자인’에 부합하는 인천형 가이드라인 방향 도출

[도시디자인 추진과제]

[사회·환경 변화 요소 도출]

[인천형 가이드라인 방향]



인천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방향 및 원칙

- 인천의 공공디자인 가치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방향 및 10원칙 제시
- 인천의 공공디자인 구축을 위한 디자인 방법론 제시



모두를 위한 디자인

Design For All

다양한 연령, 문화, 환경을 고려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

① 보행친화

② 배려



인천가치디자인

Value Design

인천의 자연-도시, 원도심-신도시의 가치창조를 통한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디자인

③ 조화균형

④ 가치창조

⑤ 지속가능



참여디자인

Open Design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인천의 다양성을 수렴하는 디자인

⑥ 시민참여

⑦ 기업참여



안전디자인

Safety Design

도시생활 전반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인천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디자인

⑧ 생활안전

⑨ 근로안전

⑩ 생활방역



모두를 위한 디자인

Design For All

1

보행친화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다양한
보행약자를 위한 인천형 무장애디자인

- 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디자인 등 적용
- Design for All : 모든 인천 시민을 위한 디자인
-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밀집지역, 외국인밀집지역, 여성친화도시, 노인밀집지역, 노인보호구역 등에 대한 적극적 적용
- 교통정온화지역의 확대

2

배려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다양한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 고령화시대, 외국인 증가 등의 인천 현황을 고려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디자인 (어린이, 여성,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
- 시민 간 배려문화의 확대



인천가치디자인

Value Design

3

조화균형

원도심과 신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 원도심과 신도시의 단절 해소 및 소통 지원
- 인천의 신도시,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특성화된 디자인
- 인천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의 적극적 개입

4

가치창조

인천의 가치 창조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디자인

- 다양한 문화, 과거와 현재, 전통과 첨단이 조화로운 밸류업(Value Up) 도시
- 구·군별 특화된 스토리 발굴 및 활용
- 인천브랜드, 상징아이콘, 인천색 등의 상징적 요소의 활용을 통한 통합 이미지 구축
-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

5

지속가능

다음세대를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그린디자인

- 도시변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디자인
- 스스로 가꾸고 지키는 자급자족형 디자인
- 자연환경과 공존·공생하는 디자인
- 그린에너지를 실현하는 디자인



참여디자인

Open Design

6

시민참여

인천의 다양성을 참여를 통해
구현하는 디자인

-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도입한 시민참여형 디자인
- 시민이 주체가 되고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디자인

* 서비스디자인이란?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결합한 학제적 접근법으로서 새로운 독립적 지식분야가 아닌 주민 서비스를 위한 실용적인 공공디자인의 접근방식과 방향성을 의미함.

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주민참여디자인, 안전디자인 등 디자인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일컫음.

7

기업참여

ESG, CSR, CSV의 개념 도입으로
함께 성장하는 디자인

- ESG 개념을 도입한 환경문제 해결 유도
- CSR, CSV 등 기업의 사회책임을 활용한 참여디자인의 확대

* ESG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음.

* CSR이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이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들과 공생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윤리적 책임의식을 의미함.

* CSV란? 'Creating Shared Value'

기업이 수익 창출 이후에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함.



안전디자인

Safety Design

8

생활안전

CPTED 원리를 적용한 인천의
생활환경에 맞춘 인천형 안전디자인

· 범죄위험구간에 CPTED 원리를 접목한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 범죄 및 안전현황 분석 : 지역안전지수, 지역별 안전이력,
자살률 등

· 섬, 해안, 구도심 등 다양한 생활환경에 맞춘 안전
디자인

· 어린이보호구역, 해양, 기후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구축

9

근로안전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없는 인천 실현

· 인천의 산업지역·산업단지, 공사 환경 등에 맞춘
안전디자인

· 작업자 및 산업현장 중심으로 문제가 있는 요소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구축

· 안전한 산업·공사현장 유지를 위한 안전디자인 원칙
및 가이드라인으로 지속적인 개선 및 정비 유도

10

생활방역

감염병 등 방역의 생활화로
안심도시 구현

· 시민의 건강, 감염예방 등 일상 속 안전을 위한 행동
유도 및 사회적 약속 체계 수립

· 재난, 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환경 확충

· 안내 시각정보 질서 확립 및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실행력 있는 예방디자인 적용

3. 구성체계

구성방향

-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에서 제시하는 비전과 목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의 구성체계를 세분화하여 구성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의 심의·자문대상을 포함하며,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공공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등 5개 영역을 기본으로 구성
- 5개 영역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적용대상을 우선적으로 명시하고 각 카테고리별 디자인 방향 및 원칙, 세부요소별 가이드라인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구체화하여 제시
- 공공디자인사업 시행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사업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공
- 본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수립된 인천광역시 분야별 가이드라인(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등)과 상호보완하여 적용



분야별 세부분류체계

Part 1. 공공공간

[4분류 24항목]

A. 가로

- 보행자전용도로
- 공개·전면공지
- 보·차혼용도로
- 교통약자보호구역
- 횡단보도
- 자전거도로
- 주차장

B. 공원

- 근린공원
- 소공원, 쌈지·자투리공원
- 어린이공원
- 체육공원
- 문화·역사공원
- 수변·해안공원
- 산림휴양·도시생태공원

C. 광장

- 교차점광장
- 역전광장
- 근린·경관광장
- 지하광장
- 건축물부설광장

D. 수변

- 섬
- 선착장
- 갯벌
- 생태습지
- 하천

Part 2. 공공시설물

[5분류 40항목]

A. 도로시설물

- 버스·택시 승차대
- 자전거보관대
- 통합지주, 신호등주
- 가로등
- 보안등
- 보호펜스
- 볼라드
- 보도·점자블록
- 지하철·지하보도출입구
- 환기구(흡·배기구)
- 보도육교
- 교량
- 고가차도
- 입체교차로
- 지하(차/보)도
- 터널
- 생태통로
-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 석축, 옹벽
- 방음벽

B. 편의시설물

- 벤치
- 파고라
- 휴지통
- 음수대
-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 관광안내소
- 공중(간이)화장실
- 그늘쉼터, 횡단보도 쉼터

C. 녹지시설물

- 가로화분대
- 가로수(수목)보호덮개
- 분수대(벽천)

D. 공급시설물

- 배수구덮개(트렌치)
- 맨홀
- 배전함
- 신호등·가로등 제어함
- 방재시설(제설함, 소화전)
- 전신주
- 부속시설물, 기타

E. 범죄예방시설물

- 방범카메라 CCTV(지주, 비상벨)
- 틈새공간 안전장치, 공·폐가 잠금장치

Part 3.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6분류 39항목]

A. 교통관련 시각매체

- 주의·규제·지시·보조·단속표지
- 노면표지(차로)
- 이정표지·방향·방향예고표지
- 공공기관·사설기관안내표지
- 주차안내표지
- 장애인주차안내
- 버스승차대 표지, 버스노선 안내도
- 버스측면정보영역
- 택시승차대 표지
- 택시외관
- 지하철안내표지
- 지하철노선도, 종합안내도

B. 보행관련 시각매체

- 보행자안내·보행방향표지, 지역안내표지
- 무단횡단금지표지
- 장애인유도사인, 장애인안내표지
- 도로명판
- 건물번호판, 건물번호안내도
- 자전거도로안내, 자전거도로 노면표지(보행로)

C. 편의시설 시각매체

- 현수막게시대, 시민게시대
- 공원안내표지
- 등산로·둘레길 안내표지
- 문화재설명표지, 문화재표석
- 관광안내소·시티투어매표소표지
- 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도
- 개방화장실안내표지

D. 안전관련 시각매체 및 용품

- 범죄예방시설
- 쓰레기투기방지안내
- 안전조명·정보시설
- 소방안전안내표지, 소방안전장비
- 재난대비안전안내표지, 재난안전(피난·구호) 장비
- 공사장안내표지

E. 영상정보 시각매체

- 대기오염·도로소음전광판
- 교통상황·교통사고상황전광판
- 버스정보전광판
- 디지털영상매체

F. 환경연출 시각매체 및 공공미술

- 공사장가설울타리, 가설가림막
- 벽화
-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 공공조형물

Part 4. 공공건축물 및 광고물

[4분류 25항목]

공통

- 건축물 경관, 색채
- 야간경관
- 경계부 및 공지
- 진출입부
- 서비스이용공간
- 이동공간
- 위생공간
- 주차공간
- 실외부속물
- 실내시설물
- 안전·구호시설물

A. 공공건축물

- 행정·공공기반 시설
- 교육·연구시설
- 문화·복지시설
- 교통·진입시설
- 환경·위생시설

B. 민간건축물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공가 및 폐가
- 복합상가
- 전통시장
- 산업단지

C. 광고물

- 건축물 안내시설물
- 건축물 홍보시설물
- 옥외광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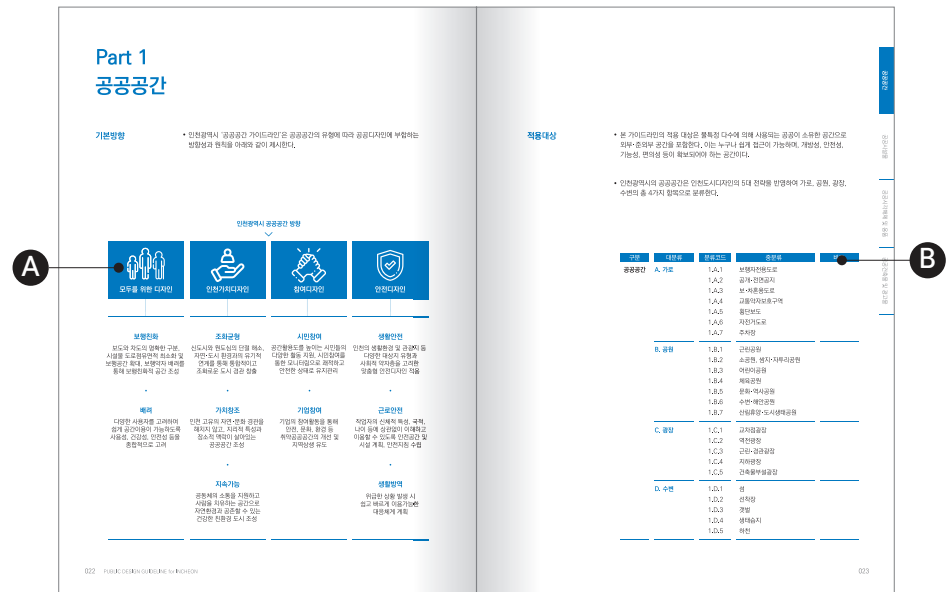
4. 가이드라인의 활용

활용방안

- 본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이 활용
 1. 사업 계획 수립 시 기획에 반영
 2. 실시설계 발주 시 과업지시서 작성과 현장설명에 활용
 3. 설계·제작·공사 시 체크리스트로 운용
 4. 디자인 심의의 판단 기준과 사후 평가 및 유지관리 지침으로 이용
- 가이드라인은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인천 내 현황과 유사한 모식도를 활용하여 공간·시설별 방향 및 디자인 원칙을 표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세부가이드라인을 제시, 해당하는 가이드라인 내용과 매치되는 사례이미지 포함
- 모두를 위한 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등 관련된 내용은 상위·연관계획에 준하며, 본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지침과 상호 보완하여 활용

편집의 구성

- 인천형 공공디자인 방향성을 기반으로 분야별 세부 원칙 및 적용대상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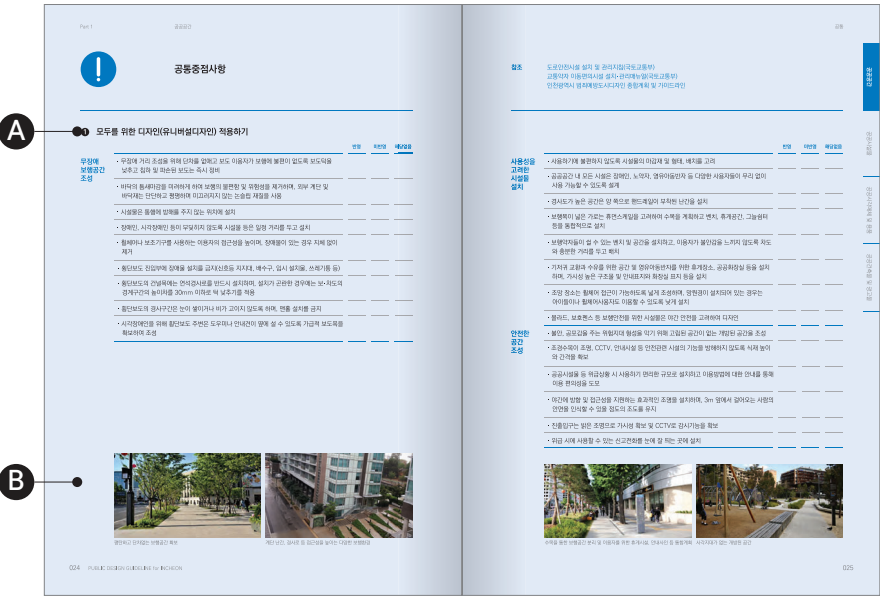


A. 기본방향 : 인천형 공공디자인의 방향성에 따라 분야별 세부 원칙 제시

B. 적용대상 : 분야별 적용대상을 세분화하여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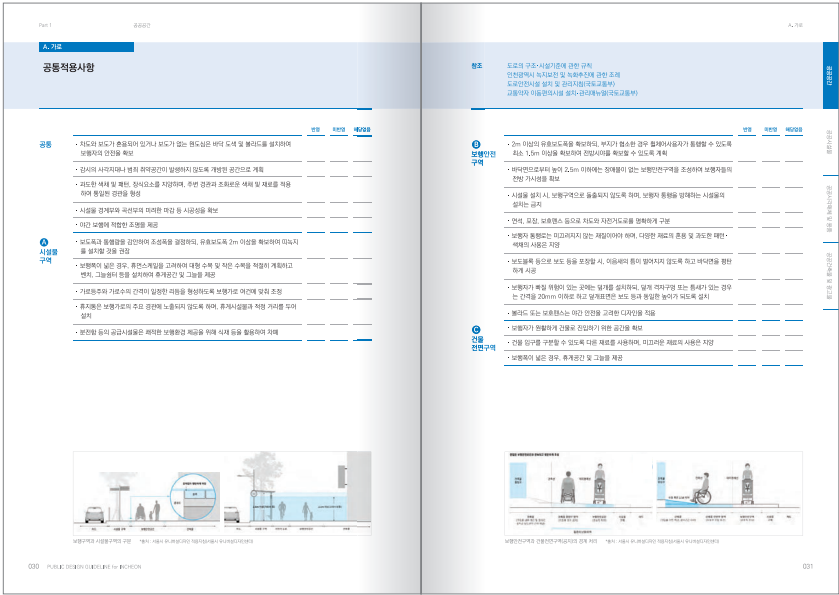
- 대분류, 중분류에 따라 적용대상을 구분
- 중분류별 분류코드 구분
- 심의대상여부 표기

• 분야별로 공통중점사항을 명시



- A. 공통중점사항 : 세부 가이드라인에 앞서 공통적으로 반영되는 중요한 디자인요소를 제시
· 모두를 위한 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 색채디자인, 표준디자인 등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
- B. 예시이미지 : 관련 사례 또는 참고이미지 제시

• 세부항목별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 공통적용사항으로 개별 제시



• 분야별 대분류의 개요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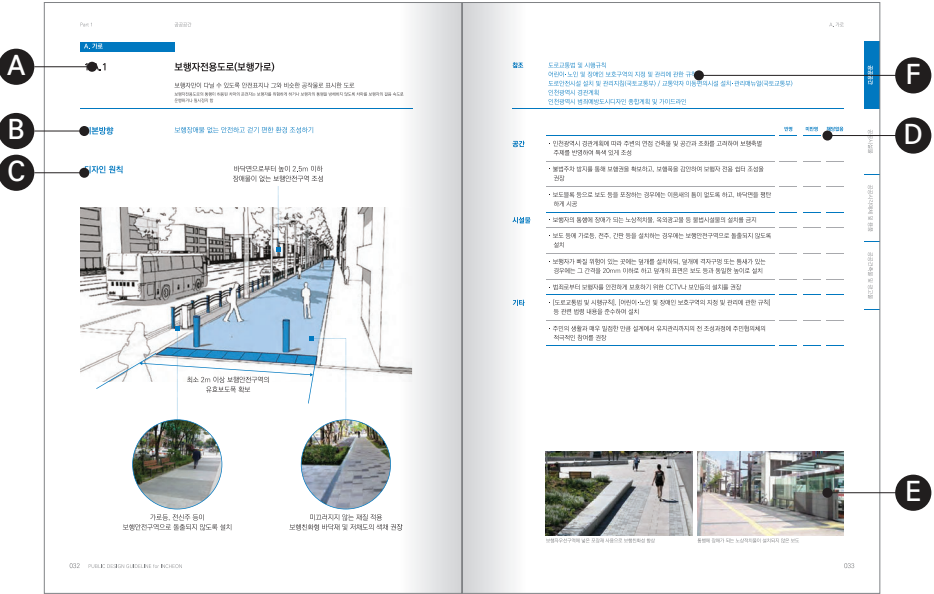
- A. 대분류
- B. 중점사항 : 주요 중점사항 제시
- C. 인천 내 현황 유사 모식도
- D. 세부구성 : 대분류 정의 및 중분류 체계 제시
 - 중분류 적용대상 구분 및 분류코드 명시
 - 가이드라인 세부 구성 명시
- E. 관련법규 및 문헌(상위·연관지침)

[분류코드의 이해]

분류코드	중분류
	공통적용사항
1.A.1	보행자전용도로(보행가로)
1.A.2	공개·전면공지
1.A.3	보·차혼용도로(보행자우)
1.A.4	교통약자보호구역(아
1.A.5	횡단보도

- 1.A.1 보행자전용도로(보행가로)
 - 중분류 구분
 - 대분류 구분
 - 분야 구분

• 분야별 중분류의 세부가이드라인 제시



- A. 중분류 : 중분류 및 정의, 심의대상여부 명시
- B. 기본방향
- C. 디자인 원칙 :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주요 디자인 원칙 제시
 - 세부가이드라인 내용 중 주요 내용 표시
 - 가이드라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 내 현황 유사 모식도 및 사례이미지를 활용하여 내용 전달
- D. 세부가이드라인 : 인천형 공공디자인 방향성을 기준으로 세부가이드라인 제시
 - 공간, 시설물, 색채, 재료 등 각 요소별 디자인 지침 제시
 - 가이드라인 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자가체크가 가능하도록 체크리스트형식 제공(반영/미반영/해당없음 기준으로 평가)
- E. 예시이미지 : 가이드라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권장사례 제시
- F. 참조 : 관련법규 및 상위·연관지침 등

Part 1

공공공간

Public Space

공통		024
A. 가로	공통적용사항	030
	1.A.1 보행자전용도로(보행가로)	032
	1.A.2 공개·전면공지	034
	1.A.3 보·차혼용도로(보행자우선구역)	036
	1.A.4 교통약자보호구역(어린이·노인보호구역)	038
	1.A.5 횡단보도	040
	1.A.6 자전거도로	044
	1.A.7 주차장	046
B. 공원	공통적용사항	052
	1.B.1 근린공원	054
	1.B.2 소공원, 쌈지·자투리공원	056
	1.B.3 어린이공원	058
	1.B.4 체육공원	060
	1.B.5 문화·역사공원	062
	1.B.6 수변·해안공원	064
	1.B.7 산림휴양·도시생태공원	066
C. 광장	공통적용사항	070
	1.C.1 교차점광장	072
	1.C.2 역전광장	074
	1.C.3 근린·경관광장	076
	1.C.4 지하광장	078
	1.C.5 건축물부설광장	080
D. 수변	1.D.1 섬	084
	1.D.2 선착장	086
	1.D.3 갯벌	088
	1.D.4 생태습지	090
	1.D.5 하천	092

Part 1

공공공간

기본방향

- 인천광역시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의 유형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부합하는 방향성과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인천광역시 공공공간 방향



적용대상

-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사용되는 공공이 소유한 공간으로 외부·준외부 공간을 포함한다. 이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개방성, 안전성, 기능성, 편의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 인천광역시의 공공공간은 인천도시디자인의 5대 전략을 반영하여 가로, 공원, 광장, 수변의 총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한다.

구분	대분류	분류코드	중분류	비고
공공공간	A. 가로	1.A.1	보행자전용도로	
		1.A.2	공개·전면공지	
		1.A.3	보·차혼용도로	
		1.A.4	교통약자보호구역	
		1.A.5	횡단보도	
		1.A.6	자전거도로	
		1.A.7	주차장	
	B. 공원	1.B.1	근린공원	
		1.B.2	소공원, 쌈지·자투리공원	
		1.B.3	어린이공원	
		1.B.4	체육공원	
		1.B.5	문화·역사공원	
		1.B.6	수변·해안공원	
		1.B.7	산림휴양·도시생태공원	
	C. 광장	1.C.1	교차점광장	
		1.C.2	역전광장	
		1.C.3	근린·경관광장	
		1.C.4	지하광장	
		1.C.5	건축물부설광장	
	D. 수변	1.D.1	섬	
		1.D.2	선착장	
		1.D.3	갯벌	
		1.D.4	생태습지	
		1.D.5	하천	



공통중점사항

① 모두를 위한 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 적용하기

무장애 보행공간 조성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무장애 거리 조성을 위해 단차를 없애고 보도 이용자가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도턱을 낮추고 침하 및 파손된 보도는 즉시 정비			
· 바닥의 틈새마감을 미려하게 하여 보행의 불편함 및 위험성을 제거하며, 외부 계단 및 바닥재는 단단하고 평평하며 미끄러지지 않는 논슬립 재질을 사용			
· 시설물은 통행에 방해가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			
· 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시설물 등은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			
·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거			
· 횡단보도 진입부에 장애물 설치를 금지(신호등 지지대, 배수구, 임시 설치물, 쓰레기통 등)			
· 횡단보도의 건널목에는 연석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차도의 경계구간의 높이차를 30mm 이하로 턱 낮추기를 적용			
· 횡단보도의 경사구간은 눈이 쌓이거나 비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맨홀 설치를 금지			
· 시각장애인을 위해 횡단보도 주변은 도우미나 안내견이 옆에 설 수 있도록 가급적 보도폭을 확보하여 조성			



평탄하고 단차없는 보행공간 확보



계단 난간, 경사로 등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보행환경

참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사용성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물의 마감재 및 형태, 배치를 고려
- 공공공간 내 모든 시설은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동반자 등 다양한 사용자들이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
- 경사도가 높은 공간은 양 쪽으로 핸드레일이 부착된 난간을 설치
- 보행폭이 넓은 가로는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수목을 계획하고 벤치, 휴게공간, 그늘쉼터 등을 통합적으로 설치
- 보행약자들이 쉴 수 있는 벤치 및 공간을 설치하고, 이용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차도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배치
- 기저귀 교환과 수유를 위한 공간 및 영유아동반자를 위한 휴게장소, 공공화장실 등을 설치하며, 가시성 높은 구조물 및 안내표지와 화장실 표지 등을 설치
- 조망 장소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넓게 조성하며,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아이들이나 휠체어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낮게 설치
- 블라드, 보호펜스 등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물은 야간 안전을 고려하여 디자인

안전한 공간 조성

- 불안, 공포감을 주는 위험지대 형성을 막기 위해 고립된 공간이 없는 개방된 공간을 조성
- 조경수목이 조명, CCTV, 안내시설 등 안전관련 시설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식재 높이와 간격을 확보
- 공공시설물 등 위급상황 시 사용하기 편리한 규모로 설치하고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를 통해 이용 편의성을 도모
- 야간에 방향 및 접근성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조명을 설치하며, 3m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의 안면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를 유지
- 진출입구는 밝은 조명으로 가시성 확보 및 CCTV로 감시기능을 확보
- 위급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신고전화를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



수목을 통한 보행공간 분리 및 이용자를 위한 휴게시설, 안내사인 등 통합계획 시각지대가 없는 개방된 공간



공통중점사항

② 정돈된 도시이미지 전달을 위해 일관된 색채 적용하기

일관된 인천색채 적용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천상징색, 인천환경대표색, 인천권역색, 인천공공시설물색 등 일관된 기준의 색채디자인 적용
- 인천상징색은 인천 환경대표색 중 선정된 3가지 색상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색상
- 인천환경대표색은 인천 환경에 적용하는 대표 색상으로 인천의 상징적이고 대표되는 이미지에서 추출한 10가지 색상
- 인천권역색은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을 바탕으로 신도시권역, 원도시권역, 역사문화권역, 도서권역의 총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주요, 보조, 강조, 특화강조색으로 이루어진 색채
- 인천공공시설물색은 기능색, 안전색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에 적용되는 색상
- 과다한 색채 사용을 억제하고 마감재 고유의 색상 또는 무채색 사용을 권장
- 유채색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인천대표색, 인천권역색 중 적합한 색상을 선정하여 적용
- 범죄예방시설물 등 안전이 요구되는 시설물은 기능색 중 안전색을 적용하되, 소화전과 같이 법 또는 규칙으로 규정된 시설물의 경우 KS 안전색 규정을 준수
- 하나의 도로 또는 같은 공간으로 인식되는 곳에는 형태, 색채, 재료를 일치시켜 적용
- 공간 및 시설물의 규모 등 시각적 균형감을 고려하여 안정감을 주는 색채배색 적용
- 별도 색채계획 및 색채특화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협의 후 적용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인천 상징색 3 인천을 대표하는 색상 / 인천 환경대표색 10 중 천도도 조사를 통해 선정된 3가지 색상	권역 주요지역 범위	ICC-공공1 강화곶별색 0.9G 2.8/0.7 C66 M57 Y56 K33 R80 G82 B82 · 인천 환경대표색을 활용한 1번째 베이스 색상 · 인천시 시설물 대표 색상으로 공통적용 사용
인천 환경대표색 10 인천 환경에 적용되는 대표 색상	신도시권역 ICC - 신주1 인천시의 상징적 도시경관 연출관리 FEZ지역, 서구, 중구, 연수구 지역, 동구계양구 일부지역 자유롭고 활기찬 색채 현대적이고 모던한 색채 다양성, 역동적인 색채	ICC-공공2 기능색 1 - Gray 8.2G 4.7/0.9 C4 M0 Y1 K60 R122 G128 B130 · 공공시설물 2번째 베이스 색상 · 강화곶별색을 적용하기엔 어두운 경우 기능색1을 활용
인천 권역색 (총 4) 인천 권역별에서 사용하는 색상 신도시권역 원도시권역 역사문화권역 도서권역	원도시권역 ICC - 원주1 장소·자원을심의의 지역재생 유도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남구 지역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는 따뜻하고 정돈된 색채	ICC-공공3 합단미래색 8.08 7.8/0.8 C21 M14 Y13 K0 R200 G205 B209 · 베이스 색상과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색상 · 좁은 면적에 포인트 색상 또는 일반 표기요소로 활용
인천 공공시설물색 공공시설물에 적용되는 색상으로 명확한 배색안을 제시하여 적용	역사문화권역 ICC - 역주1 중요·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제창조 강화군 지역, 중구, 남동구 일부지역 지역적 특색이 살아있는 고상하며 품격있는 전통적인 색채	ICC-공공4 기능색 2 - White C0 M0 Y0 K0 R255 G255 B255 · 포인트 색상 또는 일반 표기요소로 활용 · 주변의 색상중들 및 경관을 고려하여야 할 경우 white색상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함
	도서권역 ICC - 도주1 도서지역 고유자원 발굴을 통한 정체성 형성 옹진군 도서지역 여유로우며 내추향한 친환경적인 색채 수변경관과 어울리는 청량감이 있는 색채	ICC-공공5 인천바다색 7.59P 1.5/0.5 C100 M100 Y25 K11 R45 G43 B11 · 인천 환경대표색을 활용한 포인트색 · 인천시 시설물의 대표 색상으로 공통 적용 · 시가지형에는 인천바다색을, 문화형에는 정서전색함색을 포인트로 사용
		ICC-공공6 정서전색함색 0.49R 5.1/11.6 C13 M73 Y85 K2 R211 G100 B63
		ICC-공공7 기능색 3 - Yellow (단색) 4.2Y 8.5/11.0 C0 M15 Y85 K0 R255 G213 B64 · 인천과 관련된 교통시설물, 정보매체, 주요를 요하는 시설물 등의 강조색으로 사용

인천색 체계

인천 권역색

인천 공공시설물색

- 참조**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및 옹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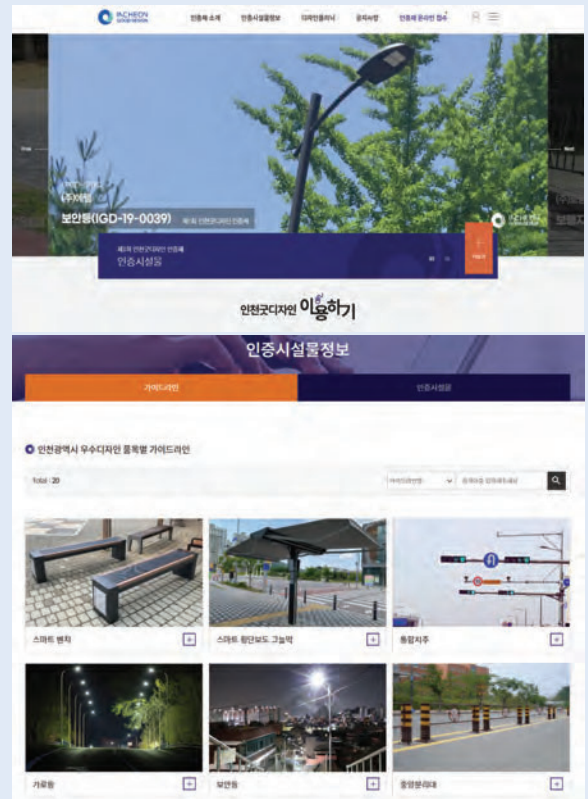
③ 인천광역시 정체성 강화를 위한 표준디자인 적용하기

**일관된
표준디자인
적용**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우선 적용			
·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이 있을 경우, 적극 사용			
· 유관기관의 시설물인 경우, 해당 기관의 표준디자인을 준수			
· 인천광역시 정책 시설물에 한해서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맞춰 디자인 및 제작, 설치			
· 표준디자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 협의를 통해 적용			
· 색채는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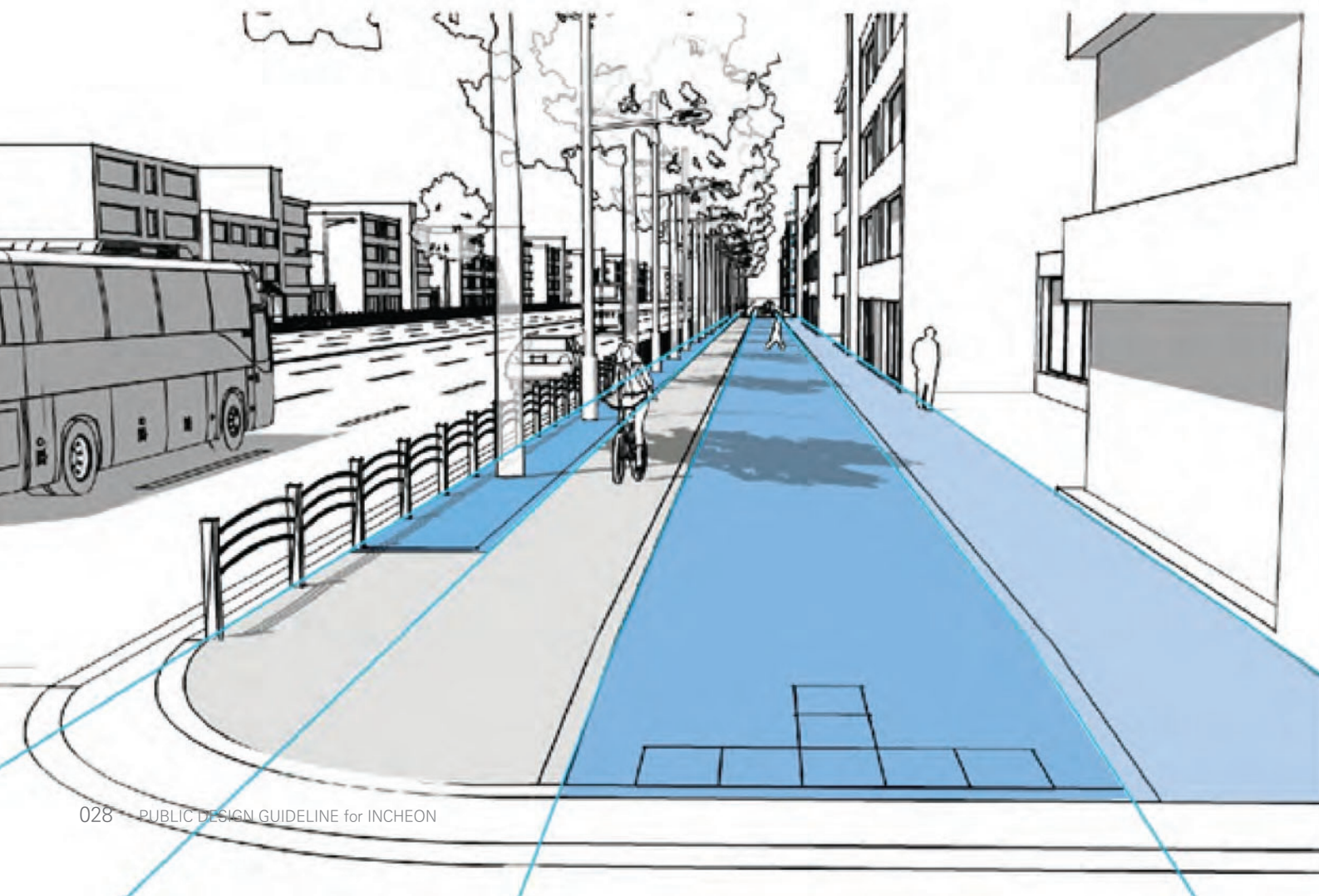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http://www.igd.incheon.kr>

A

가로

중점사항

- 01 **생활안전 및 보행안전 확보하기** 장애인, 노약자 등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영역구분 사각지대, 범죄 취약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방된 공간 계획 야간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및 디자인 적용
- 02 **도시조화성 및 정체성, 지속가능성 고려하기** 조화로운 색채 및 재료를 적용하여 통일된 경관 형성 시간이 지나도 유지, 보수에 쉬운 재료 적용 주기적인 교체 및 기타 잔해의 주기적인 청소 유지



세부구성

- 가로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시가지의 일반도로로서 도시의 중추기능 역할을 하며, 가로등, 교통신호, 표지, 횡단보도, 육교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 및 교통의 원활을 도모한다. 가로의 노면뿐만 아니라 공중과 지하(地下)도 공공시설의 설치 장소로 이용되며, 공중에는 전선, 전화선 등이 가설되고 지하에는 상수도 하수도의 시설을 비롯하여 가스관, 통신선, 지하철 등이 위치한다.
가로는 보행공간을 중심으로 보행자전용도로, 보·차혼용도로, 교통약자보호구역,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등으로 구분하며, 공개·전면공지, 주차장 등을 포함한다.

- 가이드라인의 세부구성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분류코드	중분류	세부 구성
	공통적용사항	·시설물구역 ·보행구역 ·건물 전면구역
1.A.1	보행자전용도로(보행가로)	
1.A.2	공개·전면공지	
1.A.3	보·차혼용도로(보행자우선구역)	
1.A.4	교통약자보호구역(어린이·노인보호구역)	·공간 ·시설물
1.A.5	횡단보도	
1.A.6	자전거도로	
1.A.7	주차장	

· 보도의 시설물구역, 보행구역, 건물 전면구역 등 주요 공간에 따라 공통적용사항을 제시한다.

· 가로의 이용목적에 따라 7개 대상으로 세분화하며, 공간, 시설물의 2개 요소로 각각의 지침을 제시한다.

- 1) 공간 : 공간을 형성하는 구조적 틀과 공간을 채우는 개별 요소에 대한 구체적 설계지침
- 2) 시설물 : 시설물 설치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관련법규 및 문헌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및 시행령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A. 가로

공통적용사항

공통

- 차도와 보도가 혼용되어 있거나 보도가 없는 원도심은 바닥 도색 및 볼라드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
- 감시의 사각지대나 범죄 취약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방된 공간으로 계획
- 과도한 색채 및 패턴, 장식요소를 지양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색채 및 재료를 적용하여 통일된 경관을 형성
- 시설물 경계부와 곡선부의 미려한 마감 등 시공성을 확보
- 야간 보행에 적합한 조명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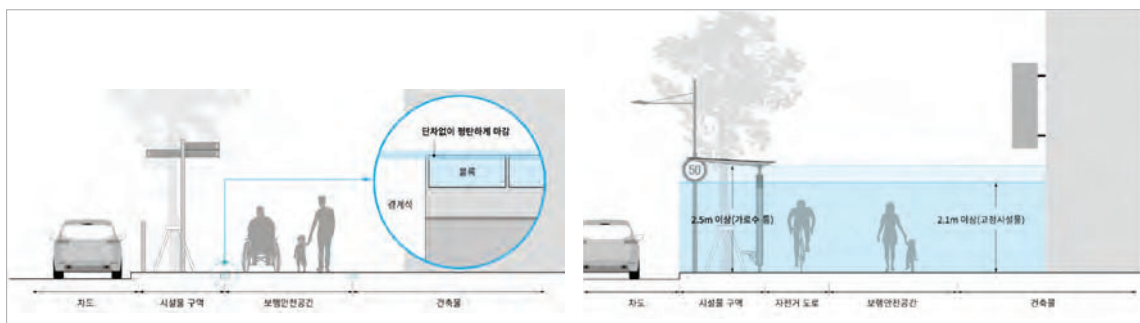
A
시설물
구역

- 보도폭과 통행량을 감안하여 조성폭을 결정하되, 유효보도폭 2m 이상을 확보하여 띠녹지를 설치할 것을 권장
- 보행폭이 넓은 경우,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대형 수목 및 작은 수목을 적절히 계획하고 벤치, 그늘쉼터 등을 설치하여 휴게공간 및 그늘을 제공
- 가로등주와 가로수의 간격이 일정한 리듬을 형성하도록 보행가로 여건에 맞춰 조정
- 휴지통은 보행가로의 주요 경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휴게시설물과 적정 거리를 두어 설치
- 분전함 등의 공급시설물은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식재 등을 활용하여 차폐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보행구역과 시설물구역의 구분

*출처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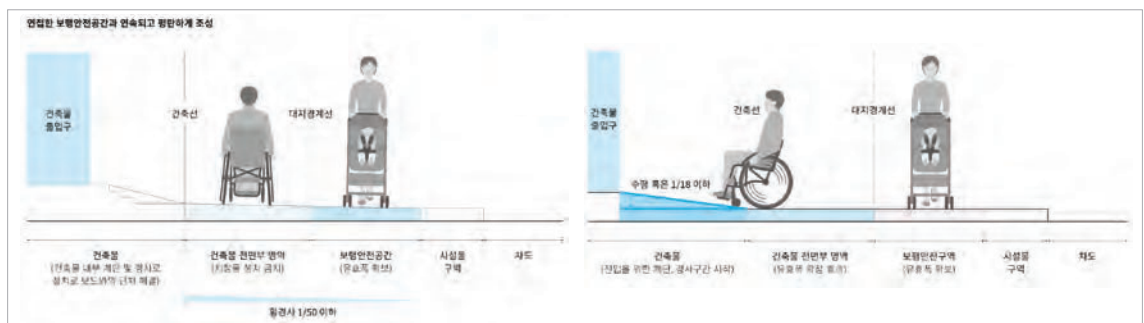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국토교통부)

B 보행안전 구역

- 2m 이상의 유효보도폭을 확보하되, 부지가 협소한 경우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최소 1.5m 이상을 확보하여 전방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5m 이하에는 장애물이 없는 보행안전구역을 조성하여 보행자들의 전방 가시성을 확보
- 시설물 설치 시, 보행구역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의 설치는 금지
- 연석, 포장, 보호펜스 등으로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명확하게 구분
- 보행자 통행로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며, 다양한 재료의 혼용 및 과도한 패턴·색채의 사용은 지양
- 보도블록 등으로 보도 등을 포장할 시,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시공
- 보행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는 간격을 20mm 이하로 하고 덮개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설치
- 볼라드 또는 보호펜스는 야간 안전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

C 건물 전면구역

- 보행자가 원활하게 건물로 진입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
- 건물 입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다른 재료를 사용하며, 미끄러운 재료의 사용은 지양
- 보행폭이 넓은 경우, 휴게공간 및 그늘을 제공



보행안전구역과 건물전면구역(공지)의 경계 처리

*출처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A. 가로

1.A.1

보행자전용도로(보행가로)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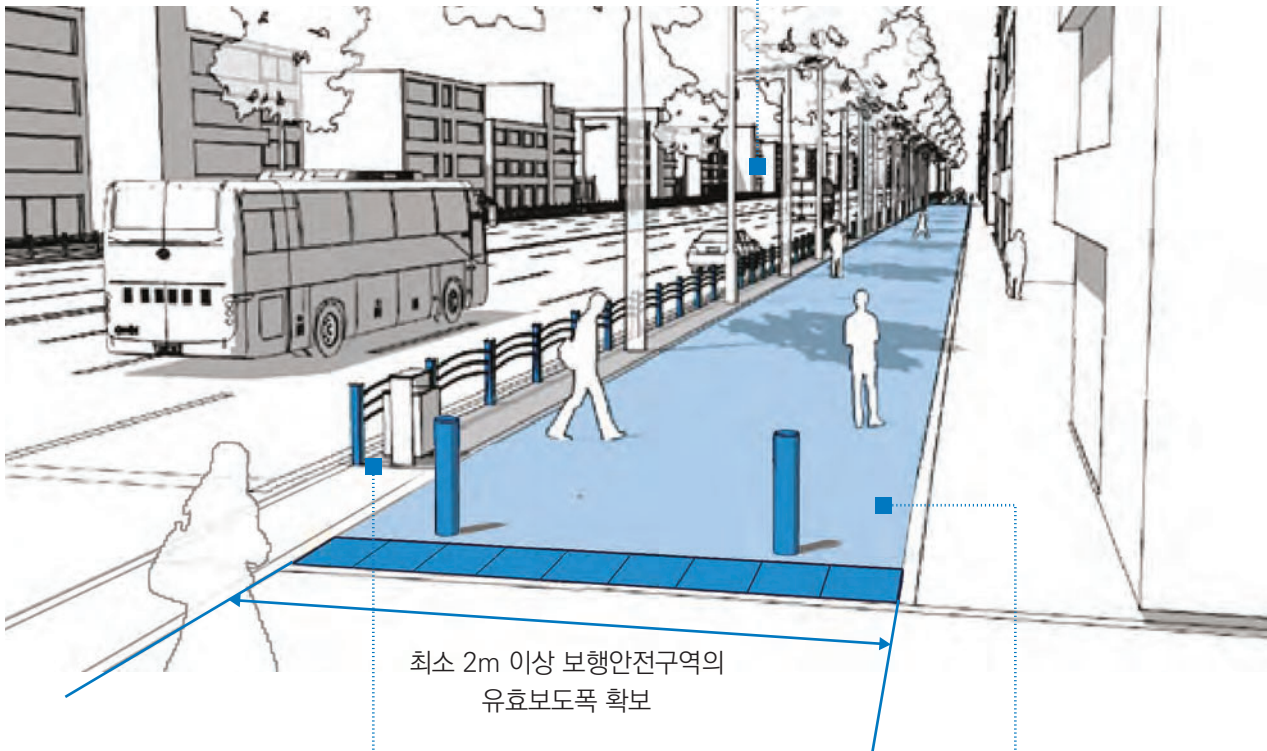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협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 함

기본방향

보행장애물 없는 안전하고 걷기 편한 환경 조성하기

디자인 원칙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5m 이하
장애물이 없는 보행안전구역 조성



가로등, 전신주 등이
보행안전구역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적용
보행친화형 바닥재 및 저재도의 색채 권장

참조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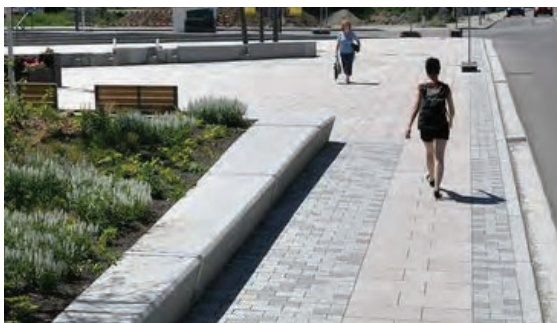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에 따라 주변의 연접 건축물 및 공간과 조화를 고려하여 보행축별 주제를 반영하여 특색 있게 조성
- 불법주차 방지를 통해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폭을 감안하여 보행자 전용 쉼터 조성을 권장
- 보도블록 등으로 보도 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없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시공

시설물

-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불법시설물의 설치를 금지
- 보도 등에 가로등, 전주, 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구역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
- 보행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20mm 이하로 하고 덮개의 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이로 설치
-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CCTV나 보안등의 설치를 권장

기타

-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내용을 준수하여 설치
- 주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만큼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의 전 조성과정에 주민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



보행자우선구역에 넓은 포장재 사용으로 보행친화성 향상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이 설치되지 않은 보도

A. 가로

1.A.2

공개·전면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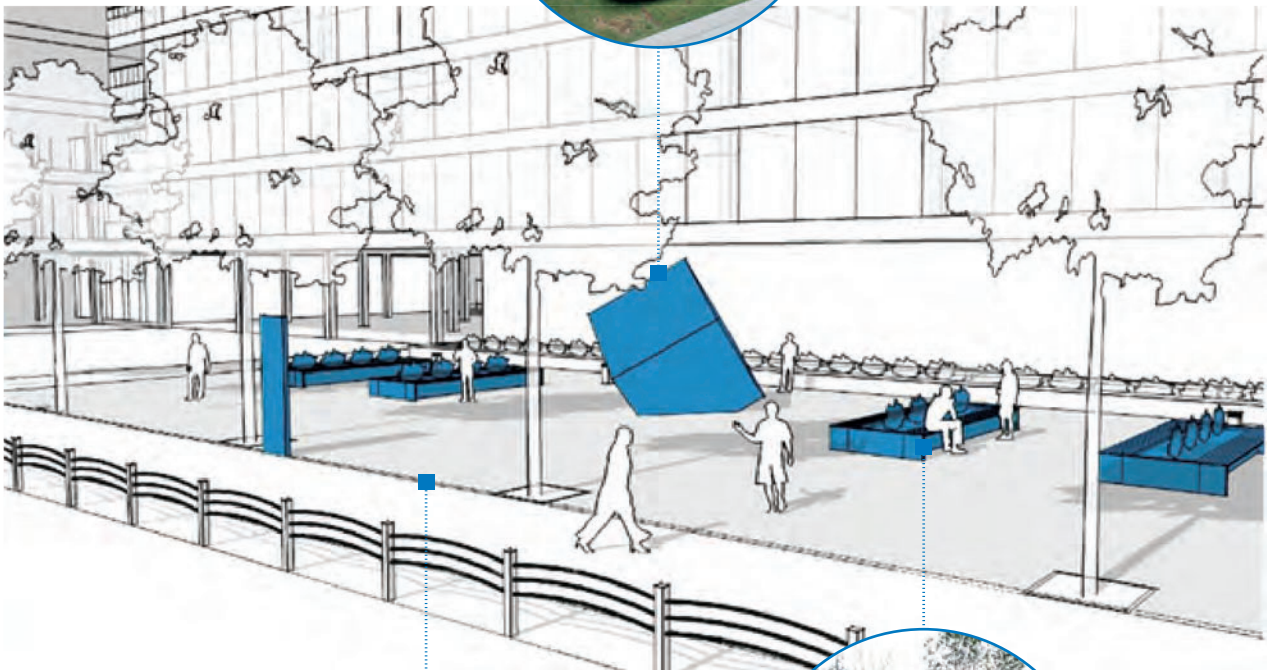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휴식공간

기본방향

누구나 접근하기 편한 환경 조성하기

디자인 원칙

조형 요소를 적용
과도한 색채 및 형태 지양



보도와 통합으로 경관적 연속성 유지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설치 금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단차 없이 구성



보행자의 편의를 위한
벤치 또는 파고라 등 휴게시설 제공

참조

건축법

건축조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및 옹골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공간	· 누구에게나 개방된 형태로 조성하여 공공성을 확보		
	· 대상지의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고 인접 도로와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며, 공개공지와 보도의 통합으로 경관적 연속성을 유지		
	· 주요 보행로에 면하는 대규모 공개공지는 소공원 및 소광장의 형태로 조성하되, 인접 공공공간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		
	· 진출입부는 접근이 쉽고 단차가 없도록 구성하고 높이차가 큰 경우 경사면 설치를 통해 동선을 유도		
	· 기존의 수목을 보호하고 다층식재를 활용하여 생태적 기반 확충, 그늘 및 일조권을 확보		
	· 공개공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인접 보도 등에 설치된 기존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디자인하며,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 보행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		
시설물	· 보행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벤치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		
	· 공개공지 내에 불법 적재물,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나 환기시설 등의 접근을 방해하는 요소의 설치를 지양		
	·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를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 소형 요소를 적용하여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는 공간으로 디자인하며, 과도한 색채 및 형태는 지양		
	· 주변 건축물 및 보행공간과 조화롭도록 저채도 색채 또는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함께 사용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		
	· 필로티 구조는 야간 시 우범지대가 되지 않고 자연적인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디자인으로 계획하며, 우범방지 및 사용편의를 위해 CCTV, 조명을 설치		
	· [건축법]의 내용을 준수하여 공간을 계획하되,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용 ※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및 옹골] 참고		
기타			



인접 공공공간과 연계하여 소공원 형태로 조성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높이차가 큰 경우 단차없는 경사면 설치

A. 가로

1.A.3

보·차혼용도로(보행자우선구역)

폭 10m 미만의 도로로써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보행자 우선의 안전을 위해 지그재그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 시설이 설치되고 차량 통행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

기본방향

차량 속도저감 유도로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하기

디자인 원칙

CCTV 및 주차금지 안내시설물 설치
전봇대 도색 정비

이용자 편의시설물 설치
그늘쉼터 필요시 적용
벤치와 차도 사이 거리 유지



바닥재와 뚜렷하게
대비되는 색채 사용
(황색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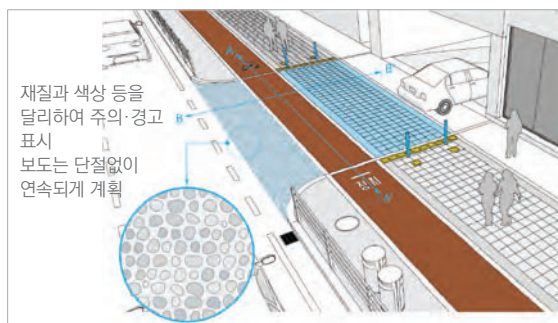
보행자우선도로 표기
속도제한 표기



고원식횡단보도로 차량 감속 유도
보행친화형 바닥재 및 배수시설 설치

참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국토교통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공간	· 원도심의 폭 10m 내외로 좁은 보·차도 구분이 없는 주택가 도로에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및 편의를 위해 도입을 권장		
	· 과속방지턱 등 차량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주택가 도로에서 허용되고 있는 시속 60km의 차량 통행 속도를 30km 이하의 저속으로 유도		
	· 기존 아스팔트 도로와의 연속성을 단절시킴으로써 시각적인 인지를 통한 과속을 예방		
	· 가변적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여건에 따라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두지 않도록 권장		
시설물	· 녹지체계와의 연계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맨홀덮개의 돌출을 금지하며, 보도블록은 틈새가 치밀하도록 시공		
	· 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며, 시설물 설치 구역에 통합적으로 설치하여 시설물의 도로 점유율을 최소화		
	· 불법주차 방지를 통해 보행권을 확보하고 노상주차금지, 속도제한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내시설물의 설치를 권장		
	· 바닥 패턴은 보행친화형 바닥재 및 저채도의 색상을 권장하며, 과도한 색채 및 패턴, 그래픽은 지양		
	· 보행자의 편의를 위한 보행편의시설 또는 보행자 전용 쉼터의 설치를 권장		
	·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CCTV나 보안등의 설치를 권장		
기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을 준수하여 설치		
	· 주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만큼 설계~유지관리 전 조성 과정에 주민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		



보행공간과 차로 교차부분의 경계구간 처리

*출처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보도와 유사한 보행친화형 바닥재 및 무채색의 도막형 바닥재(스텝핑 기법)

A. 가로

1.A.4

교통약자보호구역(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취약 계층인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구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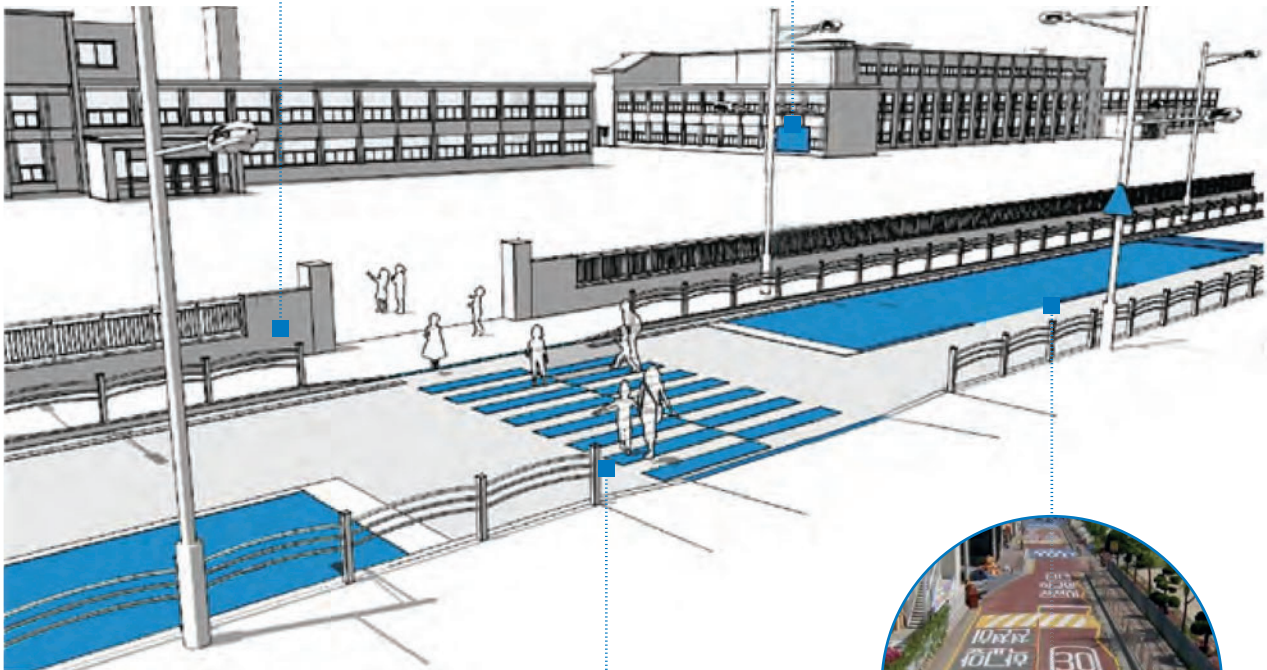
기본방향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보행자 안전 확보하기

디자인 원칙

보호구역의 안전표지 및 CCTV 설치
보호지점 또는 구역의 전방 50~200m 범위

어린이보호구역은 통학로 인지향상 디자인의
적용으로 시각적 즐거움 제공



노면요철포장,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안전펜스 설치 등 보행자 안전 확보
반경 300m 내 차량속도 저감이 필요한 지점에
과속방지턱 설치



도로 포장은 암적색 적용

참조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국토교통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공간	· 학교,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주변의 교통사고 및 차도와 인접한 장소에 우선 설치		
	·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		
	· 통행로 주변의 광고물은 교통안전표지의 시인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를 허용		
	· 어린이보호구역은 통학로 인지향상 디자인 등의 적용으로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		
	· 보호구역을 중점으로 노면요철포장,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안전펜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도입		
시설물	· 지정된 보호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보호지점 또는 구역의 전방 50~200m 범위 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역의 시작 및 끝지점에는 안전표지를 도로 양측에 설치		
	· 안전펜스,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때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 및 기초 번호를 일정간격으로 표기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며, 시각적 혼란을 야기하는 과도한 색채, 패턴, 장식적인 요소의 적용은 지양		
	· 보호구역 반경 300m 내에서 운전자들의 통행, 주·정차, 운행속도 제한을 위해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되, 도로 환경 및 교통 조건을 고려하여 속도 저감이 가장 필요한 지점에 설치		
	· 과속방지턱은 충분한 시인성을 갖기 위해 반사성 도료를 사용하여 표면 도색함을 원칙으로 하며, 색상은 표준색채인 흰색과 노란색을 교차 도색하여 설치		
	· 도로 포장 색채는 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암적색을 적용		
	· 각종 범죄, 사고 예방 및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CCTV의 설치를 권장		
기타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내용을 준수하여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의 안전색채 적용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교통 및 환경 개선

A. 가로

1.A.5

횡단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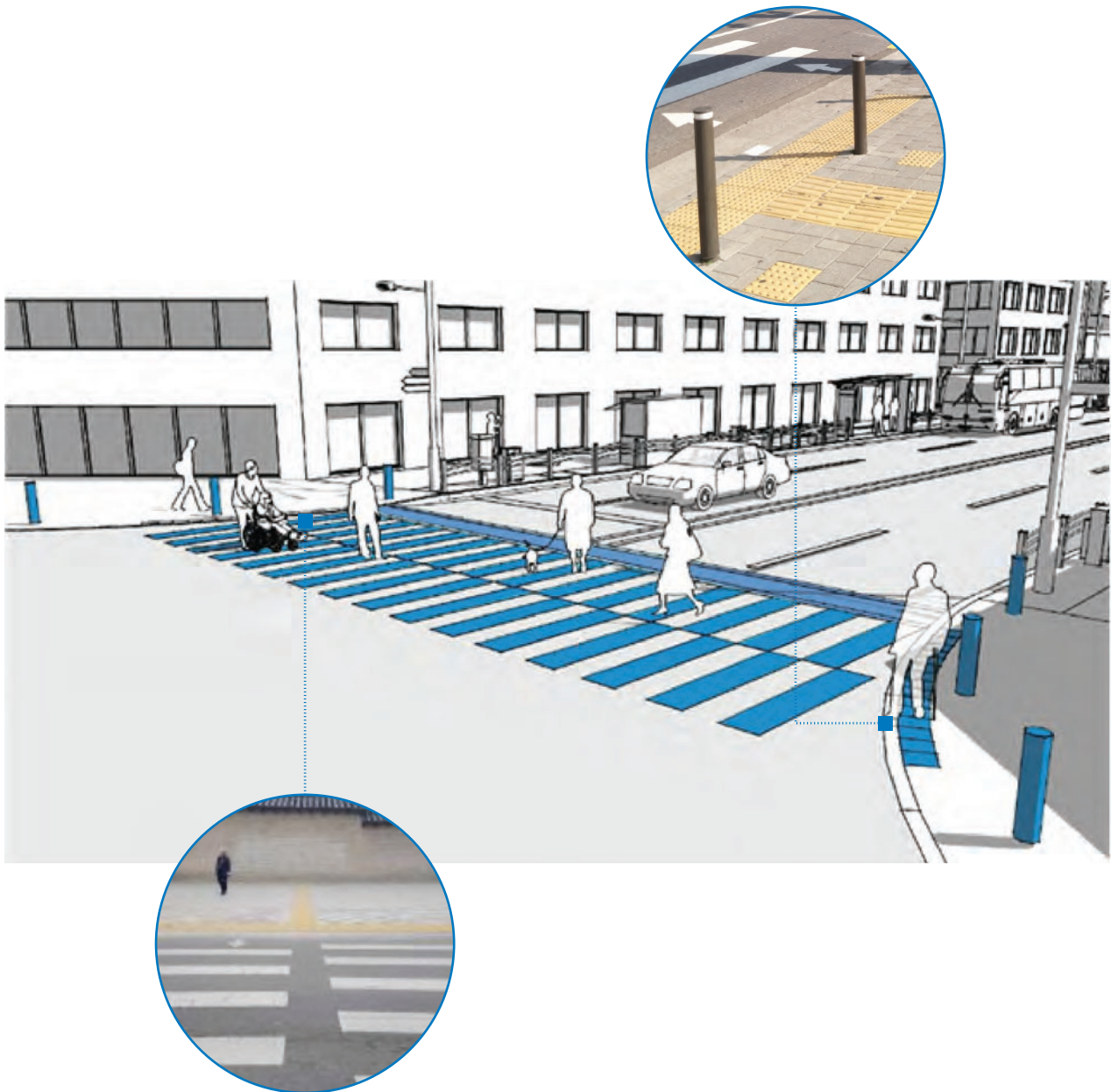
자동차 등의 교통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도

기본방향

보행로와 연속된 설치로 보행이동권 확보하기

디자인 원칙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10mm 이하가 되도록 설치
900mm정도의 폭만큼 점자블록을 중앙에 설치
점자블록은 음향신호기 전면에 우선 위치하도록 설치



보도 턱 낮추기, 고원식횡단보도 등
보행로와 횡단보도의 연속성을 유지

참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국토교통부)

공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보도는 보행자의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지하보도나 보도육교 설치를 지양하며, 가급적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보행거리가 짧은 교차로로 계획			
· 보행로와 횡단보도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확보			
· 보도 전체를 턱 낮추기를 할 수 없거나, 유효보도폭이 2m 이하인 보도와 연결된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의 폭에 유사한 기준으로 부분경사로를 설치			
· 도로폭이 넓은 횡단보도의 턱 낮추기는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설치하되, 도로폭이 좁은 곳에는 횡단보도의 높이만큼 차도의 높이(고원식)를 조절하여 보행장애인, 노약자, 휠체어 및 유모차 사용자 등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			
· 주택가·학교 주변의 편도2차로 이하인 도로는 횡단보도에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가 같도록 계획			
· 우기 또는 적설 시 점자블록의 미끄러움을 고려하여 미끄러운 재료의 사용은 지양			
· 연석경사로의 유효보도폭은 횡단보도의 넓이로 하고 기울기는 1/20 이하(법적치수 1/12 이하)로 하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10 이하로 계획			
·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10mm 이하(법적치수 20mm 이하)가 되도록 설치			



도로폭이 좁은 곳의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어린이보호구역의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A. 가로

1.A.5

횡단보도

시설물

- 턱 낮추기를 하는 연석과 횡단보도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도로 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권장

미끄럼 저항 기준	경사도 0~2%(평지)	40PB 이상
	경사도 2~10%(완경사)	45PB 이상
	경사도 10%초과(급경사)	50PB 이상

- 모든 보행자에게 횡단보도가 있음을 인지시킬 수 있는 신호전달체계(시각, 청각, 촉각)를 적용하며,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

- 도로 폭이 넓은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에 잔여횡단 시간을 알리는 시설물 설치를 권장

- 도로를 지나는 차량 속도에 따라 신호등 설치 유무를 판단해야 하며, 교통량(자전거 및 환승 포함), 건너는 거리, 사고 이력, 횡단보도 이용자 수, 가로등 사용 가능 등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

- 점자블록은 중앙에 설치하며, 설치 시 음향신호기 전면에 우선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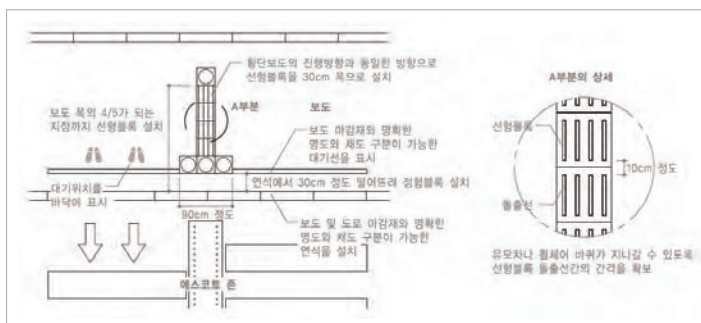
- 선형블록은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설치하며,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 폭의 4/5가 되는 지점까지 설치

- 사고위험성이 높은 교차횡단보도나 교통광장 등은 별도의 조명을 추가 설치하며, 노면 표시에는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

-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조명등 설치 및 표시판 식별이 가능하도록 전기장치를 설치

기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치



횡단보도 점자블록 설치방법 *출처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교통섬 설치 예시

- 참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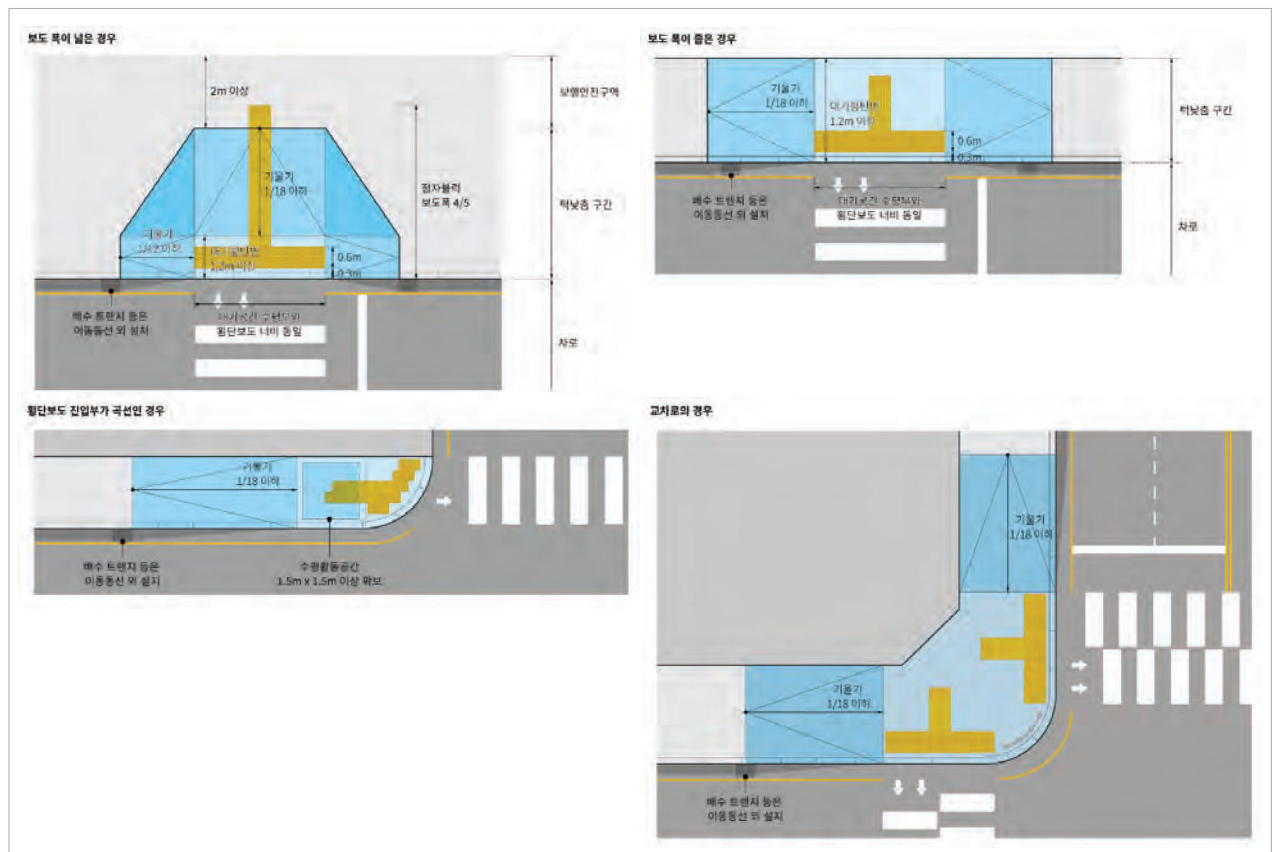
도로와 같은 높이로 중앙 보행섬 설치



스크램블 교차로



횡단보도 집중 조명



턱낮춤 적용 기준 *출처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A. 가로

1.A.6

자전거도로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자동차와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자전거의 교통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

기본방향

자전거와 보행 동선 분리로 안전하게 이용하기

디자인 원칙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장애물 설치 금지
지면으로부터 2.5m 이내 보행안전지대 확보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안되도록
보도 내 설치로 제한

최소폭 1.2~1.5m 이상
측방여유폭 250~500mm 이상
횡단기울기 1.5~2.0%

참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공간	·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의 구분에 따라 공간에 맞도록 설치			
	· 자전거도로의 폭은 1.5m 이상을 확보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1.2m까지 설치			
	· 보행약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경사로 주변에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자전거도로 내 점자블록 설치 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보도 내 설치로 제한			
	· 자전거전용차로는 차도의 배수기준을 적용하며,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횡단기울기를 1.5~2.0%로 하고 노면 미끄럼 저항성은 40BPN 이상을 확보			
시설물	· 자전거도로의 상부 및 양측면에는 자전거의 원활한 주행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장애물 설치 금지			
	· 자전거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보도 및 차도와 교차 지점이 잘 보이도록 식재 간격과 위치를 결정하며, 교목은 성인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 수목의 가지에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지하고가 높은 수종을 선택			
	· 포장면은 평탄성을 유지하며, 기본구간의 경우 포장면 표층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도와 유사한 무채색계열의 색채를 권장하며, 타 교통수단 간 상충이 발생하는 교차로, 이면도로, 시·종점 구간 등은 운전자의 주의 유도를 위해 암적색포장으로 시인성 확보			
	· 차도와 교차되는 구간에는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도로의 주 재료를 연장하여 적용			
	· 보행가도와 다른 재료를 쓸 경우 사이 경계를 매끈하게 시공하고, 같은 재료를 쓸 경우 경계선을 명확히 표시			
	·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와 교차되는 부분에 자전거노면표지를 표시하며, 교차로가 없는 일반구간의 경우 매 100m마다 설치 ※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262p)] 참고			
	· 야간에도 자전거도로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등, 발광 볼라드 등의 조명시설 설치를 권장			
기타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준수하여 설치			



자전거도로 포장색채 적용 기준

*출처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도와 교차되는 구간에 자전거도로 연장적용

*출처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자전거 이용시설 점검가이드)

A. 가로

1.A.7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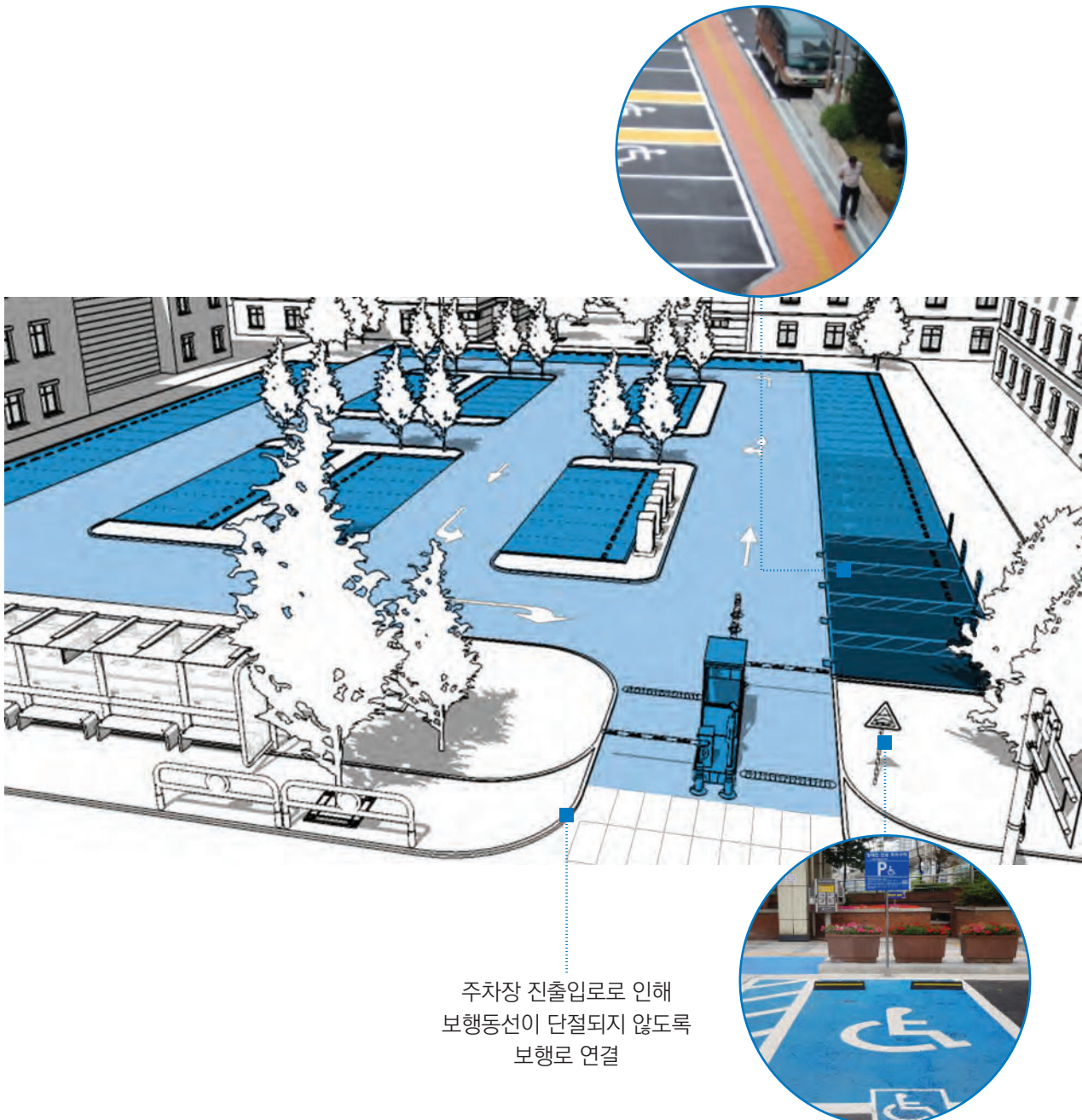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장시간 동안 세워둘 수 있는 장소로서, 주차장법에 따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

기본방향

명확한 주차정보 제공으로 이용편의성 높이기

디자인 원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배려주차구역은 주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보행안전통로는 단차없이 접근할 수 있고 1.8m 이상의 유효보도폭 확보



주차장 진출입로로 인해
보행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보행로 연결

주차장 관련 안내시설은 통합계획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적용

- 참조**
- 주차장법 및 시행령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국토교통부)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공간	· 주변 건물과 보행로에서 자연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배치할 것을 권장하며, 주차장 입구는 유도 및 안내표지판, 식재 등에 의해 운전자의 시선을 차단하지 않도록 시야를 확보		
	· 주차장 진출입로는 출입구, 차로, 차량에 대한 상시 관찰이 가능하도록 단일화하고 보행자 동선과 명확히 분리하며,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통제시스템 및 CCTV를 설치		
	· 인접 보행가도와 주차장의 경계부에 녹지 마운딩, 식재대, 보행가도변 휴게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불가피하게 담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경우, 주위로부터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		
	· [주차장법령 및 자치조례]가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며,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것을 권장 이 경우, 주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며, 입구의 보행접근로까지 이르는 보행안전 통로는 단차없이 접근할 수 있고 1.8m 이상의 유효보호폭을 확보하도록 권장		
	· 영역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차량 이동통로, 주차공간 및 보행안전통로를 명확히 구분하며, 재료차이를 통한 구분을 권장		
	· 보행안전통로에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조명, 그늘 식재, CCTV 등을 통합 설치		



주차장 진출입구 고원식횡단보도 설치로 보행안전 확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보행안전통로 설치

A. 가로

1.A.7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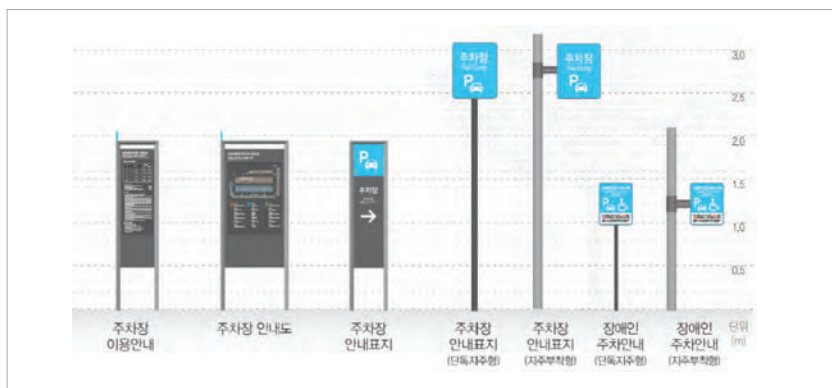
시설물

- 주차장 내부의 안내시설, 요금정산 관련시설 등 각종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계획
- 주차장 출입구 안내표지판은 도로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주차구역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위치·유도 안내표시는 주차장 출입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234~237p)] 참고
- 보행자로 불법주차를 억제하기 위한 자전거 및 오토바이 주차장은 별도 설치를 권장
- 음성·음향 및 시각정보에 의한 자동차의 출차를 알려주는 경보장치 등을 도입
- 조명은 시간대에 의한 이용 상황 및 과잉조명에 유의하며, 야간에 사람의 행동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정조도를 확보
- 주차공간 주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목은 피하고 지하고 2.1m 이상의 교목을 식재
- 긴급한 상황 발생시 인근 파출소와 연결가능한 비상벨 또는 인터폰 등을 설치
- 바닥포장재는 투수성 포장을 권장하며, 불투수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녹지대를 도입하여 투수면적을 확보
- 주차선 표시방법은 페인트 도장 외에 차도용 블록재 사용 등으로 다양화 할 것을 권장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배려주차구역 등은 노면표지를 명확히 하며, 색채나 패턴을 활용하여 주차영역과 위치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 주차장 안내표지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표지 등에는 일관성 있는 국제·국가표준 픽토그램을 사용하며, 지정 표준색채를 적용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주차장안내표지 표준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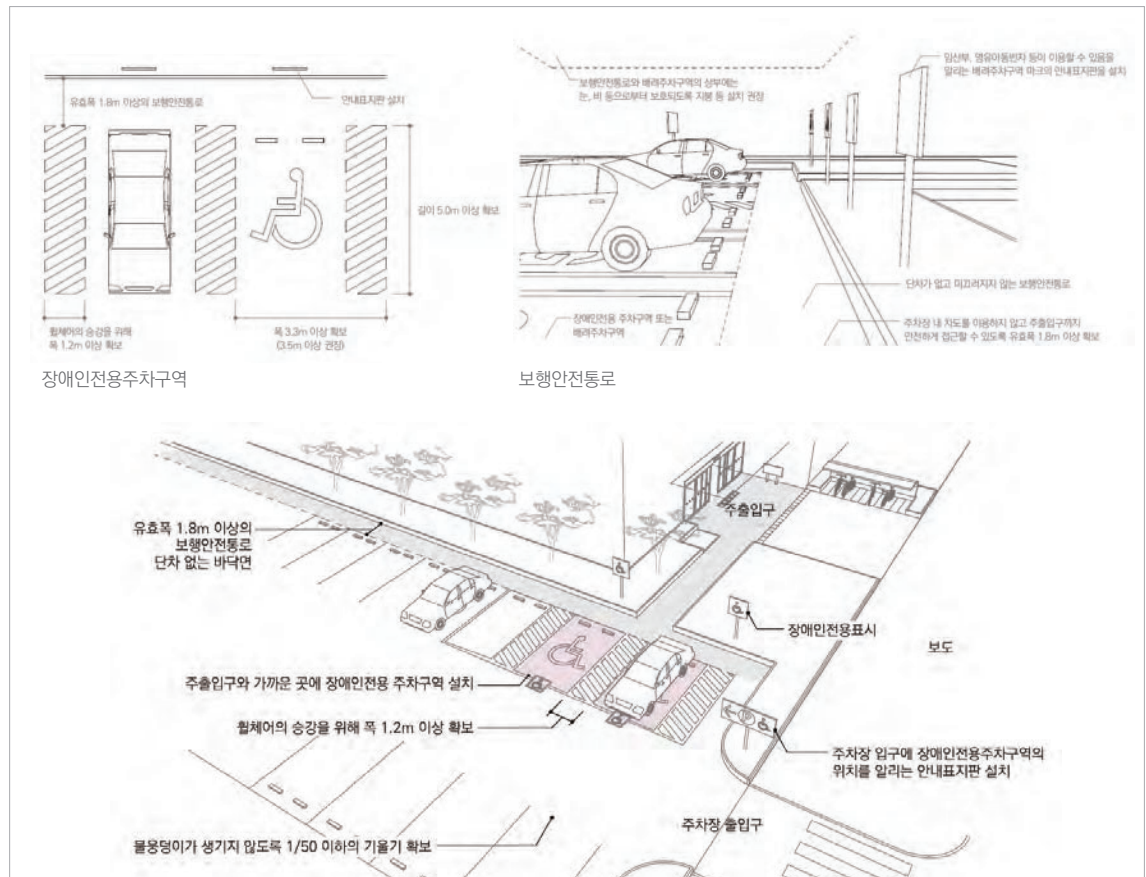
장애인주차표지 표준디자인

참조 주차장법 및 시행령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기타

- 간선도로 차량진출입시설 허가로 인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주차공간 사용은 엄격히 제한하며, 지속적으로 관리
- 건축선 후퇴부분의 불법주정차가 빈번한 곳은 차량진출입시설 허가 시 공공보도와 사유지인 건축선 후퇴부분까지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거나 건축선 후퇴부분에 화단 등 조경 식재를 권장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주차장 설치 기준 *출처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B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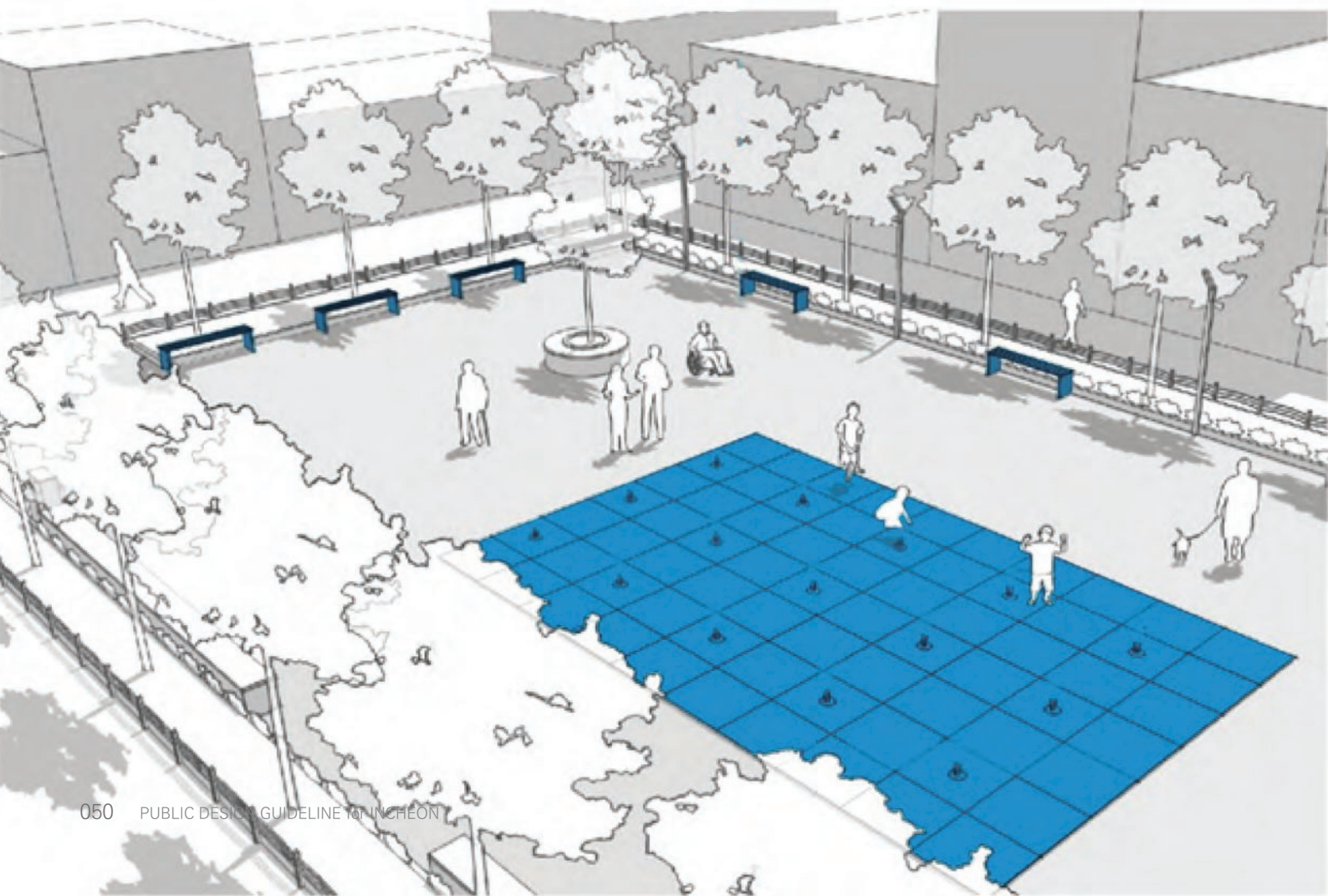
중점사항

01 생활안전 및 보행안전
확보하기

인접 보행가로와의 연계성 고려
시각적 차폐나 은폐공간이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
보행약자, 어린이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재료 및 형태 적용

02 도시조화성 및 정체성,
지속가능성 고려하기

지역성, 상징성을 강조하는 색채, 패턴, 장식요소의 적용 지양
파손방지 및 내구성이 높은 친환경 재료와 시설물의 사용 권장
조경은 주변과의 시선연결을 방해하지 않는 수종의 식재 적용



세부구성

- 공원은 도시자연 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공공의 공간이다.
인천광역시 현 공원 유형 및 공원녹지 종합계획, 기반시설 유형 분류 등의 검토를 통해 근린공원, 소공원 및 쌈지·자투리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문화·역사공원, 수변·해안공원, 산림휴양·도시생태공원 등으로 구분한다.
- 가이드라인의 세부구성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분류코드	중분류	세부 구성	
	공통적용사항		
1.B.1	근린공원		
1.B.2	소공원, 쌈지·자투리공원		
1.B.3	어린이공원	·공간	·시설물
1.B.4	체육공원		
1.B.5	문화·역사공원		
1.B.6	수변·해안공원		
1.B.7	산림휴양·도시생태공원		

- 공원의 편의성 및 안전성 확보 등 중점사항에 관하여 공통적용사항을 제시한다.
- 공원의 이용목적에 따라 7개 대상으로 세분화하며, 공간, 시설물의 2개 요소로 각각의 지침을 제시한다.
 - 1) 공간 : 공간을 형성하는 구조적 틀과 공간을 채우는 개별 요소에 대한 구체적 설계지침
 - 2) 시설물 : 시설물 설치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관련법규 및 문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B. 공원

공통적용사항

공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주변 건물과의 관계를 고려한 위치선정으로 적절한 그늘과 일조량을 확보하여 이용의 쾌적함을 제공			
· 다양한 보행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접 보행가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며, 무단차 적용			
· 공원출입구는 주변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출입구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디자인을 적용			
· 공원출입구에는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무단침입을 방지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으로 접근하는 공간과 분리시켜 배치			
· 공원의 주차공간은 외진 곳을 피해 배치하되, 공원이용자나 관리사무소의 시선연결 범위 안에 위치시키며, 보행로와 겹치지 않도록 계획			
· 휴게, 운동, 놀이 등의 공간은 시각적 차폐나 은폐공간이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			
· 폐쇄감이 높은 담장 및 시선 차폐로 인한 우범지역 발생을 방지			
· 공원시설은 보행공간과 연계시키며, 가급적 다른 이용자들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별도의 구역을 지정해 배치			



적절한 그늘과 일조량을 확보



보행로와 공원시설 구역을 별도로 구분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시설물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공원 내 공간 및 시설 주변에 영역 구분을 위한 조경수목은 주변과의 시선연결을 방해하지 않는 수종으로 식재			
· 조경수목이 조명, CCTV, 안내시설 등 가로시설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식재간격 및 식재방식을 적용			
· 바닥포장재는 무채색 계열의 간결한 패턴을 기본으로 적용하며,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도록 투수성이 높은 블록이나 잔디블록 등 친환경 포장 재료 사용을 권장			
· 신체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격 흡수가 가능한 탄성 재질의 바닥마감을 권장			
· 지역성 및 상징성을 강조하는 색채, 패턴, 장식 요소의 적용을 지양			
· 파손 등에 대비하여 내구성이 높은 제품으로 설치하며, 친환경 재료와 시설물의 사용을 권장			
· 보행약자, 어린이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이용이 용이한 재료, 형태를 적용			
· 공원의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구조인 경우에는 위치확인이 가능한 표지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			
· 공원이용수칙 및 시설안내를 위한 표지판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규모 및 위치를 적용			
· 미관을 저해하는 공원 앞 쓰레기 적치, 야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및 매너 안내표지판을 설치			
· 방송시설(스피커)은 공원의 각 공간에서 쉽게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설치			
· 공원관리실은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또는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투시형 구조로 디자인을 적용			
· 휴지통은 분리수거가 가능한 구조의 디자인을 설치			
· 야간 조명 계획 시 이용자들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			
· 공원에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시, 장애인을 위해 향이 나는 식물을 심거나 펜스로 테두리가 있는 화단을 설치, 혹은 점자로 표시			



공원이용수칙 및 시설안내 표지판을 인식하기 쉽도록 배치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 계획

B. 공원

1.B.1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함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중규모(10,000㎡ 이상)의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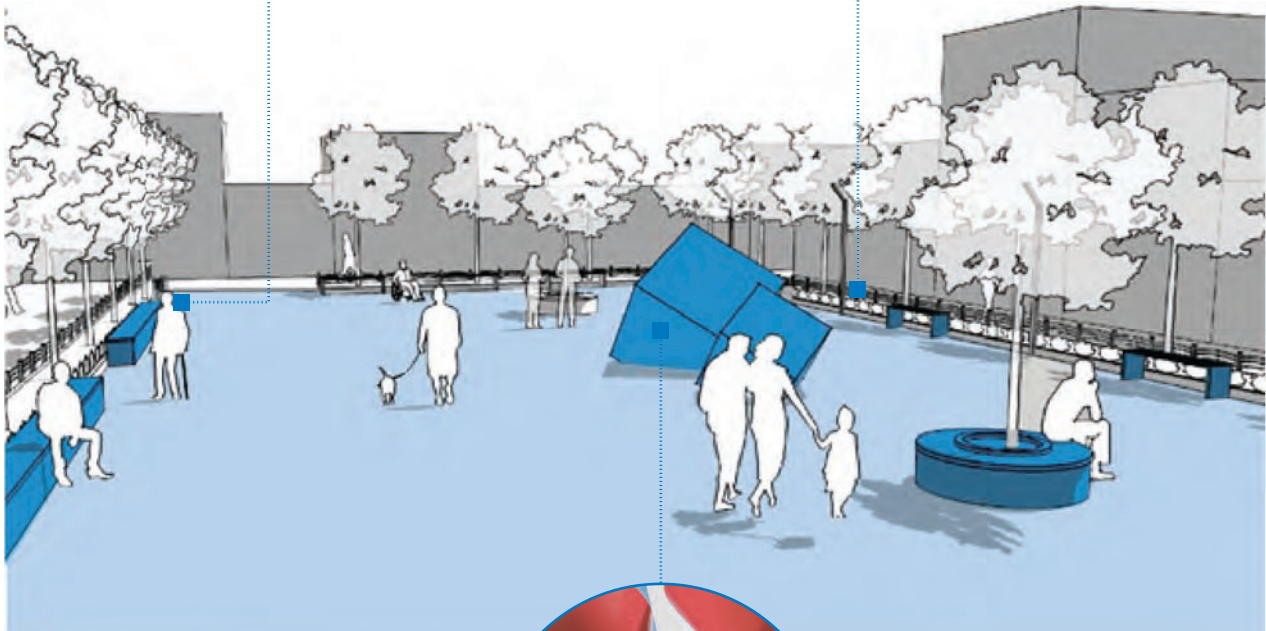
기본방향

쉽고 편리한 접근 및 이용 환경 조성하기

디자인 원칙

보행가로 및 주변 공공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한 동선 계획

거주자의 보건함양 및 정서생활을 위한 시설물 설치
설치 개수의 최소화 및 통합 설치



커뮤니티 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상징시설물 설치 및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조성 권장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공간	· 보행자의 이용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행가로 및 주변 공공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한 동선 계획			
	· 장소성을 반영하여 지역 문화콘텐츠 등의 유무형 자원과 연계한 시설 도입을 권장			
시설물	· 공원의 성격과 주제에 맞추어 통일된 콘셉트의 시설물 디자인을 구상·배치			
	· 시설물 설치 개수의 최소화 및 통합 설치로 기존 식생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			
	· 국가지점번호판, 도로명기초번호판 등 위치확인을 위한 재난안전시설을 설치			
	· 다양한 체험 및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거주자의 보건함양 및 정서생활을 위한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설치			
	· 조망성이 좋은 공간에는 조망용 휴게시설을 설치를 권장			
	· 주변 가로와 공원 산책로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시각정보매체의 설치를 권장			
기타	· 주민 커뮤니티 활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조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며,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시설물 설치를 권장			



보행가로 및 주변 공공공간과 연계한 동선



체험, 놀이 등을 통해 보건 및 정서 함양

B. 공원

1.B.2 소공원, 쌈지·자투리공원

소공원은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소규모(10,000㎡ 이하) 공원
 쌈지·자투리공원은 생활권 주변에 위치한 자투리 땅에 주민 휴게목적으로 조성하는 소규모 공원
 쌈지·자투리공원은 공원녹지법에 규정된 도시공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100㎡ 내외의 규모로 조성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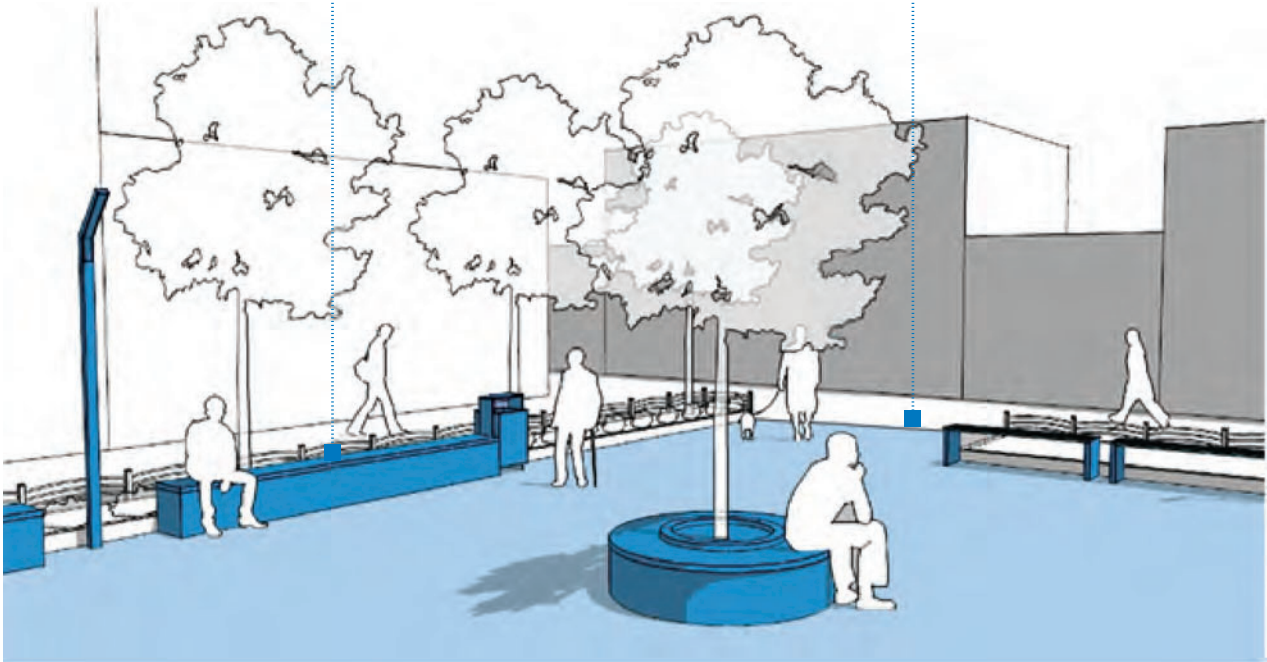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 조성하기

디자인 원칙

주민들의 휴식기능을 위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휴게시설 배치



개방성 증진 및 우범지역 발생 방지를 위해
 폐쇄감이 높은 담장 설치 및 시선 차폐 지양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공간	· 공원의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휴식기능을 위주로 벤치, 테이블, 평상 등 휴게 시설물을 배치하며, 통행이 용이하도록 조성			
	· 간결한 바닥패턴 및 재료, 색채의 적용으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			
시설물	· 개방성 증진을 위하여 담장 및 펜스 설치 지양			
	쌈지·자투리 공원			
	· 열섬현상 완화 및 주민 커뮤니티 유도를 위한 식재 중심의 휴식공간으로 조성			
	· 공간이 협소한 경우 벽면 녹화, 스톨형 벤치 등의 설치를 권장			
	· 야간 이용의 안전을 위한 조명을 설치하되, 인근 주택으로의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사람의 시야보다 낮고 지면을 비추는 형태의 조명설치를 권장			
	· 소규모 정원, 주민 텃밭, 보육기관의 체험활동 공간 등 주민 커뮤니티를 위한 유연적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			
	· 조성 및 관리 단계에서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에 의한 운영 시스템 마련을 권장			



벤치 등 휴게시설물을 배치하고 통행이 용이하도록 조성



주민 커뮤니티를 유도하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자투리공원



기업 참여를 통해 조성(한화 불꽃정원)

B. 공원

1.B.3

어린이공원

어린이(영아~유아)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으로, 1,500㎡ 이상 규모로 조성

기본방향

다양한 창의적 신체활동이 가능하도록 차별없이 안전한 공간 조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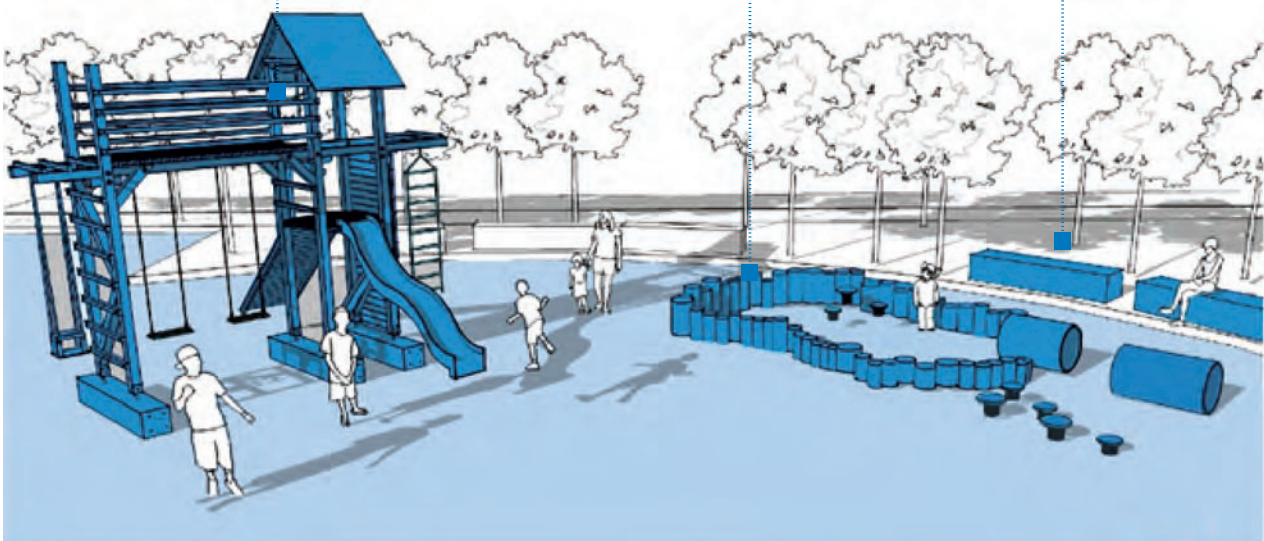
디자인 원칙

유아와 어린이 놀이공간을 구분하여 안전성 확보
장애아들도 이용가능한 놀이시설 설치 권장

다양한 신체 활동 및 창의적 놀이가 가능하도록
지형 및 자연요소, 프로그램을 활용한 놀이공간 조성
어린이 정서함양을 위한 다채색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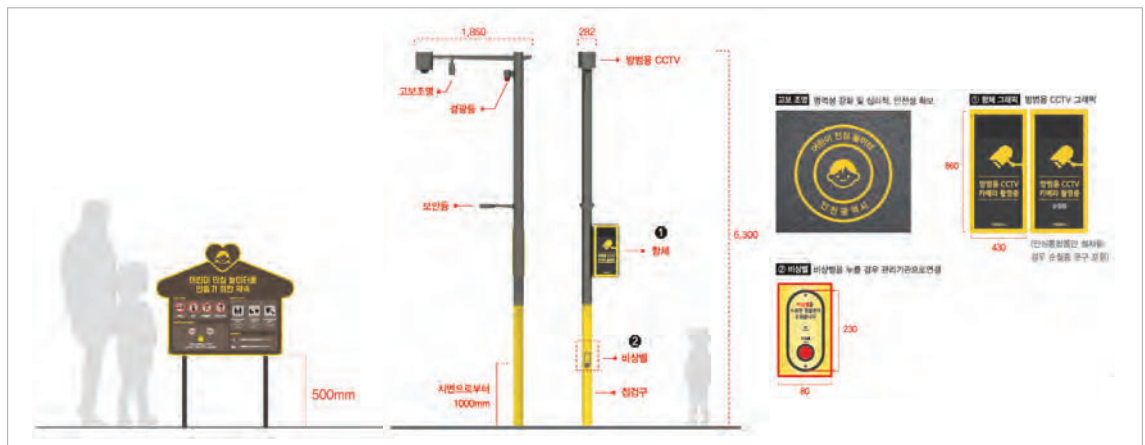


놀이시설 주변에는
보호자가 휴식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 배치



참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공간			
· 기성 놀이시설의 설치보다는 다양한 신체 활동 및 창의 놀이가 가능하도록 지형 및 자연 요소,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놀이공간 조성을 권장			
· 보호자의 상시 보호 및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놀이시설 주변에 보호자 휴식 공간 및 시설을 배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시설물			
·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펜스의 설치는 허용하되, 시각적 폐쇄성이 낮고 개방감이 높은 펜스를 설치			
· 유아와 어린이 놀이공간을 구분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며,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놀이 시설 설치를 권장			
· 과도한 원색은 지양하되, 어린이 정서함양을 위해 다양한 색채사용을 권장			
· 범죄예방디자인과 관련된 시설물은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적용			



어린이놀이시설 범죄예방디자인(어린이 안심 놀이터 안내판, 안심 통합표) 표준디자인



지형 활용 등 다양한 신체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 조성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놀이시설 주변에 휴식 공간 배치

B. 공원

1.B.4

체육공원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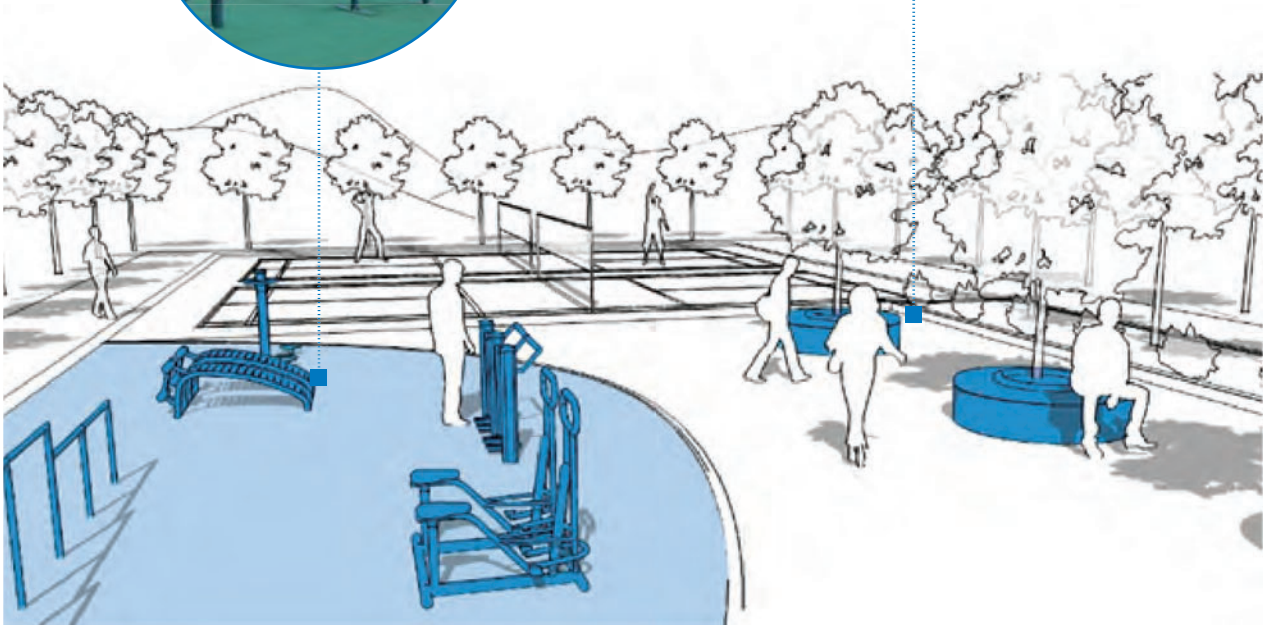
기본방향

편리하고 쾌적한 활동공간 조성하기

디자인 원칙

각종 편의시설 및 위락시설을 함께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이도록 계획

다양한 체육시설을 마련하여 주민의 생활활동 지원
과도한 소음 및 진동을 유발하는 체육시설 지양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공간	· 생활체육시설은 자연환경과의 연계 및 주민건강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체육활동과 더불어 휴식, 정서함양의 기능이 포함되도록 계획			
	· 주거지와 인접한 소규모 체육공원은 과도한 소음 및 진동을 유발하는 체육시설을 지양			
시설물	· 다양한 체육시설을 마련하여 주민의 체육활동을 지원			
	· 각종 편의시설 및 위락시설을 함께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제고			
	· 운동량이 많은 체육시설은 햇빛 가림막이 있는 휴게시설과 벤치, 음수대 등을 인접 배치할 것을 권장			
	· 수목 식재를 함께 조성하여 휴식공간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			
	· 휴게, 운동, 놀이 등의 시설은 다양한 활동을 고려한 동선상에 배치하며, 불량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자인			
	· 시설물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위치를 고려해야 하며, 시설 이용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			
	· 체육시설물은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색채를 적용			
기타	· 운동장 등 단체 이용시설은 사용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시간대별 이용자를 접수하는 관리 시스템 수립을 권장			



휴게, 운동, 놀이 등의 다양한 활동을 고려한 동선 배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편의시설 배치

B. 공원

1.B.5

문화·역사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 및 역사적 장소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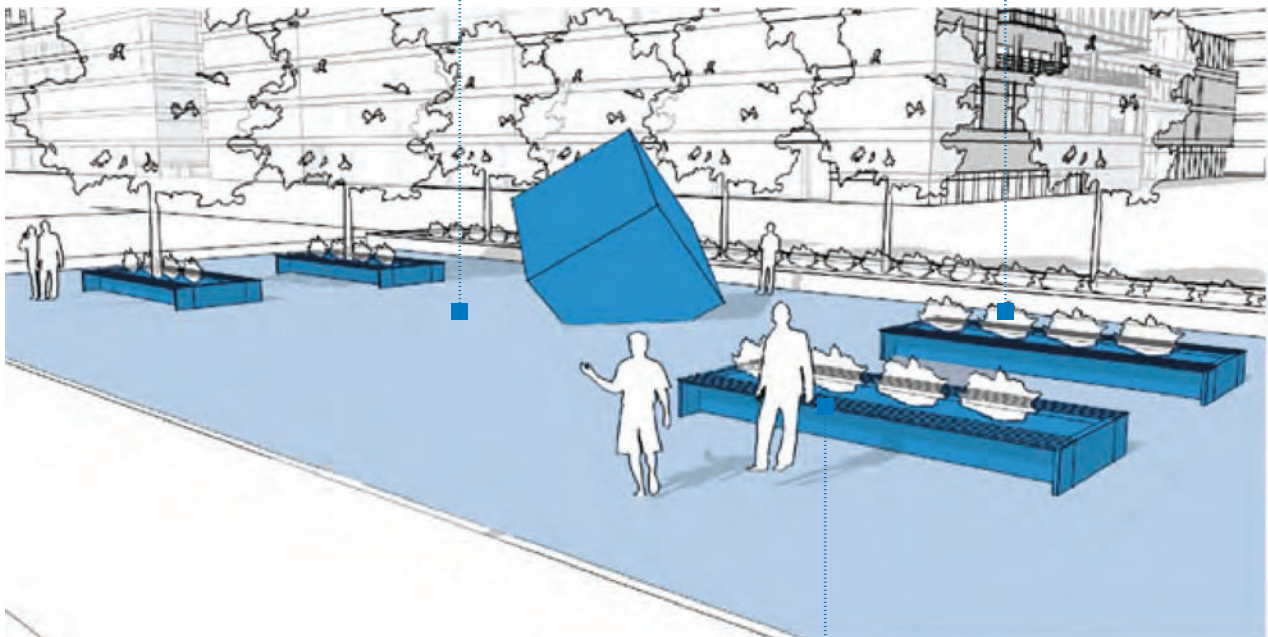
기본방향

다양한 문화·역사적 경험을 위해 다양한 활동 연계하기

디자인 원칙

문화예술, 역사자원 등을 접하고
자연스러운 학습과 교육, 체험이 가능토록 공간 조성

조형시설물은 불완전한 형태 및
과도한 색채의 적용을 지양
간결한 색채와 재료의 시설물 통합디자인



다양한 테마의 문화예술, 역사자원 등의 특색을 살린
휴식공간 제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야간의 안전 고려로 범죄예방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및 옹골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공간	· 공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민이 문화예술, 역사자원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조성			
	·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 조성으로 체험·경험의 기회를 제공			
	· 문화예술 등 이벤트를 상시 운영하여 지속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 역사공원의 경우, 역사건조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설물의 형태 및 설치 동선 등을 고려하며, 역사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부각			
시설물	· 다양한 테마의 문화예술,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되, 조형시설물은 불완전한 형태 및 과도한 색채의 적용을 지양			
	· 간결한 색채와 재료를 적용하여 문화·역사공원다운 품격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물과 안내표지판은 일관된 이미지의 통합디자인 계획			
	· 문화예술 및 역사자원에 대한 자연스러운 학습과 교육, 체험이 가능하도록 안내시설물 계획			
	·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야간 조명연출을 통해 범죄를 예방			



체험·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 및 시설 조성



다양한 테마의 문화예술 접목



역사건조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설물의 동선 고려



역사공원의 품격을 연출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차분한 디자인의 안내표지판

B. 공원

1.B.6

수변·해안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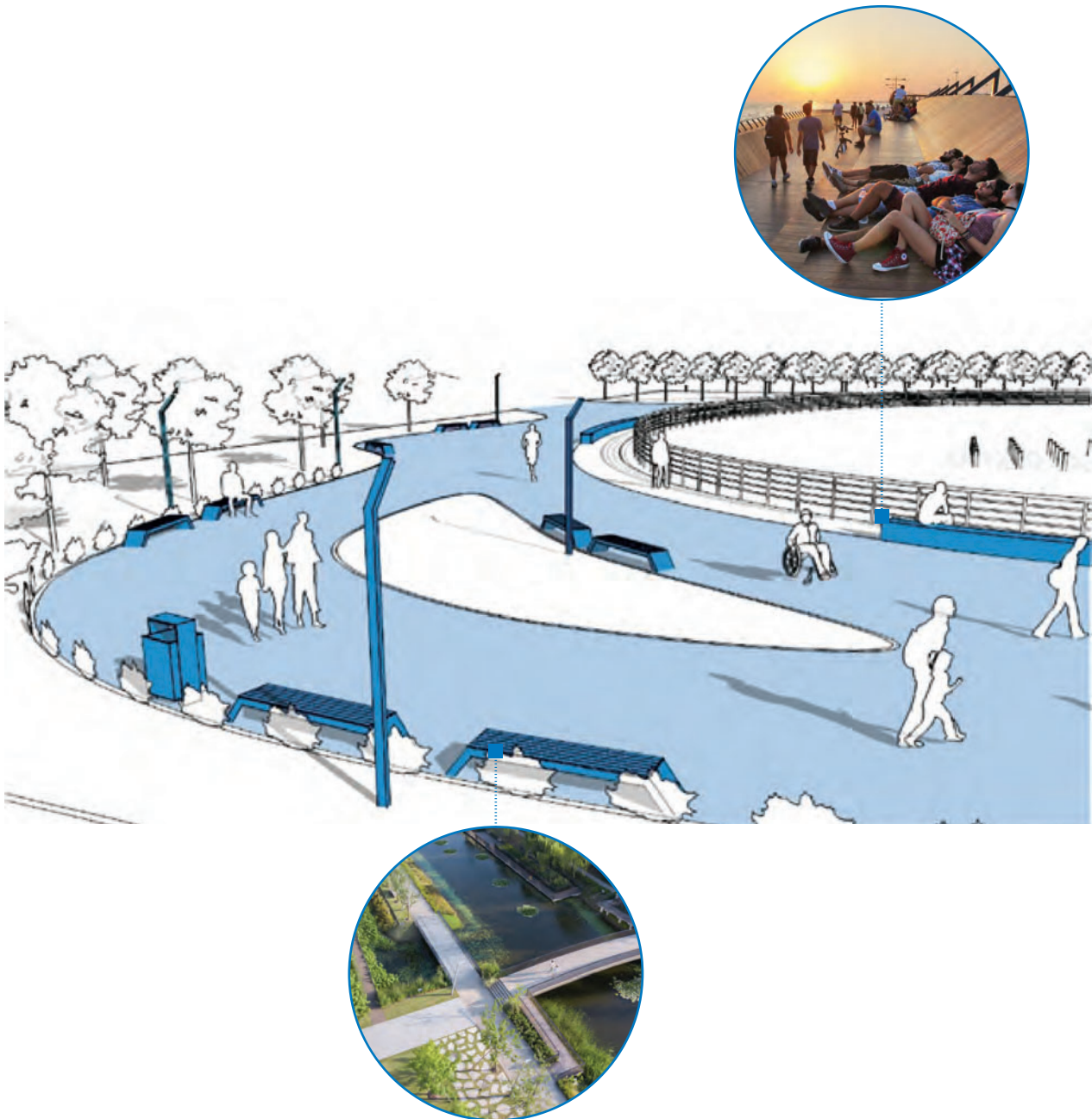
도시의 하천변, 호수변, 해안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기본방향

안전한 이용이 가능한 친수공간 조성하기

디자인 원칙

조망을 고려하여 조망데크 및 휴게공간 설치



안전, 이용편의시설, 무장애 설계, CPTED개념의 반영
CCTV 설치, 주요이동공간의 조도 확보, 식재 및 시설물로 인한 사각지대 방지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공간	· 갯벌, 습지 등에 조성되는 수변공원은 생물종 조사 등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이용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공원을 조성			
	· 수변 조망 및 이용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을 권장하며,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계획			
시설물	· 여성,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안전, 이용편익시설, 무장애 설계, CPTED개념을 반영한 시설을 설치			
	· 조망을 고려하여 조망데크 및 휴게공간을 설치하며, 이용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시설을 설치			
	· 진입로, 출입구 등 주요 지점에 CCTV 설치, 주요 이동공간의 조도 확보, 시설물로 인한 사각지대 방지 등을 고려			



이용 안전을 고려한 안전시설 설치



주요 이동공간의 조도 확보 및 시설물로 인한 사각지대 방지

B. 공원

1.B.7

산림휴양·도시생태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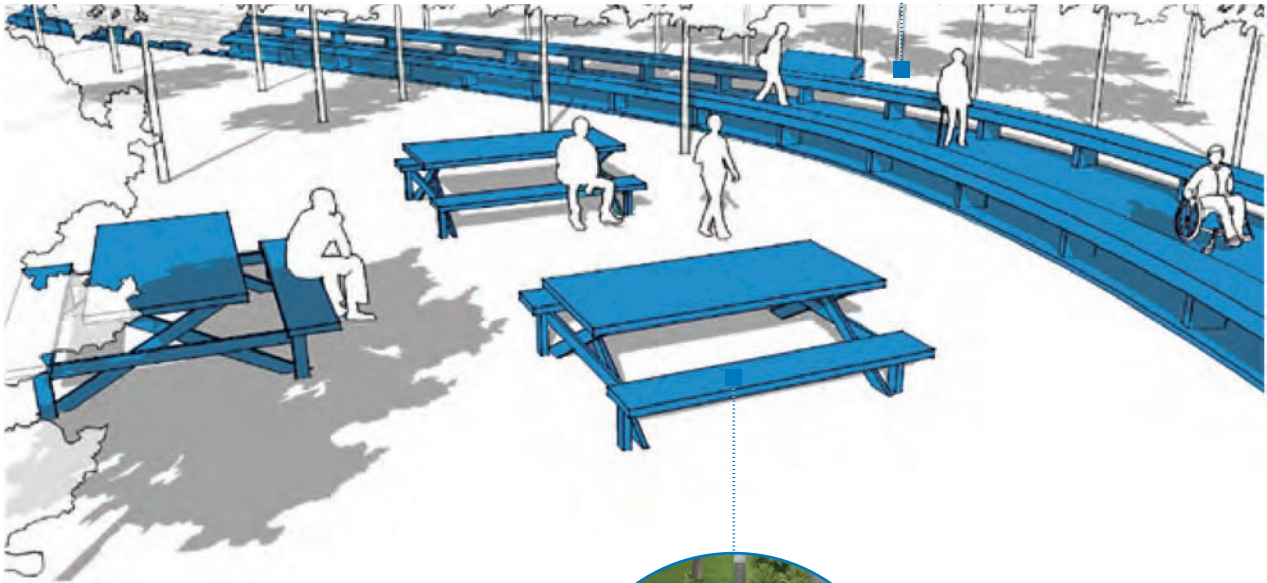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림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생태계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공간이자 시민의 건전한 여가·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

기본방향

자연과 조화롭고 안전한 환경 조성하기

디자인 원칙

산책로, 탐방로 조성 및 로프, 안전펜스 설치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기능의 휴게시설 도입



방문객을 위한 편의·휴게시설 설치
자연과 조화로운 친환경 재료 적용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공간 시설물	· 탐방객 안내시설을 충분히 제공			
	· 산책로, 탐방로 및 일부 편의·휴게시설을 조성			
	· 국가지점번호판, 도로명기초번호판 등 위치확인을 위한 재난안전시설을 설치			
	· 안전을 고려하여 급경사지에 계단 또는 로프, 안전펜스를 설치하되, 자연과 조화로운 친환경 재료를 적용			
	· 산림 내 산책로에는 악천후 등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기능의 자연친화적인 휴게시설을 도입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 및 안내표지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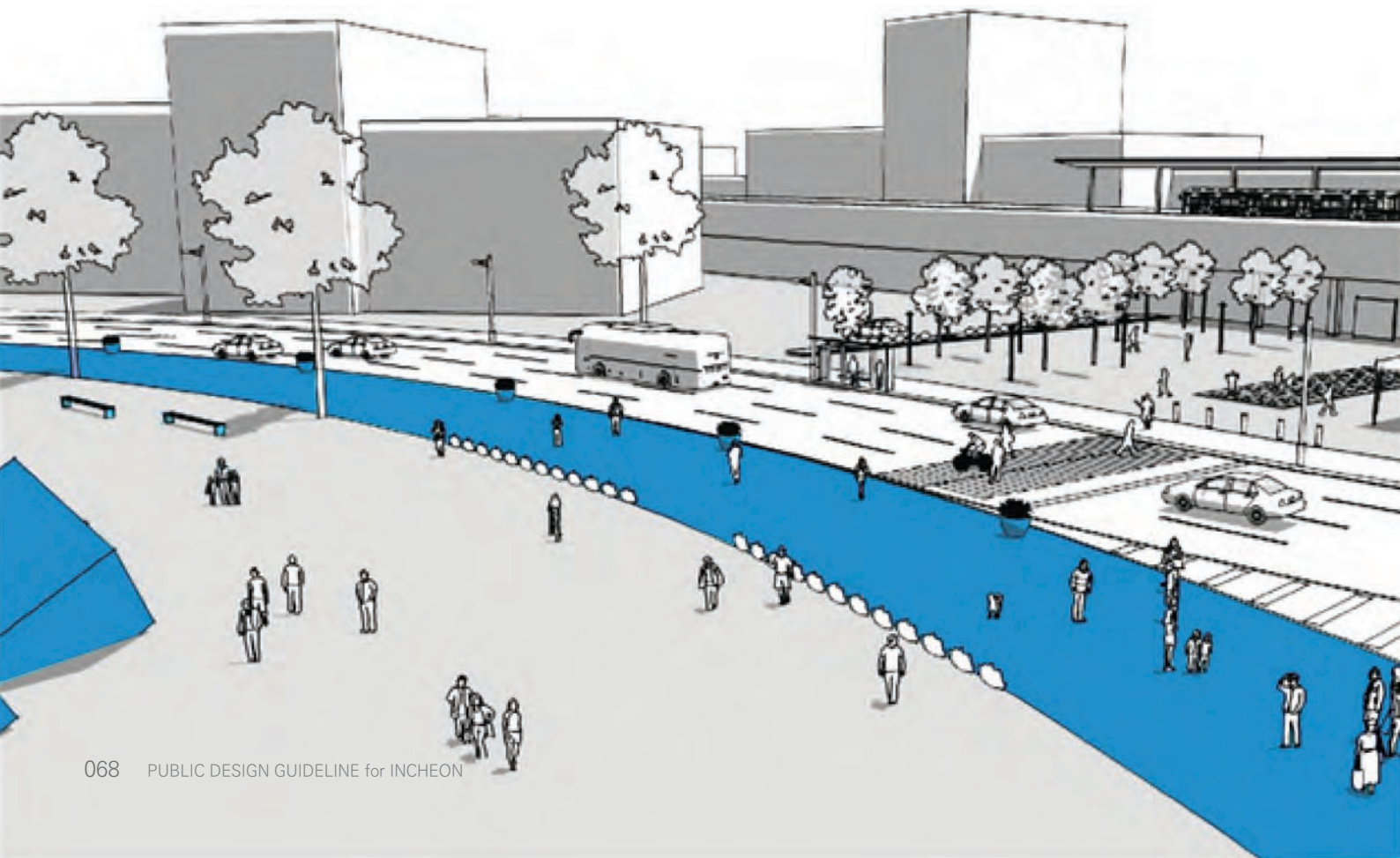
자연과 조화로운 재료를 적용하여 탐방로 조성

C

광장

중점사항

- 01 **생활안전 및 보행안전 확보하기** 보행가로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개방감있게 조성
시각적 차폐나 은폐공간이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
후미진 공간의 경우 CCTV와 조명시설을 설치
- 02 **도시조화성 및 정체성, 지속가능성 고려하기** 커뮤니티의 장소가 되도록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 수용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로운 재료, 패턴, 색채를 적용
유지관리가 용이한 내구성 있는 재료 및 형태로 제작



세부구성

- 광장은 사람들이 쉽게 머물면서 쉴 수 있도록 한 도심 속 오픈스페이스로서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인천광역시 현 광장 유형 및 기반시설 유형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반 시설 유형 등의 검토를 통해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근린·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등으로 구분한다.

- 가이드라인의 세부구성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분류코드	중분류	세부 구성	
	공통적용사항		
1.C.1	교차점광장		
1.C.2	역전광장		
1.C.3	근린·경관광장	·공간	·시설물
1.C.4	지하광장		
1.C.5	건축물부설광장		

- 광장의 편의성 및 안전성 확보 등 중점사항에 관하여 공통적용사항을 제시한다.
- 광장의 이용목적에 따라 5개 대상으로 세분화하며, 공간, 시설물의 2개 요소로 각각의 지침을 제시한다.
 - 1) 공간 : 공간을 형성하는 구조적 틀과 공간을 채우는 개별 요소에 대한 구체적 설계지침
 - 2) 시설물 : 시설물 설치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관련법규 및 문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C.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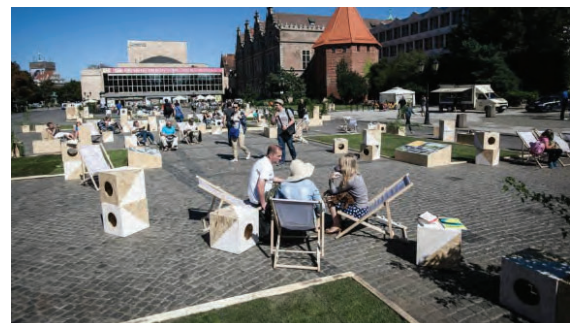
공통적용사항

공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보행가로와 광장의 진입부의 단차가 없어야 하며, 계단 이외에 보행약자를 배려한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			
· 보행가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개방감 있게 조성하며, 이용객들의 이용에 있어 안전, 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			
· 녹지와 휴게, 문화시설 등의 광장 내 모든 공간은 시각적 차폐나 은폐공간이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			
· 모든 외부공간은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하되, 후미진 공간은 CCTV와 조명시설을 설치			
· 보행공간은 순환형 구조로 계획하고 다른 공간 및 시설들과 연계 배치			
· 커뮤니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			
· 광장 내 공간의 활용도를 저하시키는 불법주차 및 판매대 등의 공간 잠식을 금지			



녹지, 휴게시설 등이 개방감 있게 조성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시설물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지역성 및 상징성을 강조하는 색채, 패턴, 장식 요소와 과도한 원색의 색채 적용을 지양			
·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인접 건축물과 조화로운 재료, 패턴, 색채를 적용			
· 보행약자, 어린이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이용이 쉬운 재료 및 형태를 적용			
· 시설물은 유지관리가 용이한 내구성 있는 재료 및 형태로 제작			
· 보도포장재는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대한 하중을 고려하여 재료를 선정하고, 보행자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재료를 적용			
· 식재는 주변 시야 확보 및 보행자의 시선연결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하고가 충분한 수종으로 계획			
· 미관을 저해하는 광장 앞 쓰레기 적치 및 야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및 매너 안내 표지판을 설치			
· 방송시설(스피커)은 광장의 각 공간에서 쉽게 방송 청취가 가능하도록 설치			
· 조명시설은 전방과 주변 사물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와 간격을 확보하고 가급적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빛이 닿는 영역은 중첩되도록 계획			
· CCTV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안내 및 신고 등을 위한 시설물을 적절하게 설치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시설물 디자인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도와 간격 확보

C. 광장

1.C.1

교차점광장

혼잡한 주요 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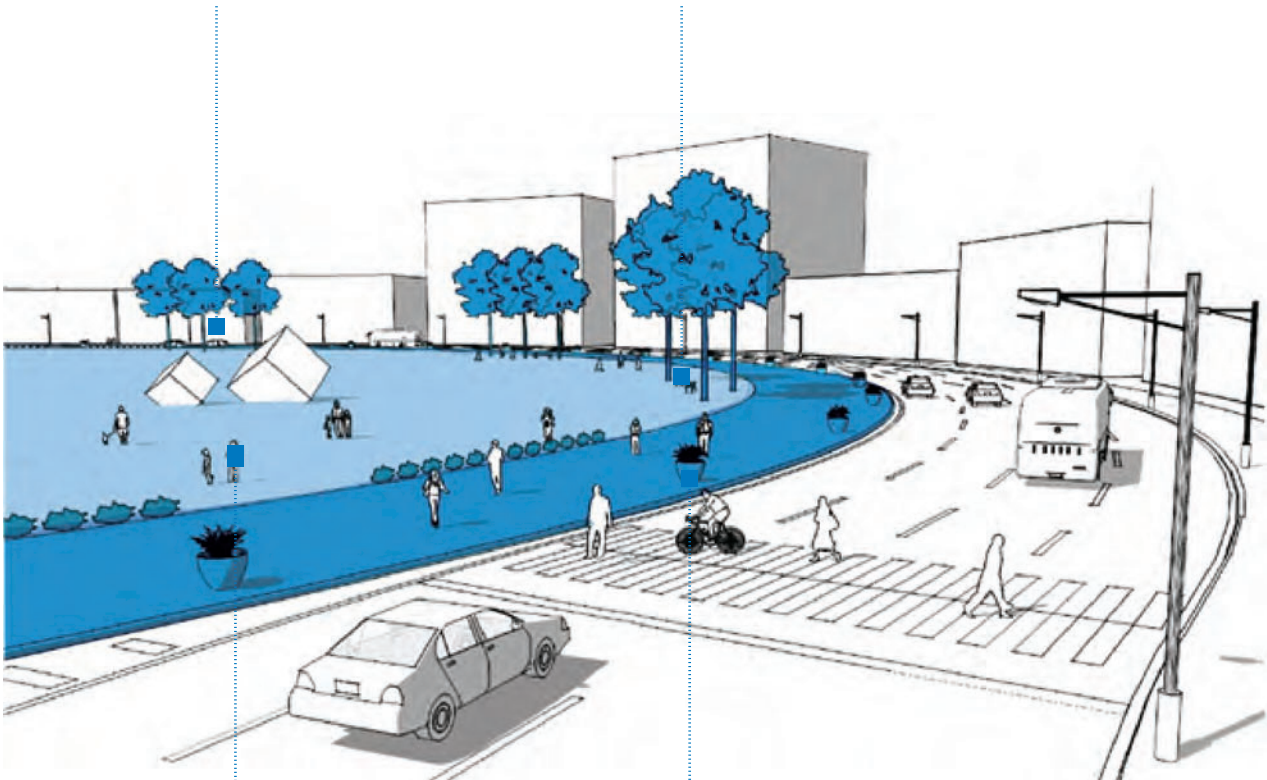
기본방향

안전한 보행동선 확보하기

디자인 원칙

장소성 부각을 위한
랜드마크 요소 도입

보도 인접구역 및 외곽부 교목 식재로 그늘 제공
이용객들의 휴게시설물 설치



보행자의 접근동선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계획



안전시설 및 플랜터 설치로
도로 인접공간의 안전성 확보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공간	·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도로와의 인접공간에 안전시설 또는 관목을 설치			
	· 장소성을 부각을 위한 랜드마크 요소 도입을 검토			
시설물	· 이용객들의 휴게기능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를 권장			
	· 야간 조명 설치 시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			
	· 보도 인접 구역이나 광장 외곽에 그늘 제공을 위한 교목을 식재하며, 식재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늘채터의 적용을 권장			



보행연결로, 가로수 둘레길의 역할을 수행



도로와의 인접공간 안전시설 설치 및 평탄한 접근동선 확보

C. 광장

1.C.2

역전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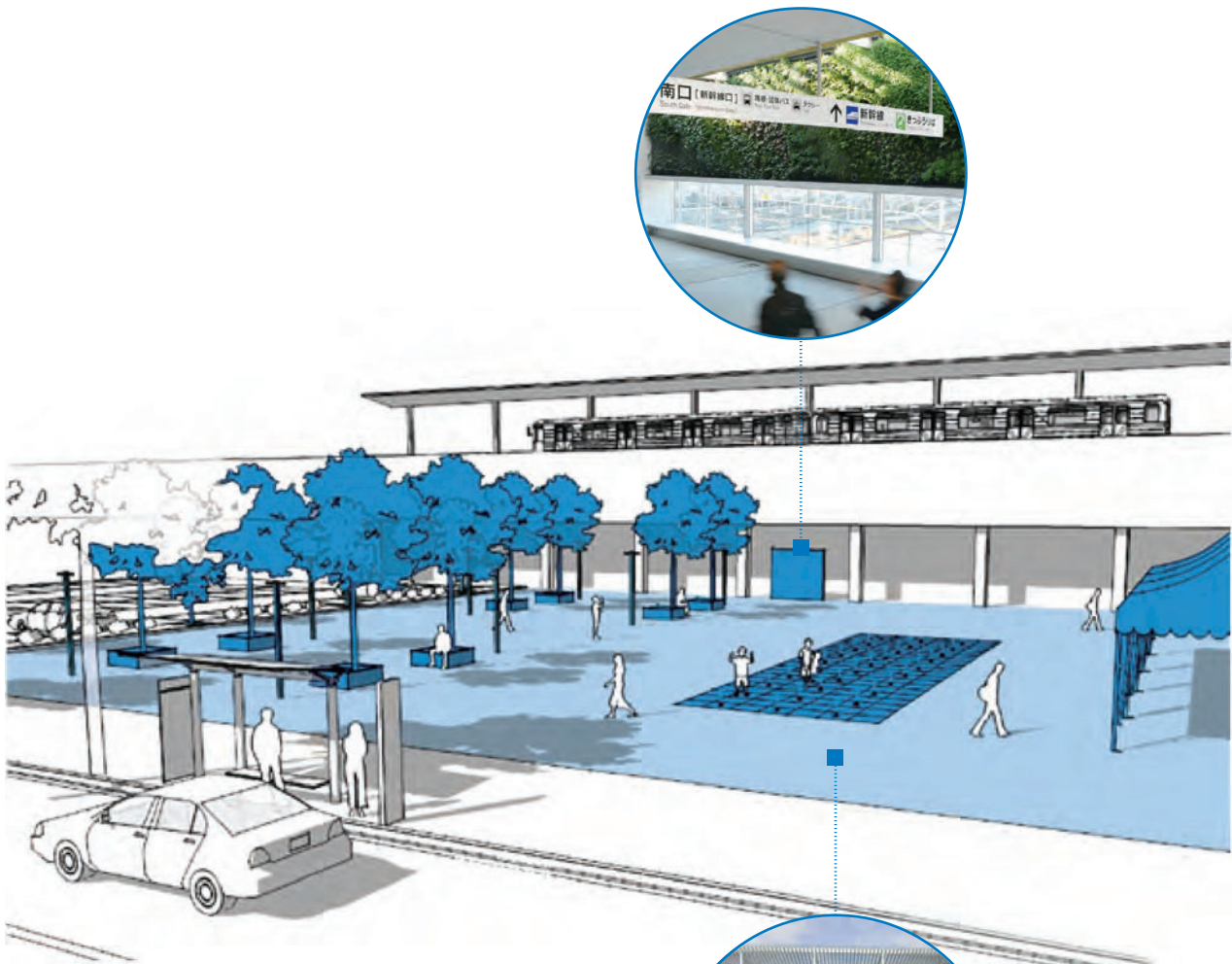
역전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철도역 앞에 조성하며, 이용자를 위한 보도·차도·택시정류장·버스정류장·휴식시설 등을 설치

기본방향

다양한 교통시설 연계 및 이용자 배려하기

디자인 원칙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
다국어 안내표지판 설치



바닥면을 활용한 지장물 최소화
주요 통행 동선 상에 고정 시설물 배치 금지
휴게 및 만남, 이벤트 등 가변형 공간 권장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및 옹골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공간	· 이용자의 휴게 및 만남,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변성을 고려한 공간으로 조성			
	·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재료 및 형태를 적용			
시설물	· 다양한 국적의 이용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표지판을 설치			
	· 대중교통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며, 주요 통행 동선상에 고정 시설물의 배치를 금지			
	· 시설물은 보행자의 동선 고려 및 가변적 공간으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되도록 광장의 경계 부분에 배치			
	· 휴게·편의, 안내를 위한 시설을 설치			



대중교통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경계부분에 시설물 배치



휴게, 이벤트 공간 등 가변적 공간 활용

C. 광장

1.C.3

근린·경관광장

주민의 집회, 사교, 오락, 휴식 공간 제공과 경관·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곳에 설치

근린광장은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

경관광장은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미가 있는 장소에 설치

기본방향

접근이 용이하고 인천만의 특색있는 공간 조성하기

디자인 원칙

놀이요소 및 휴게, 편의시설의 도입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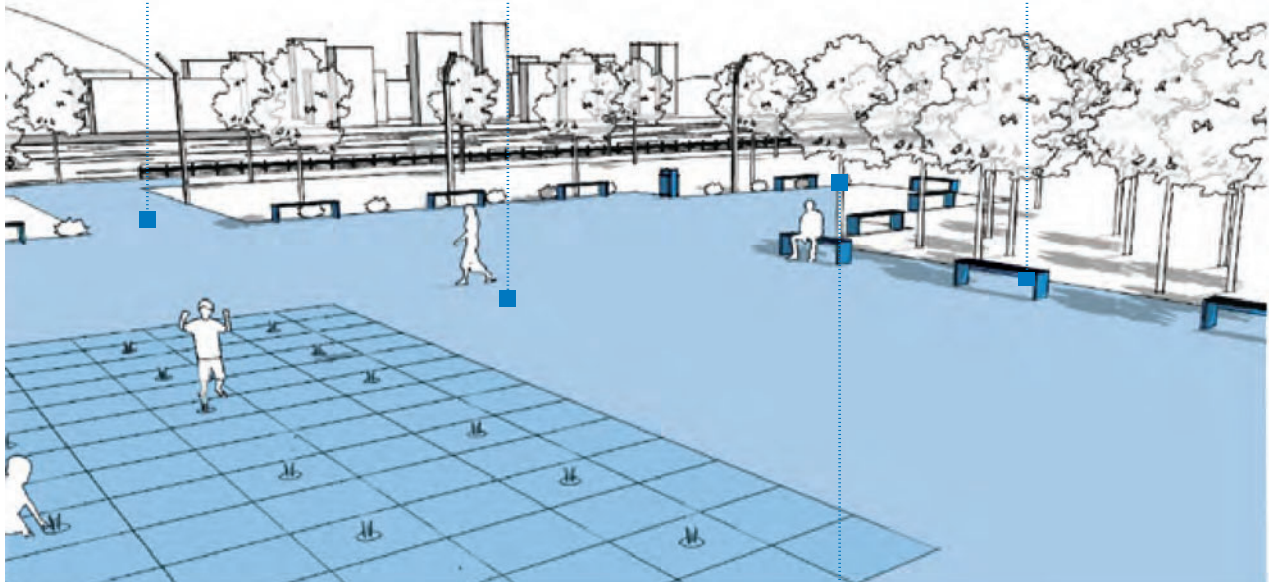
불필요한 공간 최소화

단순한 형태의 시설, 재료, 형태 적용

공간과 일체화된 휴게시설물 계획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방적으로 조성



경관 향상 및 그늘 제공을 위하여 대형목 또는 군식 권장
조망점에 시야를 가로막는 높은 수목 식재 금지
녹시율 증대를 위해 잔디 등 식재 포장 권장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공간	· 설치 장소의 이용 빈도와 밀도에 따라 적절한 공간 규모로 조성하여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			
	· 자연 경관과 주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천만의 특색 있는 풍경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			
	· 이용자가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진입이 쉽고 개방적인 열린공간으로 조성			
	· 수목의 캐노피를 통하여 그늘과 공간감을 부여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조성			
	· 사용자에게 그늘 제공을 위하여 대형목 또는 군식을 권장하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여름철 복사열 저감과 투수율 및 녹시율 증대를 위하여 잔디 등 식재 포장을 권장			
시설물	· 광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놀이 요소 및 휴게시설, 편의시설의 도입을 권장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단순한 형태의 시설, 재료, 형태를 적용			
	· 정돈된 경관을 위해 공간과 일체화된 시설물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			
	· 주요 조망을 고려하여 조망점에는 시야를 가로막는 높은 수목 식재를 금지			
	· 상징조형물 도입 시 경관을 훼손하는 과도한 형태 및 수직적 요소의 남용은 지양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개방적인 열린공간



광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놀이·휴게시설 도입

C. 광장

1.C.4

지하광장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광장

기본방향

접근이 용이한 쾌적한 환경 확보하기

디자인 원칙

높은 조도 확보를 위한 개방감 있는 형태의 천장부



공기정화를 위한 수공간 권장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설치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공간	· 이용자의 동선과 교차점,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개방감 있는 열린공간으로 조성			
	· 과도한 음지 형성을 지양하고 개방감 있는 형태의 천장부 도입으로 밝고 쾌적한 환경을 확보			
시설물	· 공기정화를 위한 벽천, 분수 등 수공간 조성을 권장			
	· 보행약자 등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			
	· 이용자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결절점에 위치표지판과 안내도를 설치하여 보행동선의 혼란을 방지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수공간, 휴게시설 등 열린공간 조성



접근로, 보도패턴, 휴게공간 등 유기적이고 통일된 형태의 디자인

C. 광장

1.C.5

건축물부설광장

건축물의 이용효과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중정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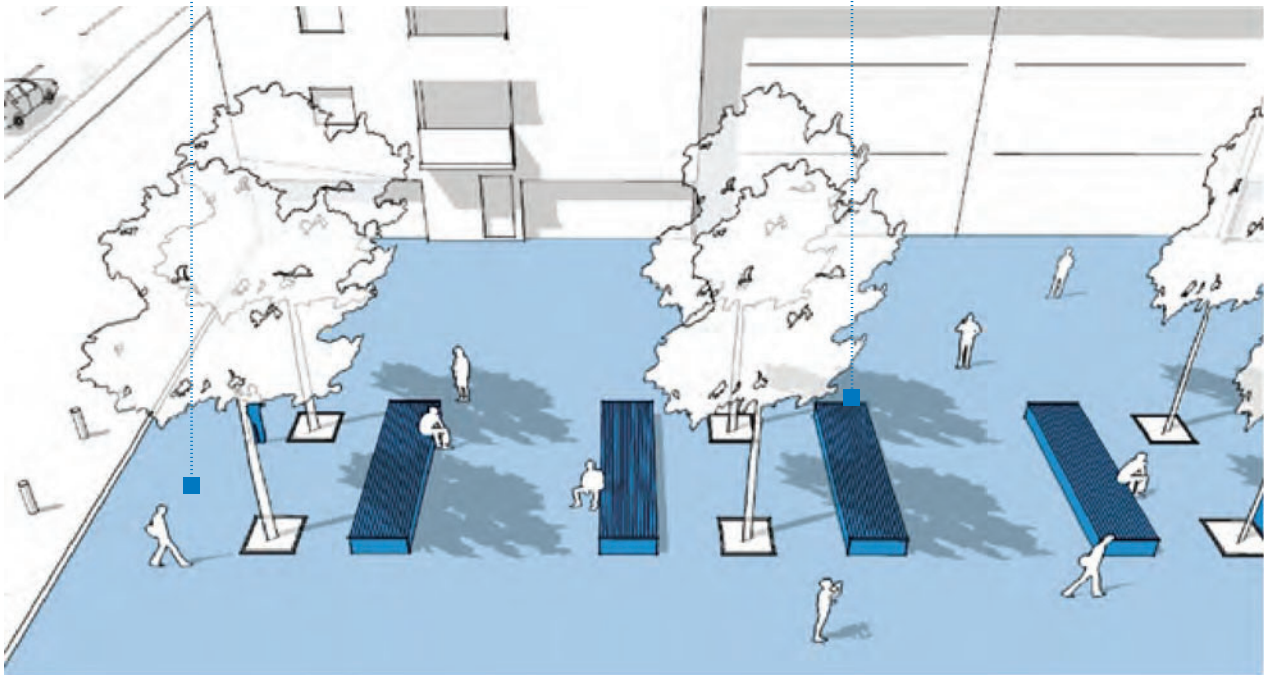
접근이 용이하고 유연하게 공간 활용하기

디자인 원칙

경사로 및 경계석의 턱을 낮춰
보행약자를 배려



이용자의 휴게 및 편의를 위한 벤치 설치
식재를 활용한 그늘쉼터 제공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공간	· 인접 건축물과의 이용 행태가 상충하지 않도록 계획			
	· 야외무대, 식재대, 선근(sunken) 공간, 계단 광장 등 지형을 잘 이용하여 입체적인 공간 조성을 권장			
	·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위해 통합적 경관을 조성			
시설물	· 이용자의 휴게 및 편의를 위해 벤치를 설치하고, 주변에 식재를 활용한 그늘쉼터를 제공			
	· 행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광장은 공간의 유연성, 가변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식 시설물을 활용			
	· 경사로 설치 및 경계석의 턱을 낮춰 보행약자 등을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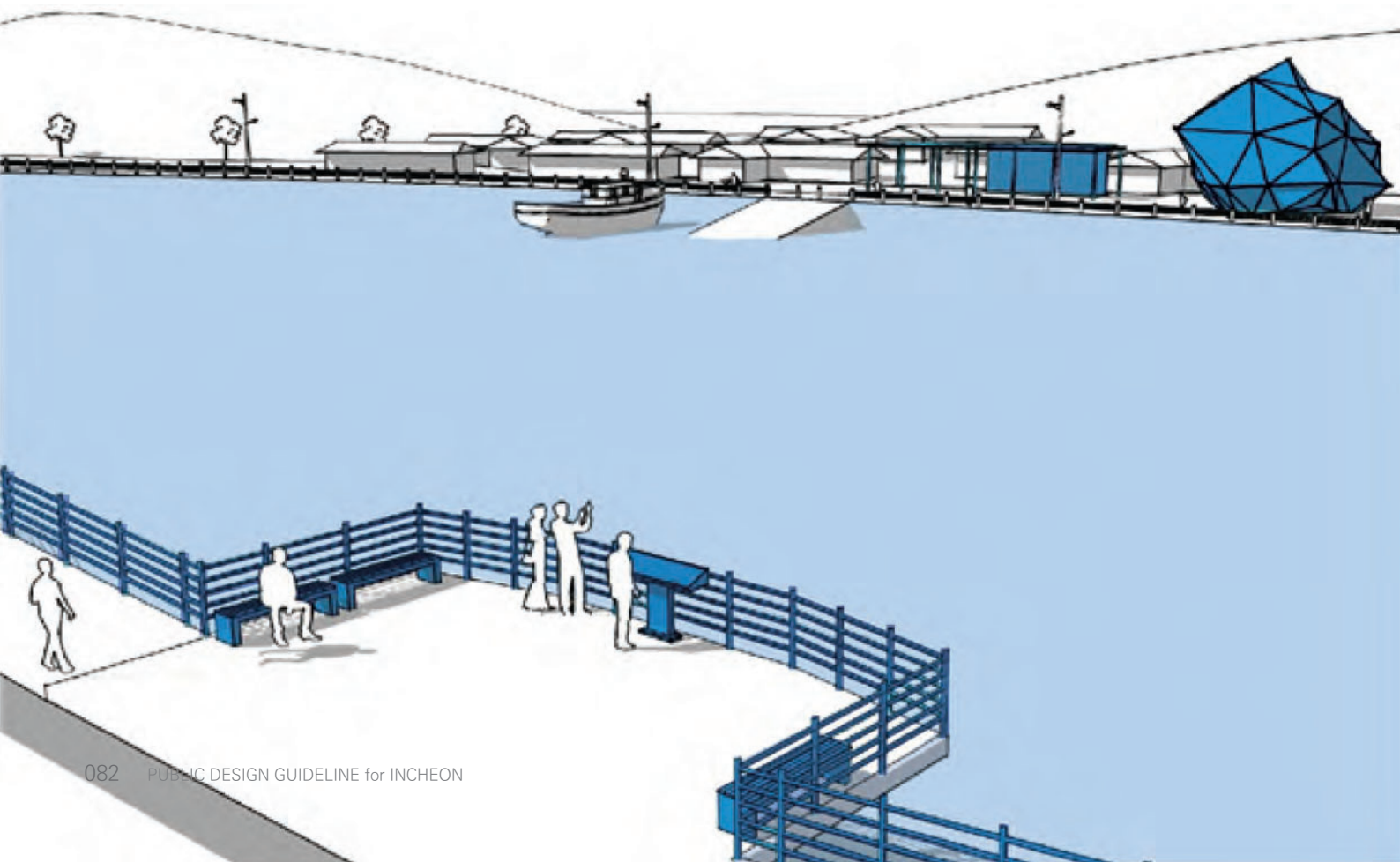
넓은 도로변에 접한 대지에 휴게 및 편의를 위한 벤치, 그늘쉼터 제공

D

수변

중점사항

- | | |
|--|--|
| <p>01 생활안전 및 보행안전 확보하기</p> | <p>수변 인접 구간 및 경사로 등에 안전시설 설치
안내와 대피를 유도하는 다목적 경보시설 도입
시각적 차폐나 은폐공간이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p> |
| <p>02 도시조화성 및 정체성, 지속가능성 고려하기</p> | <p>상징적인 경관 연출을 위한 조형요소 도입
조망을 고려한 전망시설, 휴게 및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
낮은 수평적 형태 및 최소한의 구조물로 개방적 공간 조성</p> |



세부구성

- 인천의 168개 섬의 가치 재창조, 생태적 가치 이상인 세계 5대 갯벌인 인천의 갯벌, 생태습지, 선착장, 30개 지방하천 등 인천 내 수변공간의 환경개선 및 차별화된 이미지 부여를 통한 인천의 가치 재창조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구축한다. 수변공간은 섬, 선착장, 갯벌, 생태습지, 하천 등으로 구분한다.

- 가이드라인의 세부구성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분류코드	중분류	세부 구성	
1.D.1	섬		
1.D.2	선착장		
1.D.3	갯벌	·공간	·시설물
1.D.4	생태습지		
1.D.5	하천		

- 수변의 공간적 성격에 따라 5개 대상으로 세분화하며, 공간, 시설물의 2개 요소로 각각의 지침을 제시한다.

- 1) 공간 : 공간을 형성하는 구조적 틀과 공간을 채우는 개별 요소에 대한 구체적 설계지침
- 2) 시설물 : 시설물 설치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관련법규 및 문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천법 및 시행령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D. 수변

1.D.1

섬

주위가 수역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육지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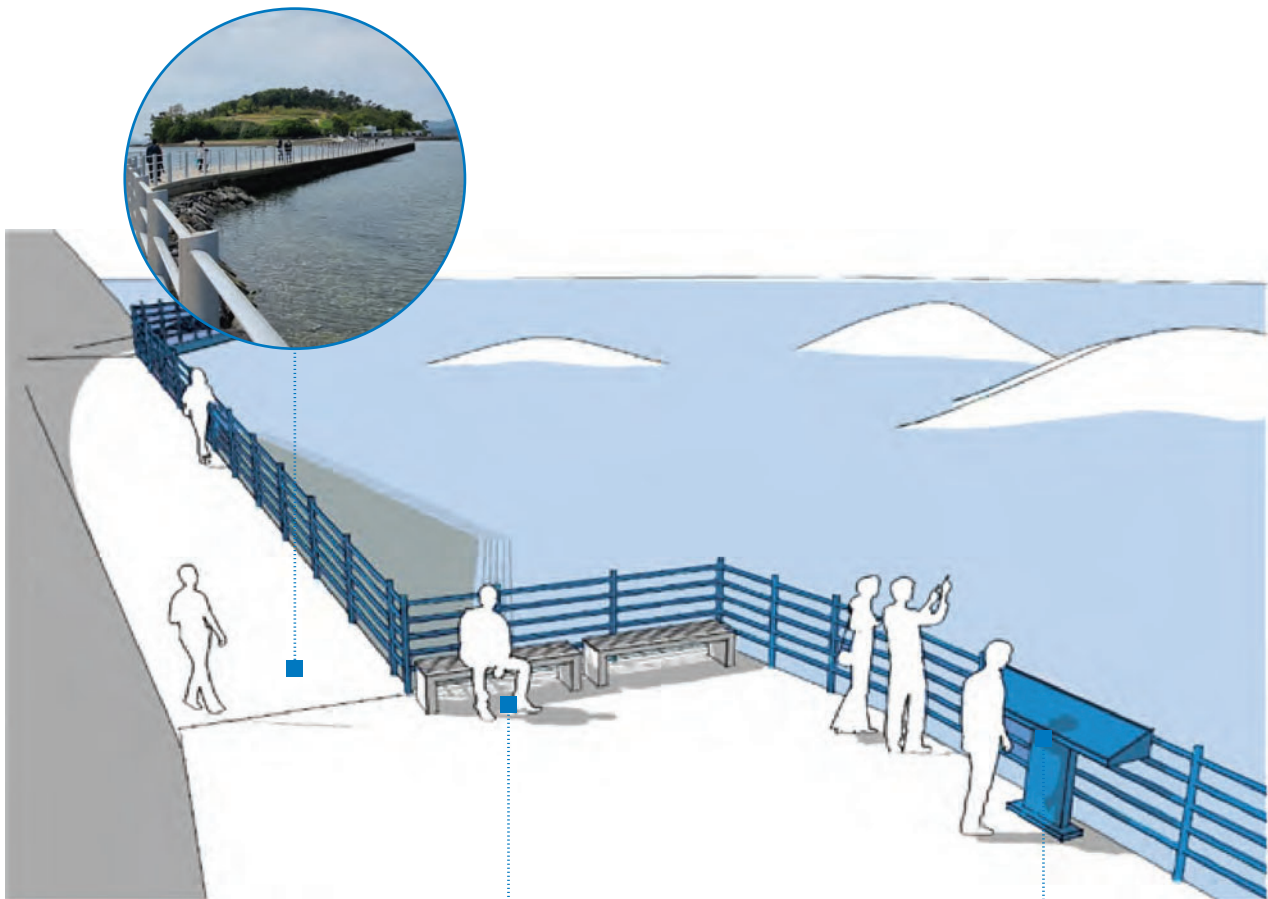
168개 인천의 섬을 보물섬으로 만들고 보다 많은 관광객과 인천시민이 인천의 섬을 찾을 수 있도록 섬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

기본방향

고유한 풍경을 만들고 활용하기

디자인 원칙

섬 조망을 고려한 전망시설 및 산책로, 둘레길 등 조성
바다 인접 구간 및 경사로 등에 안전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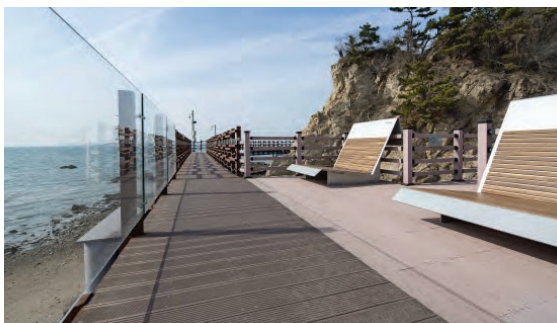
휴게 및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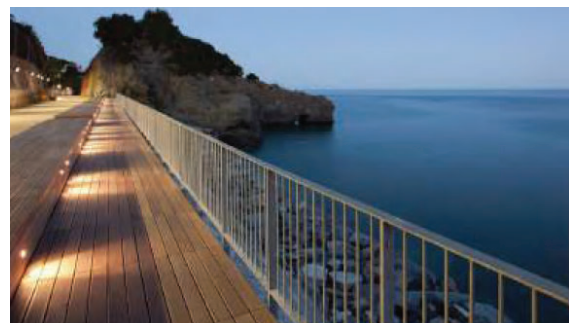
관광객의 이동 동선 및 방향성을 고려한
섬 내 주요 안내표지판 설치

- 참조**
-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공간	· 청정지역의 보존을 위해 과도한 인공적 공간의 개발은 지양하고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			
	· 섬의 특산물 및 지역적 스토리를 활용한 고유한 풍경을 조성			
	· 섬의 풍경을 느낄 수 있도록 주요 조망을 고려한 전망시설 및 산책로, 둘레길 등을 조성			
	· 이용객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접근이 쉬운 장소에 개방감 있게 조성			
	· 조망과 휴게, 편의 시설 등 섬 내 모든 공간은 시각적 차폐나 은폐공간이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			
	· 섬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가치 재창조를 위해 해당지역의 거주민과 인천의 명물·특산물·명소 등 지역 가치를 함께 개발하고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참여를 권장			
시설물	· 섬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과도한 색채 및 장식적 요소를 지양하고 조형물의 경우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색채계획을 수립하며, 인천색채 활용을 권장 ※ 조형물과 관련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및 옹골(312p)] 참고			
	· 관광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휴게 및 편의시설의 인프라를 구축			
	· 바다 인접 구간 및 경사로 등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안전을 고려			
	· 위치 확인이 용이한 재난안전시설을 설치하며, 산책로, 둘레길, 방파제, 바다 인접구간 및 경사로 등에 안전시설 설치 시 국가지점번호, 도로명기초번호 등을 표기			
	· 섬 내 주요 동선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통해 관광객의 이동 동선 및 방향성을 제공			
	· 사각지대 및 후미진 공간에는 CCTV와 조명시설을 설치			
	·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고려 및 섬의 야간 풍경을 관광 인프라로 활용 하되, 과도한 색상 및 현란한 움직임의 조명은 지양			
	· 섬 내 공·폐가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및 편의시설 등의 공간으로 재활용을 권장하며, 지역 내 아티스트 등 인적 자원을 활용한 아트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			



개방감 있는 조망공간 및 휴게기능 중심의 간결한 벤치



조망을 고려한 전망·휴게시설 및 보행안전을 고려한 야간조명 통합디자인

D. 수변

1.D.2

선착장

강이나 좁은 바다 물목에서 배가 달고 떠나고 하는 일정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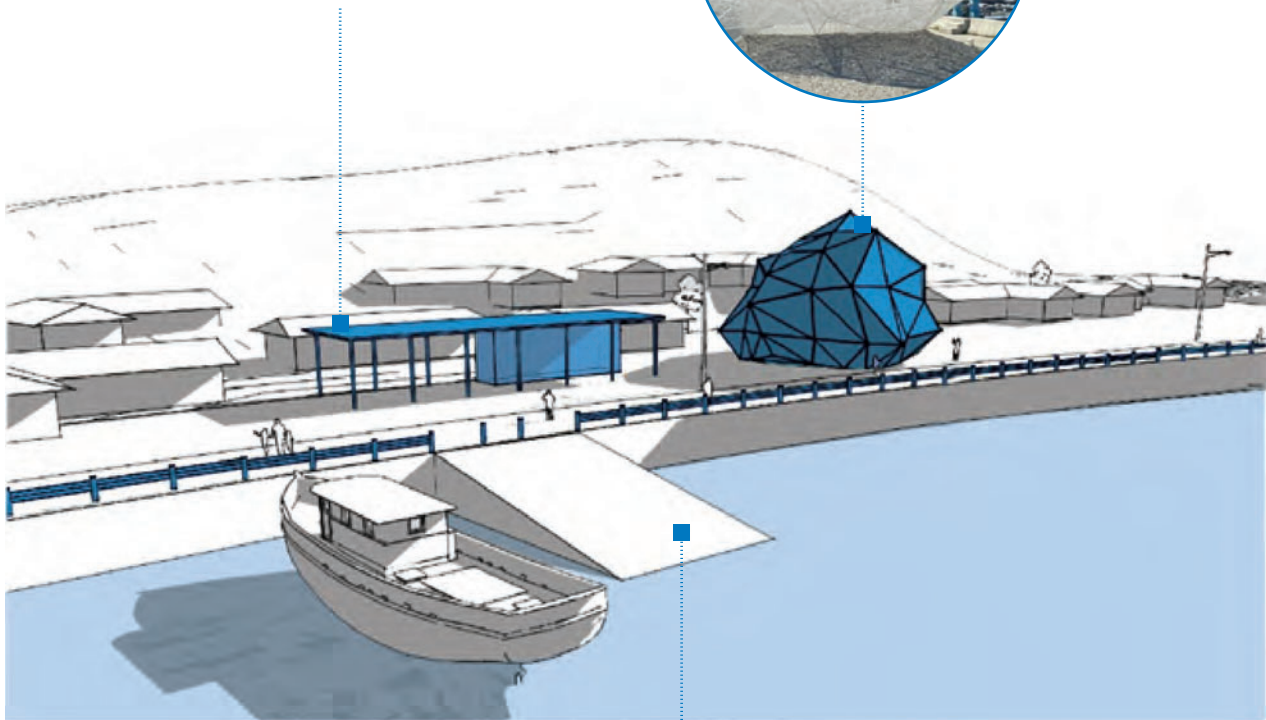
기본방향

특색있는 진입환경 연출하기

디자인 원칙

선착장의 진입부를 중심으로 상징적인 경관 연출
섬의 특색을 담은 커뮤니티형 조형물 설치 권장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색채계획 수립)

휴게 및 편의시설의 접목으로 이용객의 편의 증진
섬의 경관을 고려하여 낮은 수평적 형태의 적용 권장
최소한의 구조물로 개방적인 공간 조성



바다 인접 구간 및 경사로에 안전시설 설치

- 참조**
-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공간			
· 섬의 원경, 중경, 근경을 고려하여 선착장의 시설 및 조형요소, 건축물의 형태를 계획			
· 선박의 이용 및 선착장 이용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진출입부와 인접가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			
· 선착장을 중심으로 시각적으로 차폐되는 공간이 없도록 최소한의 구조물로 계획하여 주변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			
· 선착장의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으로 계획하며, 섬의 경관을 고려하여 낮은 수평적 형태의 적용을 권장			
· 선착장 주변에 섬의 특색을 담은 커뮤니티형 조형물의 설치를 권장하며, 휴게 및 편의시설의 접목으로 이용객의 편의 및 즐거움을 증진			
시설물			
· 섬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과도한 색채 및 장식적 요소를 지양하고 조형물의 경우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색채계획을 수립하며, 인천색채 활용을 권장 ※ 조형물과 관련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및 옹골(312p)] 참고			
· 선착장의 진입부를 중심으로 상징적인 경관연출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을 계획			
·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내표지판 및 편의시설의 설치를 권장			
· 주변 상업가로 및 여객터미널의 휴게공간을 중심으로 녹지조성 및 가로수 식재를 권장			
· 방파제는 자연석의 사용을 권장하고 슈퍼그래픽의 적용을 지양			
· 주변 상업시설의 간판 또는 색채 정비를 통해 통일성 있는 경관이 형성되도록 계획			
· 바다 인접 구간 및 경사로 등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안전을 고려			
· 사각지대 및 후미진 공간에는 CCTV와 조명시설을 설치			
·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고려 및 섬의 야간 경관을 관광 인프라로 활용하되, 과도한 색상 및 현란한 움직임의 조명은 지양			
· 바닥조명 계획을 통한 경관 연출 및 지주 설치의 최소화를 권장			



최소한의 구조물로 주변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디자인



전망 및 휴게공간을 접목하여 개방적인 공간 조성

D. 수변

1.D.3

갯벌

일반적으로 조류(潮流)로 운반되는 모래나 점토의 미세입자가 파도가 잔잔한 해역에 오랫동안 쌓여 생기는 평탄한 지형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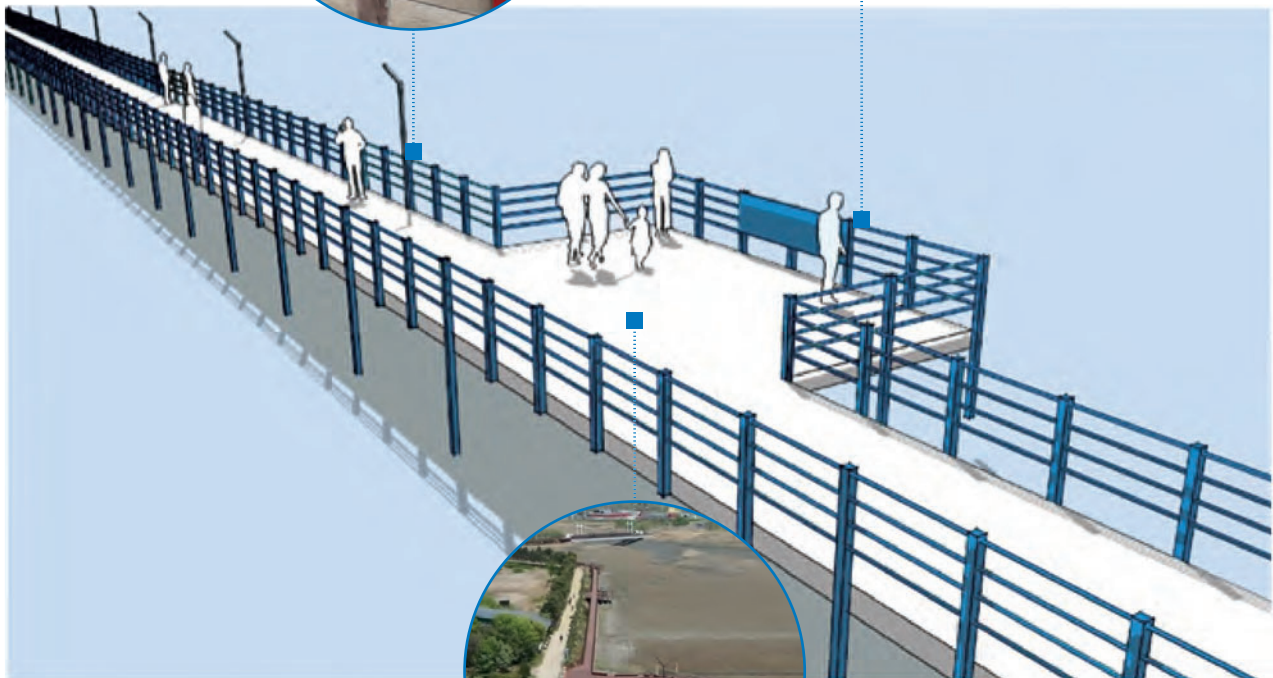
자연을 보호·관리하며, 다양한 활동 연계하기

디자인 원칙

과도한 색채 및 장식적 요소, 고광택의 반사소재의 적용 지양
안전펜스, 경고판,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안내와 대피를 유도하는 다목적 경보시설의 도입



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갯벌 보호를 위한 안내시설물 설치



방문객을 위한 탐방로, 전망대 조성
환경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와 공간 고려
낮은 수평적 형태의 적용 권장

- 참조**
-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공간	· 동식물 및 자연경관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며, 자연상태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		
	· 관광자원으로써 자원적 가치를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생태 관광 상품으로 활용		
	· 시각적으로 차폐되는 공간이 없도록 최소한의 구조물로 계획하여 주변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		
	· 갯벌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방문객을 위한 탐방로, 전망대 조성 시 환경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와 공간을 고려		
	· 갯벌의 경관을 고려하여 갯벌 내 시설 및 건축물은 낮은 수평적 형태를 적용		
	· 갯벌 체험·방문객의 접근이 쉽도록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		
시설물	· 갯벌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저채도 색상 및 친환경적 재료의 적용을 권장하며, 과도한 장식, 고광택 반사소재의 적용을 지양		
	· 인공적인 시설물 설치 최소화하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		
	· 관찰시설의 경우 조류의 서식에 방해를 주지 않는 거리에 시설을 설치하며,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색채와 재료를 적용		
	· 갯벌 체험이 가능한 경우 자연경관이나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체험객들이 머물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을 마련		
	·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내표지판 및 편의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며, 갯벌 보호 등을 위한 안내판을 설치		
	· 보호구역과 생물권보전지역은 이정표가 잘 구비되어야 하며, 관광객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정보안내시설의 설치를 권장		
	· 안전펜스, 경고판,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를 권장		
	· 해안지역 너울성 파도와 밀물 시 갯벌 체험·이용객에 대한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해 안내와 대피를 유도하는 다목적 경보시설을 도입		
	· 야간 및 짙은 안개를 대비하여 안전조명을 설치		



인공적인 시설물을 최소화하여 조성한 탐방로

D. 수변

1.D.4

생태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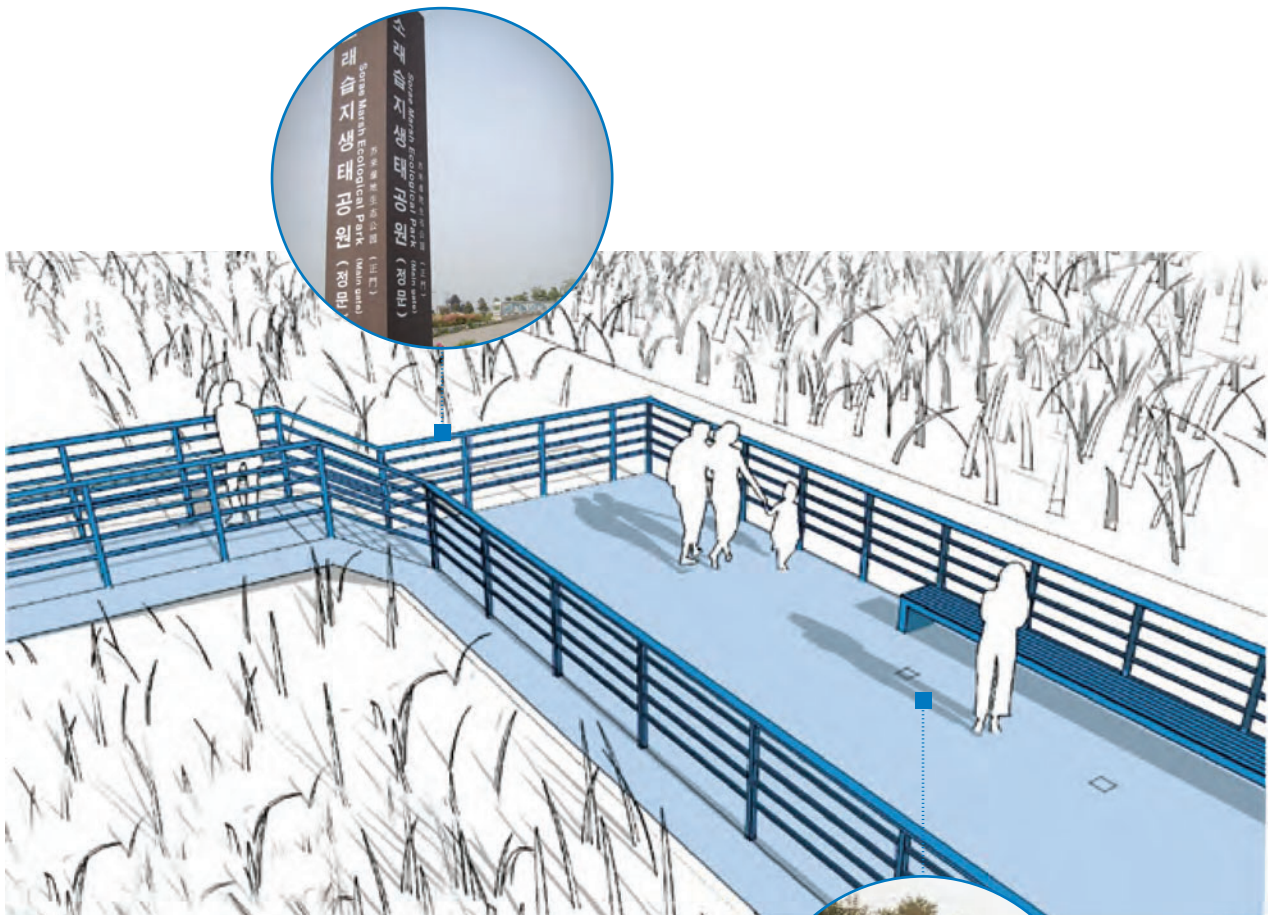
식물과 미생물에게 다양한 서식환경을 제공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인간에게는 환경적·기후적 혜택과 더불어 여가 공간 제공과 이와 연계된 심미적 안정 기능 제공

기본방향

자연경관을 보존하며, 다양한 활동 연계하기

디자인 원칙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시설물 설치
과도한 색채 및 장식적 요소, 고광택의 반사소재의 적용 지양
안전펜스, 경고판,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 설치 권장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
습지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정 위치 및 높이 등의 검토 후 설치

- 참조**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공간	· 녹지공간을 충분히 조성하고 공공에게 개방된 쾌적한 수변 오픈스페이스를 조성		
	· 자연경관자원의 보존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친환경적인 경관을 조성		
	· 지역 특색을 살린 공간 조성 및 주변 녹지와 연계한 생태학습 동선으로 살아 숨 쉬는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을 마련		
	· 습지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산책로와 생태 관찰대, 곤충서식처 등을 함께 마련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		
	· 수로 외부공간에는 공원 또는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		
	· 데크 조성 시, 주요 조망점에서 과다 노출되어 습지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정 위치 및 높이 등을 검토하여 설치		
	· 개방형 데크 설치 시, 방문객에 의해 철새 등의 서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탐조회랑(자연재료를 이용한 차폐형 시설)의 설치를 함께 고려		
시설물	· 자연경관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하며, 하구 및 수변에 조성되는 인공 시설물 규제를 통해 조망 경관을 보호		
	· 조성되는 시설물의 색채, 디자인 등은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시설물 설치 및 자연재료 적용		
	· 생태습지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과도한 색채 및 장식적 요소, 고광택의 반사소재의 적용을 지양		
	· 데크 하부 및 시설물 설치 시 자연 배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 방문객의 보행 동선을 고려한 안내시설물의 설치를 권장		
	·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경고판,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를 권장		
	·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관람이 가능토록 하며, 과도한 색상 및 화려한 움직임의 조명은 지양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조명연출을 권장		



습지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행공간 및 자연재료 적용



안전을 고려한 안전시설물 설치

D. 수변

1.D.5

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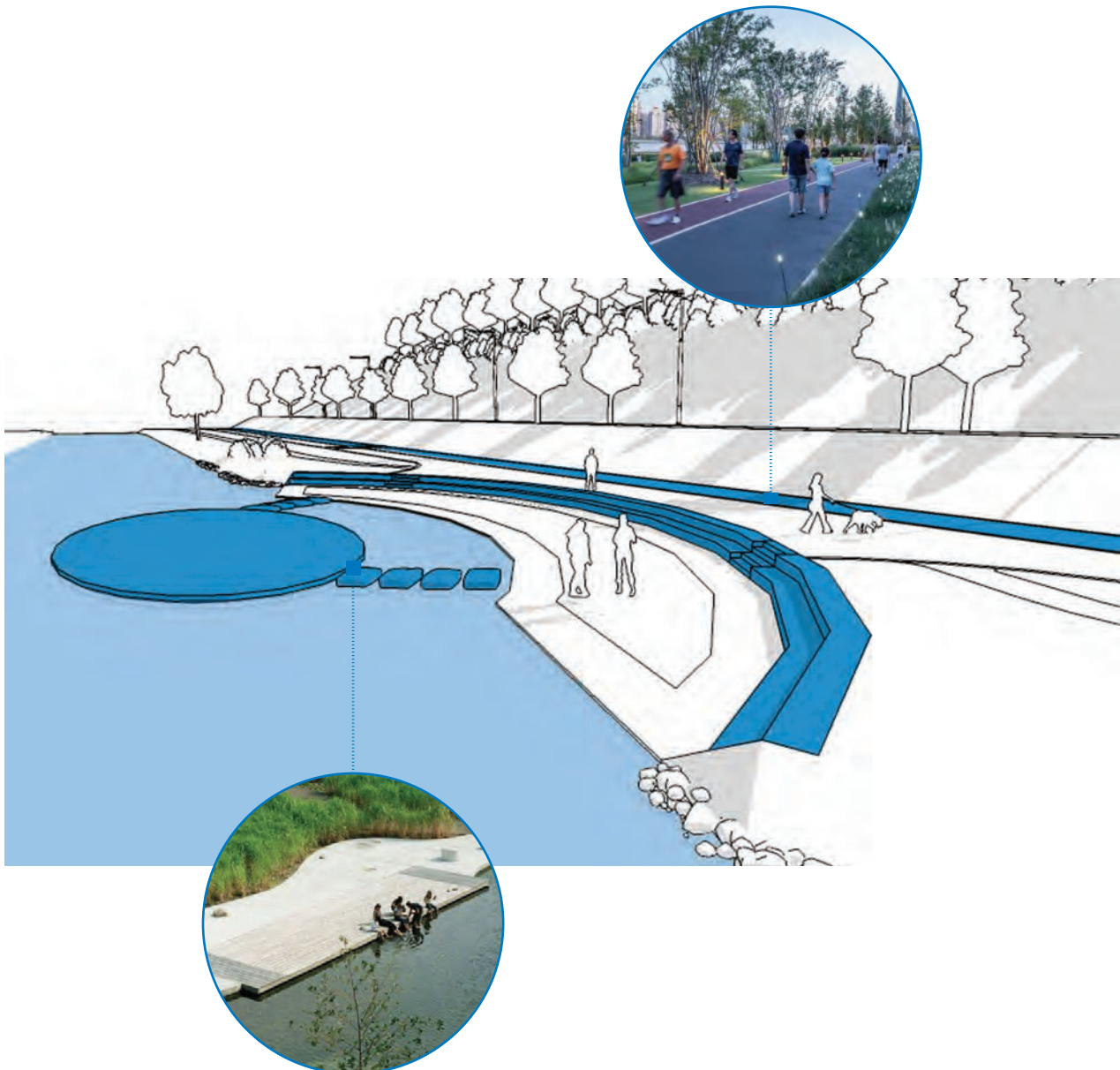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소하천정비법]을 적용하는 소하천으로 분류

기본방향

자연환경 보존과 더불어 안전한 친수공간 조성하기

디자인 원칙

보존·생태구역과 이용·친수구역을 나누어 계획
1.5m 이상 산책로를 확보하고
친수공간의 산책로는 수풀 또는 하천으로부터 이격하여 배치



물과 접하는 저수호안은 친수공간으로 계획
제방 쪽 일부를 성토하여 문화·공연·예술 등의 프로그램 운영공간으로 활용
집중호우, 심야시간 등 특정 시간대 이용을 제한하며, 주의·경고안내판 설치

- 참조**
- 하천법 및 시행령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공간	· 보존·생태구역과 이용·친수구역을 나누어 서식처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친수성을 높일 것을 권장하며, 평상 시 물과 접하는 저수호안은 친수형 공간으로 계획 유도		
	· 제방 쪽 일부를 성토하여 홍수 시에도 침수되지 않는 공간을 확보하고, 문화·공연·예술 등의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		
	· 시야 확보를 위해 인공적인 옹벽 조성을 지양하며, 키 낮은 관목 및 지하고 2.1m 이상의 교목을 식재		
	· 홍수위를 고려하여 서식환경에 적합한 식물 재질과 식재 방법의 도입을 권장		
	· 산책로는 1.5m 이상의 충분한 폭을 확보하고 지형 상 산책로에 단차가 발생할 경우, 계단과 병행한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		
	· 친수공간의 산책로는 수풀 또는 하천으로부터 이격하여 배치		
	· 자전거도로 설치 시 보행안전을 위해 보행로와 분리하며, 녹지대를 통한 분리 권장		
시설물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시설물을 통합 설치하며, 자연재료 및 재료고유색 적용을 권장		
	· 침수 등을 고려하여 견고하고 청소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 사용		
	· 빈번하게 침수되는 구역의 시설물 설치 최소화하고, 홍수를 대비하여 이동식으로 설치		
	· 필요시 집중호우, 심야시간 등 특정 시간대 이용을 제한하며, 이용주의·경고안내판을 설치		
	· 산책로의 위치확인이 용이하도록 코스별 위치정보안내를 제공하며, 주요 지점별로 자연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을 배치		
	· 조명은 동식물의 피해 및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산책로, 계단 등 적정조도를 확보한 유도등과 보행등을 설치하며, 하천으로의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을 계획		
	· 수상사고 및 긴급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안전구급장치, CCTV, 비상벨, 위치 안내도 등의 방법·안전시설물을 통합 배치 이 경우, 야간에도 긴급 안전시설물의 위치 파악이 용이하도록 조명시설을 결합하거나 주변에 조명시설물을 설치할 것을 권장		
	· 전기관련 설비의 노출 및 과도한 그래픽의 벽화 등 설치 지양		



안전을 고려한 안전시설물 및 이용주의·경고 안내판 설치

Part 2

공공시설물

Public Facilities

공통			100
A. 도로시설물	2.A.1	버스·택시 승차대	106
	2.A.2	자전거보관대	110
	2.A.3	통합지주, 신호등주	112
	2.A.4	가로등	114
	2.A.5	보안등	116
	2.A.6	보호펜스	118
	2.A.7	볼라드	122
	2.A.8	보도·점자블록	124
	2.A.9	지하철·지하보도 출입구	128
	2.A.10	환기구(흡·배기구)	132
	2.A.11	보도육교	134
	2.A.12	교량	136
	2.A.13	고가차도	138
	2.A.14	입체교차로	140
	2.A.15	지하(차/보)도	142
	2.A.16	터널	146
	2.A.17	생태통로	148
	2.A.18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150
	2.A.19	석축, 옹벽	152
	2.A.20	방음벽	154
B. 편의시설물	2.B.1	벤치	158
	2.B.2	파고라	162
	2.B.3	휴지통	166
	2.B.4	음수대	168
	2.B.5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170
	2.B.6	관광안내소	172
	2.B.7	공중(간이)화장실	176
	2.B.8	그늘쉼터, 횡단보도쉼터	180
C. 녹지시설물	2.C.1	가로화분대	184
	2.C.2	가로수(수목)보호덮개	186
	2.C.3	분수대(벽천)	188
D. 공급시설물	2.D.1	배수구덮개(트렌치)	192
	2.D.2	맨홀	194
	2.D.3	배전함	196
	2.D.4	신호등·가로등 제어함	198
	2.D.5	방재시설(제설함, 소화전)	200
	2.D.6	전신주	202
	2.D.7	부속시설물, 기타	204
E. 범죄예방시설물	2.F.1	방범카메라 CCTV(지주), 비상벨	208
	2.F.2	틈새공간 안전장치, 공·폐가 잠금장치	210

Part 2

공공시설물

기본방향

-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의 유형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부합하는 방향성과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 방향



적용대상

-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에 따라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공공디자인진흥법 대상,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 인천광역시의 공공시설물은 인천도시디자인의 5대 전략을 반영하여 도로시설물, 편의시설물, 녹지시설물, 공급시설물, 범죄예방시설물의 총 5가지 항목이다.

구분	대분류	분류코드	중분류	비고
공공시설물	A. 도로시설물	2.A.1	버스·택시 승차대	심의대상
		2.A.2	자전거보관대	심의대상
		2.A.3	통합지주, 신호등주	심의대상
		2.A.4	가로등	심의대상
		2.A.5	보안등	
		2.A.6	보호펜스	심의대상
		2.A.7	볼라드	심의대상
		2.A.8	보도·점자블록	
		2.A.9	지하철·지하보도 출입구	심의대상
		2.A.10	환기구(흡·배기구)	심의대상
		2.A.11	보도육교	심의대상
		2.A.12	교량	심의대상
		2.A.13	고가차도	
		2.A.14	입체교차로	
		2.A.15	지하(차/보)도	
		2.A.16	터널	
		2.A.17	생태통로	
		2.A.18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2.A.19	석축, 옹벽	
		2.A.20	방음벽	심의대상
	B. 편의시설물	2.B.1	벤치	심의대상
		2.B.2	파고라	심의대상
		2.B.3	휴지통	심의대상
		2.B.4	음수대	심의대상
		2.B.5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심의대상
		2.B.6	관광안내소	심의대상
		2.B.7	공중(간이)화장실	심의대상
		2.B.8	그늘쉼터, 횡단보도쉼터	

적용대상

구분	대분류	분류코드	중분류	비고
공공시설물	C. 녹지시설물	2.C.1	가로화분대	심의대상
		2.C.2	가로수(수목)보호덮개	심의대상
		2.C.3	분수대(벽천)	심의대상
	D. 공급시설물	2.D.1	배수구덮개(트렌치)	
		2.D.2	맨홀	심의대상
		2.D.3	배전함	심의대상
		2.D.4	신호등·가로등 제어함	심의대상
		2.D.5	방재시설(제설함, 소화전)	심의대상
		2.D.6	전신주	심의대상
		2.D.7	부속시설물, 기타	
	E. 범죄예방 시설물	2.E.1	방범카메라 CCTV(지주), 비상벨	
		2.E.2	틈새공간 안전장치, 공·폐가 잠금 장치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규정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대상을 별도 명시한다.

표준디자인 및 인증제품 규정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세부 적용 및 시행을 위하여 표준디자인 및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디자인 및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공시설물별 해당 대상은 다음과 같다.

대분류	분류코드	중분류	표준디자인	인증제품
A. 도로시설물	2.A.1	심의 버스·택시 승차대	●	
	2.A.2	심의 자전거보관대	● 자전거거치대	●
	2.A.3	심의 통합지주, 신호등주		● 통합지주
	2.A.4	심의 가로등		●
	2.A.5	보안등		●
	2.A.6	심의 보호펜스		● 보행자/자전거 도로 펜스
	2.A.7	심의 볼라드		●
	2.A.8	보도·점자블록		●
	2.A.9	심의 지하철·지하보도 출입구		
	2.A.10	심의 환기구(흡·배기구)		
	2.A.11	심의 보도육교		
	2.A.12	심의 교량		
	2.A.13	고가차도		
	2.A.14	입체교차로		
	2.A.15	지하(차/보)도		
	2.A.16	터널		
	2.A.17	생태통로		
	2.A.18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 중앙분리대/교량용펜스
	2.A.19	석축, 옹벽		
	2.A.20	심의 방음벽		●
B. 편의시설물	2.B.1	심의 벤치		● 벤치/스마트 벤치
	2.B.2	심의 파고라		●
	2.B.3	심의 휴지통		●
	2.B.4	심의 음수대		
	2.B.5	심의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	
	2.B.6	심의 관광안내소		
	2.B.7	심의 공중(간이)화장실		
	2.B.8	그늘쉼터, 횡단보도쉼터	● 그늘막	● 스마트 횡단보도 그늘막
C. 녹지시설물	2.C.1	심의 가로화분대		●
	2.C.2	심의 가로수(수목)보호덮개		●
	2.C.3	심의 분수대(벽천)		
D. 공급시설물	2.D.1	배수구덮개(트렌치)		
	2.D.2	심의 맨홀	●	●
	2.D.3	심의 배전함		
	2.D.4	심의 신호등·가로등 제어함		
	2.D.5	심의 방재시설(제설함, 소화전)	● 소화기·응급시설물 보관함	
	2.D.6	심의 전신주		
	2.D.7	부속시설물, 기타		
E. 범죄예방 시설물	2.E.1	방범카메라 CCTV(지주), 비상벨		
	2.E.2	틈새공간 안전장치, 공·폐가 잠금장치		



공통중점사항

① 모두를 위한 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 적용하기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무장애 보행공간 조성	· 무장애 거리 조성을 위해 노약자, 휠체어사용자, 유모차를 이용하는 영유아동반자, 보행 약자 등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배치			
	· 시설물은 보행안전구역 외 시설물 설치구역에 설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주어서는 안되며, 시각장애인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일정 거리를 두어 설치			
	· 버스승차대 등은 위험지대로부터 최소공간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휠체어 등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			
	· 모든 시설물은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도 이용하기 편하게 설치하며,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넓이의 공간을 확보			
	· 지면의 기초판 및 앵커 볼트 등이 보행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노출 금지			
사용성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 다양한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물의 마감재 및 형태, 배치를 고려			
	· 내구성이 약하고 유지관리 및 색채 변질의 우려가 있는 재료의 사용을 지양			
	· 우천 시나 적설 시 상황을 고려한 기물기 적용 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 시설물의 기능성 및 인지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군·구의 상징기호 또는 장식요소의 부착을 지양하되, 부득이하게 적용 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최소화			
	· 횡단보도 신호등은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해 깜빡이와 신호 음성 안내 장치를 마련하고, 안내 음성은 70dB±5dB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되 설치지점의 주변소음 등 도로환경을 고려하여 크기를 증감하여 설치			
	· 장애인 및 노약자가 자주 이용하는 횡단보도는 파란 불이 켜져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 노약자의 안전을 위해 신호등 시간 및 시각·청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호등을 설치			
	· 야간에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각적 혼란을 야기하는 다양한 색상의 조명연출, 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과도한 경관조명의 사용을 금지			
	· 시설물 표면에 먼지 제거가 용이하고 불법광고물 등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적용			
안전한 공간 조성	· 위급상황 시 노약자, 여성, 어린이 등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크기 및 설치위치를 고려하며, 이용방법에 대한 정보안내 전달을 통해 이용편의성을 도모			
	· 대중교통시설, 편의시설 등은 자연감시가 될 수 있는 개방적 장소에 위치			
	· 시각적 차폐나 은폐공간이 형성되지 않도록 다른 공간과 연계하여 배치 계획 수립			

- 참조**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경찰청)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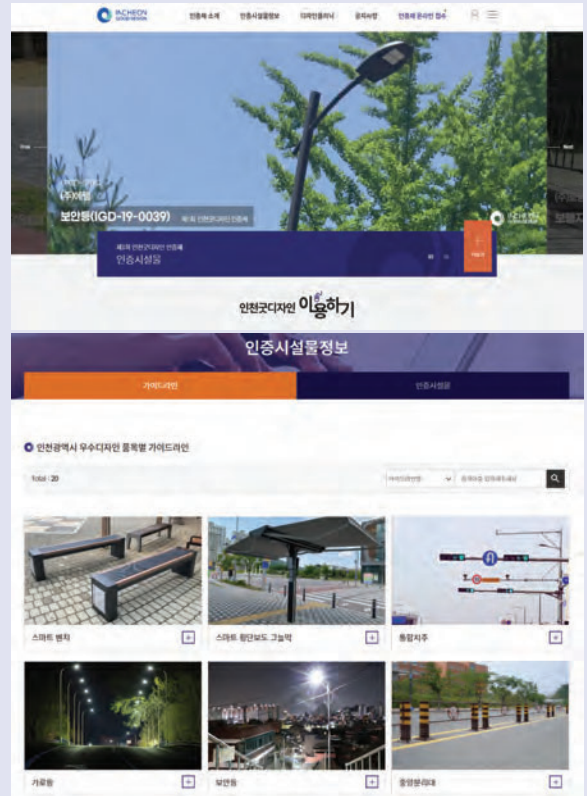
② 인천광역시 정체성 강화를 위한 표준디자인 적용하기

일관된 표준디자인 적용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우선 적용			
·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이 있을 경우, 적극 사용			
· 유관기관의 시설물인 경우, 해당 기관의 표준디자인을 준수			
· 인천광역시 정책 시설물에 한해서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맞춰 디자인 및 제작, 설치			
· 표준디자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 협의를 통해 적용			
· 색채는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http://www.igd.incheon.kr>



공통중점사항

③ 정돈된 도시이미지 전달을 위해 일관된 색채 적용하기

일관된 인천색채 적용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천상징색, 인천환경대표색, 인천권역색, 인천공공시설물색 등 일관된 기준의 색채디자인 적용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색채는 인천공공시설물색을 적용하며, 시설물의 형태, 규격, 높이 등을 고려하여 배색 면적을 적용(기능에 따라 강조색은 10% 이내 적용)
- 과도한 색채 사용을 억제하고 마감재 고유의 색상 또는 무채색 사용을 권장
- 유채색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인천대표색 중 적합한 색상을 선정하여 적용
- 범죄예방시설물 등 안전이 요구되는 시설물은 기능색 중 안전색을 적용하되, 소화전과 같이 법규 또는 규칙으로 규정된 시설물의 경우 KS 안전색 규정을 준수
- 단일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인천 공공시설물색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고가차도, 터널, 옹벽 등의 도로시설물 및 보도블록 등은 권역색을 적용
- 시각매체의 정보표기색은 인지성을 고려하여 바탕면의 주조색과 명도대비를 이루는 색채를 강조색으로 사용하며, 금지·주의·경고 등의 안전정보는 안전색을 강조색으로 사용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Base Color 1	ICC-공공1	강화갯벌색 0.9G 2.8/0.7 C66 M57 Y56 K33 R80 G82 B82	· 인천 환경대표색을 활용한 1번째 베이스 색상 · 인천시 시설물 대표 색상으로 공통적용 사용
Base Color 2	ICC-공공2	기능색 1 - Gray 8.2G 4.7/0.9 C4 M0 Y1 K60 R122 G128 B130	· 공공시설물 2번째 베이스 색상 · 강화갯벌색을 적용하기엔 어두운 경우 기능색1을 활용
Sub Color 1	ICC-공공3	철단미래색 8.0B 7.8/0.8 C21 M14 Y13 K0 R200 G205 B209	· 베이스 색상과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색상 · 좁은 면적에 포인트 색상 또는 일반 표기요소로 활용
Sub Color 2	ICC-공공4	기능색 2 - White C0 M0 Y0 K0 R255 G255 B255	· 포인트 색상 또는 일반 표기요소로 활용 · 주변의 색상중독 및 경관을 고려하여야 할 경우 white색상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함
Accent Color 1	ICC-공공5	인천바다색 7.5PB 1.5/9.5 C100 M100 Y25 K11 R45 G43 B111	· 인천 환경대표색을 활용한 포인트색 · 인천시 시설물의 대표 색상으로 공통 적용
Accent Color 2	ICC-공공6	정서전적망색 0.4YR 5.1/11.6 C13 M73 Y83 K2 R211 G100 B63	· 시각지형에는 인천바다색을, 특화형에는 정서전적망색을 포인트로 사용
Accent Color 3	ICC-공공7	기능색 3 - Yellow (안전색) 4.2Y 8.5/11.0 C0 M15 Y85 K0 R255 G213 B64	· 안전과 관련된 교통시설물, 정보매체, 주의를 요하는 시설물 등의 강조색으로 사용

인천 공공시설물색의 적용

배색적용 세부항목		
1-2배색	통합지주/ 신호등/ 가로등/ 보행유도 등, 안전펜스, 폴라드, 가로화분대/ 가로수보호덮개/ 분수대/ 전신주/ 배수구덮개, 변치, 휴지통, 맨홀, 보도블록, 환기구(흡배기구), 분·배전함/ 가로등제어함, 방화유도사인, 현수막게시대, 게시판	
3배색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자전거보관대, 파고라, 무인키오스크, 관광안내소/ 간이화장실, 방재시설(제설함, 소화전), 안내시설물, 보도육교	
4배색	방음벽, 주차장, 무단횡단 방지시설, 가설펜스	
배색방법		
기본 색상조합	1배색	
	2배색	
	2배색	
	3배색	
포인트색 적용시 색상조합	2배색	
	3배색	
	3배색	
	4배색	

색채 배색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권역색 적용 시 2개 이상의 권역에 해당하는 경우, 범위가 넓은 권역의 색채를 적용			
· 하나의 도로 또는 같은 공간으로 인식되는 곳에는 형태, 색채, 재료를 일치시켜 적용			
· 불필요한 장식과 과장된 그래픽의 적용 지양			
· 시설물의 규모 및 길이 등 시각적 균형감을 고려하여 안정감을 주는 색채배색 적용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하되, 원색이나 고채도 및 고명도의 색채 사용 지양			
· 시각적 안정감 및 오염에 대비하여 무채색 계열의 명도 6이하의 색채 사용을 권장			
· 인천광역시의 상징요소(CI 등)를 적용할 경우 무채색으로 표기하고 크기를 최소화할 것을 권장			
· 자연소재 적용시 재료 고유색을 적용하고 도색은 금지			
· 광택이 강한 소재 사용 지양			
· 개방감 확보를 위해 투명 재질의 적용을 권장하며, 고채도의 유리나 폴리카보네이트 사용은 지양			
· 수변공간 자연소재 및 투과 소재를 적용하며, 색채 적용시 무채색 계열, 백색 적용을 권장			
· 녹지공간 자연소재 그대로의 색채, 반광택 및 무광택 소재 적용을 권장			
· 특화공간 관광지, 역사문화공간 등을 계획할 경우, 권역색 적용을 권장			
· 별도 색채계획 및 색채특화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협의 후 적용			



인천 공공시설물색을 적용한 표준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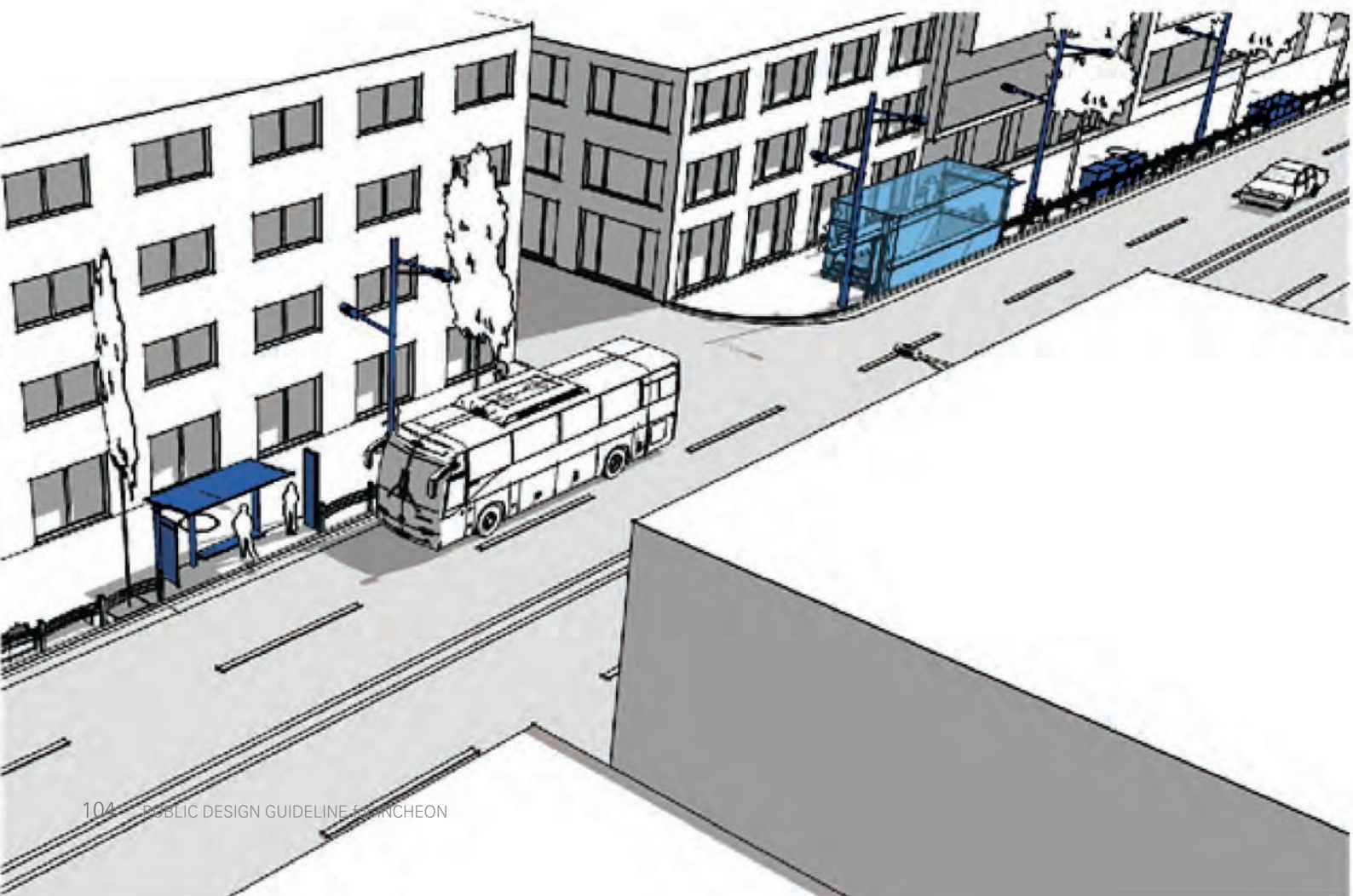
인천 색채디자인 사업 예시

A

도로시설물

중점사항

- | | |
|--|--|
| <p>01 생활안전 및 보행안전 확보하기</p> | <p>설치물의 풍하중 검토로 구조적 안정성 확보
주변에서 잘 보이는 곳에 조명시설과 함께 배치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p> |
| <p>02 도시조화성 및 정체성, 지속가능성 고려하기</p> | <p>기능 위주의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 적용
타 시설물과의 통합으로 공간 활용도 증진 및 유효보호폭 확보
주변을 고려한 저채도 색채 적용으로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p> |



세부구성

- 도로시설물은 모든 교통시설 및 수단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과 다양한 인천의 보행자 유형을 고려한 모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장치 및 시설물을 포함한다.

도로시설물은 교통관련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교통기반시설물(도시철도시설), 도로 시설물 및 부속시설물 등으로 구분한다.

- 가이드라인의 세부구성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분류코드	중분류	세부 구성	
2.A.1	버스·택시 승차대		
2.A.2	자전거보관대		
2.A.3	통합지주, 신호등주		
2.A.4	가로등		
2.A.5	보안등		
2.A.6	보호펜스		
2.A.7	블라드		
2.A.8	보도·점자블록		
2.A.9	지하철·지하보도 출입구		
2.A.10	환기구(흡·배기구)	·형태구조	·설치배치
2.A.11	보도육교	·색채재료	·유지관리
2.A.12	교량		
2.A.13	고가차도		
2.A.14	입체교차로		
2.A.15	지하(차/보)도		
2.A.16	터널		
2.A.17	생태통로		
2.A.18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2.A.19	석축, 옹벽		
2.A.20	방음벽		

- 도로시설물의 기능 및 목적에 따라 20개 대상으로 세분화하며, 형태구조, 색채재료, 설치배치, 유지관리 등 세부요소로 각각의 지침을 제시한다.

관련법규 및 문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명주소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
교통신호기 설치·관리매뉴얼 /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 건축구조기준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인천광역시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A. 도시시설물

심의대상

2.A.1

버스·택시 승차대

정류장에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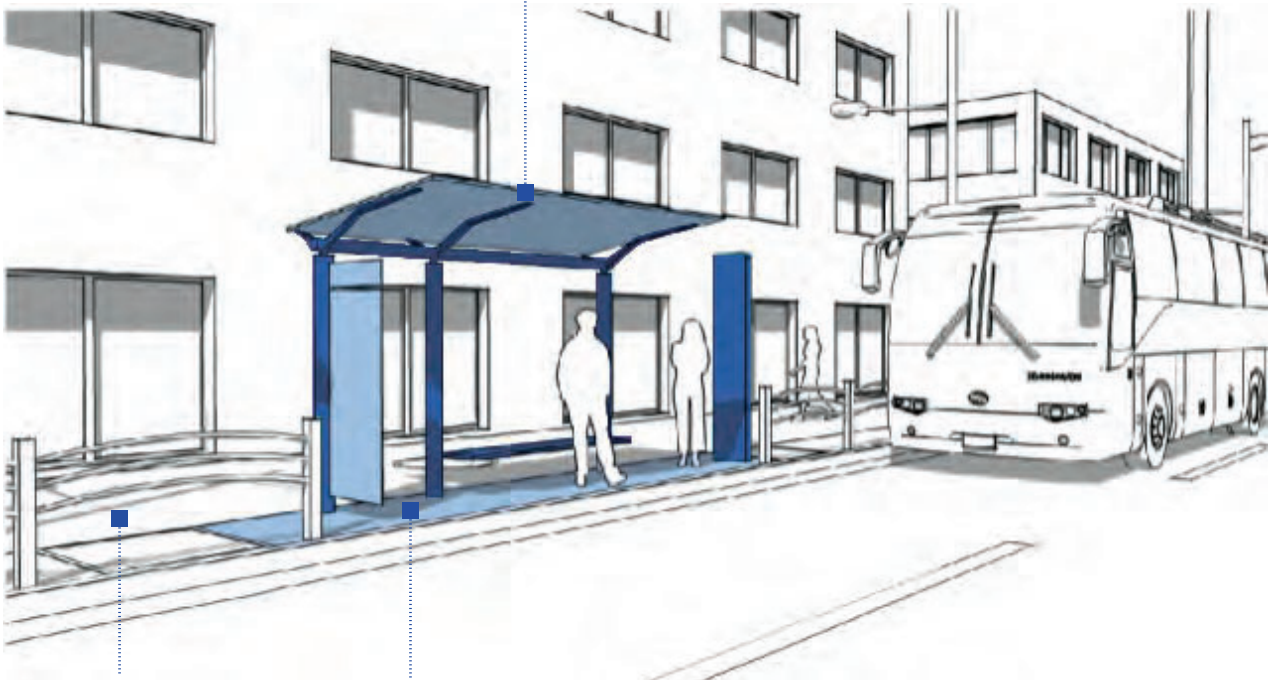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지붕이나 바람막이가 설치된 골조형태이며, 승차를 기다리는 승객을 위한 의자와 함께 노선알람 및 버스·택시정보, 공공시각정보를 제공

기본방향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표준디자인 설치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적용
투명소재의 개방감 있는 디자인



유효보도폭
최소 2m 확보

차도 연석에서 이격 설치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접근 및 진출입 통로 폭은 1.5m 이상 확보
승차대 인근 보도시설물 등은 승차대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

- 참조**
-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보도 폭 및 현장 상황에 따라 축소 및 확장 변형·배치가 가능하도록 모듈화하며, 이에 적합한 체결구조를 적용			
	· 지역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토압, 풍하중 등에 관해 설치 시 추가 검토하며, 인천 기본풍속 28m/s를 기준으로 풍하중을 산정하여 적용			
	· 지면의 기초부 및 앵커 볼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모서리 및 벤치 손잡이 부분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라운딩 처리			
	· 정보 위계 체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군·구 또는 특정 주제 등을 표현하기 위한 장식요소는 부착을 금지			
	· 오염 및 훼손에 대비하여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기능 추가에 따른 돌출부는 최소화			
	· 승차대는 보도 상황에 따라 유형을 선택하여 적용하되, 보도폭이 협소할 경우 승차대 대신 폴(Pole) 타입의 사인으로 대체하여 설치 ※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238p, 242p)] 참고			
버스승차대	· 버스승차대는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며, 안전을 위해 반드시 조명장치를 매입			
	· 버스승차대의 광고물은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며, 그 외 장소에는 불법 광고물 등의 부착을 금지			
	· 벤치 및 온라인 노선안내시스템 등 타 시설물과의 기능통합			
택시승차대	· 택시승차대는 표준디자인을 적용			
	· 유효보도폭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승차대의 기둥부를 차도쪽으로 옮기거나 폴(Pole) 타입의 사인으로 대체하여 설치			
	· 야간에 시인성을 높혀 위치 파악과 승객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며, 승객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LED 조명 설치를 권장			



버스승차대 표준디자인 재정비 적용

A. 도시시설물

심의대상

2.A.1

버스·택시 승차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색채재료	· 시각적 안정감 및 오염에 대비하여 무채색 계열의 명도 6 이하의 색채 사용을 권장하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재료를 적용하여 정돈된 마감으로 처리			
	· 해안공간 염해에 대비하여 내식성이 뛰어난 재질의 사용을 최우선으로 고려			
	· 파손 시 보행자에게 위험이 되지 않도록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강화접합유리를 사용하고 투명도가 높은 유리를 사용하여 개방감을 확보			
	· 벤치의 앉음판은 기후에 따른 온도 변화가 적은 소재를 사용			
설치배치	·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위치 및 형태를 적용하며, 승차대의 위치나 구조가 보행자 및 승객들의 보행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 2m의 유효보도폭을 확보			
	· 승차대 접근 및 진출입 통로 폭은 1.5m 이상 확보하며, 승차대 내부 공간은 휠체어, 유아차 이용자의 활동공간을 1.5m×1.5m 이상 확보			
	· 연계 가능한 시설물(벤치, 온라인 노선안내시스템 등)과의 기능을 통합			
	· 주변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주변에 시선연결을 방해하는 구조물(광고물)을 제한하며, 승차대 인근의 보도시설물 등은 승차대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			
	· 가로등 및 조명시설에 인접하여 설치			
	· 시각장애인에게 유도 및 안내가 되도록 유도 선형블록 설치하며, 대기공간과 차도와의 경계에 있는 점형 점자블록은 보차도 경계에서 300mm 이격하여 설치			
	· 가로변 버스승차대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교통정보 제공시스템, 버스 도착시간 전광판, 조명형 노선도 등을 설치			
버스승차대	· 승차대를 설치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는 150mm 이하로 하며, 연석은 보도면과 동일한 높이로 설치			
택시승차대	· 설치장소의 도로 폭과 주변 상가와의 관계,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형태를 선택하거나 설치여부를 결정(공항, 주요 환승센터, 관광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			



택시승차대(복합형/슬림형) 표준디자인



시설물색

강화겟벌색 (ICC-공공1)

정보표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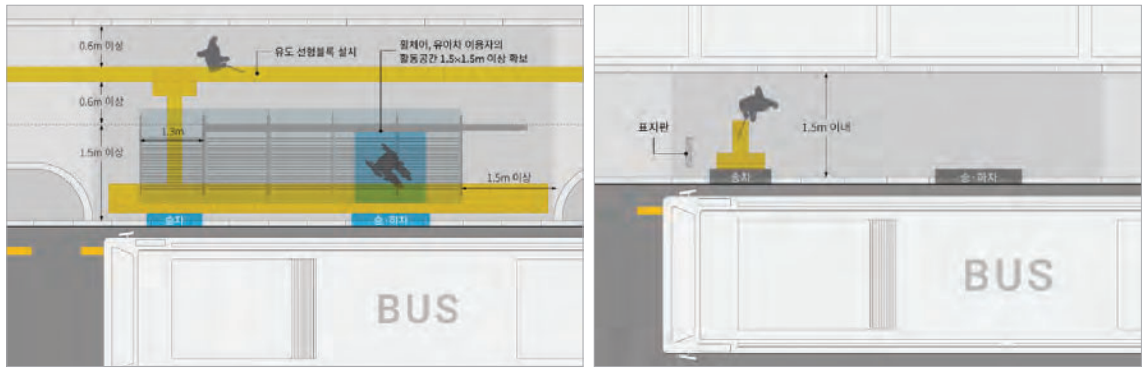
기능색2-White (ICC-공공4)

강조색(안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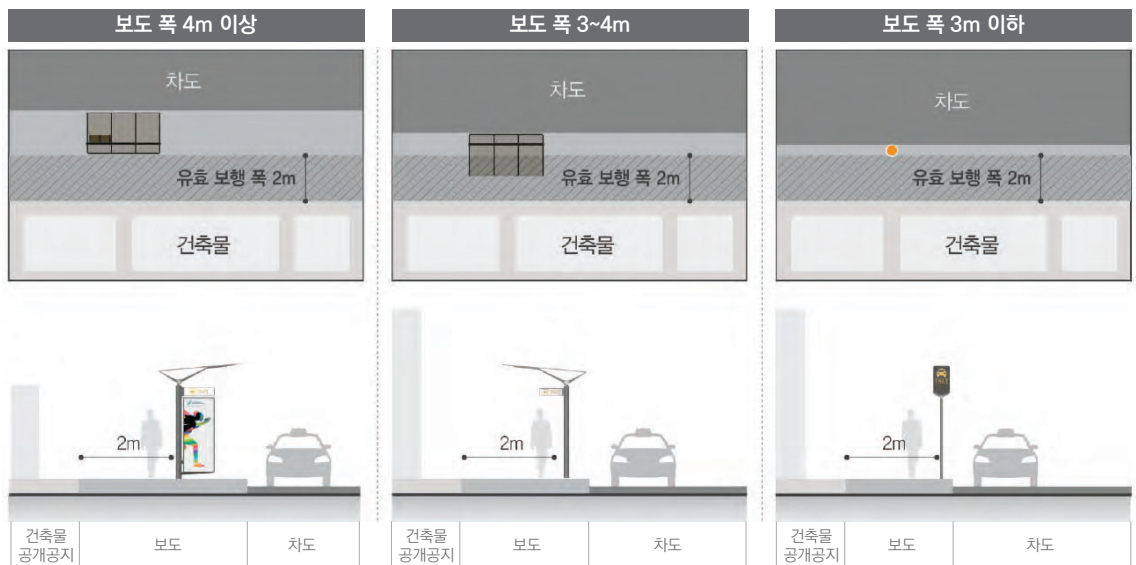
기능색3-Yellow (ICC-공공7)

- 참조**
-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유지관리			
·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 시설물 위치 관리번호 적용 시 도로명 기초번호를 적용하여 관리체계를 통일			
· 기능의 추가 및 삭제 변경에 따른 교체·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조화			
· 시설물 표면의 먼지 제거가 용이하고 불법광고물 등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			



버스승차대 설치 *출처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택시승차대 유형(보도 폭을 고려하여 3가지 유형으로 선택 적용)

A. 도시시설물

심의대상

2.A.2

자전거보관대

자전거를 임시로 세워두거나 보관하기 위한 시설물

일반적으로 도시 내 공공건축물 및 교통중심지 주변 가로에 설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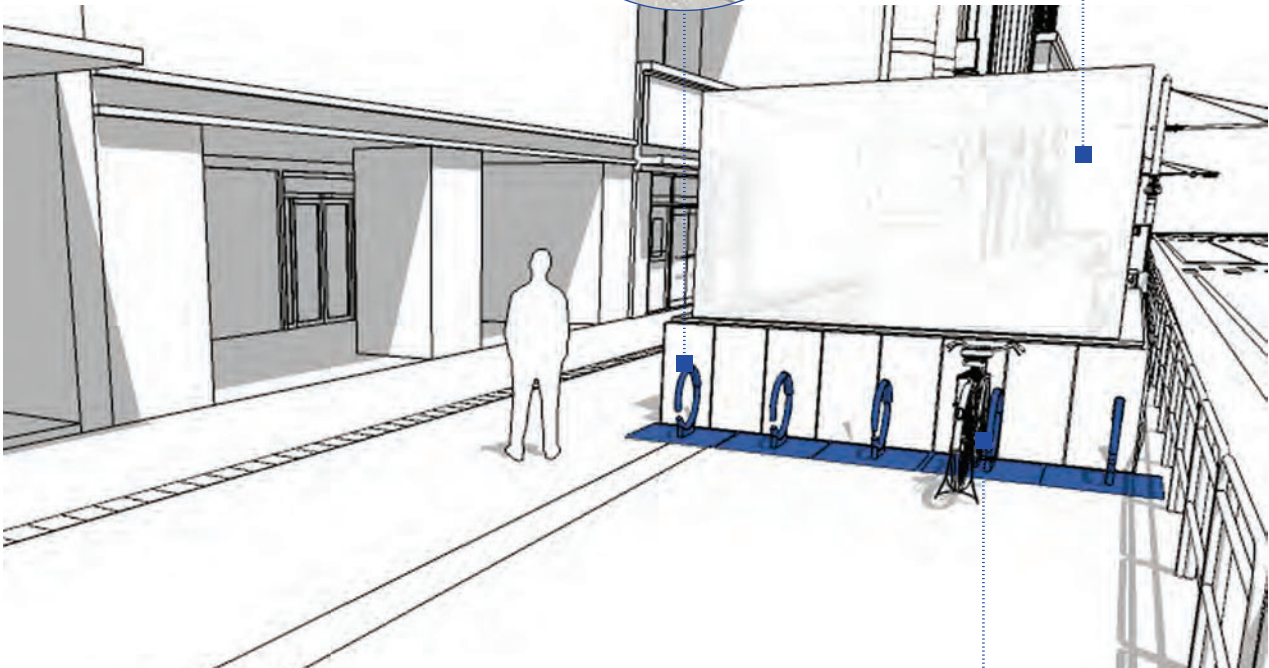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간결한 디자인으로 최소화하여 설치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사용 권장
개방적 가로공간 조성을 위한 투시형 구조
다른 구조물이나 공간 요소와의 결합 권장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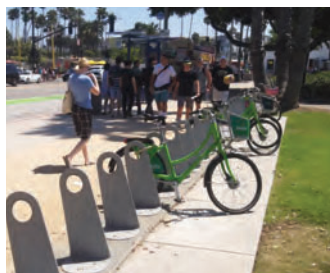
도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적용 권장
수평을 유지하여 경사진 지면 위에서도 안전성 확보
지면 지중화를 통한 돌출 최소화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불필요한 구조를 최소화하고 설치물의 풍하중을 검토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			
	· 공간의 현황을 고려하여 기능성 중심의 간결한 형태, 돌출을 최소화하는 디자인을 적용			
	· 개방적인 이미지의 가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시야를 막는 쉼터형 보관대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투시형 구조의 적용을 권장 불가피하게 쉼터형 보관대 설치 시,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돌출 폭을 최소화			
	· 보행 폭이 협소한 원도심의 경우 자전거거치대의 지면 지중화를 통해 지장물을 최소화			
	· 자전거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건장치, CCTV 등 보안시스템을 적용			
색채재료	· 무채색 계열의 색채 및 명도 3~8, 채도 4 이하의 색채 사용을 권장하며, 주변 시설물과 조화되는 유사한 색채 및 소재를 적용			
	· 자전거 보관·회수 시 시설물 손상을 막도록 자전거와 접촉하는 부분은 페인트 도색을 하지 않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			
	· 자전거거치대를 알리는 문구와 픽토그램 이외에는 장식적 도안을 금지			
	· 해안공간 염해에 대비하여 내식성이 뛰어난 재료의 사용을 최우선으로 고려			
설치배치	· 공간 활용도를 높이도록 버스승차대, 펜스 등 다른 구조물이나 공간 요소와 결합			
	·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설치하며, 자전거 도로에 인접한 길가 또는 육교, 교량 등 구조물 하부, 공지 등에 설치			
	· 공공가로에 설치되는 자전거보관대는 주변에서 잘 보이는 곳에 조명시설과 함께 설치하거나 가로등 주변에 배치			
	· 자전거거치대는 경사진 지면 위에서도 안전성을 높이도록 수평을 유지			
유지관리	· 교통관련 시설물을 통합 관리하며, 시설물 위치 관리번호 사용 시 도로명 기초번호를 적용하여 관리체계를 통일			
	·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용접방식보다는 볼트로 체결이 가능한 구조를 권장			
	· 시설물 표면의 먼지제거가 용이하고 불법광고물 등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			



쉼터형 보관대 설치 시 유효보도폭 확보



보행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돌출 폭 최소화



자전거 및 킥보드 겸용 보관대

A. 도시시설물

심의대상

2.A.3

통합지주, 신호등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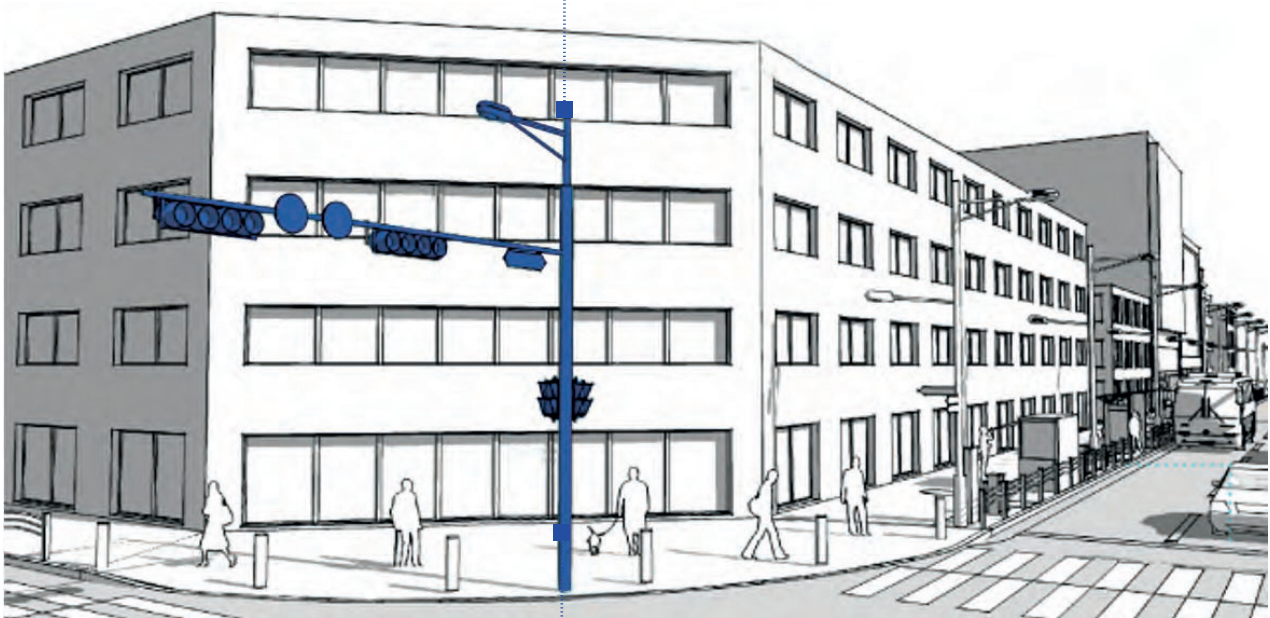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조절하는 지주형태의 시설물로, 보행신호등과 차량신호등으로 구분

기본방향

기능적 디자인으로 통합하여 계획하기

디자인 원칙

장식요소의 부착 지양 및 기능에 따른 분절이나
돌출부, 점검구 등 최소화
풍하중 검토를 통한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사용 권장



최소 2m 높이까지 저채도·저명도 색채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도로 적용
지면부 블록의 정교한 마감

참조

도로명주소법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경찰청)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경찰청) / 교통신호기 설치·관리매뉴얼(경찰청)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불필요한 구조를 최소화하고 설치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설치 시 토압, 풍하중 등을 추가 검토하며, 인천 기본풍속 28m/s를 기준으로 풍하중을 산정하여 적용 · 통합지주의 부착시설물은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보행신호등, 보안등을 기본으로 하되, 도로 형식에 따른 유형 및 도로 폭에 따라 부착대 길이를 적용하여 도로 환경에 대응 · 형태 및 부착물은 통합지주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적용을 권장하며, 변경 시 반드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적용 · 체결부의 결합 구조를 간결하게 하고, 지면 위로 기초판 및 앵커 볼트 등의 노출 금지 · 신호등 함체 제작 시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처리하여 시각적인 안정감을 확보		
색채재료	· 시각적 안정감 및 오염에 대비하여 무채색 계열의 명도 6 이하의 색채 사용을 권장하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재료를 적용하여 정돈된 마감으로 처리 · 도심부와 산이 배경이 될 때에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가급적 어두운 색채를 적용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도로 등을 기둥의 최소 2m 높이까지 적용하여 불법광고물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하며, 저채도·저명도 색채 적용을 원칙 · 해안공간 염해에 대비하여 내식성이 뛰어난 재질의 사용을 최우선으로 고려		
설치배치	· 차량신호기는 차도의 노면으로부터 수직으로 4.5m 이상, 보행자신호기는 보도의 노면으로부터 신호등 하단까지 2~3m 높이로 보행자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 · 교통정보안내 등 결합 시 각형 부착대로 설계하여 부착물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단점을 보완 · 통합지주에 [도로명주소법] 규격에 따라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그 외 부착시설물은 [경찰청 LED교통신호등 표준지침],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을 반영		
유지관리	· 시설물 위치 관리번호 사용 시 도로명 기초번호를 적용하여 관리체계를 통일 · 배면에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폐가 가능한 점검구를 확보하고, 빗물과 습기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 및 밀폐형 개폐구조를 적용 · 신호등은 부피가 작고 고효율의 LED를 적용		



도로 유형 및 폭에 따른 통합지주 설치



통합지주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A. 도시시설물

심의대상

2.A.4

가로등

보행로 및 차량도로 내에서 통행과 교통에 대한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

기본방향

기능중심의 디자인을 적용하여 연속적으로 설치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사용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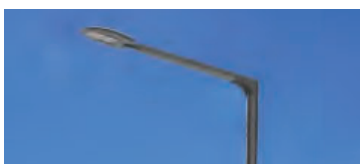


최소 2m 높이까지 저채도·저명도 색채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도로 적용
지면부 블록의 정교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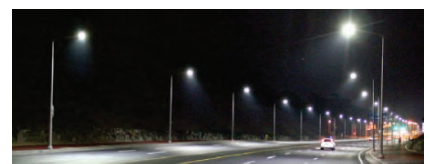
교통안전의 향상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주변 시설물과 균제도를 고려하여 간격 확보

- 참조**
-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불필요한 구조를 최소화하고 설치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설치 시 토압, 풍하중 등을 추가 검토하며, 인천 기본풍속 28m/s를 기준으로 풍하중을 산정하여 적용			
	· 가로등 자체의 독립적인 이미지보다는 연속적으로 설치되었을 때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디자인하며,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적용을 권장			
	· 우천 시나 적설 시 상황을 고려한 기울기를 디자인에 반영하여 안정성을 확보			
	· 체결부의 결합 구조를 간결하게 하고, 지면 위로 기초판 및 앵커 볼트 등의 노출 금지			
	· 군·구 또는 특정 가로의 테마 등을 표현하기 위한 장식요소는 부착하지 않도록 하되, 필요시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최소화			
색채재료	· 시각적 안정감 및 오염에 대비하여 무채색 계열의 명도 6 이하의 색채 사용을 권장하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재료를 적용하여 정돈된 마감으로 처리			
	· 도심부와 산이 배경이 될 때에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가급적 어두운 색채를 적용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도로 등을 기둥의 최소 2m 높이까지 적용하여 불법광고물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하며, 저채도·저명도 색채 적용을 원칙			
	· 해안공간 염해에 대비하여 내식성이 뛰어난 재료의 사용을 최우선으로 고려			
설치배치	· 자동차 연속조명은 도로의 특성에 따라 0.5cd/m ² 범위의 평균 휘도기준을 준수하고, 보행자 연속조명은 2~15lux 범위의 평균 수평면 조도기준을 준수			
	·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지면부 블록 등의 바닥마감재를 정교하게 마감 처리			
	· 조명시설의 안전 향상 및 범죄 예방의 본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변 시설물과의 균제도를 고려하여 간격을 확보			
유지관리	· 시설물 위치 관리번호 사용 시 도로명 기초번호를 적용하여 관리체계를 통일			
	· 오염 및 훼손에 대비하여 기능에 따른 분절이나 돌출부, 점검구 등은 최소화			
	· 램프교체 편의성 등 유지보수의 편의를 고려한 제품을 사용하며, 등기구는 부피가 작은 고효율의 LED를 적용			
	· 비추고 싶은 각도를 정확히 비출 수 있는 반사경 구조인 컷오프를 적용한 제품을 선정			



간결한 구조의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충분한 조도 확보 및 주변 시설물과의 균제도 고려

A. 도시시설물

2.A.5

보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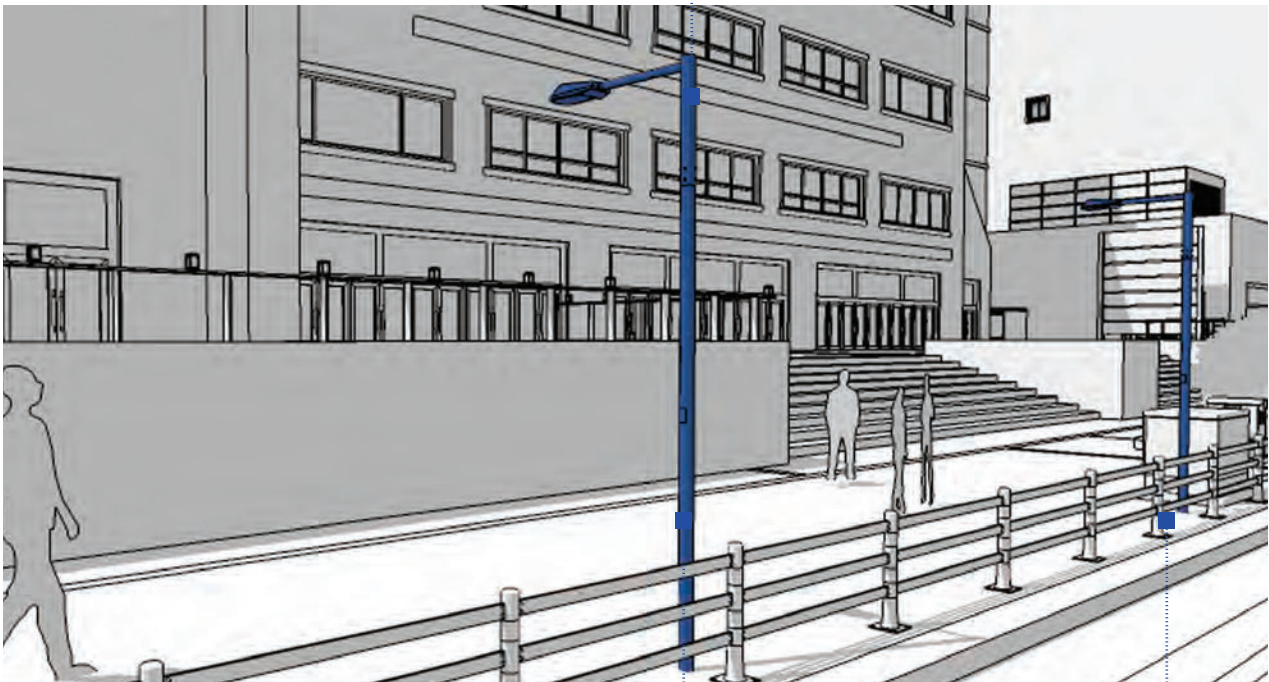
보안을 위해 가로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

기본방향

기능적인 통합디자인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사용 권장
수직 등주는 원폴을 적용, 암대는 등주와 일체화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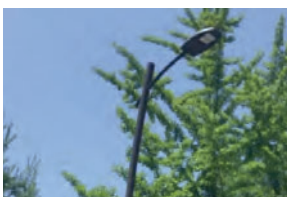


최소 2m 높이까지 저채도·저명도 색채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도로 적용
비상벨 등 방범시설물과 통합 설치를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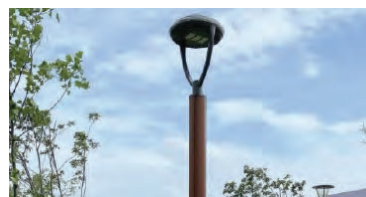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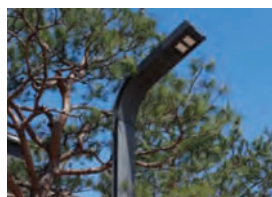
균제도를 고려하여
주변 가로시설물과
간격 확보

참조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불필요한 구조를 최소화하고 설치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설치 시 토압, 풍하중 등을 추가 검토하며, 인천 기본풍속 28m/s를 기준으로 풍하중을 산정하여 적용			
	· 보안등은 연속적으로 설치되었을 때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디자인하며, 인천굿디자인 인증 제품 적용을 권장			
	· 수직 등주는 굽기가 다른 2단, 3단으로 디자인하는 것을 지양하고 원폴을 적용			
	· 보안등의 암대는 등주와 일체화시키거나 형태가 유사한 디자인 권장			
	· 장식요소 및 상징이미지의 부착은 지양			
	· 체결부의 결합 구조를 간결하게 하고, 지면 위로 기초판 및 앵커 볼트 등의 노출 금지			
색채재료	· 시각적 안정감 및 오염에 대비하여 무채색 계열의 명도 6 이하의 색채 사용을 권장하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재료를 적용하여 정돈된 마감으로 처리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도로 등을 기둥의 최소 2m 높이까지 적용하여 불법광고물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하며, 저채도·저명도 색채 적용을 원칙			
	· 도심공간, 녹지공간, 수변공간 : 경관특성에 따라 재료의 차별성 적용			
설치배치	· 보행자 연속조명은 2~15lux 범위의 평균 수평면 조도기준을 준수			
	· 보행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지면부 블록을 정교하게 마감 처리			
	· 조명시설의 안전 향상 및 범죄 예방의 본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변 시설물과의 균제도를 고려하여 간격을 확보			
	· 비상벨 등 방범시설물과 통합 설치를 권장			
유지관리	· 시설물 위치 관리번호 사용 시 도로명 기초번호를 적용하여 관리체계를 통일			
	· 오염 및 훼손에 대비하여 기능에 따른 분절이나 돌출부, 점검구 등은 최소화			
	· 램프교체 편의성 등 유지보수의 편의를 고려한 제품 사용			
	· 비추고 싶은 각도를 정확히 비출 수 있는 반사경 구조인 컷오프를 적용한 제품을 선정			
	· 등기구는 부피가 작은 고효율의 LED를 적용			



암대, 등주가 일체화된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목재소재를 사용한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충분한 조도 확보 및 주변 시설물과의 균제도 고려

A. 도시시설물

심의대상

2.A.6

보호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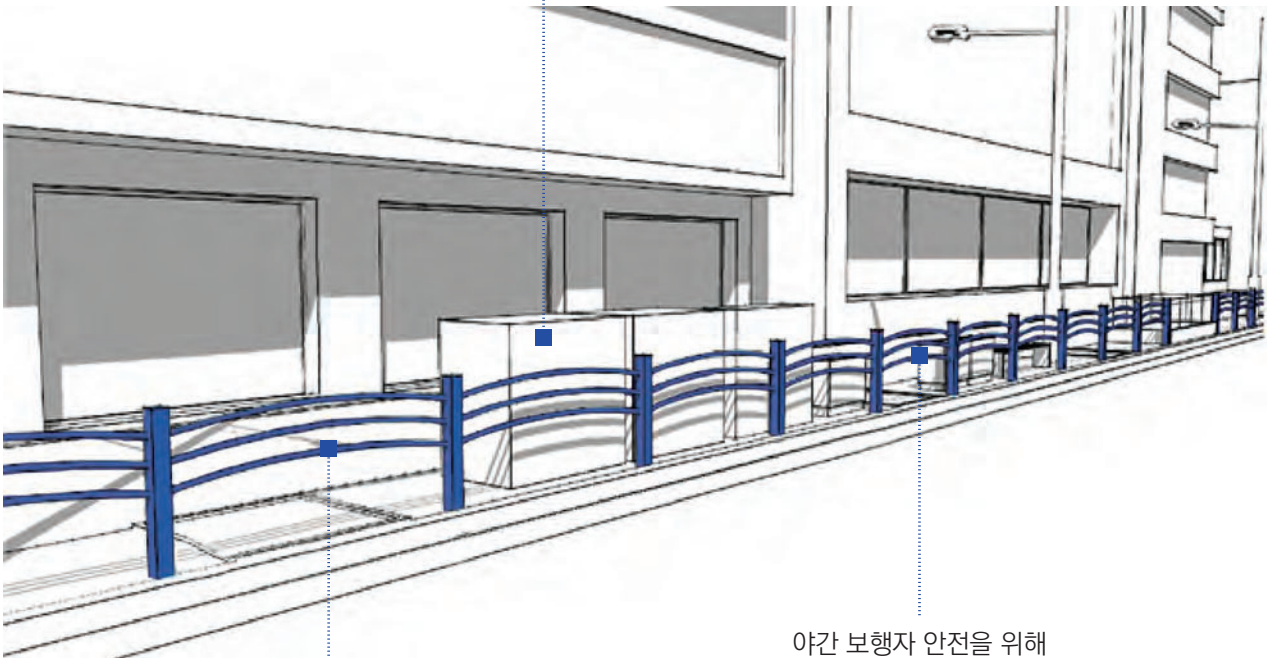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울타리 형태의 시설물로,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 설치해 통행을 제한하거나 도로와 보도사이에 설치해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

기본방향

주·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장소의 특성에 따라 일관되게 설치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사용 권장
차량 충돌에 대비하여 튼튼한 재료 사용
모듈구조 적용 권장
고광택 금속소재 사용 지양



적정높이* 설치 권장
*보행자용펜스 1.0~1.1m
자전거도로용펜스 1.1~1.2m
지면과 펜스가 수직(90°)을 이루도록 설치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굴곡이 심한 도로의 경우,
반사체 설치 의무화

참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보호펜스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법적 기준 및 설계지침을 준수			
	· 펜스가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이미지를 고려하여 시각적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일관되게 디자인을 적용하며,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적용을 권장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과도한 디자인 및 형태, 상징적 요소의 부착을 지양			
	· 기능 위주로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하며, 모서리 및 마감 부분을 둥글게 처리			
	· 수변 및 녹지공간 주변 자연 요소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간결하고 개방적인 형태를 적용			
	· 어린이보호구역 개방감을 갖도록 하여 운전자와 보행 어린이가 상호 간 쉽게 분별될 수 있는 구조를 적용			
	· 어린이의 통행이 많은 지역은 부재들 사이 틈새로 어린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부재간격 150mm 이하의 수직레일형 디자인을 권장			
	· 야간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굴곡이 심한 도로의 경우, 반사체 설치를 의무화			



기능 위주로 간결한 디자인의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수직레일형 디자인의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A. 도시시설물

심의대상

2.A.6

보호펜스

색채재료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도심부 보행자용펜스의 경우, 가로공간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변의 시설물과 유사한 색채를 적용하며, 채도 6 이하, 명도 7 이하의 저채도·저명도 색채 사용을 권장하고 원색 또는 고채도의 색채는 지양			
· 수변공간 자연소재 및 투과 소재를 적용하며, 색채 적용 시 무채색 계열 및 백색 색상의 적용을 권장			
· 녹지공간 자연소재 및 반광택, 무광택 소재를 적용하며, 재료 자체 색채, 무채색 계열의 색채 적용을 권장하고 원색적인 색채의 도색 마감은 지양			
· 재료의 표면 이미지는 빛 반사에 의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고광택 소재는 지양하며, 반광택 또는 무광택의 소재 등을 권장			
· 보도와 차도를 나누는 보호펜스는 차량 충돌에 대비하여 견고한 재료를 사용			
· 기능적 색채의 반사체를 띠 등의 형태로 적용 시, 색채나 장식의 남용 금지			
· 각 군·구의 상징 문자나 로고 등의 장식요소, 공공미술, 슈퍼그래픽, 광고물은 지양			



핸드레일에 목재소재를 사용한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색을 적용한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참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설치배치	· 인천광역시 내 교통사고 사고다발 지역 중 횡단보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의 무단 횡단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 등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사고를 방지			
	· 보행펜스는 진입을 금지하는 공간에 설치하되, 지나치게 두드러지지 않도록 설치			
	·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우려가 있는 곳에는 설치를 금지			
	· 안전펜스는 가로등, 벤치 등 타 시설물과의 통합설치를 권장			
	· 지면과 펜스가 수직을 이루도록 설치			
	· 지주와 노면접합부의 마감을 매입하여 설치			
	· 보행자용펜스는 보행자에게 압박감을 주지 않도록 1.0~1.1m의 높이로 설치			
유지관리	· 도로안전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등의 관리를 위한 위치표시 및 관리번호 등에 도로명 기초번호를 활용			
	· 펜스의 구조는 부분적으로 유지·보수가 쉬운 모듈구조 및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품을 적용			
	· 유지·보수가 쉽도록 용접 방식은 지양하며, 볼트를 이용한 체결 및 설치가 가능한 구조를 적용			
	· 시설물 표면의 먼지 제거가 용이하고 불법광고물 등의 부착을 방지하는 방식을 적용			



경사지에서 연속된 설치가 용이한 구조

A. 도시시설물

심의대상

2.A.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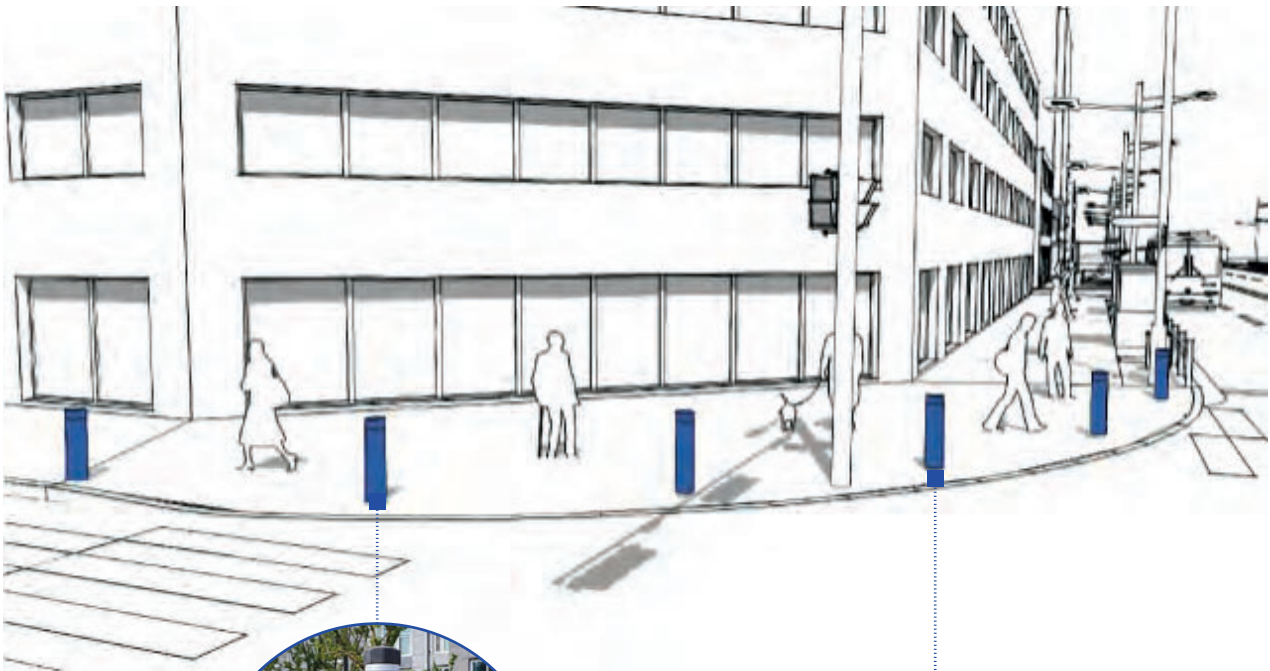
블라드

차량이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의 경계면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보행자의 통행 안전에 기여하고 차량이 보도에 주·정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보도 파손 예방

기본방향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간결한 형태로 최소한으로 설치하기

디자인 원칙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0.8~1m 높이
보도와와의 시각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배치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사용 권장
야간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고휘도 반사지 부착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충격을 흡수하는 재료 사용

참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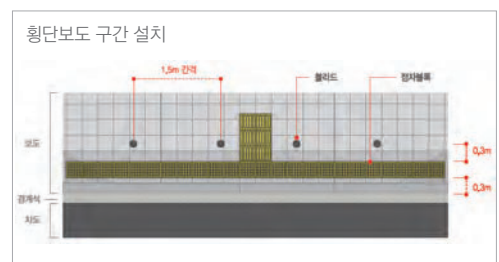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0.8~1m 내외의 높이, 지름은 100~200mm 형태 적용			
	·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며,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적용을 권장			
	·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딱딱하지 않은 원기둥 형태를 권장하며, 모서리 부분의 마감을 둥글게 처리			
색채재료	· 무채색 계열의 명도 6 이하의 색채 사용을 권장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밝은 색의 반사소재 등을 부분 적용			
	· 고풍택 금속재료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 적용			
	· 야간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고휘도 반사지를 견고하게 부착			
	· 파손 방지를 위해 내구성이 높은 재료를 적용			
	·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 적용			
설치배치	· 보행 안전 및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며, 가급적 최소한으로 설치			
	· 보도와의 시각적 연속성을 고려하며, 휠체어 통과를 위해 볼라드 사이 간격은 1.5m 안팎의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			
	· 수직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 설치 시 블록 전방 300mm에 설치			
	· 보행 연계 구간 등 보차도 경계석의 턱을 낮추는 지점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규격 준수			
	· 차량 충돌 시 충격완화를 위해 지면에 매입되는 구조로 설치하되, 고정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			
	· 보행 연계 구간 등 보차도 경계석의 턱을 낮추는 지점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규격 준수			
유지관리	· 도로안전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등의 관리를 위한 위치표시 및 관리번호 등에 도로명 기초번호를 활용			
	· 파손이나 훼손 시 부분적인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시공 및 관리			
	· 시설물 표면의 먼지 제거가 용이하고 불법광고물 등의 부착을 방지하는 방식을 적용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의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조명기능이 결합된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볼라드 배치

A. 도시시설물

2.A.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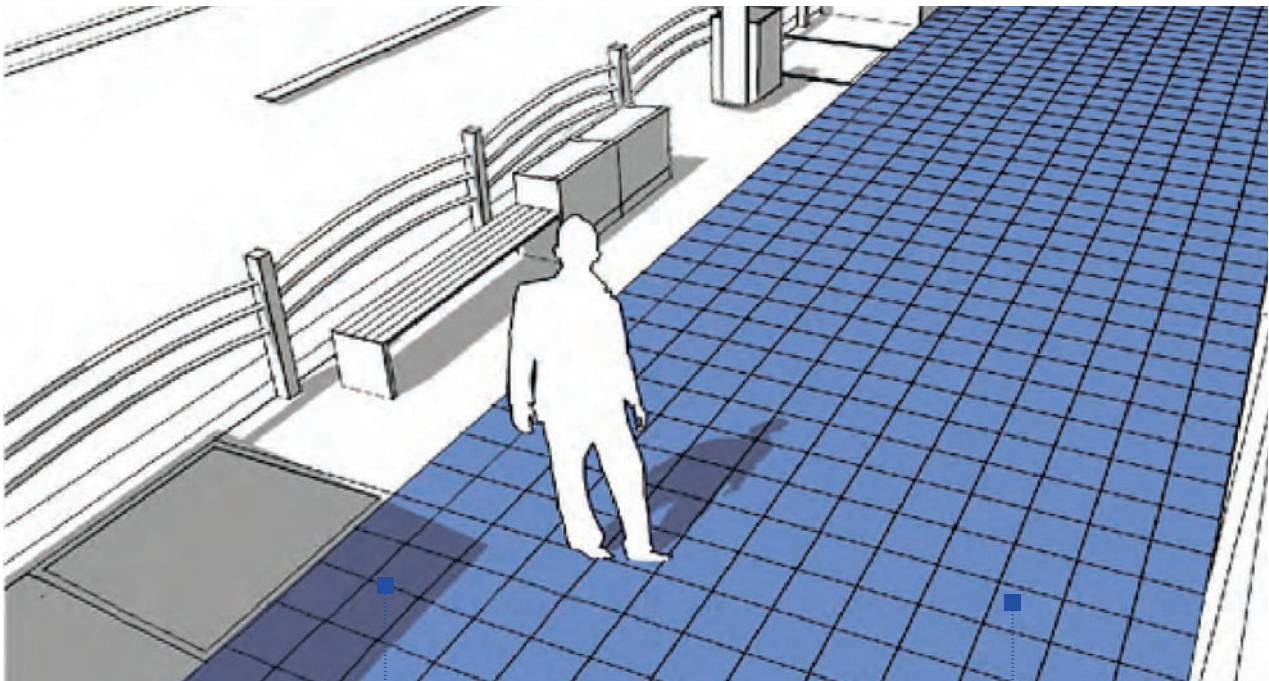
보도·점자블록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의 마감재

기본방향

시각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평탄하고 정밀하게 설치하기

디자인 원칙



여성의 구두굽이 끼이지 않도록
보도블록 간 틈새가 치밀하도록 시공



요철이 심한 보도블록은 지양하며,
경계의 단차가 없도록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

참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국토교통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친환경 투수블록의 사용을 권장하며, 디자인은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적용을 권장			
	· 보도의 평탄도를 높이기 위해 규격 300mm 이상의 큰 포장재의 사용을 권장			
	· 점자블록의 사양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을 준용			
	· 테마공간 보도블록에 지역자원 및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특화된 형태를 일부 적용하되, 일관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통일성을 유지			
색채재료	· 무채색 계열의 명도 6 이하의 색채 사용을 권장			
	· 패턴 적용시 색상 및 명도 대비를 최소화하여 시각적인 안정감을 가지도록 하며, 표면의 페인트 도색은 금지			
	· 원도심의 협소한 보도에는 단색의 보도블록 적용을 권장하며, 신도시 등의 넓은 보도는 단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가지 색채 이내의 패턴 적용을 권장 패턴 적용의 경우, 포인트 블록을 적절히 활용하되 횡단보도 형태의 패턴은 지양			
	·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계열을 적용			
	· 점자블록의 재질은 주로 콘크리트, 석재 등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질을 적용하며, KS한국품질표준원의 KS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무채색 계열의 색채 사용



큰 규격의 포장재 사용



협소한 보도의 단색 보도블록 적용



테마 공간 내 특화된 형태의 보도블록을 일부 적용

A. 도시시설물

2.A.8

보도·점자블록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설치배치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의 내용을 준수			
	· 통행량이 많은 보도는 투수블록, 통행량이 낮은 지역은 I형 블록으로 구별하여 적용			
	· 보행기준선이 없거나 단절된 곳은 선형 점자블록을 사용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유도			
	· 보행기준선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보행기준선을 대신하여 시설물구역과 보행안전구역 간의 포장재질 변화를 적용			
	· 버스승차대, 횡단보도, 건물 돌출부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성이 있는 곳은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위험을 경고			
	· 가로수, 녹지대 등 보도 경계부 안전이 확보된 경우는 보행안전구역의 시·종점부에 점자블록을 설치			
	· 여성의 구두굽이 끼이지 않도록 보도블록 간 틈새가 치밀하도록 시공			
	· 요철이 심한 보도블록은 지양하며, 경계의 단차가 없도록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			
	· 다른 시설물과의 결합부위를 미려하게 마감			
유지관리	· 교체가 용이하도록 모듈화된 규격을 적용			
	· 보행안전 확보 및 미정비 구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시행			



시설물구역과 보행안전구역 간 포장재 변화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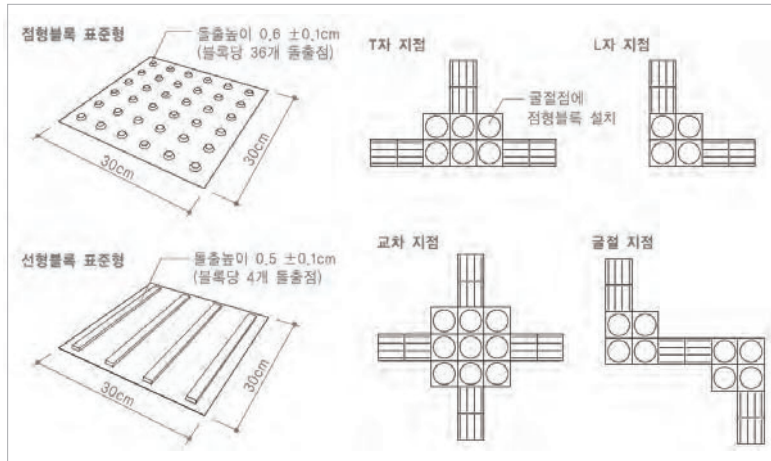
치밀한 보도블록 간 틈새 시공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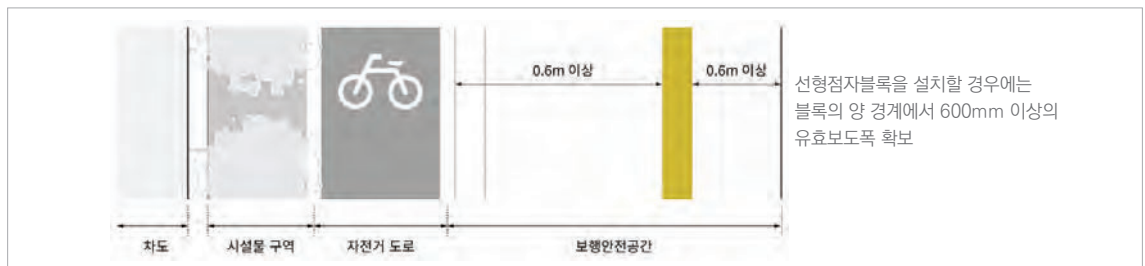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국토교통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기타

· 점자블록(선형블록 및 점형블록)의 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장애인편)]을 준용



점자블록의 표준형 규격과 설치방법 *출처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선형점자블록의 설치 *출처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보행안전구역 시점부 점자블록 설치



넓은 판형의 점자블록 설치

A. 도시시설물

심의대상

2.A.9

지하철·지하보도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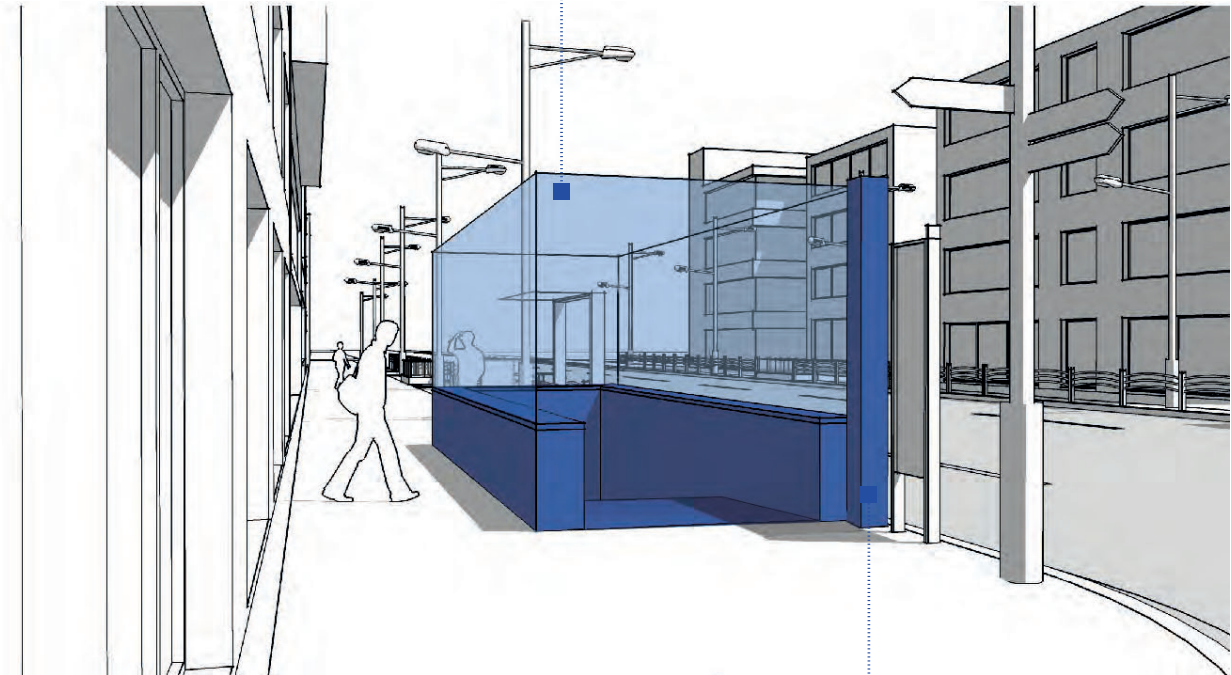
지하철 역사 및 지하보도 등 도시 내 지하공간으로 연결되는 출입구
출입구 상부의 덮개형 시설물(캐노피)의 유무에 따라 캐노피형, 개방형으로 구분

기본방향

경관과 조화되고 보행 안전을 고려하여 간결하게 디자인하기

디자인 원칙

규모 최소화 및 간결하고 개방적인 디자인
타 시설물과의 통합 설치 권장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진입부 지장물 및 시설물 설치 지양

참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불필요한 구조를 최소화하고 설치물의 풍하중을 검토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			
	· 지하철이용객 및 보행이용량,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의 규모 및 형태를 결정			
	· 주변 경관을 가리지 않도록 보도 점유 면적과 규모를 최소화			
	· 캐노피 설치 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하며, 보도 쪽으로의 돌출 형태는 적용 금지			
	· 도심 및 해안경관이 배경이 될 때에는 주변 경관이 투영될 수 있도록 전면 개방 형태를 적용			
	· 전 노선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디자인의 수립·적용을 권장			
	· 설치 현황을 고려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외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보행약자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			
	· 야간조명은 주변 건축물의 조명 밝기를 고려하여 설치유무를 결정			
	· 시설 이용자가 출입구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단순명료하고 적절한 크기의 안내시설물을 설치 ※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246p)] 참고			
색채재료	·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지닌 색채를 사용하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재료를 적용하여 정돈된 마감으로 처리			
	·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고채도 색채의 유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투명도가 높은 무색투명한 유리를 사용			
	·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강화접합유리를 사용			
	· 시각적 혼란을 유발하는 반사성 재료 및 고광택 재료 사용 금지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 처리 재료 사용			



구조를 최소화하고 개방감 있는 재료 사용

A. 도시시설물

심의대상

2.A.9

지하철·지하보도 출입구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설치배치	· 출입구의 위치나 구조가 보행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 2m의 유효보도폭을 확보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최소 1.5m를 확보			
	· 출입구의 최소 유효보도폭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인접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활용하여 보행로를 확보할 것을 권장			
	· 출입구는 화재 및 재난발생 시 신속히 안전한 공간으로 대피가 가능하도록 단순한 동선 및 최단거리로 계획			
	·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의 설치 시 외부 보행환경에 간섭이 없도록 계획			
	·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디자인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			
	· 자전거보관대 등 다른 시설물과의 통합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보행폭을 확보			
유지관리	· 시설물 위치 관리번호 사용 시 도로명 기초번호를 적용하여 관리체계를 통일			
	· 파손이나 훼손 시 부분적인 교체가 용이한 디자인을 적용한 시공 및 관리를 권장			
	· 오염 및 훼손에 대비하여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기능 추가에 따른 돌출부는 최소화			
	· 시설물 표면의 먼지 제거가 용이하고 불법광고물 등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보행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별도의 위치 확보



자전거보관대 등 다른 시설물과 통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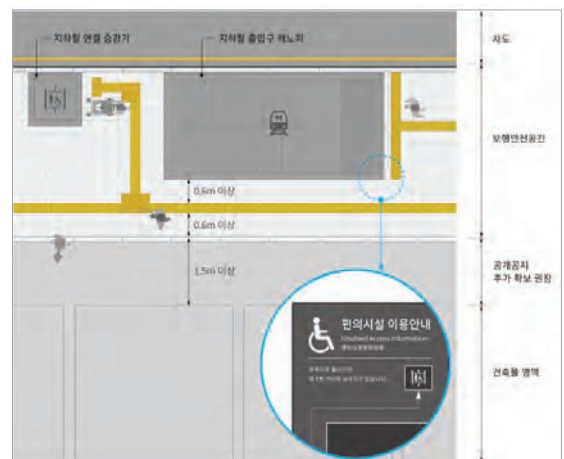
- 참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기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 계단 등의 수직이동 수단과 근접하게 설치하여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배치가 되도록 할 것을 권장			
	· 엘리베이터 입구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유모차나 휠체어의 교행이나 회전을 위해 1.8m×1.8m 이상으로 이용량을 고려하여 가급적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			
	·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영유아동반자, 유모차, 휠체어 등의 이용을 고려해 0.9m 이상을 권장			
	· 엘리베이터 내부의 유효 바닥면적은 폭 1.6m 이상, 깊이 1.4m 이상으로 계획하며,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후면의 600mm 이상의 높이에 거울을 설치			
	· 외부 바닥과 엘리베이터 바닥의 틈새 간격은 200mm 이하를 권장			
	· 엘리베이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			
	· 엘리베이터의 조작버튼의 300m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 설치			
	· 호출버튼, 조작반, 통화장치 등 엘리베이터 안팎에 설치하는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1.2m에 설치			
	· 지하철(도시철도) 출입구에 대한 세부 기준은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을 참조			



외부 보행환경에 간섭이 없도록 별도 설치된 지상 노출 엘리베이터



지하철 출입구 및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설치

*출처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A. 도시시설물

심의대상

2.A.10

환기구(흡·배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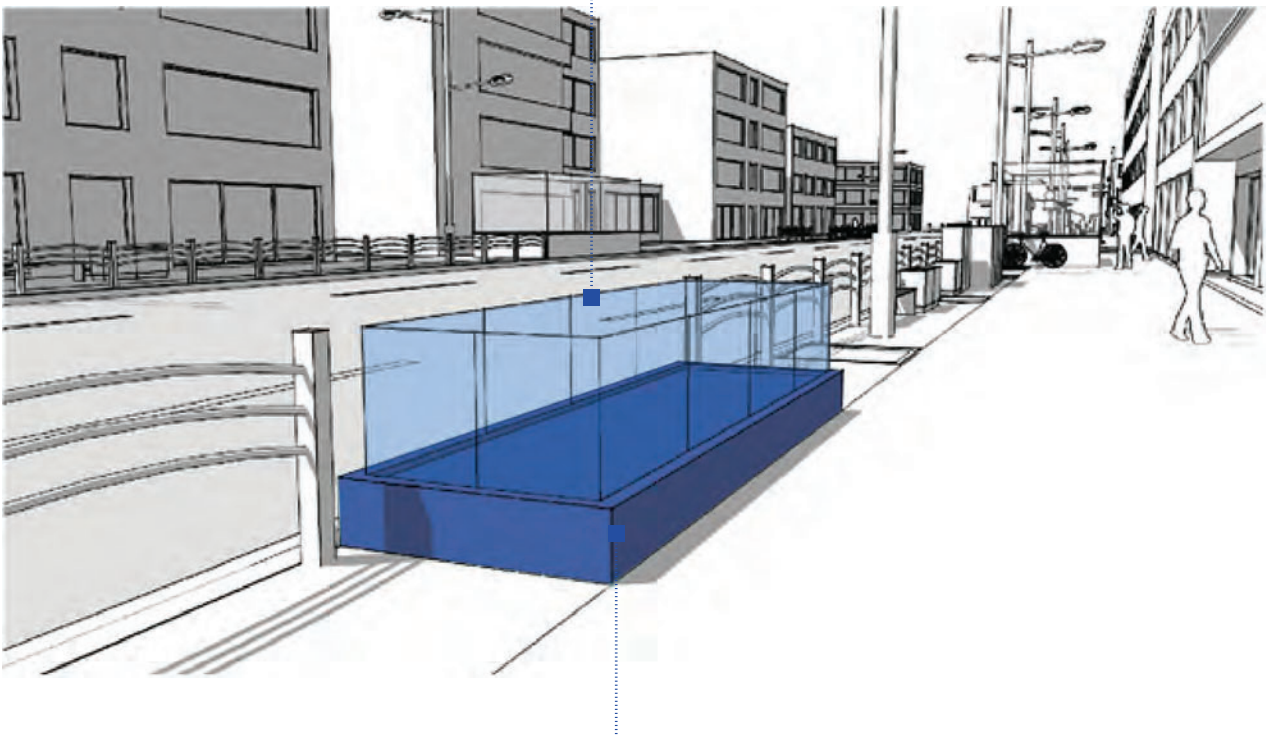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유입하여, 지하철 터널 내부를 환기시키기 위한 시설물

기본방향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모로 이격하여 설치하기

디자인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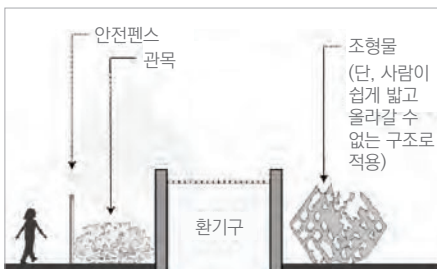
간결한 구조 및 개방감 있는 소재
부피감과 설치면적 최소화
최소 2m 높이로 오물 및 유해물질 유입 방지



돌출 구조물을 지양하고 모서리 등의 안전한 마감
어린이나 휠체어사용자의 눈높이와 일치하지 않도록 설치 권장

참조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불필요한 구조를 최소화하고 설치물의 풍하중을 검토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			
	· 가로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피감과 설치면적을 최소화하는 간결한 구조 및 개방감 있는 재료로 디자인			
	· 통행량이 많은 곳은 개방감을 현저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의 측면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			
	· 돌출 구조물을 지양하고 모서리 등의 마감부위가 날카롭지 않으며, 어린이나 휠체어사용자의 눈높이와 일치하지 않도록 디자인하여 적용			
	· 오물 투척 등 유해물질 유입방지와 보행안전을 위해 최소 2m 높이로 환기구를 설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최소 1.2~1.5m 높이로 설치하되 차단펜스를 설치하고 경고판을 부착			
	· 차단펜스 설치 시, 개방성 있는 형태로 환기구와 통일된 색채 및 재료 적용			
색채재료	· 하부 석재 및 상부 유리 소재의 적용을 통해 개방성을 확보하며, 고광택 금속소재는 지양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 처리			
	· 보행구간과 인접 설치 시 외부충격에 대처가 가능한 내구성이 높은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			
	· 해안공간 염해에 대비하여 내식성이 뛰어난 재질의 사용을 최우선으로 고려			
	· 과도한 색채 및 상징도안이나 슈퍼그래픽, 기능과 무관한 조형적 요소·장식은 적용 금지			
	· 주변 잉여공간 등을 검토하여 인접한 공개공지, 공원, 완충녹지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배치			
설치배치	· 보행공간을 점유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의 동선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통행이 없는 조경구역이나 보행로 외곽부에 설치			
	· 불가피하게 보행가로에 설치하는 경우,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			
	·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휴게 및 편의시설물, 위생시설물과 인접한 설치 금지			
	· 가로수 낙엽으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 가로수와 거리를 두고 설치			
	· 시설물 위치 관리번호 사용 시 도로명 기초번호를 적용하여 관리체계를 통일			
	· 시설물 표면의 먼지제거가 용이하고 불법 광고물 등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			



사람이나 차량의 접근을 차단하는 배치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 동선을 단절시키지 않고 보행로 외곽부에 설치



*출처 :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A. 도시시설물

심의대상

2.A.11

보도육교

횡단보도교의 일종으로 보행자의 도로횡단을 위해 설치하며, 계단 이용이 불편한 보행약자를 위한 수직이동보조시설물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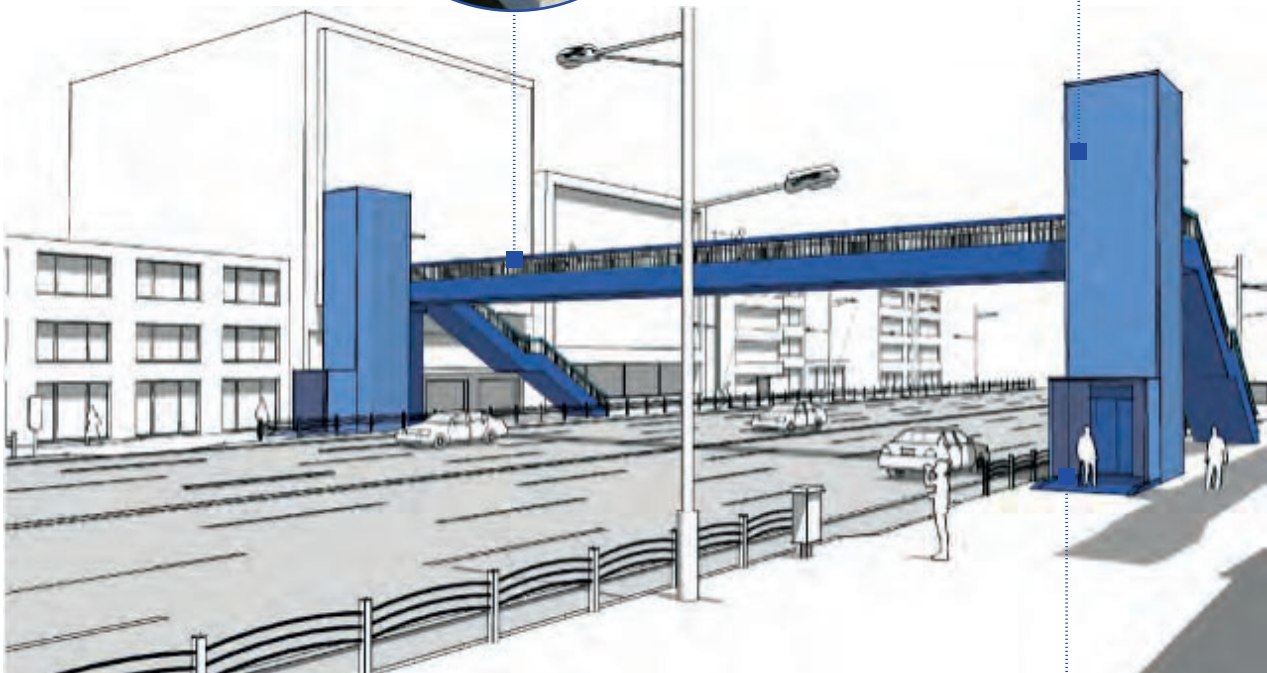
다양한 보행자를 고려하여 이동하기 편하게 계획하기

디자인 원칙

고광택 금속재료 사용 지양
과도한 장식 및 색채 지양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시,
시각적 개방감이 높은 투명소재 적용
고채도 유리적용 지양



휠체어사용자 및 노약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캐노피,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의 디딤판,
난간 및 핸드레일 설치

참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승강기 안전검사기준(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불필요한 장식적 형태는 적용하지 않고 구조 자체의 구조미를 살리며, 기능성 중심의 간결하고 개방감 있는 디자인을 적용			
	· 캐노피, 육교 등 주변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는 간결한 형태를 적용			
	· 보행약자 및 자전거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엘리베이터, 자전거경사로를 함께 설치			
	· 엘리베이터 입구에 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상부에는 우천 시 휠체어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캐노피를 설치하며, 휠체어사용자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높이에 버튼 및 난간을 설치			
	·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직형 구조의 펜스를 적용, 노약자를 위한 핸드레일을 설치			
색채재료	· 주변 환경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BG~PB, N계열의 채도 3 이하, 명도 6 이상의 색채 사용을 권장하며, 원색 또는 고채도의 색채 사용을 지양			
	· 시각적 개방감이 높은 유리 등의 투명소재를 사용하되, 고채도의 유리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사용은 지양			
	· 고풍택 금속소재는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 처리			
	· 엘리베이터 입구의 디딤판은 눈·비 또는 야간 사용자를 위해 미끄러지지 않는 마감재 사용			
	· 상징적 패턴 및 슈퍼그래픽 등의 적용 금지			
설치배치	· 보행동선과 가로환경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결정			
	· 엘리베이터 설치 시 보행약자를 배려하여 출입구와 보도를 수평으로 하며, 엘리베이터 전면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냉·난방 설비를 권고하고(증기난방, 고압온수난방 제외), 승강로 단면적의 1% 이상 면적으로 꼭대기 부분에 환기구를 설치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엘리베이터 설치기준을 반영			
유지관리	· 시설물 위치 관리번호 사용 시 도로명 기초번호를 적용하여 관리체계를 통일			
	· 먼지 제거가 용이하고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적용			
	· 보도육교의 펜스는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훼손 시 부분 교체가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			



간결하고 개방감 있는 디자인



자전거경사로 병행 설치



육교와 연결된 엘리베이터 설치

A. 도시시설물

심의대상

2.A.12

교량

도로나 철도 등과 같은 운송로 상에서 하천, 계곡, 호수, 해안 등을 건너거나 다른 도로, 철도 등을 통과할 목적으로 가설되는 구조물의 총칭이며,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하는 통행수단으로써 역할

기본방향

가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능적이고 조화로운 시설 계획하기

디자인 원칙

반광택 또는 무광택 소재 권장
장식적인 조형요소 또는 상징조형물 설치 지양
교량 조형물 등에는 백색 색상의 적용 권장



보도 및 자전거도로는 가로공간의 포장계획과 연계
차량용 방호울타리 및 교량용펜스 설치

참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주변경관의 특징을 고려하여 스케일이나 형태가 상호 조화되도록 조형적 가치보다는 설치되는 주변 공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체성 있는 디자인을 적용			
	· 원경, 중경, 근경 등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조망되는 이미지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			
	· 구조의 안전성을 위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형태 및 교각 설치 위치 등을 결정			
	· 과도한 장식적 요소는 적용하지 않되, 장소성을 강조하는 랜드마크 기능이 필요한 위치의 교량은 최대한 간결한 상징적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			
	· 시·군·구를 연결하는 도로나 하천에 설치되는 교량은 교량 간 이미지가 충돌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 및 연계			
색채재료	· 교량에 도색이 필요한 경우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BG~PB, N계열의 채도 3 이하, 명도 6 이상의 색채 사용을 권장			
	· 수변 또는 진입부는 백색 계열의 색상 적용을 권장			
	· 재료의 표면 이미지는 반사도가 높은 광택보다는 반광택 또는 무광택을 적용			
	· 설치지역의 기후조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내구성있는 재료를 적용			
	· 교량 외관에는 패턴 또는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슈퍼그래픽, 조형물 등의 적용을 금지			
설치배치	· 교량 위에 차도와 보도 경계부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교량 양변에는 보행자, 자전거가 교량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량용펜스를 설치			
	·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량 상부에 장식적인 조형요소 또는 상징조형물은 설치하지 않으며, 교각, 난간 등에는 광고물 및 장식물 부착을 금지			
	· 교량 상부의 보도 및 자전거도로는 연접한 가로공간의 포장과의 연속성을 고려			
	· 20m 간격으로 도로명 기초번호를 표시하고 시·군·구를 연결하는 도로나 하천에 설치되는 교량에는 지점번호를 표시			
	·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교각 및 펜스 등에 녹화 적용을 지양			
유지관리	· 친환경적인 재료를 적극 사용하여 자원을 절감하고 친환경 경관을 연출			



입체적이고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



연접한 가로공간과의 연속성 고려



교량 외곽부 이용자의 추락이나 이탈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교량용펜스(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A. 도로시설물

2.A.13

고가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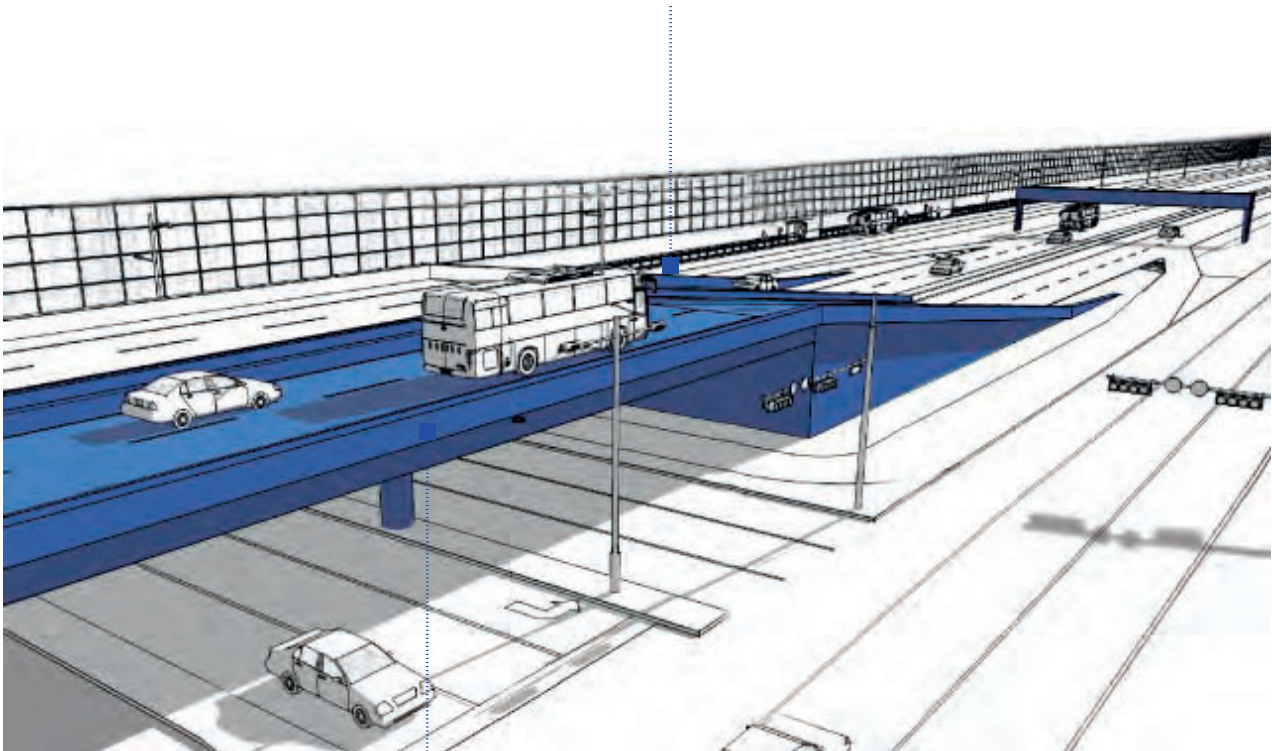
도로와 도로의 평면교차를 피하기 위하여 지면보다 높게 지대를 가설하고 그 위에 교량 형식으로 설치한 도로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군 내 주요 지역나 시·군 상호 간을 연결

기본방향

최소한의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하기

디자인 원칙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의 시설물을 부착 시
시설물 간의 높이, 위치, 간격 등을 고려하여 배치



친환경적인 재료의 적극적 사용 권장
사각지대 및 범죄취약공간이 되지 않도록 CCTV 및 조명 설치
유채색의 조명 및 동적인 움직임의 과도한 연출형 경관조명 지양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설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통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			
	· 조형적 가치보다는 주변 공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원경, 중경, 근경 등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조망되는 이미지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			
	· 인공적인 구조물로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구조물의 위치나 부피, 수량 등을 최소화한 디자인을 적용			
색채재료	· 도색보다는 노출콘크리트 및 재료 자체의 적용을 권장하며, 간결 패턴의 거꾸집을 적용			
	· 도색이 필요한 경우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BG~PB, N계열의 채도 3 이하, 명도 6 이상의 색채 사용을 권장			
	· 고가차도 하부의 과도한 이미지의 슈퍼그래픽이나 조형물 등은 설치 금지			
	· 고가차도 구간에 설치되는 가로등, 방음벽, 방호울타리 등 부속시설물은 디자인의 연속성 및 조화성을 고려하여 일관된 색채, 재료를 적용하며,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적용을 권장			
	· 야간에 다양한 색상의 조명연출이나 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과도한 경관조명은 사용 금지			
설치배치	· 하부공간에 자연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및 휴게 시설 등을 설치			
	· 하부공간이 사각지대나 범죄 취약공간이 되지 않도록 사람들의 주요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CCTV 및 조명을 설치하며, 공간구조의 특성상 위치확인이 곤란한 경우 방범시설과 함께 위치번호를 설치			
	·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의 시설물 부착 시 시설물 간의 높이, 위치, 간격 등을 고려하여 배치			
유지관리	· 시설물 위치 관리번호 사용시 도로명 기초번호를 적용하여 관리체계를 통일			
	·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위해 고가차도 및 하부 공간에 광고물 및 장식물 부착을 금지			
	· 미관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적극 사용하여 자원을 절감하고 친환경 경관을 연출			
	· 구조물에는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절별 이미지를 고려하여 벽면녹화의 직접 적용 금지			



노출콘크리트 재료 자체의 적용



하부공간을 산책로,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A. 도로시설물

2.A.14

입체교차로

동일한 평면도로에서 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를 달리해서 교차하는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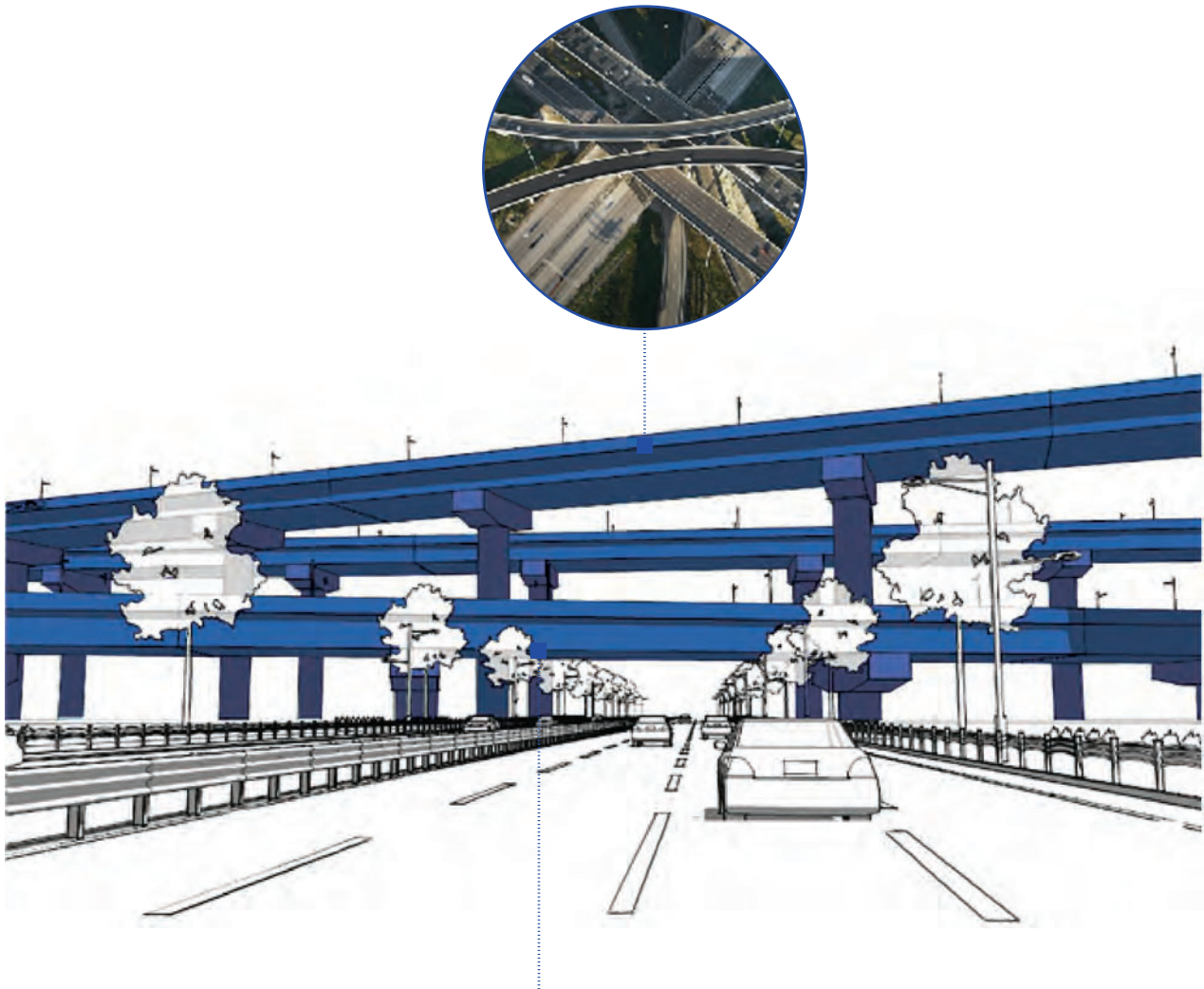
평면교차보다 이동거리가 길어 부분적으로 주행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지만 평면교차로로 인한 도로이용자의 지체비용보다 주행비용이 낮은 경우 입체교차로 계획

기본방향

가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능적이고 조화로운 시설 계획하기

디자인 원칙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벽면녹화 지양
간결한 형태 및 자연소재인 콘크리트 자체의 재료 이미지 적용 권장



입체교차로 거더부분에 색채 적용 시 주변 환경의 색채 이미지를 고려하여 적용
과도한 색채 및 패턴 또는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슈퍼그래픽, 공공미술 등의 적용 지양
유채색의 조명이나 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연출형 경관조명 지양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설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통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			
	· 원경, 중경, 근경 등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조망되는 이미지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하며, 측면 뿐 아니라 하부, 상부 등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적용			
	· 조형미를 강조하기보다는 주변 공간과 조화로운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			
	· 인공적인 구조물로서 위압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해 조경공간은 조성하지 않고,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개방적인 조망을 제공			
	· 부속시설물은 고가차도에 설치된 시설물 디자인의 조화성과 운전자 입장에서의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적용을 권장			
색채재료	· 도색보다는 노출콘크리트 및 재료 자체의 적용을 권장 단, 도색이 필요한 경우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BG~PB, N계열의 채도 3 이하, 명도 6 이상의 색채 사용을 권장			
	· 재료의 표면 이미지는 반사도가 높은 광택보다는 반광택 또는 무광택 소재를 권장			
	· 거더 부분의 색채 적용은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배경이 되는 주변 환경의 색채 이미지를 고려			
	· 과도한 색채 및 슈퍼그래픽, 장식용 조형물 등 적용을 금지			
	· 자원을 절감하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			
설치배치	·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기능성 중심의 조명계획을 수립하며, 원색의 조명연출 및 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연출형 경관조명 설치 금지			
유지관리	· 시설물 위치 관리번호 사용시 도로명 기초번호를 적용하여 관리체계를 통일			
	· 미관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			
	· 구조물에는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절별 이미지를 고려하여 벽면녹화의 적용을 금지			



노출콘크리트 자체의 재료 이미지 적용



거더 부분의 색채 적용 최소화

A. 도로시설물

2.A.15

지하(차/보)도

지하차도는 차량의 통행을 주 목적으로 하는 지하도로

지하보도는 주로 사람의 통행을 목적으로 도시의 평지부 지하에 설치하는 소규모 터널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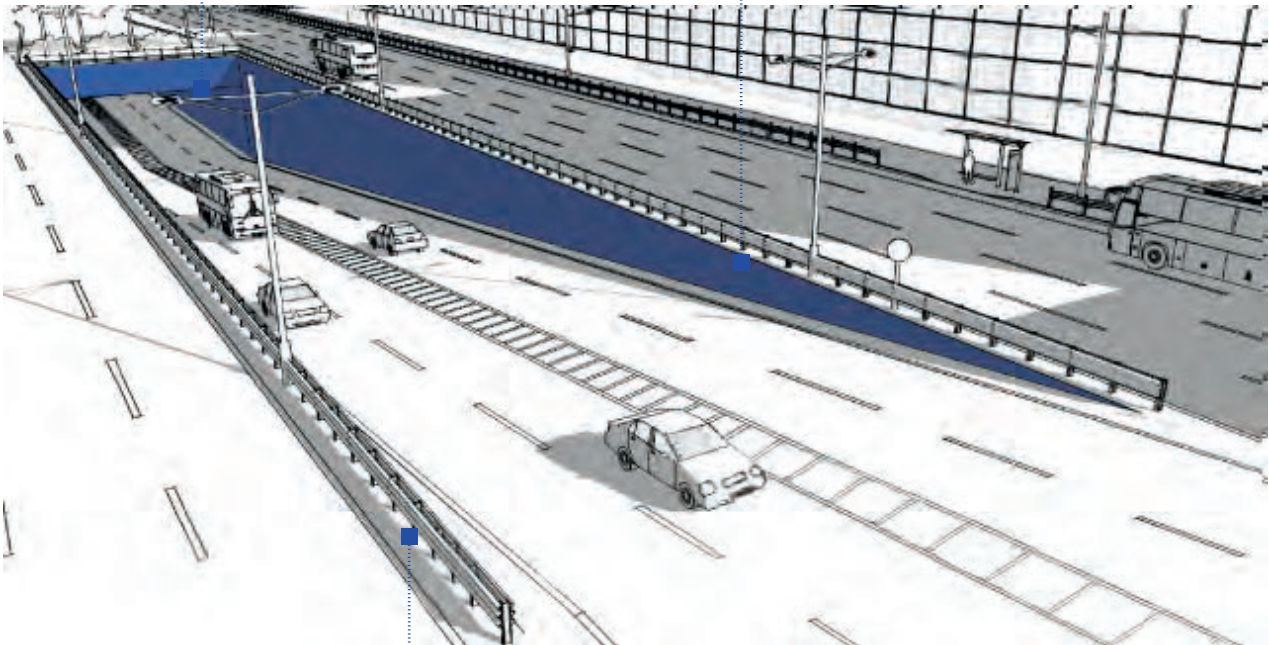
모두의 이용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 조성하기

디자인 원칙

간결한 형태의 출입구 디자인 지향
광고물 및 장식물 부착 지양



내부 마감재 및 배관 등 설비 보온재는 불연재료 사용 권장
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 방향과 각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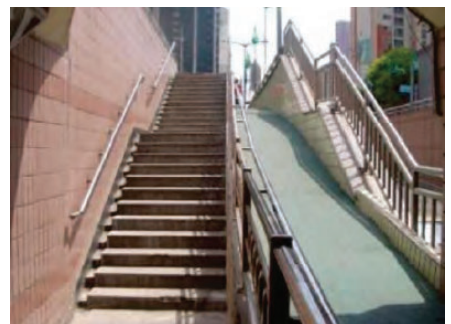
일반차도와 지하차도 경계부에 안전 방호울타리 설치
양등형 가로등 설치 권장
방호울타리 및 가로등은 지하차도 양변의 방호벽 위 설치

- 참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 인천광역시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설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통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			
	· 지하도 입면은 운전자의 시점을 고려하여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고 연속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돈된 디자인을 적용			
	· 지하도의 출입구는 장식적이고 복잡한 형태보다는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			
	· 일반차도와 지하차도 경계부에는 안전을 위해 개방적인 소재의 방호울타리를 설치			
	·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은 지하차도 양변의 방호벽 위에 설치하며, 시설물의 구조 및 하중,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			
	· 지하보도의 계단부에는 엘리베이터의 설치에 관계없이 자전거용 경사로를 병행하여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동반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			
색채재료	·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채도 3 이하, 명도 7 이상의 색채 사용을 권장하며, 원색의 과도한 색채의 적용은 지양			
	· 재료의 표면 이미지는 노출콘크리트 및 자연소재 그대로의 재료 및 반광택, 무광택 소재를 적용			
	· 입면은 2가지 이상의 재료 및 색채, 장식적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화된 패턴을 적용			
	· 상부에는 관목 또는 교목을 식재하여 친환경적인 이미지의 공간을 조성하되, 동절기를 고려하여 식재계획 수립			
	· 지하(차/보)도의 내부마감재 및 배관 등 설비의 보온재는 불연재료를 사용			



간결한 형태의 출입구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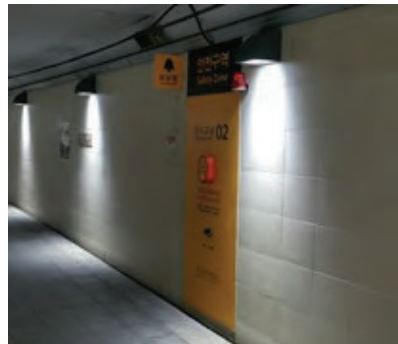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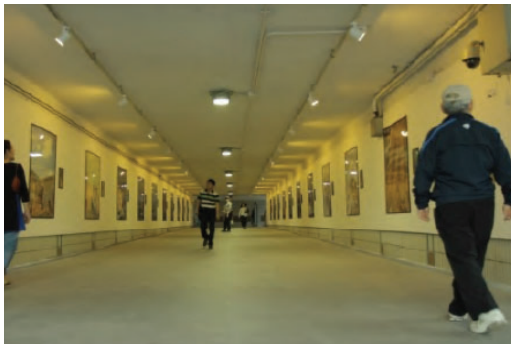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병행 설치

A. 도시시설물

2.A.15 지하(차/보)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설치배치	· 진출입부에 과도한 방음터널 또는 방음벽의 설치는 지양			
	· 지하(차/보)도에는 정돈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수막 및 장식물의 부착은 금지			
	· 야간 보행을 고려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폐쇄적인 지하공간의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조명 및 CCTV를 설치			
	· 조명 시설을 설치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 방향과 각도를 고려하여 디자인			
	· 시선유도시설 및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준수			
	· 지하차도와 일반차도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양등형 가로등을 설치하고, 펜스 등과의 통합설치를 권장			
유지관리	· 시설물 위치 관리번호 사용 시 도로명 기초번호를 적용하여 관리체계를 통일			
	· 조명기구에는 LED로 교체·확대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디자인을 적용			
	· 친환경적인 재료를 적극 사용하여 자원을 절감하고 친환경적인 경관을 연출			
	· 미관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명 및 CCTV, 비상벨 등 방범시설물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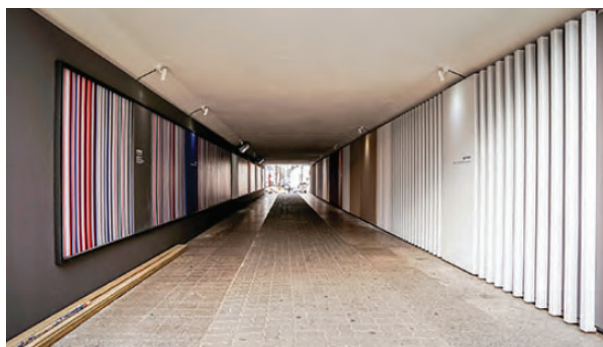
야간 보행을 고려하여 조명시설의 연속 설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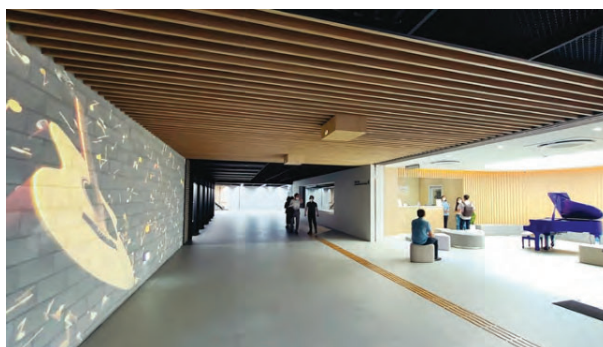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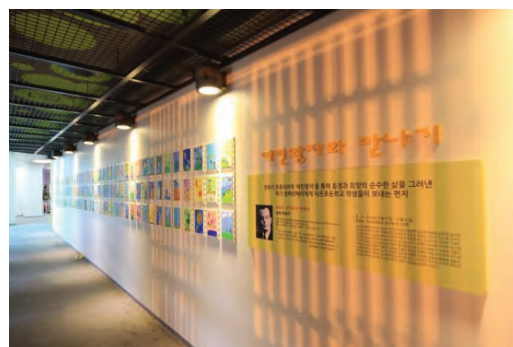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유휴공간에 휴게·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단순 통행 외에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을 권장			
· 인접 거리에 평행 횡단시설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이용량이 낮거나 쓰레기 불법투기와 청소년 비행 등 문제 발생이 잦은 지하보도는 가급적 폐쇄할 것을 권장			
· 지하보도의 설치기준 및 구조·방법,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인천광역시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여 설치			



인천색채를 활용하여 지하보도 공간 개선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지하보도 공간 개선



지하보도 내부에 공기정화 등 친환경시설을 이용하여 시민휴게공간으로 활용



A. 도시시설물

2.A.16

터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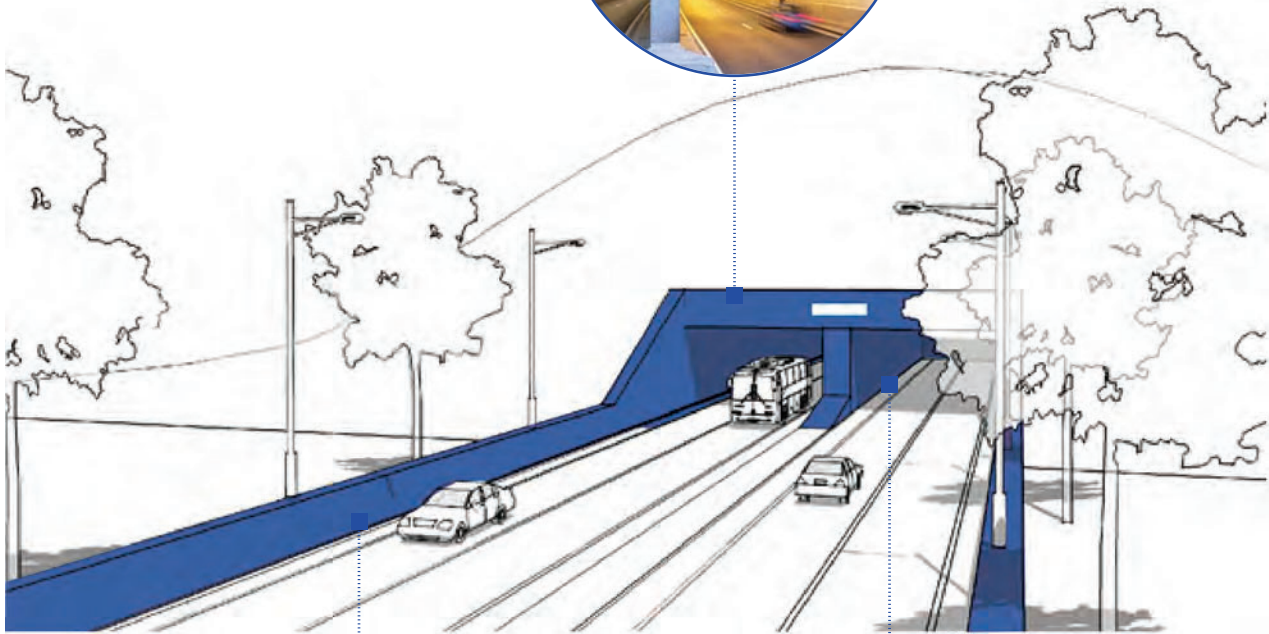
산, 바다, 강 등의 밑을 뚫어 만든 철도나 도로와 같은 통로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물

기본방향

인공요소를 최소화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기

디자인 원칙

터널 입구의 상부면에는 터널 명칭을 제외한
시설물, 장식물, 광고물 등의 부착 금지
터널 진출입부 절토면에 자연 식재의 적용 권장



터널의 내부마감재 및 배관 등
불연재로 사용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 설치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터널은
내부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음벽 및 CCTV 설치

- 참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설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통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			
	· 친환경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 터널 진출입부 절토면에 인공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자연 식재를 적용			
	· 터널 진출입부에는 지역의 상징적 조형요소 등 장식적이고 복잡한 형태를 지양하고 터널 내부와 연속적인 간결한 형태, 자연에 순응하는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			
	· 터널 내부의 밀폐감 및 위압감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내부 이미지 연출을 위해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 및 그래픽의 적용을 지양			
색채재료	· 터널 진출입부는 노출콘크리트 및 자연소재 그대로의 재료 및 반광택, 무광택 소재를 적용하며, 도색은 지양			
	· 원색 및 패턴 또는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슈퍼그래픽, 공공미술 등을 지양			
	· 테마형 터널 내부에 색채 적용 시,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채도 3 이하, 명도 7 이상의 색채 사용을 권장하며, 밝고 쾌적한 공간을 위해 과도한 패턴 적용을 최소화			
	· 내부마감재 및 배관 등 설비의 보온재는 불연재료를 사용			
설치배치	· 시선유도시설 및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준수			
	· 터널 입구의 상부면에는 터널 명칭이 외의 시설물, 장식물, 광고물 등의 부착은 금지			
	· 터널의 진입부의 기명사인 및 터널 내부의 안전관련시설 안내시설물을 설치하되, 정보 인지가 가능토록 최소화된 수량을 설치			
	· 조명기구는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노면 및 벽면의 휘도 분포가 균일하도록 설치			
	· 야간에 다양한 색상의 조명연출이나 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과도한 경관조명은 사용 금지			
	·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벨, 비상전화를 주요공간에 설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			
유지관리	· 시설물 위치 관리번호 사용 시 도로명 기초번호를 적용하여 관리체계를 통일			
	· 조명기구는 LED로 교체·확대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디자인을 적용			
	· 벽면청소 및 조명교체 등과 같은 유지관리를 위한 동선과 공간계획을 마련			
	· 미관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			



노출콘크리트 및 무광택 소재를 적용한 터널 진출입부



쾌적하고 깨끗한 내부 이미지 연출

A. 도시시설물

2.A.17

생태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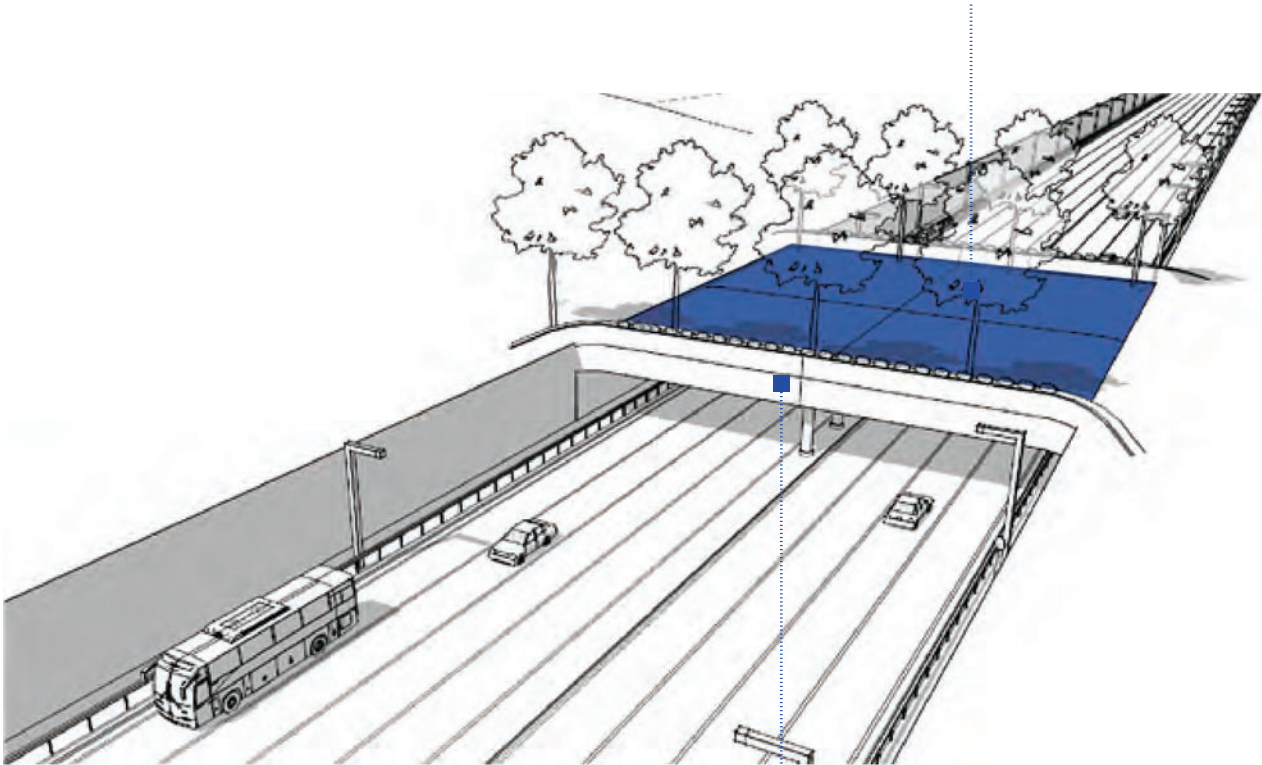
도로, 댐 등으로 인하여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 동·식물의 이동을 돕기 위해 설치하는 인공구조물로, 위치에 따라 선형·육교형·터널형으로 구분

기본방향

인공요소를 최소화하여 자연 환경에 순응하게 계획하기

디자인 원칙

도로의 현황 및 동물의 서식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를 통해 위치, 크기, 형태 등을 결정



인공적 구조물 최소화 및 벽면녹화 권장
고광택 소재 및 고채도 원색의 색채 사용 금지
유채색 조명 및 변화감 있는 조명연출 금지
동물들이 출현하는 지역의 표지판 설치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도로의 현황 및 동물의 서식 실태 파악을 통한 기초 조사를 통해 위치, 크기, 형태 등을 결정			
	· 주변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자연현황과 조화롭도록 인공적인 요소 및 구조물 최소화			
	· 입면 구조물에는 자연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식생환경을 고려하여 벽면녹화를 적용			
	· 인공적인 구조물의 부피감이 최소화되도록 장식적으로 복잡한 형태를 적용하지 않고, 간결한 형태를 적용			
색채재료	· 터널 외부의 주변 자연 환경에 순응하는 자연 소재 본연의 색채를 적용하며, 도색을 지양			
	· 생태통로 주변에 원색의 도색 및 패턴 또는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슈퍼그래픽, 공공미술 등의 적용을 금지			
	· 야생동물 시야 및 이동을 방해 할 수 있는 고광택 소재 및 고채도 원색의 색채 사용 금지			
	· 생태적인 측면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자연소재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내구성이 높은 소재를 적용			
	·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한 부분에는 장식적 요소를 최소한 거꾸집의 단순한 패턴을 적용			
설치배치	· 충돌사고가 빈번하거나 생태통로로 유도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를 적극 검토			
	· 생태통로 주변에 장소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동물들이 빈번하게 출현하는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			
	· 조명은 야생동물의 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조명구조의 변경 등을 통해 도로의 조명이 생태통로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			
	· 생태통로에는 유채색의 조명이나 색의 변화가 연출되는 경관조명연출 적용을 금지			
	· 차량 전조등 불빛의 차단을 위한 차광 벽 또는 차광식생 등을 조성			
유지관리	· 시설물 위치 관리번호 사용 시 도로명 기초번호를 적용하여 관리체계를 통일			
	· 조명기구는 LED로 교체·확대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디자인을 적용			
	· 미관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			



벽면녹화로 인공적 요소 최소화



교각방식의 인공 구조물을 최소화한 공법 사용

A. 도로시설물

2.A.18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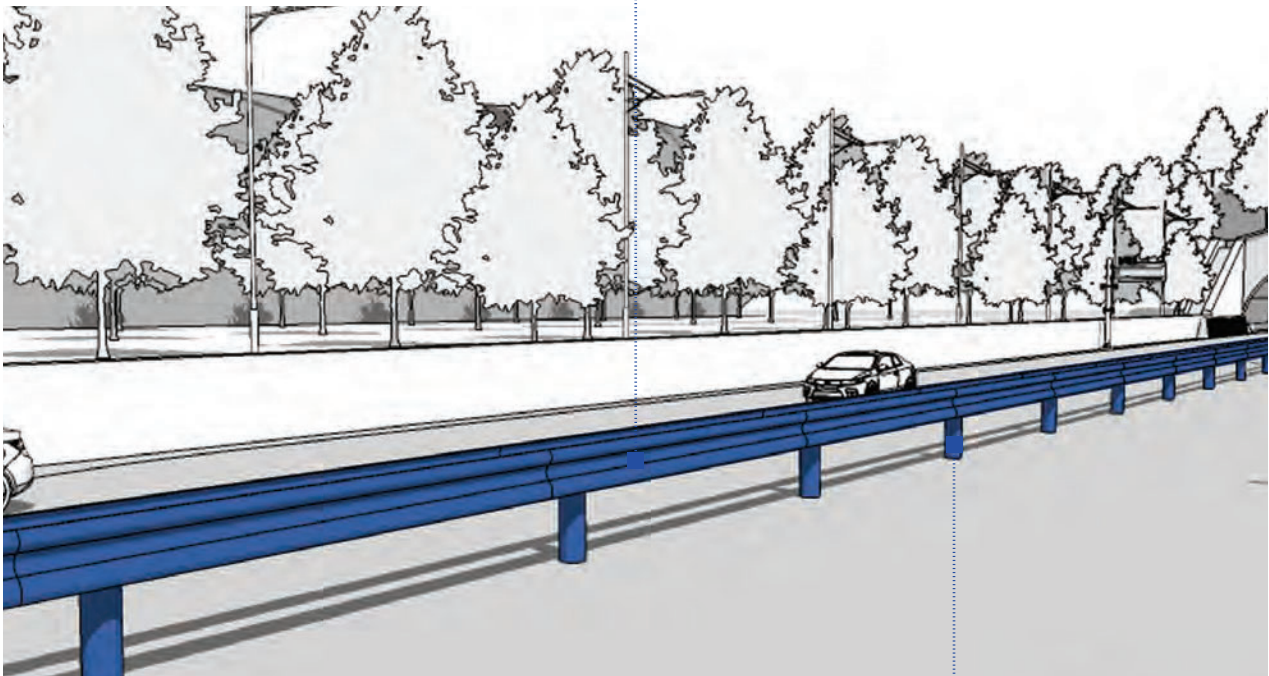
왕복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대향차도 쪽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중앙의 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도로시설물로, 주행 경로 이탈 방지 및 차량 충돌에 의한 충격흡수 기능

기본방향

운전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안전한 시설 설치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사용 권장
고광택 금속재료의 사용 지양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지닌 색채 사용
강도와 내부식성, 내구성이 높은 재료의 선택 권장



바닥과의 접합부 정교한 마감
경사면에도 수직(90°) 설치

참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가드레일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기준 준용			
	· 설치 장소의 도로·교통 조건, 경제성, 미관,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			
	· 기능 위주로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모서리 및 마감 부분을 둥글게 처리하며,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적용을 권장			
	· 유지관리 및 시공의 편의성을 위해 모듈화된 구조를 적용하고, 최소폭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준수			
	· 과도한 패턴의 적용 및 구·군 로고, 교통안전구호 등 반복적인 도안이나 문구 표기 금지			
색채재료	· 시선유도 효과를 감안하여 무채색 계열의 명도 6 이하의 색채 사용을 권장하며, 설치 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자연 소재 적용을 권장			
	· 차량의 충돌에 대비하여 강도 및 내구성이 우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			
	· 야간에 운전자의 식별을 위해 반사띠를 부착하되, 반사도료나 반사체의 남용에 주의			
설치배치	· 인천 내 교통사고 사고다발 지역 중 횡단보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의 무단횡단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 등에 우선 설치			
	· 지주는 지면에 대해 수직으로 설치			
	· 넓은 도로의 경우는 연속형 분리대를 적용하여 잔디, 수목 등의 식재 등 자연요소를 도입			
	· 녹지형 중앙분리대는 수고 높이를 조절 등을 통해 입체적인 식재를 계획			
	· 사고다발지역에 운전자 및 보행자 모두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 분리대와 함께 사고위험지역의 사인을 설치			
	· 야간에 중앙분리대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 장애물 표적표지, 구조물 도색 등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며, 중앙분리대의 단부와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선유도봉과 충격 흡수시설 등을 설치			
	· 도로 및 교통 상황이 동일한 구간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는 부득이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설치하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준수			
	· 접촉 등으로 인한 손상, 녹 발생 등 도막 손상이 심화될 시 신속하게 재도장 등 조치			
유지관리	· 사고 및 재해로 변형 또는 파손 등 기능 유지가 어려운 경우, 신속하게 복구 조치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의 중앙분리대



야간에 운전자의 식별을 위해 반사체 부착



입체적 식재를 적용한 녹지형 중앙분리대

A. 도시시설물

2.A.19

석축, 옹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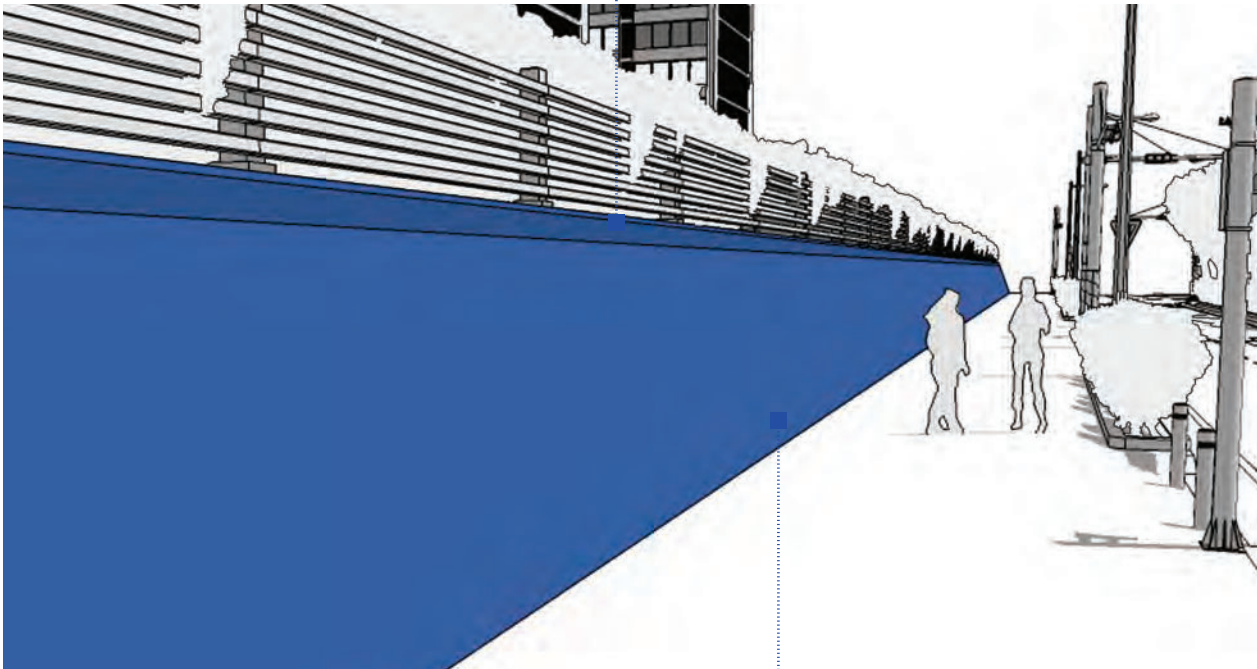
토사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로, 무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돌, 벽돌 등으로 나뉘며, 콘크리트 구조물, 자연석 쌓기 등의 형태로 설치

기본방향

경관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디자인 원칙

300㎡ 초과 시 2가지 이상의 재료나 패턴 조합
자연친화재료 및 식생 적용을 권장



높이 3m 이상의 옹벽을 설치할 경우
전면에 폭 1m 이상의 화단 및 차폐 식재 적용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높이는 사면 안전 확보를 위해 최소화하여 적용			
	· 3m 이상의 높은 콘크리트 옹벽은 가급적 지양하고, 환경친화적인 비탈면 공법을 사용			
	· 높이 3m 이상의 옹벽 설치 시, 전면에 폭 1m 이상의 화단 설치 및 차폐 식재를 적용			
색채재료	· 도색보다는 노출콘크리트 및 자연소재 그대로의 재료 적용을 권장 단, 도색이 필요한 경우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BG~PB, N계열의 채도 3 이하, 명도 6 이상의 색채 사용을 권장			
	· 옹벽면에 조화롭지 못한 장식적인 패턴의 과도한 사용, 원색 위주의 슈퍼그래픽, 지나친 돌출 요소는 지양			
	· 자연친화 재료 및 식재를 적용하고, 식재 적용을 위한 격자 구조물 적용 시 외벽 마감재 색채와 유사한 색채를 적용			
	· 옹벽의 면적이 300㎡를 초과하면 최소 2가지 이상의 재료나 패턴을 조합한 입면 연출을 통해 위압감을 완화			
	· 원도심 대로변의 노후화된 옹벽의 경우, 미관개선을 위해 색채 개선 및 자연소재, 식재를 적용			
설치배치	·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에 대한 안정성 검토			
	· 옹벽은 3m 미만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담쟁이 등 덩굴식물의 식재를 권장			
	· 최소 2m의 유효보호폭이 확보된 도로에 설치된 옹벽의 경우, 보행자들을 위한 벤치 및 그늘쉼터 등 휴게시설과의 연계를 고려			
	·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시각적 연출을 극대화하되, 과도한 색상 및 움직임의 연출 지양			
	· 야간 보행을 고려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조명 및 CCTV를 설치			
유지관리	· 배수구는 유출수의 흔적이 옹벽에 누적되지 않도록 수직방향 음각에 설치			
	· 미관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			



자연소재 그대로의 재료 적용



자연요소와 연계한 식축



색채, 재료, 식재를 조합한 옹벽 입면 연출로 미관 개선

A. 도로시설물

심의대상

2.A.20

방음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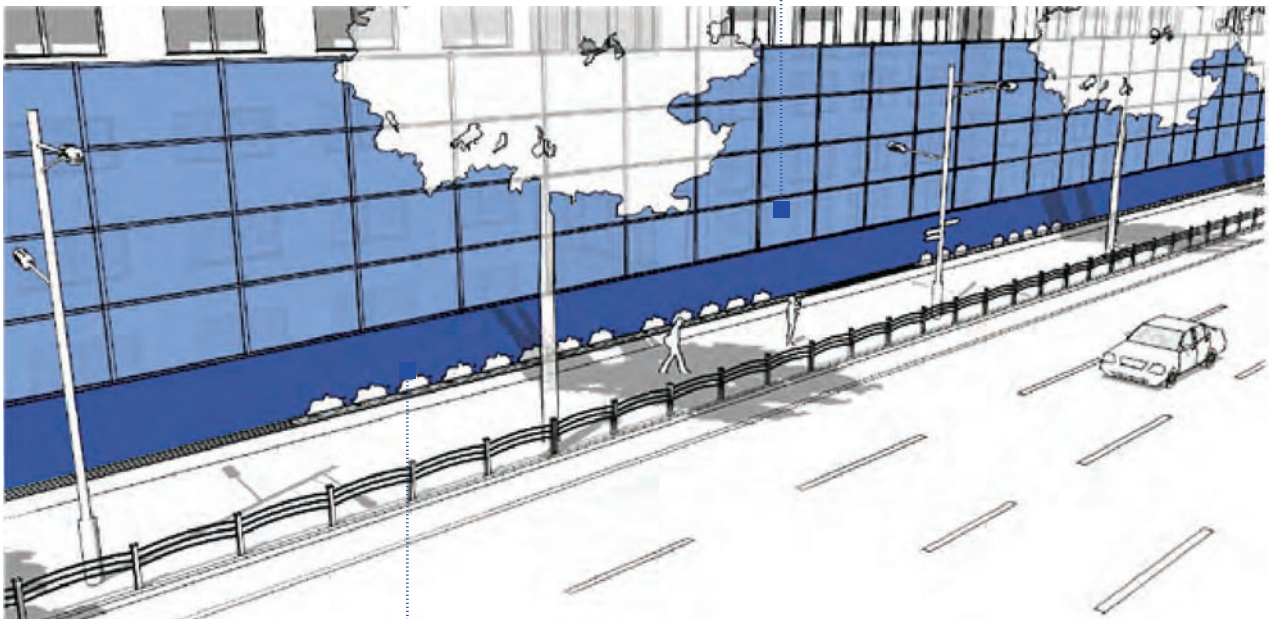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나 실내에서 다른 곳으로 발산되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벽
주로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에 설치되며, 도시미관 및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기본방향

경관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능적 디자인인 우선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사용 권장
조망, 일조, 채광 등을 고려한 투명한 재료 권장
최소한의 구조와 단순한 형태 지향



녹지대나 화단 등의 조성 및
타 시설물과의 기능 통합 지향

참조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환경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방음성능을 우선으로 기능적 형태를 반영, 설치물의 풍하중 검토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 다만,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시각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과도한 방음벽 계획은 지양			
	· 연속된 구간의 시각적 일관성을 위하여 동일한 형태, 최소한의 구조와 단순한 형태를 적용			
	· 획일적인 형식의 기성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적용을 권장			
	· 높이 차이의 발생이 불가피할 때 시각적 균형감을 주도록 방음벽 높이를 완만하게 조절			
	· 야간 조명 또는 식물과 연계가 가능할 경우 조명, 식재 적용을 권장			
색채재료	· 주변 구조물 및 시설물과 유사한 채도 3 이하, 명도 6 이상의 색채 사용을 권장하며, 원색 또는 고채도의 색채 사용을 금지하고 목재 등 자연소재의 경우 재료 자체의 색채 활용			
	· 불필요한 장식과 과장된 패턴 적용 및 여러 재료의 불필요한 혼용을 금지			
	· 조망, 일조, 채광 등을 고려하여 무광택 도장 및 투명한 소재의 방음벽을 설치 투명소재 적용 시 적절한 버드세이버 또는 버드가드(조류 충돌 방지 디자인)를 적용			
	· 설치지역의 기후조건 및 특색을 고려한 재료를 선택			
설치배치	· 방음벽 및 방음터널의 설치를 최소화하고 설치 장소별(주택지역, 학교지역, 간선도로변 등) 차이를 고려하여 방음벽의 설치 종류 및 규모를 적용			
	·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방음벽은 설치 금지			
	· 보행 가로변의 방음벽은 설치하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화감을 완화하기 위해 입면 녹화와 방음림을 조성			
	· 가로에 면하는 학교, 공동주택 등은 가능한 대지경계선 안쪽으로 일정한 거리를 이격하고 녹지대나 화단을 조성			
유지관리	· 시설물 위치 관리번호 사용 시 도로명 기초번호를 적용하여 관리체계를 통일			
	· 방음벽의 구조는 부분적으로 유지·보수가 용이한 모듈구조를 적용			
	· 방음벽에 대한 청소 및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수립·적용			
	· 방음벽에 벽면녹화를 할 때 식물의 성장 및 사계절의 이미지 변화를 고려하여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최소한의 구조와 단순한 형태 적용



위화감 완화를 위해 방음림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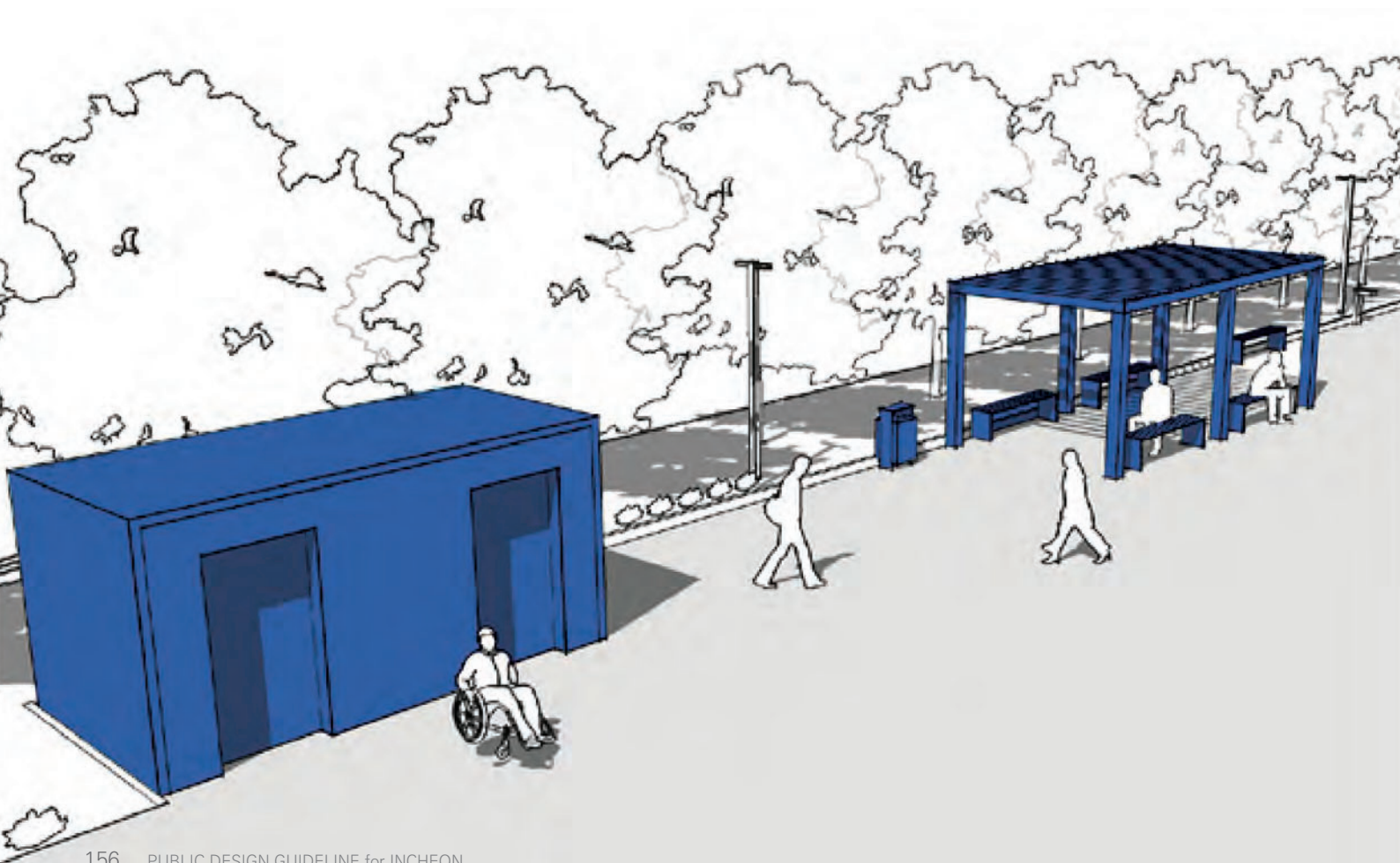
투명 방음벽에 무늬 적용(실크스크린 기법의 버드가드)

B

편의시설물

중점사항

- | | |
|--|---|
| <p>01 생활안전 및 보행안전 확보하기</p> | <p>노약자 및 고통약자의 이용편의, 범죄예방을 고려한 형태
미끄럼방지 및 내습성이 있는 재료로 안전성 확보
야간의 안전성을 위해 진입로 및 출입구 주변 조명시설 설치</p> |
| <p>02 도시조화성 및 정체성, 지속가능성 고려하기</p> | <p>인체치수를 고려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적용
지역의 특색 및 경관을 고려한 색채 및 재료의 적용
타 시설물과의 결합을 통한 공간 확보</p> |



세부구성

- 편의시설물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보행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장치 및 시설물이다.
편의시설물은 벤치 및 파고라, 그늘쉼터 등 휴게시설물, 휴지통 및 음수대, 공중(간이) 화장실 등 위생시설물, 가로판매대 및 관광안내소 등 판매·정보시설물로 구분한다.

- 가이드라인의 세부구성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분류코드	종분류	세부 구성	
2.B.1	벤치		
2.B.2	파고라		
2.B.3	휴지통		
2.B.4	음수대	·형태구조	·설치배치
2.B.5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색채재료	·유지관리
2.B.6	관광안내소		
2.B.7	공중(간이)화장실		
2.B.8	그늘쉼터, 횡단보도쉼터		

- 편의시설물의 기능 및 목적에 따라 8개 대상으로 세분화하며, 형태구조, 색채재료, 설치배치, 유지관리 등 세부요소로 각각의 지침을 제시한다.

관련법규 및 문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조경설계기준
관광안내소 매뉴얼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B. 편의시설물

심의대상

2.B.1

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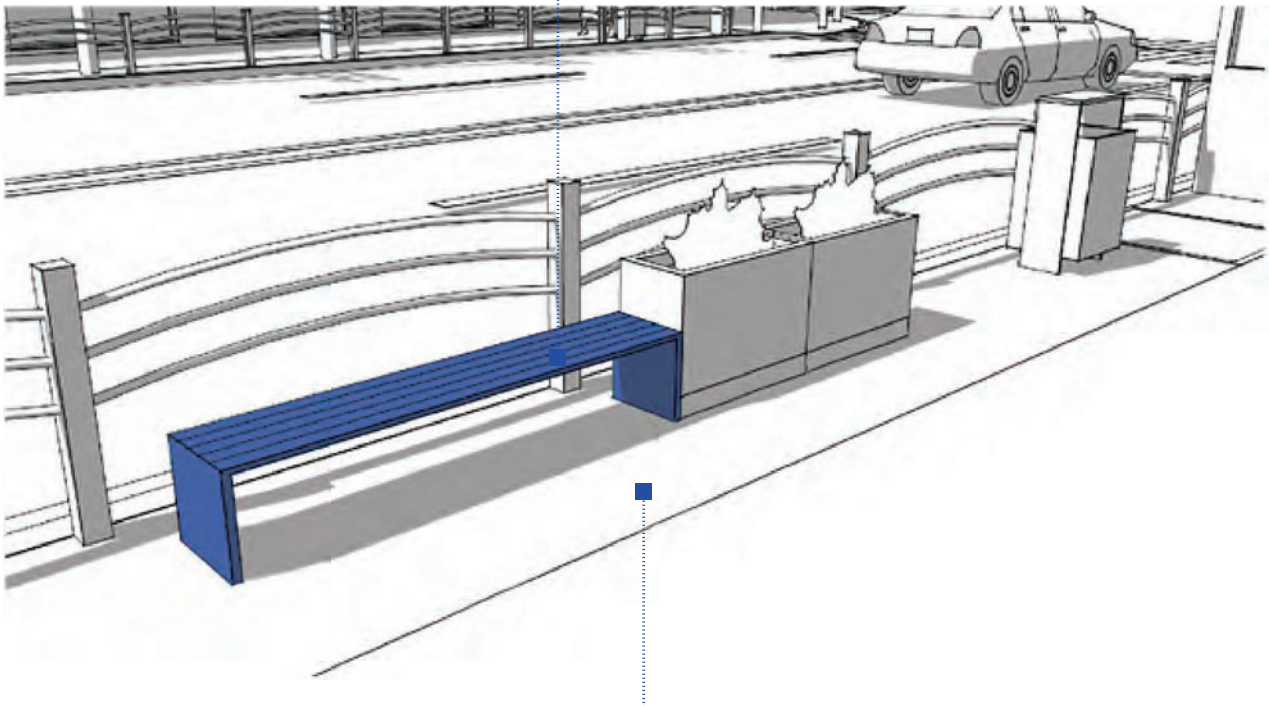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의자로, 휴식, 독서, 대화, 사색, 기다림, 식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일반적인 가로시설물이자 통합편의시설물의 기본적인 요소로써 중요한 의미

기본방향

공간 및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적용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사용 권장
벤치의 설치 높이는 400~450mm로 설치
벤치 좌대는 차가운 금속 재료 지양
우천 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를 고려



보행로에 설치할 경우,
주 보행동선에서 600m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

- 참조**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통계청)
 조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기능적이고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을 지향하며,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적용을 권장			
	· 보행약자 및 노약자 등 모두를 고려하여 구조 결정 시 인체치수를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하며, 벤치의 설치 높이는 400~450mm 정도로 설치			
	·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하여 300~320mm 높이의 벤치 병행 설치 권장			
	· 등받이의 설치여부는 현황 및 공간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를 배제			
	·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신체와 접촉하는 모든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고 장식 및 고정부 노출 지양			
	· 공원·광장형 공원 및 광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 콘셉트와 조화를 고려하되 과도한 장식적 형태는 지양			
	· 수변형 경관 조망 및 이용자의 휴식을 위해 등받이형의 형태 설치를 권장하며, 수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간결하고 개방적인 형태를 적용			
	· 특화공간 테마와 연계된 조형적 요소의 활용이 가능하며, 디자인 적용 시 반드시 공공디자인 심의 추진			
색채재료	· 주변 환경 및 시설물과 어울리는 재료를 선택하되, 앓음판은 석재 및 차가운 금속 재질의 사용을 지양하고 목재 적용을 권장			
	· 내구성이 약하고 유지관리 및 색상 변질의 우려가 있는 소재는 지양			
	· 재료 자체 색의 활용을 권장하고 페인트 도장 마감은 지양 페인트 도장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사용을 권장하며, 주변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채도 4 이하, 명도 3~7의 색채를 적용하고 원색 또는 고채도의 색채 사용 금지			
	· 수변공간 자연소재 및 투과 소재를 적용하며, 색채 적용 시 무채색 계열 및 백색 색상의 적용을 권장			
	· 해안공간 염해에 대비하여 내식성이 뛰어난 재질 및 사용을 최우선으로 고려			



휴식을 위한 간결한 형태의 등받이형 디자인(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B. 편의시설물

심의대상

2.B.1

벤치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설치배치	· 벤치 주변에 보행자 동선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			
	· 산책로나 가로변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하며, 폭 2.5m 이하의 산책로변에는 1.5~2m정도의 포켓공간을 만들어 배치하거나 경계석으로부터 최소 600mm 이상 이격하여 배치			
	· 경사지 설치는 지양하며, 앉음판은 반드시 수평을 유지			
	· 우천 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를 고려하여 적용			
	· 공원형 보행 취약자가 산책 중에 손쉽게 접근하여 휴식할 수 있도록 50~100m 간격으로 설치 권장			
	· 수변형 급경사지, 습음지, 강풍지역, 비위생지역, 공해지역에 설치를 금지하며, 난간이 설치된 위치 또는 공원 안쪽으로 설치			
	· 음수대, 휴지통 등 위생시설물과의 통합은 지양하되, 화단, 가로화분대 등 녹지시설물과의 기능 통합을 통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 조명시설과 인접한 장소에 설치를 권장하며, 필요한 경우 조명시설과 통합설치를 고려			
유지관리	· 기능성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파손 및 노후화를 방지			
	·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부분적인 교체가 용이한 구조 및 접합 방법, 간결한 시공 등 적용			



가로변에서 포켓공간을 만들어 벤치 설치



화단 및 조명시설과 통합설치



다방향 통행이 가능한 공간에 간결한 평벤치 설치(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 참조**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통계청)
 조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기타	스마트 벤치	· 동절기 시 앉음판의 온열기능을 권장		
		· 태양에너지 사용을 통한 휴대기기 무선 충전, 공공와이파이 사용 등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기능 권장		
		· 노숙 방지 및 고령자 이용 편의를 위해 손잡이형 벤치 설치 권장		
		· 좌대면에 그래픽 적용 시 실사이미지, 과도한 원색 및 고채도의 색채 사용을 지양 하며,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하되,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협의를 통해 적용		



손잡이형 벤치



좌대면에 간결한 그래픽을 적용한 온열벤치



태양광을 활용한 스마트 벤치

B. 편의시설물

심의대상

2.B.2

파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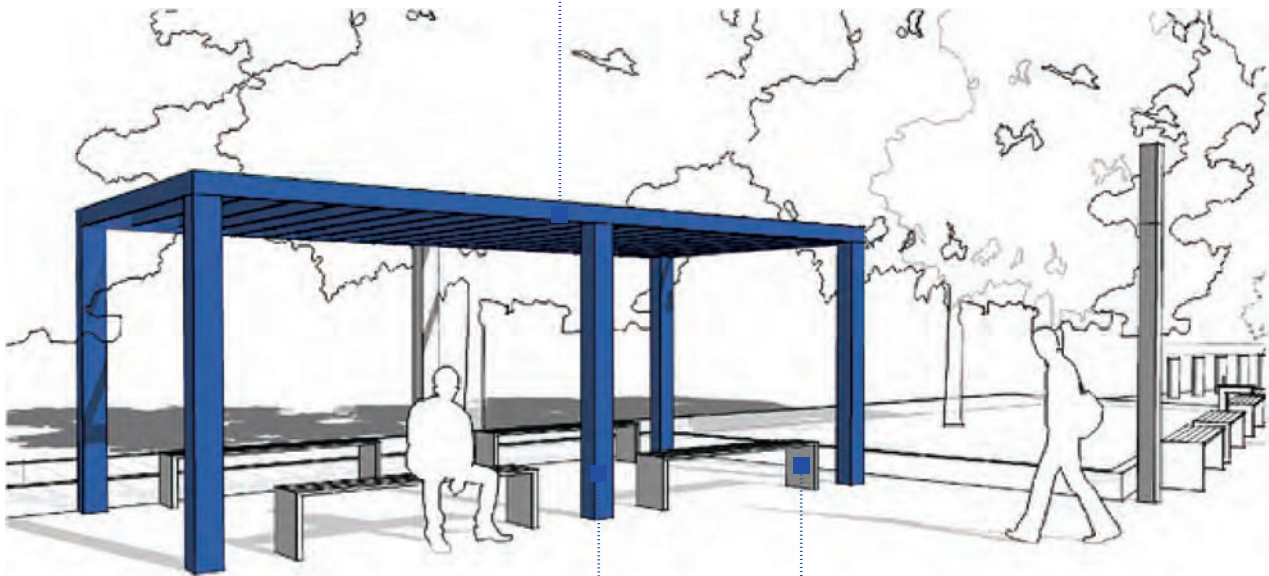
시민들의 휴게·편의 목적으로 공공공간에 설치한 지붕이 있는 휴게시설물
차양 및 미관을 위해 덩굴성 식물, 짚, 천 등이 활용

기본방향

구조와 형태를 최소화하여 모두가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통합 계획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사용 권장
구조와 형태의 최소화 및 개방성 확보
그늘막 조성을 위하여 상부 녹화 권장



기타 휴게시설물과의
기능 통합

최대한 얇고 간결한 형태의 기둥 적용
바닥재는 보도와 동일한 마감재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적용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불필요한 구조를 최소화하고 설치물의 풍하중을 검토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			
	· 공간의 성격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 및 시설물과 조화로운 형태를 지향하며,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적용을 권장			
	· 구조와 형태를 최소화하고 개방성이 확보되는 형태를 권장하며, 보행약자 및 노약자 등 모두를 고려하여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지향			
	·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신체와 접촉하는 모든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고 장식 및 고정부 노출 지양			
	· 천장 부분의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투명재질 또는 식생을 권장하며, 설치여부는 현황 및 공간을 고려하여 적용			
	· 낙엽 등의 퇴적 등을 고려하여 청소 등 지속가능한 유지관리계획을 함께 검토 권장			
	· 벤치와 통합설치하며, 시설물 간 디자인의 통일성을 확보			
	· 공원·광장형 공원 및 광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 콘셉트와 조화를 고려하되, 과도한 장식적 형태는 지양			
	· 수변형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적 형태를 적용			
	· 특화공간 테마와 연계된 조형적 요소의 활용이 가능하며, 디자인 적용 시 반드시 공공디자인 심의 추진			
색채재료	·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지닌 자연 소재 그대로의 색채 사용을 지향하며, 페인트 도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사용을 권장 이 경우, 주변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채도 4 이하, 명도 3~7의 색채 사용을 권장하고, 원색 또는 고채도의 색채를 사용 금지			
	· 유지관리에 용이하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권장하며, 목재부는 재료 고유의 색채를 유지			
	· 주변 환경 및 시설물과 어울리는 재료를 선택하며, 차가운 금속 재질은 지양			
	· 해안공간 염해에 대비하여 내식성이 뛰어난 재질 및 사용을 최우선으로 고려			



개방성이 확보되는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파고라와 디자인 통일성을 확보한 벤치를 통합 설치

B. 편의시설물

심의대상

2.B.2

파고라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설치배치	· 이용자의 편의성과 가로환경을 고려한 설치장소를 선택			
	· 공원이나 광장 내 그늘이 부족한 공간에 설치를 권장하되,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파고라의 설치를 최소화하며, 파고라 대신 식재를 활용할 것을 권장			
	· 놀이터, 수공간 등 장시간 머물며 활동하는 공간 주변에 설치를 권장			
	· 시각적 차폐나 은폐공간이 형성되지 않도록 배치			
	· 기둥은 최대한 얇은 형태로 적용하며, 바닥재는 보도와 동일한 마감재를 정교하게 적용			
	· 시설물 주변에 무장애구간 1.2~1.8m 정도의 활동공간을 확보			
	· 야간안전을 위해 가로등 및 보행등의 인접 설치 또는 직접 조명을 설치			
	· 휴지통 등 위생시설물과의 통합설치는 지양			
	· 공원·광장형 주변의 수목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그늘이 만들어지는 공간 주변으로 설치를 권장하되, 단절된 공간의 설치 금지			
	· 수변형 급경사지, 습음지, 강풍지역, 비위생지역, 공해지역에 설치를 금지하며, 난간이 설치된 위치 또는 공원 안쪽으로 설치			
유지관리	· 기능성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파손 및 노후화를 방지			
	·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부분적인 교체가 용이한 구조 및 접합 방법, 간결한 시공 등 적용			



시각적 차폐나 은폐공간이 형성되지 않도록 배치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기타	· 파고라와 함께 벤치, 야외탁자를 함께 설치 시 어린이나 노약자 등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높이나 형상 등이 다른 다양한 디자인의 설치를 고려			



휠체어사용자의 접근을 고려한 야외탁자



천장부 등에 식생을 활용

넓은 공간에 파고라 대신 식재를 활용



공간과 연계한 특화디자인 적용

B. 편의시설물

심의대상

2.B.3

휴지통

외부공간에 설치되어 쓰레기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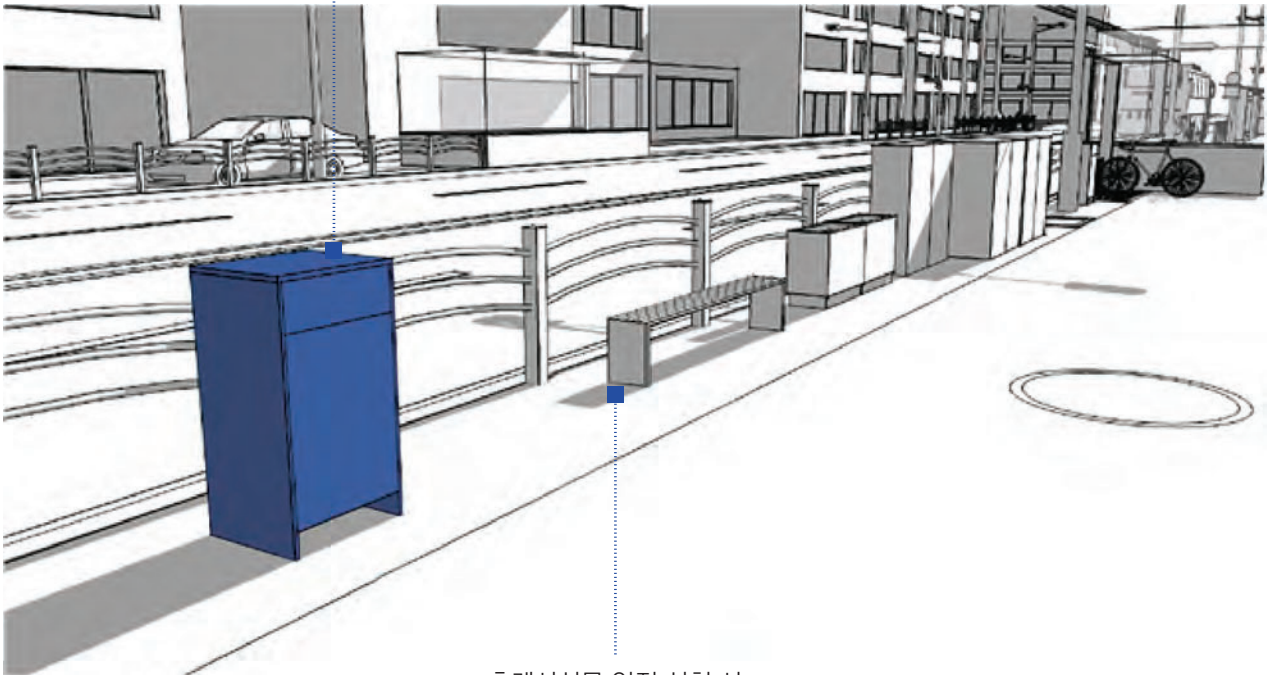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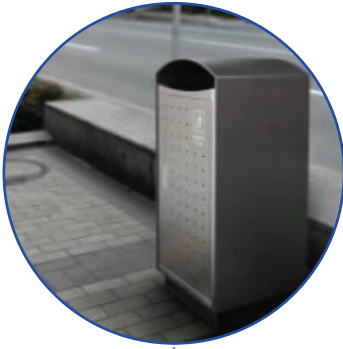
효율적인 쓰레기 관리를 통해 도시미관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

기본방향

쓰레기 적치를 방지하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사용 권장
뚜껑 및 여닫이 등이 풍압에 견딜 수 있으며
동물의 내부 접근을 막을 수 있는 형태
불필요한 구조 최소화
설치물의 풍하중을 검토하여 구조적 안정성 확보



휴게시설물 인접 설치 시
사용자에게 불편감을 주지 않도록
최소 900mm 이상 적정거리 유지

참조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통계청)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수거, 청소, 관리 및 분리수거 등과 함께 공공가로의 이미지를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하며,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을 권장			
	· 쓰레기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 투입 및 수거가 편리하며, 통풍 및 건조가 용이한 디자인을 적용			
	· 쓰레기 적치행위 및 우천 시 오염, 투척 방지를 위해 투입구의 상부가 노출된 형태는 지양하며, 곡면형 또는 기울기가 적용된 덮개가 있는 디자인을 권장			
	· 뚜껑 및 여닫이 등이 풍압에 견딜 수 있게 하고 내부 수거통을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			
	· 오염 및 훼손에 대비하여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기능에 따른 분절, 돌출부 등은 최소화			
색채재료	· 무채색 계열의 명도 6 이하의 색채 사용을 권장하며, 원색 및 과도한 장식요소, 그래픽은 적용 금지			
	· 시각적 혼란을 유발하는 반사성 재료 및 고광택 재료는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 처리 권장			
	· 화재, 충격, 부식성, 내구성에 강한 재료를 적용하며, 도장 시 친환경도료, 무광도료를 사용			
설치배치	· 이용자의 보행동선, 가로환경을 고려하여 쓰레기 발생 예상 지역 검토 후 적절한 수량 설치			
	· 휴게시설물에 인접 설치 시 사용자에게 불편감을 주지 않도록 최소 900mm 이상 적정거리를 유지			
	· 가로등, 펜스 등 타 시설물과 통합하여 설치하되, 벤치 등 휴게시설물과의 통합 설치 금지			
	· 투입구의 높이는 한국인 평균 허리높이 약 1m를 기준으로 설치			
유지관리	· 시설물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오염에 강하고 청소가 용이한 재료를 적용			
	·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부분적인 교체가 용이한 구조 및 접합 방법, 간결한 시공 등 적용			



쓰레기 적치를 방지하기 위해 상부 곡면 적용



통풍 및 건조가 용이한 디자인



시설물 간 적정거리를 이격하여 설치

B. 편의시설물

심의대상

2.B.4

음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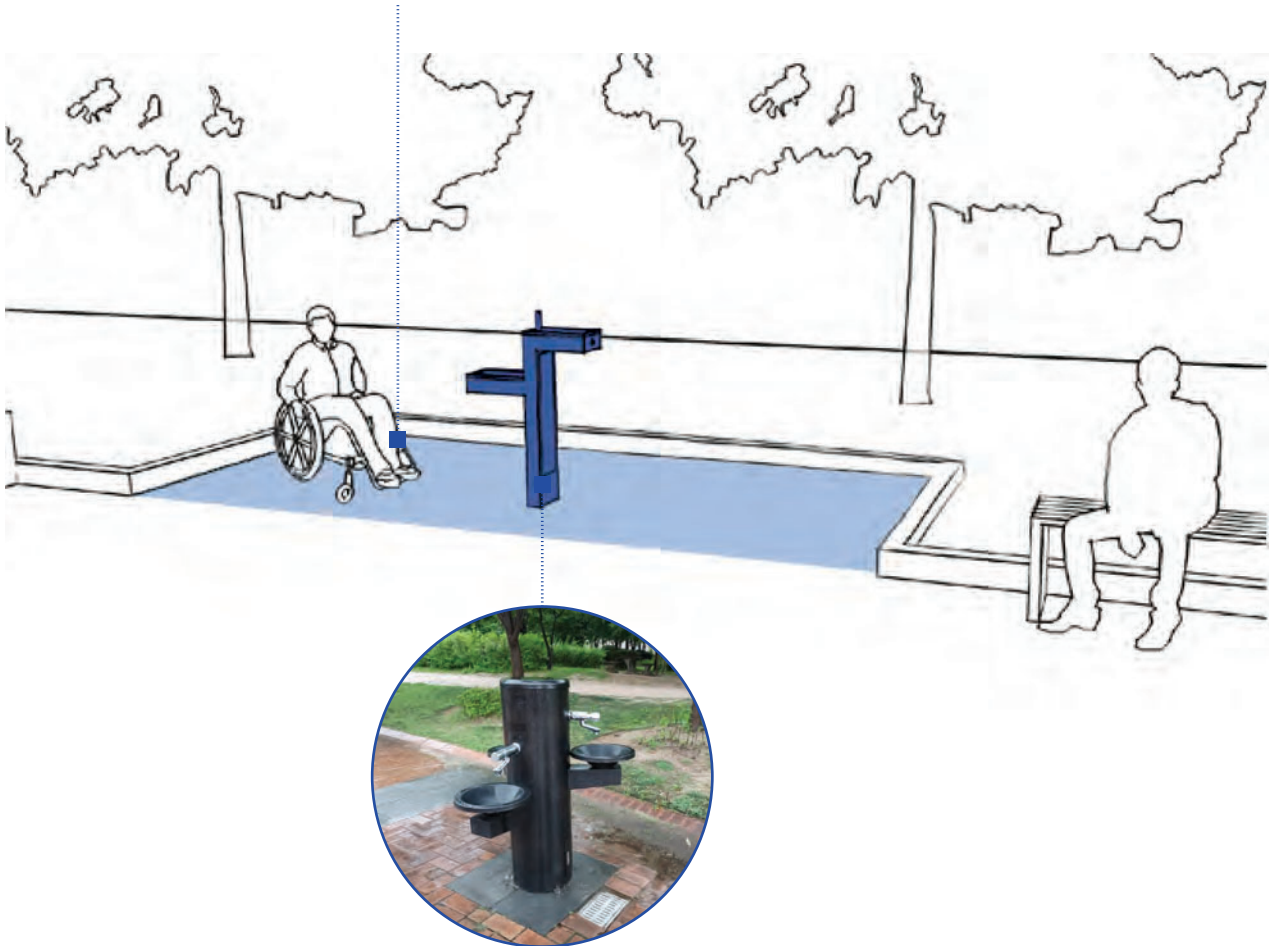
공원, 광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된 식수를 제공하는 위생시설물

기본방향

다양한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태 및 공간 계획하기

디자인 원칙

- 어린이와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 고려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650mm 이상 하부 공간 확보
- 유모차 등을 둘 수 있는 여유공간 확보



- 재료 자체의 색채 그대로 사용
- 부피를 최소화 한 간결한 형태
- 시설물 하부 및 주변부 바닥 미끄럼방지 재료 사용
- 직접적인 하수구 노출 지양
- 물받이의 원활한 배수 고려

참조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통계청)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설치장소의 특성을 반영하되, 기능성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부피감 및 설치면적을 최소화한 간결한 형태를 적용			
	· 노약자, 어린이, 휠체어사용자 등이 높게 설치되어 있는 음수대에 접근 및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인체공학적 디자인 및 여러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하단 높이는 650mm 이상, 깊이 450mm으로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			
	· 어린이, 휠체어사용자가 급수전에 도달하기 위해 분출구의 높이를 바닥면부터 700~800mm 이내로 설치			
	· 이용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신체와 접촉하는 모든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고 장식 및 고정부 노출 지양			
	· 물받이의 원활한 배수를 고려하여 경사각을 적용			
	·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자동센서를 설치하며, 시각장애인과 함께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수동식으로 병행 설치하는 것을 권장			
색채재료	· 표면 훼손 및 동파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물이 직접 닿는 수전, 트렌치, 표면 등은 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강한 재료를 적용			
	· 재료 자체의 색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광고물 및 장식물 부착, 과도한 장식, 슈퍼그래픽, 공공미술 등은 적용 금지			
	· 시설물 하부 및 주변부 바닥에 미끄럼 방지 재료를 사용			
설치배치	· 사용자에게 불편감을 주는 하수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위생 및 공해의 문제가 있는 곳에는 설치 금지			
	·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하되, 지나치게 두드러지지 않도록 설치			
유지관리	· 센서 또는 자동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물의 낭비를 방지하고, 버려지는 물의 재활용 방안을 모색			
	· 시설물의 청결을 위해 오염에 강하고 청소가 쉬운 재료를 적용			



여러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양한 높이의 분출구



B. 편의시설물

심의대상

2.B.5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간이판매시설로서 이동, 설치가 비교적 용이한 소규모 상점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보행가로변에 위치한 식품, 신문, 생활잡화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판매시설을 가로판매대로 지칭하며, 가로변에 구두 수선을 전문으로 하는 가로점포를 구두수선대로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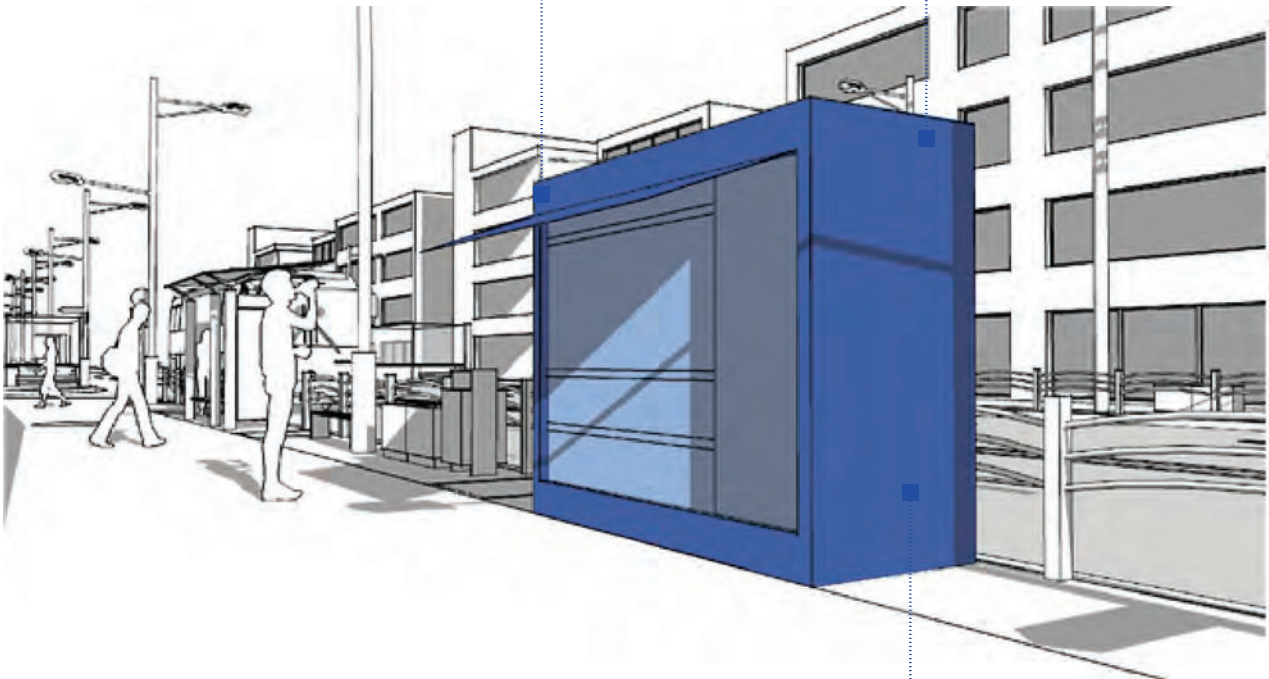
기본방향

인천시의 일관된 거리경관을 위해 표준디자인 적용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적용
간결한 형태와 색채 적용

관리번호 및 가로판매대 픽토그램 등
일관된 시각적 요소 적용 권장



측·후면을 활용한 광고 및 이미지 패널의 설치 권장
허가된 광고물 및 홍보물 이외에는 외부 부착 및 설치 금지
경사지 설치 지양

참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불필요한 구조를 최소화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간결한 형태를 적용하며, 원칙적으로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적용			
	· 보행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형태로써 보행 폭을 고려하여 가로 및 측면 폭을 설정			
	· 판매 및 이용자의 접근성, 내부설비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			
	· 측·후면을 활용한 광고 및 이미지 패널 설치 시 면적의 1/4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며, 허가된 광고물 및 홍보물 이외에는 외부 부착 및 설치를 금지			
색채재료	· 외부 오염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무채색을 사용			
	· 내구성이 강한 스틸(철재)을 사용하고 내마모성이 우수한 무광도장으로 표면을 마감			
	· 해안공간, 도심지역 설치지역의 기후조건을 고려한 재료를 선택			
설치배치	· 이용자의 편의성 및 보행 안전과 가로환경을 고려하여 주변에서 잘 보이는 곳에 보행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설치			
	· 협소한 가로공간을 고려하여 가로화분대나 인접 공공건축물 조경구역 등 다른 공간 및 시설과 연계·통합해서 배치			
	· 설치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관련 장비의 접근이 용이한 개방적인 공간에 설치			
	·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사용에 용이하도록 배려			
	· 구두수선대의 경우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기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것을 권장			
	· 판매대의 바닥면과 보도의 높이가 같도록 설치하며, 경사지에는 설치 금지 단, 불가피한 경우 경사도를 고려한 설치방식 및 형태를 선택하여 설치			
	· 관리번호 및 가로판매대 픽토그램 등을 일관된 체계로 구성하여 부착			
유지관리	· 가로판매대에 사용되는 조명은 고효율의 LED 램프를 사용			
	·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디자인으로 유지 및 보수 용이성을 확보			



가로판매대 표준디자인



구두수선대 표준디자인

시설물색(주조색)	강조색
기능색1-Gray (ICC-공공2)	강화갯벌색 (ICC-공공1)
시설물색(내장색)	시설물색(지붕색)
첨단미래색 (ICC-공공3)	기능색2-White (ICC-공공4)

B. 편의시설물

심의대상

2.B.6

관광안내소

방문객에게 관광 관련 편의 및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물로, 건축물형과 부스형으로 구분

건축물형 : 2실 이상의 공간이 있는 중규모의 관광안내소로써, 관광관련 정보 제공, 민원 처리의 시설 외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마련

부스형 : 임시설치 성격이 강한 소규모의 관광안내소에 해당

기본방향

다양한 사용자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기

디자인 원칙

지역의 특색 및 경관을 고려한 색채 및 재료
간결하고 개방적인 구조와 형태
인천 및 관광지 상징색채 및 픽토그램 적용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LED나 LCD를 이용한
정보 전달과 음성 서비스 기능을 겸비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높이에 설치

노약자 및 보행약자의
이용을 위한 휴게시설 통합 설치

- 참조**
- 관광안내소 매뉴얼(문화체육관광부)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 인천상징아이콘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및 옹골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최대한 간결한 형태로 개방적인 구조를 지향			
	· 관광지 과도한 전통적 형태의 모방을 지양하고, 자연소재 적용 및 색채의 정온화로 일관된 경관을 연출			
	· 역사 문화모티브의 키오스크 및 안내소에 통합 아이덴티티 구축을 권장			
	· 표준디자인 개발·적용을 권장하며, 지역의 특색 및 역사·문화자원을 고려하여 지역 정보의 제공이 용이한 특화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적용			
색채재료	· 상징 아이콘 등 인천광역시에서 공통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미지 및 해당 관광지를 상징할 수 있는 색채 및 픽토그램을 적용			
	· 소재 자체 색채의 활용을 권장하며, 페인트 도장 마감은 지양 단, 페인트 도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색채 사용을 권장			
	· 주변 환경 및 타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시각적 공해가 적은 무채색 또는 저채도 색채 사용을 권장하며, 과도한 색채 및 장식, 광고물 부착을 지양			
	· 그래픽 요소는 알아보기 쉬운 명료한 서체와 크기, 색채를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및 옹골(274p)] 참고			
	· 시각적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투명재질의 사용을 권장하며, 무채색 외의 고채도 색유리 사용은 지양			
	· 내구성이 강한 스틸(철재)을 사용하고 내마모성이 우수한 무광도장으로 표면을 마감			
	· 특화공간 역사적 장소 및 특화지역의 경우, 지역의 특색 및 경관을 고려한 색채 및 재료를 적용하여 역사문화공간의 통합된 이미지 구축을 권장			



간결한 형태의 개방적인 구조



자연소재 및 색채 정온화 적용

B. 편의시설물

심의대상

2.B.6

관광안내소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설치배치	· 관광객의 보행접근이 용이한 역사, 광장, 공원 등의 주요 공공장소 및 관광지에 인접하여 배치할 것을 권장			
	· 단순한 투시형 구조로 디자인하고 관광객의 주요 이동 동선 및 눈에 잘 띄는 공간에 설치			
	· 안내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로 계획하고, 대지가 협소할 경우에는 주변 공공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			
	· 보행자의 이동 및 시선연결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보행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배치			
	· 보행약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공간에 설치하며, 주변에 안내시설물을 설치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를 권장			
	· 노약자 및 보행약자의 이용을 위해 관광안내소 주변에 휴게시설 설치를 권장하며,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설치			
	· 조명시설에 인접하여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조명시설과 통합설치를 고려			
	· 비상상황 시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임시보호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비상전화기, 응급·재난대비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를 권장			
	· 다국어표기의 안내표지물을 설치하고, 다양한 정보 검색이 가능한 검색대 설치를 권장			
유지관리	· 오염물 제거가 용이하고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재료의 선택을 고려			
	· 훼손 시 부분 교체가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			



알아보기 쉬운 명료한 서체 및 픽토그램 적용



다양한 정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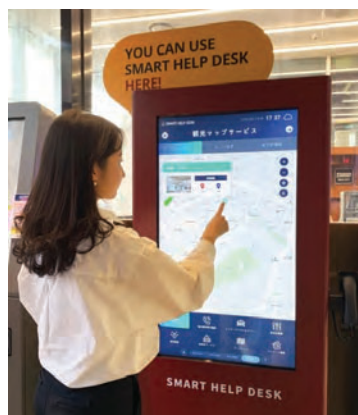


참조

관광안내소 매뉴얼(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 인천상징아이콘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기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기타	무인키오스크	· 무인 관광정보 키오스크의 설치 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LED나 LCD를 이용한 정보 전달과 음성 서비스 기능을 부가		
		· 무인 관광정보 키오스크의 조작부는 일반 사용자와 휠체어사용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되, 높이의 조절이 가능한 구조 권장		



무인 관광정보 키오스크



휠체어사용자 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높낮이 조절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음성 안내 서비스 및 점자 디스플레이 제공

B. 편의시설물

심의대상

2.B.7

공중(간이)화장실

옥외공간에 단독으로 설치된 간이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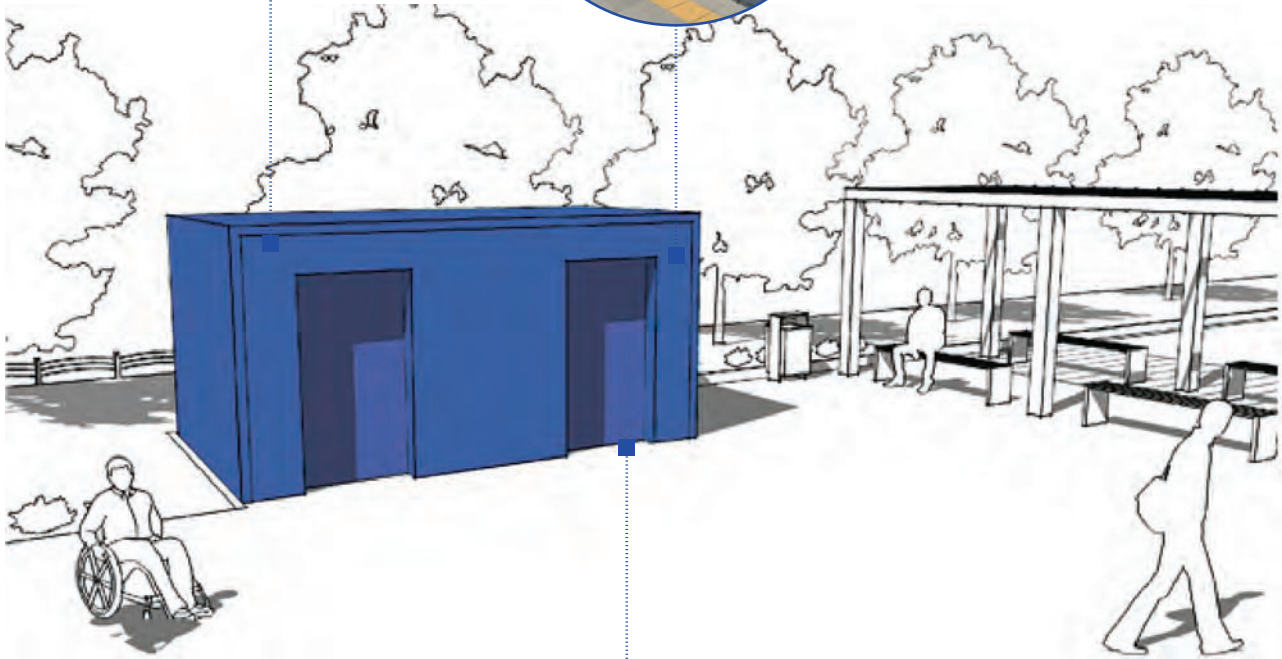
기본방향

접근하기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기

디자인 원칙

시설물을 쉽게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간결한 픽토그램 등을 사용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적용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색채
환기, 통풍 및 자연채광이 용이한 디자인



1m 이상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출입구 폭 확보
노약자 및 보행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한 무단차 출입구
단차가 발생할 경우 경사로 설치 권장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고 내습성이 있는 재료로 안전성 확보

- 참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주변 공간 및 시설물과의 통일성을 고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권장			
	·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에 알맞은 개성있는 디자인을 적용하되, 과도한 장식적 요소의 적용은 지양			
	· 이용자가 시설물을 쉽게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적용 등의 간결하고 명료한 시각정보디자인을 적용하며,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사용을 권장			
	· 관광지 과도한 전통적 형태의 모방을 지양하고, 자연소재의 적용 및 색채의 정온화로 일관된 경관을 연출			
	· 관광지 역사·문화자원 및 관광지의 시설물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통합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을 권장			
	· 출입구는 다양한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폭을 최소 1m 이상 확보하고, 위험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			
	· 출입구 부분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주변 경관과 유사한 간결한 형태를 적용			
	· 노약자 및 보행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출입구 문턱을 없애 바닥과의 단차를 주지 않으며, 단차가 발생할 경우 경사로를 설치			
	· 악취의 발생을 막기 위해 환기, 통풍 및 자연채광, 배수가 용이한 디자인을 적용			
색채재료	· 주변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색채 사용을 원칙으로 채도 4 이하, 명도 3~7의 색채 및 자연소재 그대로의 색채를 권장하며, 원색 또는 고채도의 색채 사용을 금지			
	· 반광택, 무광택 소재를 적용하며, 반사소재의 적용은 지양			
	· 바닥재는 미끄러짐이 없고 내습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확보			
	· 녹지공간 공원 또는 녹지경관에 설치 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재료 및 그와 유사한 색채의 적용을 권장			
	· 특화공간 지역의 특색 및 경관을 고려한 색채 및 재료의 적용을 권장			
	· 해안공간 염해에 대비하여 내식성이 뛰어난 재질 및 사용을 최우선으로 고려			



픽토그램을 통한 간결하고 명료한 디자인



공원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재료 적용



진입로 무단차의 경사로 설치

B. 편의시설물

심의대상

2.B.7

공중(간이)화장실

설치배치

- 교통량 및 보행량이 많은 곳에 설치하며, 급경사지, 습음지, 강풍지역, 비위생지역, 공해 지역에 설치를 금지
- 보행약자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적 공간 및 주변에서 잘 보이는 공간에 설치
- 시설물의 수직,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
- 화장실 출입구는 남·녀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고, 외부로부터의 시각적 차단이 가능하도록 계획
- 남녀화장실의 분리설치 시, 출입구에서 남녀 사용자의 동선과 시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설계
- 보도에 설치 시, 설치 규모와 개수를 최소화
- 공중화장실 조성 시 장애인전용화장실 설치를 권장하며, 별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장애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전용 화장실로 계획
- 장애인용 화장실의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 야간 이용의 안전성을 위해 진입로 및 출입구 주변에 조명시설, CCTV 등의 방범시설물을 설치
- 여자 화장실을 중심으로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외부에는 비상벨과 연계된 경광등 및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
- 공중화장실의 내부장치는 1.2m 이하 눈높이에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휠체어사용자도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 영유아동반자를 위한 기저귀교환대와 접이식 탈의대, 영유아거치대 등 설치를 권장하며, 기저귀교환대는 바닥면으로부터 상단 850mm 이상, 하단 650mm 이상으로 설치
- 지역 문화·관광 행사 개최 시, 행사규모에 적합한 개수의 이동형 간이화장실의 설치를 권장
- **수변공간** 수변의 경사로 및 수변 근처에는 간이화장실의 설치를 금지하며, 난간이 설치된 위치 또는 공원 안쪽에 설치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야간 이용의 안전성을 위해 조도 확보



기저귀교환대, 영유아거치대 등을 설치



화장실 범죄예방 비상벨 설치(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 참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유지관리	· 공중화장실 실내마감은 오염에 강하고 청소가 쉬운 재료를 적용 ·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및 관리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 · 오염물 제거가 용이하고 불법광고물 등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이용자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시행		
기타	·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마감재 및 안전·편의시설의 일관된 계획 수립 · 고령자, 보행약자 등의 이용이 많은 장소는 미끄럼방지용 타일 마감, 낙상방지 안전손잡이 설치 등을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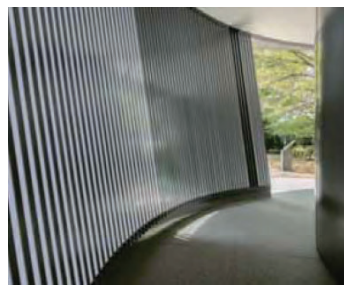
화장실 안내표지 표준디자인



공중화장실 외부시설물 설치가이드라인(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채광과 환풍을 고려한 구조



자연채광 등 쾌적성을 고려한 내부시설



화장실 내 밝은 조도 확보



낙상방지 안전손잡이 설치



B. 편의시설물

2.B.8

그늘쉼터, 횡단보도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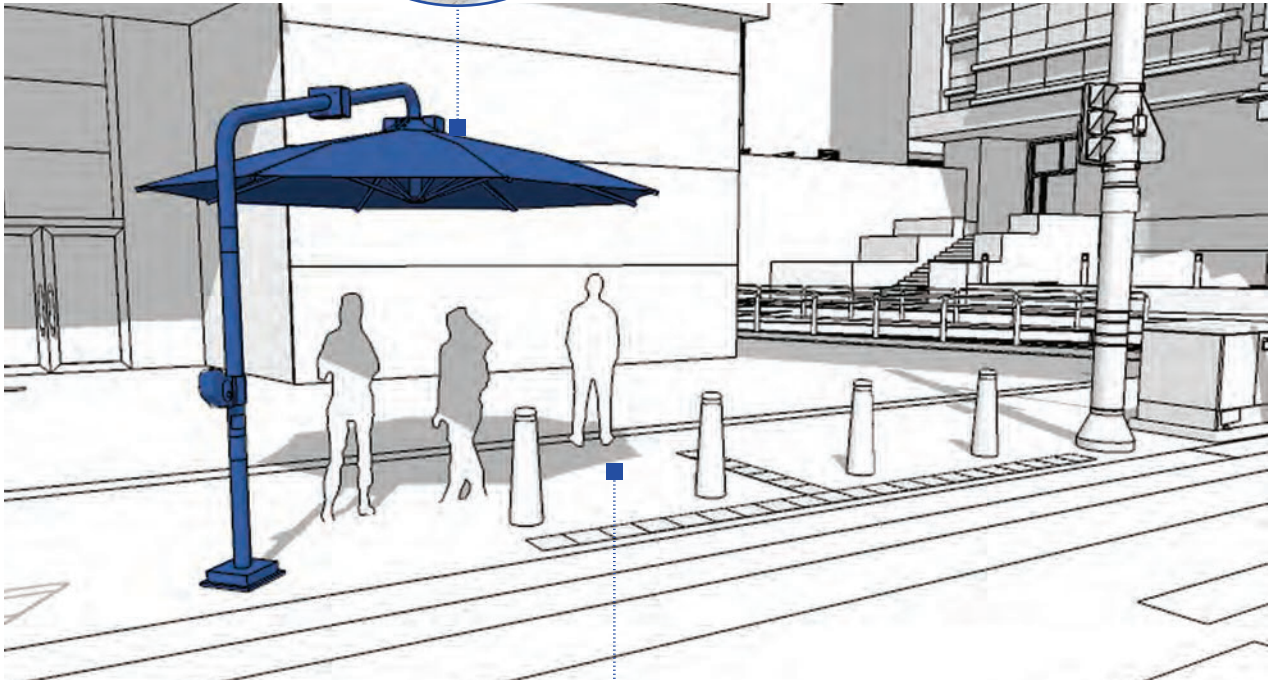
폭염 및 우천 시 등의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보도, 공원, 횡단보도 등에 고정 또는 가변적으로 설치하여 보행자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물

기본방향

그늘을 만드는 최적의 위치 및 규모로 설치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및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사용 권장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부피감 및 설치면적 확보
지역 특화시설물로 개발 시, 지역의 스토리 또는 안내정보 등 통합 적용



설치 현장의 도로폭 및 유형 고려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유효보도폭 확보
사각지대 및 범죄우려가 있는 곳은 설치 금지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통로형, 벽부착형, 휴게형 등 설치 현장의 도로폭 및 유형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 및 방식을 적용하되,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디자인			
	· 가로공간에 설치 시, 개방성을 위해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지붕과 벤치를 적용하고, 부피감 및 설치면적을 최소화한 간결한 형태 권장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또는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의 적용을 권장			
	·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여 고정형으로 설치하되, 이동가능성도 함께 고려			
	· 간결한 패턴 및 조형요소를 적용하여 거리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하며, 필요 시 형태나 설치위치에 따라 지역의 스토리 또는 안내정보 등을 제공하는 용도로 통합하여 사용			
	· 보행 방해 및 미관 저해와 함께 상업광고물의 난립을 초래하는 함체형(ㄱ자 포함) 횡단보도 쉼터 디자인은 금지			
색채재료	·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색채 및 재료를 적용하고 개방적인 소재 및 친환경적인 재료를 권장			
	· 인천색 활용을 권장하며, 작은 면적 활용 시 도장 마감을 허용하나, 3가지 이상의 색상 및 원색적인 색채, 과도한 장식적 요소는 적용 금지			
설치배치	· 폭염 및 우천 시 등을 대비하여 보행자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도, 공원 등에 고정 또는 가변적으로 설치하되, 보행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설치			
	· 신호등 앞 또는 대기 장소에 횡단보도 이용자들을 위한 그늘막 설치를 권장하며, 그늘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사고에 주의하고 보도폭이 3m 미만인 경우 설치 금지			
	· 식재로 자연스럽게 그늘이 형성되는 공간은 휴게벤치를 설치하여 쉼터로 제공			
	· 사각지대 및 범죄우려가 있는 곳에는 설치를 금지			
	· 조명과 함께 설치하거나 주변 조명의 활용이 가능한 위치에 배치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공간의 현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가능토록 벤치 등의 휴게시설, 정보안내시설 등을 통합 배치			
	· 오염물 제거가 용이하고 불법광고물 등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유지관리	· 유지관리에 용이한 재료를 적용하여 정돈된 마감처리			



그늘막 표준디자인



스마트 횡단보도 그늘막



공원 내 그늘쉼터



C

녹지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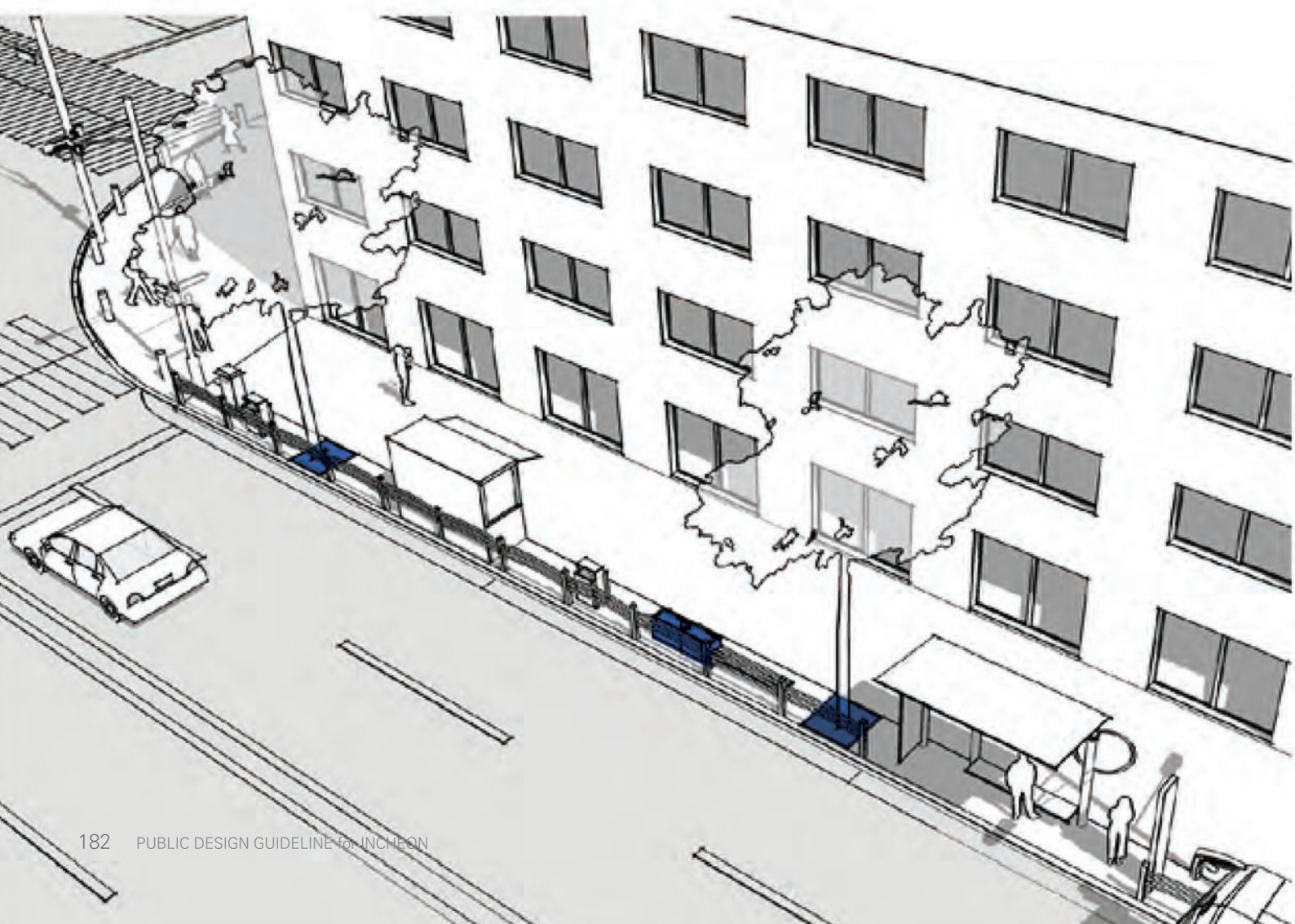
중점사항

01 생활안전 및 보행안전
확보하기

보행공간의 폭, 높이를 고려한 설치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마감 처리

02 도시조화성 및 정체성,
지속가능성 고려하기

불필요한 구조 및 장식요소 최소화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료 및 구조, 시공



세부구성

- 녹지시설물은 도시경관 및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보행가로 및 광장 등 보행이용량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수목 및 가로수의 보호·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이다. 녹지시설물은 가로화분대, 가로수(수목)보호덮개, 분수대 등으로 구분한다.

- 가이드라인의 세부구성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분류코드	중분류	세부 구성	
2.C.1	가로화분대	·형태구조	·설치배치
2.C.2	가로수(수목)보호덮개	·색채재료	·유지관리
2.C.3	분수대(벽천)		

- 녹지시설물의 기능 및 목적에 따라 3개 대상으로 세분화하며, 형태구조, 색채재료, 설치배치, 유지관리 등 세부요소로 각각의 지침을 제시한다.

관련법규 및 문헌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C. 녹지시설물

심의대상

2.C.1

가로화분대

보행가로 및 광장 등 보행이용량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수목관련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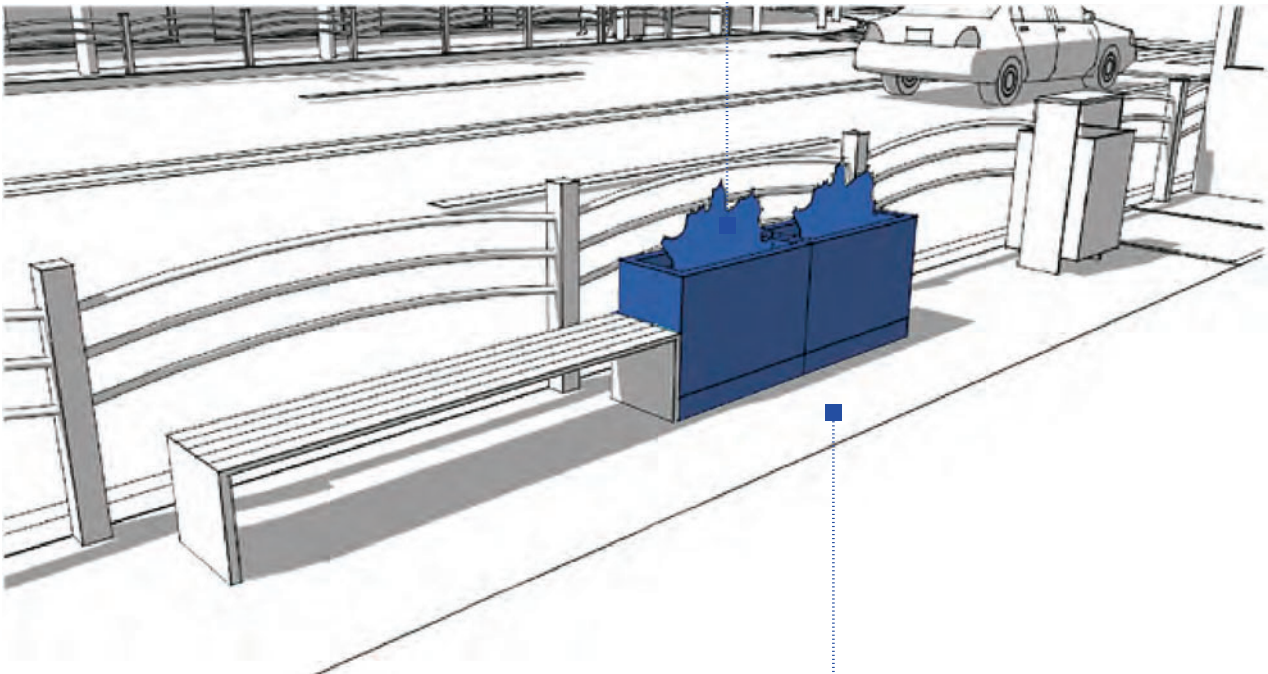
가로화분대와 플랜터를 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본 가이드라인은 같은 종류로 통칭

기본방향

통일된 디자인으로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사용 권장
플라스틱 등 인공재료 지양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권장
방수, 방부, 방충에 대한 충분한 검토 권장



벤치나 볼라드, 가로수(수목)보호덮개 등 다른 시설물과의 통합 권장
보행로에 설치할 경우, 주 보행동선에서 600mm 이상 이격하여 설치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동일한 구역 내 설치되는 화분대는 통일성 있는 형태로 적용하며,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적용을 권장			
	· 자연물을 직접적으로 모방한 형상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급·배수와 식물관리, 먼지제거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기능을 고려한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			
	· 해당지역의 기후를 고려한 식재를 선택하고 식재의 성장을 고려해 규모를 적용하되,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나친 크기는 지양			
	· 벤치, 펜스 등 타 시설물과 통합 적용을 권장			
	·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신체와 접촉하는 모든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			
색채재료	· 보도 및 건물, 자연녹지 등 주변 환경과 다른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색채를 적용			
	· 반광택, 무광택 소재를 적용하며, 원색적인 색채의 적용은 지양			
	· 과도한 장식 및 각종 도안, 패턴, 문구, 로고 등의 남용을 제한			
	· 자연소재 적용을 권장하며, 목재 사용 시 방충, 방부에 대해 고려			
설치배치	·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실행공간이 확보된 곳에 설치			
	· 펜스가 없는 보행가로에 차폐의 역할을 하는 가로화분대 설치를 권장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기울기가 심한 경사지, 유효보도폭 1.5m 이하의 좁은 도로에는 설치를 제한			
	· 횡단보도 및 교차로 근처에는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			
유지관리	· 오염물 제거가 용이하고 스티커부착을 방지하는 재료를 선택			
	· 목재 사용 시 페인트 도장을 금지하며, 동절기 관리, 방수, 방부, 방충에 대해 충분히 검토			



자연소재를 적용한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가로화분대와 벤치 통합 적용

C. 녹지시설물

심의대상

2.C.2

가로수(수목)보호덮개

가로수 하단에 설치되는 덮개형 시설물

시설물의 구성은 외곽부와 덮개부, 수목지지대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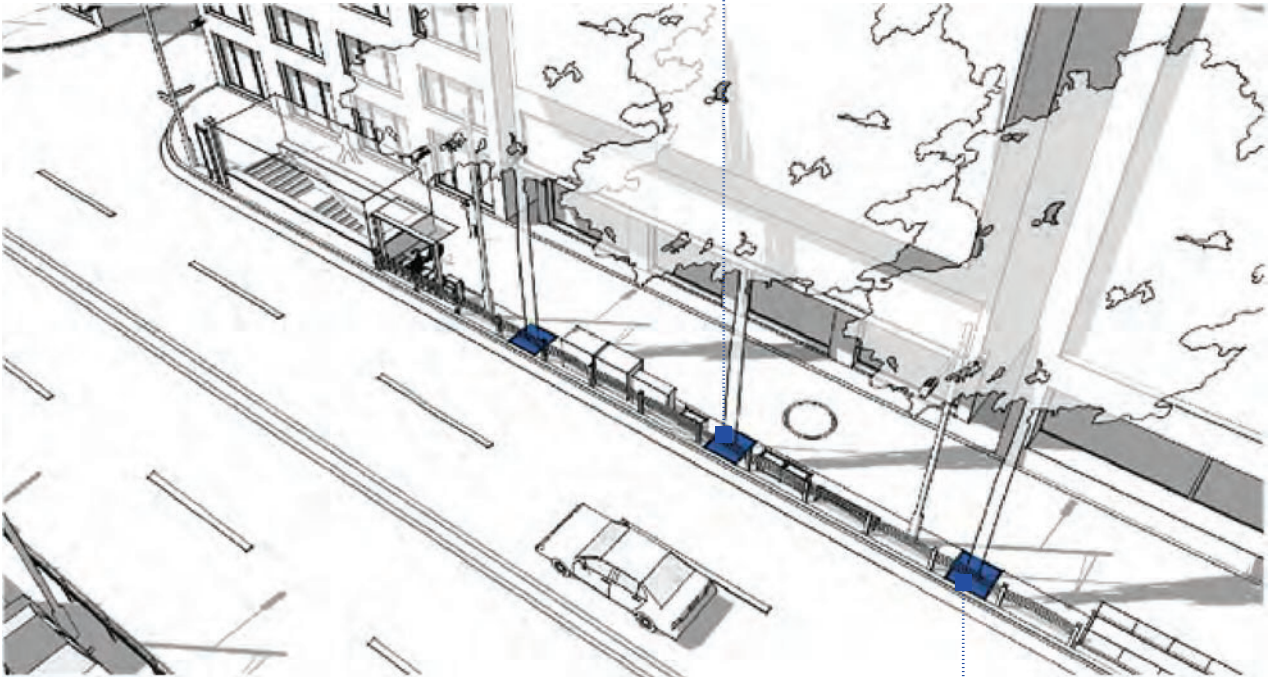
기본방향

보도와 식재환경에 조화롭게 계획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사용 권장

보도 패턴을 고려한 형태 권장



보도와 높이를 같게 설치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시설의 크기 및 설치 위치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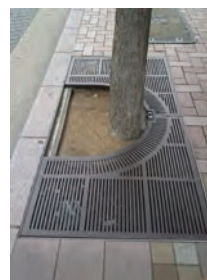
보행로의 폭이 좁은 경우에는 하부식재로 대체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디자인을 단순화하며,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적용을 권장			
	· 보행공간의 폭과 식재의 생장특성을 고려하여 크기를 최소화하고 보도블록과 조화롭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디자인을 적용			
	· 보도패턴과 연계한 형태 및 색채를 적용하고 덮개 밑 바닥부 노출을 최소화			
	· 물 공급과 배수를 고려하여 디자인 적용			
색채재료	· 저채도, 저명도의 단일 색채를 적용			
	· 플라스틱 등 내구성이 약한 재료의 사용은 지양			
	·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쾌적한 미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출부에 식재 및 자연 재료를 적용			
	· 시설 주체, 제작 업체 등의 정보는 표기 금지			
설치배치	· 보도와 높이를 동일하게 설치하고, 식물의 원활한 뿌리호흡을 위하여 덮개 아래공간을 확보			
	· 식재와 가로수(수목)보호덮개의 중앙이 일치하도록 설치하고, 연속적으로 설치할 경우 간격을 동일하게 적용			
	· 보도와 가로수(수목)보호덮개의 마감을 미려하게 처리			
	· 보행로의 폭이 좁은 경우에는, 하부식재로 대체하여 적용			
유지관리	· 덮개 하부의 청소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디자인을 적용			
	· 부분적인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시공 및 관리			



보도블록과 조화로운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보행공간의 폭을 고려하여 가로수(수목)보호덮개 크기 최소화 및 하부식재로 대체하여 적용



C. 녹지시설물

심의대상

2.C.3

분수대(벽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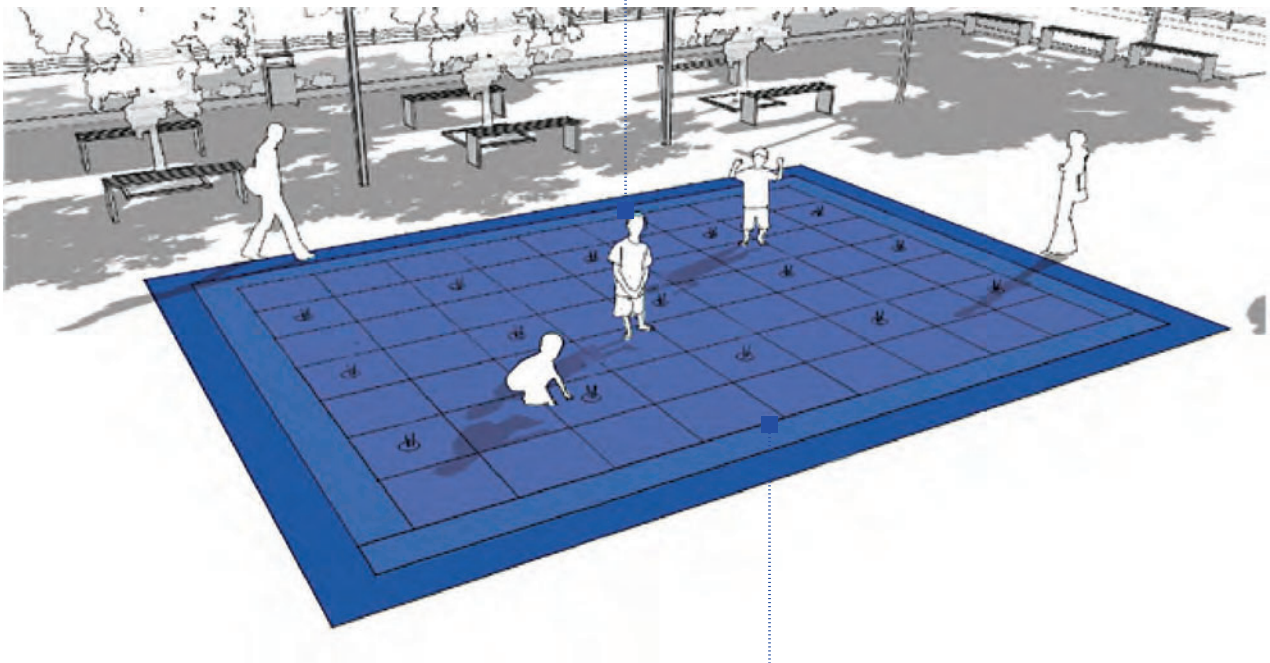
분수대는 공원, 광장 등 집객장소에 설치된 친수시설물로 분수시설과 하단부의 물받이로 구분하며, 벽천은 넓은 면적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벽면 등에 설치하는 친수시설물

기본방향

공간의 특성에 따라 이용이 용이한 친수시설 통합계획하기

디자인 원칙

동절기 비가동 시 가변기능 고려 및 바닥분수 권장
바닥분수의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 적용
조명계획을 통해 야간 경관의 연출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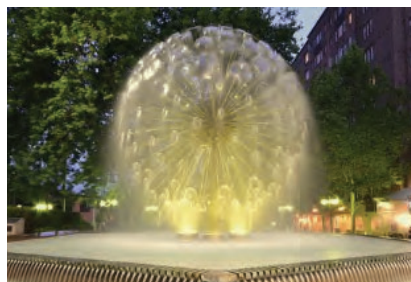
물의 배수가 용이한 구조
수질 유지, 청소 등 관리의 용이성 고려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공간의 유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바닥분수, 벽천 등 설치유형을 결정			
	· 불필요한 구조를 최소화하고, 접근성 및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			
	· 설치공간의 개방성을 형성하기 위해 기능성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부피감 및 설치면적을 최소화하여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활용			
	· 장소의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형태를 적용하되, 과도한 상징 형태 및 장식요소는 지양			
	· 야외 분수대의 동절기 비가동 시 가변기능을 고려			
	· 사용자와 접촉하는 모든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			
	· 조명 계획을 통해 야간 경관의 연출을 고려			
색채재료	· 재료 자체의 색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장소 및 주변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유사한 색채 및 재료를 적용			
	· 고채도, 고명도의 색채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광고물 및 장식물 부착, 과도한 장식, 슈퍼 그래픽, 공공미술 등은 적용 금지			
	· 부식 및 동파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물이 직접 닿는 부분은 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강한 금속을 적용			
	· 분수대 하부 및 주변부 바닥에 미끄럼 방지 재료를 적용			
설치배치	· 조각, 벤치, 놀이시설 등 타 시설물과 통합설치를 고려			
	· 이용자 보호 동선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하되, 지나치게 두드러지지 않도록 설치			
유지관리	· 물의 배수는 수질유지, 청소 등 관리가 쉽도록 계획			
	· 이용자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 실행			



바닥분수 설치를 통해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활용



간결한 조형요소 활용



야간에 디지털영상콘텐츠와 결합한 벽천 분수

D

공급시설물

중점사항

- | | |
|--|---|
| <p>01 생활안전 및 보행안전 확보하기</p> | <p>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최소한의 규모와 간결한 형태
보행자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재료 적용
보행자 편의성 및 안전을 고려하여 돌출 및 단차 금지</p> |
| <p>02 도시조화성 및 정체성, 지속가능성 고려하기</p> | <p>시각공해가 적은 무채색 또는 저채도의 색채 적용
식재, 조경공간 설치로 개방적 가로공간 조성
파손 위험을 고려한 내구성이 높은 재료 적용</p> |



세부구성

- 공급시설물은 도로에 설치되는 상수, 가스, 전기, 통신 등을 공급하는 시설물로서 배수구 덮개, 맨홀, 배전함, 방재시설, 전신주 등으로 구분한다.

- 가이드라인의 세부구성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분류코드	종분류	세부 구성	
2.D.1	배수구덮개(트렌치)		
2.D.2	맨홀		
2.D.3	배전함		
2.D.4	신호등·가로등 제어함	·형태구조	·설치배치
2.D.5	방재시설(제설함, 소화전)	·색채재료	·유지관리
2.D.6	전신주		
2.D.7	부속시설물, 기타		

- 공급시설물의 기능 및 목적에 따라 7개 대상으로 세분화하며, 형태구조, 색채재료, 설치배치, 유지관리 등 세부요소로 각각의 지침을 제시한다.

관련법규 및 문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친환경적 설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D. 공공시설물

2.D.1

배수구덮개(트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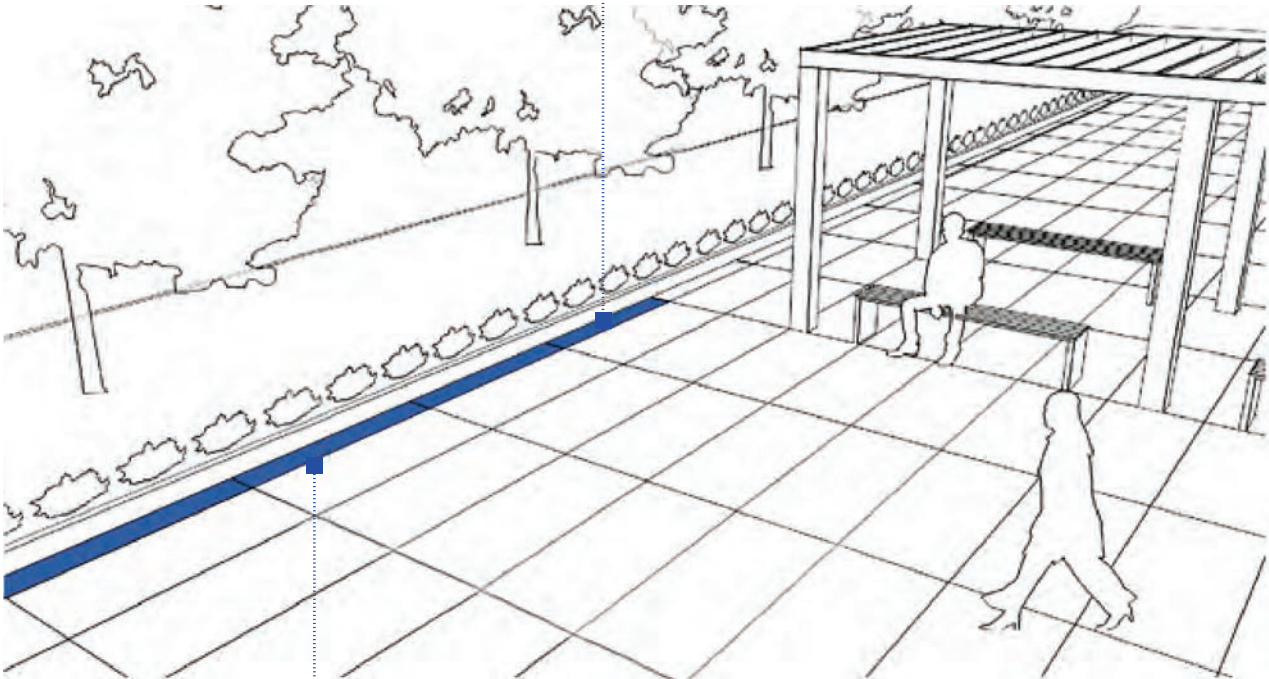
바닥의 물을 빼내거나 물이 빠져나가는 곳, 빗물 유입을 위해 설치하는 덮개 시설물

기본방향

다양한 이동수단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기

디자인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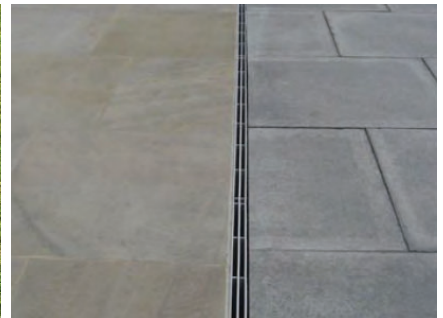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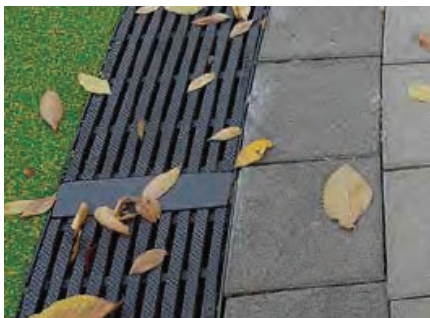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 10mm 이하로 설치
 보도 패턴의 일부로서 조화롭게 계획
 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강한 금속 적용



유실물 등 관리를 고려하여 내부망 설치
 덮개의 표면이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상되는 배수량을 처리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용량으로 설계			
	· 이동수단의 바퀴나 여성용 구두 힘이 끼이지 않도록 격자구멍 또는 틈새의 간격을 10mm 이하가 되도록 하며, 유실물 등 관리를 고려하여 내부망을 설치			
	· 필수 내용 이외의 표기정보를 최소화			
	· 건축물의 차량 주출입구에 설치 시, 무소음 덮개를 검토 적용			
색채재료	· 포장패턴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어울리는 무채색 계열의 색채 권장			
	· 하중에 의한 파손, 도색의 벗겨짐, 재료의 변색 등에 의한 보수·교체의 최소화를 위해 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강한 금속재료를 적용			
	·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광택성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는 등 재료 선택 및 표면 처리에 유의			
설치배치	· 보도 위 설치 시 덮개의 표면이 보도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며, 보도 패턴을 고려하여 계획			
	· 보도(산책로 포함)에 설치 시, 가급적 횡단형으로 적용			
	·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평탄하고 미려하게 마감 처리			
	· 지속적인 외부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변형과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용이한 배수를 위해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			
	· 녹지 및 구조물 쪽으로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			
유지관리	· 하중에 의한 파손, 도색의 벗겨짐, 재료의 변색 등에 의한 잦은 보수·교체에 따른 유지관리 및 청소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설계			
	· 부분적인 교체가 쉬운 구조로 시공 및 관리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평탄하게 마감

D. 공급시설물

심의대상

2.D.2

맨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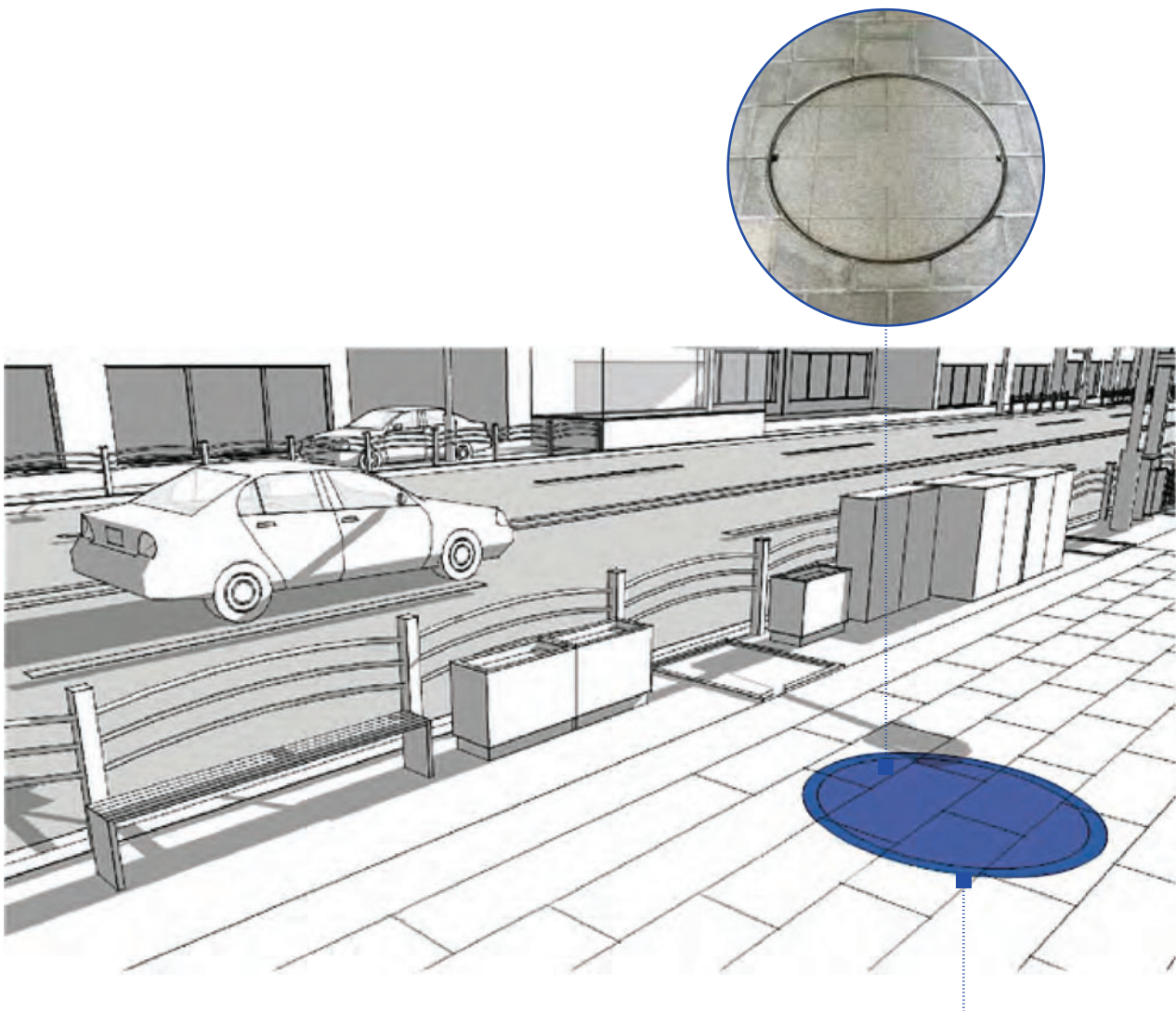
노면에 설치된 개구부(manhole)의 덮개로 수도, 가스 등 지하매립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 보행도로에 설치되는 맨홀덮개의 경우, 설치수준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에 영향을 초래

기본방향

보행공간과 시각적 연속성 확보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및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사용 권장
상부에 요철 적용 및 미끄럼방지 재료로 보행자의 안전 고려
보도블록 공사 시 보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 적용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맨홀덮개 돌출 및 단차 금지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또는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의 우선 적용을 권장			
	· 보도포장재의 매입이 가능한 구조 및 보도블록과 같은 포장재와 패턴을 적용하여 거리의 시각적 연속성을 확보			
	· 맨홀덮개와 틀은 이탈 등 안전사고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 구조로 설계			
	· 맨홀덮개는 규정된 하중을 견뎌야 하며,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잔류 변형이 없도록 설계			
	· 맨홀의 상부에 지역적 아이덴티티 적용, 과도한 형태, 기하학적인 패턴은 적용 금지			
색채재료	· 보도블록과 유사한 계열의 무채색을 사용하며, 보도와 동일한 포장재 패턴을 적용			
	· 맨홀덮개 표면에 페인트 도장은 삼가하고, 맨홀의 틀은 바닥패턴과 이질감을 주지 않도록 유사한 색채를 적용			
	· 주재료와 보조 재료를 포함한 재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맨홀덮개, 틀 및 물받이는 이용자의 안전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주철, 주강을 사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 적용			
	· 손잡이와 속뚜껑 재료는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를 사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 적용			
	· 맨홀덮개 상부에 요철을 적용하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보행자의 미끄러움을 방지			
설치배치	· 휠체어, 유모차 이동 등 다양한 보행 편의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맨홀덮개의 돌출 및 단차 발생 금지			
	· 보도블록과의 틈새는 밀실되게 시공			
	· 이용자의 보행환경 및 시설물 관리용이성을 고려하여 타 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용 지시가 맨홀에 의해 단절되지 않도록 설치			
유지관리	· 지속적인 불량맨홀 보수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			



보도와 동일한 포장재 패턴 및 유사한 계열의 색채 사용(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점자블록 등이 맨홀에 의해 단절되지 않도록 설치

D. 공급시설물

심의대상

2.D.3

배전함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박스(box)형태의 전력관리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배전반을 보호·관리하는 기능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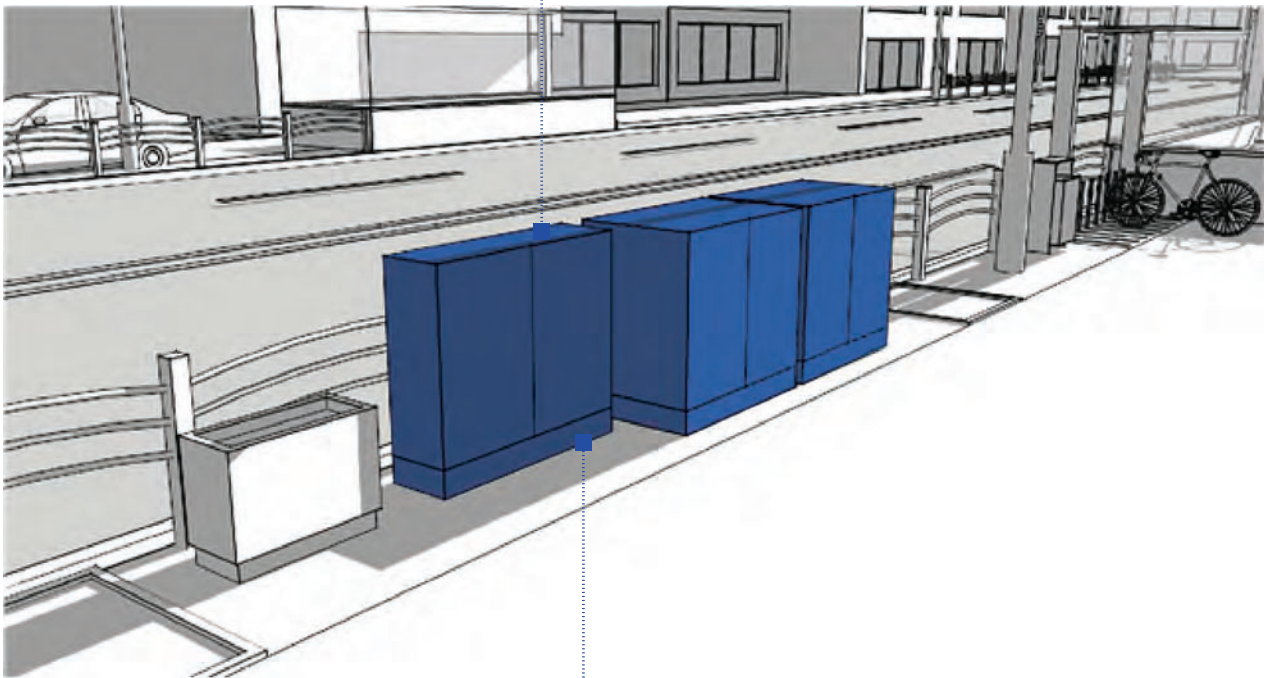
본 가이드라인은 배전함의 배전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세부 디자인 지침을 제시

기본방향

최대한 간결한 형태로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하기

디자인 원칙

무채색의 단색 사용 지양
과도한 장식적 그래픽 요소 지양



콘크리트 받침대 지양
단, 불가피할 경우 그 너비를 기기와 동일 적용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과 지면 수직 설치
지면부의 마감을 미려하게 처리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배전함 디자인 시 관리기관인 한국전력공사 등과의 충분히 협의			
	· 가로의 시야 확보 및 은신공간 제거 등을 위해 크기를 최소화하고 간결한 형태 적용			
	· 시각적으로 안전하게 보이고 보행을 위협하지 않는 형태로 디자인			
색채재료	· 도시미관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무채색 및 단색을 적용			
	· 장식적인 그래픽 요소는 남용 금지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소재를 적용하여 불법광고물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			
	· 시설물의 견고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구성이 높은 재료를 적용			
설치배치	· 공개공지, 공원 등의 식재 공간 및 보행공간을 점유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보행자의 이동 동선을 단절시키지 않고 개방적인 거리 경관을 연출			
	· 차량과의 충돌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설치			
	·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과 지면은 수직이 되도록 하며, 지면부의 마감은 미려하게 처리			
	· 콘크리트 받침대는 설치 금지하되,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배전함과 받침대의 너비를 일치시켜 미관이나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 고려			
	· 경사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경사도를 고려한 설치방식 및 형태를 선택			
	·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배면에 개폐가 가능한 점검구를 확보			
유지관리	· 빗물과 습기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 및 밀폐형 개폐구조를 적용			
	· 파손이나 훼손 시 부분적인 교체가 용이하도록 시공, 관리			
	·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주변 시설물과 일관된 무채색 적용 및 식재공간에 설치



한국전력공사 배전함 디자인 개선



D. 공급시설물

심의대상

2.D.4

신호등·가로등 제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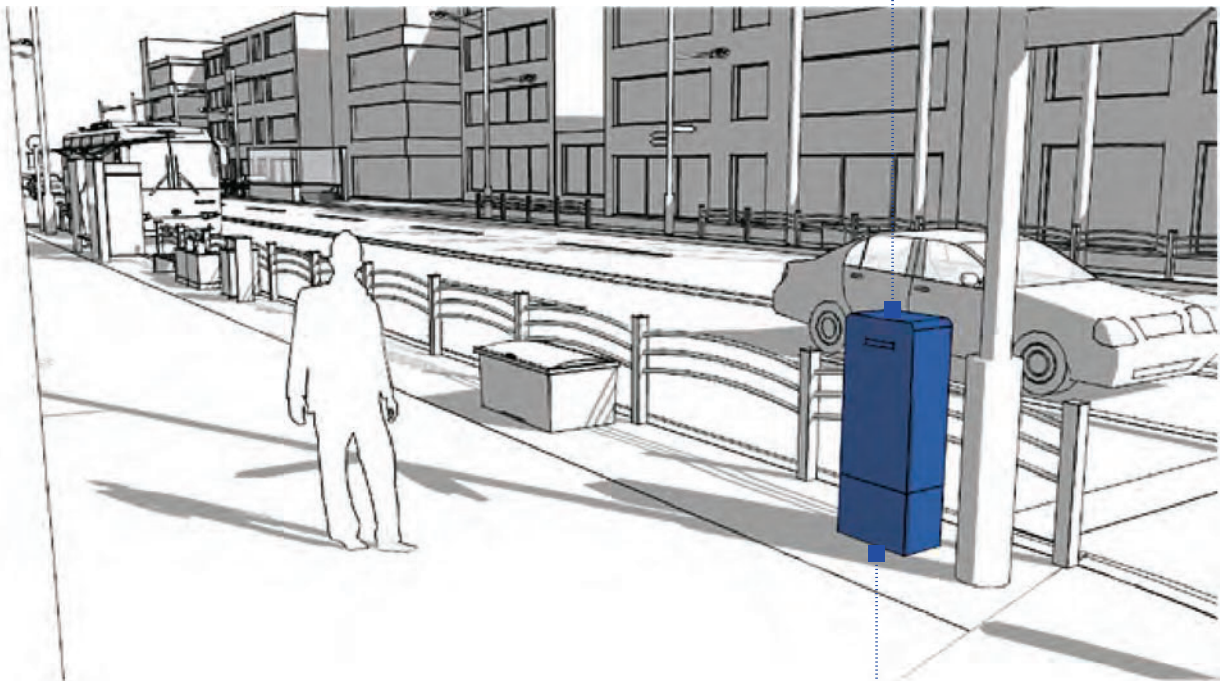
신호등 및 가로등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제어기기를 보관하는 시설물

기본방향

간결한 형태로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통합 설치하기

디자인 원칙

방수 및 밀폐형 개폐구조
지붕을 씌우지 않는 간결한 구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로 적용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



점용공간 최소화

참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규모와 지붕을 씌우지 않는 간결한 구조 및 형태로 디자인			
	· 시각적으로 안전하게 보이고 보행을 위협하지 않는 형태 적용			
	· 시설물의 모서리는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가 충돌 시 큰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둥글게 마감			
색채재료	· 도시미관과 주변 환경 및 타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시각공해가 적은 무채색 또는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하며, 장식적인 그래픽 요소는 남용 금지			
	· 차량충돌과 같은 외부충격에 강한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소재를 적용하여 불법광고물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			
설치배치	· 교통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지역관할 경찰청과 협의하여 설치			
	· 보행공간을 점유하여 보행자의 이동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배치			
	· 유효보도폭 1.5~2m 이상을 확보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며, 지면부의 마감을 미려하게 처리			
	· 다른 가로시설물과 통합하여 설치			
	· 하부에 불필요한 받침대나 펜스 등 설치 금지			
유지관리	·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배면에 개폐가 가능한 점검구를 확보			
	· 빗물과 습기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 및 밀폐형 개폐구조를 적용			
	· 파손이나 훼손 시 부분적인 교체가 용이하도록 시공, 관리			
	·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무채색의 간결한 형태



보행공간 외에 별도 설치가 가능한 최소한의 규모



지주와 통합된 디자인



D. 공급시설물

심의대상

2.D.5

방재시설(제설함, 소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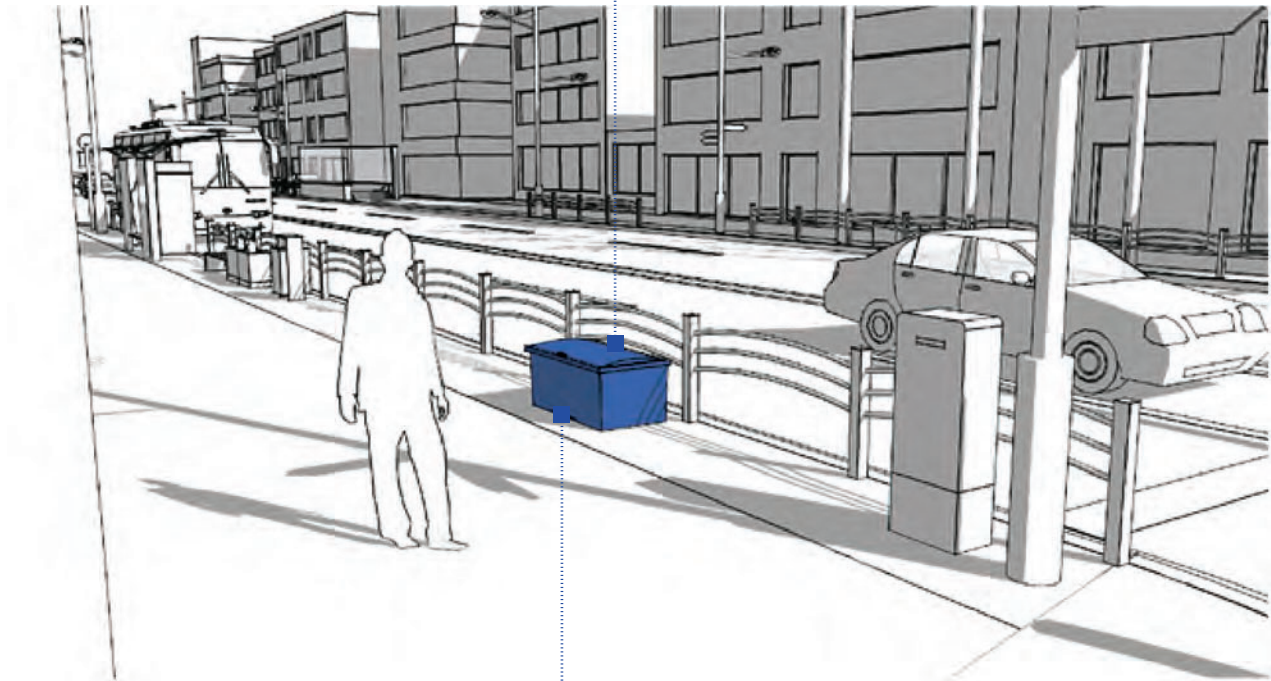
제설함은 내부에 방재용 모래 및 염화칼슘을 보관·관리하는 기능으로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방재 시설물이며, 소화전은 화재 등의 발생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가로변 또는 건축물 외부에 설치 하는 소방시설물

기본방향

기능성과 시인성을 고려하여 표준디자인 적용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적용
쓰레기 적치가 불가능하도록 덮개 부위 곡면 처리
이동가능성을 고려한 형태



광고물 또는 슈퍼그래픽, 공공미술 등의 적용 지양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및 옹골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규모와 간결하고 기능적인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			
	· 쓰레기 적치가 불가능하도록 덮개 부위를 곡면으로 처리			
	· 모서리 등의 마감부위가 날카롭지 않게 디자인			
	· 제설함의 경우, 내부의 모래나 염화칼슘을 손쉽게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고정 시설물이 아닌 제설시설의 이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 소화전의 경우,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적용을 권장			
색채재료	· 주변 환경 및 타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시각공해가 적은 무채색 또는 저채도 색채를 사용하며, 장식적인 그래픽 요소는 남용 금지			
	· 노랑, 빨강 등의 기능적인 안전색채 적용 시, 과도한 면적의 색채나 장식의 남용을 지양			
	· 광고물, 패턴 또는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슈퍼그래픽, 공공미술 등을 적용 금지			
	· 시설물과 내부 내용물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			
설치배치	· 교통량 집중구역, 사고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 수량과 위치를 결정			
	· 보행자의 동선을 단절시키지 않고 개방적인 거리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보행동선과 가로환경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결정			
	· 긴급상황 시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사인체계를 적용하고 개방된 공간에 설치			
	· 공개공지, 공원 등의 식재가 배치된 공간에 설치 지양			
	· 경사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경사도를 고려한 설치방식 및 형태를 선택			
유지관리	· 빗물과 습기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 및 밀폐형 개폐구조를 적용			



비상소화장치함 표준디자인



긴급상황 시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일관된 색채 적용

D. 공공시설물

심의대상

2.D.6

전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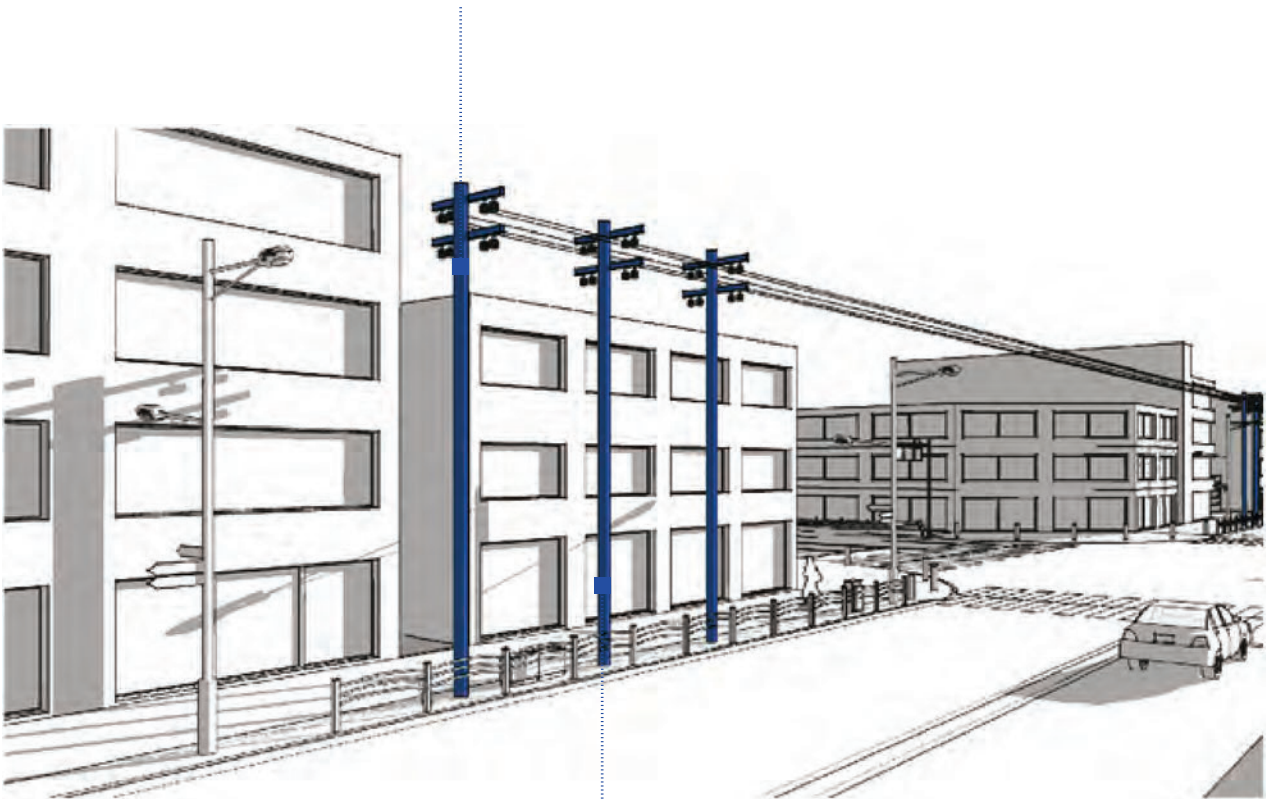
전선이나 통신선을 연결하기 위하여 세운 기둥으로, 차도 및 보도 주변에 설치되어 도시미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기본방향

불필요한 구조 및 형태 최소화하기

디자인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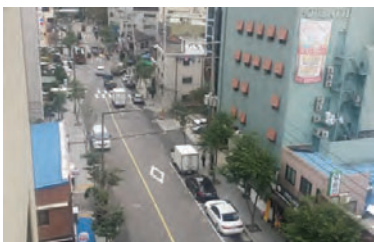
전신주 지중화 지향
지주에 연결되는 전선 수 최소화



높이 2m 이상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 적용
콘크리트 자체 노출 지양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원칙적으로 전신주를 지중화			
	· 불필요한 구조는 최소화하며, 설치물의 풍하중을 검토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			
	· 지주에 연결되는 전선의 수를 최소화하고 개별 전선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정리			
	· 교통신호 표지판, 변압기, 안내표지 등 부착시설물과 전신주의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적용			
	· 앵커볼트 등의 기초 구조가 지면에 노출되거나 부피감이 있는 하부 커버는 설치 금지			
색채재료	· 주변 환경 및 타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시각공해가 적은 무채색 또는 저채도의 색채를 적용			
	· 기능성 색채를 사용할 경우, 지나치게 명시성 높은 도료는 사용 금지			
	· 광고물, 패턴 또는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슈퍼그래픽, 공공미술 등은 적용 금지			
	· 교통신호 표지판, 변압기, 안내표지 등 부착 시설물과 통일성 있는 색채 적용			
	·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내구성이 높은 재료를 선택			
설치배치	·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 시각적 혼란을 방지			
	·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고려하여 설치장소 결정			
	· 지면과 수직이 되게 설치하며, 기초 구조를 지면에 매입하여 마감을 미려하게 처리			
	· 경사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경사도를 고려한 설치방식 및 형태를 선택			
유지관리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를 기둥의 최소 2m 높이까지 적용하여 불법광고물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			
	·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은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표면의 돌출을 지양하고 부드럽게 마감			
	· 하부에 생활쓰레기 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전선지중화 사업 전후



무채색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시트)

D. 공공시설물

2.D.7

부속시설물,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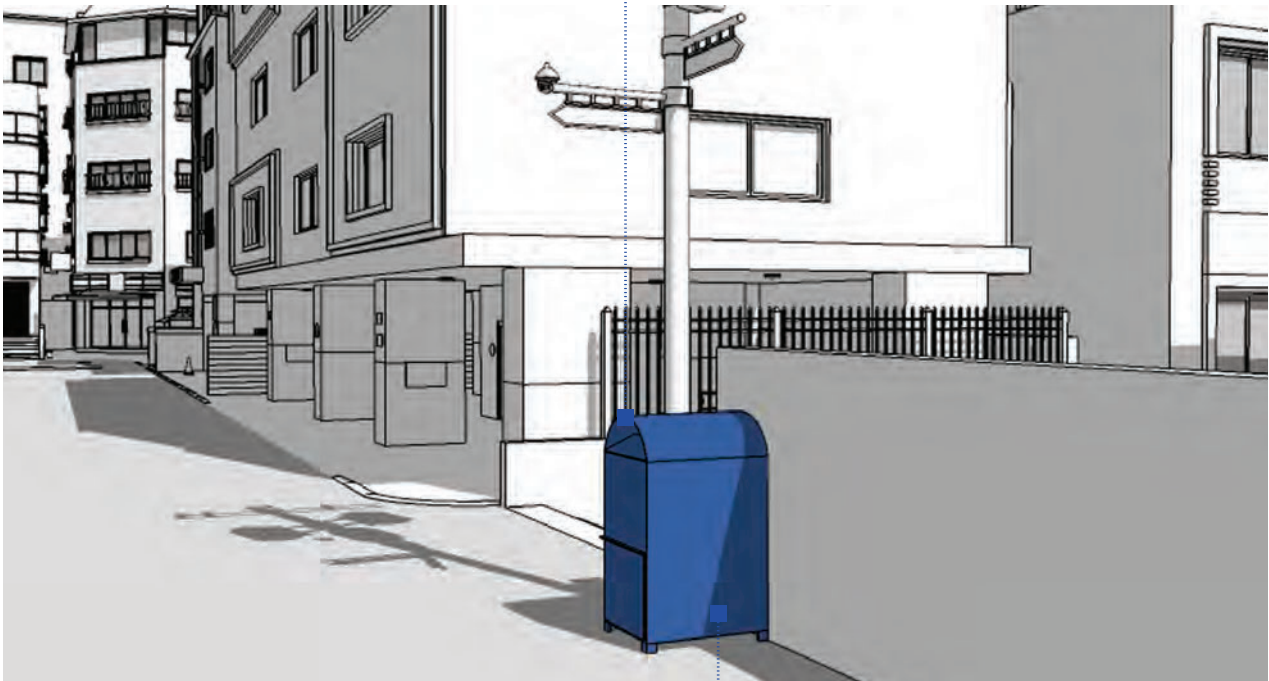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안테나, 현옷수거함 등 도시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속시설물로 디자인 적용을 통해 정온한 미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상물

기본방향

최소한의 디자인으로 정온한 미관 형성하기

디자인 원칙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일관되고 간결한 디자인 적용
주변 건물과 유사한 색채, 저명도·저채도 색채 적용



돌출부 최소화
주변 시설과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설치

참조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친환경적 설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중앙전파관리소고시)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인접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일관적인 디자인을 적용			
	· 불필요한 구조는 최소화하며, 도시미관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간결한 형태 적용			
	· 모서리 부분 및 마감 부분을 둥글게 처리			
	· 현문수거함의 경우, 지자체의 관리 하에 하나의 디자인으로 통합, 운영할 것을 권장			
색채재료	· 가로공간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변의 시설물과 유사한 색상의 저명도·저채도 색채 또는 무채색 계열 색채, 재료 자체의 색채를 적용			
	· 각 시·군·구를 상징하는 문자나 로고 등의 장식요소 및 공공미술, 슈퍼그래픽, 광고물을 부착 금지			
	· 부속시설물이 보이지 않도록 건물의 조형요소를 활용하여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건물과 유사한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하거나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정한 규정에 따라 색채를 적용			
설치배치	· 오염 및 훼손에 대비하여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기능 추가에 따른 돌출부는 최소화			
	· 이용자의 편의성과 가로환경을 고려하여 설치장소를 선택하며, 주변 시설과의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배치			
	· 현문수거함의 경우, 설치 수량을 제한하여 지나치게 많은 시설이 배치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범죄자의 은신 수단, 주택의 담을 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배치			
	· 건물 상단에 설치되는 송·수신장치 및 케이블 등의 경우, 인접도로 보행자의 상하 시야각 45° 이내에서 보이지 않도록 난간으로부터 안쪽으로 이격 설치			
유지관리	· 파손이나 훼손 시 부분적인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시공 및 관리			
	· 시설물 표면의 오염물 제거가 용이하고 불법광고물 등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시설명, 관리번호, 관리기관 및 연락처 등을 필수로 기재			



건물과 유사한 색채 및 형태로 건물 부속시설물 가림막 설치



무채색 계열의 색채 사용



E

범죄예방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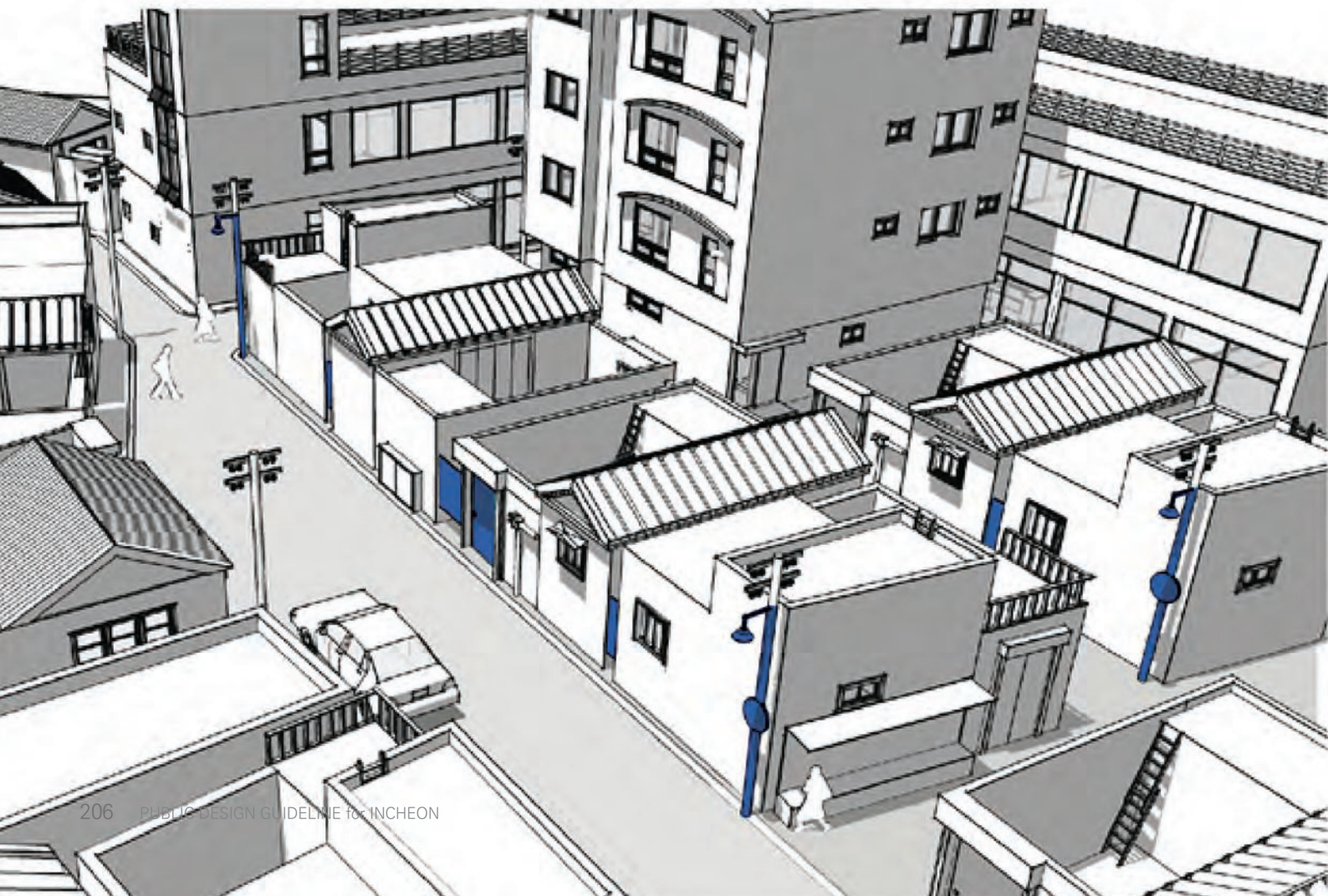
중점사항

01 영역성 및 명료성
강화하기

좁고 복잡한 골목의 사각지대에 방범시설물 설치
감시 강화를 통해 범행육구 저지

02 영역성 강화를 통한
접근 통제하기

막혀 있는 공간 및 사각지대에 접근통제시설 설치
내부 진입을 금지하여 범죄심리 위축



세부구성

- 범죄예방디자인(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적 기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동시에 지역주민의 사회 통제 행위를 강화시켜 줌으로써 범죄예방, 범죄에 대한 두려움 완화, 생활의 질 향상을 동시에 꾀하는 기법이다.
- 범죄예방디자인은 감시와 접근통제, 공동체 강화를 기본원리로 하여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명료성 강화, 활동성 증대(행위지원), 유지관리의 6가지 실천전략으로 구성된다.
- 범죄예방시설물은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을 적용한 시설물로, 인천의 범죄율이 높은 지역 또는 취약 지역에 설치하여 범죄율을 낮추고 범죄심리를 위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이에 따라 방범카메라 CCTV 및 비상벨 등 방범시설물, 틈새공간 안전장치 및 공·폐가 잠금장치 등 접근통제시설물로 구분한다.
- 가이드라인의 세부구성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분류코드	중분류	세부 구성	
2.E.1	방법카메라 CCTV(지주), 비상벨	·형태구조	·설치배치
2.E.2	틈새공간 안전장치, 공·폐가 잠금장치	·색채재료	·유지관리

- 범죄예방시설물의 기능 및 목적에 따라 2개 대상으로 세분화하며, 형태구조, 색채재료, 설치배치, 유지관리 등 세부요소로 각각의 지침을 제시한다.

관련법규 및 문헌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E. 범죄예방시설물

2.E.1

방법카메라 CCTV(지주), 비상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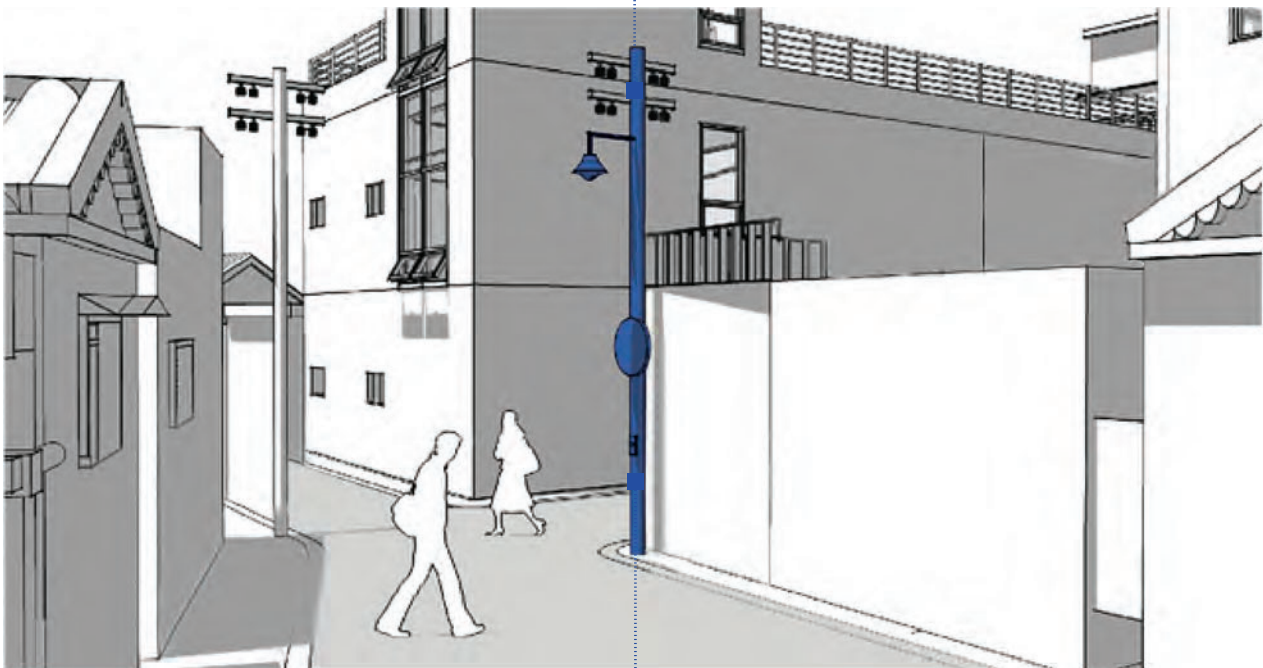
CCTV는 주변 상황이나 행동 등을 감시하기 위한 시각용 감시기계이며, 비상벨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설치해 둔 벨이나 경보장치로, 감시 강화를 통해 범죄 리스크를 증가시켜 범행욕구 저지

기본방향

사각지대 최소화 및 시인성을 고려하여 통합 디자인하기

디자인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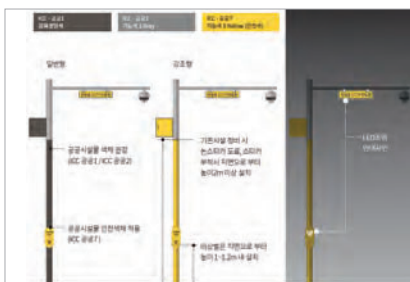
고화질의 CCTV 활용 권장
시인성을 위해 고명도, 고채도의 안전색채 적용



비상벨 및 안내사인 설치 시 높이의 위계를 고려하여 적용
높이 2m 이상 지주 색채 정비 및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도로 적용
바닥부 사인 및 고보조명 연계를 통한 기능 확대

- 참조**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주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감시를 공지하는 표지판을 명료하게 설치			
	· 바닥부 사인 및 고보조명을 연계 적용하여 CCTV 및 비상벨의 기능을 보강			
	· 바람 또는 기후변화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			
색채재료	· 전봇대 CCTV는 야간 시인성과 주목성을 위해 고명도, 고채도의 안전색채를 단색으로 적용하며, 재귀반사판의 적용을 권장			
설치배치	· CCTV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적절한 수량과 배치를 통해 안전한 보행길을 조성하고 주요 범죄취약공간을 중심으로 비상벨을 설치			
	· 범죄취약 예상 공간, 감시의 사각지대, 빈 공간 밀집지역, 사람들의 주요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설치			
	· 어둡고 근거리 감시인 경우에는 적외선 LED카메라, 어둡고 원거리인 경우에는 저조도 카메라를 설치하며, 야간에는 방범용 CCTV가 조명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주요 시점에는 백색조명과 함께 설치			
	· CCTV, 비상벨 안내사인의 정보 위계를 고려하여 혼동을 주지 않도록 배치			
	· 위급시 어린이 등도 쉽고 빠르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비상벨은 지면으로부터 1.2m 이상 높이 위치에 설치			
	· 비상벨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고, CCTV는 경광등과 음성안내시스템을 함께 설치			
	· 가로등, 가로수, 건축물에 부착된 돌출물 등으로 인해 가시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설치			
	· CCTV, 비상벨 안내사인의 정보 위계를 고려하여 혼동을 주지 않도록 배치			
유지관리	·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범죄예방 아이템과의 색채 통일 및 일관된 시각체계를 적용			
	· 저비용으로 사각지대의 보완이 가능하도록 지능형 CCTV를 활용			
	· 관리 및 위치파악이 용이하도록 CCTV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주요 CCTV는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			



CCTV통합방범시설(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안전색채 적용 및 고보조명 연계



CCTV, 비상벨 안내표지판 및 비상벨 표준디자인



E. 범죄예방시설물

2.E.2

틈새공간 안전장치, 공·폐가 잠금장치

범죄의 표적이 되는 공·폐가 및 틈새공간의 출입을 막기 위한 장치로, 불량 청소년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범죄 취약 공간에 설치하여 영역성 강화 및 접근 통제를 통해 범행욕구를 저지

기본방향

진입을 막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디자인 적용하기

디자인 원칙

투시형 개방 형태 및 안내사인을 함께 설치
2가지 이상의 색채, 고채도의 원색, 지나친 패턴 사용 금지
견고한 재료 적용으로 쉽게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용



막혀 있는 협소한 골목 및 진입 금지 공간, 사각지대에 설치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구조	· 틈새공간 안전장치는 사람들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와 형태를 적용하되, 투시형 개방 형태 또는 소재를 적용			
	· 틈새공간 안전장치는 내부 공간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잠금장치를 설치			
	· 공·폐가 잠금장치 연결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스텐밴드 또는 연철을 이용하여 설치			
	· 진입금지 등의 안내사인을 함께 설치하여 공간 진입 금지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			
색채재료	· 틈새공간 안전장치는 두 가지 이상의 색채 사용을 금지하며, 원색 및 지나친 패턴의 사용을 금지			
	· 공·폐가 잠금장치는 눈에 띄지 않는 무채색 계열의 색채 또는 벽면과 유사한 색채 적용			
	· 견고한 재료를 적용하여 쉽게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용			
설치배치	· 빈 공간의 출입을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공간에 설치			
	· 틈새공간 안전장치는 막혀있는 협소한 골목 및 사각지대, 건축물 사이 공간 등 범죄위험이 있는 공간에 설치			
	· 틈새공간 안전장치 설치 시, 양측 벽면의 현황을 고려하여 고정부위 및 적용면적을 고려			
유지관리	· 기후변화 및 외부 압력에 쉽게 변화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한 재료로 적용			
	· 일관된 관리번호를 적용하며, 공·폐가 잠금장치의 경우 관리번호를 쓰고 지울 수 있도록 제작			



공·폐가 출입금지 표지



투시형 구조의 틈새공간 안전장치



Part 3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Public Signage & Supplies

공통			218
A. 교통관련 시각매체	3.A.1	주의·규제·지시·보조·단속표지	226
	3.A.2	노면표지(차로)	228
	3.A.3	이정표지, 방향·방향예고표지	230
	3.A.4	공공기관·시설기관안내표지	심의대상 232
	3.A.5	주차장안내표지	심의대상 234
	3.A.6	장애인주차안내	236
	3.A.7	버스승차대표지, 버스노선안내도	심의대상 238
	3.A.8	버스측면정보영역	240
	3.A.9	택시승차대표지	심의대상 242
	3.A.10	택시외관	244
	3.A.11	지하철안내표지	심의대상 246
	3.A.12	지하철노선도·종합안내도	심의대상 248
B. 보행관련 시각매체	3.B.1	보행자안내·보행방향·지역안내표지	심의대상 252
	3.B.2	무단횡단금지표지	254
	3.B.3	장애인유도사인, 장애인유도안내표지	256
	3.B.4	도로명판	258
	3.B.5	건물번호판, 건물번호안내판	260
	3.B.6	자전거도로안내, 자전거도로노면표지 (보행로)	262
C. 편의시설 시각매체	3.C.1	현수막게시대, 시민게시대	266
	3.C.2	공원안내표지	268
	3.C.3	등산로·둘레길안내표지	270
	3.C.4	문화재설명표지, 문화재표석	심의대상 272
	3.C.5	관광안내소·시티투어매표소표지	274
	3.C.6	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도	심의대상 276
	3.C.7	개방화장실안내표지	278
D. 안전관련 시각매체 및 용품	3.D.1	범죄예방시설	282
	3.D.2	쓰레기투기방지안내	284
	3.D.3	안전조명·정보시설	286
	3.D.4	소방안전안내표지, 소방안전장비	288
	3.D.5	재난대비안전안내표지, 재난안전장비	290
	3.D.6	공사장안내표지	292
E. 영상정보 시각매체	3.E.1	대기오염·도로소음전광판	심의대상 296
	3.E.2	교통상황·교통사고상황전광판	심의대상 298
	3.E.3	버스정보전광판	심의대상 300
	3.E.4	디지털영상매체	심의대상 302
F. 환경연출 시각매체 및 공공미술	3.D.1	공사장가설울타리, 가설가림막	심의대상 306
	3.D.2	벽화	심의대상 308
	3.D.3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심의대상 310
	3.D.4	공공조형물	심의대상 312

Part 3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기본방향

- 인천광역시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가이드라인’은 공공시각매체의 유형에 따라 공공 디자인에 부합하는 방향성과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인천광역시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방향



 모두를 위한 디자인	 인천가치디자인	 참여디자인	 안전디자인
보행친화 외국인, 고령자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는 공공시각매체를 구현하고, 주변 환경의 밀집도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수량 설치	조화균형 체계적인 정보통합을 통해 일관된 정보체계를 확립하고, 주변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색채와 정보체계로 전달력이 높은 디자인 구현	시민참여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방식의 시각정보매체를 활성화	생활안전 외국인과의 소통, 쓰레기 투기, 범죄예방 등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행위를 유도하는 정보디자인으로 올바른 안전문화를 구축
배려 다양한 사용자의 인체 치수, 이용 행태를 고려한 정보매체의 적정 크기, 높이를 적용하며, 시각언어를 사용하여 누구나 이해하고 이용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가치창조 외국인을 고려한 체계적인 다국어 표기 및 인천형 픽토그램 등 표기요소 언어체계를 재구축하며, 표준화된 공공시각매체를 우선 적용하여 국제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	기업참여 기업의 참여활동과 미디어, 전시, 공공예술 등을 연계·협력하여 지역소통 및 다양한 문화활성화를 유도	근로안전 산업·공사현장의 인지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규정(색채, 픽토그램 등)을 적용, 공사구간의 전후방 안전거리 확보 및 필요정보를 일관성있게 제공
	지속가능 설치 현황에 가변성을 고려한 모듈화 구조의 디자인을 개발, 도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정·보완이 유리한 정보의 디지털화를 구축		생활방역 금지·안전 등 주요정보에 대한 시각매체는 국가 및 국제 픽토그램 및 표준색채를 적용

적용대상

-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은 커뮤니케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의 구체적인 표현 형태를 계획하는 것으로, 공공공간 또는 공공장소에서 필요한 정보를 시각화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을 말한다.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상위 법령을 우선 적용하되,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인천광역시의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은 인천도시디자인의 5대 전략을 반영하여 교통관련 시각매체, 보행관련 시각매체, 편의시설 시각매체, 안전관련 시각매체 및 용품, 영상정보 시각매체, 환경연출 시각매체 및 공공미술의 총 6가지 항목이다.

구분	대분류	분류코드	중분류	비고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A. 교통관련 시각매체	3.A.1	주의·규제·지시·보조·단속표지	
		3.A.2	노면표지(차로)	
		3.A.3	이정표지, 방향·방향예고표지	
		3.A.4	공공기관·시설기관안내표지	심의대상
		3.A.5	주차장안내표지	심의대상
		3.A.6	장애인주차안내	
		3.A.7	버스승차대표지, 버스노선안내도	심의대상
		3.A.8	버스측면정보영역	
		3.A.9	택시승차대표지	심의대상
		3.A.10	택시외관	
		3.A.11	지하철안내표지	심의대상
		3.A.12	지하철노선도·종합안내도	심의대상
	B. 보행관련 시각매체	3.B.1	보행자안내·보행방향·지역안내표지	심의대상
		3.B.2	무단횡단금지표지	
		3.B.3	장애인유도사인, 장애인유도안내표지	
		3.B.4	도로명판	
		3.B.5	건물번호판, 건물번호안내판	
		3.B.6	자전거도로안내, 자전거도로노면표지 (보행로)	
	C. 편의시설 시각매체	3.C.1	현수막게시대, 시민게시대	
		3.C.2	공원안내표지	
		3.C.3	등산로·둘레길안내표지	
		3.C.4	문화재설명표지, 문화재표석	심의대상
		3.C.5	관광안내소·시티투어매표소표지	
		3.C.6	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도	심의대상
		3.C.7	개방화장실안내표지	

적용대상

구분	대분류	분류코드	중분류	비고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D. 안전관련 시각매체 및 용품	3.D.1	범죄예방시설	
		3.D.2	쓰레기투기방지안내	
		3.D.3	안전조명·정보시설	
		3.D.4	소방안전안내표지, 소방안전장비	
		3.D.5	재난대비안전안내표지, 재난안전장비	
		3.D.6	공사장안내표지	
	E. 영상정보 시각매체	3.E.1	대기오염·도로소음전광판	심의대상
		3.E.2	교통상황·교통사고상황전광판	심의대상
		3.E.3	버스정보전광판	심의대상
		3.E.4	디지털영상매체	심의대상
	F. 환경연출 시각매체 및 공공미술	3.F.1	공사장가설울타리, 가설가림막	심의대상
		3.F.2	벽화	심의대상
		3.F.3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심의대상
		3.F.4	공공조형물	심의대상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규정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대상을 별도 명시한다.

표준디자인 및 인증제품 규정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세부 적용 및 시행을 위하여 표준디자인 및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디자인 및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별 해당 대상은 다음과 같다.

대분류	분류코드	중분류	표준디자인/인증제품
A. 교통관련 시각매체	3.A.1	주의·규제·지시·보조·단속표지	
	3.A.2	노면표지(차로)	
	3.A.3	이정표지, 방향·방향예고표지	
	3.A.4	심의 공공기관·시설기관안내표지	● 시설기관 안내표지
	3.A.5	심의 주차장안내표지	● 주차장안내, 주차이용안내 등
	3.A.6	장애인주차안내	●
	3.A.7	심의 버스승차대표지, 버스노선안내도	● 버스승차대표지
	3.A.8	버스측면정보영역	
	3.A.9	심의 택시승차대표지	●
	3.A.10	택시외관	
	3.A.11	심의 지하철안내표지	● 지하철입구명판, 역부지주
	3.A.12	심의 지하철노선도·종합안내도	
B. 보행관련 시각매체	3.B.1	심의 보행자안내·보행방향·지역안내표지	●
	3.B.2	무단횡단금지표지	
	3.B.3	장애인유도사인, 장애인유도안내표지	
	3.B.4	도로명판	
	3.B.5	건물번호판, 건물번호안내판	
	3.B.6	자전거도로안내, 자전거도로노면표지 (보행로)	●
C. 편의시설 시각매체	3.C.1	현수막게시대, 시민게시대	● 저단형
	3.C.2	공원안내표지	●
	3.C.3	등산로·둘레길안내표지	● 숲길안내사인
	3.C.4	심의 문화재설명표지, 문화재표석	
	3.C.5	관광안내소·시티투어매표소표지	●
	3.C.6	심의 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도	●
	3.C.7	개방화장실안내표지	●
D. 안전관련 시각매체 및 용품	3.D.1	범죄예방시설	● 어린이놀이터 범죄예방디자인
	3.D.2	쓰레기투기방지안내	
	3.D.3	안전조명·정보시설	
	3.D.4	소방안전안내표지, 소방안전장비	●
	3.D.5	재난대비안전안내표지, 재난안전장비	●
	3.D.6	공사장안내표지	●
E. 영상정보 시각매체	3.E.1	심의 대기오염·도로소음전광판	
	3.E.2	심의 교통상황·교통사고상황전광판	
	3.E.3	심의 버스정보전광판	
	3.E.4	심의 디지털영상매체	
F. 환경연출 시각매체 및 공공미술	3.F.1	심의 공사장가설울타리, 가설가림막	●
	3.F.2	심의 벽화	
	3.F.3	심의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3.F.4	심의 공공조형물	



공통중점사항

① 모두를 위한 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 적용하기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인지성을 고려한 표기요소 적용	· 시각·청각장애인, 노약자, 인지장애, 색약자,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모든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이 가능하도록 계획			
	· 인천 도시브랜드 및 상징아이콘을 적극 활용하며, 인천만의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구축			
	· 안내를 위한 표지판 또는 사인은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며, 목적에 맞는 내용과 서체, 픽토그램, 색채 등을 일관성 있게 적용			
	· 서체는 고딕계열의 서체를 기본으로 하며, 기울임체(사체, Italic)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되, 가독성이 낮은 장식적인 서체의 사용을 금지			
	· 동일한 공공시각매체 간 다양한 서체의 사용을 금지			
	· 가독성 확보를 위하여 자간, 행간을 조절하며, 과도한 장평조정 및 변형은 금지			
	· 영문서체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세로쓰기를 금지			
	· 사용자 중심의 정보면을 구성하며, 안내표지의 인식 거리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를 규정			
	·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인 서체의 크기를 10% 정도 확대, 서체의 두께를 Bold하게(굵게) 적용			
	· 인천의 다문화·외국인의 증가에 맞추어 다국어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문자 위주의 표기 보다 쉽게 이해가 가능한 픽토그램 적용을 권장			
	· 픽토그램은 국제표준(ISO) 또는 국가표준(KSA0902)을 적용하며, 형태 변형 및 왜곡 금지			
	· 방향, 방위 등을 표시하는 기호와 문자를 함께 표기 시, 기호와 문자의 시각적 균형을 유지			
	· 여러 개의 기호를 동시에 표기하는 경우 지시하는 것과 이에 해당하는 문자가 혼동되지 않도록 크기와 여백을 조절하며, 정보 간의 여백을 최대한 확보			
	· 원거리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시성이 높은 색채 배색을 적용			
	· 주변과 조화를 이루기 힘든 고명도, 고채도의 자극적인 색채를 주조색, 배경색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범죄예방안내표지 등 안전 및 주목성이 필요한 시각매체는 예외			
	· 색약자 및 고령자를 고려하여 적색계열 및 녹색계열의 색채는 지양하고, 특히 색약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색을 중요한 기호에 사용 금지			
	· 시각장애이용 점자, 음성안내장치, LED조명 매입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차별없이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전달방식을 고려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브랜드 및 상징물 개발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 인천상징아이콘

시인성 및
 사용성을
 고려한
 설치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이용 행태 및 다양한 사용자의 신체 치수를 고려하여 정보매체의 적정 높이를 설정			
· 각종 안내표지판은 시설물 설치구역 내에 설치하여 보행자 편의 및 시인성을 고려			
· 안내시설물은 원칙적으로 다른 가로시설물과 통합하여 계획			
· 안내시설물은 보행자 통행, 시선 연결, 방법시설과 조명시설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설치			
· 안내표지 주변의 환경요소에 의해 시각적으로 차폐되지 않도록 배치			
· 인천광역시 안내시설물의 체계를 대거점, 중거점, 소거점으로 구분하고 각각 정보의 내용과 표현방식을 달리하여 적재적소에 배치			
· 시각·청각 장애인, 노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여 설치			
· 응급 상황 시 비상응급시설물 등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정보매체를 인지하기 쉬운 크기 및 위치에 표시			
·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면이 경사지거나 고르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수직·수평으로 설치			
· 보행자의 원활한 이용과 보행동선 확보를 위해 보행 진행방향으로 설치			
· 보행로 유효보도폭이 2m 이상일 때 보행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며, 2m 미만일 때 보행방향과 동일하게 설치			
· 보행로 유효보도폭을 최소 1.5m 이상 확보			
· 도로변에 안내표지 설치 시, 경계석에서 100mm 이격하여 설치하되, 정보면이 도로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			
· 원거리에서 보행자가 정보매체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면은 보행로 지면으로부터 약 2.5m 이상에 설치			
· 보행자가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야 하는 지도 등 주요 상세 정보는 지면으로부터 약 1.0~1.8m에 배치			
· 부가 상세정보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최소 700mm 이상에 위치			



공통중점사항

1 모두를 위한 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 적용하기

쾌적성을 고려한 구조 및 재료 적용

- 가로의 쾌적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안내시설물의 위치 및 형태 고려
- 안내표지 파손 시 쉽고 용이하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분리 체결
- 시공 및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실효성을 높인 합리적인 구조방식을 적용
- 설치 시 하부 플레이트나 기초부, 체결금구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매립 설치
- 교통관련 시각매체는 사인 주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로 등의 정비도 함께 적용
- 전신주 도색 및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로 적용 시 최대 5m 높이 이하로 적용하며, 하단부 900mm는 오염 최소화를 위해 저명도의 무채색 또는 저채도 색채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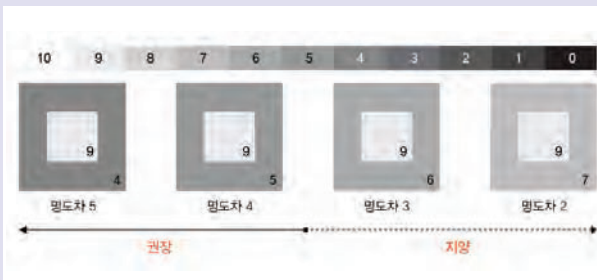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국제표준픽토그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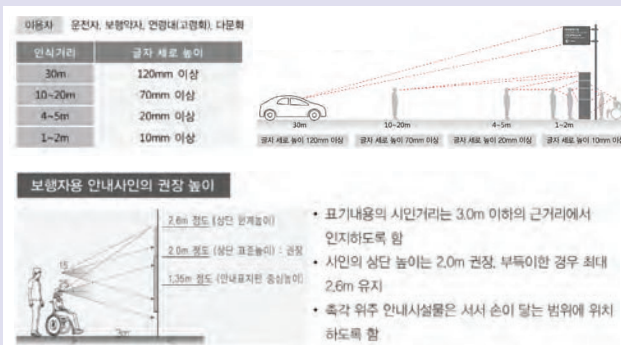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상징아이콘 100선



명시성 높은 색채 배색(중요도에 따라 명도대비 활용)



*출처 : 유니버설디자인으로서 지하철의 비언어사인에 관한 연구(안상락, 고영준_2011)



인지성을 고려한 정보매체의 적정 높이



안내시설물 설치

참조 도로표지규칙 /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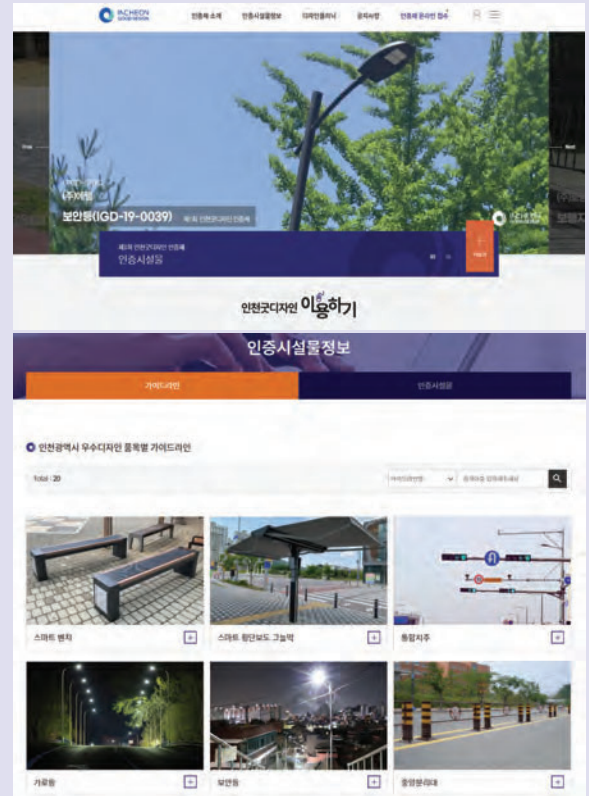
② 인천광역시 정체성 강화를 위한 표준디자인 적용하기

일관된 표준디자인 적용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우선 적용			
·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이 있을 경우, 적극 사용			
· 유관기관의 시설물인 경우, 해당 기관의 표준디자인을 준수			
· 인천광역시 정책 시설물에 한해서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맞춰 디자인 및 제작, 설치			
· 표준디자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 협의를 통해 적용			
· 색채는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http://www.igd.incheon.kr>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권역색 적용 시, 2개 이상의 권역에 해당하는 경우, 범위가 넓은 권역의 색채를 적용			
· 하나의 도로 또는 같은 공간으로 인식되는 곳에는 형태, 색채, 재료를 일치시켜 적용			
· 불필요한 장식과 과장된 그래픽의 적용 지양			
· 시설물의 규모 및 길이 등 시각적 균형감을 고려하여 안정감을 주는 색채배색 적용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하되, 원색이나 고채도 및 고명도의 색채 사용 지양			
· 시각적 안정감 및 오염에 대비하여 무채색 계열의 명도 6이하의 색채 사용을 권장			
· 인천광역시의 상징요소(CI 등)를 적용할 경우 무채색으로 표기하고 크기를 최소화할 것을 권장			
· 자연소재 적용시 재료 고유색을 적용하고 도색은 금지			
· 광택이 강한 소재 사용 지양			
· 개방감 확보를 위해 투명 재질의 적용을 권장하며, 고채도의 유리나 폴리카보네이트 사용은 지양			
· 수변공간 자연소재 및 투과 소재를 적용하며, 색채 적용시 무채색 계열, 백색 적용을 권장			
· 녹지공간 자연소재 그대로의 색채, 반광택 및 무광택 소재 적용을 권장			
· 특화공간 관광지, 역사문화공간 등을 계획할 경우, 권역색 적용을 권장			
· 별도 색채계획 및 색채특화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협의 후 적용			



인천 공공시설물색을 적용한 표준디자인



인천 색채디자인 사업 예시

A

교통관련 시각매체

중점사항

- | | |
|--|--|
| <p>01 생활안전 및 보행안전 확보하기</p> | <p>이용 형태 및 다양한 사용자의 인체치수를 고려한 정보매체 통행이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 및 높이에 설치
고령자의 통행이 잦은 지역은 글자크기를 10~20% 크게 적용</p> |
| <p>02 도시조화성 및 정체성, 지속가능성 고려하기</p> | <p>중복 설치 지양 및 다른 지주 시설물과의 통합 설치 권장
인천브랜드, 상징아이콘, 지역자원과 연계한 그래픽, 색채 적용
외국인을 고려한 다국어 표기 권장</p> |



세부구성

- 교통관련 시각매체는 대중교통을 비롯한 차량과 이용자가 이동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표지이며, 지시, 단속, 노면 등의 교통안전표지와 이정, 방향, 안내 등의 도로안내표지, 주차안내, 신호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표지를 말한다.
- 교통관련 시각매체의 기본적인 규정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한다.
[도로교통법]은 표지의 규격, 글자 및 지주의 규격, 설치방법, 반사지의 색채 등을 규정한다.
- 가이드라인의 세부구성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분류코드	중분류	세부 구성	
3.A.1	주의·규제·지시·보조·단속표지		
3.A.2	노면표지(차로)		
3.A.3	이정표지, 방향·방향예고표지		
3.A.4	공공기관·시설기관안내표지		
3.A.5	주차장안내표지		
3.A.6	장애인주차안내		
3.A.7	버스승차대표지, 버스노선안내도	·형태색채	·설치배치
3.A.8	버스측면정보영역		
3.A.9	택시승차대표지		
3.A.10	택시외관		
3.A.11	지하철안내표지		
3.A.12	지하철노선도·종합안내도		

- 교통관련 시각매체는 기능 및 목적에 따라 12개 대상으로 세분화하며, 형태색채, 설치배치 등 세부요소로 각각의 지침을 제시한다.

관련법규 및 문헌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표지규칙 /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교통노면표지 설치·관리 매뉴얼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브랜드 및 상징물 개발
 인천광역시 버스색채디자인 매뉴얼

A. 교통관련 시각매체

3.A.1 주의·규제·지시·보조·단속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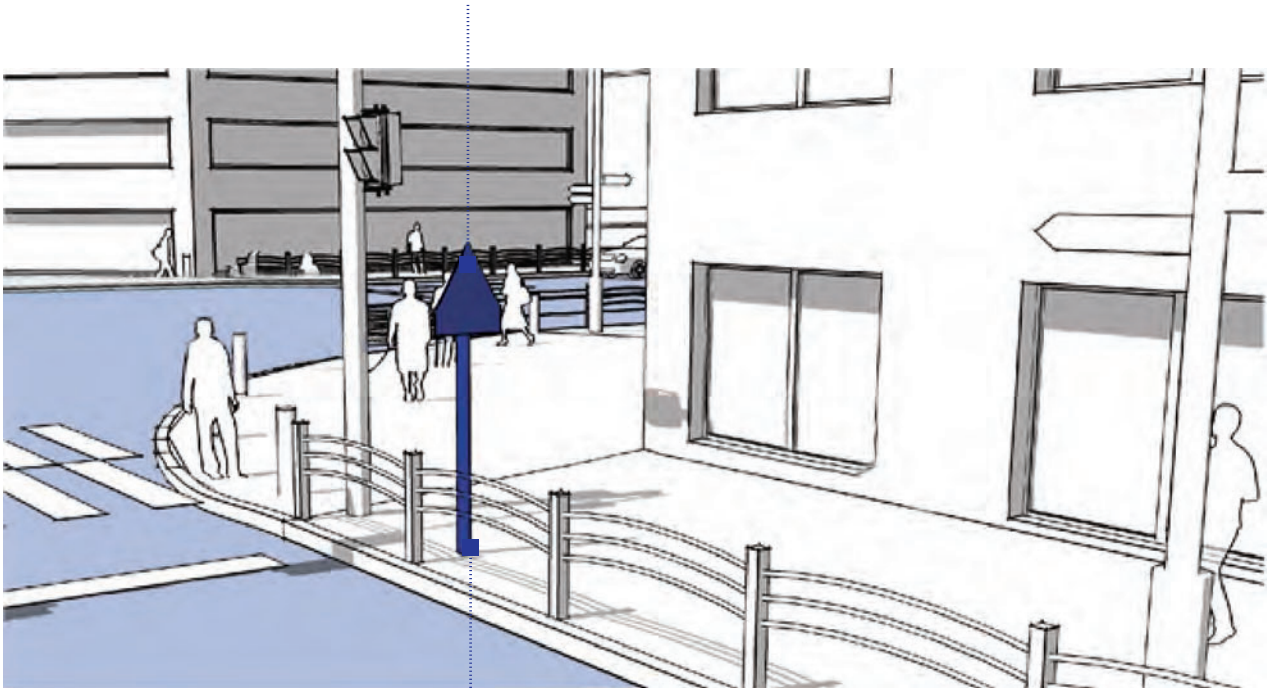
도로주의구간, 도로상의 금지나 제한을 알리고 방향회전, 전용차로 등을 지시, 단속하는 등
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 표시

기본방향

도로 안내정보를 빠르게 인지하도록 설치하기

디자인 원칙

고령자 통행이 잦은 지역의 표지판은
표지판과 안내글자 크기를 10~20% 크게 적용
표지판 후면의 결함부위 및 마감은 미려하게 계획



보행자 통행이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
가로수 및 다른 표지 등과 일정 간격 유지

참조 도로교통법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규정된 교통안전표지 이외의 사용을 금지			
	· 지자체 로고 및 마크 등의 부가 내용은 표기하지 않으며, 원근법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확보			
	· 고령자의 통행이 잦은 지역의 표지판은 표지판과 안내글자 크기를 10~20% 크게 적용			
	· 표지판 후면의 결함부위 및 마감을 미려하게 처리			
	· 시간대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성능이 우수한 반사재료를 사용하거나 조명장치를 설치하며, 야간교통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장소 등은 발광형 안전표지 설치를 권장			
설치배치	· 보행자 통행이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가로수 및 다른 표지 등과 일정 간격을 유지			
	· 동일 표지는 중복 설치하지 않으며, 최소 수량을 적정위치에 설치			
	· 지주시설물이 많은 경우 다른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			



보행자의 통행 및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



표지판 통합 및 조명장치 설치



A. 교통관련 시각매체

3.A.2

노면표지(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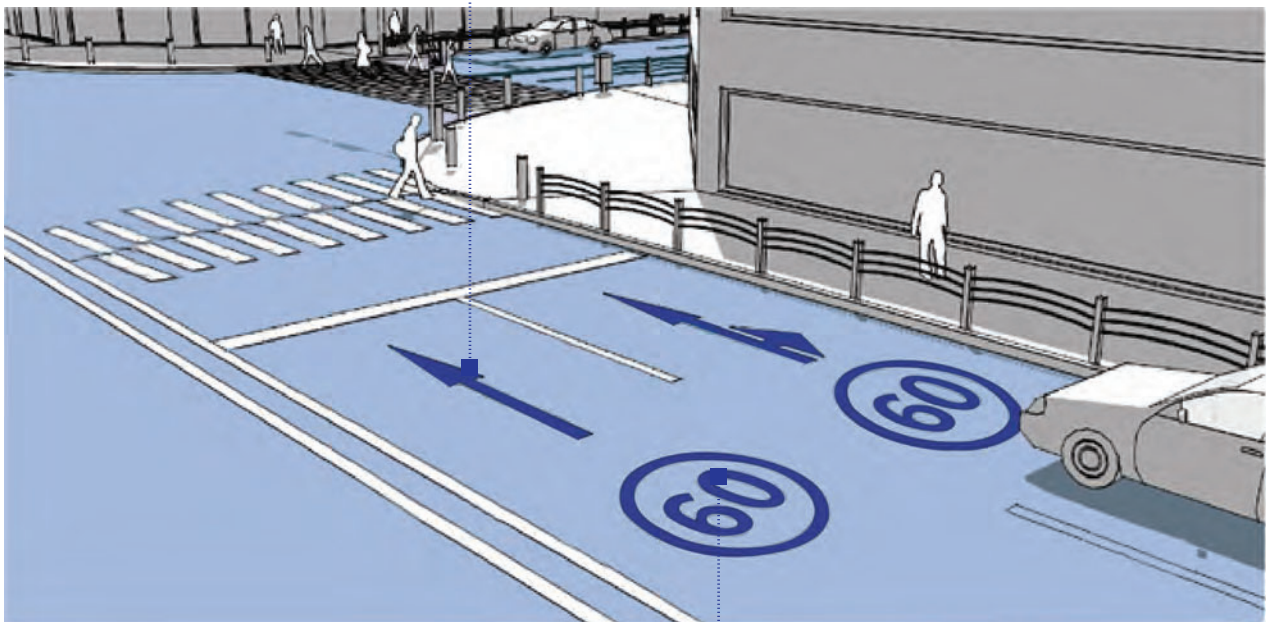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기본방향

운전자가 보는 각도를 고려하여 설치하기

디자인 원칙

노면표지의 면과 선의 두께와 간격이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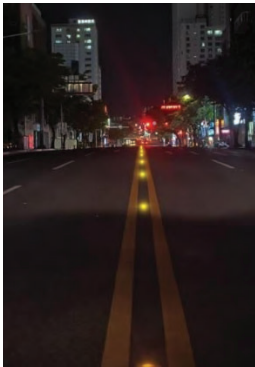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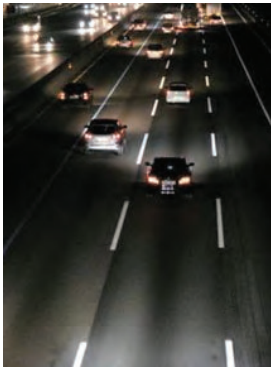
노면표지의 바탕이 되는 바닥면에 여유를 두고 표기
숫자의 너비는 시인성을 고려하여 차로 폭의 1/3 이하로 표기

참조 도로교통법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숫자의 너비는 시인성을 고려하여 차로 폭의 1/3 이하로 하며, 보는 각도에 따른 형태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원근법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확보			
	· 고령자의 통행이 잦은 지역의 표지판은 표지판과 안내글자 크기를 10~20% 크게 적용			
설치배치	· 반사성능 기준과 도로의 종류, 재도색 기준 등은 [경찰청 매뉴얼]을 준수			
	· 노면표지의 바탕이 되는 바닥면에 여유를 두고 표기하여 가독성을 높이며, 노면표지의 면과 선의 두께와 간격이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처리			
	· 차선은 비오는 날이나 야간에도 운전자와 보행자가 차선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게 처리			



가독성을 고려한 노면표지



야간에 차선 시인성 강화를 위해 반사특수도로 및 도로표지병 설치

A. 교통관련 시각매체

3.A.3

이정표지, 방향·방향예고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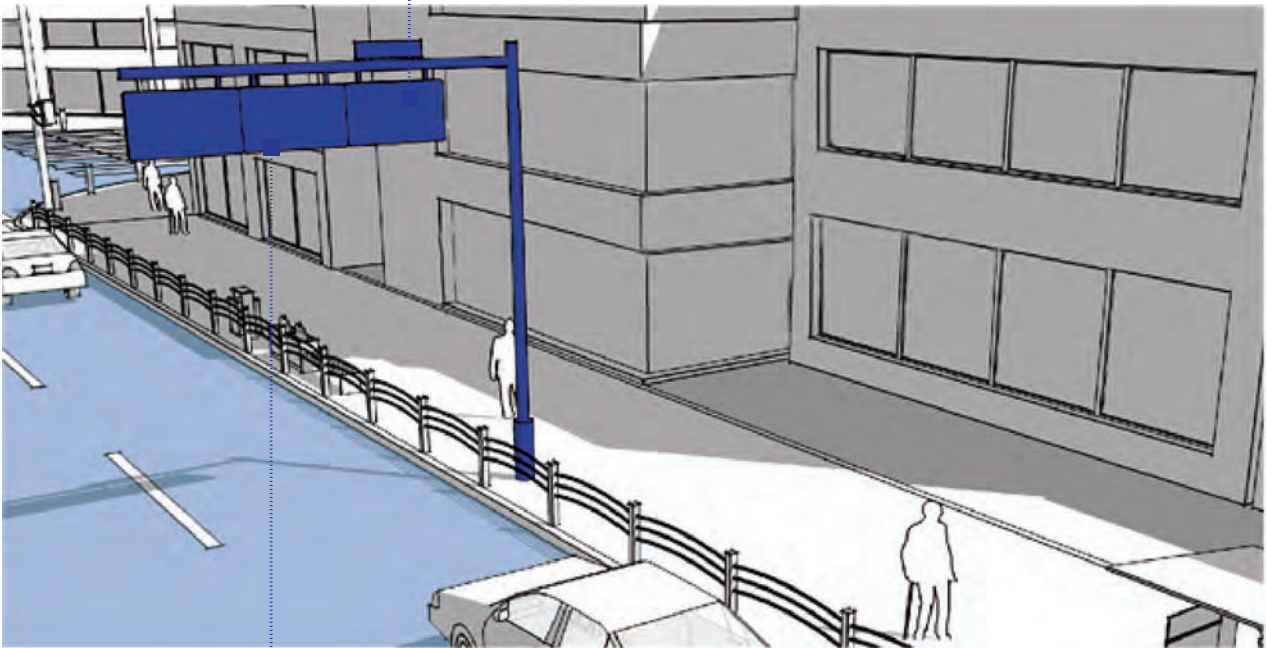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거나 방향 또는 방면을 예고하고 나타내는 표지

기본방향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읽기 쉽게 계획하기

디자인 원칙

직진정보를 불필요하게 많이 전달하여
가장 중요한 출구정보에 대한 인지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리



표지판 내의 픽토그램 적용 시,
지명, 도로번호 등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

참조 도로교통법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운전자의 가독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도로명 안내체계를 도입하여 정보량을 최적화			
·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되,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명 및 시설명은 영문 병기 지양			
· 표지판 내의 픽토그램 적용 시, 지명, 도로번호 등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위치 및 크기의 위계를 정하여 정렬			
· 시간대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성능이 우수한 반사재료를 사용하거나 조명장치를 설치하며, 야간교통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장소 등은 발광형 안전표지 설치를 권장			
설치배치			
· 표기내용의 부분 수정·설치 시, 기존 표기내용과 크기, 여백, 색채 등이 최대한 조화되도록 미려하게 마감			
· 중복 설치를 지양하며, 다른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 권장			
· 출구정보에 대한 인지성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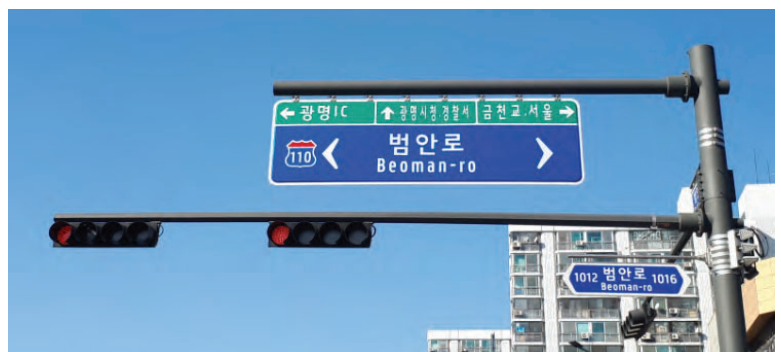
LED 조명매입으로 야간 시인성 확보



직관적인 방향 및 색채로 출구정보에 대한 인지성 확보



가독성을 고려한 정보 배치



최소 수량으로 통합 설치

A. 교통관련 시각매체

심의대상

3.A.4

공공기관·사설기관안내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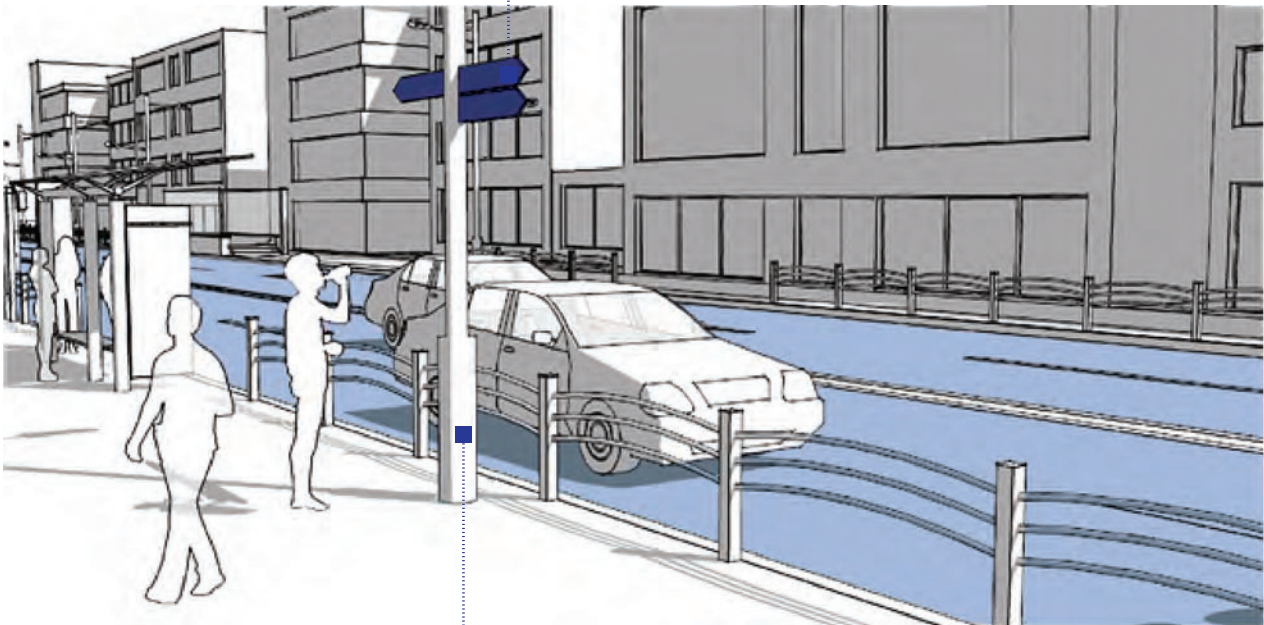
공공기관 또는 사설기관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기본방향

일관성 있게 표준디자인 적용하기

디자인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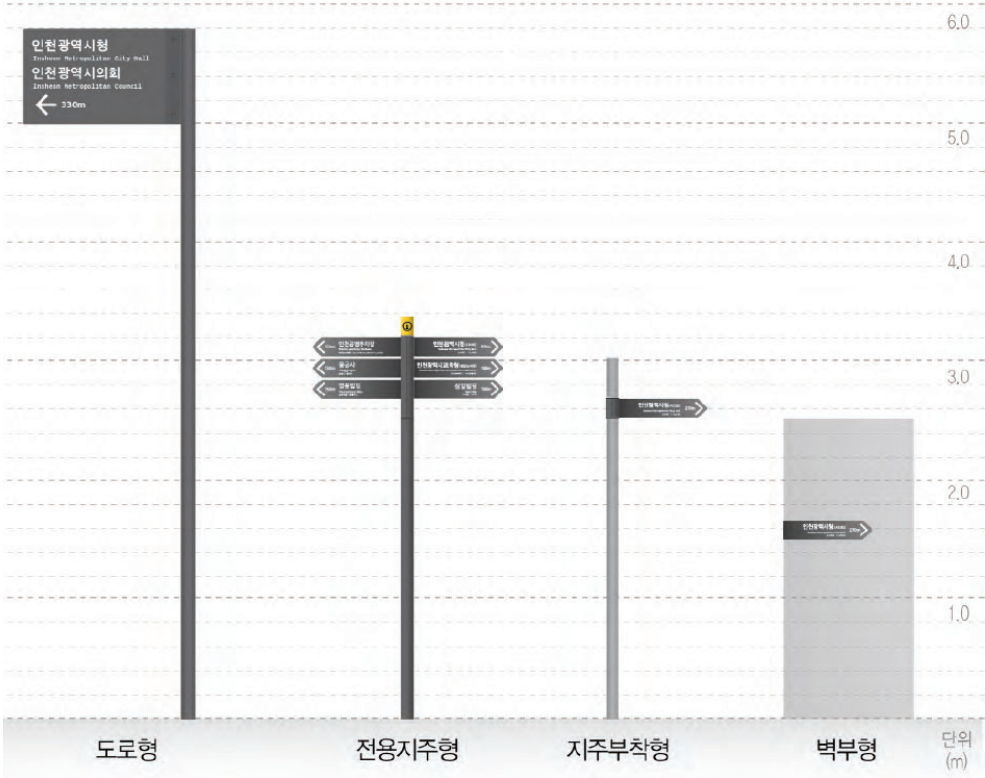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적용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변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표지판의 가로, 세로 규격을
50% 범위 내에서 확대하여 설치



사설기관안내표지는 보행자용과 운전자용으로 분류하여 적용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 높이에 설치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적용			
	· 사설기관안내표지는 보행자용과 운전자용으로 분류하여 적용			
	· 거리표시 단위는 미터(m)를 기본으로 하며, 1,000m 이상의 경우에는 킬로미터(km)로 표기			
	· 하단부의 여백이 확보되더라도 관할 관청의 상징체계(심벌마크, 로고, 브랜드슬로건 등)를 표지에 표기하는 것을 금지			
설치배치	· 양복4차로 이상의 도로변안내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표지판의 가로, 세로 규격을 50% 범위 내에서 확대			
	· 표지판의 하단부가 지면으로부터 2.5m, 끝을 보차도 경계석에서 최소 100mm 이상 안쪽으로 설치하며, 차도방향 설치를 금지			
	· 주로 진입로 교차점에 1개소를 설치하되, 주요 진입로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주요 진입로에 1개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설치 지점에 지주형 시설물이 있을 경우 통합 설치			



사설기관안내표지 표준디자인



설치 규정

시설물색
강화겔벌색 (ICC-공공1)
정보표기색
기능색2-White (ICC-공공4)

A. 교통관련 시각매체

심의대상

3.A.5

주차안내표지(주차장안내, 주차요금·이용안내, 주차장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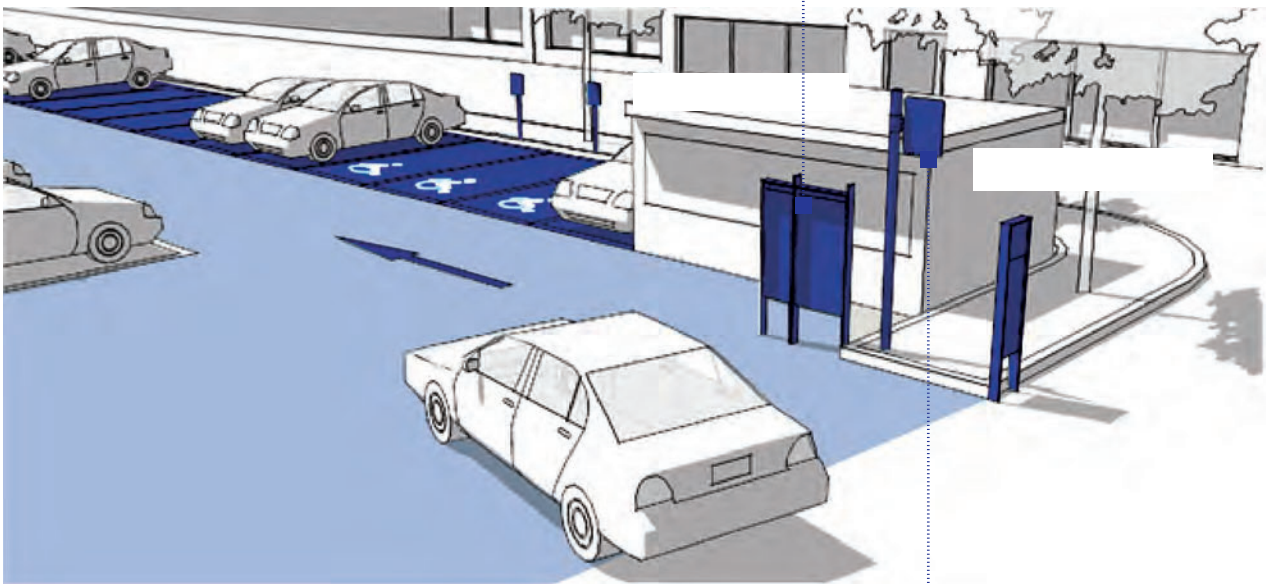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

기본방향

주차정보 인지가 쉽도록 표준디자인 적용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적용
보행자용 및 차량용을 고려하여
통행이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 및 높이에 설치



지주이용 안내판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 높이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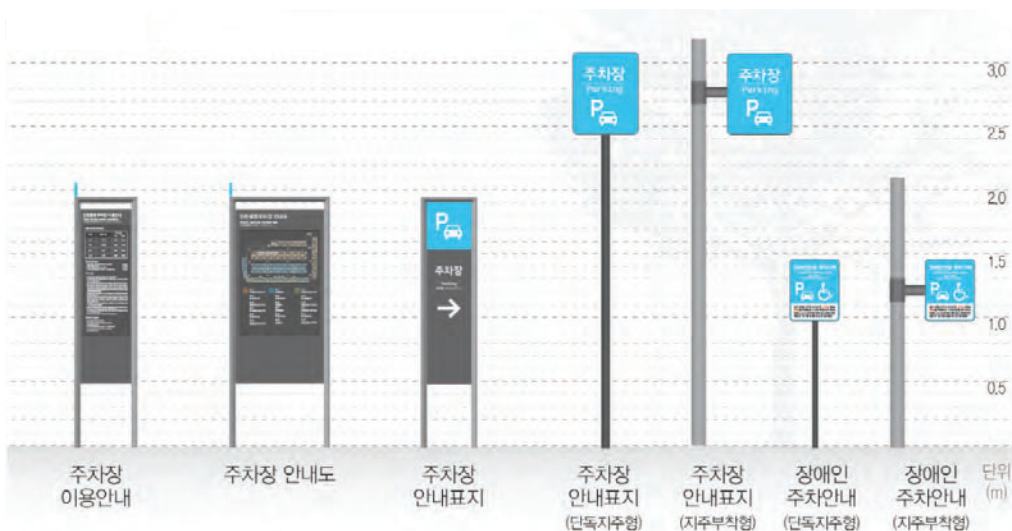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적용			
· 차량 안의 운전자 시야를 고려하여 정보매체의 높이를 1.6m 확보			
· 주차장이용안내는 주차요금 등 이용에 꼭 필요한 내용만 표기			
설치배치			
· 보행자용 및 차량용을 구분하여 통행이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 및 높이에 설치			
· 주차장안내표지(폴형, 지주부착형)는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이 되도록 설치			
· 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확대 설치를 권장			
기타			
· 거주자 우선주차 안내판, 승용차번호제 및 요일제 안내표지판 등 주차안내표지와 관련된 시각정보매체는 일관된 색채 및 표기체계로 디자인하며, 표준디자인을 적용			



거주자 우선주차 안내판 표준디자인

승용차번호제/승용차요일제 안내판 표준디자인



주차장안내판 표준디자인

시설물색
강화겟벌색 (ICC-공공1)
정보표기색
기능색2-White (ICC-공공4)
강조색
파랑 (Pantone 2995C)

A. 교통관련 시각매체

3.A.6

장애인주차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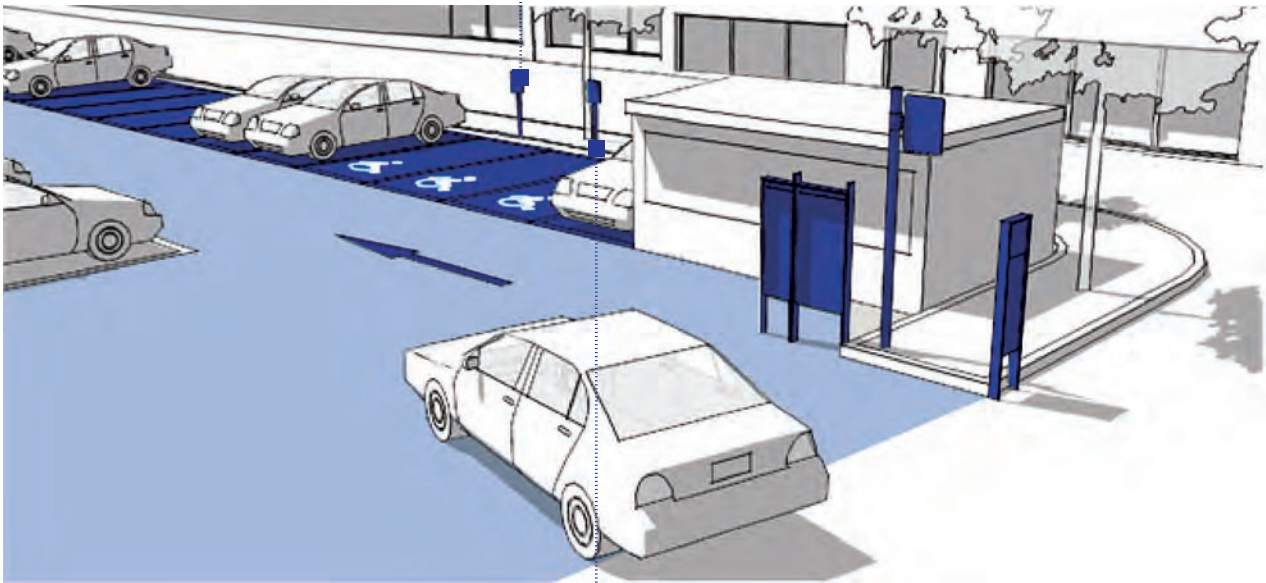
장애인주차구역에 관한 안내표지

기본방향

주차정보 인지가 쉽도록 표준디자인 적용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적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표지는
 주차 후에도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



지면으로부터 1m 이상 높이에 설치

- 참조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적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지는 표준 픽토그램을 적용			
	· 장애인전용주차안내판은 전용색채를 적용하여 구역을 구분			
설치배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지는 주차 후에도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지는 바닥과 출입통로에 표시하고, 휠체어 활동공간도 표시			
	· 장애인주차장안내(폴형, 지주부착형)는 지면으로부터 1.5m 이상이 되도록 설치			
	· 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확대 설치를 권장			



장애인주차표지 표준디자인 재정비 적용

- 시설물색
- 강화갯벌색 (ICC-공공1)
- 정보표기색
- 기능색2-White (ICC-공공4)
- 강조색
- 인천바다색 (ICC-공공5)

A. 교통관련 시각매체

심의대상

3.A.7

버스승차대표지, 버스노선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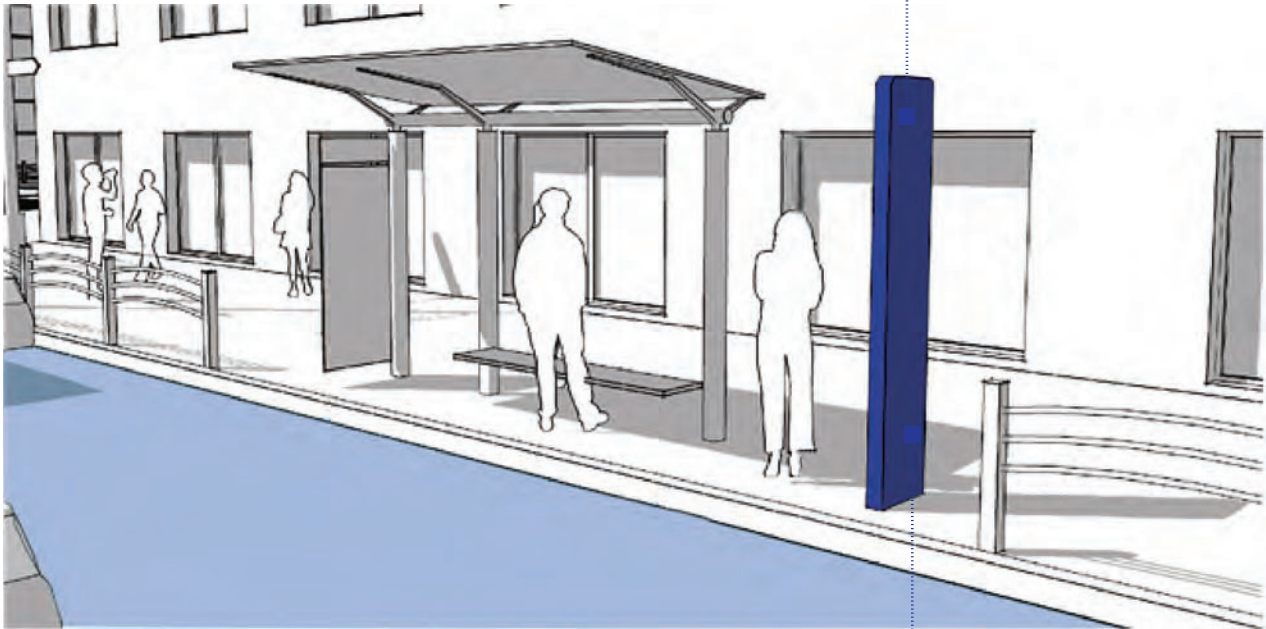
버스가 정차하여 대기, 승차할 수 있는 위치를 나타내고 각 노선을 안내하는 표지

기본방향

명칭과 노선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준디자인 적용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적용
가독성을 고려하여 문자의 서체, 크기, 간격 결정
시각장애인용 점자, LED조명을 매입 권장



노선도와 실제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을 일치시키고 현 위치 표시
지선, 간선, 순환, 광역, 마을 버스의 노선을 명확히 표기
주요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환승이 가능한 곳에는 환승 정보를 제공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적용			
	· 버스표시인은 보도 폭과 인접 시설물의 유무, 정차하는 노선수를 고려하여 유형을 선택, 적용			
	· 가독성을 고려하여 무채색을 기본으로 하고, 강조색이 안내면 면적의 25%를 넘지 않도록 배색			
	· 상업광고는 최소화하여 지정된 위치에 부착			
	· 가독성을 고려하여 문자의 서체, 크기, 간격을 정하며, 시각장애인용 점자, LED조명을 매입			
설치배치	· 지선, 간선, 순환, 광역, 마을 버스의 노선을 명확히 표기하며, 주요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환승이 가능한 곳에는 환승정보를 제공			
	· 노선도와 실제 도로의 차량 진행방향을 일치시키고 현 위치를 표시			



버스승차대표지 표준디자인 재정비 적용

A. 교통관련 시각매체

3.A.8

버스측면정보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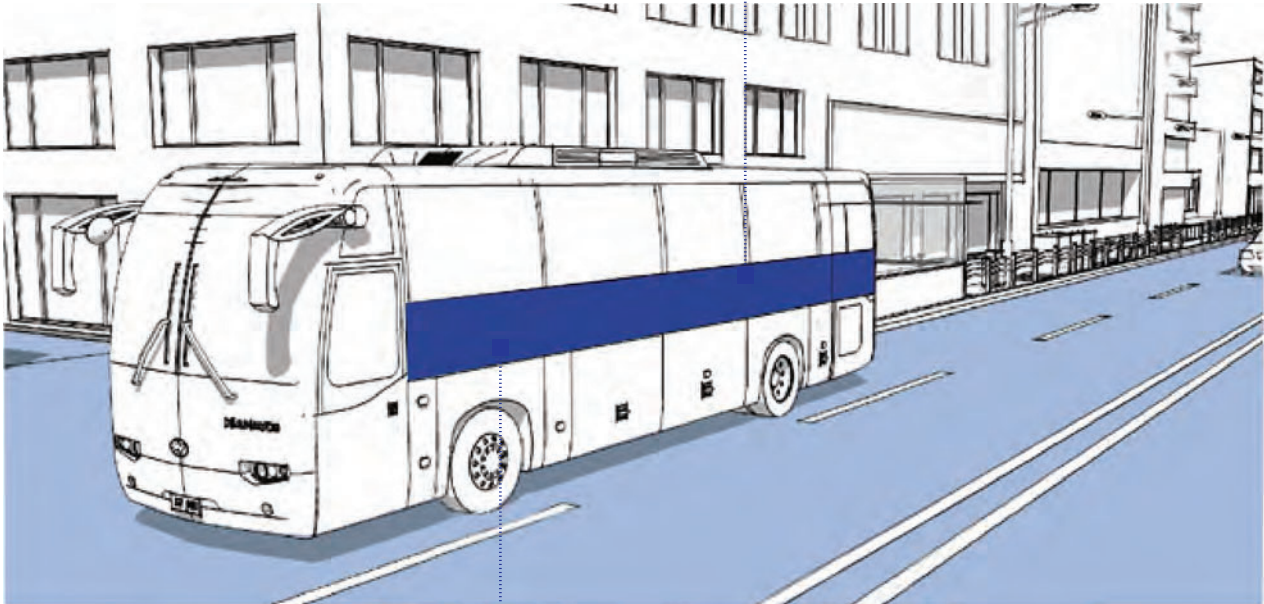
버스의 측면을 이용한 정보 영역으로, 상업광고 및 경유지, 노선 등을 안내하는 표지

기본방향

광고를 최소화하여 노선 구분이 쉽도록 하기

디자인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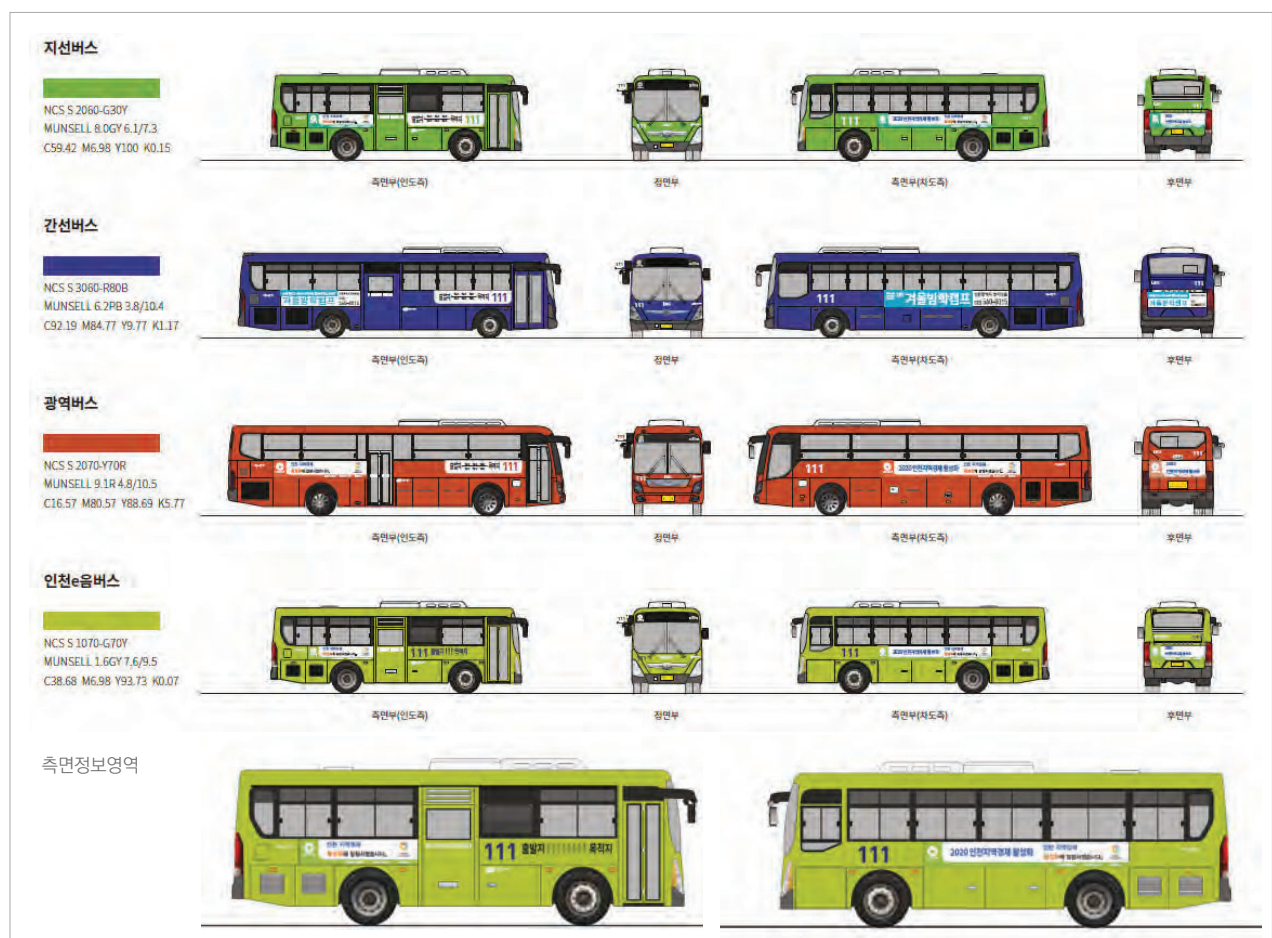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의 도시이미지 향상과 공공정보 전달의 적용 권장
인천의 브랜드, 상징아이콘, 지역자원과 연계한 그래픽 및 색채 적용



상업광고, 캠페인 홍보 등의 설치 시 운전자 방향 쪽 측면 설치
창문을 제외한 유효 표기 면적의 1/2 이내,
크기 및 색채 등의 조정으로 노선안내 등의 공공정보와 구별

참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버스색채디자인 매뉴얼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노선버스는 인천광역시의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도안과 색채를 차별화하며, 노선 구분이 쉽도록 노선별 색상을 적용		
	· 노선번호와 노선명, 노선도 정보에는 검정색과 고채도 원색을 사용 금지		
설치배치	· 인도 방향 버스측면에는 노선도를 부착		
	· 광고는 인천광역시의 도시이미지 향상 및 시민을 위한 공공정보를 제공		
	· 상업광고, 캠페인 홍보 등의 설치 시에는 운전자 방향 쪽 측면에 창문을 제외한 측면면적의 1/2 이내, 크기 및 색채 등의 조정으로 노선안내 등의 공공정보와 구별		
	· 시티투어버스의 외관디자인은 인천의 브랜드, 상징아이콘, 지역자원과 연계한 그래픽, 색채를 적용		



자선·간선·광역·인천e음버스 색채디자인

A. 교통관련 시각매체

심의대상

3.A.9

택시승차대표지

택시승차대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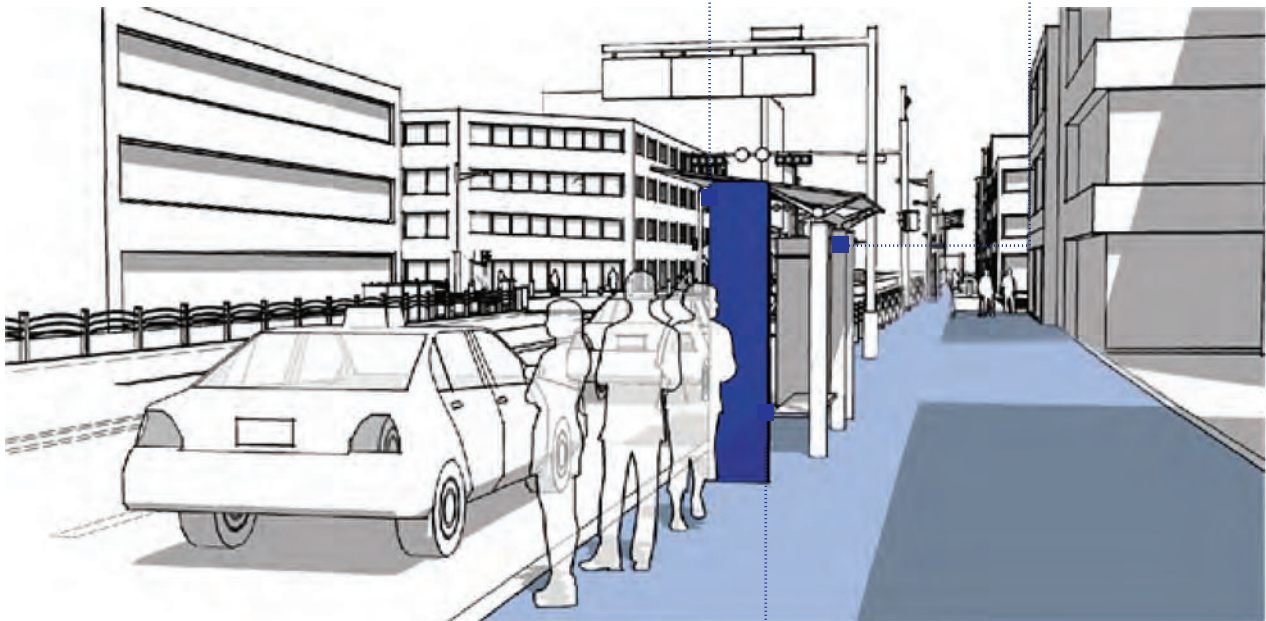
이용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준디자인 적용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적용



유리면에 이용안내정보를 부착하는 경우
경관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글씨만 부착하거나
정보의 배경에 투명도를 적용



야간 이용 시, 시인성을 확보하도록
사인 측면에 LED 조명 매입 권장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적용			
	· 이용안내정보는 무채색을 바탕으로 하여 명시성이 높은 2가지 색채 내에서 표기			
	· 원거리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을 활용하며, 명시성이 높은 배색을 적용			
	· 야간 이용시,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인의 측면에 LED Lighting Bar를 매입			
설치배치	· 유리면에 이용안내정보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경관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글씨만 부착하거나 정보의 배경에 투명도를 적용			



택시승차대표지 표준디자인 재정보 적용

A. 교통관련 시각매체

3.A.10

택시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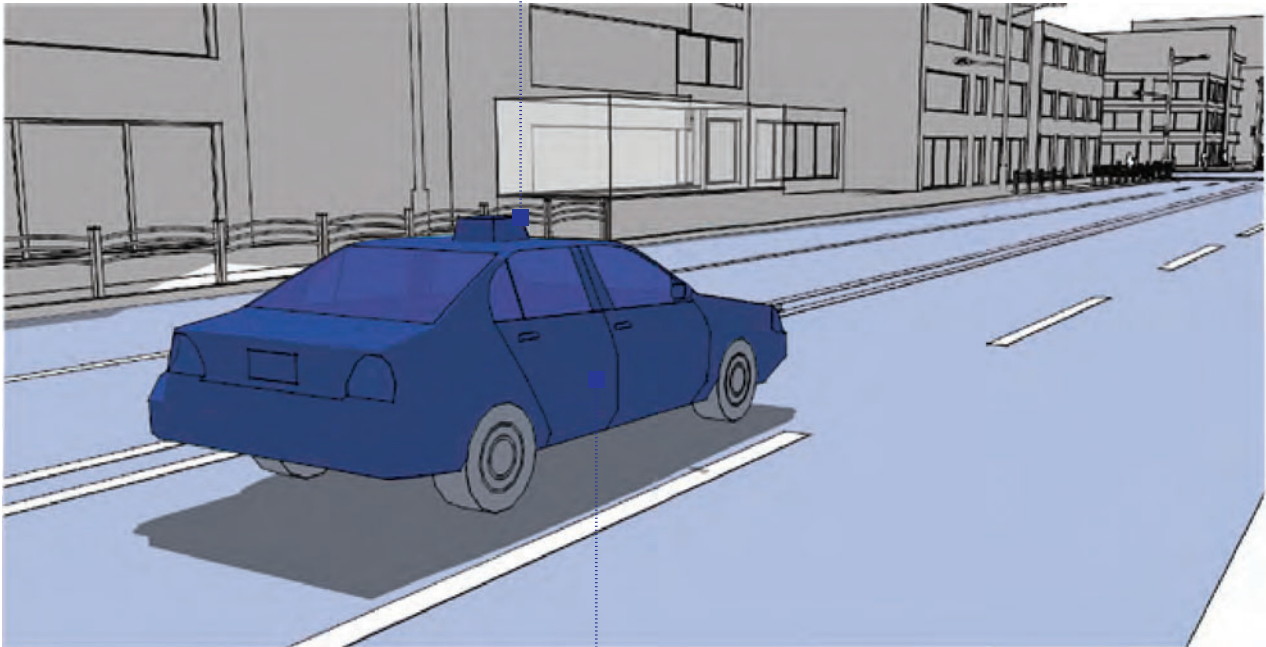
택시의 측면을 이용한 정보 영역으로, 상업광고 등을 안내하는 표지

기본방향

인천광역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디자인 적용하기

디자인 원칙

택시 캡의 픽토그램, 형태, 색채, 서체 등의 통일 권장
원색 사용 지양



광고물 등 부착물의 위치와 규격의 통일 권장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브랜드 및 상징물 개발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인천광역시의 도시브랜드, 도시색을 활용한 외관 색채, 그래픽의 적용으로 도시의 상징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이동수단이 되도록 계획			
· 택시 캡의 픽토그램, 형태, 색채, 서체 등을 통일하며, 원색은 사용 지양			
· 초행자, 외국인을 위하여 다국어 이용안내정보를 우측 유리면에 부착하되, 크기는 최소화 하며, 픽토그램을 적용			
설치배치			
· 광고물 등 부착물의 위치와 규격을 규정화			
· 상업광고는 최소화하며, 인천광역시의 도시이미지 향상 및 시민을 위한 공공정보를 제공			



인천광역시 e음택시 그래픽 디자인



상업광고를 최소화

A. 교통관련 시각매체

심의대상

3.A.11

지하철안내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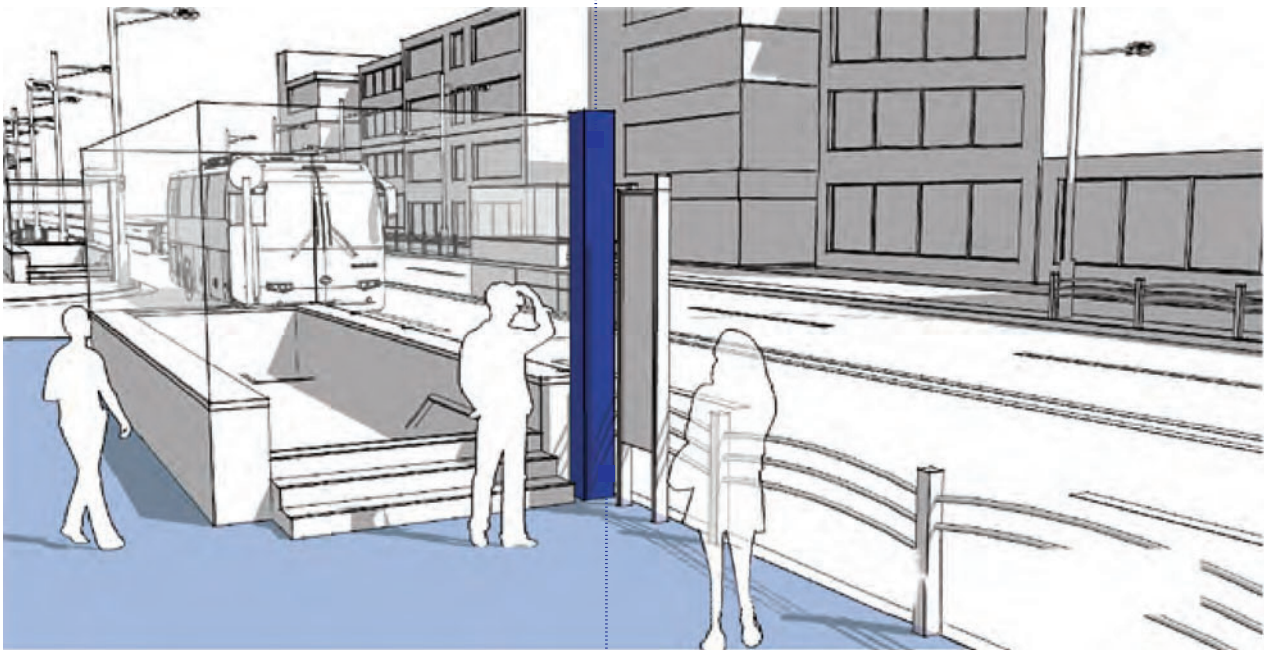
지하철역의 위치 또는 출구번호를 안내하는 표지

기본방향

찾기 쉽도록 통일된 표준디자인 적용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적용
보행방향과 상관없이 역 표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양방 또는 사방이 면처리가 된 표지디자인 설치



지주와 접하는 부분은 정교하게 마감
주변 시설, 가로수로 인해 가려지지 않도록 일정거리를 두어 설치

참조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적용			
	· 지하철 심볼사인, 노선번호, 역명, 출구번호를 표기하며, 그 외의 것들은 표기 금지			
	· 인천광역시 내 모든 역의 표지가 일관성을 갖도록 형태, 마크, 색채를 통일			
	· 외부에서도 노선의 정보가 쉽게 인지되도록 무채색을 바탕으로 하여 노선별 색상을 강조색으로 적용			
	· 보행방향과 상관없이 역 표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양방 또는 사방에 정보를 표기			
설치배치	· 지하철 심볼사인은 지주형사인으로 통합하고 별도 설치는 금지			
	· 외부 지주형사인은 가급적 출입구 외부계단 끝으로부터 3m 이내의 근접거리로 설치하되, 위치는 보행자의 인지 편의성을 기준으로 설치			
	· 지주와 접하는 부분은 정교하게 마감하며, 주변시설, 가로수로 인해 가려지지 않도록 일정 거리를 두어 설치			



지하철안내표지 외부 지주형사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통합안내사인 표준디자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 입구역명판(구역사) 표준디자인 재정비 적용

시설물색

강화겔색 (ICC-공공1)

정보표기색

기능색2-White (ICC-공공4)

강조색(안전색)

기능색3-Yellow (ICC-공공7)

강조색

인천1호선

강조색

인천2호선

A. 교통관련 시각매체

심의대상

3.A.12

지하철노선도·종합안내도

지하철의 모든 노선을 안내하고, 지하철역의 시설 및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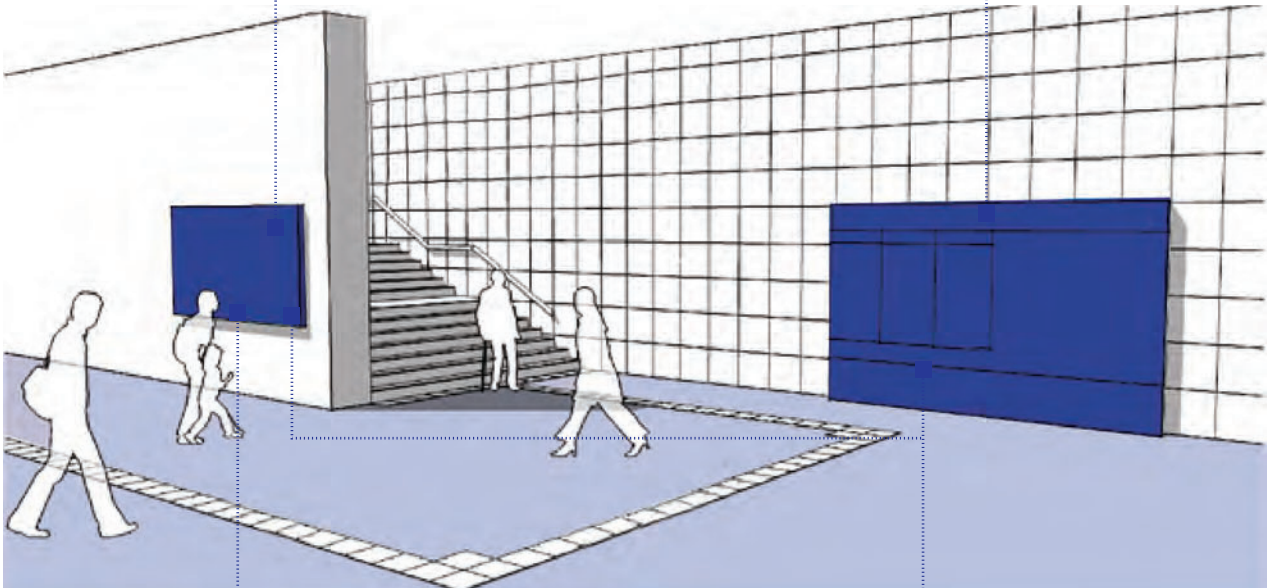
기본방향

일관된 정보 제공으로 통일된 표준디자인 적용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적용
 위급상황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화장실 및 비상 대비로 등은 픽토그램 적용
 역 이용 정보, 출구, 외부시설안내, 연계버스이용안내,
 내부 안내도 및 비상대피로에 대한 정보 적용

호선별 색상을 구분하여 적용하되,
 색각이상자를 배려하는 색채를 적용 권장



종합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 병기 및 음성안내장치 등의 설치 권장

쉽게 지하철 노선 정보, 외부 및 현 위치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도록
 주요 출입구 및 결절부, 눈에 잘 띄는 주요 동선에 설치

참조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형태색채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적용

·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여백을 확보하며, 정보의 표기가 중복되지 않도록 배치

· 외국인 이용객을 고려한 다국어 표기로 국제성을 향상

노선안내도

· 각 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노선안내도를 통일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

· 호선별 색채를 구분하여 적용하되, 색각이상자를 배려한 색채를 적용

종합안내도

· 역이용정보, 출구, 외부시설안내, 연계버스이용안내, 내부안내도 및 비상대피로에 대한 정보를 적용

· 화장실 및 비상대피로 등은 위급 상황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픽토그램을 적용

설치배치

· 종합안내도에 점자 병기 및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

노선안내도

· 쉽게 지하철 노선에 대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눈에 잘 띄는 주요 동선에 설치

· 환승이 가능한 역은 환승정보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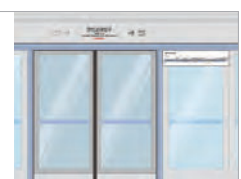
종합안내도

· 현재 사용자의 위치를 표기하며, 현재 위치의 방향과 안내판의 설치방향이 일치하도록 배치

· 쉽게 외부 및 현 위치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도록 주요 출입구 및 결정부, 주요 동선에 설치



지하철노선도(인천도시철도 1호선 통합안내사인 표준디자인)



승강장 스크린도어에 부착



지하철종합안내도(인천도시철도 1호선 통합안내사인 표준디자인)

시설물색

강화겟벨색 (ICC-공공1)

정보표기색

기능색2-White (ICC-공공4)

강조색

인천1호선

강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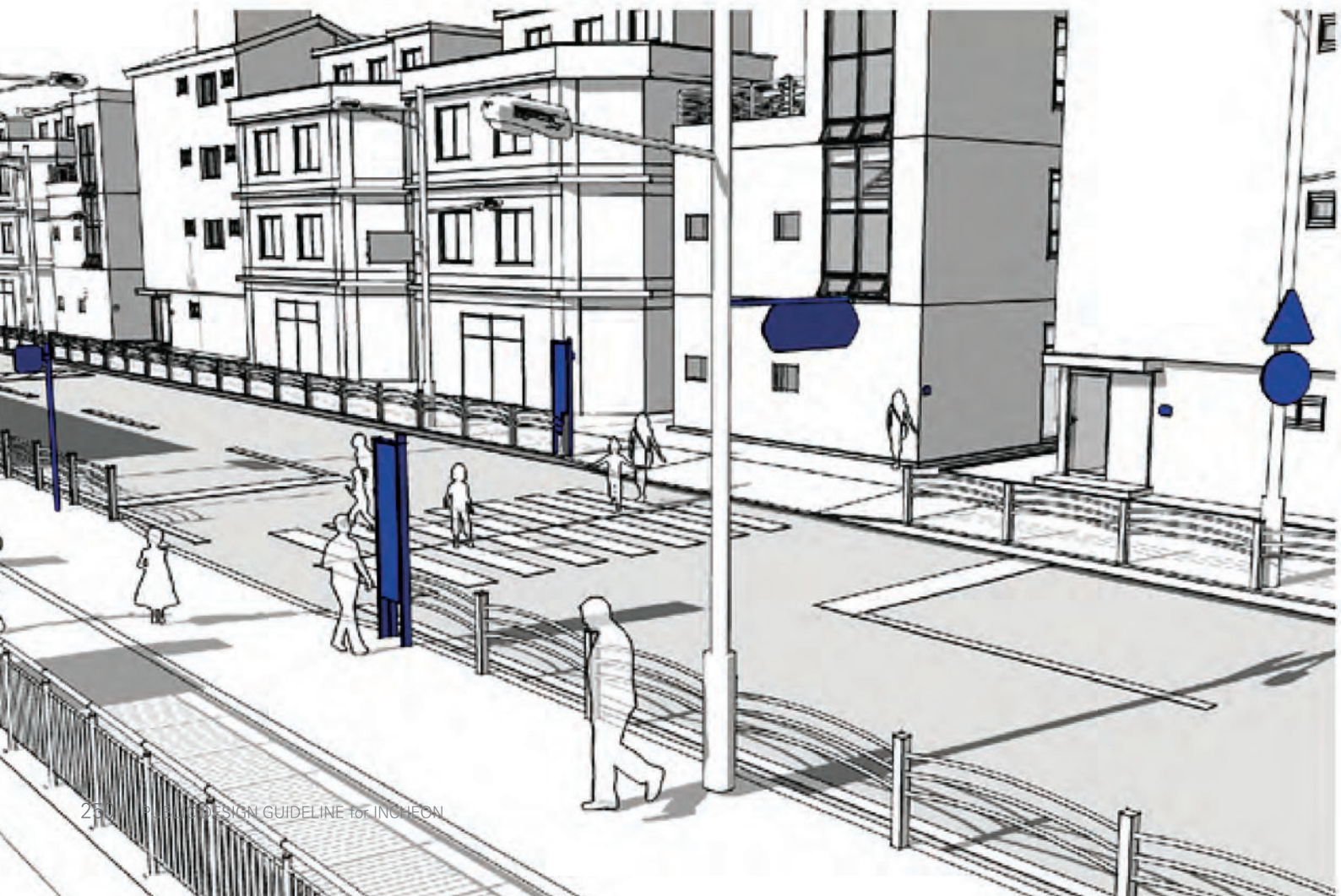
인천2호선

B

보행관련 시각매체

중점사항

- | | |
|-------------------------------|---|
| 01 생활안전 및 보행안전
확보하기 | 다양한 사용자와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높이와 크기 결정
사고 다발구간 및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
고령자의 통행이 잦은 지역은 글자크기를 10~20% 크게 적용 |
| 02 도시조화성 및 정체성,
지속가능성 고려하기 | 중복 설치 지양 및 다른 지주 시설물과의 통합 설치 권장
안내정보 외에 불필요한 정보표기나 장식 배제
야간식별이 용이하도록 부분적 반사재료 및 LED 사용 지향 |



세부구성

- 보행관련 시각매체는 보행자를 위한 표지로서 현재 위치 파악, 방향 안내 등의 기능을 하며, 보행자방향표지 및 지역안내표지, 무단횡단금지표지, 장애인유도사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자전거도로안내 등을 포함한다.

- 가이드라인의 세부구성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분류코드	종분류	세부 구성	
3.B.1	보행자안내·방향표지, 지역안내표지	·형태색채	·설치배치
3.B.2	무단횡단금지표지		
3.B.3	장애인유도사인, 장애인유도안내표지		
3.B.4	도로명판		
3.B.5	건물번호판, 건물번호안내도		
3.B.6	자전거도로안내, 자전거도로노면표지(보행로)		

- 보행관련 시각매체는 기능 및 목적에 따라 6개 대상으로 세분화하며, 형태색채, 설치배치 등 세부 요소로 각각의 지침을 제시한다.

관련법규 및 문헌

도로교통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소정보시설 규칙
 도로명주소안내시설 규칙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지침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B. 보행관련 시각매체

심의대상

3.B.1

보행자안내·보행방향·지역안내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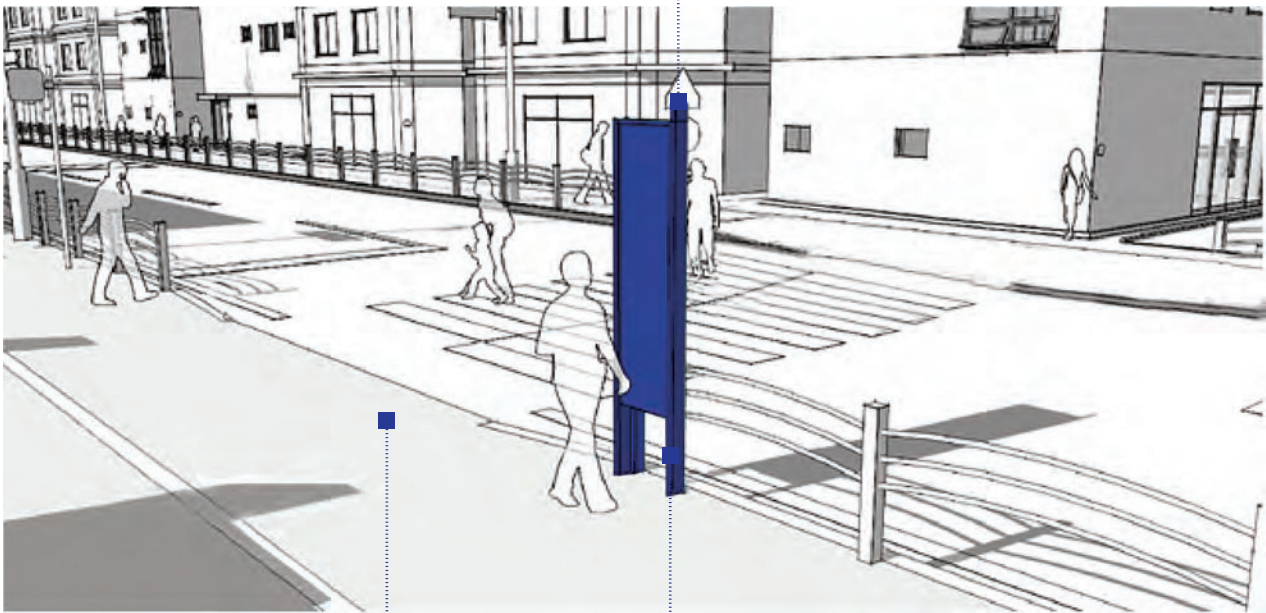
보행자에게 현 위치, 방향, 접근방법, 주변 주요자원 및 관광시설, 주요 시설물 등 위치를 알려거나 방향을 안내하는 표지

기본방향

방향과 위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준디자인 적용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적용
이용편리성을 향상하기 위해 보행자에게 색채 정보를 일관되게 전달
다양한 사용자와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높이와 크기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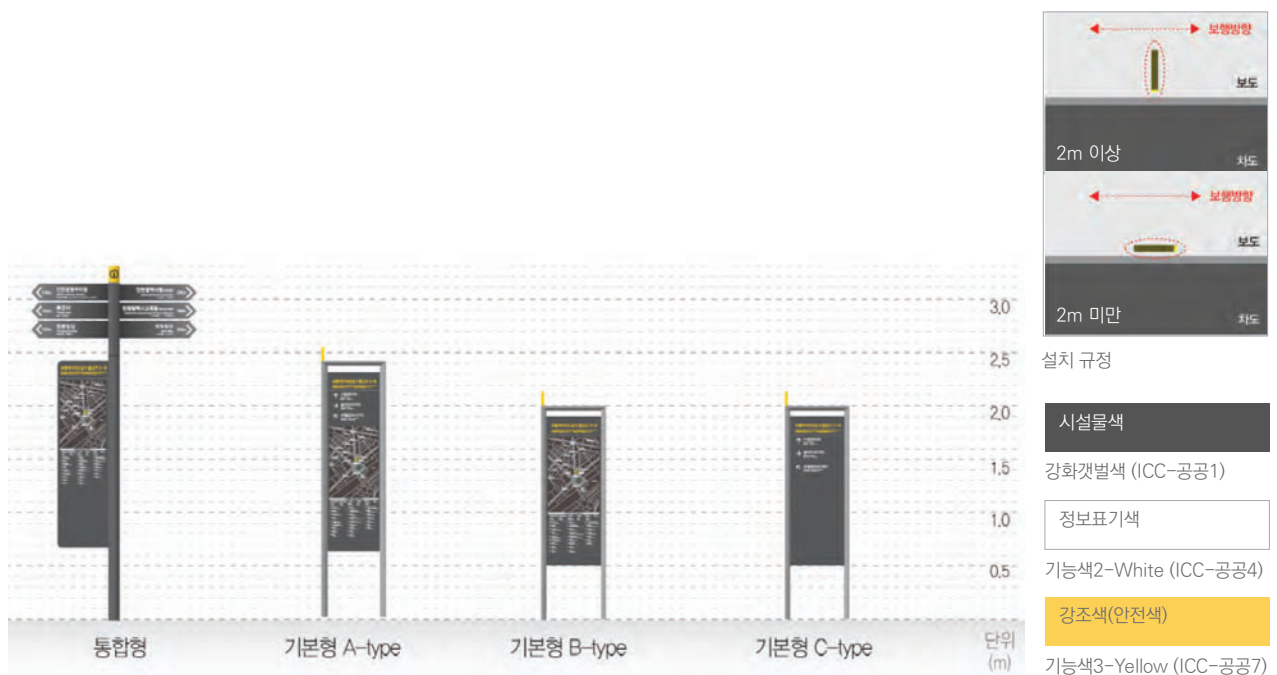


2m 이상 보행폭 확보 시, 양면 사용
2m 미만일 경우, 보행방향과 평행 설치
다른 지주 시설물과의 통합 설치 권장

가로수, 신호등, 기타 시설물로 인한
시각적 차폐가 없도록 설치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며, 도로폭에 따라 적용 타입을 선택			
	· 보행자에게 색채 정보를 일관되게 전달함으로써 이용편리성을 향상			
	· 보행자 안내정보 외에 불필요한 정보표기나 장식의 사용을 금지하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간의 여백을 최대한 확보			
	· 주변의 주요 기관 및 길 찾기에 이정표가 되는 주요 시설을 표기			
	· 인천광역시 내 설치위치를 대거점, 중거점, 소거점으로 구분하여 각 위치별 필요한 정보를 제공			
	· 모든 사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600mm 이하로는 표기 지양			
	· 야간식별이 용이하도록 부분적 반사재료 및 LED를 권장하며, 지나친 조명은 사용 지양			
설치배치	· 다양한 사용자와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높이와 크기를 정하며, 다른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 권장			
	· 2m 이상 보행폭 확보 시 양면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2m 미만일 때에는 보행 방향과 평행 설치			
	· 이용자의 정보 습득이 용이하도록 주요가로, 블록입구, 결절부 집객지점 등에 설치			
	· 가로수, 신호등, 기타 시설물로 시각적 차폐가 없도록 설치			



보행안내 시각매체 표준디자인

B. 보행관련 시각매체

3.B.2

무단횡단금지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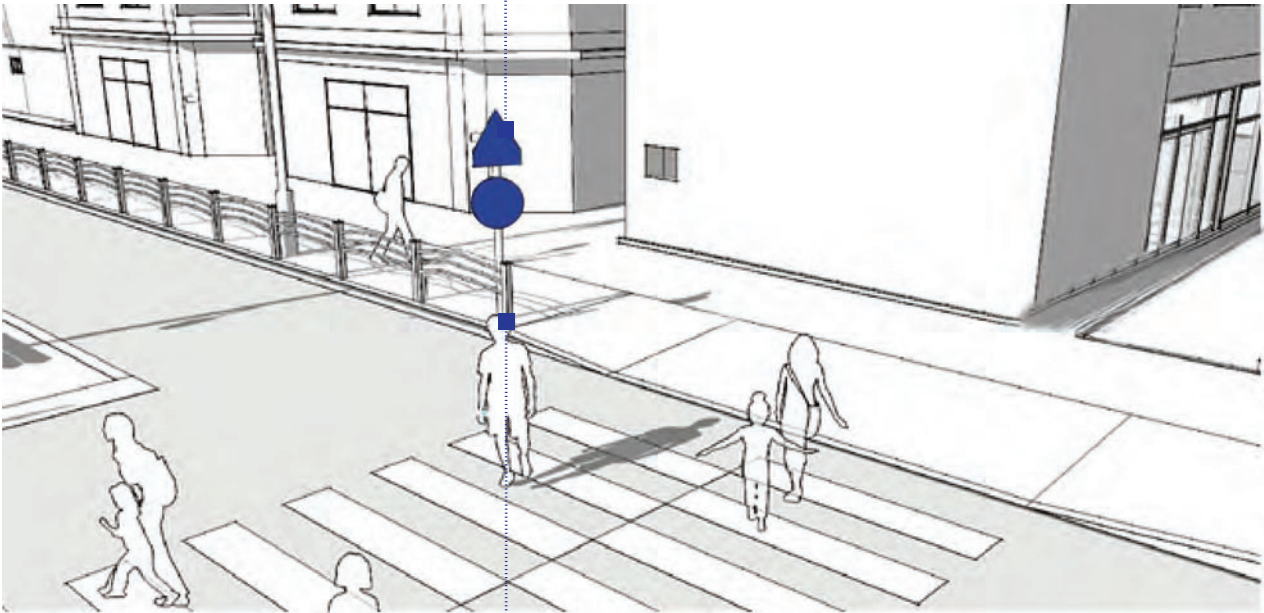
보행자 및 운전자들이 원거리에게도 쉽게 식별하여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

기본방향

주·야간 식별이 용이하게 안전정보 전달하기

디자인 원칙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 적용
강조색을 사용하여 특성을 살리는 것을 권장
캠페인성 그래픽을 활용하여 위험성을 전달하는 것을 권장
장식적인 요소 및 지나친 조명 지양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 결정
인천광역시 내 교통사고 다발구간 및 무단횡단의 위험성이 있는 도로에
설치하여 경각심을 가지도록 유도

참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며,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를 적용			
	· 정보전달이 우선시 되도록 장식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			
	· 야간식별이 용이하도록 부분적 반사재료 및 LED를 적용하며, 지나친 조명은 사용 지양			
	· 안전색채를 강조색으로 사용하여 금지정보를 전달			
	· 캠페인성 그래픽을 활용하여 위험성을 전달하는 것을 권장			
설치배치	· 인천광역시 내 교통사고 다발구간 및 무단횡단의 위험성이 있는 도로에 설치			
	· 지상도로와 표지 하단부가 수평이 되도록 설치			
	· 중앙분리대 설치 시 이탈 등으로 인해 주행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견고한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설치			



무채색의 시설물에 안전색채를 강조색으로 사용



안전색채 및 반사재료를 사용하여
정보전달



캠페인성 그래픽을 활용(무단횡단방지 공공디자인 솔루션 제작
프로젝트_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B. 보행관련 시각매체

3.B.3

장애인유도사인, 장애인유도안내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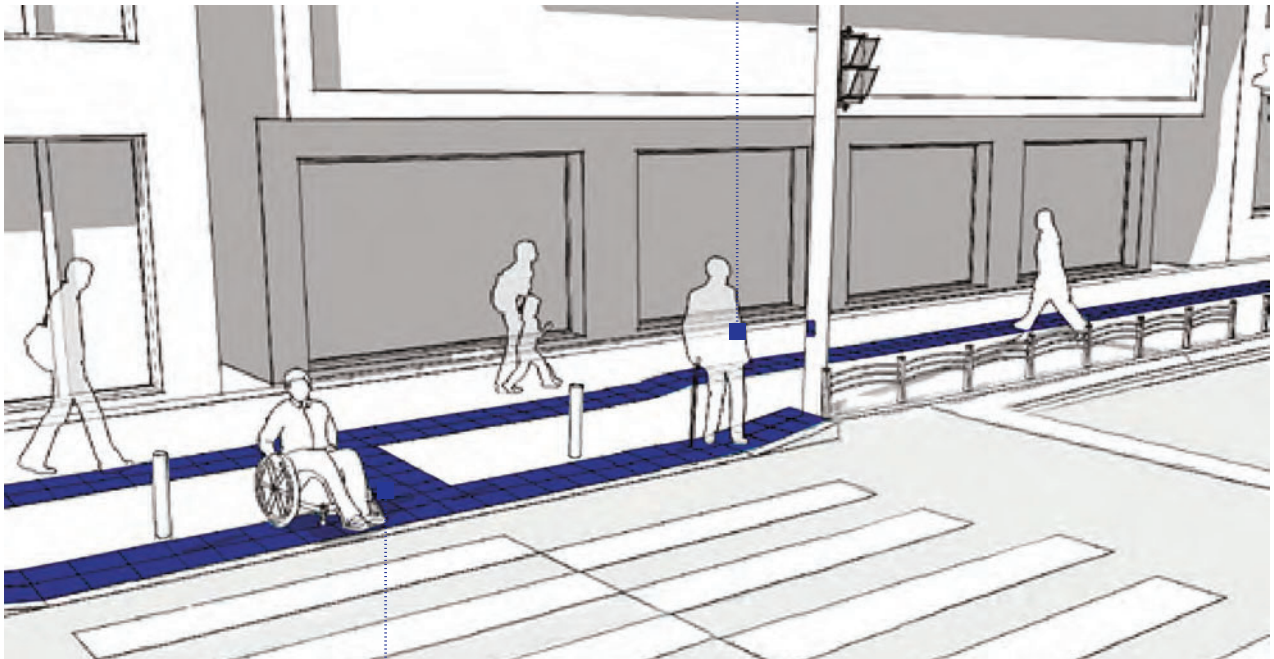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직진, 정지 등의 점자블록으로 안내하는 표지

기본방향

차별없는 보행정보 제공하기

디자인 원칙

필요한 안내정보를 적절히 전달하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음향정보 등 설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기타 유도신호장치 등 설치



점자블록은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보도면과 동일한 높이로 설치
점자블록과 휠체어 통행로를 분리하여 설치

참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국토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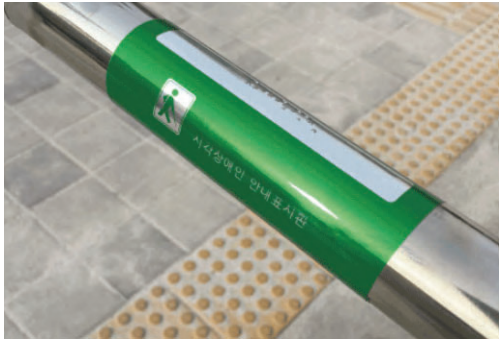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보행자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미끄럼 방지 합성물을 첨가하며, 주변 바닥 색채와 구분되도록 적용		
	· 점자블록의 색상은 황색계열을 원칙		
설치배치	· 점자블록은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보도면과 동일한 높이로 설치하며, 점자블록과 휠체어 통행로를 분리하여 설치		
	· 점자블록 주변에 돌출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으며, 마감부를 미려하게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		
	· 위험장소로부터 최소 300mm 이상 이격하여 점자블록을 설치		
	·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기타 유도신호장치 등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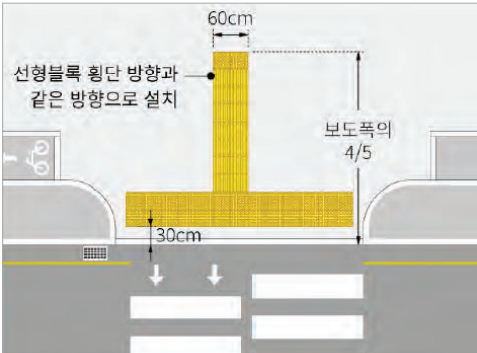
시각장애인용 음성신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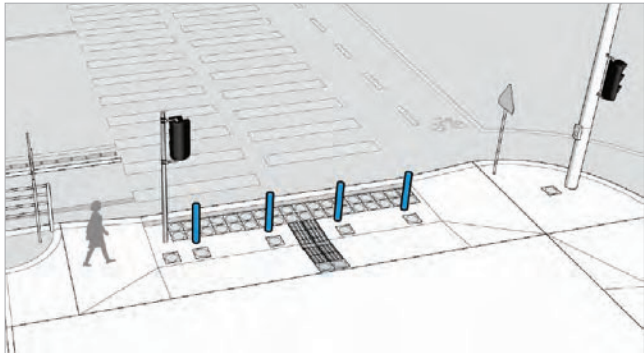
시각장애인 점자 촉지 블라드



핸드레일 점자촉지판



횡단보도 점자블록 설치유형(기본형)



횡단보도 주변 블라드 설치 예시

*출처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출처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B. 보행관련 시각매체

3.B.4

도로명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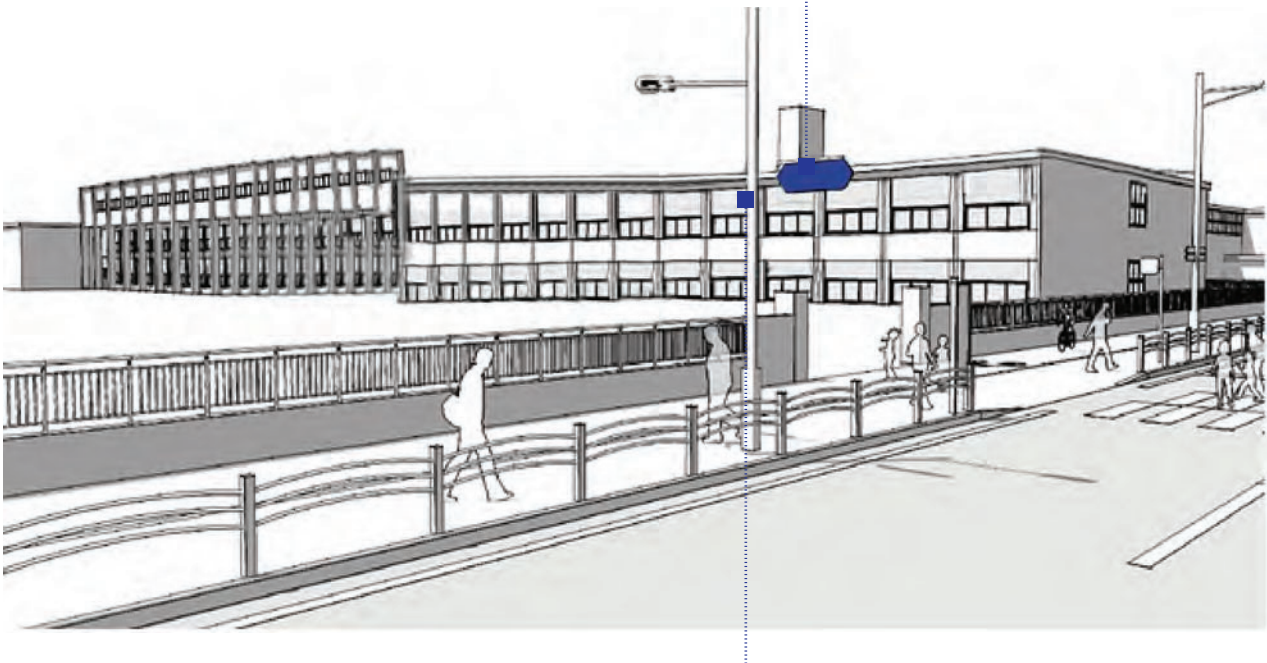
도로의 이름 및 주택과 건물에 부여된 번호를 안내하는 표지

기본방향

일관된 정보 전달하기

디자인 원칙

차량용과 보행자용으로 분리하여 설치하고,
차량용은 교차로에 한정
야간에 인지가 가능하도록 외곽부 및 표기요소 등에
반사소재 적용 및 친환경 LED 조명 적용을 권장



지주와의 결합부위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처리

참조 도로명주소안내시설 규칙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지침(국토교통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현수식 도로명판은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부착방식을 단순, 효율화			
	· 지주와의 결합부위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처리			
	· 지자체 로고·마크 등의 부가 내용은 표기 금지			
	· 야간에 인지가 가능하도록 외곽부 및 표기요소에 반사소재 및 친환경 LED 조명을 적용			
	· 고령자의 통행이 잦은 지역의 표지판은 표지판과 안내글자 크기를 10~20% 크게 적용			
설치배치	· 차량용과 보행자용으로 분리하여 설치			
	· 차량용은 교차로에 한정하여 설치하며, 교차로 전방 10m 이내에 배치			
	· 보행자도로에 설치 시 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도로안내표지판, 가로등, 기타시설물, 도로명판전용지주의 순으로 우선 설치			
	· 다른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하되, 여건상 통합 설치가 어려울 때에는 건물 벽면에 설치			
	· 보행자용은 높이 2.5~3m 이하, 차량용은 4.5~5m 이하 높이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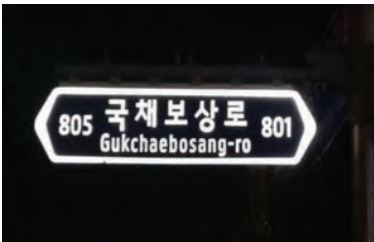
도로명판 전용지주 표준설계(행정안전부)



다른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



야간 조명형 도로명판



B. 보행관련 시각매체

3.B.5

건물번호판, 건물번호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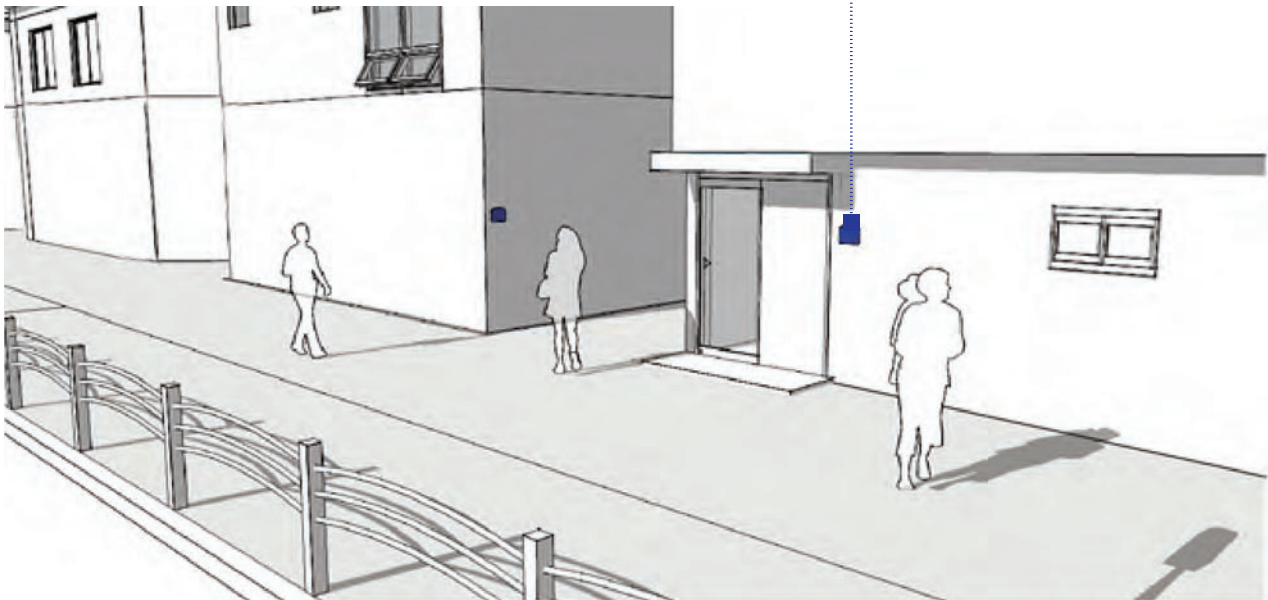
새주소 체계에 따라 건축물에 부여된 번호를 새긴 판 또는 그림

기본방향

건물 번호 인식이 쉽도록 위치정보 제공하기

디자인 원칙

지정된 위치에 설치
외부에서 인식이 잘 되는 진입부에 설치
복잡하고 조잡한 형태 및 과도한 원색 사용 지양



참조	주소정보시설 규칙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인천광역시만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되, 원칙적으로 모든 건물번호판의 형태, 재료, 서체를 통일		
	· 상징물이나 특징 등을 복잡하고 조잡하게 적용한 디자인 및 과도한 원색 사용은 금지		
	·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		
설치배치	·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며, 외부에서 인식이 잘 되는 진입부에 1개소만 설치 단,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 다수 출입구에 설치가 가능		
	· 출입구 및 주출입구 담장에 부착할 시 지면으로부터 1.8m 높이에 설치하며, 출입구 우측 벽면 또는 기둥 등에 우선 배치		
	· 다른 사인과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 설치 지양		
	· 특화공간 특화거리 또는 공간, 건축물 가치를 고려해야하는 경우, 건물의 외관 및 색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건물번호판 설치 가능 별도 설치 시,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진행		
	· 원도심공간 좁은 골목길,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은 야간에 조도 확보를 위한 조명형 건물번호판 적용을 권장하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비상벨, 쓰레기 배출안내표지 등과 결합을 고려		
기타	·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최소 규격 이상으로 설치하며, 구성요소 및 최소 규격 등에 대한 사항은 [주소정보시설 규칙]을 준용		
	·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불필요한 표기는 지양하고 한글과 영문을 상하배치하며, 건축물 마감의 명도차이가 5단계가 나도록 배경색 및 문자색 적용을 권장		



자율형 건물번호판 권장 사례(아름다운 건물번호판 디자인 공모 선정작_행정안전부)

조명, 비상벨, 쓰레기 배출안내표지 결합 예시

B. 보행관련 시각매체

3.B.6

자전거도로안내, 자전거도로노면표지(보행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이동을 위해 자전거도로임을 안내하는 표지
자전거 전용도로, 보차구분, 차량 진입금지, 상가 앞 주차금지의 용도로 사용

기본방향

자전거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표준디자인 적용하기

디자인 원칙

자전거도로 안내표지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이용안내표지로 구분하여 적용
이용안내표지는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적용



식별이 용이하도록
진행방향의 직각으로 표기

참조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적용			
· 자전거도로안내표지에는 교통안전표지(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이용안내표지로 구분하여 적용			
· 교통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률 및 기준에서 제시하는 형태, 규격, 색채를 준수			
· 규제 및 지시, 보조표지는 축소비율(0.8배)을 적용하여 사용			
· 표준디자인으로 개발된 이용안내표지의 크기는 규제와 지시표지의 원형의 공간적 비율을 참고하여 정보가 표기되는 공간의 영역을 맞추어 550mm로 지정			
설치배치			
· 식별이 용이하도록 진행 방향의 직각으로 표기 및 설치			
· 자전거도로안내표지(지시표지)는 노면표지와 중복 설치를 제한			
· 바닥면에 노면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안내 위치와 인지효율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설치			
· 자전거도로안내표지는 도시지역 200m, 지방지역 400m 간격으로 설치하며, 관련된 사항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준수			



보행로와 자전거의 도로정보 전달



보행로 위 자전거도로노면표지로 영역성 구분



자전거도로안내표지 표준디자인



이용안내표지 픽토그램

시설물색

강화겔벌색 (ICC-공공1)

강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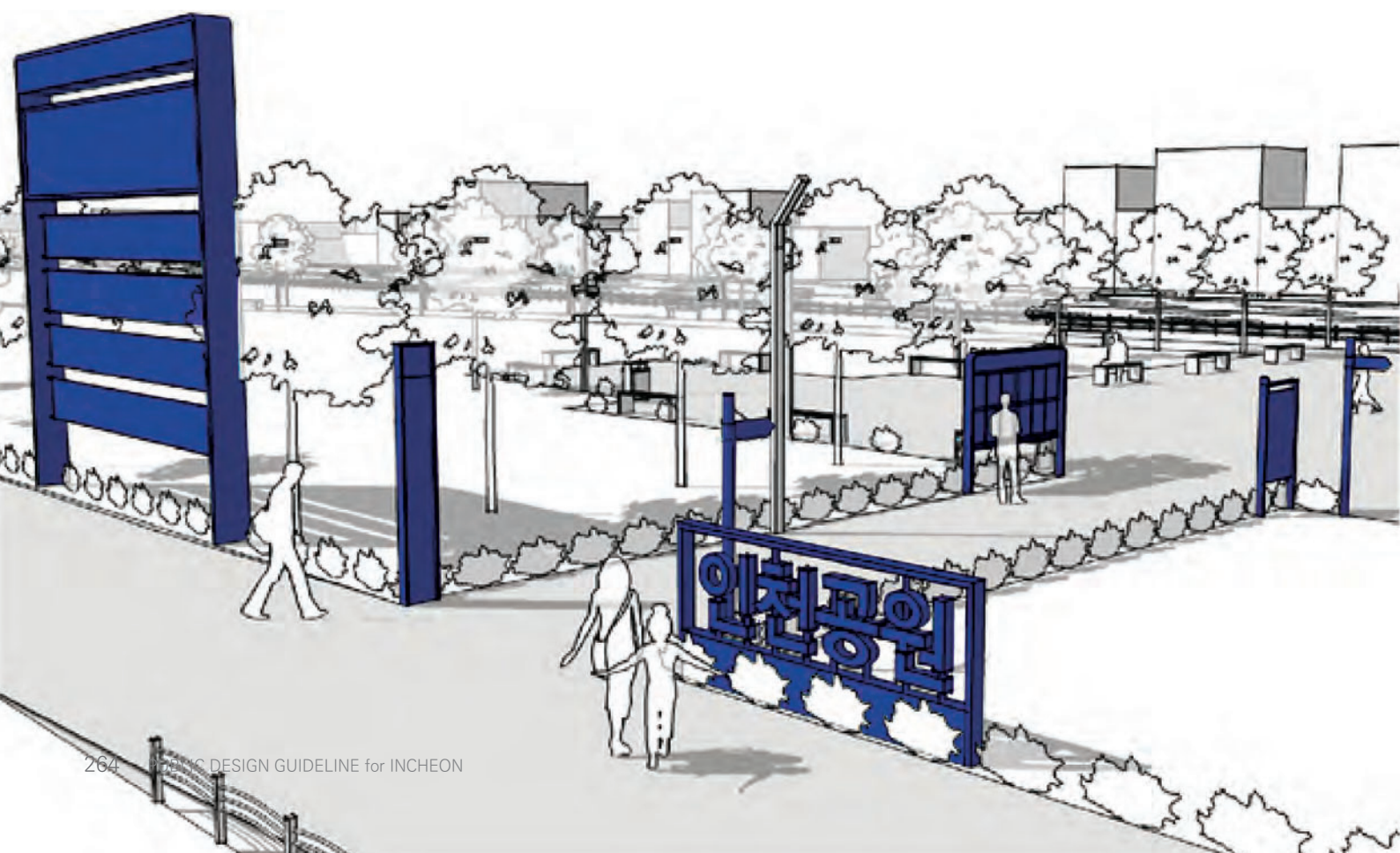
초록 (Pantone 375C)

C

편의시설 시각매체

중점사항

- | | |
|---------------------------------------|--|
| 01 생활안전 및 보행안전
확보하기 |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설치 및 크기 최소화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 구역에 설치
설치환경을 고려한 모듈 구조로 설계하며, 구조의 안전성 확보 |
| 02 도시조화성 및 정체성,
지속가능성 고려하기 | 인천브랜드, 상징아이콘, 지역자원과 연계한 그래픽, 색채 적용
외국인을 고려한 다국어 표기 권장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적용, 과도한 장식·상징 표현 지양
내구성 및 견고성을 고려한 재료 적용 |



세부구성

- 편의시설 시각매체는 보행약자, 영유아 및 동반자, 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인천시의 보행자 유형을 고려하여 모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장치 및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로서 현수막게시대, 공원 및 등산로 안내표지, 문화재설명표지, 관광안내소 및 관광 안내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가이드라인의 세부구성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분류코드	중분류	세부 구성	
3.C.1	현수막게시대, 시민게시대		
3.C.2	공원안내표지		
3.C.3	등산로·둘레길안내표지		
3.C.4	문화재설명표지, 문화재표석	·형태색채	·설치배치
3.C.5	관광안내소·시티투어매표소표지		
3.C.6	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도		
3.C.7	개방화장실안내표지		

- 편의시설 시각매체는 기능 및 목적에 따라 7개 대상으로 세분화하며, 형태색채, 설치배치 등 세부요소로 각각의 지침을 제시한다.

관련법규 및 문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재 안내표지에 관한 규정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사례집
 문화재안내판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한국 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브랜드 및 상징물 개발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C. 편의시설 시각매체

3.C.1 현수막게시대, 시민게시대

현수막 및 종이로 이루어진 옥외광고물을 자치구의 제도권 내에 포함시켜 효율적으로 관리 및 광고하기 위한 공공시설물

기본방향

제작·설치의 현실화를 통해 표준디자인 확대 적용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적용
기능과 무관한 장식적 요소 최소화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무채색 또는 저명도, 저채도의 색채 통일 적용



설치환경 여건에 맞추어 구성되도록 모듈 구조로 설계
압출 기둥을 사용하여 구조의 안전성 확보



보행자의 보행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보행안전구역 외 공지 및 녹지공간에 설치

참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적용			
	· 기능과 무관한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며, 최소한의 구조와 개방성이 확보되는 형태로 디자인			
	· 주요 자재의 규격을 통일시켜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하도록 규격을 설정하며, 외부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내구성 및 견고성을 고려한 재료를 적용			
	· 인천광역시의 다양한 도시이미지 및 환경을 포괄할 수 있는 무채색, 중·저명도, 저채도의 주·보조 색채를 적용하며, 과도한 원색은 적용 금지			
설치배치	· 모듈 구조로 설계하며, 압출 기둥을 사용하여 구조의 안전성을 확보			
	· 지정된 장소이 외에는 설치를 금지하며, 현수막 간 간격은 현수막 높이의 25%만큼 이격하여 설치			
	· 보행자의 보행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보행안전구역 외 공지 및 녹지공간에 설치			
	· 현수막게시대는 시설물에 의한 차폐가 발생해도 가로 경관 유지와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되, 교통 신호에 의해 차량이 정차하는 도로변과 교차로 주변에 신호등과 일정거리 이격하여 배치할 것을 권장			
	· 시민게시대는 관공서와 보행자가 집중되는 광장 및 보도폭 5m 이상의 보도에 설치하며, 관공서 출입구 주변, 보도와 사유지 사이의 녹지 등에 배치할 것을 권장			
	· 소화전 등 안전방재시설물과 인접한 배치는 지양			
	· 현수막게시대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경우, 게시대 간 간격은 게시대 가로폭의 1/2 이상 이격하여 설치			
	· 현수막은 시각적 정돈을 위해 상단부터 배치하며, 최하단은 지피 및 관목식재에 의한 정보 차폐를 고려하여 지면으로부터 800mm 이격하여 설치			



현수막게시대 표준디자인 재정비 적용



시민게시대 표준디자인 재정비 적용

시설물색

강화겔벌색 (ICC-공공1)

정보표기색

기능색2-White (ICC-공공4)

C. 편의시설 시각매체

3.C.2

공원안내표지(공원명칭안내표지, 공원시설·종합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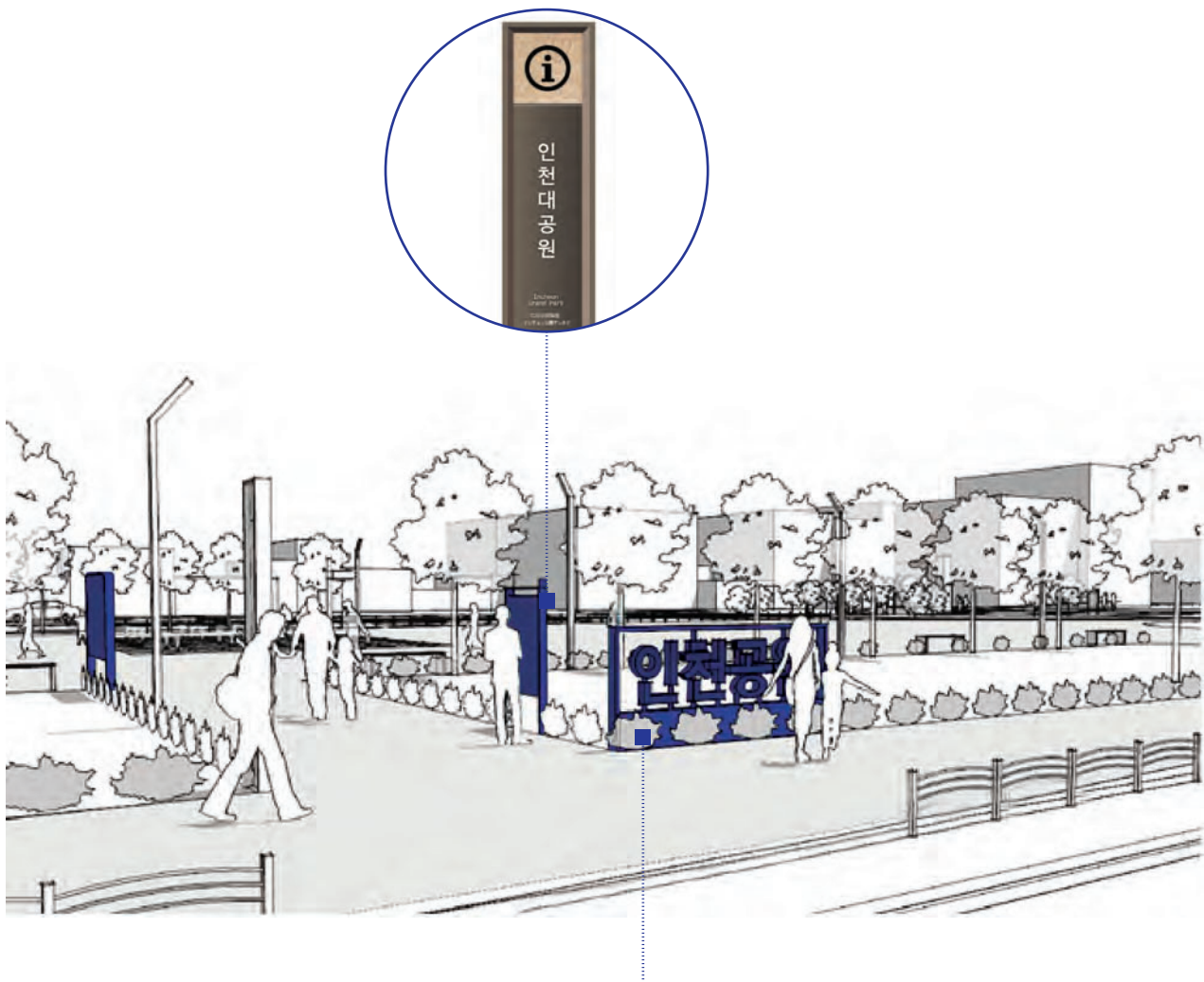
공원 이용 또는 공원 시설에 관한 안내 표지 및 그림

기본방향

공원의 정체성을 통일되게 적용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적용
 사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크기로 설치
 안내지역의 면적 및 정보량을 고려하여 형태를 선택



공원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 시,
 우측 녹지 공간에 설치

- 참조**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적용			
	· 공원 단위로 공원안내표지와 공원시설안내도의 정체성 및 통일성을 확보			
	· 공원시설안내도는 공원 명칭, 역사, 환경 등의 교육용 정보를 주요소로 표기하고, 시설 명칭, 상세 정보, 전화번호, 주소 등은 보조요소로 표기			
	· 공원의 자연환경을 포괄할 수 있는 중·저명도, 저채도, 자연재료 자체의 색채를 주·보조 색채로 적용하며, 과도한 원색은 적용 금지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			
설치배치	· 사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크기로 설치하며, 안내지역의 면적 및 정보량을 고려하여 디자인			
	· 공원안내표지는 보도 상에 설치 시 시설물 설치구역에 설치하고, 공원입구에 설치 시에는 우측 녹지 공간에 설치			



공원종합안내도 표준디자인



공원안내표지/공원명칭안내표지 표준디자인



공원시설안내도 표준디자인

시설물색

녹지-Brown(Pantone 411C)

정보표기색

기능색2-White (ICC-공공4)

강조색

아이보리 (Pantone 406C)

C. 편의시설 시각매체

3.C.3 등산로·둘레길안내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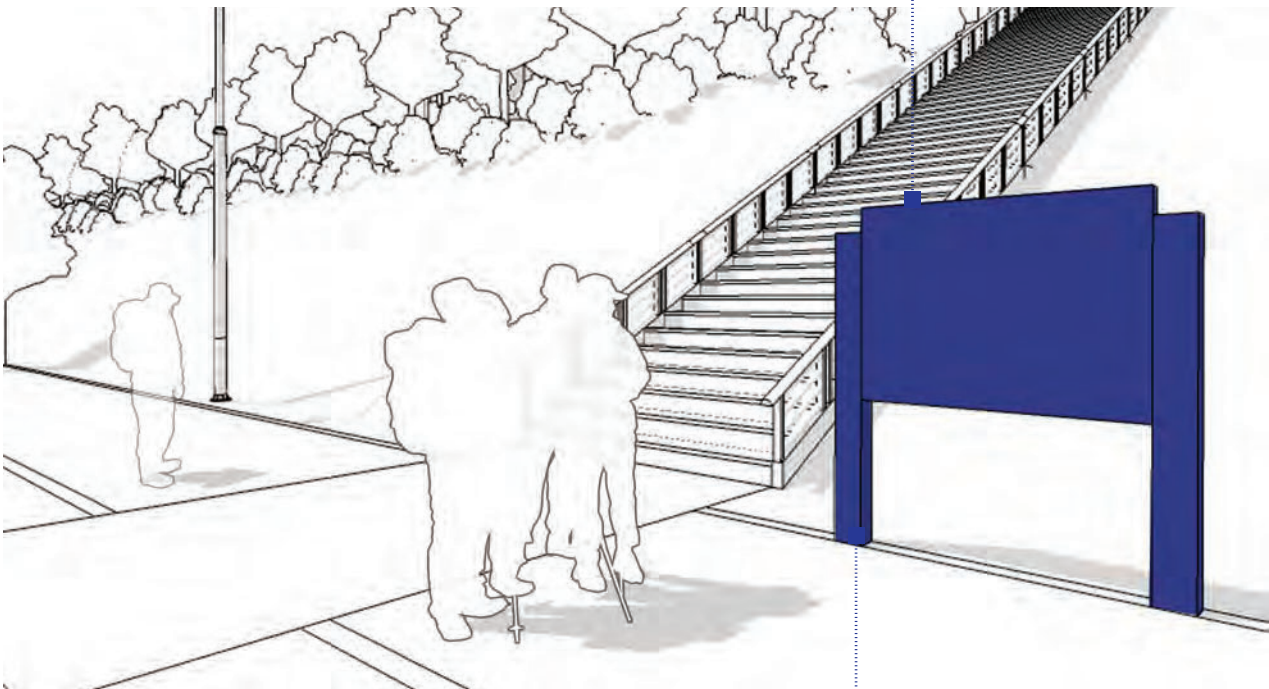
인천숲길 등산로, 둘레길 이용 또는 시설에 관한 안내 표지 및 그림

기본방향

길 안내 정보를 일관되고 쉽게 유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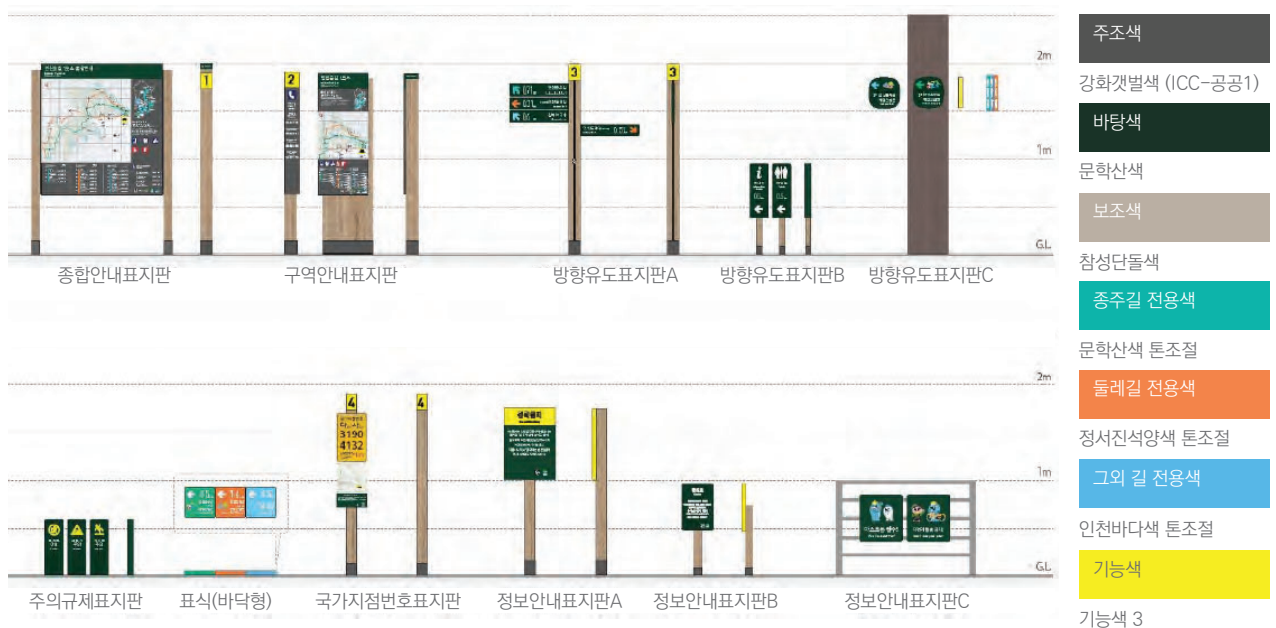
디자인 원칙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적용

등산로 및 둘레길 코스별로 전용색을 지정하여 표기
전체 공간 및 주요 시설 정보가 한눈에 인지되도록 간결한 정보 제공보행자의 위치에서 보았을 때
실제 도로 방향과 지도의 방향이 일치되도록 설치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적용			
	· 전체 공간 및 주요 시설 정보가 한눈에 인지되도록 간결한 지도 및 픽토그램으로 정보를 제공			
	· 현 위치정보와 주요 시설, 거리방향 정보가 우선 인지될 수 있도록 명도대비와 크기대비를 높게 적용			
	· 시인성과 가독성을 우선하여 색채를 적용하며,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재료 적용			
	· 등산로 및 둘레길 코스별로 전용색을 지정하여 표기			
	· 위치번호 등의 현재위치정보는 눈에 잘 띄도록 기능색 적용을 권장			
설치배치	· 보행자의 위치에서 보았을 때 실제 도로 방향과 지도의 방향이 일치되도록 설치			
	· 결절점 구간 설치 시, 보행구간과 비 보행구간 경계에서 최소 300~450mm 이상 이격시켜 설치			



C. 편의시설 시각매체

심의대상

3.C.4

문화재설명표지, 문화재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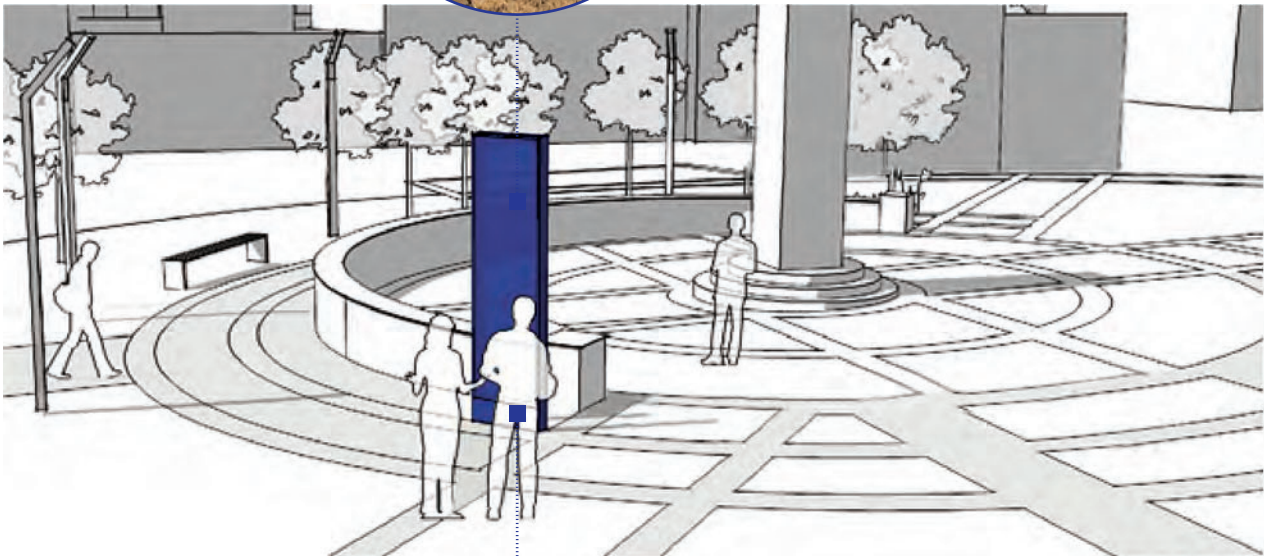
문화재 이용안내 또는 문화재 시설안내 및 역사에 관한 표식

기본방향

문화재와 조화되도록 설치하기

디자인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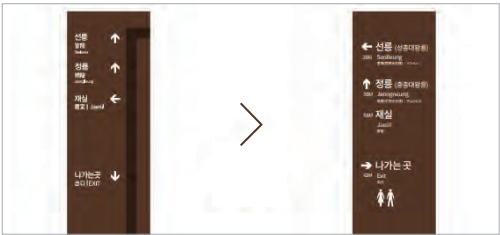
문화재 유형에 따라 일관된 표준디자인을 적용
외국인 사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 안내판 설치
장애인,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표기 요소의 내용과 표기 방식 결정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가리지 않도록 설치
관광객의 이동 시작점과 도착점, 주요 분기점 등의
장소에 중복되지 않도록 설치

참조 문화재 안내표지에 관한 규정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사례집(문화재청)
문화재안내판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문화체육관광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인천광역시의 문화재 유형에 따라 일관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에 맞춰 표준디자인을 통일성 있게 적용			
· 문화재와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형태와 색채 및 재료를 적용			
· 외국인 사용자를 위한 다국어 안내판의 설치 및 장애인,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표기 요소의 내용과 표기 방식을 결정			
설치배치			
·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규모와 위치를 계획			
·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가리지 않고 각각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정 위치에 설치하되, 문화재 전면부에 설치			
· 노약자,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하여 계단이나 경사로 등에 설치 금지			
· 이용자의 이동 시작점과 도착점, 주요 분기점 등과 중첩되지 않도록 설치			
· 안내판을 1개 이상 병렬 설치 시,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능적 요소를 결합한 복합형으로 단일화하여 설치하거나 최소 1개 안내판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			
기타			
· 문화재안내판 표기요소, 설치 등은 [문화재안내판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			



유니버설디자인 기준을 반영하여 디자인(확장형) 보완



문화재가 한눈에 보이고, 가리지 않도록 설치



문화재 유형별 안내판 표준디자인(문화재청)



C. 편의시설 시각매체

3.C.5

관광안내소·시티투어매표소표지

관광 관련 편의 및 정보 등을 안내하는 표지로, 주로 관광안내소 외벽에 부착
시티투어매표소 외벽에 부착된 표지로, 시티투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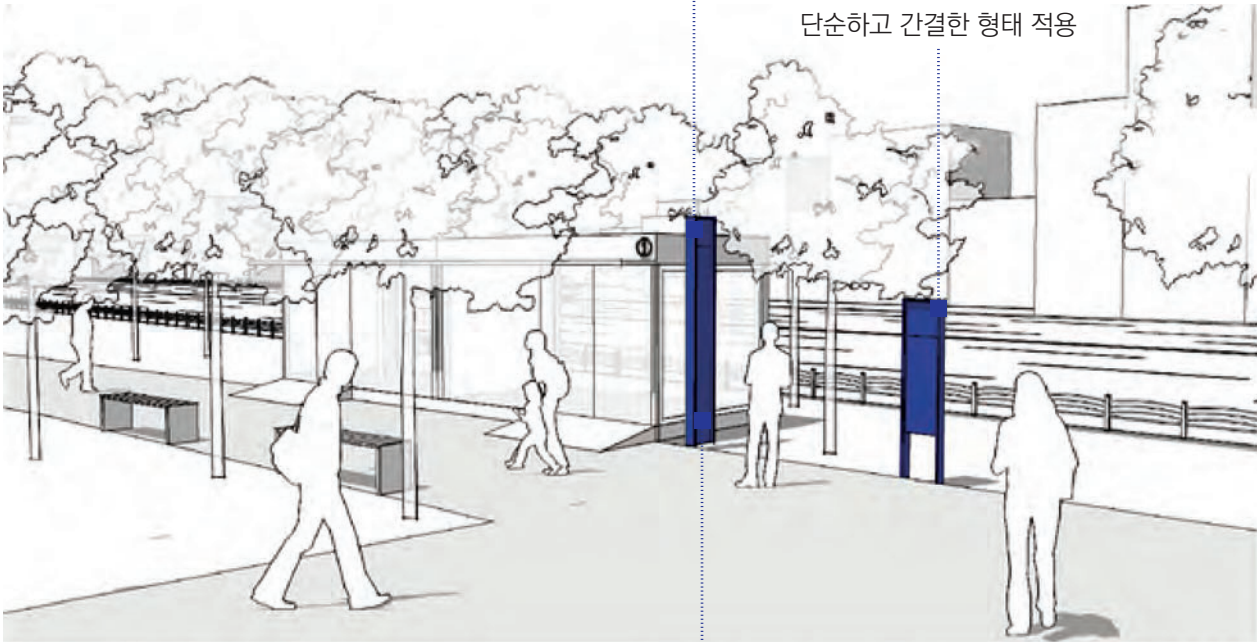
다양한 관광객을 배려하여 쉽게 인지되도록 디자인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적용
인천광역시 내 모든 관광안내소의 표지 통일 적용
관광안내소의 외관의 색채와 유사한 색채 및 형태를 적용
멀리서도 인지가 가능토록 부분적으로 강조색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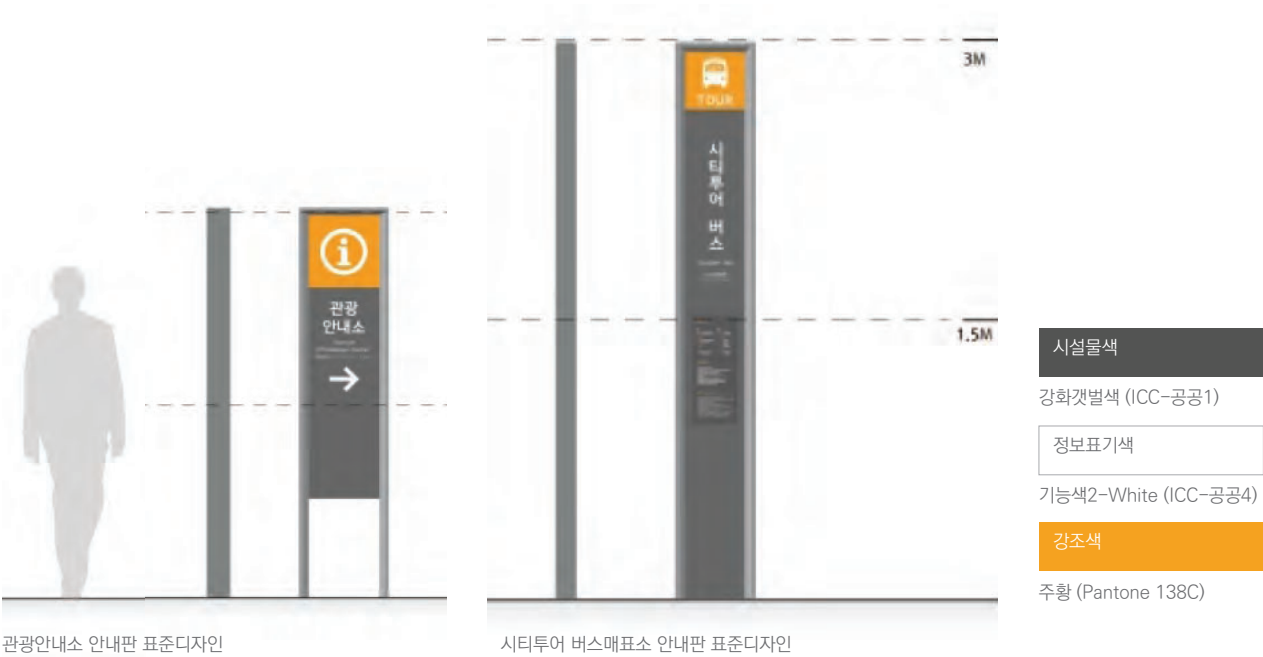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 적용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한 다국어 표기 및 픽토그램 적용
국가 표준규격(KS A 0901) 또는 국제표준(ISO) 적용

- 참조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적용			
	· 인천광역시 내 모든 관광안내소의 표지는 쉽게 인식이 가능하도록 통일성 있게 적용			
	· 관광안내소의 외관 색채와 유사한 색채 및 형태를 적용하되, 원거리에서도 인지가 가능토록 부분적으로 강조색을 적용 강조색 적용 시, 넓은 면적에 과도한 원색 사용은 지양			
	·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하여 다국어 표기 및 국제표준(ISO) 또는 국가표준(KS A 0901) 픽토그램을 적용			
설치배치	· 주변 환경 및 관광안내소와 조화되는 규모로 설치			
	· 원거리에서도 쉽게 인지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가로수, 시설물 등에 가려지지 않도록 배치			



C. 편의시설 시각매체

심의대상

3.C.6

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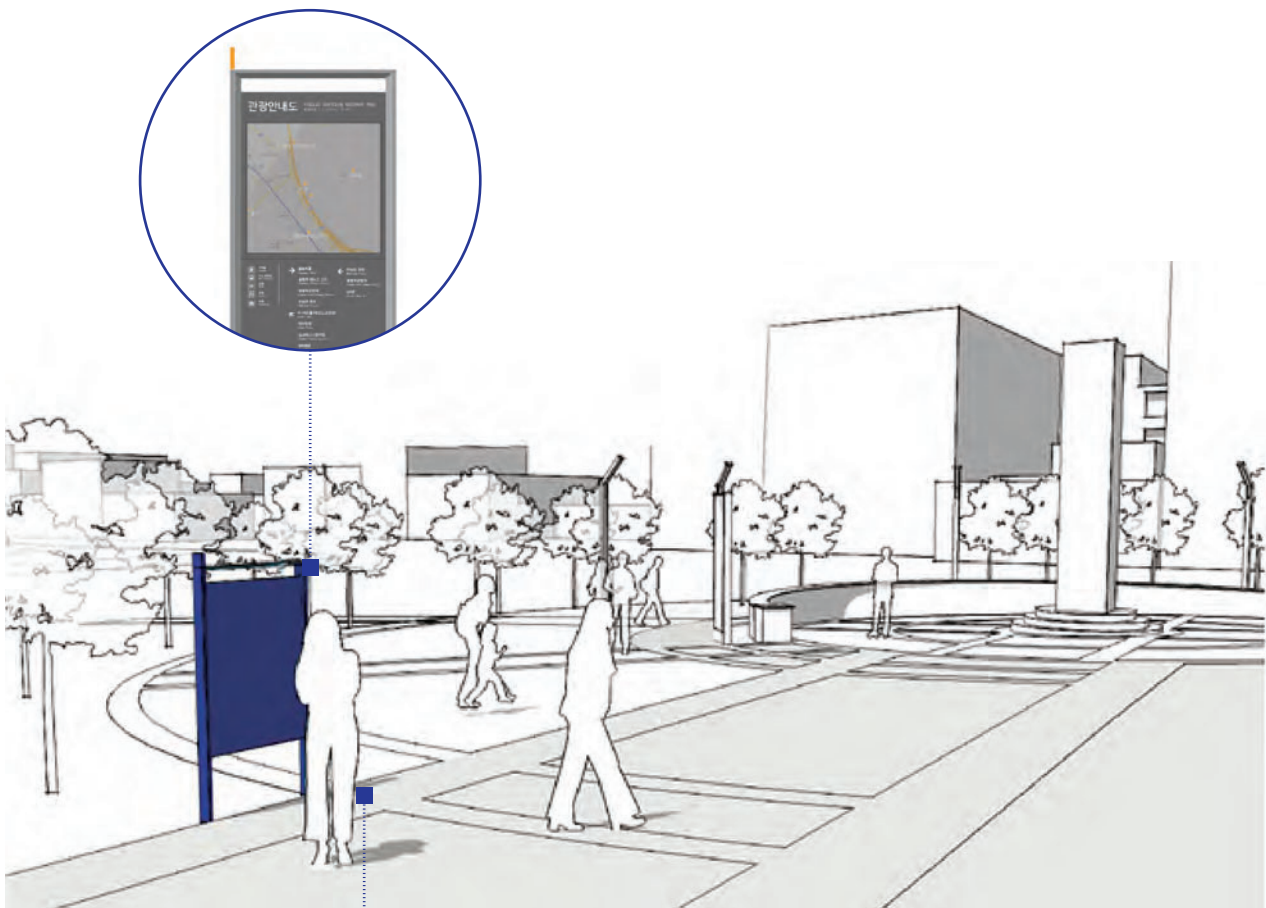
방문객에게 도시를 안내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표지

기본방향

읽기 쉽고 보기 편하게 설치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적용
관광안내도는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설치
크기를 최소화하여 설치



관광안내도를 보도 상에 설치할 경우,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설물구역에 설치

참조 한국 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적용			
	· 안내지역의 면적 및 정보량을 고려하여 형태를 적용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적용하며, 지나친 장식 및 상징 표현은 지양			
	·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하여 다국어 표기 및 국가표준(KS A 0901) 또는 국제표준(ISO) 픽토그램을 적용			
	· 표기요소 등은 [한국 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을 참고			
설치배치	· 관광안내도는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하며, 크기를 최소화			
	· 관광안내도를 보도 상에 설치 시,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설물 설치구역에 설치			
	· 주변 광고물 및 사인과 충돌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			
	· 야간 이용자를 고려하여 조명 설치를 권장하며, 유용적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경우 LED 등 전자정보 형태의 관광안내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장			



관광안내도 표준디자인



관광안내표지판 표준디자인

시설물색

강화겟발색 (ICC-공공1)

정보표기색

기능색2-White (ICC-공공4)

강조색

주황 (Pantone 138C)

C. 편의시설 시각매체

3.C.7

개방화장실안내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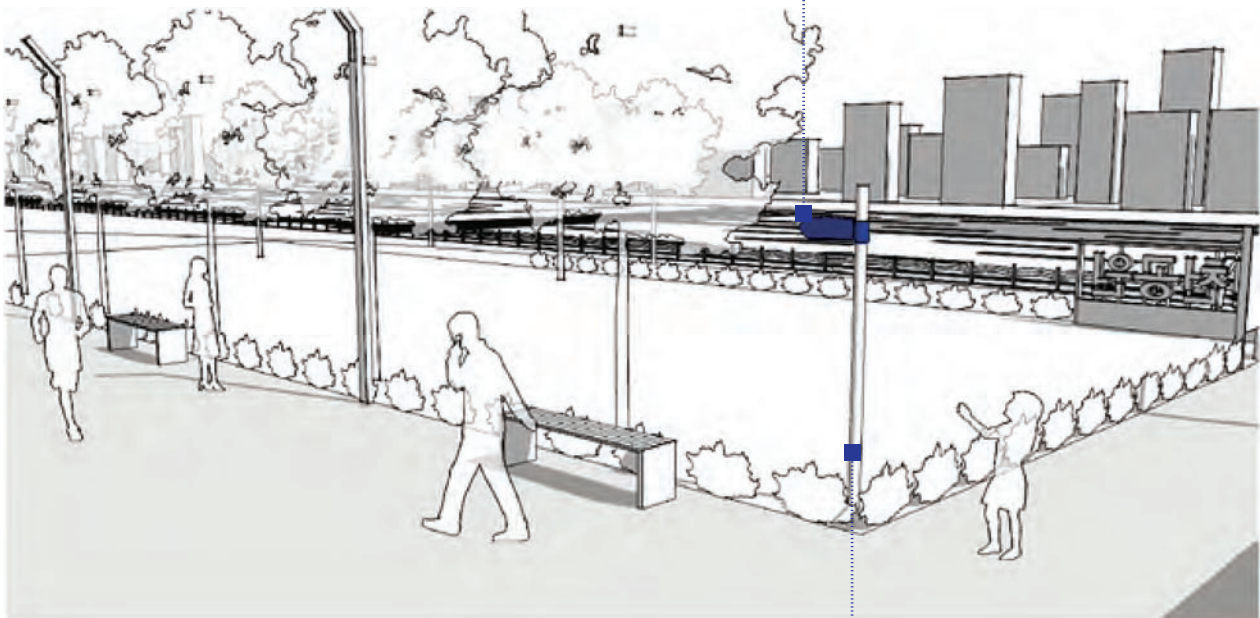
개방형화장실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기본방향

쉽게 인지되도록 설치하기

디자인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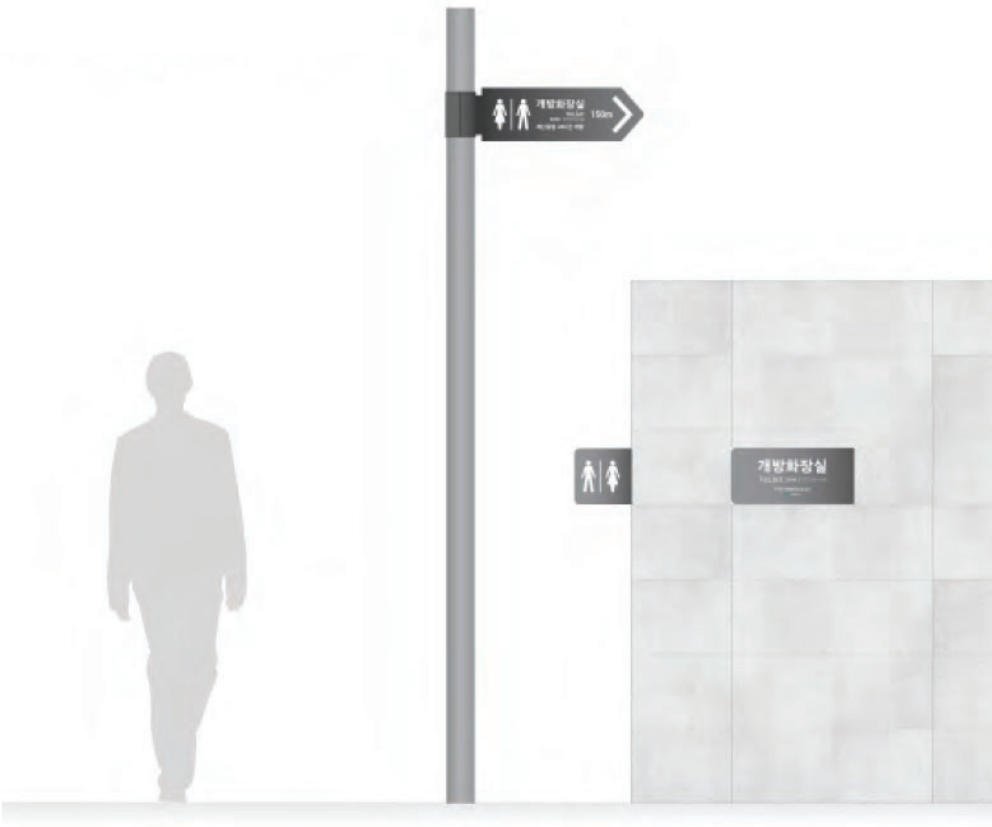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적용
멀리서도 쉽게 인지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가로수, 시설물에 가려지지 않도록 설치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 높이에 설치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적용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적용하며, 지나친 장식 및 상징 표현은 금지			
	·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하여 다국어 표기 및 국제표준(ISO) 또는 국가표준(KS A 0901) 픽토그램을 적용			
설치배치	· 개방화장실안내표지 전용지주에 부착하며, 기존 지주에 적용 시 연결부는 기성압출 제품을 사용			
	· 원거리에서도 쉽게 인지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가로수, 시설물에 가려지지 않도록 배치			



개방화장실안내표지(지주부착형/벽부형) 표준디자인



안내표지 통합설치

- 시설물색
- 강화갯벌색 (ICC-공공1)
- 정보표기색
- 기능색2-White (ICC-공공4)

D

안전관련 시각매체 및 용품

중점사항

01 생활안전 및 보행안전
확보하기

범죄다발구간 및 협소하고 어두운 골목길 등에 필수 설치
범죄심리 위축 및 보행자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 제공
멀리서도 인지가 가능토록 시인성이 높은 색채 적용
야간시를 고려하여 반사소재의 적용 권장

02 도시조화성 및 정체성,
지속가능성 고려하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형태를 적용
기존 가로 시설물과 통합 설치 권장
일관성 있는 색채 및 표기요소로 통일된 이미지 구축
지속적인 관리 및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주민참여방안 모색



세부구성

- 안전관련 시각매체 및 용품은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고 범죄 발생 기회를 사전에 예방하는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을 적용한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이다. 또한 재난대비 및 소방안전, 공사장 근로안전 등을 위해 설치되는 안내표지 및 용품도 포함한다.
안전관련 시각매체 및 용품은 범죄예방시설, 쓰레기투기방지안내, 안전조명·정보시설, 소방안전안내 및 재난대비안전안내표지·장비, 공사장안내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가이드라인의 세부구성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분류코드	종분류	세부 구성	
3.D.1	범죄예방시설	·형태색채	·설치배치
3.D.2	쓰레기투기방지안내		
3.D.3	안전조명·정보시설		
3.D.4	소방안전안내표지, 소방안전장비		
3.D.5	재난대비안전안내표지, 재난안전(피난·구호)장비		
3.D.6	공사장안내표지		

· 안전관련 시각매체 및 용품은 기능 및 목적에 따라 6개 대상으로 세분화하며, 형태색채, 설치배치 등 세부요소로 각각의 지침을 제시한다.

관련법규 및 문헌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공사장가림막 가이드라인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D. 안전관련 시각매체 및 용품

3.D.1

범죄예방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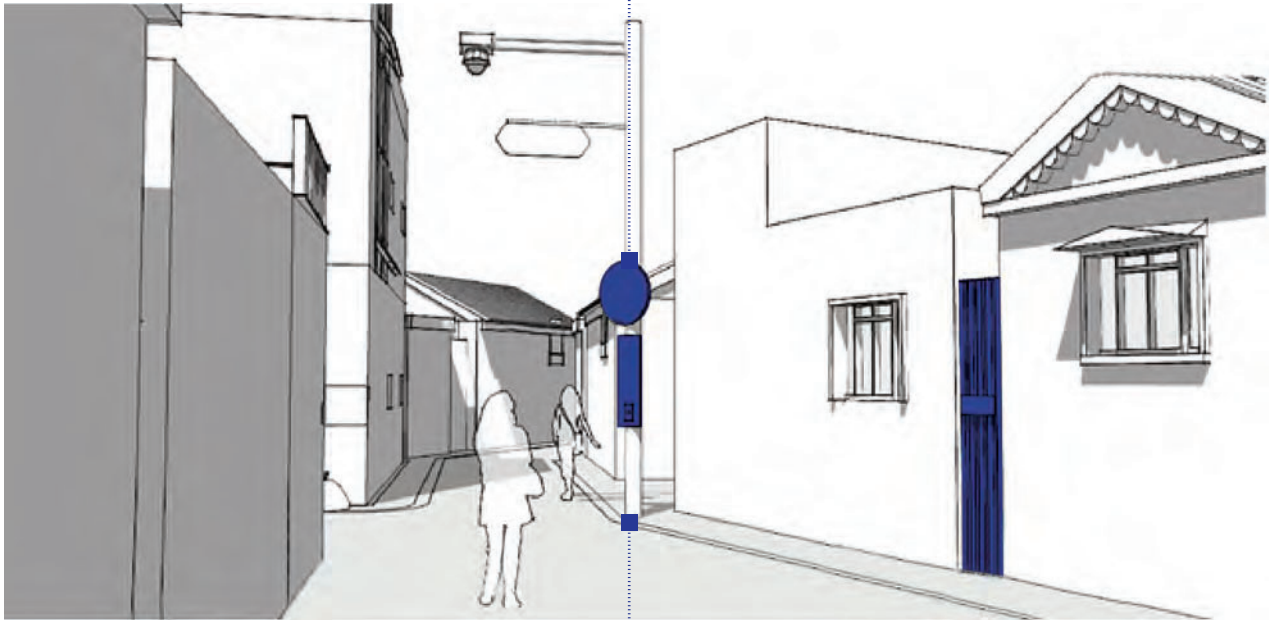
CCTV, 비상벨, 안전거울 등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안내시설

기본방향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안전정보 유도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적용
범죄다발구간 및 협소하고 어두운 골목길 등에 필수적으로 설치
멀리서도 인지가 가능토록 시인성이 높은 색채 적용
야간 시를 고려하여 반사소재의 적용 권장



야간 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고보조명 및 안내방송 장치를 함께 설치
쉽게 인식될 수 있는 위치 선정
타 가로시설물과 통합 설치 권장

- 참조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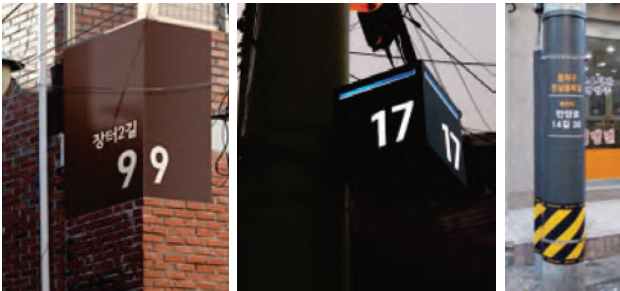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범죄예방시설 유형에 맞춰 관련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적용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형태를 적용하되, 일관성 있는 색채 및 표기요소로 통일된 이미지를 구축 · 원거리에서도 인지가 가능토록 시인성이 높은 색채 및 안전색채를 적용하되, 과도한 면적의 적용은 지양하며, 야간 사용성을 고려하여 반사소재 및 조명을 적용 · 위험 주의·경고에 해당하는 안내표지는 픽토그램 및 안전색채를 강조색으로 사용하여 안전정보에 대한 주의 강조 · 위치정보 등의 안내표지, 차단·차폐시설물은 주변 환경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건물 입면과 유사한 색채 또는 저채도, 무채색을 주조색으로 적용		
설치배치	· 범죄다발구간 및 협소하고 어두운 골목길 등에 필수적으로 설치 · 고보조명 및 안내방송 장치를 함께 설치하여 야간에도 효과를 극대화 · 안내시설은 쉽게 인식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다른 가로시설물과 통합 설치 · 공간구조가 복잡하거나 위치확인이 곤란한 지역에는 위치정보 안내시설을 설치하되, 방법 시설이나 다른 가로시설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		



안전구역 및 비상벨, 안심 통합표 표준디자인



주변 환경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저채도, 무채색의 색채 사용



안전색채를 강조색으로 사용하여 주의·경고

D. 안전관련 시각매체 및 용품

3.D.2

쓰레기투기방지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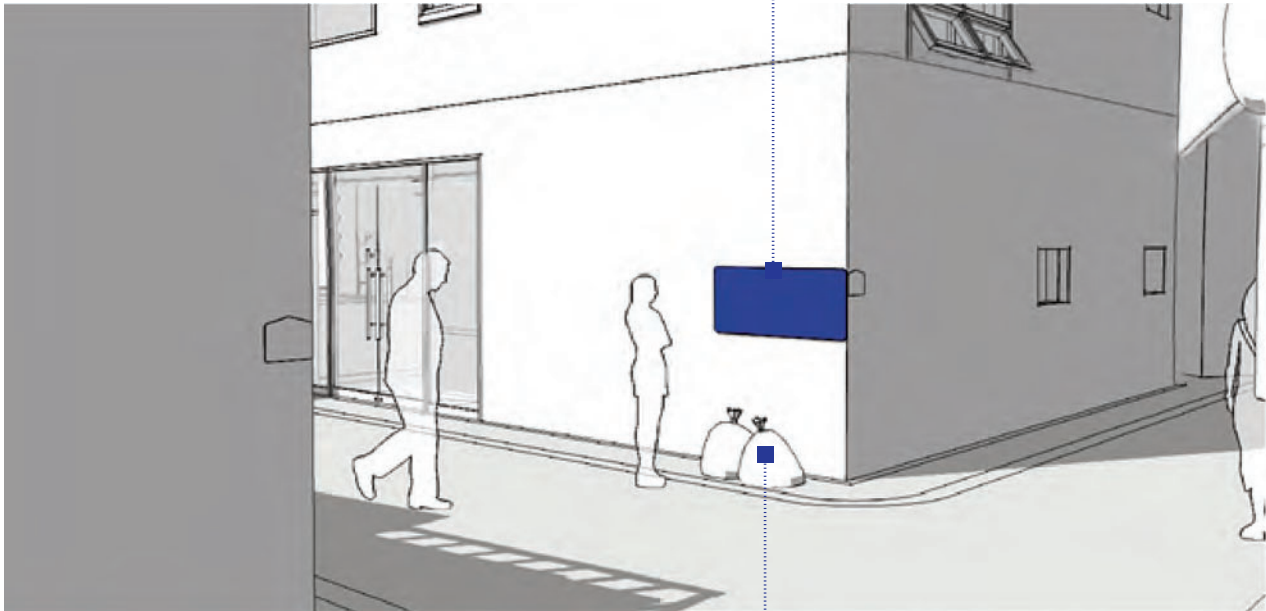
쓰레기의 무단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안내시설

기본방향

거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 유도하기

디자인 원칙

쓰레기 투기 문제가 심각한 장소에 설치
자연감시를 고려한 위치에 설치
물품적치로 인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감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CCTV와 함께 설치 권장



야간 시에도 인지가 가능하도록 조명 및 반사소재 적용
바닥부 그래픽 연계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외국인 많은 지역은 그래픽을 활용한 정보전달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처리방법을 제공			
· 외국인 거주자의 국적 비율을 고려하여 다국어를 표기			
· 바닥부 그래픽 등에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넋지디자인을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쓰레기 투기방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권장			
· 야간에도 인지가 가능하도록 조명 및 반사소재를 적용			
· 시인성이 높은 안전색채를 강조색으로 적용하며, 인지성을 높이도록 명도대비를 활용한 색채배색 계획			
설치배치			
· 쓰레기 투기가 심한 장소에 설치하며, 자연감시를 고려한 위치에 설치			
· 기존 전봇대 및 벽면을 활용하여 설치			
· 물품적치로 인한 감시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CCTV와 함께 설치하여 감시효과를 극대화			
기타			
· 지속적인 관리 및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방안 등을 함께 모색			



바닥부 그래픽을 활용하여 쓰레기 투기 방지 유도



다국어, 픽토그램 등을 활용하여 간결하게 쓰레기 처리방법 안내



쓰레기 배출 및 이용안내, CCTV, 쓰레기 수거함 통합디자인

D. 안전관련 시각매체 및 용품

3.D.3

안전조명·정보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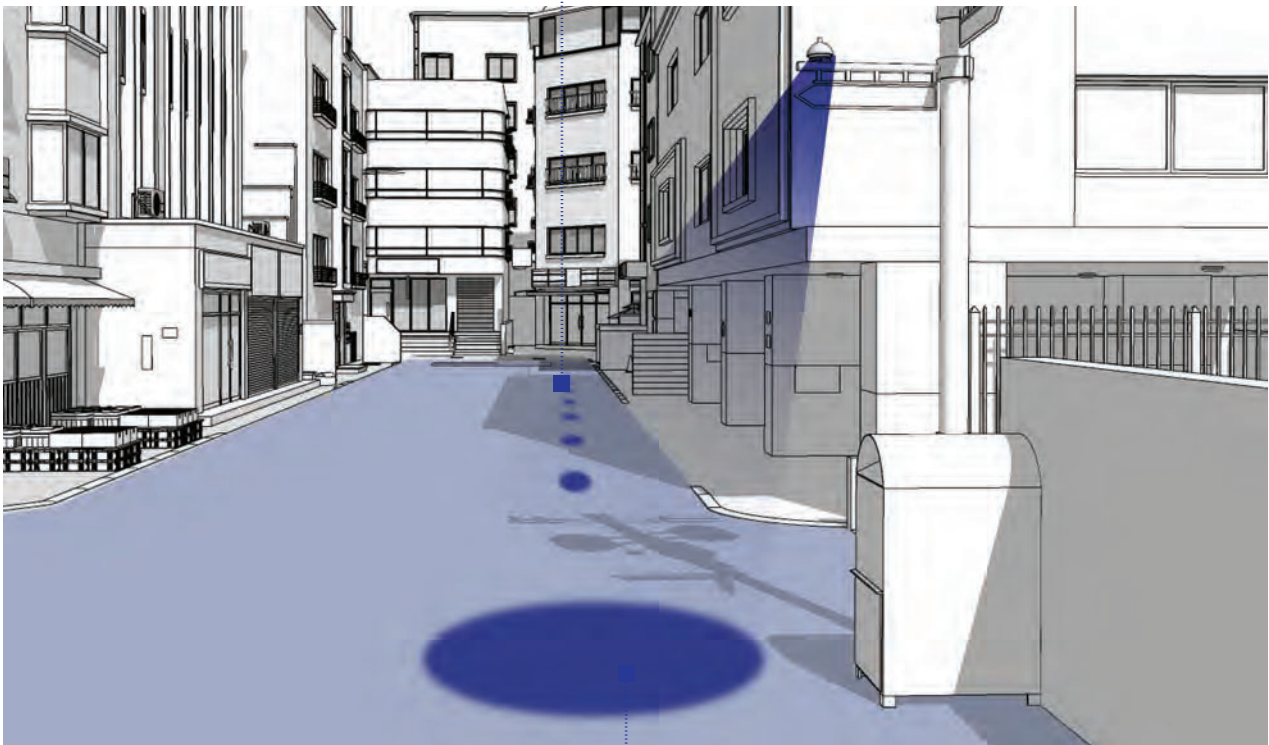
건물 벽면, 거리 바닥 등에 안전 유도를 위해 설치하는 조명장치로서
바닥조명, 고보조명, 로고젝터 등 안전정보 및 시각이미지를 전달하는 장치

기본방향

공익적인 내용으로 안전사고 예방하기

디자인 원칙

진입 유도 성격의 안전조명 계획
공익성 증진을 위해 설치
자동차도로 및 자전거도로 상의 연출 금지



투사 표면의 색채를 고려하여 야간에 시각정보가
잘 인지될 수 있도록 그래픽 색채 계획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적용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주요 동선의 야간 인지성을 고려하여 진입 유도 성격의 안전조명을 계획			
	· 고보조명 등 패턴조명은 예술성과 공익성을 모두 확보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계획			
	· 고보조명 등 시각이미지를 투사하는 패턴조명의 경우, 투사 표면의 색채를 고려하여 야간에 시각정보가 잘 인지될 수 있도록 그래픽 색채를 계획			
	· 시각적 혼란 방지를 위해 여러 색상의 혼용 및 차량 신호체계에서 사용되는 색채는 사용 지양			
	· 자연경관이 우세한 지역은 문구 중심의 점적인 연출은 지양하고, 자연요소를 활용한 조명 연출을 권장			
	· 현란하고 빠른 빛의 변화(색상 및 밝기 변화, 반복 점멸 등)가 있는 연출은 지양			
	· 조명시설의 본체는 주변 시설물과 동일색채 또는 무채색을 적용			
설치배치	· 고보조명 등 패턴조명은 공익성 증진을 위해 설치하며, 홍보 등의 사설 설치 금지			
	· 고보조명 등 패턴조명은 자동차도로 및 자전거도로 상의 연출을 금지			
	· 바닥면 연출은 보행자도로, 이면도로, 산책로 등 보행자 공간 외에는 설치를 지양하며, 시야각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			
	· 범죄·야간 사고다발구간, 협소하고 어두운 골목길,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 등 사각지대에 설치를 권장			
	·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의 이동 시, 눈부심 및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직접적인 광원 노출이 되지 않게 투사 각도 및 면적을 조절하여 설치			
	· 안전정보가 필요한 곳은 조명시설과 함께 안내방송 장치를 함께 설치하여 효과를 극대화			
	· 다른 가로시설물과 통합 설치를 권장하며, 무분별한 과다설치는 지양			
	· 패턴조명의 시각이미지는 계절 또는 이벤트 개최 주기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체를 권장			



골목길 안전한 보행을 유도하는 솔라표지병 설치



고보조명으로 보행자에게 안전정보 알림 문구로 경고



공원 산책로에 자연요소를 활용한 조명 연출

D. 안전관련 시각매체 및 용품

3.D.4

소방안전안내표지, 소방안전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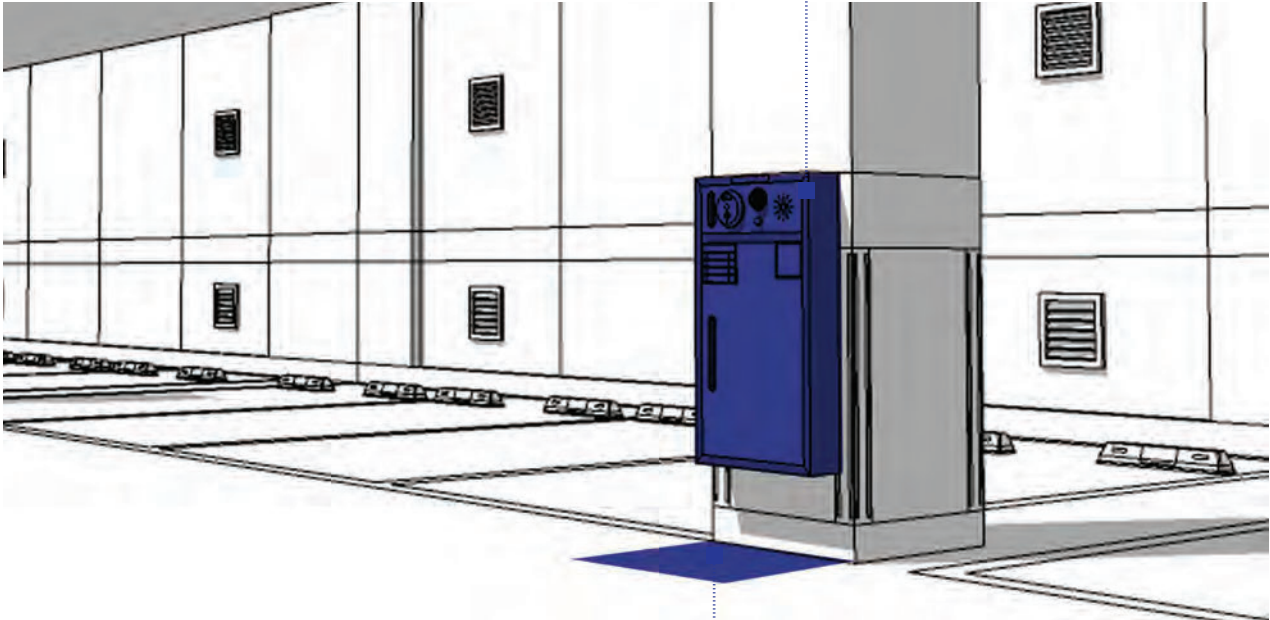
화재 상황에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안내표지 및 용품

기본방향

신속한 대피를 위해 명확하고 연속적으로 유도하기

디자인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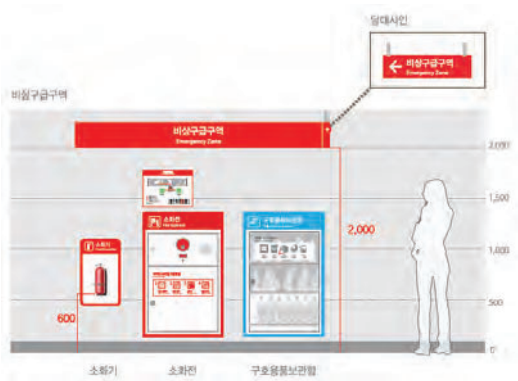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적용
소방시설 명칭 및 비품, 사용 설명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다국어, 안전색 사용



영역 표시를 통해 적치 금지 공간 확보
이동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적용			
	· 소방시설 주변에 부착하는 형태로 설치하며, 매입형 소화기 및 소화전의 경우 벽면안내 표지를 함께 설치			
	· 비상구 유도사인은 출구를 쉽게 인지하도록 바닥면 사인 및 벽면을 활용한 대형 유도사인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방향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목적지까지 연속적으로 배치			
	· 소방시설 명칭 및 비품을 쉽게 이해하도록 국제표준 픽토그램 적용 및 다국어 병기			
	· 사용 설명방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이미지를 적용			
	· 소방시설은 방재, 긴급, 구호를 의미하는 안전색(적색)을 사용			
	· 비상대피 표지는 전용 안전색(초록)을 사용			
	· 먼거리에서도 시설물 영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 주변은 안전색채와 대비를 이루도록 저채도로 정온하게 정돈			
	· 화재 또는 정전 시 대피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야광 기능의 소재 사용을 권장			
설치배치	· 주변에 의해 방해되지 않도록 적치 금지 공간을 확보하고 영역을 표시			
	·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며, 위급상황 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			
	· 피난유도 조명은 바닥에 매입하여 위급상황에 원활한 피난을 유도하도록 설치			
	·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 및 음성안내시스템을 연속적으로 설치			
	·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과 조명이 포함된 문자안내 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			



비상구급구역 표준디자인



소화기 설치 표준디자인



비상대피로 조명 설치

D. 안전관련 시각매체 및 용품

3.D.5

재난대비안전안내표지, 재난안전(피난·구호)장비

재해 및 재난 등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표지 및 용품

기본방향

신속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디자인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적용
 위급상황을 강조하는 안전색채를 적용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법을 알 수 있도록 구성



피난 장비의 크기 소형화
 상황 발생 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장비 설치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적용			
	· 사용자가 정보를 쉽게 인식하고 간단한 동작과 적은 힘으로도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			
	· 응급처치시설은 투명 소재의 보관함에 넣어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보호			
	·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법을 알 수 있도록 구성			
	· 피난 장비의 크기는 최대한 소형으로 설계하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납, 이동,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 재난상황 시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가시성이 높은 색채를 사용하고, 위급상황을 강조하는 안전색채를 적용			
	· 외부 환경에 의해 부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			
	· 야간에도 시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거나 야광 소재 적용을 권장			
	· 정보 안내 시, 국제표준 픽토그램 적용 및 다국어 병기			
설치배치	·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장비의 설치 높이를 설정			
	· 안내표지판 설치 시 알림게시판 등과 통합 설치 및 인접 설치를 권장			
	·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매입 설치를 권장			
	· 상황 발생 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장비를 설치			



지진 대피소 안내표지판(기본형) 및 지진대피 행동요령 표준디자인



소화기·응급시설물 보관함(구호용품보관함) 표준디자인

시설물색
강화겟발색 (ICC-공공1)
강조색(안전색)
기능색3-Yellow (ICC-공공7)
정보표기색, 베이스
기능색2-White (ICC-공공4)
강조색
응급, 소방, 금지
강조색
구호용품

D. 안전관련 시각매체 및 용품

3.D.6

공사장안내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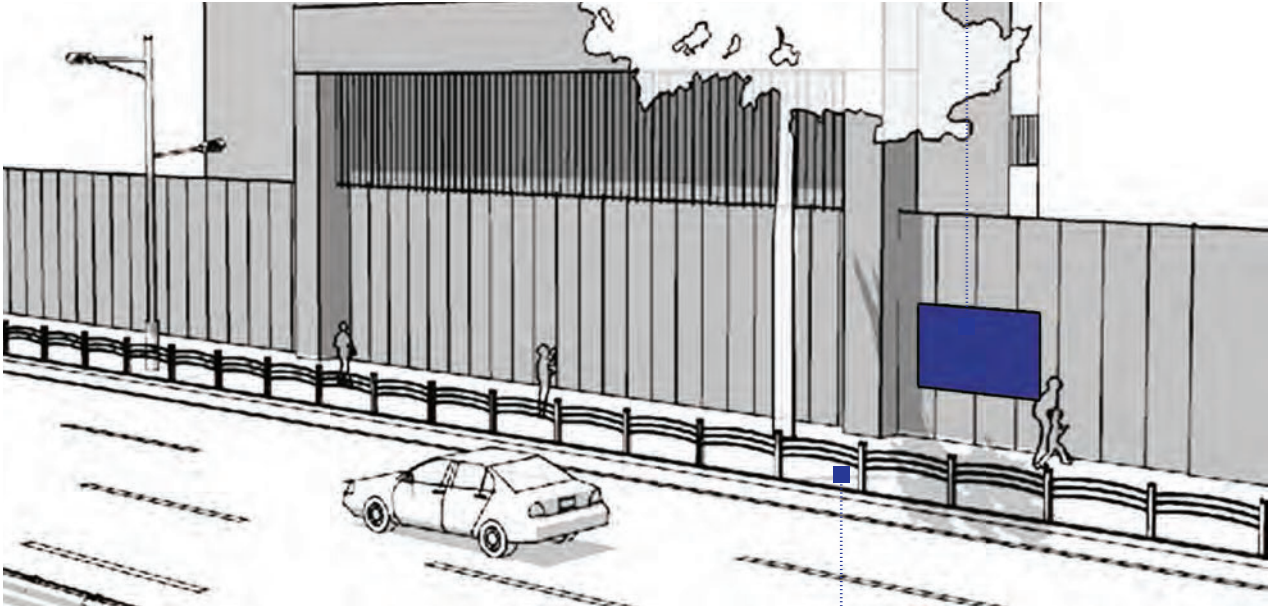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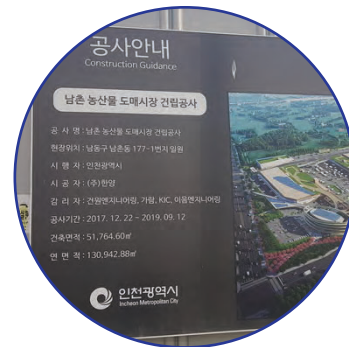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안내표지

기본방향

공사현장 주변 안전하게 보행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적용
공사장가설울타리에 부착하는 형태 적용
공사제목, 공사기간, 유도방향, 픽토그램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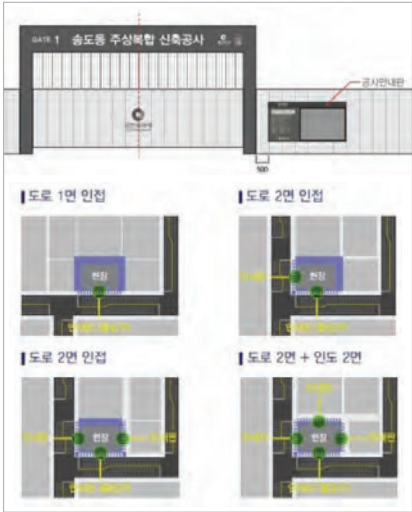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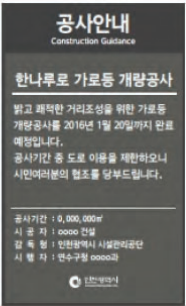
공사장 주출입구, 주 이동동선에 공사안내판 설치
보행로 확보에 따라 각 구간에는 안전펜스형 디자인 적용
보행 동선과 중첩되지 않도록 배치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공사장가림막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적용			
	· 공사종합안내판은 공사장가설울타리에 부착하는 형태로 적용하며, 부착 시 지면에서 1m 이격 설치 ※ 공사장가설울타리에 관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306p)] 참고			
	· 공사장가설울타리의 높이에 따라 공사종합안내판의 크기를 달리 적용할 것을 권장			
	· 보행로 확보에 따라 각 구간에는 안전펜스형 디자인 적용을 권장			
	· 공사장 안내표지에는 제목, 공사기간, 유도방향, 픽토그램을 표기			
	· 공사장안내판의 주조색은 인천환경색채를 사용하며, 주요 안전정보는 안전색을 적용			
	· 야간에도 인지될 수 있도록 고휘도 반사시트를 부착			
설치배치	· 공사안내판은 공사장 주출입구, 주 이동동선에 설치			
	· 공사구간의 전후방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 교통, 보행안내표지의 설치를 권장			
	· 가설형 공사장안내판은 공사 현장이 2m 이상의 유효보호폭과 접할 경우 부착형과 함께 설치하며, 설치 시 보행 동선과 중첩되지 않는 유티 공간에 배치			
	· 가설형 공사장안내판의 정보면이 가설울타리 및 보행동선과 평행이 되도록 배치			
	· 넘어지거나 밀려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설치			
	· 안전시설물 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공사장용 드럼 및 칼라콘의 설치를 권장			



공사종합안내판(부착형/부착형 소형) 표준디자인



공사장안내판 배치

E

영상정보 시각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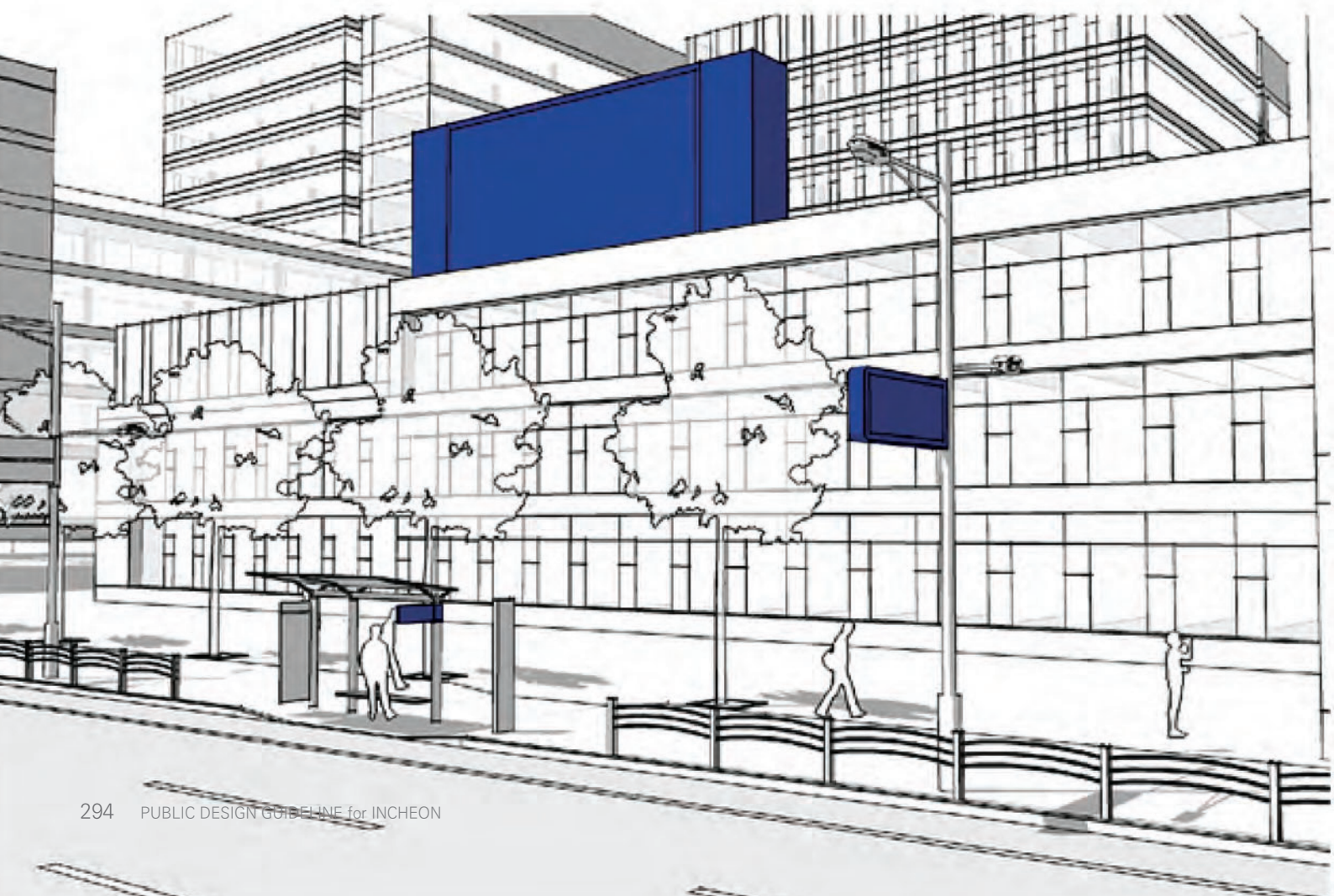
중점사항

01 생활안전 및 보행안전
확보하기

시각적 혼란 방지를 위해 여러 색상의 혼용 사용 지양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심리적 불안을 주는 잦은 점멸 지양
풍랑 및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

02 도시조화성 및 정체성,
지속가능성 고려하기

도시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크기를 최소화하여 설치
유사 기능의 시설물에 통합 설치 권장
상업적인 광고 및 거부감을 주는 용어 지양
고화질 표출이 가능한 절전효과 기능을 갖추어 예산 절감



세부구성

- 영상정보 시각매체는 디지털방식의 움직이는 정보를 제공하는 전광판으로, 대기오염이나 도로소음, 교통상황, 버스·지하철 정보 전광판 등이 해당된다.
- 가이드라인의 세부구성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분류코드	중분류	세부 구성	
3.E.1	대기오염·도로소음전광판	·형태색채	·설치배치
3.E.2	교통상황·교통사고상황전광판		
3.E.3	버스정보전광판		
3.E.4	디지털영상매체		

- 영상정보 시각매체는 기능 및 목적에 따라 4개 대상으로 세분화하며, 형태색채, 설치배치 등 세부요소로 각각의 지침을 제시한다.

관련법규 및 문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지침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E. 영상정보 시각매체

심의대상

3.E.1

대기오염·도로소음전광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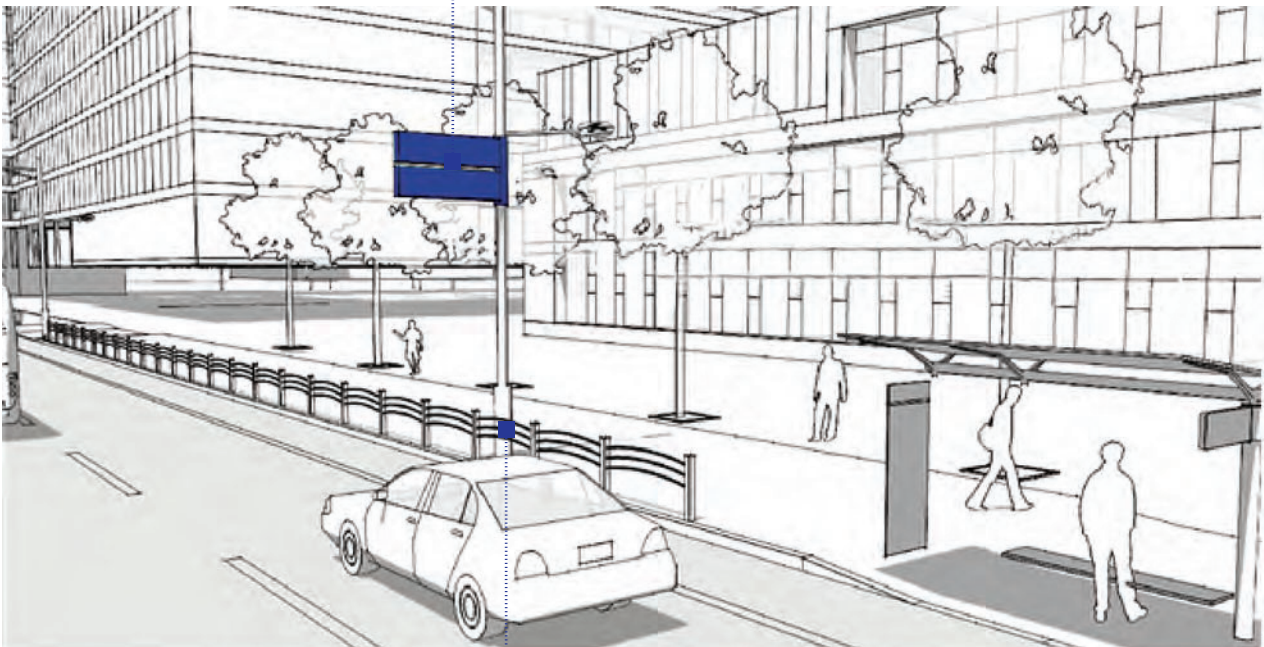
대기나 도로 소음의 적정기준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을 알리는 전광판

기본방향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필수 정보만 표기하기

디자인 원칙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휘도를 제한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심리적 불안을 주는 잦은 점멸 지양



충격 및 빗물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참조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지침(환경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충격 및 빗물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 고화질 표출이 가능한 전광판을 적용			
	· 오염도 및 소음도와 관련된 필수 내용을 주요 요소로 표기하고 평균지수~기준지수 비교 등 환경관련 정보는 보조 요소로 표기 단, 필요시 최소한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환경분야 홍보문구 표시도 고려			
	· 간단 명료한 문구로 표현하며, 가독성이 좋은 서체를 사용			
	· 시각적 혼란 방지를 위해 여러 색상의 혼용 및 차량 신호체계에서 사용되는 색채는 사용 금지			
	·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휘도를 제한하며,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심리적 불안을 주는 잦은 점멸현상은 제한			
설치배치	· 대기오염자동차측정소와 인접하고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도심 도로변, 대규모 산단지역에서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도시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크기를 최소화하여 설치			
	· 별도 지주로 설치하지 않고 유사 기능의 시설물에 통합 설치			



실시간 정보를 알려주는 미세먼지 신호등(알리미)



적정량의 정보를 시각언어를 적용하여 간결하게 표시

E. 영상정보 시각매체

심의대상

3.E.2

교통상황·교통사고상황전광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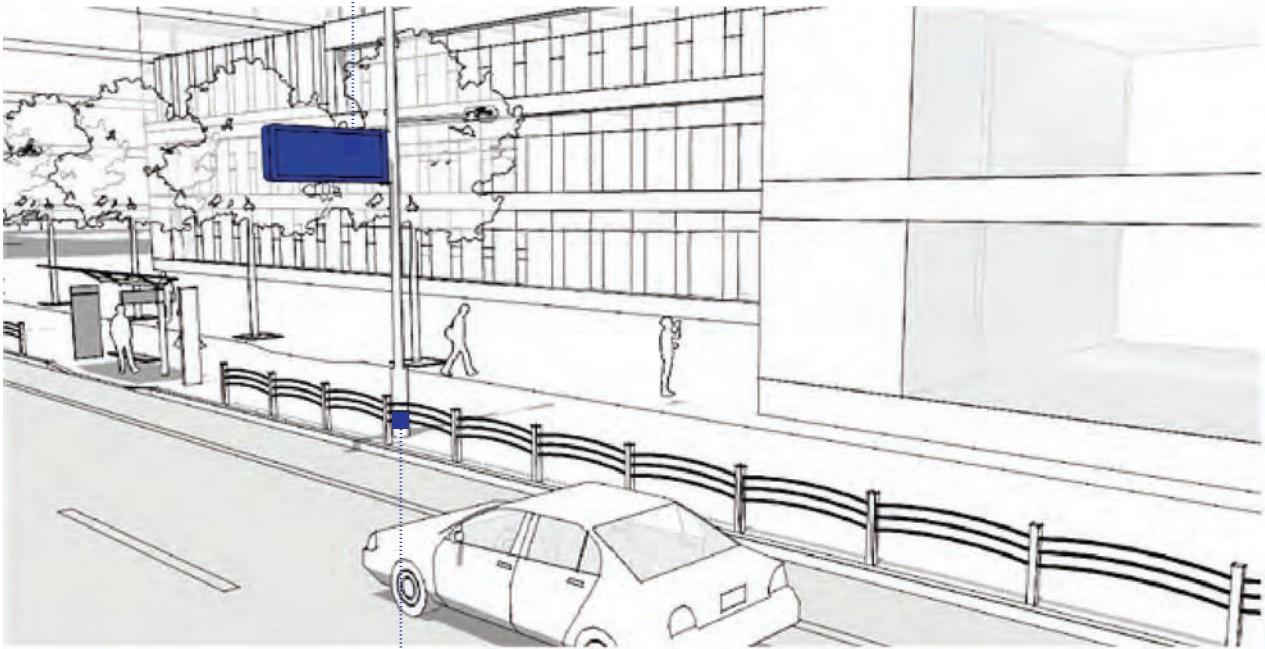
현재의 교통상황을 알리거나 교통사고 건수를 알리고 경각심을 유도하여 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전광판

기본방향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필수 정보만 표기하기

디자인 원칙

현재 교통 상황, 주의 구간 알림, 소요시간, 교통상황 지연 이유,
우회도로 안내 등 교통정보를 주 요소로 표기



충격 및 빗물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참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충격 및 빗물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 고화질 표출이 가능한 전광판을 적용			
	· 현재 교통 상황, 주의 구간 알림, 소요시간, 교통상황 지연 이유, 우회도로 안내 등 교통정보를 주 요소로 표기			
	· 시각적 혼란 방지를 위해 여러 색상의 혼용 및 차량 신호체계에서 사용되는 색채는 사용 금지			
	·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휘도를 제한하며,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심리적 불안을 주는 잦은 점멸현상은 제한			
설치배치	· 도시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크기를 최소화하여 설치			
	· 별도 지주로 설치하지 않고 유사 기능의 시설물에 통합 설치			



교통정보를 주 요소로 간결하게 표기



최소화된 크기 적용

E. 영상정보 시각매체

심의대상

3.E.3

버스정보전광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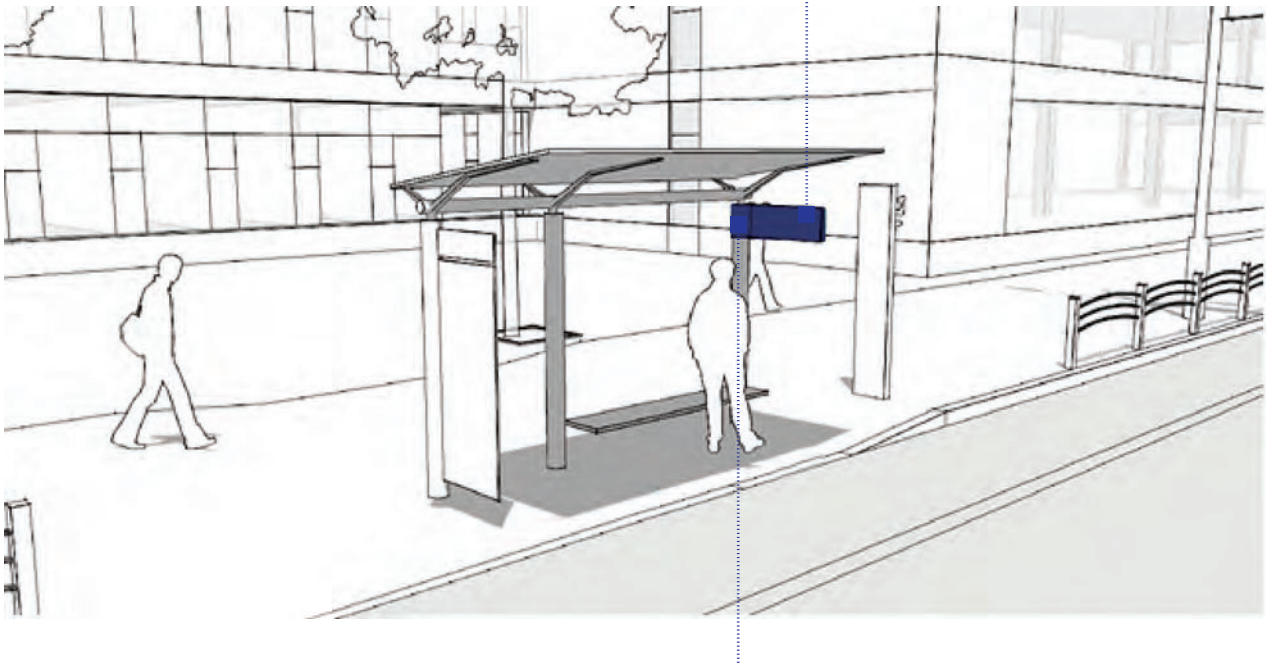
버스 또는 지하철 이용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전광판

기본방향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표기하기

디자인 원칙

움직임과 명시성이 높은 색상은 주요 정보에만 적용
상업적인 광고 및 거부감을 주는 용어 지양



결합 부위 및 마감처리를 미려하게 계획

참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고화질 표출이 가능한 전광판을 적용			
	· 지나치게 많은 정보는 표시 지양			
	· 상업적인 광고 및 거부감을 주는 용어는 사용 지양			
	· 교통신호등과 동일한 색채의 사용은 금지			
	· 움직임과 명시성이 높은 색채는 주요 정보에만 적용하고 불필요한 요소에는 사용 지양			
	·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휘도를 제한하며, 타 시설 및 이용객에게 심리적 불안을 주는 잿은 점멸현상은 제한			
설치배치	· 독립지주형표지 설치는 금지하며, 버스승차대와 일체화하여 설치			
	· 버스승차대의 크기 및 형태를 고려하여 적용			
	· 결합 부위 및 마감은 미려하게 처리			



버스정보를 한글과 영문 교차 표출 및 기상상황 등 통합 제공



도착정보 순에 따라 정보 표기



버스승차대표지와 통합

E. 영상정보 시각매체

심의대상

3.E.4

디지털영상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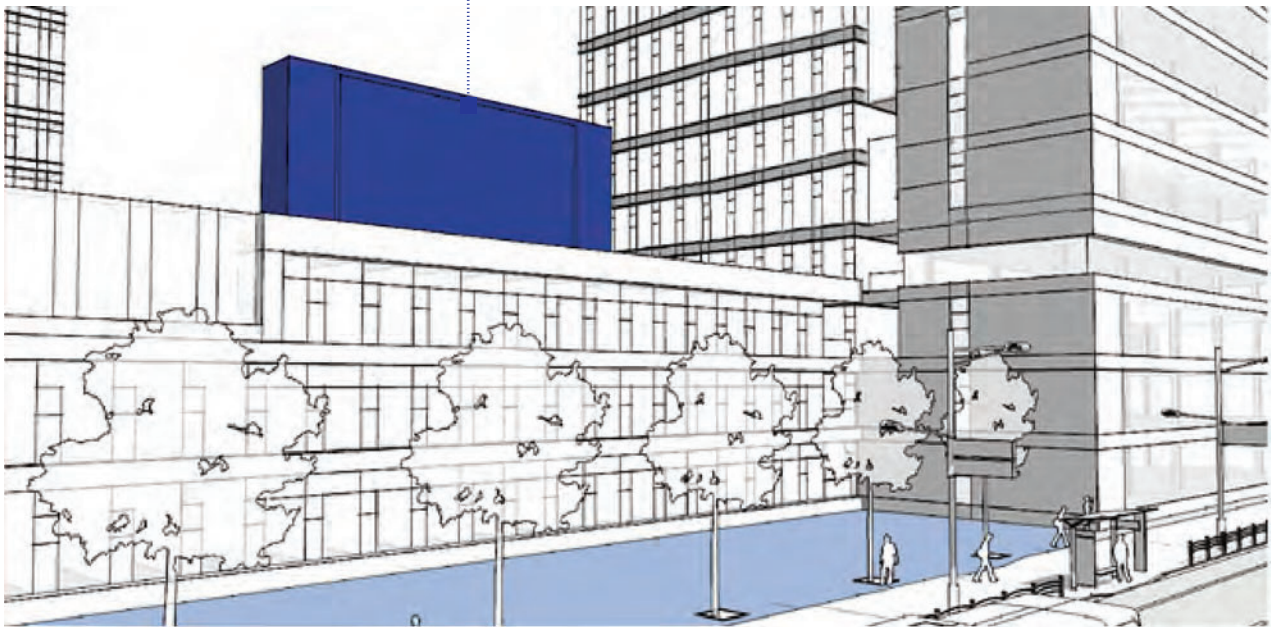
공익광고나 지자체 홍보 등에 사용되는 디지털방식의 영상매체

기본방향

빛공해를 최소화하며, 특색있는 경관 및 콘텐츠 구현하기

디자인 원칙

인천광역시의 도시이미지를 전달하는 공공적인 목적으로 활용
건축물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풍량 및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심리적 불안을 주는 지나치게 잦은 점멸은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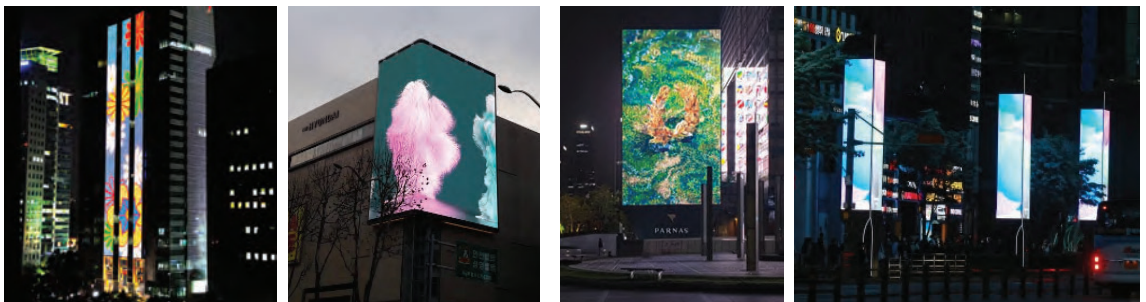


참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상업적인 목적이 외에도 인천광역시의 도시이미지를 전달하는 공공적인 목적으로 활용			
	· 심야에는 조도를 낮추거나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			
	· 고화질 표출이 가능한 전광판을 적용			
	·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심리적 불안을 주는 지나치게 잦은 점멸현상은 제한			
	· 원색 또는 고채도 색채는 주조색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강조 부분에는 5~10% 이내로 면적을 제한하여 강조색을 적용			
설치배치	· 녹지, 주거, 문화재 등의 지역에는 설치를 지양			
	· 크기 및 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용도 지역별로 휘도를 규제			
	· 건축물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풍량 및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치			
기타	· 광고물의 설치 규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			
	· 조명설계, 야간경관 적용기준 등은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참고			
	· 그래픽디자인 등 상세한 계획·설치는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			
	· 향후 디지털영상매체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영상콘텐츠 구성, 공공정보서비스 제공, 규격 및 배치 제한 등 종합적인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수립·적용할 것을 권장			



갤러리 형식의 디지털 영상매체



건축물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및 옥외전광판

다양한 규격 및 형태의 디지털 사이니지, 미디어폴

F

환경연출 시각매체 및 공공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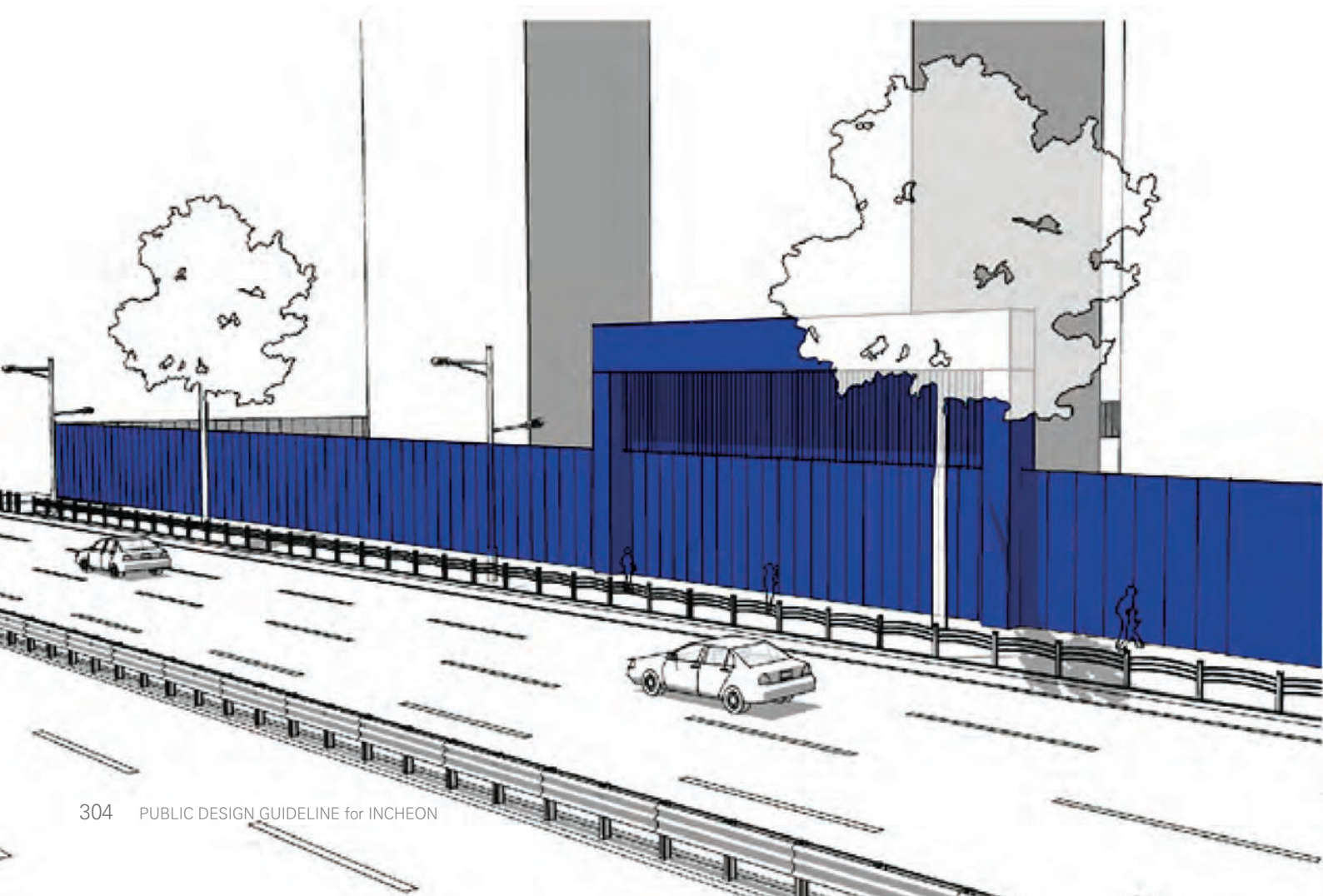
중점사항

01 생활안전 및 보행안전
확보하기

계단 또는 급경사와 같이 지형변화가 있는 경우, 안전을 고려하여 과도한 패턴 적용 지양

02 도시조화성 및 정체성,
지속가능성 고려하기

도시경관과 미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곳에만 설치
장소의 특성을 살려 지역 정체성 고려
눈부심, 반사 등의 소지가 있는 고광택 재료는 사용 지양
유지관리가 편리한 다양한 재료 활용



세부구성

- 환경연출 시각매체 및 공공미술은 외부환경에 적용되는 그래픽(2D) 및 입체적(3D) 요소로 주변을 환기시키거나 시각적 차단을 위해 설치하며, 공사장가설울타리 및 가설가림막, 벽화, 슈퍼그래픽 및 미디어아트, 공공조형물 등을 포함한다.

- 가이드라인의 세부구성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분류코드	중분류	세부 구성	
3.F.1	공사장가설울타리, 가설가림막		
3.F.2	벽화	· 형태색채	· 설치배치
3.F.3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3.F.4	공공조형물		

- 환경연출 시각매체 및 공공미술은 기능 및 목적에 따라 5개 대상으로 세분화하며, 형태색채, 설치배치 등 세부요소로 각각의 지침을 제시한다.

관련법규 및 문헌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브랜드 및 상징물 개발
 인천광역시 공사장가림막 가이드라인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야간명소화 사업(원도시 디자인 활성화 6차) : 기본계획 및 매뉴얼

F. 환경연출 시각매체 및 공공미술

심의대상

3.F.1

공사장가설울타리, 가설가림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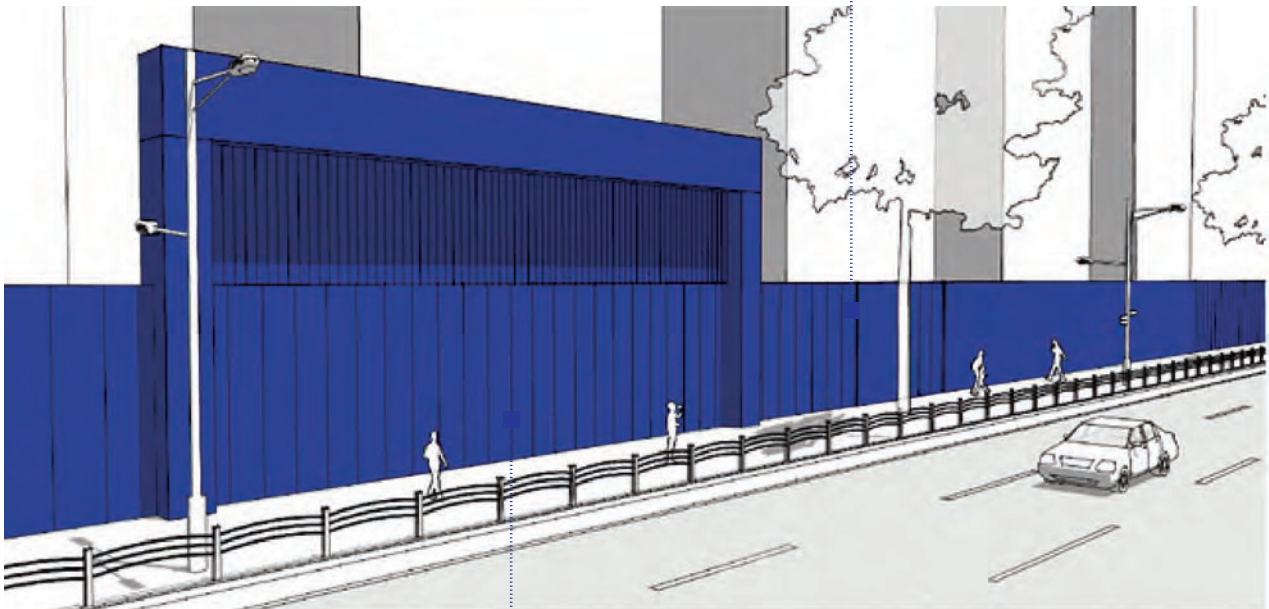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시각적 차단을 위한 울타리 및 가림막

기본방향

공사환경 안전하게 보호하기

디자인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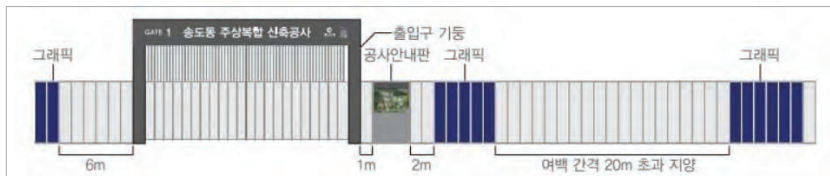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적용
 색채는 저채도, 중명도 이상 사용
 과도한 원색 및 패턴, 상업적 광고, 브랜드명 등의 표기금지
 지속적으로 공사장가설울타리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수상작 연계·활용



소음방지 및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시설 외에
 처마장식 등과 같은 불필요한 시설은 설치 불가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 공사장가림막 디자인 공모전
 인천광역시 공사장가림막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적용 · 인천광역시의 도시브랜드 및 상징아이콘을 건물가림막에 적용하여 문화재 및 역사적 공간에 대한 관심 유도 및 거리의 분위기를 개선 · 그래픽은 동일 높이의 모듈화된 타입별 너비 적용으로 디자인적 리듬감을 형성 · 도로 폭에 따라 디자인 적용기준을 달리하여 적용 · 공사기간 및 규모에 따라 적합한 가설울타리의 재료를 선정 · 색채는 저채도, 중명도 이상을 사용하고 과도한 고채도 색채 및 패턴, 상업적 광고, 브랜드명 등의 표기는 금지 · 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공사안내, 업체, 건물주를 알리는 정보의 크기 및 수량을 최소화 · 가설가림막은 공사현장의 낙하물,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한 오염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를 권장하며, 설치 시 가설울타리 주조색상에 따라 선택하여 설치		
설치배치	· 소음방지 및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시설 외에 처마장식 등과 같은 불필요한 시설은 금지 · 공사장가설울타리 및 가설가림막의 높이는 최소 6m 이상으로 하고 견고한 구조로 높이를 일정하게 설치 · 경사면에 설치 시, 상단 높이가 수평이 되도록 하거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치 · 보행자의 원활하고 안전한 야간 보행을 위하여 조도가 확보되지 않은 구간은 조명 설치를 권장하며, 동일 구간의 조명 높이는 동일하게 적용하여 최소 2.5m 이상, 10m 간격으로 설치하되, 가림벽의 높이에 따라 위치를 결정		
기타	· 공사장 가림막, 게이트 사인, 건축허가안내판 등은 시공 전 공사 인허가부서와 설치 규모를 확정 후 디자인에 관해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 협의과정을 진행		



공사장가설울타리 그래픽 구성(인천광역시 공사장가림막 가이드라인)



가설가림막 설치(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공사장가설울타리 표준디자인 재정보 적용

F. 환경연출 시각매체 및 공공미술

심의대상

3.F.2

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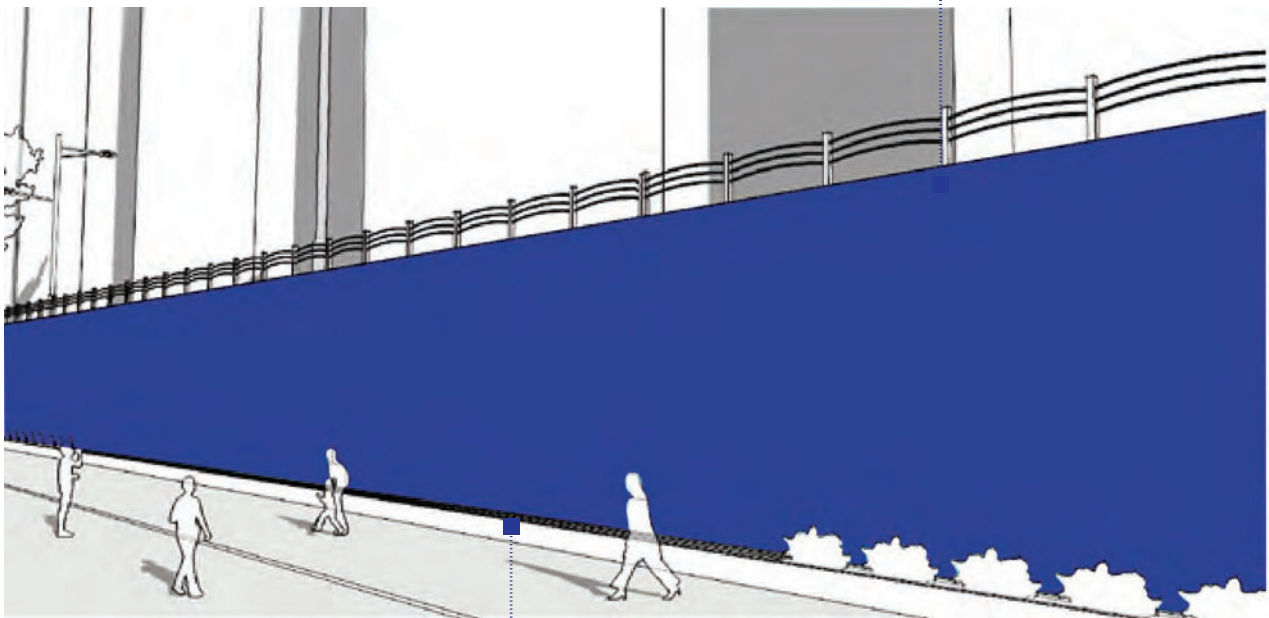
도시 내 공간, 건축물이나 도시구조물 등에 건축재료, 자연재료, 안료 등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시각이미지

기본방향

장소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적용하기

디자인 원칙

장소의 특성을 살려 지역정체성 고려
눈부심, 반사 등의 소지가 있는 고풍택 재료는 사용 지양
유지관리가 편리한 다양한 재료 활용



계단 또는 급경사와 같이 지형변화가 있는 경우는
안전을 고려하여 과도한 패턴 적용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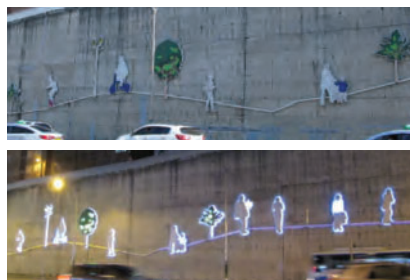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장소의 특성을 살려 지역정체성을 고려		
	· 자치구·군, 학교 등 기관 및 단체명의 표기나 홍보성, 캠페인성 문구를 사용 금지		
	· 복잡하고 사실적인 이미지, 주제가 명확하지 않은 묘사 위주의 복잡한 표현은 지양		
	· 계단 또는 급경사와 같이 지형변화가 있을 때는 안전을 고려하여 과도한 패턴은 적용 지양		
	· 복잡한 문양이 있거나 굴곡이 많은 벽면에는 가급적 안료식 벽화 적용을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비교적 개체의 크기가 큰 도형, 선 위주의 추상적 이미지 표현을 권장		
	· 곡각부는 이어진 두 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현장 상황에 의해 연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제가 분리된 포인트 디자인 적용을 권장		
	· 전체 면적의 30% 이상은 그래픽 요소의 표기가 없는 여백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		
	· 가로 길이가 30m 이상 이어지는 벽화는 면을 분할하여 구성할 것을 권장		
	· 눈부심, 반사 등의 소지가 있는 고타택 재료는 사용하지 않으며, 기후조건 또는 외부 타격에 쉽게 변형되지 않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활용		
	· 공공기관 주변 등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는 그린 월, 생태벽화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의 적용을 권장		
설치배치	· 원색 또는 고채도 색채는 주조색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강조 부분에는 5~10% 이내의 면적에 강조색을 제한 적용하고 배경색의 채도는 가급적 8 이하로 할 것을 권장		
	· 도시경관과 미관 개선을 위해 제한적으로 설치		
기타	·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도시구조물 하부공간에는 설치 지양		
	· 그래픽디자인 등 상세한 계획·설치는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		
	· 주제 선정 및 시공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학교 등과의 협업을 통해 관심을 유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		



장소의 특성을 살린 주제성 있는 표현



간결한 조형적 구성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오브제 형식



인천 시민디자인단의 벽화봉사 참여

F. 환경연출 시각매체 및 공공미술

심의대상

3.F.3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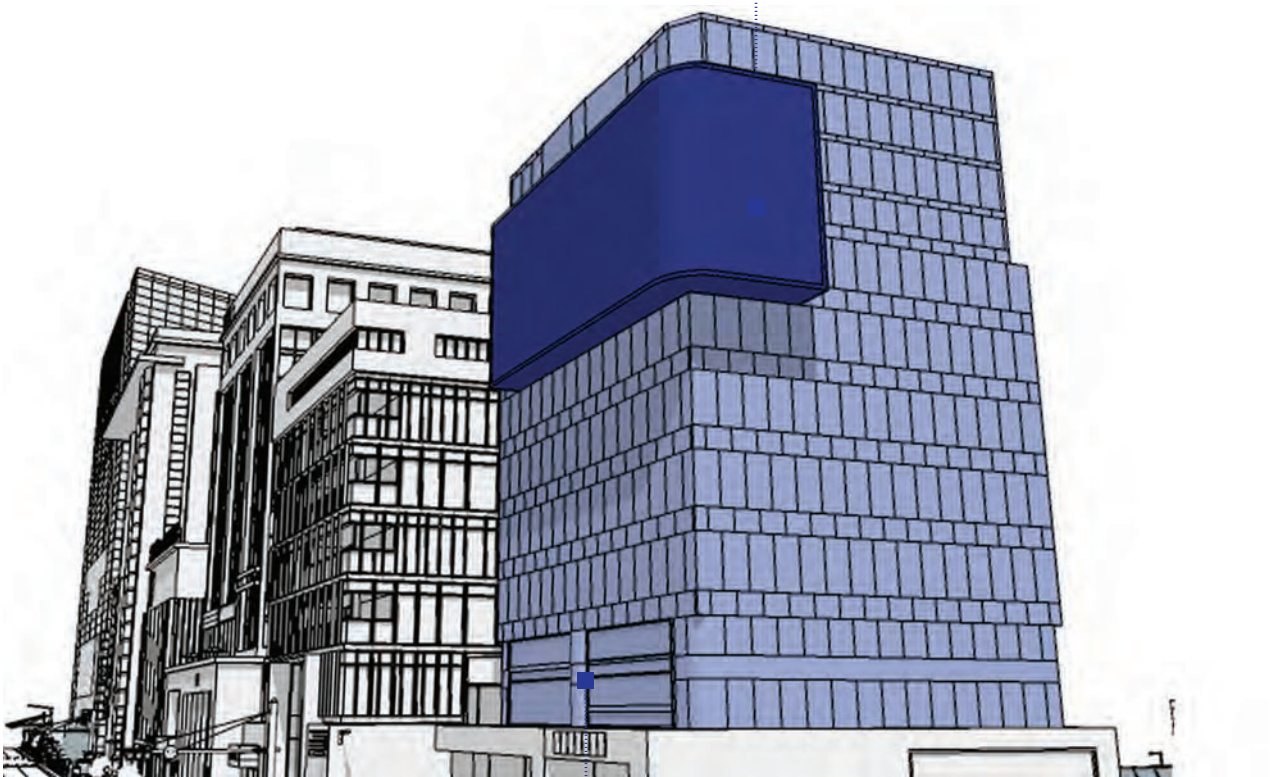
실내·외 공간과 벽면 등을 장식하는 큰 규모의 그래픽
대중·영상매체를 활용하는 예술

기본방향

주·야간 랜드마크로 활용하기

디자인 원칙

불거리 및 관광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랜드마크 시설에 적용
공간에 따라 바닥, 벽면 등의 요소를 활용
시각적 안정감과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그래픽 및 색채 등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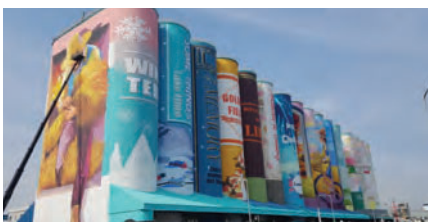
상징성이 명확한 장소에 제한적으로 설치
슈퍼그래픽과 인접한 곳에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활용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야간명소화 사업(원도시 디자인 활성화 6차) : 기본계획 및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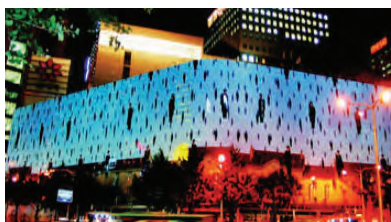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랜드마크 시설에 적용			
	· 건축물에 미디어아트를 적용할 경우, 색채를 활용하여 심미성을 강조하되, 경관을 해치거나 빛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시각이미지를 활용			
	· 미디어아트 등의 영상매체 사용 시, 상황에 따라 조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			
	· 공간에 따라 바닥, 벽면 등의 요소를 활용하여 디자인할 것을 권장			
	· 넓은 면적의 슈퍼그래픽을 활용할 경우, 시각적 안정감과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그래픽 및 색채 등을 계획			
	· 영상기기는 외부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도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			
	· 원색 또는 고채도 색채의 과다 사용을 금지하며, 교통신호와 시각적 혼동을 야기하는 색채는 사용 금지			
설치배치	· 도시경관과 미관 개선을 위해 상징성이 명확한 장소에 제한적으로 설치			
	· 슈퍼그래픽과 인접한 곳에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 조명을 설치할 시, 주거지역이나 타 건축물 등에 침입광을 일으킬 수 있는 설치는 금지			
기타	· 미디어아트 등과 관련하여 계획 시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야간명소화 사업(기본계획 및 매뉴얼)]을 참고			
	· 슈퍼그래픽 및 미디어아트의 크기, 색채 등 상세디자인 계획·설치는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심의			
	·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활용성을 제고			



문화요소와 연계하여 참여 갤러리 형식의 미디어아트 적용



인천 랜드마크 시설(사일로 창고)에 슈퍼그래픽 적용



조명을 활용하여 도시미관 향상



광고·홍보방식의 미디어아트 활용

F. 환경연출 시각매체 및 공공미술

심의대상

3.F.4

공공조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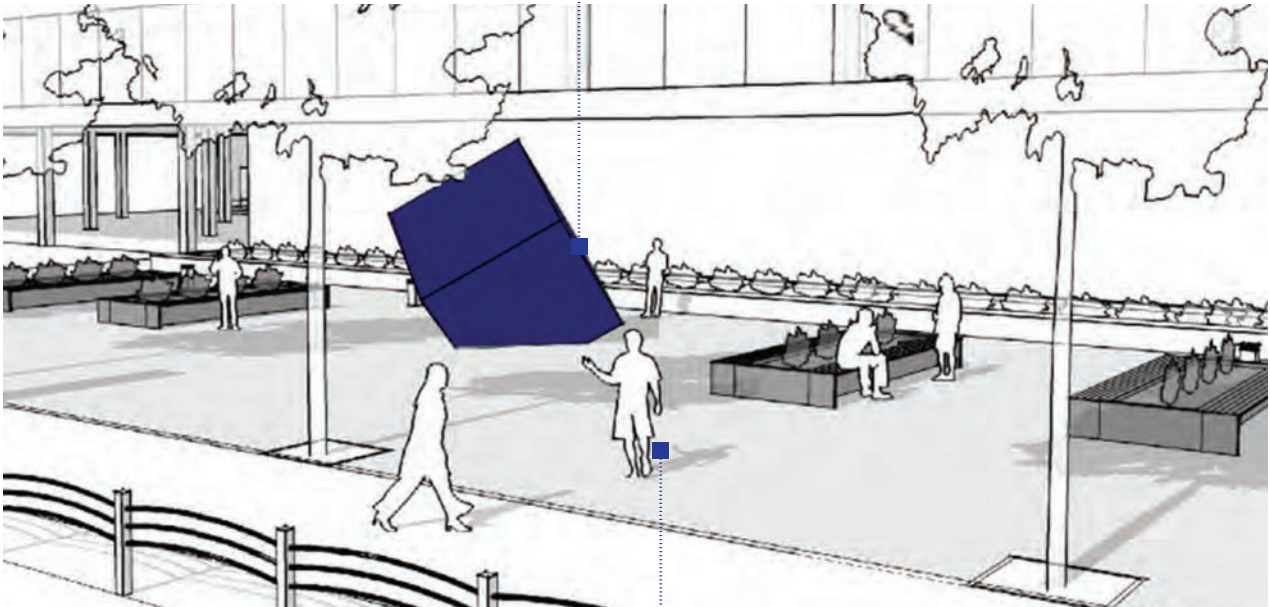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상징탑, 기념비, 동상 등), 조형시설물(조각, 공예 등), 환경시설물(벽화, 분수대, 야외무대 등)을 의미

기본방향

경관과 조화로운 상징물 계획하기

디자인 원칙

지역을 상징하는 특정이미지를 형상화시킨 디자인 지양
설치공간 주변의 조경, 포장, 기타 구조물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통합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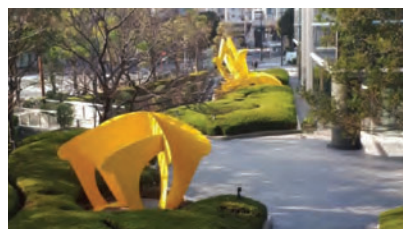
보행가로의 유효보도폭 내에 공공조형물 설치 금지
주요 공공청사, 광장, 공원 등 통행량이 많고 중요도가 높은 장소에 배치
인접 건축물 또는 조경공간, 타 시설물과 통합 설치 권장

참조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지역을 상징하는 특정이미지(캐릭터, 특산물 등)를 형상화시킨 디자인 지양		
	· 과도한 장식적 요소 및 패턴,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슈퍼그래픽의 적용은 지양		
	· 기능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부피감과 설치면적을 최소화하고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위압감이 없고 친근한 규모로 조성할 것을 권장		
	· 구조적 안전성과 이용자의 안전성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		
	· 조형물과 더불어 설치공간 주변의 조경, 포장, 기타 구조물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통합 디자인 할 것을 권장		
	· 눈부심, 반사 등의 소지가 있는 고풍택 재료는 사용을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적용 면적을 최소화하고 반광택 또는 무광택의 표면처리를 권장		
	· 외부충격에 강하고 먼지 제거가 용이하며,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재료의 사용이나 후처리 가공을 권장		
	· 원색 또는 고채도 색채는 사용을 지양하되,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조형물의 규모를 감안해 강조요소로서 전체 설치 공간의 10% 이내로 면적을 제한		
	· 인천시 상징물에 한해 상징색채 적용을 권장하되,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계획		
	· 조명을 사용할 경우,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휘도를 제한하며,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심리적 불안을 주는 잦은 점멸효과는 제한		
설치배치	· 보행가로의 유효보도폭 내에 공공조형물 설치를 금지		
	· 주요 공공청사, 광장, 공원 입구 등 통행량이 많고 중요도가 높은 장소에 배치		
	· 인접한 건축물 또는 조경공간, 타 시설물과의 통합 설치를 권장		
	· 관람자의 시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형물 높이의 2~3배 관람거리를 확보		
기타	· 경관 향상을 위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교체 및 해체 등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		



도시브랜드를 활용하여 상징조형물로 설치



조경공간과 통합 설치



휴먼스케일의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공공조형물

Part 4

공공건축물 및 광고물

Public Architecture
& Advertisement

공통		건축물 경관·색채	318
		야간경관	319
		경계부 및 공지	320
		진출입부	321
		서비스이용공간	322
		이동공간	323
		위생공간	324
		주차공간	325
		실외부속물	326
		실내시설물	326
		안전·구호시설물	327
A. 공공건축	4.A.1	행정·공공기반 시설	330
	4.A.2	교육·연구시설	334
	4.A.3	문화·복지시설	338
	4.A.4	교통·진입시설	342
	4.A.5	환경·위생시설	346
B. 민간건축	4.B.1	공동주택	352
	4.B.2	단독주택	356
	4.B.3	고가 및 폐가	358
	4.B.4	복합상가	360
	4.B.5	전통시장	362
	4.B.6	산업단지	366
C. 광고물	4.C.1	건축물 안내시설물	370
	4.C.2	건축물 홍보시설물	372
	4.C.3	옥외광고물	374
		간판 유형별 디자인가이드라인	379

Part 4

공공건축물 및 광고물

기본방향

-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및 광고물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유형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부합하는 방향성과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 본 가이드라인은 기본 방향 및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이고 공통된 내용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사안별 적용수준과 예외 사항 등은 해당 건축물 및 광고물의 제반여건과 관련법규, 지침 등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및 광고물 방향



적용대상

-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유사 단체 등이 발주,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과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등 옥외에 설치되는 광고물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공공성 증대를 위해 민간건축의 일부 범위 및 건축물 내 안내시설물, 홍보시설물을 제한적으로 포함한다.
- 인천광역시의 공공건축물 및 광고물은 인천도시디자인의 5대 전략을 반영하여 공공건축, 민간건축, 광고물의 총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며, 건축물 경관·색채, 야간경관, 경계부 및 공지 등 공공공간, 실외 부속물 등 관련 공공시설물의 11가지 항목을 공통사항으로 함께 제시한다.

구분	대분류	분류코드	중분류	비고
공공건축물 및 광고물	공통		건축물 경관·색채	
			야간경관	
			경계부 및 공지	
			진출입부	
			서비스이용공간	
			이동공간	
			위생공간	
			주차공간	
			실외부속물	
			실내시설물	
			안전·구호시설물	
	A. 공공건축	4.A.1	행정·공공기반 시설	
		4.A.2	교육·연구시설	
		4.A.3	문화·복지시설	
		4.A.4	교통·진입시설	
		4.A.5	환경·위생시설	
	B. 민간건축	4.B.1	공동주택	
		4.B.2	단독주택	
		4.B.3	고가 및 폐가	
		4.B.4	복합상가	
		4.B.5	전통시장	
		4.B.6	산업단지	
	C. 광고물	4.C.1	건축물 안내시설물	
		4.C.2	건축물 홍보시설물	
		4.C.3	옥외광고물	



공통중점사항

① 권역별, 기능별 특성을 고려한 조화로운 건축물 경관·색채 계획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집합적 경관	· 건축선은 되도록 주변 건축선과 정렬하여 정리된 가로 연출을 권장			
	· 건축선의 후퇴로 인해 건축선을 일치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면공지를 인접 보행로, 녹지축 등과 시각적으로 연속될 수 있도록 조성			
	· 인접 건축물의 규모 및 자연경관과 조화롭고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계획			
	· 지형 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변 경관구조물과 연속적인 스카이라인 및 일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건축물의 전면·공개공지는 인접가로 및 공원 등과 공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			
	· 경관적으로 중요한 중점관리구역은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에 따라 우선 계획			
색채	·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에 따라 주변에 인접한 자연 경관, 주거·상업경관 등 권역별 특성 및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물 입면의 색채 및 재료를 계획			
	· 상위계획 및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권역별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재료 및 색채 등을 다양화하여 획일적이지 않은 경관으로 조성			
	· 아동 및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관련 시설의 주 사용자의 심리와 행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입면 색채를 디자인			
	· 전체 입면의 70% 이상은 차분한 저채도의 색채 배합을 권장			
	· 건물별 기능과 주 이용층을 고려하여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설정하되, 강조색 외에 과도한 원색 및 고채도의 사용을 지양			
	· 단일 건축물에 과도하게 많은 색상을 사용하여 시각적 혼잡성을 증대시키는 색채계획 지양			
	· 동일한 건물의 저층부 입면은 정면, 측면, 후면부의 마감, 색채를 통일하여 적용 권장			
	· 석재, 목재 등의 자연소재를 사용할 경우, 소재 본연의 색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부득이하게 자연소재에 도색을 할 경우에는 주변 재료 및 색채와 조화를 이루는 색채를 사용			
	· 유리 사용 시, 색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유채색의 유리 사용을 지양			
	· 외벽 색상과 창호 프레임의 과도한 색채 대비를 지양			



인접가로와 연계하여 전면공지 내 녹지 및 휴게시설 조성



저채도 위주의 색채 배색



어린이의 정서와 시각 인지를 고려한 유치원 입면 색채

참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 빛방사허용기준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② 빛공해가 없는 야간경관 형성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야간경관	· 야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진출입부 및 공개공지에 조명설치를 권장		
	· 건축물의 형태, 재료 및 색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건물 입면과 조화롭게 연출		
	· 인근의 상가, 주택, 공원 등에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과도한 원색 및 현란한 빛의 움직임(색상, 밝기 변화, 반복 점멸 등)이 있는 조명 설치 지양		
	· 공공시설물에 조명을 기능적으로 통합 설치하며, 기구 수량을 최소화		
	· 건축물의 미관과 안전을 위해 최대한 조명기구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루버, 후드 등 보조장치의 부착 권장		
	· 공공건축물의 인공조명 설계에 관한 상세 규정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빛방사허용기준)]에 준하여 설계		
	· 조명설계, 야간경관 적용기준 등은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만들기(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참고		



건축물 내부조명, 보행등을 경관조명으로 활용하여 절제된 빛 사용



개방된 구조의 실내 조명을 외부로 확산되게 하여 야간경관으로 활용



건축물 벽면에 조명을 투광하여 조화롭게 연출



기관명 사인에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경관으로 활용



진출입부 및 보행접근로를 따라 조명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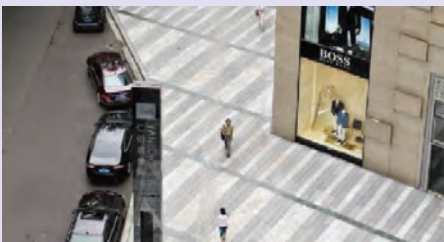
공공시설물에 조명을 통합 설치



공통중점사항

③ 건축물과 연계하여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경계부 및 공지 조성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경계부 및 공지	· 주요 가로와 인접한 건축물의 경계 및 공개공지는 가로수 식재와 연계를 고려하여 조성		
	· 식재를 통해 경계를 구분할 경우, 수고 0.7~1.0m 정도의 관목을 식재하거나 화단을 조성하며, 수목에 의해 시선이 차폐되는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생울타리 등을 통한 투시형 구조로 조성하며, 높이는 1m 이하로 설계할 것을 권장		
	· 전면공지가 보행가로와 인접한 경우, 동선 관계를 고려하여 확장 보행로로 활용을 권장		
	· 보도가 없는 도로와 인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공개공지 조성을 지양		
	· 전면공지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건축물과 전면공지의 시각적 연계를 고려하여 건축 입면과 유사한 색상 및 자연적인 재료의 적용을 권장		
	· 전면공지는 인접보도와 유사한 노면 패턴 및 재료를 사용하며,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 과도한 패턴 적용을 지양		
	·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등 및 정원등과 같은 조명시설을 함께 계획하며, 자연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CCTV와 같은 방범시설물을 설치		
	· 전면공지가 협소한 경우, 건물의 필로티 하부공간, 자투리 공간, 벽면 등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활용할 것을 권장		
	·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련 건축물의 경우, 외부공간에 벤치 등 휴게시설을 필수적으로 조성		
	· 내·외부 공간의 상호 진입구간 사이에 단차 및 방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다양한 활동을 고려하여 시설물 설치 시, 가장자리에 배치를 권장		
	· 공개공지의 확보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에 준하여 조성		
	· 공공건축물과 더불어 민간건축물도 공개공지 설치를 권장하며, 보상제도 등을 활용하여 설치를 유도		



전면공지와 보행로를 연계하여 확장 보행로로 활용



보행가로부터 건축물의 진입동선을 고려하여 배치



자투리 공간을 발굴하여 쉼터로 활용

- 참조**
-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국토교통부)
 -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안내(행정안전부)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④ 장애물 없는 진출입부 및 주출입구 조성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진출입부	· 보도에서 건축물 출입구까지의 모든 보행접근로는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차량으로 인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조성		
	· 보행접근로와 대지 내 차도의 바닥포장재는 질감과 색채를 달리하여 시인성을 확보하며, 지나치게 다양한 패턴, 색채, 재질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저채도, 무채색의 적용을 권장		
	· 건축물 내·외부의 보행로 및 진입로는 단차와 기울기가 없게 평탄하게 조성		
	· 지형 구조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종단기울기 1/24 이하, 횡단기울기 1/100 이하로 설치할 것을 권장		
	·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 30m마다 안전 및 휴식을 위해 1.5m×1.5m 이상의 휴게참(수평 참) 설치를 권장		
	· 경사로 및 계단과 같이 지면높이의 변화가 있는 곳과 방향전환구간에는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색상 또는 질감 차이의 적용을 권장		
	· 바닥의 표면은 우천 시에도 침수 및 물고임 현상을 방지하고,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투수성과 미끄럼방지 포장재를 적용하며, 줄눈이 있는 경우 5mm 이하로 평탄하게 마감		
	· 보행접근로의 최소 유효보도폭 1.8m 내에는 간판, 이동식 화분, 안내사인 등 불필요한 보행장애물의 설치를 금지		
	·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변 식재 및 시설물 등은 높이 2.5m 이내 돌출물 등 장애물이 없도록 계획		
	· 장애인의 이동을 고려하여 주출입문까지 연속적으로 안내하는 점자블록 및 음성매체 설치		
	· 보행접근로 초입 및 주출입구 주변에 진입안내 및 시설 종합안내판 등 정보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각매체의 통합 설치를 권장		
	· 주출입구는 자동 미닫이 출입문 설치를 권장하며, 미작동시를 대비해 보조 출입문의 설치를 권장하고 유리면 충돌 방지를 위한 주의환기용 표식을 시선 높이에 부착		
	· 주출입구 유효거리의 전면에 1.8m 이상 확보하며, 방풍실 설치 시에는 1.2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것을 권장		



이용자의 원활한 진입을 고려한 경사로 폭과 기울기 적용



주출입구 자동 미닫이 출입문 설치



유효 활동공간을 확보한 방풍실



공통중점사항

⑤ 모두가 편안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용공간 조성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서비스 이용공간	· 서비스이용공간은 장시간 대기 및 휴게공간으로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편안한 조명 연출과 도서 및 전시공간 등의 조성을 권장		
	· 유모차, 휠체어사용자를 포함한 보행약자가 걸림 없이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단차없이 수평접근이 가능한 장애 없는 공간을 조성		
	· 건물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 필요 시 전면·공개공지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공간 조성을 권장		
	· 로비 및 휴게공간 등의 서비스이용공간은 접근이 편한 1층 공간 배치를 권장하며, 불가능한 경우 해당공간으로의 유도사인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		
	· 편안한 대기를 위해 필요한 벤치, 쓰레기통, 정수기 등의 시설물을 충분히 배치하되, 실내 디자인과 조화될 수 있도록 구조, 색채, 재료 등 통합디자인 계획 권장		
	· 건축 규모와 관계없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안내데스크, 키오스크의 설치를 고려		
	· 종합안내사인, 바닥사인, 행잉(hanging)형 사인 등을 설치하여 각 공간에 대한 기능과 동선을 안내		
	· 다양한 사용자를 위해 픽토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영어 등 다국어 병기를 권장		
	· 시설의 주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고 명확한 서체를 사용하여 표기		
	· 안전 및 대피시설에 대한 인지가 잘 되도록 안전색채와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계획		



독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일관된 색채 및 재료의 시설물 통합디자인



참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국토교통부)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안내(행정안전부)

⑥ 다양한 이용자의 신체특성을 고려하여 이동공간 계획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이동공간	· 복도 등 통행구간 내 적치물 및 턱과 같은 보행 방해물의 설치를 지양		
	· 유모차나 휠체어의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끄럽지 않고 걷기 편한 바닥마감재를 선정		
	· 모든 복도는 휠체어나 유모차가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유효보도폭 1.5m 이상이 확보 되도록 계획하며, 통행량이 많은 복도는 상호 교행할 수 있도록 유효보도폭 1.8m 이상을 확보		
	· 모퉁이는 방향 전환이 원활하도록 모서리를 300mm 이상 사선 방향으로 설계하거나 둥글게 처리할 것을 권장		
	· 노약자, 장애인 이용자가 많은 시설의 경우, 복도 양쪽 벽면에 손잡이 설치를 권장		
	· 손잡이는 방화문 등의 설치 구간을 제외하고 기타 설비기구에 의해 단절되지 않도록 연속 하여 설치하며, 주변 벽면과 조화되는 저채도 색을 주조색으로 하고 시각적 혼란을 주지 않도록 과도한 색채 변화 및 패턴 적용을 지양		
	· 소화기 등의 소방설비는 벽면 매입을 권장하나, 불가피할 경우 유효보도폭 1.5m 이내 보행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배치		
	· 소화전 등의 소방설비를 벽면 매입한 경우, 벽면마감재와 유사한 색상으로 마감하고 주요 안전 정보 및 픽토그램은 안전색채를 적용하여 인지가 쉽도록 설치		
	· 휴식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설치 시, 유효보도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벽면을 활용하거나 벽면 매입된 형태를 권장		
	· 벽면을 활용하여 게시대 또는 이미지월 등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구조체 설치를 지양		
	· 계단은 안전한 이동 및 방향 전환이 쉽도록 직선 또는 꺾임형을 권장하며, 경사로는 방향 전환이 없는 직선형태를 권장		
	· 계단, 경사로의 유효보도폭은 1.5m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기울기는 1/18 이하로 설치		
	· 계단의 디딤판 또는 벽면을 활용하여 보행자 경로 및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표기를 권장하며, 바탕면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명도차를 두고 디자인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해 계단과 경사로를 병행 설치



벽면을 활용한 공간 인지 및 층별 정보 표기



공통중점사항

⑦ 차별없이 이용가능한 위생공간 마련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위생공간			
· 화장실 및 수유실 내부로 연결되는 통로 유효보도폭은 1m 이상으로 하며, 유모차나 휠체어의 원활한 동행을 위해 가급적 1.5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			
· 화장실의 출입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내부가 시각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영유아 동반이나 유모차의 출입을 위해 자동문 또는 적은 힘으로도 개폐하기 쉬운 미닫이문을 권장			
· 화장실의 출입구나 바닥면에는 단차가 없도록 하며, 출입구의 300mm 전면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 설치			
· 남녀용 화장실, 어린이 및 장애인 등 다목적화장실 등 구분이 쉬운 안내체계 계획			
· 안내체계 계획 시, 색약 장애인 및 저시력자도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인성이 확보되는 명도와 채도의 기준으로 색채 적용			
· 외국인 등을 위해 알기 쉽도록 픽토그램을 적극 활용			
· 영유아동반자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유장소나 기저귀교환 장소를 1개소 이상 설치할 것을 권장			
· 수유실은 가급적 독립된 실로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로비 등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			
·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전면 혹은 측면에 활동공간 1.5m×1.5m 이상을 확보			
· 남녀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설치하기 보다는 다목적화장실을 각 층별로 최소 1개소 이상 설치 권장			
·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화장실 내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호출장치를 설치			
· 노약자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 보행로, 세면대 등 신체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적재적소에 설치			



픽토그램, 다국어, 점자 등 다양한 표기방식 적용한 안내표지



영유아동반자를 배려한 수유실 설치



건축물 용도에 따라 다목적화장실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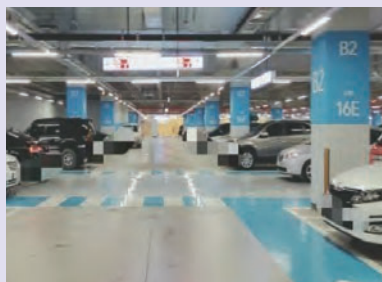
- 참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국토교통부)
 -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안내(행정안전부)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8 안전하고 인지하기 쉬운 주차공간 계획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주차공간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및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확보 비율은 인천광역시 조례를 따르며, 규정비율의 100% 초과 확보 권장		
	· 장애인이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건축물 출입구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설치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 또는 승강설비까지 차량의 간섭없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차도와 보행동선을 명확히 구분하며, 보행안전통로의 폭은 1.8m 이상으로 연속적으로 조성하고 양측에 시각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300mm 이상의 유도존을 설치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하여 폭 3.5m 이상, 길이 5m 이상을 권장		
	· 차량 측면에는 휠체어의 통행과 승강을 위해 폭 1.2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		
	· 바닥면에 단차가 없어야 하며, 물웅덩이가 생기지 않고 배수가 원활하도록 1/50 이하의 기울기 확보		
	· 주차장 출입구 안내사인은 도로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주차장 바닥면 또는 벽면에 색채나 패턴을 활용하여 주차영역과 위치가 명확히 인지될 수 있도록 디자인할 것을 권장		
	· 주차장 유도 및 안내표지판은 식재 등에 의해 운전자의 시선을 차단하지 않도록 시야 확보		
	· 주차구역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위치 및 경로에 대한 유도 및 안내표시는 주차장 출입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각각의 주차구역까지 유도할 수 있도록 주차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안내표지 등을 설치		
	· 주차구역의 바닥면에 픽토그램 적용 시 표준화된 규정에 따르며, 지면으로부터 높이 1.5m 위치에 입식 안내표지판도 설치		
	· 야간 이용을 고려해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 조명계획과 LED 조명기구를 적극 활용		
	· 방법 등에 대비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에 CCTV, 비상벨 등 방법 시설물을 설치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평탄한 보행안전통로 확보



주차장 위치 인지를 위한 색채디자인



표준화된 전용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



공통중점사항

⑨ 건축물과 시각적으로 통일된 실외부속물 및 실내시설물 설치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실외 부속물	· 옥상부 기계설비가 가로경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 옥상부 기계설비의 차폐를 위한 담장, 가림벽 등 시설 설비 시, 건물의 외벽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 및 색채를 적용		
	·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경우 건물 마감과 일체화된 건물일체형(BIPV) 방식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기타 구조체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 에어컨 실외기, 건물 분전함 등 부속 시설물은 외부로의 노출 및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방식을 지양		
	· 건물 설계 시, 에어컨 실외기, 건물 분전함 등에 대한 차폐 장치를 함께 설계하며, 차폐 장치는 과도한 부피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루버 또는 타공 형태를 권장하고 부착 위치의 입면 색채와 연속되게 하거나 저채도 색채 적용을 권장		
	· 송신탑, 빌보드형 홍보매체 등과 같은 부속물은 건물 입면 계획 시 배치, 구조 등을 통합적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		
실내 시설물	· 공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벽면, 바닥부의 색채와 재질 등은 초기 설계 시 통합적으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		
	· 편안하고 피로감이 적은 공간을 위하여 저채도의 유사조화배색으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		
	· 기성품을 사용하는 경우, 실내 입면과 기존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품을 선정하며, 지나치게 장식적인 형태나 고채도 색채의 제품 사용은 지양		
	· 기능성 위주의 단순한 형태로 디자인하며, 휠체어, 유모차의 이동이 가능한 최소 유효보도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구의 규모 및 배치를 계획		
	· 음수대, 쓰레기통 등 위생시설물의 경우, 매립형 가구로 설계할 것을 권장		
	· 수납함, 홍보게시대, 안내시설물 등은 색채 및 재료 등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통합디자인 계획을 권장		



건물과 유사한 형태 및 색채로 계획한 부속시설물 차폐 장치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을 차양형태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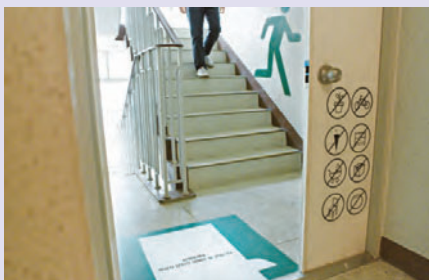


색채 및 재료 등을 통합적으로 디자인 한 실내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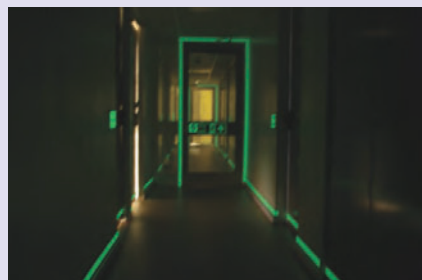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⑩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안전·구호시설물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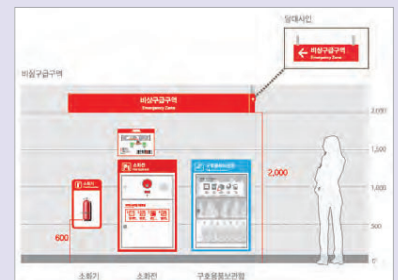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안전·구호 시설물	· 시설물 자체 또는 안내표기에 안전시설물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색, 녹색 등 방재·안전성을 의미하는 전용색채를 적용 ·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내·외 일정영역에 비상구급구역(Emergency Zone)을 지정하여 긴급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 · 가능한 건축 초기 설계 시 안전·구호시설의 위치를 선정 · 소화전과 같은 방재시설물의 경우, 커버의 마감은 설치 위치의 주변색과 조화를 고려하여 적용하되, 적색의 전용색채는 강조색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색채 배색을 계획 · 고풍택 금속재질의 사용은 지양하며,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을 할 것을 권장 ·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에 매입식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나, 부득이하게 돌출될 경우 주요 이동동선을 피해 배치하며, 보호커버 등으로 구조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할 것을 권장 · 안전·구호시설물 영역 내 다른 적치물이 쌓이지 않도록 바닥 또는 벽부에 적치 금지표지를 설치 · 관련시설물의 설치 영역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안내사인을 함께 설치 · 시설 입면에 시설명, 안전수칙, 사용법 등의 관련정보를 명시 · 직관적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 등 시각이미지, 픽토그램을 적용하며, 문자를 병기할 것을 권장 · 정보 전달 시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국어를 함께 병기 · 관련 픽토그램 적용 시, 국가 표준 픽토그램을 적용 · 야간 시 비상대피를 위한 조명시스템을 함께 설치할 것을 권장 · 비상소화장치함, 비상구급구역 등 소방안전장비 및 재난안전장비는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적용		



픽토그램을 활용한 비상구 표시



어두운 환경에 대피경로 안내를 위한 정보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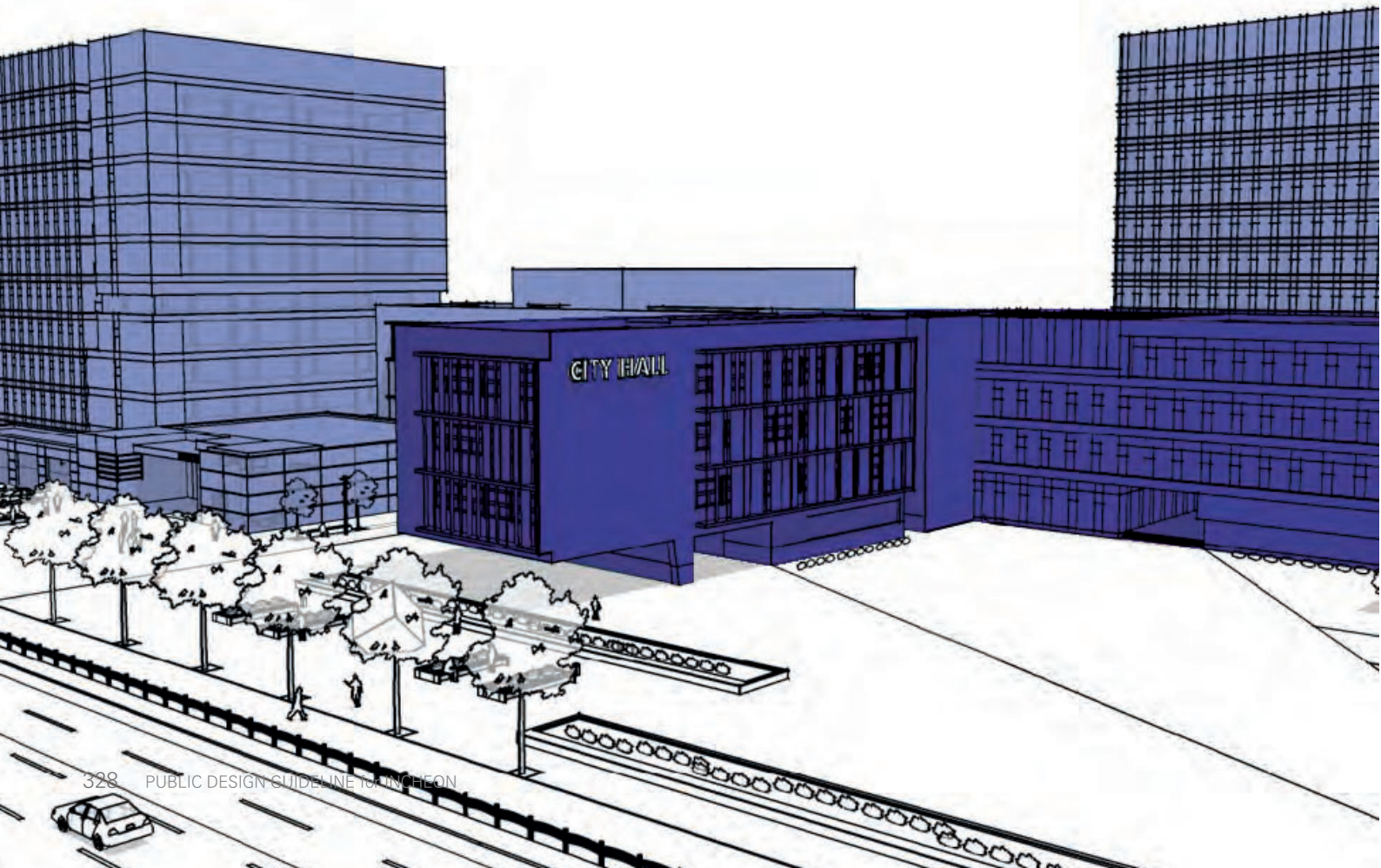
비상구급구역 표준디자인

A

공공건축

중점사항

- | | | |
|----|-----------------------------|---|
| 01 | 인지성을 고려한 특화계획하기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지하기 쉬운 입면
시인성을 고려한 표지물 및 안내시설물 계획 |
| 02 | 모두에게 열린 보행친화 공간 만들기 | 개방된 시야 확보
보차분리, 대지 전면부 보행중심공간 조성 |
| 03 |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안전공간 만들기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계획
개방성, 접근성을 고려한 안전시설물 설치 |
| 04 | 지속가능한 친환경 계획하기 | 에너지 절감 계획
경관과 조화되는 식재, 색채, 조명계획 |



세부구성

- 공공건축은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또는 규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출입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다수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거나 공공성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민간 소유의 건축물과 공공공간이다.
이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공건축의 유형을 행정·공공기반 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복지시설, 교통·진입시설, 환경·위생시설로 구분한다.
- 본 가이드라인은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공공건축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등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중요한 세부지침을 중심으로 다루며, 기타 세부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등 각 법률의 기준에 준한다.
- 가이드라인의 세부구성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분류코드	중분류	세부 구성		
4.A.1	행정·공공기반 시설			
4.A.2	교육·연구시설			
4.A.3	문화·복지시설	·대지	·건축물	·시설물
4.A.4	교통·진입시설			
4.A.5	환경·위생시설			

- 공공건축의 주요 용도 및 기능에 따라 5개 대상으로 세분화하며, 대지, 건축물, 시설물의 3개 요소로 각각의 지침을 제시한다.

- 1) 대지 : 집합적 경관 및 이용목적에 따른 공간적 지침
- 2) 건축물 : 건축물의 형태, 색채, 재료 등의 디자인 속성과 조경(식재), 야간경관 등에 대한 규정
- 3) 시설물 : 공공건축의 실내·외 공간에 배치되는 개별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지침

관련법규 및 문헌

건축법,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안내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A. 공공건축

4.A.1

행정·공공기반 시설

자치구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거나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및 그와 연계된 외부 공간을 통합하여 지칭

*시청 및 군·구청사,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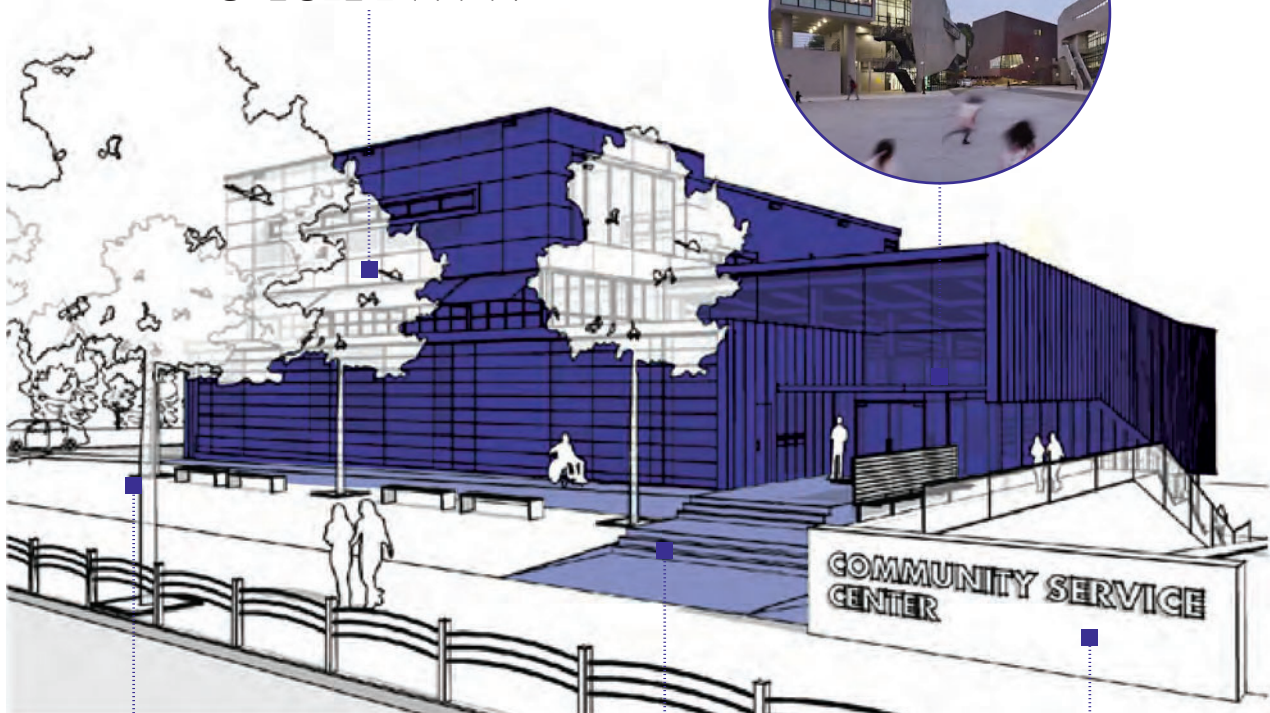
기본방향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

디자인 원칙

대칭적이고 위압적인 디자인 및 외장재료 사용 지양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설비계획 권장
사용자의 안전과 야간활동을 위한 조명계획

지역수요를 고려하여 특화용도를 도입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 마련
주민이용시설은 저층부에 배치하고
용도별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



보행로와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



방문한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전면부(출입구)에 특화디자인 적용

보행로와 연계된 열려있는 공간으로 조성
건축물 진입부는 무단차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
폐쇄적인 담장이나 식재 등의 설치를 지양하여 건물의 개방감 최대한 확보

참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국토교통부) /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안내(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대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대중교통 및 도보로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도록 계획			
· 건물 전면부는 주차공간 설치를 지양하며, 보행자 접근 중심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보행 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			
· 건물 전면부에 주차장 구획이 불가피한 경우, 바닥포장재 재질 및 색채 등에 차이를 두어 보행로와 완전하게 영역 구분			
· 주차장은 주출입구와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위치에 조성하고 공무원과 방문객의 주차공간을 분리하여 계획하는 것을 권장하며, 야간에도 주차장과 통로 등 조명의 조도를 유지하여 안전성을 확보			
· 대지 경계부는 높은 담장이나 과도한 식재를 지양하고 키 낮은 조경식재 등을 활용하여 개방된 시야를 확보 협소한 대지 내에 위치하는 경우, 경계부 식재 등의 설치를 지양			
· 보안상 대지 경계부에 담장이 필요한 경우, 보행환경의 시점에서 위압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재료 및 색채 등을 적용			
· 대지 내 여유 공간이 있을시 주민휴게를 위한 소규모 포켓공원 등의 조성을 권장			
· 보행로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			
· 장애물 없는 평평한 보행로를 조성하여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이용한 방문객의 접근성을 제고			



보행자 중심공간으로 쉽게 인지가능하도록 전면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_성북구청사)



주민휴게를 위한 소규모 휴게공간 조성
 (대한민국 공공건축상_헌법재판소 별관)

A. 공공건축

4.A.1

행정·공공기반 시설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건축물	· 인접대지의 건축물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반영하며, 권위적인 대칭적 디자인 및 위압적인 입면 디자인은 지양		
	· 역사문화 보전지역이나 도서지역 등 지역 특색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역은 지역성(아이덴티티)을 반영한 건축물 디자인을 권장		
	· 탄소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건축형태(패시브건축)를 고려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적극 고려한 다양한 설비계획 적용을 권장		
	· 행정의 입장보다 이용자의 편의를 우선시 하여 민원관련 업무시설의 위치 및 내부동선 등을 계획하고, 무장애(Barrier Free)설계를 통해 청사 내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이동성을 보장		
	· 가급적 위압적인 캐노피, 대형 홍보물, 계단식 출입구 설치를 지양		
	· 건축물 진입부는 단차가 없거나 되도록 낮은 단차로 하고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		
	· 보행약자의 이동 동선이 길지 않도록 내부공간을 구성		
	· 방문하는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전면부(출입구)에 특화디자인 적용을 권장		
	· 영유아동반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유모차 보관소는 접근하기 쉬운 1층에 설계		
	· 민원 및 공공서비스 공간 외에도 다양한 문화·복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 주민이용시설은 저층부에 배치하되, 용도별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		
	· 원도심 지역의 노후화된 시설 등은 적극적인 리모델링을 통하여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을 확충		
	· 기성시가지나 도시지역에 노후한 건축물의 외관을 정비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동일한 재료와 색채 계획을 적용		
	· 야간경관계획 시, 과도한 원색 및 현란한 빛의 움직임이 있는 조명 설치를 지양하며, 건축물 자체를 활용하여 절제된 빛의 경관조명을 권장		



권위적 디자인에서 벗어나 열린 소통의 공간 조성
(한국건축문화대상_국회소통관)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참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국토교통부) /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안내(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시설물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출입구에 과도한 홍보성 게시물 부착 및 그를 위한 시설물 배치를 지양			
· 행정안내 및 홍보를 위한 현수막 게시가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입면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게시			
· 자전거보관대, 주차부스, 안내표지판 등의 편의·안내시설물은 건축물 디자인과 융화되도록 통일성있게 통합디자인 계획			
· 대지가 협소한 경우, 안내게시판, CCTV, 조명 등의 부대시설물은 건축물에 매입 설치 또는 벽면 부착 등 통합하여 계획			
· 가로등, 벤치, 화단 등 연계 가능한 시설물은 일체형 디자인을 통해 통합적 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			
· 장애인, 노약자 등이 쉴 수 있는 벤치 및 공간을 충분히 설치하고 구조물 및 안내표지, 화장실 표지 등 정보의 가시성을 제고			
· 차량 진출입 동선과 보행동선이 간섭될 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볼라드 및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			
·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는 설비시설 노출을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노출이 될 경우 건축물 입면과 유사한 재료 또는 색채의 가림막을 설치			
· 야간 시 접근로, 휴게공간 등에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 단, 빛공해 방지를 위해 주변 여건에 따라 조도와 휘도 등을 반영하여 계획하고, 저전력 고효율 조명설비 사용을 권장			



설비시설 노출 최소화 및 입면과 조화되는 명칭안내표지



협소한 대지 내 건축물 전면부를 활용하여 휴게공간을 통합디자인

A. 공공건축

4.A.2

교육·연구시설

공중의 교육·연구 및 정보이용, 보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및 그와 연계된 외부공간을 통합적으로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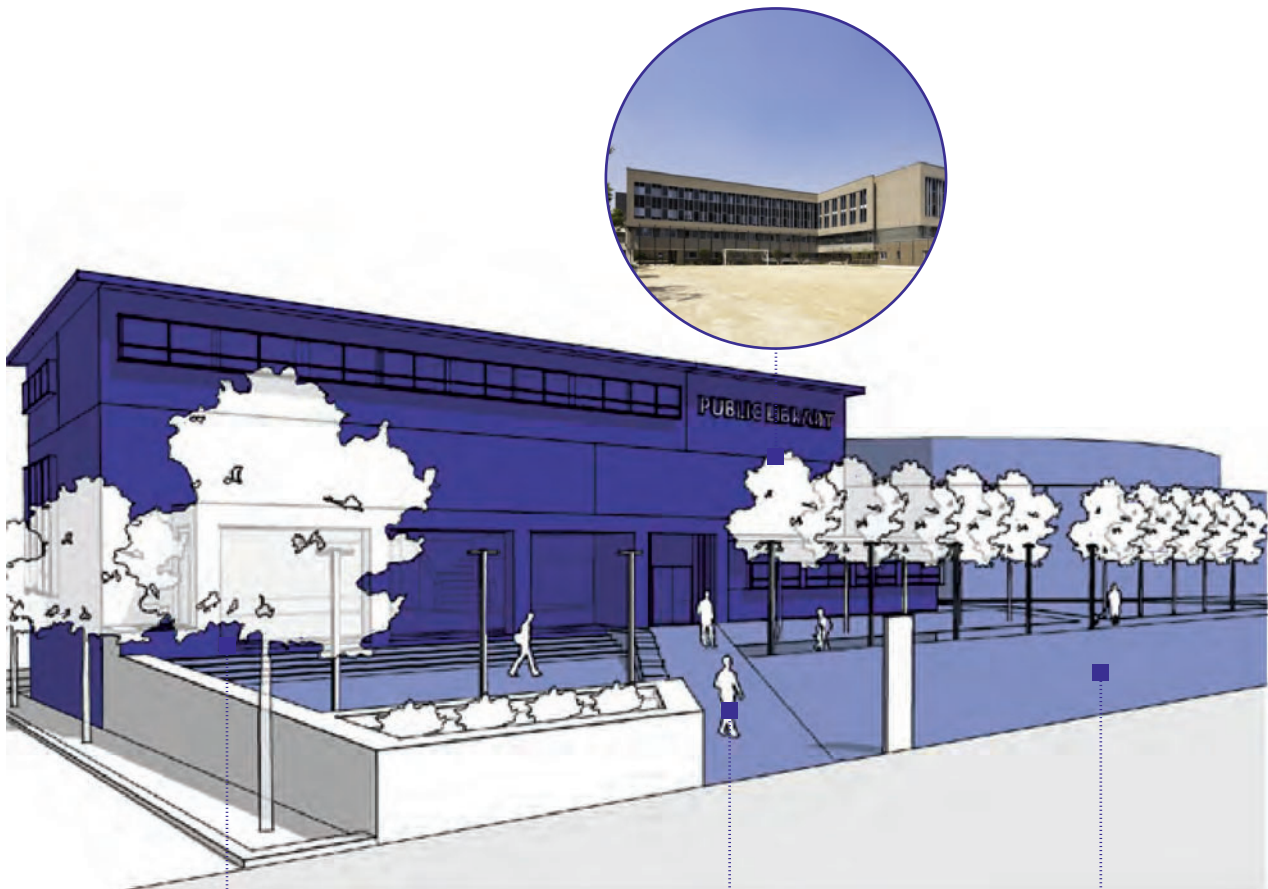
*공공도서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 구분

기본방향

다양한 이용계층을 고려한 서비스시설 및 안전한 공간 제공하기

디자인 원칙

목적, 이용계층,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차별화된 입면디자인 권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방음림(벽) 및 소음저감시설의 설치를 고려

시설 및 이용자의 성격에 따라
외부 놀이공간 및 편의·휴게시설
계획 권장



다양한 연령층의 안전한 접근을 위해 무장애 설계 적용 권장
어린이, 영유아 등이 이용하는 공간의 경우,
출입통제가 가능하도록 영역분리 및 시설 계획
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가 주로 통행하는 공간은
주 진입로에 인지성이 강한 주의표지를 계획

참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대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정숙을 요하는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로나 기타 소음유발시설 등으로부터 충분히 이격될 수 있도록 위치선정 및 배치계획을 고려			
· 일조가 원활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하며, 주변 건축물로 인해 공간적으로 차폐되지 않는 장소에 위치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			
· 교육시설의 경우, 교육연령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배치계획을 권장			
· 폐쇄형 담장 및 방음벽 설치를 지양하고, 주변부 소음차단 필요시 방음림과 부대건축물 배치 등 미관을 해치지 않는 대지경계부 계획을 권장			
· 주변 연접시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영역구분이 필요한 부분은 조경담장 및 안전난간 등을 적용			
· 전면공간은 개방된 시야 확보를 통해 안전한 보행접근이 가능하도록 열린 공간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			
· 어린이, 영유아 등의 보행자 이동동선과 차량동선은 가급적 분리 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차분리용펜스를 설치하여 보행안전성을 확보			
· 어린이 수송차량 승·하차장은 주출입구와 연결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차량 주차 및 운행 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방지			
· 주진입부는 보행약자 및 다양한 연령층의 안전한 접근을 위해 무장애(Barrier Free) 설계 적용을 권장			
· 옥외놀이 공간은 가급적 도로변에 연접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안전을 위한 난간 설치 및 조경계획 등으로 반드시 영역을 구분			



교육시설로써 창의적인 배치계획
 (한국건축문화대상_스머프마을학교 : 송산중학교 증축 프로젝트)



안전한 보행접근이 가능하도록 열린 공간으로 계획
 (한국건축문화대상_배곧도서관)

A. 공공건축

4.A.2

교육·연구시설

건축물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다양한 운영목적 및 주 이용계층, 주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건축물 디자인을 권장			
· 대규모의 단일 건축물보다 기능을 반영한 단위별 건축물 설계를 권장하고, 동별 연결성과 디자인 통일성을 고려하여 계획			
· 여러 동을 복합적으로 구성 시 후면공간 또는 위요 공간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방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외부공간을 계획			
· 실내·외 다양한 활동을 고려하여 건축물과 외부공간을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계획			
· 어린이 교육시설의 경우, 어린이의 정서적 발달을 위해 다양한 색채 사용과 입체적인 공간 구성을 권장			
· 인적동선과 물적동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구분하며, 이용자 동선의 편의성을 우선으로 하여 내부 공간을 계획			
· 주민편의를 위해 일부 공간을 개방 시 어린이, 영유아 등 주요 이용계층의 이용 공간과 영역을 분리하고 출입통제가 가능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			
· 건축물 내부 복도나 휴식공간은 이용자가 밀폐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밝고 넓은 면적의 개구부를 설치할 것을 권장			
· 공간 내부는 눈이 피로하지 않는 적정조도를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기구를 사용할 것을 권장			
· 어린이, 영유아 교육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해 각각의 보육환경을 계획하고, 내부공간의 출입문, 창문, 계단 등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			
· 공공도서관 등의 경우, 고도화된 공조 설비가 요구되는 보존서고 및 균일한 조도 확보가 필요한 열람실 등의 고에너지 사용에 대한 저감 대책으로 친환경 건축계획 및 고효율 설비 적용을 권장			



여러 동을 복합적으로 구성 시 외부공간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고려
(한국건축문화대상_스머프마을학교 : 송산중학교 증축 프로젝트)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실외활동 놀이공간으로 통합계획
(대한민국 공공건축상_마루돌 어린이집)

참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시설물	· 이용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 마감재 사용을 권장		
	· 도로와 접한 경계부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안전망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미관을 고려하여 재료 및 색채를 계획		
	· 관상용 조경 대신 비오톱 등의 생태조경을 조성하고, 내·외부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으로 적용하여 친환경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권장		
	· 주 진입로에 인지성이 강한 다양한 주의표지를 계획하여 보행안전성을 확보		
	· 외부와 연결되는 주출입구 주변의 공간은 우천 시를 고려하여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재료와 구조로 디자인하고, 출입구 상부는 캐노피를 설치할 것을 권장		
	· 어린이, 영유아 교육시설의 경우, 다양한 놀이 및 학습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풍성한 외부 놀이공간 및 시설물 계획을 권장하며, 외부 놀이공간은 영아와 유아의 신체적 차이 및 어린이 행동발달을 고려하여 가급적 개별 조성		
	· 외부 놀이공간에 설치되는 놀이 및 안전 기구 등은 아동들의 선호도가 높은 색채 사용 및 친환경 소재의 재료 사용을 권장		
	· 내·외부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설치 위치, 색채, 재질 등을 계획		
	· 안내시설물 설치 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서체의 크기, 색채 및 픽토그램의 적용 등을 결정할 것을 권장		
	· 내·외부 안내표지는 복잡한 동선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등을 활용하여 단순명료하게 디자인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명칭안내표지
 (한국건축문화대상_부암어린이집 / 매곡도서관)



아동이 선호하는 색채를 사용한 외부 놀이공간 계획
 (한국건축문화대상_부암어린이집)

A. 공공건축

4.A.3

문화·복지시설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간 및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공간을 통합적으로 지칭

*노인·여성·장애인복지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공연·예술회관, 체육·관광시설 등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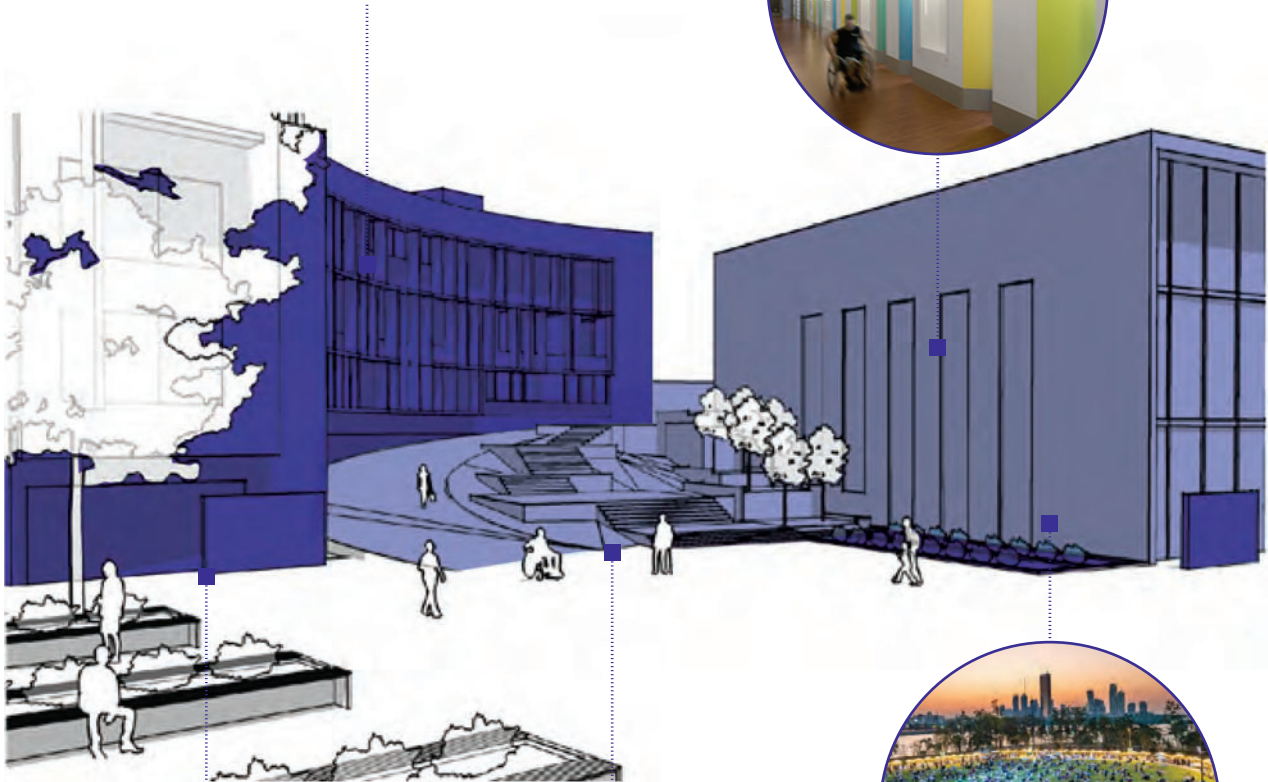
기본방향

다양한 문화·복지활동을 수용하는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하기

디자인 원칙

다양한 이용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자연채광을 적극 활용
어린이, 영유아동반자의 편의를 위한 수유실, 전용휴게실 등 계획
로비 등의 대공간은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계획
시설 내 모든 시설물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친근하고 밝은 이미지의
입면 및 내부디자인 계획 권장
시설의 정체성과 심미성을 강조할 수 있는
야간경관계획 권장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독성 높고
정보전달이 원활하도록
건물 내·외부 안내시설물 설치

진입공간을 비롯한 건물 내 모든
이동공간에 무장애 설계 적극 권장
대지경계부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담장이나 울타리 설치 지양
건축물 외부공간과 공공공간을
연계하여 통합적 계획 수립

다양한 옥외활동 지원을 위한
체육시설 및 휴게·편의공간 계획 권장
위급상황 시 피난시설 고려
CCTV, 야간조명계획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참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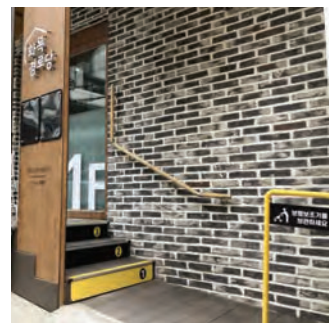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대지 내 보행도로는 차량동선과 분리하고, 휠체어 및 유모차 등의 원활한 통행이 가능한 가로 폭이 확보된 단차 없는 진입도로로 계획			
·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과 보행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진입광장 또는 주출입구를 배치			
· 노약자, 장애인 등의 복지시설인 경우, 이용자의 보행속도와 이동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행 진입부를 계획			
· 주차장은 되도록 건축물의 측·후면에 배치하여, 진입광장의 개방성과 안전성을 확보			
· 주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장애인 주차장 및 임산부 전용 주차장, 배려주차장 등을 계획하며,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단차없는 통로 조성			
· 건축물 전면부의 주차장 설치를 지양하되, 대형버스 및 응급시설 등의 승하차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축물 주출입구의 Drop-Off-Zone(차량대기장소) 계획을 권장			
· 진입광장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객 인원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를 계획			
· 보행 및 자전거 등의 환경친화적 접근 동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와의 적극적인 동선연계 계획을 권장			
· 대지 내 모든 보행공간은 장애물 없는 평평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보행로를 조성하여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이용한 방문객의 접근성을 제고			
· 대지경계부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폐쇄적인 담장이나 울타리, 과도한 식재 등의 설치를 지양			
· 전면공지 및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및 이용자를 위한 휴게공간, 소공원, 체육 시설, 외부전시 등의 다양한 옥외공간 조성을 권장			
· 광장, 공원 등 공공공간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경우, 건축물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계획			



개방된 진출입부 및 단차없는 보행로 확보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이 용이한 보행로 조성



A. 공공건축

4.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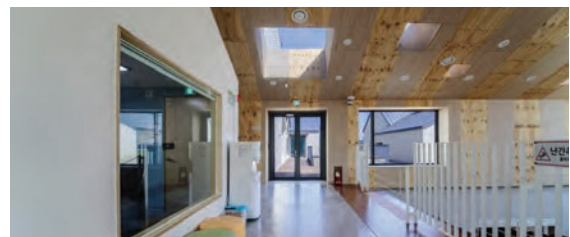
문화·복지시설

건축물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시설의 기능적 형태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지성이 강한 입면 디자인 및 색채계획을 권장하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			
· 대규모 건축물이 갖는 위압감을 최소화하고, 친근하고 개방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계획			
· 시설의 특성에 따라 활동공간, 대기공간, 사무공간 등 기능별 영역구분을 합리적으로 계획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들의 이동편의성을 고려하여 진입공간을 비롯한 모든 이동공간에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를 권장하며, 이동통로를 최소 1.5m 이상 확보			
· 많은 인원을 동시에 수용하는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화재 등의 재난 시 피난동선을 고려한 안전공간을 계획하며, 주요 피난동선은 짧고 명료하게 계획			
· 화재 시 이용자의 피난시간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내·외장재는 최대한 연소로부터 안전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 ※ 화재안전 관련하여, 실내마감재료는 해당법령에 근거하여 기준 성능 이상의 재료를 사용			
· 건축물 저층부는 외부공간과 통합적으로 계획하며, 휴게 및 편의시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에 따라 로비 등은 지역민을 위한 문화복합공간 조성을 권장			
· 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응급의료처치가 가능한 의무시설 계획을 권장			
· 어린이 및 영유아동반자의 편의를 위해 유모차 보관소는 접근하기 쉬운 1층에 설계하며, 수유실, 전용휴게실 등의 계획을 권장			
· 다양한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공간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채광 도입			
· 계단은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등에게 불안과 공포감을 주는 위험지대 형성을 막기 위해 투명하고 밝게 설계하며, 고립된 공간이 없는 개방된 공간을 조성			
· 공연, 체육시설의 경우,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여 주변지역에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방음설계를 적용			
· 시설이용자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쾌적한 실내공기의 질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공조 계획을 수립			
· 건축물 벽면부 및 외부공간 식재부에 간접 조명방식을 통해 시설물 및 공간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은은한 분위기의 야간경관을 연출			



위압감을 최소화하고 개방적인 공간 조성
(대한민국 공공건축상_영주시 노인복지관)



공간의 활력을 도모하는 자연채광 설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_칠보 청소년 문화의 집)

- 참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시설물			
· 다양한 이용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내·외부 시설물은 안전을 고려한 재료 선정 및 형태 디자인, 배치계획 수립			
· 이용자의 생체적 안전을 위해 각종 설치 시설물의 재료는 유해요소가 없는 친환경인증 획득 자재 사용을 권장			
· 시설물은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의 연속적 배치를 권장하며, 이동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도 접근가능하도록 설치			
· 건축물 내·외부에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벤치 등 휴게시설물을 통일성 있게 배치			
· 옥외휴게 및 조경공간은 정적인 미술장식품 설치를 지양하고, 시설 이용자가 직접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물 설치, 친환경생태조경시설 계획을 권장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등을 배려한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며, 필요 시 엘리베이터 내 벤치 설치를 권장			
· 시설의 내·외부에 설치되는 안내표지판 및 기타시설물의 도안 및 형태, 색채는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통합디자인 계획을 권장			
· 안내표지판은 노약자, 장애인 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명료하게 구성하며, 가독성 높은 도안 및 글자 크기, 색채, 설치 위치 등을 계획			
·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다국어 정보표기를 병기하고 픽토그램의 사용을 확대			
· 위급상황 시 피난시설로써 기능을 고려하여 야간조명계획 및 CCTV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			
· 각종 보안 및 관리시설물의 설치 시 가능한 외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부득이하게 노출될 시 저명도, 저채도의 색채 적용 또는 건축물 입면과 유사한 색채 및 재료의 가림막 설치			
· 야간에 방향 및 접근성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조명을 계획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
 (한국건축문화대상_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야간 접근성을 지원하는 조명계획
 (한국건축문화대상_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A. 공공건축

4.A.4

교통·진입시설

도시 내 외부를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시설(공항, 항만, 역사 등)의 진출입 공간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이용이 예상되는 공적인 외부 공간(건물의 주출입구, 터미널, 정류장 등)을 통합적으로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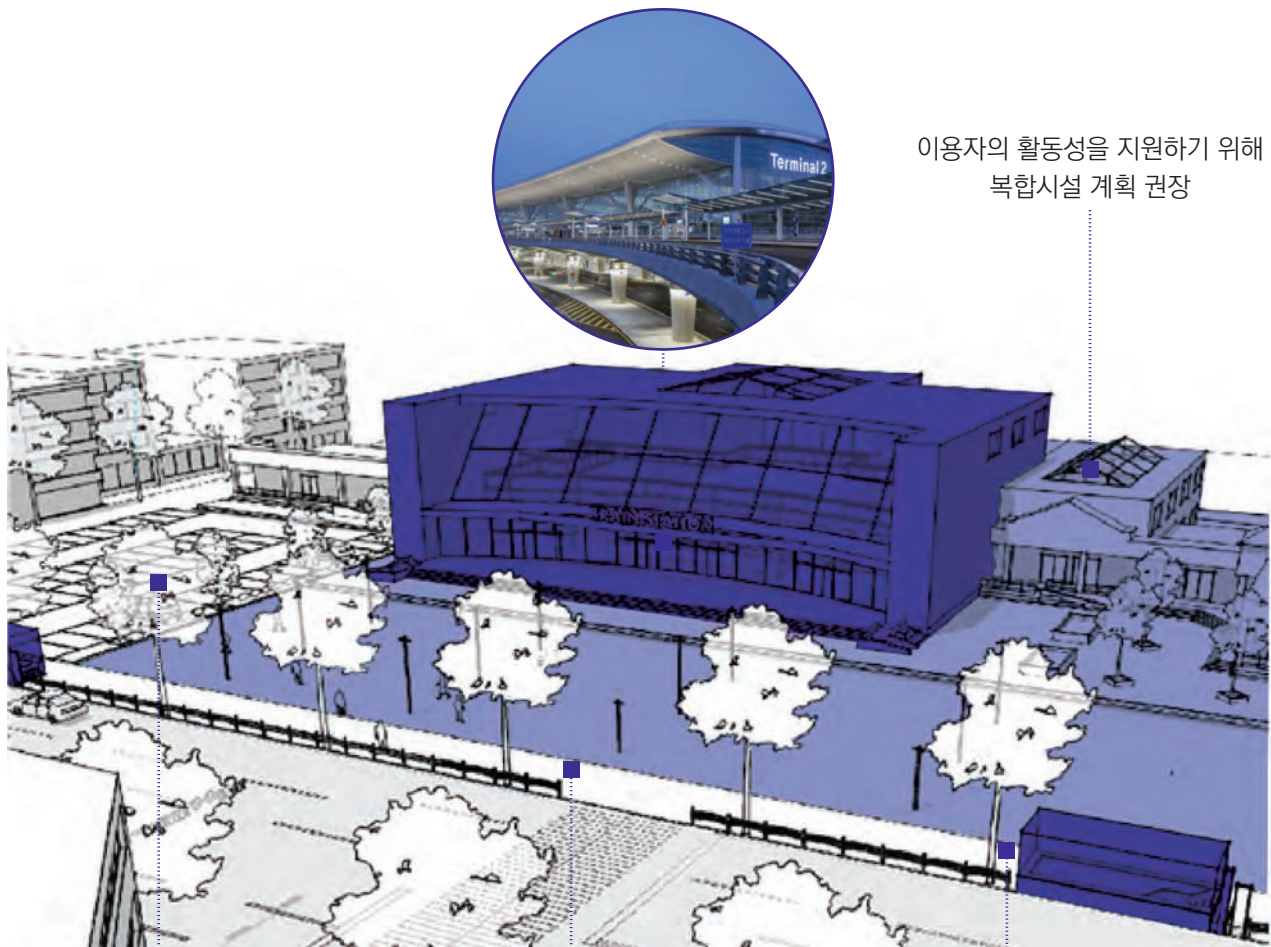
*버스터미널, 항만, 공항, 철도역사, 지하철역 등으로 구분

기본방향

다양한 이용자가 쉽게 인지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조성하기

디자인 원칙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입면계획
지역 특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색채 및 재료 사용 권장
대규모 시설의 특징을 활용한 친환경설계의 도입 권장



이용자의 활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복합시설 계획 권장

규모를 고려하여
찾기 쉬운 주차공간 조성 및
안전시설 확보 권장

다양한 교통수단의 이용이 가능한
개방된 진입공간 디자인
안전한 보행 및 차량의 이동을 위해
안전시설물 및 도로표지 등을
가시성 높게 계획



대중교통과 연계한 교통광장 설치 권장
야간조명시설 및 CCTV 등의 방범시설물 설치 계획

참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대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멀리서도 방문자가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주변의 건축물이나 장애물로 인해 해당 시설이 시각적으로 차폐되지 않는 장소에 위치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계획하고, 입구 및 출구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 이용자의 진출입 동선을 계획			
· 대기실에서 교통·진입시설의 승·하차 시 승객동선과 화물동선을 분리			
· 시설의 차량접근동선 계획 시 커브사이드는 대중교통(버스, 택시) 전용차로로 계획하고, 일반차량은 주차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			
· 주차장은 보행접근성 향상을 위해 가급적 교통·진입시설 측·후면에 배치할 것을 권장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차공간을 포함하여 적절한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			
· 대중교통수단, 자가용, 자전거, 보행 등 다양한 수단의 접근이 용이한 접근동선계획을 권장			
· 시설과 연결되는 다양한 대중교통의 환승도로 연결 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동선계획이 되도록 하며, 무빙워크 등의 이동편의성을 위한 시설 설치를 권장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대중교통과 연계한 교통광장을 설치하며, 보행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방된 공간 계획을 권장			
· 차량 진출입부는 대지주변 교통현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주변지역의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 건축물 전면부에 Drop-off zone 및 교통광장 등의 설치 시 안전한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안전시설물 및 도로표지 등은 가시성 높게 계획			
·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보안을 위해 경계부의 담장이 필요한 경우,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색채 및 재료 등을 계획하며, 투시형 울타리 또는 생울타리 등의 설치를 권장			



대중교통전용차로, 일반차량 접근동선을 분리한 커브사이드 계획
 (한국건축문화대상_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방된 공간 내 대중교통과 연계한 환승시설

A. 공공건축

4.A.4

교통·진입시설

건축물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도시를 대표하는 게이트웨이(Gateway)시설로써 건축물은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입면계획을 권장			
·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지역성을 고려해 건축물의 배치, 형태, 재료 등을 계획할 것을 권장			
· 대규모 시설의 특성을 활용한 친환경 설계*의 도입을 권장 *건축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 해안 주변에 시설 계획 시, 해풍에 의한 부식 등을 고려한 내식성 입면 재료 사용을 권장			
· 항만, 공항 등의 시설은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 확보를 위해 멀리서도 인지가 가능하도록 상층부 강조 색채는 고채도를 적용			
· 시설 이용자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상업 등의 복합시설 계획을 권장하고, 충분한 휴게공간을 조성			
·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를 권장하며, 보행공간은 바닥면의 단차가 없게 설계			
· 로비공간은 개방적이고 안전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밝은 조도 유지를 권장			
· 응급상황 발생을 고려하여 비상동선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차량의 접근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계할 것을 권장			
· 노약자 및 영유아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수유실, 전용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			
· 항만, 공항 등의 경우, 세관, 출입국, 검역(CIQ) 기능을 고려한 명확한 동선계획으로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			
· 터미널 등 내부의 체크인 홀(Check-in Hall) 및 콘코스(Concourse)공간은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적정규모로 계획하고, 방문객의 인상에 남는 상징적인 디자인을 권장			
· 버스터미널 등 승차장은 차량의 배기오염을 고려하여 개방형의 외부승차장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강제 환기설비 계획을 적용			



관문으로써 특색있는 입면계획 및 복합시설 계획
(한국건축문화대상_울산 KTX 주차복합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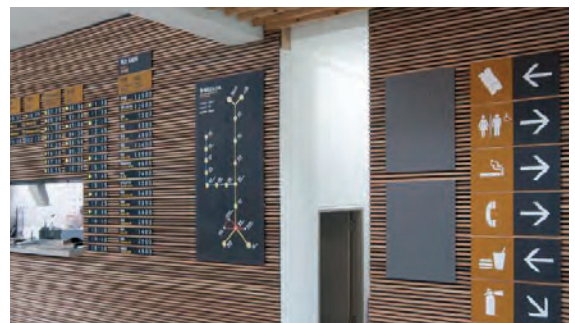
명확한 동선 안내 및 밝은 조도 유지
(한국건축문화대상_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 참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시설물	· 출입구 상부에는 우천 시를 고려하여 캐노피를 설치할 것을 권장		
	· 여러 개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붕이 있는 간결한 형태의 보행공간으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		
	· 안내표지판 및 기타시설물의 도안 및 형태, 색채는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통합디자인 계획을 권장하며,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위주로 단순하고 명료하게 디자인		
	· 가로의 환경 개선과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출입구에 야간조명 시설물을 설치		
	· 시설 내의 공공광장이나 조경공간에 설치되는 벤치나 파고라 등은 야간에 범죄예방을 위해 가로등, 보안등과 일체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 주·야간 개방되는 시설 내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CCTV, 비상벨 등 방범시설물 설치를 계획		
	· 휴지통, 엘리베이터는 테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개방감 있는 재료 및 구조를 적용할 것을 권장		
	· 응급상황 발생을 고려하여 소방안전 및 피난·구호 등 응급시설물 등은 표준화된 디자인으로 설치		
	· 내·외부에 설치되는 각종 안전시설물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서체의 크기, 색채 및 픽토그램의 적용 등을 결정할 것을 권장		
	· 시설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미디어폴 등의 설치를 권장		
	· 항만, 공항 등은 외국인 방문객을 고려하여 국제통화가 가능한 국제통화겸용전화기를 설치하고, 방문객이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과 출력이 가능한 정보검색코너를 마련할 것을 권장		



진입공간 등 상부 캐노피 설치



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안내표지판 통합디자인

A. 공공건축

4.A.5

환경·위생시설

각종 공해를 줄이고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반 시설 및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위생시설을 통합하여 지칭

*상하수도시설,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으로 구분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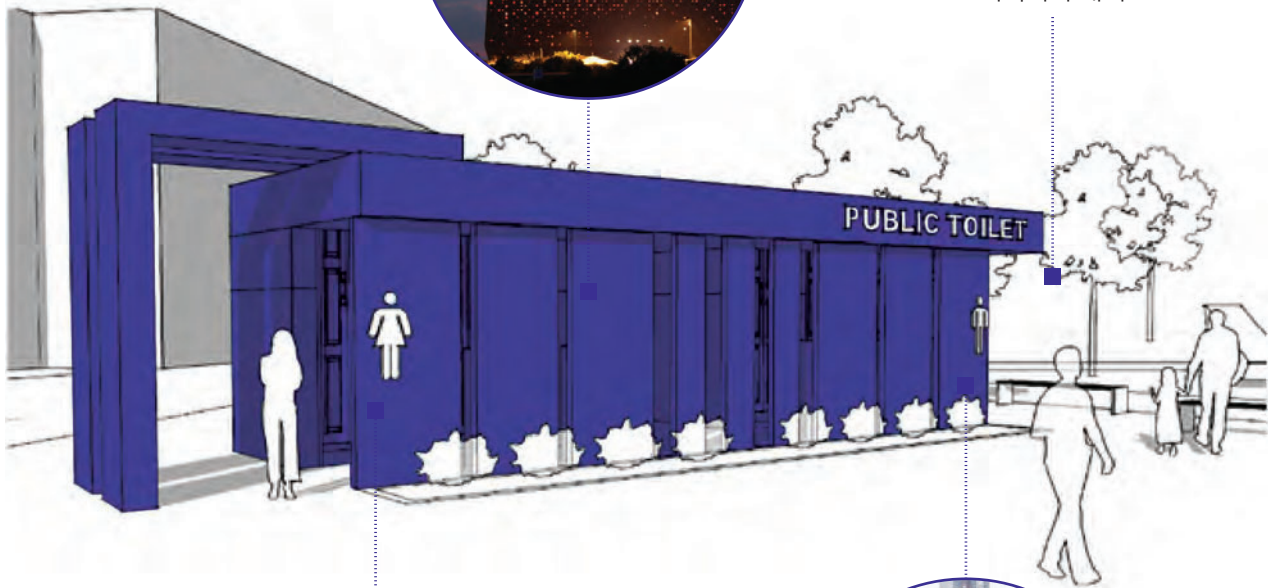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되는 시설 만들기

디자인 원칙

입면 마감재는 천연재료 사용을 권장
건축물 구조의 형태적 조형미와 재료적 특성을 이용하여 디자인
과도한 장식 및 슈퍼그래픽, 고채도의 색채 도색 등 지양
야간경관계획 시, 건축물 자체를 활용하여 절제된 빛의 경관조명 권장



외부로부터 시각적 차단이 가능하도록
가로수, 완충녹지, 조경 공간 등을 활용하여 계획
시설의 경계부는 일정 거리
이격시켜 배치



위생시설의 경우, 이용자가 쉽게 시설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가설형태 건물은 지양
시설을 쉽게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간결한 픽토그램 등을 사용



키 낮은 조경식재 등을 활용하여 개방적인 녹지공간을 조성
이용자 사용안전을 위해 방범시설물 설치 권장
건축물 미관을 해치는 설비시설 노출 금지

참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대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위생시설의 경우, 이용자가 쉽게 시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주변의 차폐물이 없는 개방적인 공간에 설치			
· 공중화장실의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되, 가설 형태의 건축물은 지양			
· 환경시설의 경우, 먼거리에서도 시각적으로 시설을 차폐시킬 수 있도록 인접 도로의 가로수나 완충녹지, 조경 공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			
· 환경·위생시설의 경계부는 일정 거리를 이격시켜 배치			
· 친환경적인 공간이미지를 위해 대지 경계부는 잔디, 관목 등 키 낮은 조경식재 등을 활용하여 개방적인 녹지공간을 조성			
· 보안상 대지 경계부에 담장이 필요한 경우 폐쇄적인 담장 설치를 지양하고, 투시성이 높은 울타리 또는 관목·교목을 이용한 생울타리, 경계 녹지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			
· 장애물 없는 평평한 보행로를 조성하여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이용한 방문객의 접근성을 제고			



개방된 녹지공간에 공중화장실 설치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문화·체육시설을 활용하여 복합화 조성
(국토도시디자인대전_용인 아르피아)

A. 공공건축

4.A.5

환경·위생시설

건축물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시설의 기능적 특성을 활용하여 건축물 구조미를 부각하되, 주변 경관 및 건축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고려			
· 입면 마감재는 천연재료의 사용을 권장하고, 재료 고유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형태적 특성과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디자인할 것을 권장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디자인을 입면에 적용 시, 과도한 장식 및 슈퍼그래픽, 고채도의 색채 도색 등은 지양			
· 대규모 굴뚝의 설치를 지양하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고도화된 기술력(열분해 용융 방식 등)을 활용하여 규모를 최소화하고 굴뚝 자체의 형태적 조형미와 재료적 특성을 이용하여 디자인할 것을 권장			
· 주·야간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개방적인 공간 구조로 계획			
· 공중화장실의 경우, 화장실 출입구는 남·녀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고, 외부로부터의 시각적 차단이 가능하도록 계획			
· 야간경관계획 시, 과도한 원색 및 현란한 빛의 움직임이 있는 조명 설치를 지양하며, 건축물 자체를 활용하여 절제된 빛의 경관조명을 권장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자원회수시설의 입면 색채 및 그래픽 적용



건축물을 활용하여 절제된 빛의 야간경관 연출

참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시설물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건축물 벽면에 상업 목적의 현수막 등 홍보·광고물 부착을 지양			
· 공공목적의 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지정 장소에 광고물 게시대를 별도로 마련하여 규격화 시켜 설치			
· 안내표지판 및 기타시설물의 도안 및 형태, 색채는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통합디자인 계획을 권장			
· 이용자가 시설물을 쉽게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등의 간결하고 명료한 디자인을 권장			
· 이용자의 사용안전을 위해 비상벨, 야간조명, CCTV 등의 방범시설물 설치를 권장			
· 공중화장실의 경우 장애인, 노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176p)] 참고			
·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는 설비시설 노출을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노출이 될 경우 건축물 입면과 유사한 재료 또는 색채의 가림막을 설치			
기타			
· 각종 환경시설이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기피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단순히 시각적 외관디자인 개선보다는 시설 지하화 등 근본적인 시설 이용 및 해결방안 모색 권장			



이용자 사용안전을 위해 야간조명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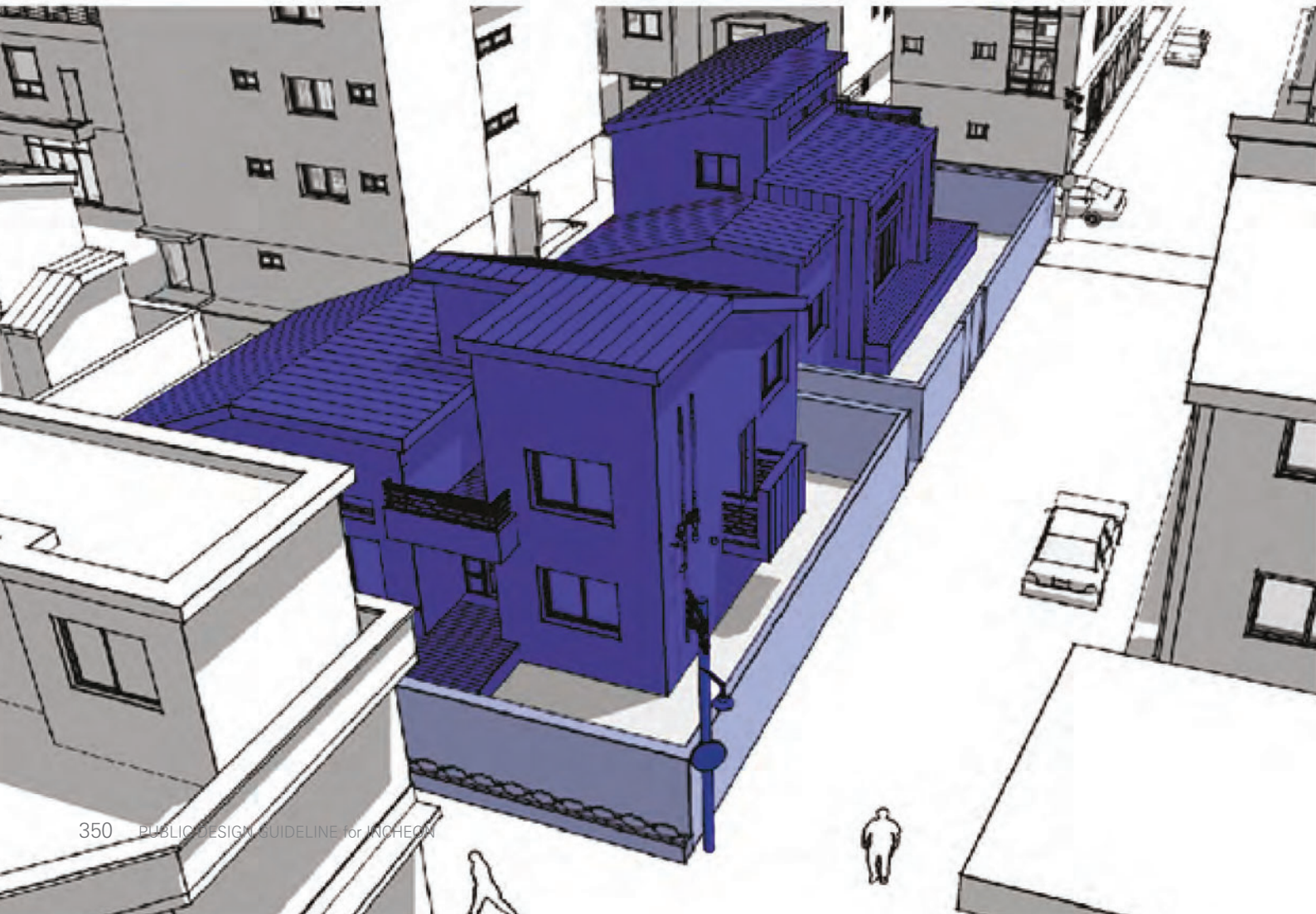
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한 공중화장실 안내표지

B

민간건축

중점사항

- | | | |
|----|-------------|---|
| 01 | 자연적 감시 강화하기 | 사각지대 제거로 가시권 최대화
투시형 디자인 및 개방된 공간 적용 |
| 02 | 쾌적한 공공공간만들기 | 일탈행동 심리경감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한 이용자 중심 디자인 |
| 03 | 영역성 강화하기 | 사적 영역 침범 부담 경감
가로경관의 연속성 확보 |



세부구성

- 민간건축은 용도에 따라 크게 주거지와 비주거지로 구분한다.
주거지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살아가는 일단의 정주환경 중에서 거주민의 안전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공공적 성격을 내포하는 주 출입로 및 주요 경계부 등으로 공간범위를 한정하며, 세부 유형으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가 및 폐가 등이 있다.
비주거지는 주거를 제외한 다양한 도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또는 특정 규모의 단지 등의 공간을 지칭하며, 복합상가, 전통시장, 산업단지 등으로 세분화한다.

- 가이드라인의 세부구성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분류코드	중분류	세부 구성		
4.B.1	공동주택			
4.B.2	단독주택			
4.B.3	공가 및 폐가	·대지	·건축물	·시설물
4.B.4	복합상가			
4.B.5	전통시장			
4.B.6	산업단지			

- 민간건축의 주요 용도 및 기능에 따라 6개 대상으로 세분화하며, 대지, 건축물, 시설물의 3개 요소로 각각의 지침을 제시한다.

- 1) 대지 : 집합적 경관 및 이용목적에 따른 공간적 지침
- 2) 건축물 : 건축물의 형태, 색채, 재료 등의 디자인 속성과 조경(식재), 야간경관 등에 대한 규정
- 3) 시설물 : 민간건축의 실내·외 공간에 배치되는 개별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지침

관련법규 및 문헌

건축법, 시행령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 전통시장 활성화 가이드라인

B. 민간건축

4.B.1

공동주택

벽·복도·계단·그 밖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기본방향

도시 경관과의 조화 속에 다양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하기

디자인 원칙

시야를 방해하는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경계부, 주민공동시설 및 지하주차장 등 자연감시 강화



차량 출입구와 보행공간의 교차부는
완충공간, 과속방지턱, 시각정보디자인 등으로 보행안전 확보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대지	· 공동주택과 공공공간 경계부에 시야를 방해하는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보행자의 편의를 위한 휴게공간 계획 등을 권장			
	· 공동주택과 공공공간 경계부에 은닉공간 발생을 초래하는 과도한 담장은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투시형 울타리나 생태울타리를 설치			
	· 차량출입구와 공공 보행공간의 교차부는 충분한 완충공간, 과속방지턱, 시각정보디자인 등으로 보행안전을 확보			
건축물	· 공동주택 및 주택단지는 인접주택 및 단지 그리고 동일 주택과 주택단지 안에서 주택의 형태나 단지의 환경이 획일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및 환경조성을 권장			
	· 주택은 채광 일조 및 환기 등을 위하여 거실과 침실의 창(거실과 침실에 딸린 발코니 포함) 이 각 하나 이상 외부와 면하도록 설계			
	· 지하주차장 내 자연채광과 시야 확보가 용이하도록 썬큰(Sunken), 천창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			
	· 주민공동시설과 지하주차장을 연계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의 통행을 통해서도 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야 확보가 가능한 유리창 등을 사용			
	· 주동 및 옥탑디자인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			
	· 주민의 양호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빗공해를 유발하는 과도한 야간조명설치는 지양			
	· 단지의 후면부 또는 보행빈도가 낮은 경계부 등 사각지대 발생우려가 높은 공간은 조명 시설과 비상벨, CCTV 등의 방범시설 설치를 권장			
시설물	· 주택단지 안에 별개의 동으로 설치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지붕의 형태를 다양하게 하여 주변의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			
	· 경비실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의 감시 및 조망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경비실 주변부에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시설물 설치			
	· 외부와의 경계부나 출입구는 공간의 성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치 정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색채, 재료, 조명 등을 계획			



충분한 완충공간 및 통일성 있는 공공공간 경계부
(한국건축문화대상_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외부로의 감시 및 조망이 원활하도록 계획
(한국건축문화대상_구기동 125-1 공동주택)



다양한 형태의 단지환경 조성
(한국건축문화대상_힐스테이트 광고 주상복합)

B. 민간건축

4.B.1

공동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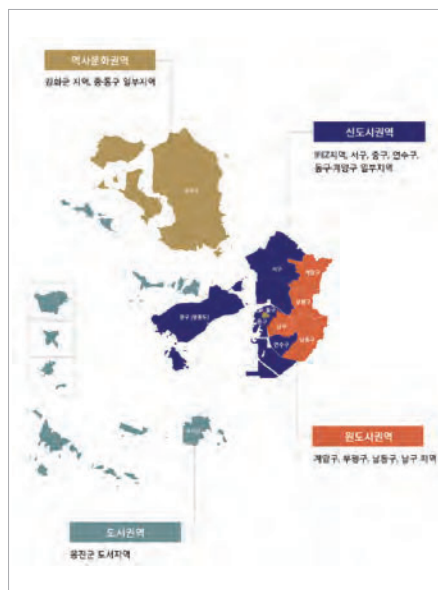
기타

-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에 따라 주변에 인접한 자연 경관, 주거·상업경관 등 권역별 특성 및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물 입면의 색채 및 재료를 계획
- 상위계획 및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권역별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재료 및 색채 등을 다양화하여 획일적이지 않은 경관으로 조성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색채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천상징색, 인천환경대표색, 인천 권역색, 인천공공시설물색 등 일관된 기준의 색채디자인 적용 · 인천권역색은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을 바탕으로 신도시권역, 원도시권역, 역사문화권역, 도서권역의 총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주요, 보조, 강조, 특화 강조색으로 이루어진 색채 · 권역별 해당되는 세부 지역에 따라 색채 적용 범위를 설정하고 주요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색채팔레트를 제시하며, 권장배색안과 배색방식 제공 · 건축물 유형에 따라 색채 적용 예시안을 참고하여 색채계획 수립 ※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참고		



인천색 체계



인천 권역분류 및 인천권역색

권역	주요지역	범위
신도시권역 ICC - 신주1	인천시의 상징적 도시경관 연출·관리 부림지역, 서구, 중구, 연수구 지역, 동구계양구 일부지역	자율롭고 활기찬 색채 현대적이고 모던한 색채 다양성, 역동적인 색채
원도시권역 ICC - 원주1	장소·자원 중심의 지역재생 유도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남구 지역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는 따뜻하고 정돈된 색채
역사문화권역 ICC - 역주1	중요역사·문화자산의 보전과 가치 재창조 강화동 지역, 중동구 일부지역	지역적 특색이 살아있는 고상하며 품격있는 전통적인 색채
도서권역 ICC - 도주1	도서지역 고유자원 발굴을 통한 정체성 형성 용인군 도서지역	여유로우며 내추럴한 친환경적인 색채 수변경관과 어울리는 청량감이 있는 색채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상층부 강조색 적용
(한국건축문화대상_서울 오류동 행복주택)



톤온톤의 유사색 배색 적용
(한국건축문화대상_세종 힐스테이트)



저층부에 무채색 계열 색채를 일관되게 적용하여 시설물 간의 통일성 확보
(한국건축문화대상_청라파크 자이 디테라스)



강조색으로 다양한 지붕 높이를 강조하여 리듬감 형성
(한국건축문화대상_세종 중흥S-클래스 센텀시티 2-1생활권 M2, L2블록)

신도시밀집형 혹은 색채팔레트									
중도색 영역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강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권역별 세부 지역의 색채팔레트(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색채 적용 범위)

권장배색									
1. 세로 및 권장배색									
강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강조색	보조색

권장배색안 및 배색방식

유형별 내용									
중도색									
- 도면하고 직관한 신도시 권역의 분위기 연출을 위해 무채색 계열의 색상 적용									
- 수직적 구조로 인한 위험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각선과 평행한 패턴의 색채를 도입									
- 동행과 유사성에 의한 색상변화를 연출함으로써 안정감을 주는 색채 연출									
- 강조색을 적용하여 건축감을 부각시키는 변 - 선적 요소 적용									
- 역전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각적 분리를 유도하여 대각선과 평행한 패턴의 색채를 도입									
- 역전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각적 분리를 유도하여 대각선과 평행한 패턴의 색채를 도입									
- 역전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각적 분리를 유도하여 대각선과 평행한 패턴의 색채를 도입									
- 역전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각적 분리를 유도하여 대각선과 평행한 패턴의 색채를 도입									

건축물 유형에 따른 색채 적용 예시안(소재별 가이드라인 참고)

B. 민간건축

4.B.2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주택을 의미하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로써 단독주택은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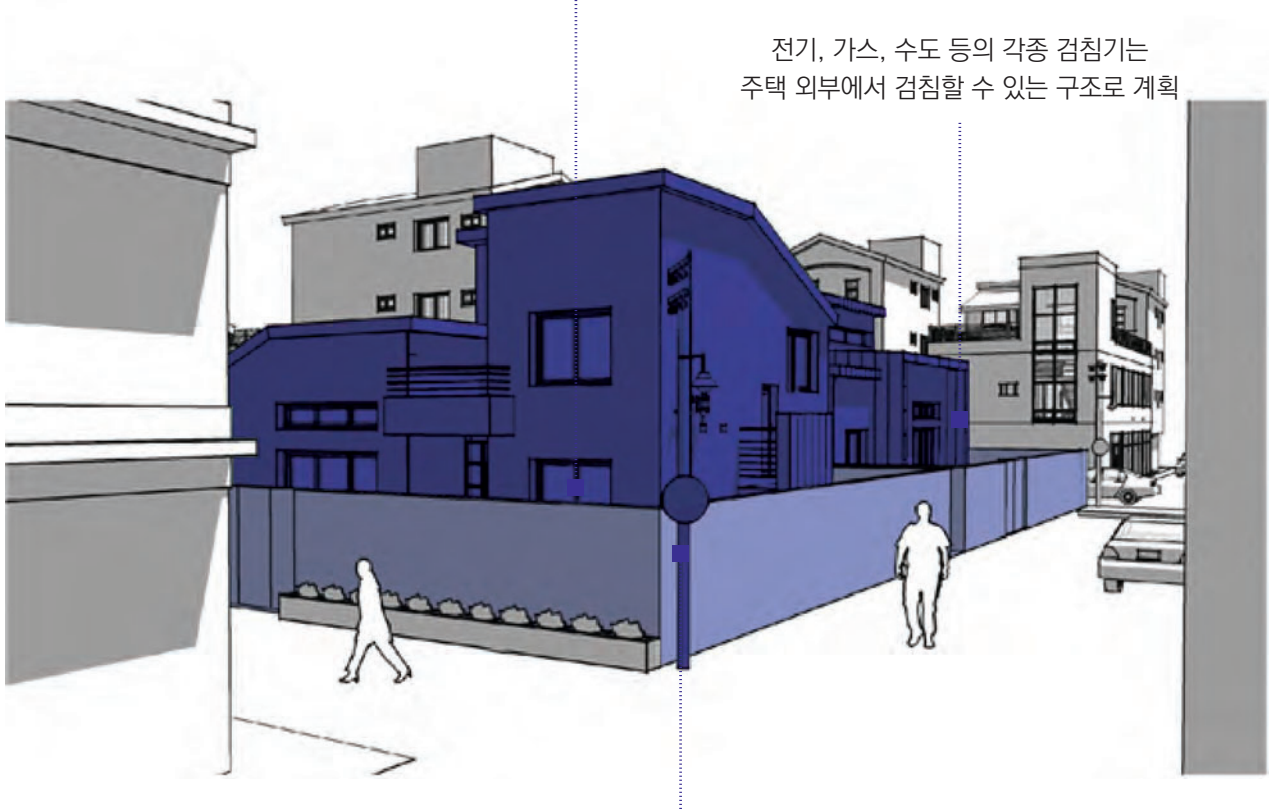
지역 특색을 충분히 살리며,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하기

디자인 원칙

폐쇄적이거나 위압적인 담장설치를 지양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담장디자인(재질, 색채 등) 권장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각종 검침기는
주택 외부에서 검침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



주택가 범죄 취약공간을 중심으로
조명, CCTV, 비상벨 등의 방범시설 설치를 권장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대지	· 주출입구는 보행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전면에 배치하며, 주차장 설치 시 보행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 보행로에 인접한 자투리 공간은 쓰레기 투기 등을 방지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화단 등의 조경공간 조성을 권장			
	· 폐쇄적이거나 위압적인 담장 설치를 지양하고 골목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담장디자인(재질, 색채 등)을 권장			
건축물	· 중심공원 주변이나 수변과 같이 주변 환경이 뛰어난 입지적 특성을 지닌 지역은 그 특성을 충분히 살린 주거지를 조성			
	· 주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횡 일률적인 배치를 지양하고 주동의 높이를 차별화하여, 건축 형태와 높이가 적절히 조합되도록 계획			
	· 주택의 외부 조망창 일부를 골목길 방향으로 배치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			
	·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각종 검침기는 주택 외부에서 검침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			
	· 고단열 외벽 및 기밀성 창호 사용, 방향에 따른 차양루버 설치 등으로 냉난방 부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계획을 권장			
시설물	· 골목길이 협소하거나, 막다른 골목으로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각종 화재 안전시설 배치를 권장			
	· 주택가 범죄취약공간을 중심으로 조명설치, CCTV, 비상벨 등의 방범시설의 우선적 설치를 권장 ※ 방범·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208~211p),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282~287p) 참고			
	· 주택 외벽에 설비배관 설치 시 창문 등의 개구부와 충분한 이격을 두고 배치하며, 배관의 하단부는 매달릴 수 없도록 조치			



자연감시가 가능한 저층부 진입공간 및 주차공간
 (한국건축문화대상_모아썬집)



화단을 조성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구축



협소한 골목길 내 화재안전시설 배치

B. 민간건축

4.B.3

공가 및 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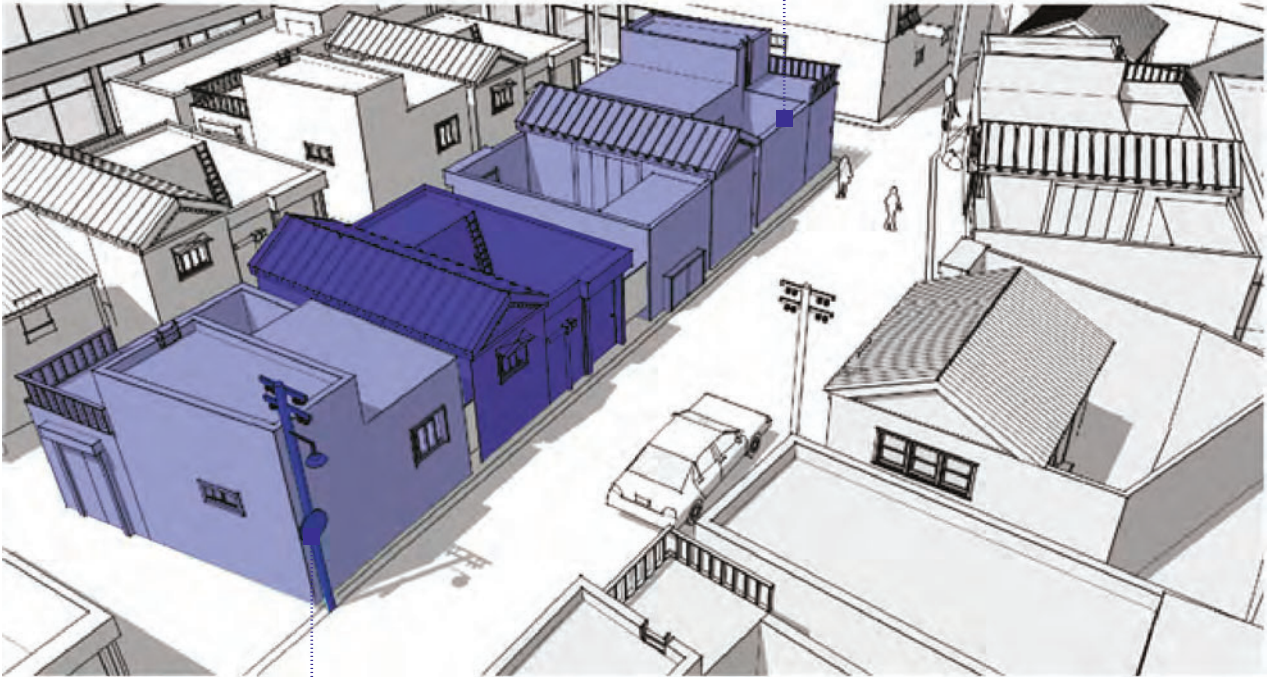
장기간 특정 거주자 없이 비어있는 주택으로, 소유주 여부 및 관리 상태에 따라 공가 및 폐가 등으로 구분하여 지칭

기본방향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기

디자인 원칙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주민편의시설 및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도록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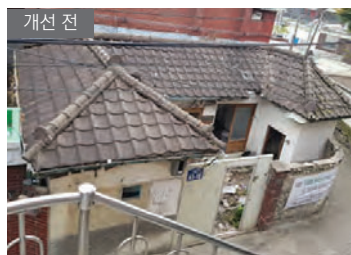
공가 및 폐가는 잠정적인 범죄취약공간임을 인지하고
조명시설, CCTV, 비상벨 등의 방범시설을 설치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대지	· 마당 및 전면공간 등 주택 외부공간의 공공 사용이 가능한 경우, 주민공동 텃밭 및 공용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			
	· 출입문, 담장 등 보행로와 직접 접해 있는 경계영역은 주변과의 조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 우범지대가 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쓰레기투기방지, 해충방역, 순찰강화 등 지속적으로 관리			
건축물	· 담장이 없는 경우,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경계부에 임시펜스 설치 등의 적극적인 영역구분			
	· 붕괴 및 균열 등 안전사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부착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철거			
	· 주차장이나 공공시설,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일반 노후주거지에서는 공·폐가를 활용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를 위한 매개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공공이 매입 또는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재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민편의시설, 문화·예술공간 등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			
시설물	· 공가 및 폐가는 잠정적인 범죄취약공간으로 규정하고 조명시설, CCTV, 비상벨 등의 방법 시설을 설치 ※ 방법·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208~211p),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282p) 참고			
	· 빠른 동선 유도과 주변 시야 확보 및 좁은 골목길을 밝고 넓게 보일 수 있도록 개선			
	· 현 상태 및 향후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상세한 안내표지판을 인지성 높은 위치에 설치			



공·폐가로 인한 우범공간을 밝게 재정비



공·폐가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편의·커뮤니티시설로 재생 및 공공기반시설 확충



B. 민간건축

4.B.4

복합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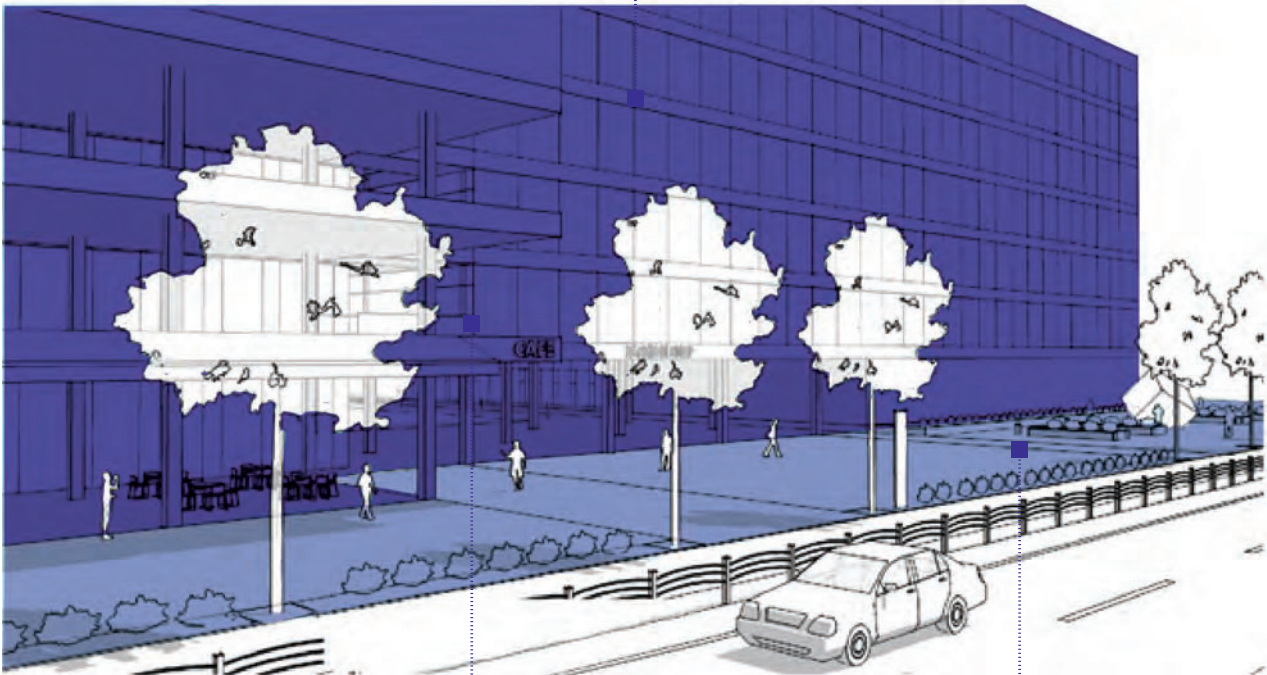
생활편익을 제공하는 다양한 상점이 입점하는 건축물로, 주로 주거지나 업무지 등 사람이 모이는 가로(街路)에 일정규모 이상 연접하여 조성

기본방향

가로경관의 연속성 및 보행편의성 고려하기

디자인 원칙

입면재료, 색채 등을 조화롭게 계획하여
가로경관의 연속성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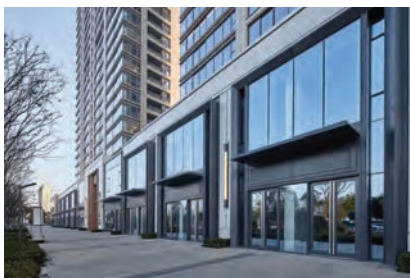
매장 내부와 외부 보행로 간 시선소통이 용이하도록
투명유리 설치 권장



옥외 휴게공간 조성 시 이용성을 위해
단차나 경계턱 없이 포장재질 등으로 영역 구분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대지	· 일정 범위 이상 연접한 상업시설은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건축선의 일치 및 입면 재료, 색채 등을 조화롭게 계획			
	· 옥외 휴게공간 조성 시 개방성과 편의성을 높여 보행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차나 경계턱 없이 포장재질 등으로 영역 구분			
	· 건축물 전면공지는 보행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매대 설치, 물건 적치, 입간판 설치, 주정차 등을 금지하고 활력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디자인된 바닥 포장 계획			
	· 가능한 한 상업시설과 주차장과의 거리는 최대한 짧은 동선으로 설계			
건축물	· 형태, 색채 및 재료의 변화는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과도한 분절로 인한 산만한 건축입면을 지양			
	· 건축물 저층부는 매장 내부와 외부 보행로 간 시선 소통이 용이하도록 투명유리 설치 권장			
	· 건축물 주출입구는 이용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보행로와 직접 면하도록 배치하며, 1층부 각 점포 출입구와는 구분될 수 있도록 계획			
	· 대규모 공간확보가 가능한 옥상부는 도시민들을 위한 휴식 및 이벤트 기능을 포함하는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			
	· 영업 종료 후에도 고효율 에너지 조명시설 점등을 유도해 심야시간 보행안전성 확보를 권장			
	· 유아 및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수유실, 전용휴게실 등의 계획을 권장			
	· 지하주차장, 건축물 후면 공간 등의 사각지대는 비상벨, CCTV 등의 방범시설을 설치			
시설물	· 광고를 위해 설치되는 각종 옥외광고물은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하되, 가로별 특성 및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특화디자인 적용을 권장			
	·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사용이 어려운 협소한 공간 발생 시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출입 통제시설을 설치			



건축선 일치로 가로경관의 연속성 확보 및 보행장애물 없는 전면공간



건축물 저층부 투명유리 설치 및 보행로와 면하도록 주출입구 배치(한국건축문화대상_원석)



가로특성에 맞는 광고물, 조명, 포장계획으로 정돈된 가로경관 연출

B. 민간건축

4.B.5

전통시장

지역 내 오랜시간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시장으로,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

기본방향

걷기 편하고 안전한 특색있는 장소 만들기

디자인 원칙

전통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주 진입구 특화디자인 권장



아케이드 설치 시
화재에 안전한 구조와 재료를 사용

주진입부는 보행 전용공간으로 계획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 전통시장 활성화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대지	· 주진입부는 보행전용공간으로 계획하고 전면부 주차장화를 지양하며, 주차장은 안전하게 보행연결이 가능한 위치에 별도로 확보할 것을 권장		
	· 쾌적한 보행로 확보와 비상 시 구급차, 소방차 등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정해진 구역선을 넘어 좌판, 물품적치, 차광막, 주정차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획		
	· 상하차장 위치는 대지 측·후면에 배치하며,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내부 화물 이동 동선이 길지 않도록 계획		
	· 전통시장 내부는 가급적 막다른 통로 형성을 지양하고, 비상시 피난에 용이하도록 여러 방향으로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건축물	· 인지성과 장소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 전통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주 진입구 특화디자인을 권장하되, 과도하고 장식적인 형태 및 색채 사용은 지양 ※ 시장 정체성의 반영을 위해 장식적 요소 필요 시,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소화		
	· 내부통로에 아케이드 설치 시 소방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최소 높이 5m 이상 확보하며, 환기, 자연배연 등을 고려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구조와 재료를 적용		
	· 입구 구간의 최소 길이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6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아케이드 기둥 등이 영업활동 및 쇼핑 동선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량을 최소화하여 배치		
	· 온실화 방지를 위해 자연환기가 원활하도록 시설의 주요 구조를 설계하되, 자연환기만으로 부족할 경우 강제환기시설을 검토		
	· 화재발생 등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로 폭은 4m 이상을 확보하고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장의 특성에 맞게 배수가 용이하고 사람들이 오래 걸어도 피곤하지 않은 디자인과 재질의 포장재 사용		
	· 휠체어, 짐수레 이동이 용이하도록 턱이 없는 공간으로 조성		
	· 어두운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도를 개선하여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		



화재로부터 안전한 아케이드 설치



시장 내 온·습도 조절, 방향 조절이 가능한 환기시설



쾌적한 보행로 확보 및 인지성 높은 간판디자인

B. 민간건축

4.B.5 전통시장

시설물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과도하게 노후된 전열기구, 조리대, 진열대 등은 청결과 안전, 미관 등을 위해 개선되도록 유도			
· 시장면적 500㎡ 또는 거리 30m마다 화재확산 방지설비(연결살수설비, 방화벽)을 설치 하며, 2층 이상은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층별 방화구획을 하고 자동폐쇄장치를 활용한 방화문 등을 설치			
· 옥외소화전은 반경 50m 마다 설치하고 옥외소화기는 사방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지면 으로부터 1m 이상의 높이에 거치형으로 설치하며, 보이는 소화기함은 시장내부통로 50m 마다 1개소 이상 설치 ※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288p)] 참고			
· 노점 가판대는 소방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부에 바퀴를 달아 이동이 용이하게 하며, 야간 에 노점가판대 등을 이동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 시장의 아이덴티티를 활용하여 점포 매대를 디자인하며, 상점 간판은 매장의 기본정보와 특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특화 디자인을 적용하되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 ※ 전통시장별 특성에 맞는 간판디자인가이드라인 운영 권장			
· 지역적 특성을 과도하게 직설적이고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상징물 설치를 지양			
· 시장 내부 방향 및 시설안내 등을 위해 사인시스템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계획			
·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주차장 등은 사방 100m 이내에 방향안내사인 설치를 권장하며,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료한 픽토그램, 색채 등을 적용하여 디자인			
· 시장의 특색을 살리거나 정체성을 반영한 조명연출을 권장하되, 원색계열의 색채 및 빠른 점멸 등은 지양			
· 폐점 후 심야시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심야조명 및 CCTV, 비상벨 등의 방범시설을 설치 하고, 특색 있는 서터디자인 적용을 권장			



소방차 진입을 위한 소방도로 노면표시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의 옥외소화전 설치



점포 특성을 살린 매대디자인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 전통시장 활성화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기타

· 공중화장실, 옥외소화기, 주차장안내표지 등은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176p),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234~237p, 288p)] 참고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 시장 상인 및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휴게·차양시설을 설치
- 시장 내 방송장치를 설치할 경우, 화장실 및 휴게공간 등 외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운 장소에 필수적으로 설치하며, 시장 상인 및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점포 및 보행로와의 거리, 높이, 소음 등을 고려하고 설치 후 음량 등 조정이 가능하도록 계획
- 전기시설은 방수가 가능한 밀폐구조를 사용하며, 지면으로부터 300mm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고 보행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보행자의 접근이 불가하도록 설치
- 분전함과 같은 전기시설은 외부 오염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무채색 또는 저채도 색채를 주조색으로 적용하되, 위험시설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색채를 강조색으로 적용
- 가스시설은 주변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펜스 설치를 권장하며, 쓰레기 적치 등이 불가하도록 계획



주의, 금지 등 안전정보 전달을 위한 안내사인 통합디자인



인자성을 고려한 방향안내사인



주의, 금지 등 안전정보 전달을 위한 안내사인 통합디자인

B. 민간건축

4.B.6

산업단지

다양한 산업시설을 집적화시키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지역 내의 산업 지원 건축물과 그와 연계된 다양한 부대시설 및 외부공간을 포괄적으로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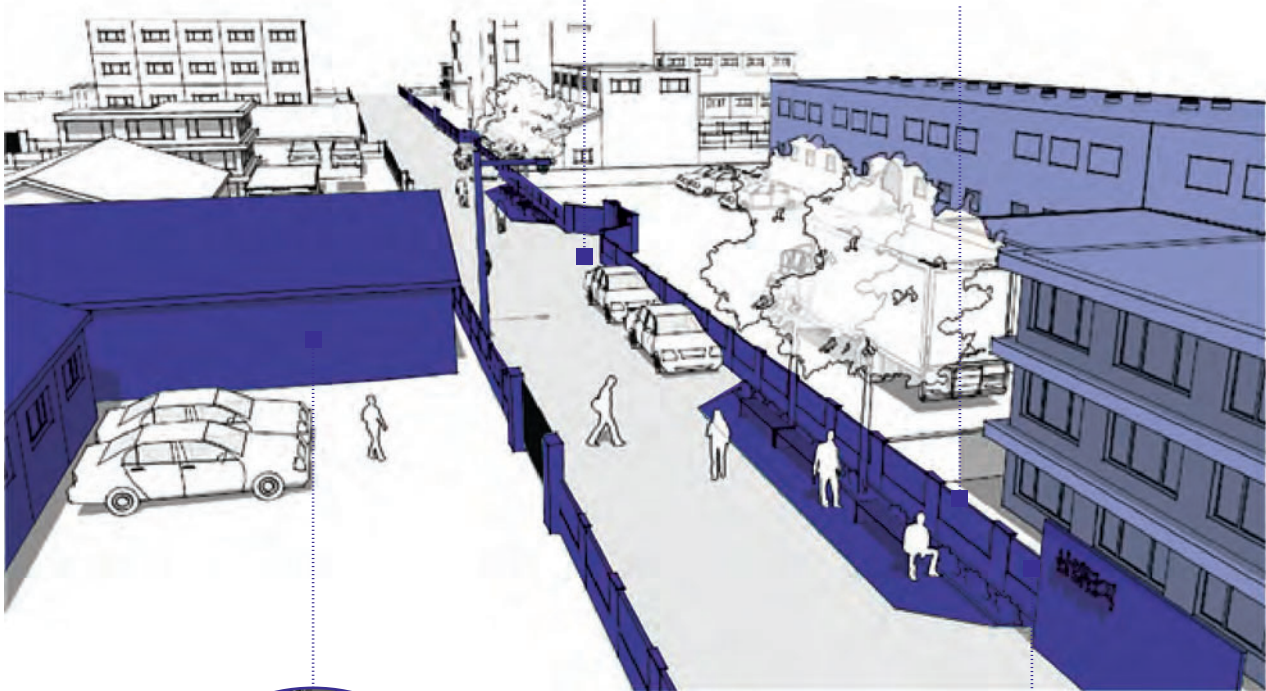
기본방향

쾌적하고 안전한 사람중심의 공간 조성하기

디자인 원칙

보행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넓은 폭의 주출입구 계획은 지양

특색있고 밝은 이미지의 재질 및 색채의 입면
산뜻한 재질 및 색상의 담장, 생태울타리 도입 권장



공장 내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진출입구, 통로, 벽면 등에 명확한 공간 및 안전정보 제공

진출입구 등 안내표지를 다르게 디자인하여
공간 정보와 영역성을 부여하도록 권장
단지 내 CCTV, 조명계획, 비상벨 등
방범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계획·설치·관리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대지	· 단지별 도입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의 선형 및 택지 구획 등을 합목적성 있게 계획			
	· 주 간선도로 및 차도와 보도 사이 등 전이공간에는 연속된 띠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계획			
	· 단지 계획 시 단지 중앙공원 및 분산형 포켓공원을 다수 조성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인 생활·업무공간으로 계획			
건축물	· 보행로 연결부는 가급적 각 입주업체별 업무시설(HQ)을 배치하고, 후면부에 생산시설을 배치하여 휴먼스케일의 보행환경을 조성			
	· 과도하게 거대한 생산시설의 단일색상 및 재질 사용을 지양하고, 적절한 입면분절 및 다양한 색채와 재질 사용을 권장			
	· 생산시설의 넓은 옥상면을 활용하여 태양광 패널, 우수 집수시스템 등 친환경 설비 설치를 권장하며, 보행환경에서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계획을 수립			
	· 위험한 생산설비 등은 가급적 외부노출을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부접근이 어려운 대지 내 안전한 곳에 설치하고 안전표지판을 병설			
	· 공장 내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진출입구, 통로, 작업장 등 공간특성별로 명확한 공간정보와 영역성을 위해 색채 및 방지시설 등을 적절히 활용			
시설물	· 단지 조성 시 각종 도시기반 인입시설은 가급적 지중화하여 보행안전성 증진 및 도시경관 저해요소를 사전에 방지			
	· 가스정압기, 대형변압기 설치 시 보행로에서 이격하여 설치하고, 차폐시설을 계획			
	·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지 내 CCTV, 조명계획, 비상벨 등 방범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계획·설치·관리			



녹지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가로 조성



기존 공장건축물에서 벗어나 개성있고 개방적인 건축물 디자인(인천광역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_인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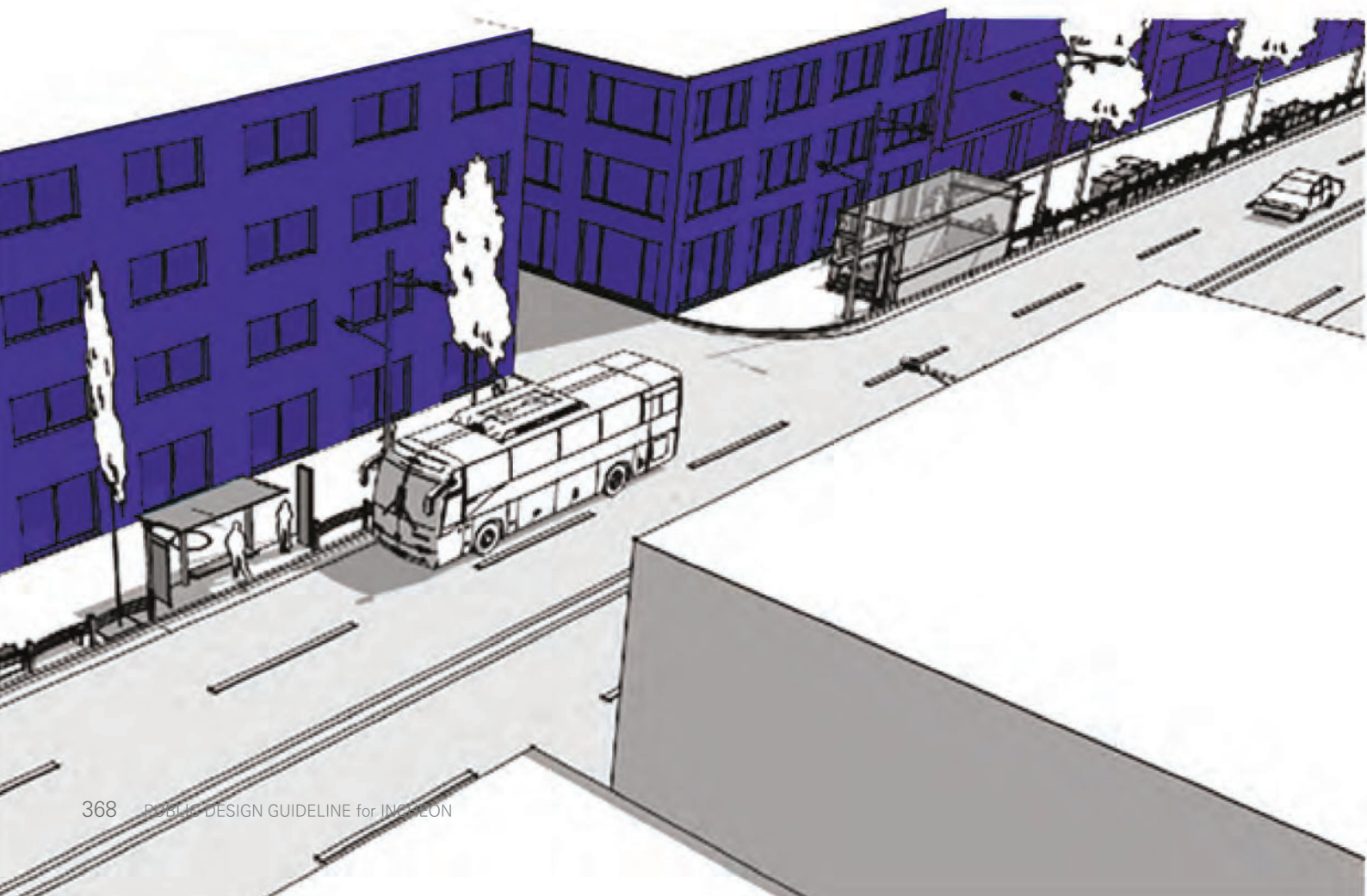
담장 및 가로시설물 통합디자인으로 안전하고 개방적인 보행가로 확보

C

광고물

중점사항

- | | | |
|----|------------------------------|---|
| 01 | 조화로운 건축 및 경관만들기 | 광고물의 수량, 크기, 색채, 조명 등의 적절한 제한 |
| 02 | 읽기 쉽고 찾기 쉬운 안내시설 설치하기 | 다양한 이용자의 인지성 및 가독성을 고려한 규격, 높이, 색채 등 규정 |
| 03 | 장소와 시설의 정체성 표현하기 | 획일적인 디자인 지양
장소와 시설의 개성 표현 지향 |



세부구성

- 광고물은 공중에게 정보를 알릴 목적으로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각 표시물을 말한다.
옥외광고물을 포함한 광고물 디자인은 건축물과 조화되며, 경관의 연속성 및 쾌적성을 고려한 배치 계획으로 가로 및 건축물의 미관을 향상시키는 디자인을 원칙으로 한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광고물은 민간 및 공공의 옥외광고물과 더불어 건축물의 안내시설물과 홍보시설물을 포함한다.
- 옥외광고물은 관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표시 및 설치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운영 중이며, 조례의 내용이 가이드라인의 일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옥외광고물 관련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축소하여 제시한다.
- 가이드라인의 세부구성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분류코드	종분류	세부 구성	
4.C.1	건축물 안내시설물		
4.C.2	건축물 홍보시설물	· 형태색채	· 설치배치
4.C.3	옥외광고물		
	간판 유형별 디자인가이드라인	· 가로형 간판 · 지주이용 간판	· 돌출간판 · 창문이용 광고물

- 광고물의 기능 및 목적에 따라 3개 대상으로 세분화하며, 형태색채, 설치배치 등 세부요소로 각각의 지침을 제시한다.
- 옥외광고물 중 간판의 경우는 가로형, 돌출형, 지주형 등 세부 유형에 따라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관련법규 및 문헌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C. 광고물

4.C.1 건축물 안내시설물

건축물 실내·외 공간에 대한 장소별 정보, 방향 및 이용안내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사인시스템

기본방향

누구나 인지 가능하고 읽기 쉽도록 일관되게 통합디자인하기

디자인 원칙

인지하기 쉬운 배경색과 정보표기 간
명확한 명도대비를 적용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통합디자인



참조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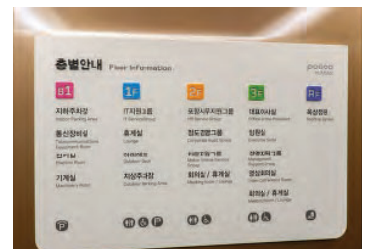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변동이 잦은 대상에 한하여 기본 구조의 변형없이 내용교체가 용이한 방식으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			
· 고령자, 시각약자 등의 신체적 장애요인을 고려하여 안내표지판의 도안 및 글자크기, 설치 위치 등을 설계			
· 인지하기 쉽도록 배경색과 정보표기 간 명확한 명도대비를 적용하여 디자인			
· 주변 환경 및 건축물 입면과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하며, 고채도 원색은 강조할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 상징이미지, 관리주체, 제작업체 등 정보서비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표기요소의 남용을 지양			
· 픽토그램, 숫자 등 간결하고 직관적인 표기요소를 사용하고 의미없는 장식적 요소는 배제			
· 주요 정보는 다국어어를 병기하여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			
· 동선 안내를 위한 표지는 다방향에서 인지하기 쉬운 형태로 디자인			
· 표기할 정보가 많은 경우, 경로를 구성하는 주요 공간(출입구, 승강장, 비상구 등)과 원활한 이동 및 편의를 위한 장소(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를 우선적으로 표기			
· 이용자에게 길 찾기와 공간 구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도와 그림 등을 활용			
· 단일 구조의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경우, 바닥 또는 벽면을 활용하여 이동 지시선을 표기 하거나 색채 구분을 통해 안내할 것을 권장			
설치배치			
· 도로에서부터 건축물 내부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명판, 안내도, 출입구 사인 등을 연속적으로 설치			
· 시설안내표지는 이동이 활발한 구간에 설치하며, 방해물에 가려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			
· 방향유도표지는 동선의 혼란이 있는 구간에 설치하며, 벽면, 천장 등에 설치하여 공간 점유를 최소화			
기타			
· 안내시설물이 개별적으로 계획되지 않도록 서체, 색채, 재질 등의 통합디자인을 개발하며,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건축설계 단계에서 진행			



간결하고 직관적인 픽토그램 및 명도대비로 가독성 향상



서체, 색채 등의 기준이 통일된 정보매체 통합디자인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종별 색채 지정

C. 광고물

4.C.2

건축물 홍보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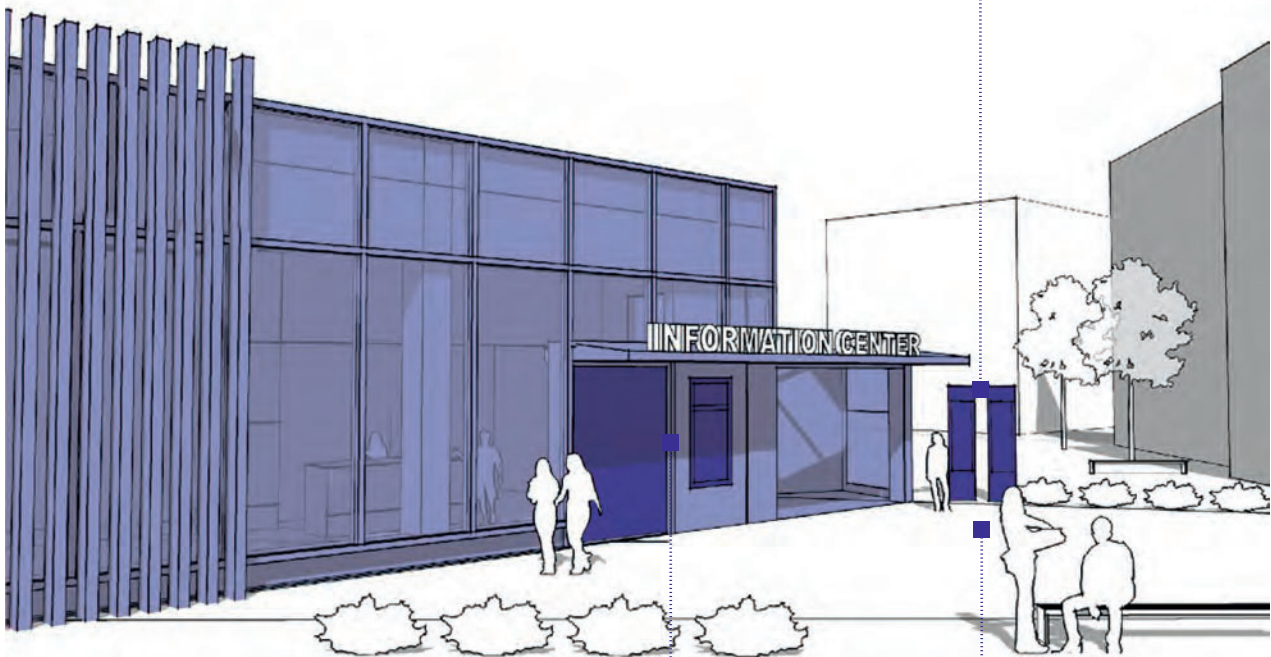
시정, 지역 행사와 소식 등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게시 및 수납시설

기본방향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통일성 있게 디자인하기

디자인 원칙

기본 구조의 변형없이 내용물 교체가 용이한 구조
장식적인 요소 지양, 상징이미지 등 남용 지양



건물 외벽에 홍보시설물의 설치 지양
해당 면적 내에만 지정게시대 설치
건축물의 입면 및 간판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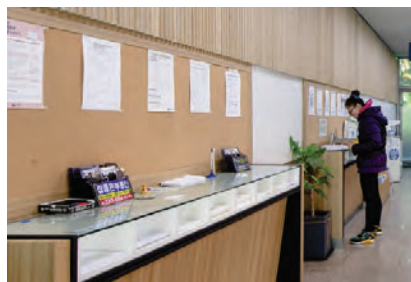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간 확보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

참조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과도한 수량의 홍보물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게시물의 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 동일한 게시대 내 부착되는 다수의 홍보물이 정돈되어 보일 수 있도록 정렬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			
	· 기본 구조의 변형없이 내용물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			
	· 홍보물에 대한 주목성을 높이기 위하여 게시물에 장식적인 디자인 적용은 지양			
	· 상징이미지, 관리주체, 제작업체 등 정보서비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표기요소의 남용을 지양			
	· 실내 홍보물 게시대, 게시판은 설치된 공간의 입면과 색채나 재료 등 일부 요소가 통일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			
	· 실내 홍보시설물의 경우, 기성제품의 사용을 지양하고 기타 가구류와 일관된 디자인으로 계획하여 제작할 것을 권장			
설치배치	· 건물 외벽에 홍보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관련 법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게시대를 해당 면적 내에만 설치하며, 관련부서의 검토·심의를 진행			
	· 옥외전광판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입면 및 간판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설치			
	· 홍보시설물은 혼잡이 적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간 확보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을 권장			
	· 실내 홍보시설물은 돌출되지 않도록 가구형으로 제작하거나 다른 수납시설과 통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 실외 홍보게시판은 지면 고정부가 돌출되지 않도록 마감하며, 녹지 또는 휴게공간 내 설치를 고려			
기타	· 옥외전광판은 건축 설계 시, 위치를 미리 결정하여 건축가의 설계 의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			



건축물 입면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옥외전광판 설치



공간의 입면과 색채, 재료를 통일하여 일체화 디자인



일관된 색채의 안내 및 홍보책장

C. 광고물

4.C.3

옥외광고물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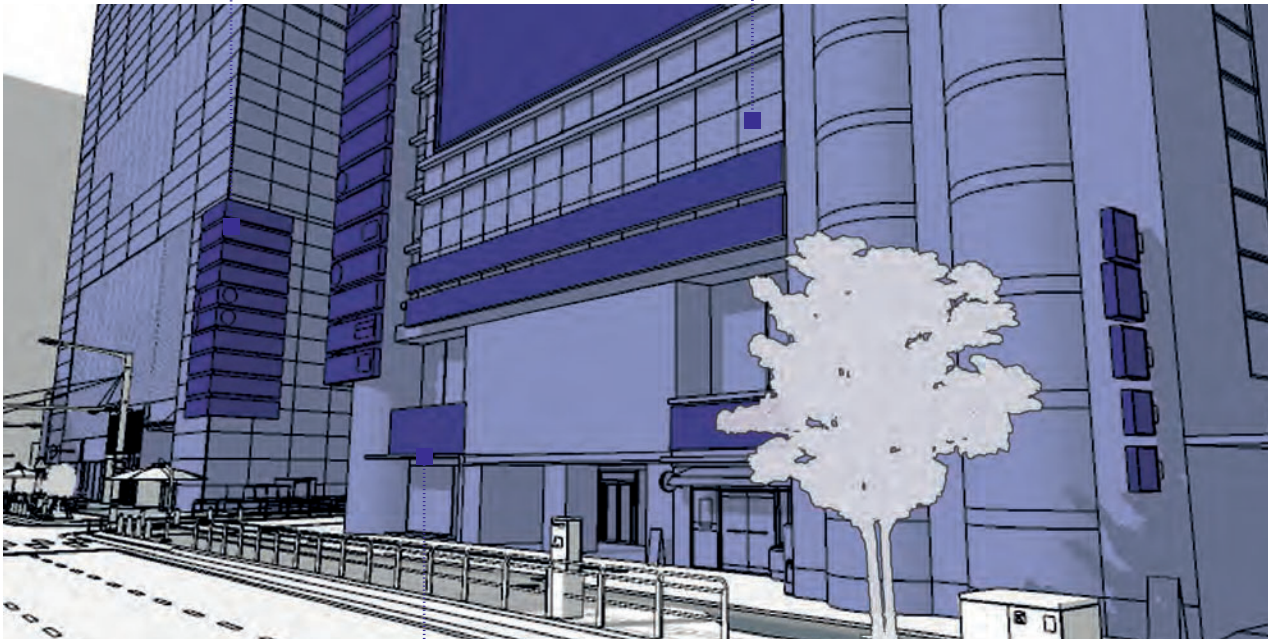
기본방향

관련된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인지하기 쉽고 조화롭게 디자인하기

디자인 원칙

인접 간판, 거리, 건물 등 주변 환경과 조화
업소의 특성을 반영하되, 조화로운 색채와 형태 사용

업소당 간판 총 수량 최소화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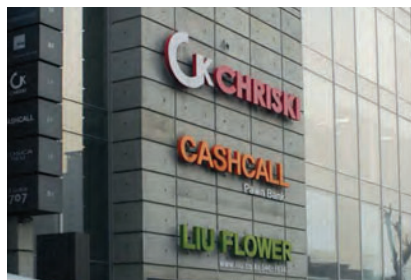
간판 점유 면적 제한
시인성과 가독성을 위하여 충분한 여백 확보

- 참조**
-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형태색채	· 각 업소의 표출하고자 하는 개성(아이덴티티)에 앞서 전체적인 입면의 조화를 우선하여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고채도의 그래픽 면적은 최소화하며, 과도한 형태의 그래픽, 실물 사진 및 이미지 표시는 지양		
	· 상호 또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간단하고 명료한 서체로 표기하며, 시인성이 낮은 시계 등 기타정보의 표출은 지양		
	· 표기요소의 중요도에 따라 '주 표기요소'와 '보조 표기요소'로 나누어 크기, 위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설치		
	· 충분한 여백을 확보하고 표기문자의 굵기, 문자 폭, 자간 등을 조절하여 보행자들이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		
	· 업소를 상징하는 개성적인 심볼이나 독특한 그래픽이미지가 필요한 경우, 간결한 상징 조형이미지를 개발하여 적용		
	·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며, 가독성을 고려하여 글자 크기를 설정		
	· 건축물 외장재 및 업소 특성에 맞는 재질을 사용하며, 업소의 특성을 반영하는 색채를 사용 하되 건축물과 주변환경에 조화롭게 사용		
	· 주목성을 고려하여 간판에 적용되는 색채는 3개 이내로 사용할 것을 권장		
	· 원색과 원색의 조합이나 보색 조합은 지양하며, 원색은 강조색으로 면적을 제한하여 중·저채도의 색채와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		
	· 간판 부착 바(bar) 설치 시 건축물과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		
	· 빗공해가 없는 정온한 경관조명(간접조명방식, 외부조명방식 등)을 권장하며, 네온류, 전광류 등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조명, 점멸과 색채 변화는 지양		
	· 조명 설치 시, 정보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신호등·교통안내표지 등과 같은 색의 조명 사용을 지양		



서체를 사용하여 간결한 간판 설치



건축물 외관을 고려한 간판 형태 및 색채, 표기 내용의 최소화



은은한 느낌의 간접조명방식으로 정온한 경관조명 연출

C. 광고물

4.C.3

옥외광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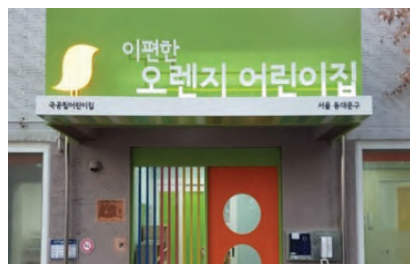
설치배치

-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단일건축물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의 설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권장
- 옥외광고물의 크기, 개수 등을 최소화하여 시각적 혼란을 최소화
- 간판 구조물에서 고광택 금속 재질 및 간판 구조물 결합부 노출을 최소화하여 미려한 마감을 권장
- 건축물 설계 시 간판을 건축물에 직접 타공 설치보다 건축 입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 적용을 권장
적용간판 높이를 고려하여 안전이 고려된 바(bar) 설치, 간판 고정 프레임 활용, 입면 중 일부만을 게시 공간으로 허용, 소재를 달리하여 노후화 시 해당 부분만 교체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등 건축물 설계 시 간판 설치 방식을 함께 고려
- 건축물 명칭표지 등의 간판 외에 홍보 등을 위한 옥상 광고탑의 설치 지양
- 커튼월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면에는 광고물 설치를 제한하되, 창틀이나 게시시설에 설치한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간판 교체 시 입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간판 구조적 시스템 적용(입구부 상단 게시면 지정, Bar 고정 설치, 판류 고정 설치 순)



통일성 있는 설치 기준의 입체형 가로형간판 배치



건축물과 조화롭고 간결한 형태로 크기, 개수 등을 최소화



유리면에 설치 시, 게시시설을 제한적으로 배치

- 참조**
-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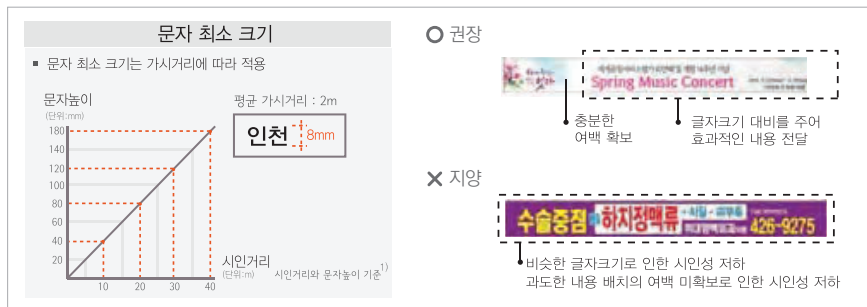
· 그 외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준용

· 현수막게시대 등은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266p)] 참고

현수막

- 시정홍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현수막은 모든 게시대에 게재 가능하나, 주거지와 학교, 상업지역 등 공간적 특징이 뚜렷한 장소에 따라 현수막게시대에 게재되는 광고의 종류를 제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금지광고물은 모든 지정게시대에 게재 금지
- 현수막 그래픽은 정문 위계에 따라 서체 크기를 조절하며, 적정 여백과 간격 유지
- 광고 내용은 전체 높이에서 현수막에 상하 10%를 제외한 80% 면적 내에 표기
- 전체면을 활용한 광고를 권장하되, 디자인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개념도에 따라 광고 구성을 권장
- 광고 내용과 업주 정보면의 비율은 7:3으로 구성하여 광고 내용 및 정보를 배치
- 글꼴은 1~2개 이내를 사용하여 광고내용을 전달하며, 시인성 높은 고딕 계열의 서체를 권장



현수막 그래픽 크기 예시



현수막 여백 및 정보 배치



현수막 권장 서체

C. 광고물

4.C.3

옥외광고물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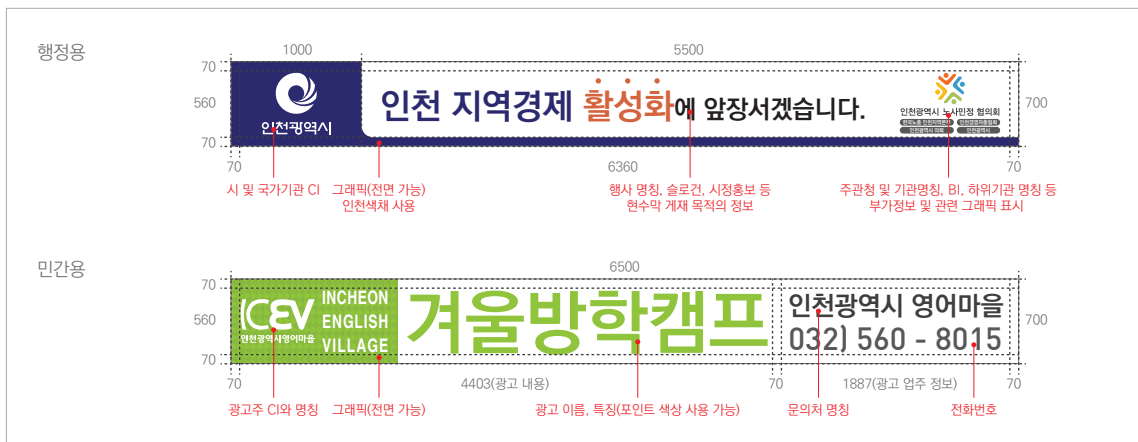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기타	현수막	- 현수막 색채는 공공정보사인과의 혼란을 줄 수 있는 교통, 안전 방재 관련 색채 및 유사한 색채 사용을 지양하며, 인천색채 활용을 권장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목 :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 사용을 금지		
		- 주변과 조화로운 저명도, 저채도 색채를 적용하며, 공공정보 등 혼란시킬 수 있는 바탕색은 지양 - 광고면에 많은 색채를 사용시 주목성이 저하되므로 2~3가지 이하의 색채를 권장 하며, 부득이하게 많은 색채를 사용해야 할 경우 같은 계열의 색채를 활용 - 강조할 내용은 고명도차를 주어 주목성 향상		
	모든 현수막 광고의 그래픽은 게시대에 게재 전 자치구의 디자인 심의를 득한 후 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현수막 그래픽 가이드라인은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권장			



공공정보와 유사한 색채 적용 지양

○ 권장	인천비다색	인천하늘색	인천초록색	소래습지자연경관	강화경관색	문학산색	달미도동대역	계림장목동색	왕성단동색	철단미재색
	새로운 시도를 표하는 인천 색채(다색)	계림단동색	왕성단동색	철단미재색	철단미재색	철단미재색	철단미재색	철단미재색	철단미재색	철단미재색
	인천비다색	인천하늘색	인천초록색	소래습지자연경관	강화경관색	문학산색	달미도동대역	계림장목동색	왕성단동색	철단미재색
	인천비다색	인천하늘색	인천초록색	소래습지자연경관	강화경관색	문학산색	달미도동대역	계림장목동색	왕성단동색	철단미재색

인천색채 활용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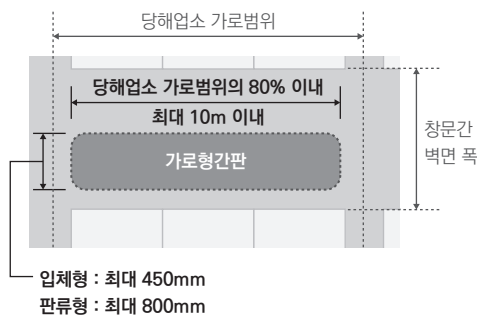
현수막 그래픽 권장 예시

간판 유형별 디자인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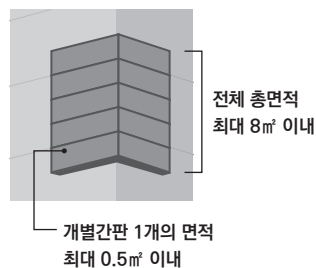
A 가로형 간판

- 입체문자형을 권장하며, 판형간판의 경우 부분조명을 권장
- 업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재, 유리, 금속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할 것을 권장
- 건물 외벽에 내부 입점업체를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연립형 가로형 간판의 경우, 일정한 모듈로 크기와 색채를 통일성 있게 설치하되 내용 교체가 용이하도록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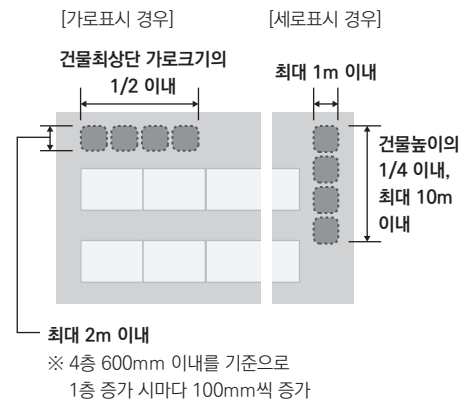
	구분	조례	가이드라인
가로형 간판	표시규격	· 가로 : 건물 가로폭 이내 · 세로 : 층간 폭 이내	· 가로 : 당해 업소 가로 폭 80% 이내, 최대 10m · 세로 : 판류형 800mm 이내, 입체형 450mm 이내
	표시내용 등	· 건물명, 성명, 상호, 도형 등	· 상호 또는 브랜드명 위주로 표기하여 여백 확보 (취급품목, 메뉴, 실물이미지 표기 금지) · 외벽이 유리마감 건축물일 경우 판류형 표시 금지
	설치위치	· 건물의 7층 이하 판류형 또는 입체형 (단, 4층 이상에는 입체형 설치)	
연립형 가로형 간판	표시규격	· 별도 기준 없음	· 개별간판 1개 면적은 0.5㎡ 이내, 전체 최대 8㎡ 이내
	표시내용 등	· 별도 기준 없음	· 총수량에 포함 · 상호명 등 핵심적인 내용만 표기 · 꼭각지점에서는 'ㄱ'자 형태로 표시가능
건물상단 가로형 간판	표시규격	· 가로 : 3m 이내 · 세로 : 건물 높이의 1/2 이내	· 가로로 표시하는 경우 : (가로) 건물 폭의 1/2 이내 (세로) 최대 2m 이내 · 세로로 표시하는 경우 : (가로) 최대 1m 이내 (세로) 건물 높이의 1/4 이내, 최대 10m
	설치위치	· 건물상단 3면 표시 가능	· 건물상단 1면 표시, 종합상가는 2면 표시 가능



가로형간판 표시규격



연립형 가로형간판 표시규격



건물상단 가로형간판 표시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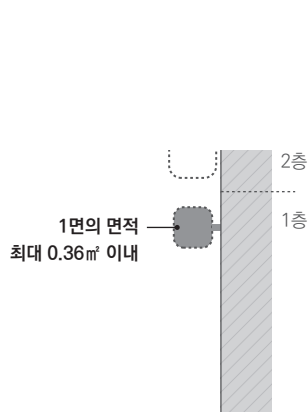
간판 유형별 디자인가이드라인

B
돌출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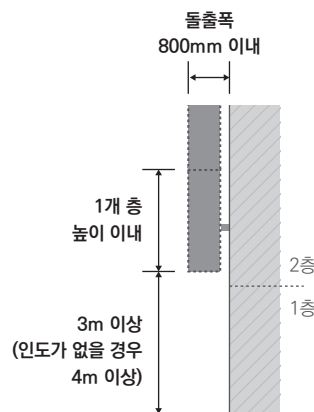
- 1층 매장에 적용하는 소형 돌출간판은 특색있는 돌출구조, 간결한 표기내용, 상징도형 등의 활용을 권장
- 2층 이상에 설치되는 돌출간판은 주로 판형을 권장하며, 각 간판의 높이와 규격을 통일성 있게 적용
- 조명은 비조명 또는 부분조명형을 권장
- 프레임은 건축물과 조화로운 색상으로 통일성 있게 마감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소형 돌출간판	구분	조례	가이드라인
	표시규격	· 신고사항(총수량 제외 대상)	· 개별크기 : 최대 0.36㎡ 이내, 두께 200mm 이내
	표시내용 등	· 신고사항(총수량 제외 대상)	· 심의를 받아 표시, 총수량에 미포함
	설치위치	· 신고사항(총수량 제외 대상)	· 도로에 면한 업소 좌·우측 한 곳에 설치
돌출간판	표시규격	· 돌출폭 : 1.2m 이내 · 높이 : 20m 이내 (상업지역 30m 이내)	· 돌출폭 : 800mm 이내 · 높이 : 5층 이하 · 개별크기 : 1개 층 높이 이내
	설치위치	· 건물 폭이 10m 이상일 경우, 10m마다 1줄 추가설치 가능	· 건물 폭이 20m 이상일 경우, 건물 양측단에 설치 가능



소형돌출간판 표시규격



돌출간판 표시규격



참조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C
지주이용
간판

· 건물 외부에 지주형으로 설치하여 입점업체를 안내하는 지주이용간판은 내용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모듈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

· 전체적인 구조는 간결하게 구성하고 내부 모듈의 색채, 서체 등을 통일성 있게 디자인

· 상·하부 외부간접조명 또는 내부조명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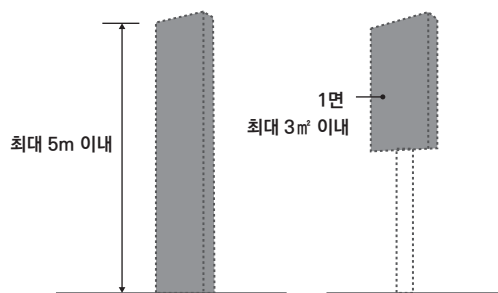
D
창문이용
광고물

· 창문이용광고물은 1층 업소에 한하여 안전띠 개념으로 색상을 제한하여 적용하며, 단색이나 반투명 접착필름을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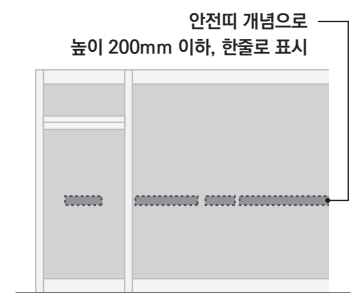
· 전체적인 구조는 간결하게 구성하고 내부 모듈의 색채, 서체 등을 통일성 있게 디자인

· 상·하부 외부간접조명 또는 내부조명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

	구분	조례	가이드라인
지주이용 간판	표시규격	· 면적 : 1면 6㎡ 이내, 합계 24㎡ 이내 · 높이 : 6m 이내	· 면적 : 1면 3㎡ 이내, 합계 6㎡ 이내 · 높이 : 5m 이내
	설치방법	· 위치 : 부지 내·외 · 형태 : 단독, 연립	· 위치 : 부지 내 · 형태 : 5개 이상의 업소를 연립형으로 표시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위치	· 평면 : 창문 또는 출입문면적의 1/4 이내 · 입체/디지털디스플레이 : 건물 2층 이하, 면적 1㎡ 이내	· 1층에만 부분적 표시 · 높이 200mm 이하, 한줄로 표시 · 창문 내·외부 입체형 점멸방식 금지
	표기내용 등	·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전화번호, 영업내용, 상징형 도안만 표시 가능	· 유리면 안전띠 개념으로 표시 · 상호, 전화번호, 영업 내용 등 표시 가능



지주이용간판 표시규격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규격

공공디자인사업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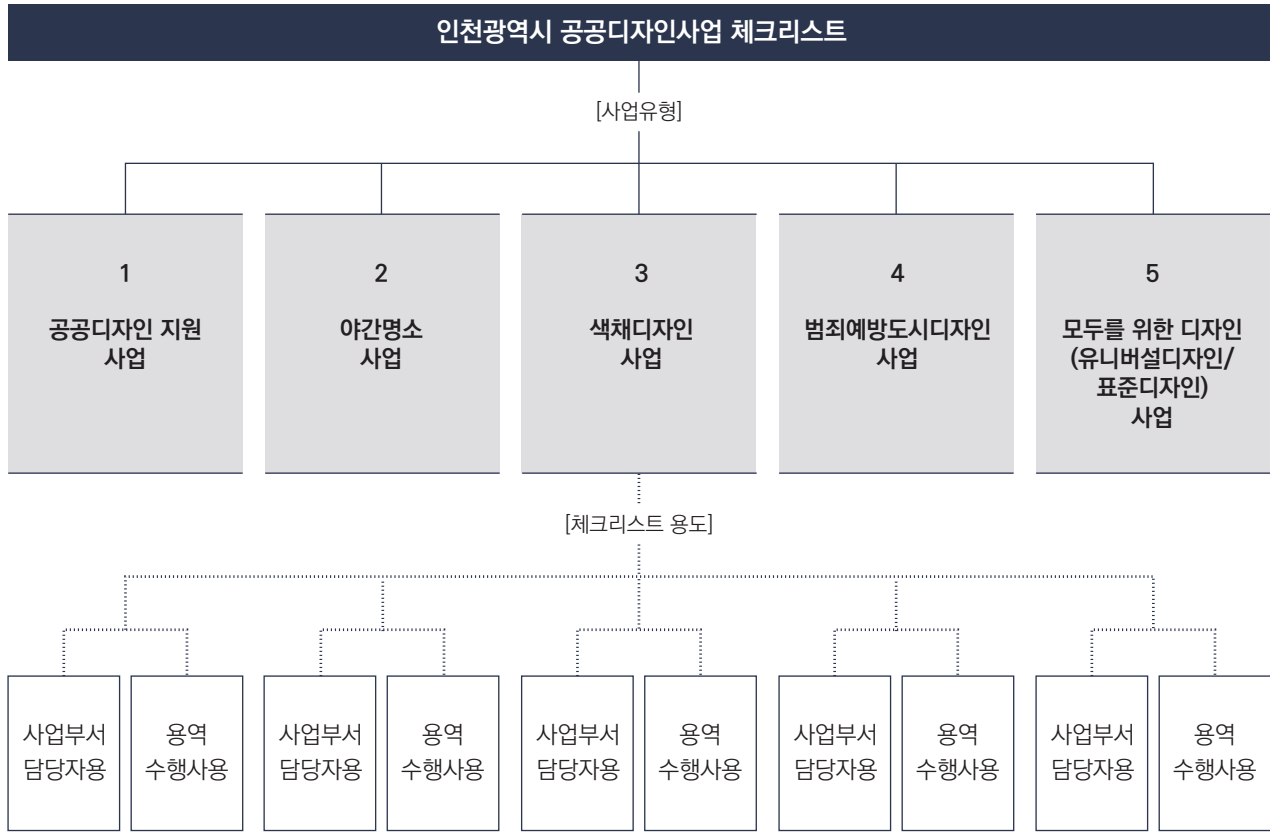
개요	384
1.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386
2. 야간명소 사업	394
3. 색채디자인 사업	401
4.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	408
5. 모두를 위한 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표준디자인) 사업	416
활용하기	424

공공디자인사업 체크리스트

개요

- 체크리스트 구성

 - 공공디자인사업 실행을 위한 중점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제시
 - 인천광역시에서 실행하는 5가지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부서 담당자용, 용역 수행사용 2가지 용도로 구성



사업단계별 세부 평가지표

- 사업에 따라 기획, 실행, 운영의 총 3단계를 기본으로 세부 추진단계를 구분
- 각 사업추진단계별 중점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5가지 사업유형에 대입·적용

구분	사업추진단계		평가지표
기획단계	기획	사업주제 및 대상지 선정	사업주제의 공공성
			사업대상 및 목표선정의 적절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시민참여 계획	시민참여 가능성
		사업수행 체계 및 추진계획	사업 수행 전문성 및 업무 체계성
			수행조직 협력성
	조사/분석	이용자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용자 예측성
			이해관계자 통합성
		대상지(시설) 분석	대상지 분석의 심층성
		사례검토	사례검토 활용성
		상위 정책·제도 검토	정책·제도 부합성
		기본계획	사업계획의 합리성
실행단계	설계	관련 법규와 지침 준수	관련 법규와 지침 준수성
		실시설계	디자인 부합성
			설계 협력성
	제작/설치	제작 검수	디자인 구현의 적절성
		설치 현장 점검 및 관리	현장 점검·관리 적절성
	시공/감리	사업 결과 평가	사업 결과의 우수성
운영단계	운영	프로그램 계획	사업 지속성
	유지관리	유지관리 방안	사업 지속성
	확산	사업 홍보	홍보 활용성
		사업성과 확산	사업확산 가능성 및 효과성

1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강화도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① 기획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기획	사업주제 및 대상지 선정	· 해당 사업 주제가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의 추진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는가?			
		· 해당 사업의 주제가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성을 갖는가?			
		· 해당 사업이 공공디자인지원 대상으로써 적절한 목표를 갖는가?			
		· 지역민 요구, 연구분석의 결과 등 사업의 타당성에 부합하는가?			
		· 사업 목표 및 유형에 따른 대상지 선정이 적합한가?			
		· 지역 잠재력(보유 자원) 및 활성화 기여도가 높은 대상지인가?			
		· 대상지 부지 확보, 주민 동의 등 현실적인 설치를 위한 행정협약이 이루어졌는가?			
		· 목표성고가 적절한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조사/분석	시민참여 계획	· 사업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였는가?		
	사업수행 체계 및 추진계획	· 사업 추진 주체가 명확하고 전문성을 갖는가?		
		· 디자인 및 설계, 제작, 설치 등의 추진일정이 적합한가?		
		· 예산 집행계획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관련기관과 단체의 참여와 협업 계획이 적절한가?		
	이용자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사업의 이용자와 이용행태 분석이 적절한가?		
		· 공공디자인 개발 프로세스가 적절한가?		
		· 서비스디자인기법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선정과 의견수렴과정이 적절한가?		
		· 시민참여활동과 연계하여 공간 및 시설의 이용자 불편사항, 공공 디자인 이슈를 도출하는데 적절한 과정을 거쳤는가?		
	대상지(시설) 분석	· 사업대상지에 대한 공공디자인 문제 분석이 적절한가?		
		· 지역현황 및 자원 특성, 대상지(시설) 규모 및 공공시설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는가?		
기본계획	사례검토	· 사업 우수사례 조사 및 반영계획이 적절한가?		
	상위 정책·제도 검토	· 사업추진 방향이 정부와 인천광역시의 정책과 제도에 부합하는가?		
		· 연계 사업 여부 및 기타 개발 현황과 부합하는가?		
	디자인 계획	· 공공디자인 프로세스를 활용한 디자인 개발이 적절한가?		
		· 조사분석 내용을 토대로 지역장소성이 반영된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의 방식 및 결과가 차별성을 가지는가?		
		· 심미성을 기반으로 디자인 개발이 적절한가?		
		· 현실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상지(시설)에 적합한 형태, 재료, 색채 등 세부적인 디자인계획이 구체화되었는가?		
		· 보고의견, 전문가 자문 등 디자인에 대한 보완·검증이 적절이 이루어졌는가?		

② 실행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설계	관련 법규와 지침 준수	·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되었는가?			
	실시설계	· 구조, 형태, 색채, 마감 등 디자인 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 예산계획과 부합한 사업내역이 산출되었는가?			
		· 사업 참여 주체 및 이해관계자 간 상호협력 창의활동이 적절한가?			
제작/설치	설치 현장 점검 및 관리	· 제작 및 시공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시공 중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예측과 사전 대응이 적절한가?			

③ 운영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운영	프로그램 계획	· 지속적인 공공디자인 프로그램 및 공동체활동을 통한 유지관리 계획이 적절한가?			
유지관리	유지관리 방안	·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결과물의 장기적 유지관리 방안이 적절한가?			
		· 유지관리 주체 및 예산 등 장기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확보하였는가?			
확산	사업 홍보	· 사업 홍보를 위한 준비가 적절한가?			
	사업성과 확산	· 공공디자인 사업이 대상지 외 다른 지역에 확산·적용하기에 적절한가?			
		· 성과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1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연수구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① 기획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기획	사업주제 및 대상지 선정	· 사업이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른 공공디자인지원 대상에 해당하는가?		
		·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에 적절한 사업목표를 제시하였는가?		
		· 사업타당성에 맞게 대상지 검토를 하였는가?		
		· 대상지 부지 확보, 주민 동의 등 실행기반을 확보하였는가?		
		· 사업을 통한 목표성과를 계획하였는가?		
	시민참여 계획	· 사업추진과정에서 시민참여 활동을 계획하였는가?		
		· 대상지 내 지역민을 중심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는가?		
		· 디자인적 해결방안 수립 및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 참여 공공디자인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민간, 대학생 등 다양한 참여를 통해 공공디자인 워크숍, 디자인 교육 등을 단계별로 계획하였는가?		
		· 시민참여과정이 다양한 매체로 아카이빙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사업수행 체계 및 추진계획	· 사업을 주관하는 조직에는 공공디자인을 위한 분야별 전문인력이 배정되었는가?		
		· 과업공정에 맞춰 디자인 및 설계, 제작, 설치 등의 추진일정을 적합 하게 계획하였는가?		
		· 사업비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고 디자인 품질을 관리하는 '공공디자인 총괄체계'를 갖추었는가?		
		· 관련기관과 단체의 참여와 협업을 계획하였는가?		
		· 산·학연계를 통한 공공디자인 문제 해결 등 디자인 참여를 계획 하였는가?		
조사/분석	이용자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서비스디자인기법의 활용 등 공공디자인 리서치 방식을 통하여 사업대상지(시설)의 이용자를 예측·규정하였는가?		
		· 대상지의 이해관계자 행태조사를 통해 주요이슈를 분석하였는가?		
		· 공공디자인 개발 프로세스를 계획하였는가?		
		· 시민참여활동과 연계하여 서비스디자인기법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 의견수렴 및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계획하였는가?		
		·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공공디자인 주요 이슈 및 니즈를 도출 하였는가?		
		·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관련부서별 실무협의의 하였는가?		
		· 공공디자인 개발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발굴 활동을 진행하였는가?		
	대상지(시설) 분석	· 공공디자인의 평가 원칙 및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대상지 (시설)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였는가?		
		· 공공데이터를 활용·검토하여 지역의 현황 및 특성 등을 파악하였 는가?		
		· 이용자여정맵 등 공공디자인 관찰조사 방법을 통하여 현장여건을 분석하였는가?		
		· 대상지(시설)의 이슈와 불편한 점 등을 파악하였는가?		
	사례검토	· 사업 우수사례를 조사하였는가?		
		· 사업 우수사례의 적용방안과 사업결과를 대조·검토하였는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기본계획	상위 정책·제도 검토	·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과 인천광역시 조례, 기준·규칙·지침을 검토하였는가?		
		· 사업실행 방법이 법에 저촉되거나 규제사항에 위배되지 않는가?		
		· 연계사업 및 기타 개발 현황을 검토하였는가?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상지(시설)를 분석·반영하였는가?		
	디자인 계획	· 공공디자인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략 및 차별화 목표를 설정하였는가?		
		· 지역장소성 향상 및 활성화 목표에 부합하는 디자인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등 다양한 측면의 디자인 전략 및 방법을 개발하였는가?		
		· 대상지(시설)에 적합한 세부 디자인계획을 구체화하였는가?		
		·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색채디자인과 정합성을 유지하여 적용하였는가?		
		· 보고의견, 전문가 자문 등 디자인 보완·검증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는가?		
		· 제작, 설치, 유지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였는가?		

② 실행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설계	관련 법규와 지침 준수	·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 조례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되었는가?		
		· 인천광역시 표준형디자인 또는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였는가?		
	실시설계	· 현장 실측 등 현장여건 검토 및 기반 확인을 하였는가?		
		· 디자인 계획을 반영한 설계(안)이 도출되었는가?		
		· 사업내역 자료(시설물의 설치 위치와 수량 등)를 작성하였는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제작/설치	실시설계	· 사업 참여 주체 및 이해관계자 간 상호협력 창의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 대상지 주변에 유사사업 및 연계사업이 있는 경우 연계방안을 사전에 협의하였는가?		
		· 디자인 계획에 대한 주민 안내·동의절차를 수행하였는가?		
	제작 검수	· 제작 전 색채, 재료, 그래픽 등 사전확인과정이 이루어졌는가?		
		· 설치 전 프로토타입 제작 검증 및 현장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디자인 수정 및 보완작업을 수행하였는가?		
	설치 현장 점검 및 관리	· 제작, 공사착수, 준공 등에 대한 시공일정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철거, 폐기물 처리, 교통통제 등 공사승인 요청 등의 행정처리를 이행하였는가?		
		· 시공 중 민원발생 방지대책과 갈등관리방안을 사전에 계획하여 실행하였는가?		
		· 공사일정을 미리 공지하고 시설담당자와 협의를 하였는가?		
시공/감리	사업 결과 평가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공사장 안내표지 등을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였는가?		
		· 안전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시공 완료 후 즉시 철거하였는가?		
		· 설치 전·후 현장 정리를 말끔하게 처리하였는가?		
		· 설계도면과 설치기준 및 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하였는가?		
		· 초기 사업기획의 의도가 사업결과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 사업기획단계에서 설정한 기준에 맞게 사업결과의 완성도를 평가하였는가?		
		· 공공디자인사업을 통한 개선이 이루어졌는가?		
		· 실제적 효과성 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였는가?		

③ 운영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운영	프로그램 계획	· 지속적인 공공디자인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휴먼웨어 계획을 통한 공동체 운영 및 지속적인 발굴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는가?			
유지관리	유지관리 방안	· 공간(시설)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비용을 산출하였는가?			
		·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예산이 확보되었는가?			
		·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주체를 명확히 하였는가?			
		· 운영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조직)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는가?			
		· 주민협의체를 통한 시설물·공간의 사후관리방안을 구축하였는가?			
확산	사업 홍보	· 기획단계부터의 사업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수집하였는가?			
		· 콘텐츠는 다양한 매체로 제작되어 배포 가능한가?			
	사업성과 확산	· 사업실행이 지역사회의 환경개선과 발전에 기여하는가?			
		· 사업 결과물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적용·확산이 가능한가?			
		· 단계별 로드맵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사업 확산계획을 수립하였는가?			

2

야간명소 사업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 야간명소 사업



미추홀구 수봉공원 야간명소 사업

① 기획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기획	사업주제 및 대상지 선정	· 해당 사업 주제가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의 추진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는가?			
		· '인천시 야간명소화 사업대상지(30개소)'에 해당하는가?			
		· 야간명소 대상으로써 적절한 목표를 갖는가?			
		· 야간관광 유형 및 야간명소화 공간 유형에 적합한 대상지인가?			
		· 공간정체성 전략이 명확한가?			
		· 대상지(시설) 사용 승인 등 현실적인 설치를 위한 행정협약이 이루어졌는가?			
		· 목표성과가 적절한가?			
	시민참여 계획	· 사업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였는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조사/분석	사업수행 체계 및 추진계획	· 사업 추진 주체가 명확하고 전문성을 갖는가?		
		· 디자인 및 설계, 제작, 설치 등의 추진일정이 적합한가?		
		· 예산 집행계획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관련기관과 단체의 참여와 협업 계획이 적절한가?		
	이용자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공간(시설)의 이용자와 이용행태 분석이 적절한가?		
		·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연출 목적 및 방향성이 적절한가?		
		· 사업추진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선정과 의견수렴과정이 적절한가?		
	대상지(시설) 분석	· 사업대상지에 대한 조망점, 공간 이동동선 등 종합적인 공간분석이 적절한가?		
		· 공간분석을 통한 연출 방안 선정이 적합한가?		
	사례검토	· 사업 우수사례 조사 및 반영계획이 적절한가?		
기본계획	상위 정책·제도 검토	· 사업추진 방향이 정부와 인천광역시의 정책과 제도에 부합하는가?		
		· 연계 사업 여부 및 기타 개발 현황과 부합하는가?		
	디자인 계획	· 조사분석 내용을 토대로 인천 야간명소화 목표 및 비전·전략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야간명소 장소로써 공간정체성을 구축하는 차별화된 사업 방식을 가지는가?		
		· 심미성을 기반으로 디자인 개발(연출방식)이 적절한가?		
		· 현실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상지(시설)에 적합한 세부적인 디자인 계획이 구체화되었는가?		
		· 공간적 특성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및 체험코스 등의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보고의견, 전문가 자문 등 디자인에 대한 보완·검증이 적절이 이루어졌는가?		

② 실행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설계	관련 법규와 지침 준수	· 야간경관과 관련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되었는가?			
	실시설계	· 구조, 형태, 색채, 마감 등 디자인 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 예산계획과 부합한 사업내역이 산출되었는가?			
		· 사업 참여 주체 및 이해관계자 간 상호협력 창의활동이 적절한가?			
제작/설치	설치 현장 점검 및 관리	· 제작 및 시공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시공 중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예측과 사전 대응이 적절한가?			

③ 운영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운영	프로그램 계획	· 지속적인 체험·문화 프로그램 등이 적절한가?			
유지관리	유지관리 방안	· 사업 결과물의 장기적 유지관리 방안이 적절한가?			
		· 유지관리 주체 및 예산 등 장기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확보하였는가?			
확산	사업 홍보	· 사업 홍보를 위한 준비가 적절한가?			
	사업성과 확산	· 공공디자인 사업이 대상지 외 다른 지역에 확산·적용하기에 적절한가?			
		· 성과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2

야간명소 사업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간명소 사업

① 기획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기획	사업주제 및 대상지 선정	· 사업이 '인천시 야간명소화 사업대상지(30개소)'에 따른 야간명소 대상에 해당하는가?		
		· 야간명소사업에 적절한 사업목표를 제시하였는가?		
		· 대상지 검토를 통해 공간정체성 전략을 수립하였는가?		
		· 대상지(시설) 사용 승인 등 실행기반을 확보하였는가?		
		· 사업을 통한 목표성과를 계획하였는가?		
	시민참여 계획	· 사업추진과정에서 시민참여 활동을 계획하였는가?		
		· 시민참여를 통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계획을 하였는가?		
	사업수행 체계 및 추진계획	· 사업을 주관하는 조직에는 야간경관을 위한 분야별 전문인력이 배정되었는가?		
		· 과업공정에 맞춰 디자인 및 설계, 제작, 설치 등의 추진일정을 적절하게 계획하였는가?		
		· 사업비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련기관과 단체의 참여와 협업을 계획하였는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조사/분석	이용자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공간(시설)의 이용자를 예측·규정하고 이용행태를 분석하였는가?			
		· 주요 방문객 타겟과 수요 예측 시나리오 등을 통해 체험코스 등을 도출하였는가?			
		·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연출 목적 및 방향성을 수립하였는가?			
		·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관련부서별 실무협의를 하였는가?			
	대상지(시설) 분석	· 사업대상지에 대한 조망점, 공간 이동동선 등을 분석·평가하였는가?			
		· 공간분석을 통한 연출 방안을 선정하였는가?			
	사례검토	· 사업 우수사례를 조사하였는가?			
		· 사업 우수사례의 적용방안과 사업결과를 대조·검토하였는가?			
	상위 정책·제도 검토	·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과 인천광역시 조례, 기준·규칙·지침을 검토하였는가?			
		· 사업실행 방법이 법에 저촉되거나 규제사항에 위배되지 않는가?			
		· 연계사업 및 기타 개발 현황을 검토하였는가?			
		· ‘인천광역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야간명소화 유형별 기본계획’에 따라 대상지(시설)를 분석·반영하였는가?			
기본계획	디자인 계획	· 인천 야간명소화 목표 및 비전·전략에 부합하는 디자인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야간명소로써 공간정체성을 구축하는 차별화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공간연출계획과 더불어 다양한 공간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 구축 방안을 개발하였는가?			
		· 대상지(시설)에 적합한 세부 디자인계획을 구체화하였는가?			
		· 인천광역시 야간경관, 색채디자인과 정합성을 유지하여 적용하였는가?			
		· 보고의견, 전문가 자문 등 디자인 보완·검증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는가?			
		· 제작, 설치, 유지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였는가?			

② 실행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설계	관련 법규와 지침 준수	·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 조례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되었는가?			
	실시설계	· 현장여건 검토 및 기반 확인을 하였는가?			
		· 디자인 계획을 반영한 설계(안)이 도출되었는가?			
		· 사업내역 자료(시설물의 설치 위치와 수량 등)를 작성하였는가?			
		· 사업 참여 주체 및 이해관계자 간 상호협력 창의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제작/설치	제작 검수	· 제작 전 색채, 재료, 그래픽 등 사전확인과정의 이루어졌는가?			
		·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디자인 수정 및 보완작업을 수행하였는가?			
	설치 현장 점검 및 관리	· 제작, 공사착수, 준공 등에 대한 시공일정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교통통제 등 공사승인 요청 등의 행정처리를 이행하였는가?			
		· 시공 중 민원발생 방지대책과 갈등관리방안을 사전에 계획하여 실행하였는가?			
		· 공사일정을 미리 공지하고 시설담당자와 협의를 하였는가?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공사장 안내표지 등을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였는가?			
		· 안전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시공 완료 후 즉시 철거하였는가?			
		· 설치 전·후 현장 정리를 말끔하게 처리하였는가?			
시공/감리	사업 결과 평가	· 설계도면과 설치기준 및 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하였는가?			
		· 초기 사업기획의 의도가 사업결과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 사업기획단계에서 설정한 기준에 맞게 사업결과의 완성도를 평가하였는가?			
		· 실제적 효과성 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였는가?			

③ 운영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운영	프로그램 계획	· 지역 관광 및 문화행사 등과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SNS,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자생적인 콘텐츠 개발 및 정기적 콘텐츠 확보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유지관리	유지관리 방안	· 공간(시설)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비용을 산출하였는가?			
		·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예산이 확보되었는가?			
		·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주체를 명확히 하였는가?			
		· 운영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조직)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는가?			
확산	사업 홍보	· 기획단계부터의 사업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수집하였는가?			
		· 콘텐츠는 다양한 매체로 제작되어 배포 가능한가?			
	사업성과 확산	· 사업실행이 지역사회의 환경개선과 발전에 기여하는가?			
		· 사업 결과물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적용·확산이 가능한가?			
		· 단계별 로드맵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사업 확산계획을 수립하였는가?			

3

색채디자인 사업



미추홀구 색채디자인 사업

1 기획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기획	사업주제 및 대상지 선정	· 해당 사업 주제가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의 추진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는가?			
		· 해당 사업의 주제가 공공성을 갖는가?			
		· 인천시 디자인 명소화 대상으로써 적절한 목표를 갖는가?			
		· 색채디자인을 통한 공간특화 및 활성화·홍보 대상지로써 적합한가?			
		· 공간정체성 전략이 명확한가?			
		· 대상지(시설) 사용 승인 등 현실적인 설치를 위한 행정협약이 이루어졌는가?			
		· 목표성고가 적절한가?			
	시민참여 계획	· 사업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였는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조사/분석	사업수행 체계 및 추진계획	· 사업 추진 주체가 명확하고 전문성을 갖는가?		
		· 디자인 및 설계, 제작, 설치 등의 추진일정이 적합한가?		
		· 예산 집행계획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관련기관과 단체의 참여와 협업 계획이 적절한가?		
	이용자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대상지(시설)의 이용자와 이용행태 분석이 적절한가?		
		·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색채계획 목적 및 방향성이 적절한가?		
		· 사업추진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선정과 의견수렴과정이 적절한가?		
	대상지(시설) 분석	· 사업대상지의 색채현황 조사가 적절한가?		
		· 공간현황분석을 통한 색채계획 방안이 적합한가?		
	사례검토	· 사업 우수사례 조사 및 반영계획이 적절한가?		
기본계획	상위 정책·제도 검토	· 사업추진 방향이 정부와 인천광역시의 정책과 제도에 부합하는가?		
		· 연계 사업 여부 및 기타 개발 현황과 부합하는가?		
	디자인 계획	· 조사분석 내용을 토대로 인천 색채디자인 사업의 방향 및 컨셉이 적절한가?		
		· 공간정체성을 구축하는 차별화된 사업 방식 및 색채연출계획을 가지는가?		
		· 색채기능을 통한 공간 문제점 개선이 적절한가?		
		· 심미성을 기반으로 디자인 개발(색채연출)이 적절한가?		
		· 현실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상지(시설)에 적합한 세부적인 디자인 계획이 구체화되었는가?		
		· 보고의견, 전문가 자문 등 디자인에 대한 보완·검증이 적절이 이루어졌는가?		

② 실행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설계	관련 법규와 지침 준수	· 관련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되었는가?			
	실시설계	· 구조, 형태, 색채, 마감 등 디자인 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 예산계획과 부합한 사업내역이 산출되었는가?			
		· 사업 참여 주체 및 이해관계자 간 상호협력 창의활동이 적절한가?			
제작/설치	설치 현장 점검 및 관리	· 제작 및 시공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시공 중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예측과 사전 대응이 적절한가?			

③ 운영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운영	프로그램 계획	· 공간활성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공간 프로그램 등이 적절한가?			
유지관리	유지관리 방안	· 사업 결과물의 장기적 유지관리 방안이 적절한가?			
		· 유지관리 주체 및 예산 등 장기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확보하였는가?			
확산	사업 홍보	· 사업 홍보를 위한 준비가 적절한가?			
	사업성과 확산	· 공공디자인 사업이 대상지 외 다른 지역에 확산·적용하기에 적절한가?			
		· 성과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3

색채디자인 사업



연수구 색채디자인 사업

① 기획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기획	사업주제 및 대상지 선정	· 사업이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른 색채디자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가?			
		· 색채디자인을 통한 명소화사업에 적절한 사업목표를 제시하였는가?			
		· 대상지 검토를 통해 공간정체성 전략을 수립하였는가?			
		· 대상지(시설) 사용 승인 등 실행기반을 확보하였는가?			
		· 사업을 통한 목표성과를 계획하였는가?			
	시민참여 계획	· 사업추진과정에서 시민참여 활동을 계획하였는가?			
		· 시민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계획을 하였는가?			
		· 디자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시민참여디자인공모전 등을 계획하였는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조사/분석	사업수행 체계 및 추진계획	· 사업을 주관하는 조직에는 색채디자인을 위한 분야별 전문인력이 배정되었는가?		
		· 과업공정에 맞춰 디자인 및 설계, 제작, 설치 등의 추진일정을 적합 하게 계획하였는가?		
		· 사업비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련기관과 단체의 참여와 협업을 계획하였는가?		
	이용자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공간(시설)의 이용자를 예측·규정하고 이용행태를 분석하였는가?		
		· 이용자 측면의 색채 검토과정(색상인지 등)을 거쳤는가?		
		·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색채계획 목적 및 방향성을 수립하였는가?		
		· 시민참여활동과 연계하여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심층인터뷰,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는가?		
		·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관련부서별 실무협의를 하였는가?		
	대상지(시설) 분석	· 색채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지의 색채현황을 분석· 평가하였는가?		
		· 공간현황분석을 통한 색채계획 방안을 계획하였는가?		
기본계획	사례검토	· 사업 우수사례를 조사하였는가?		
		· 사업 우수사례의 적용방안과 사업결과를 대조·검토하였는가?		
	상위 정책·제도 검토	·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과 인천광역시 조례, 기준·규칙·지침을 검토 하였는가?		
		· 사업실행 방법이 법에 저촉되거나 규제사항에 위배되지 않는가?		
		· 연계사업 및 기타 개발 현황을 검토하였는가?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상지(시설)를 분석·반영하였는가?		
	디자인 계획	· 조사분석을 토대로 인천 색채디자인 사업의 방향 및 컨셉을 수립 하였는가?		
		· 공간정체성을 구축하는 차별화된 사업 방안 및 색채 연출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색채심리 등 색채기능을 통한 색채연출계획을 수립하였는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디자인 계획	· 색채연출계획과 더불어 다양한 공간경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구축 방안을 개발하였는가?			
	· 대상지(시설)에 적합한 세부 디자인계획을 구체화하였는가?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과 정합성을 유지하여 적용하였는가?			
	· 보고의견, 전문가 자문 등 디자인 보완·검증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는가?			
	· 색채계획에 대한 선호도 조사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적용하였는가?			
	· 제작, 설치, 유지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였는가?			

② 실행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설계	관련 법규와 지침 준수	·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 조례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되었는가?		
	실시설계	· 현장여건 검토 및 기반 확인을 하였는가? · 디자인 계획을 반영한 설계(안)이 도출되었는가? · 사업내역 자료(시설물의 설치 위치와 수량 등)를 작성하였는가? · 사업 참여 주체 및 이해관계자 간 상호협력 창의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제작/설치	제작 검수	· 제작 전 색채, 재료, 그래픽 등 사전확인과정이 이루어졌는가? · 설치 전 프로토타입 제작 검증 및 현장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디자인 수정 및 보완작업을 수행하였는가?		
	설치 현장 점검 및 관리	· 제작, 공사착수, 준공 등에 대한 시공일정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교통통제 등 공사승인 요청 등의 행정처리를 이행하였는가? · 시공 중 민원발생 방지대책과 갈등관리방안을 사전에 계획하여 실행하였는가? · 공사일정을 미리 공지하고 시설담당자와 협의를 하였는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시공/감리	설치 현장 점검 및 관리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공사장 안내표지 등을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였는가?			
		· 안전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시공 완료 후 즉시 철거하였는가?			
		· 설치 전·후 현장 정리를 말끔하게 처리하였는가?			
	사업 결과 평가	· 설계도면과 설치기준 및 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하였는가?			
		· 초기 사업기획의 의도가 사업결과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 사업기획단계에서 설정한 기준에 맞게 사업결과와 완성도를 평가하였는가?			
		· 실제적 효과성 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였는가?			

③ 운영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운영	프로그램 계획	· 지역 관광 및 문화행사 등과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공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유지관리	유지관리 방안	· 공간(시설)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비용을 산출하였는가?			
		·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예산이 확보되었는가?			
		·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주체를 명확히 하였는가?			
		· 운영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조직)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는가?			
확산	사업 홍보	· 기획단계부터의 사업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수집하였는가?			
		· 콘텐츠는 다양한 매체로 제작되어 배포 가능한가?			
	사업성과 확산	· 사업실행이 지역사회의 환경개선과 발전에 기여하는가?			
		· 사업 결과물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적용·확산이 가능한가?			
		· 단계별 로드맵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사업 확산계획을 수립하였는가?			

4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



남동구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1 기획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기획	사업주제 및 대상지 선정	· 해당 사업 주제가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의 추진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는가?			
		· 해당 사업이 범죄예방도시디자인 대상으로서 적절한 목표를 갖는가?			
		· 지역민 요구, 연구분석의 결과 등 사업의 타당성에 부합하는가?			
		· 사업 목표에 따른 대상지 선정이 적합한가?			
		· 대상지 부지 확보, 주민 동의 등 현실적인 설치를 위한 행정협약이 이루어졌는가?			
		· 목표성고가 적절한가?			
	시민참여 계획	· 사업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였는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조사/분석	사업수행 체계 및 추진계획	· 사업 추진 주체가 명확하고 전문성을 갖는가?		
		· 디자인 및 설계, 제작, 설치 등의 추진일정이 적합한가?		
		· 예산 집행계획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관련기관과 단체의 참여와 협업 계획이 적절한가?		
	이용자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사업의 이용자와 이용행태 분석이 적절한가?		
		· 사업추진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선정과 의견수렴과정이 적절한가?		
		· 시민참여 계획과 연계하여 공간 및 시설의 이용자 불편사항, 안전 이슈를 도출하는데 적절한 과정을 거쳤는가?		
	대상지(시설) 분석	· 사업대상지의 범죄 및 안전문제에 대한 분석이 적절한가?		
		· 범죄예방 사업대상지 현황 특성, 범죄유형 및 범죄다발구역, 대상지(시설) 규모 및 안전시설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는가?		
	사례검토	· 사업 우수사례 조사 및 반영계획이 적절한가?		
기본계획	상위 정책·제도 검토	· 사업추진 방향이 정부와 인천광역시의 정책과 제도에 부합하는가?		
		· 연계 사업 여부 및 기타 개발 현황과 부합하는가?		
	디자인 계획	· 조사분석 내용을 토대로 범죄·사고 감소 및 안전디자인 적용이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심미성을 기반으로 디자인 개발이 적절한가?		
		· 현실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상지(시설)에 적합한 형태, 재료, 색채 등 세부적인 디자인계획이 구체화되었는가?		
		· 보고의견, 전문가 자문 등 디자인에 대한 보완·검증이 적절이 이루어졌는가?		

② 실행단계

② 실행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설계	관련 법규와 지침 준수	· 범죄예방도시디자인과 관련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되었는가?			
		· CPTED 5대 원리가 적절히 구현되었는가?			
	실시설계	· 핵심문제와 솔루션이 적절히 연계되었는가?			
		· 구조, 형태, 색채, 마감 등 디자인 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 예산계획과 부합한 사업내역이 산출되었는가?			
		· 사업 참여 주체 및 이해관계자 간 상호협력 창의활동이 적절한가?			
제작/설치	설치 현장 점검 및 관리	· 제작 및 시공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시공 중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예측과 사전 대응이 적절한가?			

③ 운영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운영	프로그램 계획	· 지속적인 주민참여 및 유지관리프로그램 계획이 적절한가?			
유지관리	유지관리 방안	·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 결과물의 장기적 유지관리 방안이 적절한가?			
		· 유지관리 주체 및 예산 등 장기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확보하였는가?			
확산	사업 홍보	· 사업 홍보를 위한 준비가 적절한가?			
	사업성과 확산	·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이 대상지 외 다른 지역에 확산·적용하기에 적절한가?			
		· 성과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4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



미추홀구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① 기획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기획	사업주제 및 대상지 선정	· 사업이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에 따른 범죄 예방도시디자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가?			
		· 범죄예방도시디자인에 적절한 사업목표를 제시하였는가?			
		· 사업타당성에 맞게 대상지 검토를 하였는가?			
		· 대상지 부지 확보, 주민 동의 등 실행기반을 확보하였는가?			
		· 사업을 통한 목표성과를 계획하였는가?			
시민참여 계획	시민참여 계획	· 사업추진과정에서 시민참여 활동을 계획하였는가?			
		· 지역주민, 관할경찰서, 시민활동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였는가?			
		· 사업추진 및 유지관리까지 지속할 수 있는 적절한 추진협의체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사업추진과정에서 범죄예방도시디자인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및 교육 등의 역량강화 활동을 단계별로 계획하였는가?			
		· 시민참여과정이 다양한 매체로 아카이빙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조사/분석	사업수행 체계 및 추진계획	· 사업을 주관하는 조직에는 범죄예방도시디자인을 위한 분야별 전문인력이 배정되었는가?		
		· 과업공정에 맞춰 디자인 및 설계, 제작, 설치 등의 추진일정을 적합하게 계획하였는가?		
		· 사업비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련기관과 단체의 참여와 협업을 계획하였는가?		
		· 산·학연계를 통한 디자인 참여를 계획하였는가?		
	이용자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사업대상지(시설)의 이용자를 예측·규정하였는가?		
		· 노약자, 외국인, 여성 등 이용자(거주민)의 주·야간 활동행태 및 불안요소를 분석하였는가?		
		· 범죄발생에 영향을 주는 행태적, 심리적, 공간적 요인을 분석하였는가?		
		· 시민참여활동과 연계하여 이용자 불편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계획하였는가?		
		·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문제점 등 의견수렴을 하였는가?		
		·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관련부서별 실무협의의 하였는가?		
		· 추진협의체 디자인 워크숍 등 시민참여를 통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아이디어 발굴을 유도하였는가?		
	대상지(시설) 분석	· 범죄발생 현황 지도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현장분석자료를 검토하여 대상지의 안전 이슈를 파악하였는가?		
		· 현장인터뷰 및 현장검증 등을 활용하여 현장여건을 분석하였는가?		
		· 대상지(시설)의 이슈와 불편한 점 등을 파악하였는가?		
	사례검토	· 사업 우수사례를 조사하였는가?		
		· 사업 우수사례의 적용방안과 사업결과를 대조·검토하였는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기본계획	상위 정책·제도 검토	·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과 인천광역시 조례, 기준·규칙·지침을 검토하였는가?			
		· 사업실행 방법이 법에 저촉되거나 규제사항에 위배되지 않는가?			
		· 연계사업 및 기타 개발 현황을 검토하였는가?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상지(시설)를 분석·반영하였는가?			
	디자인 계획	· 조사분석내용을 토대로 대상지(시설)의 안전이슈와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는가?			
		· 안전성 향상에 부합하는 디자인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대상지(시설)에 적합한 세부 디자인계획을 구체화하였는가?			
		·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색채디자인과 정합성을 유지하여 적용하였는가?			
		· 보고의견, 전문가 자문 등 디자인 보완·검증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는가?			
		· 제작, 설치, 유지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였는가?			

② 실행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설계	관련 법규와 지침 준수	·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 조례, 범죄예방설계지침(경찰청)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되었는가?			
		· 인천광역시 표준형디자인 또는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였는가?			
		· CPTED 5대원리를 적절히 구현하였는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실시설계	· 현장 실측 등 현장여건 검토 및 기반 확인을 하였는가?			
		· 핵심문제와 솔루션을 연계하였는가?			
		· 디자인 계획을 반영한 설계(안)이 도출되었는가?			
		· 사업내역 자료(시설물의 설치 위치와 수량 등)를 작성하였는가?			
		· 사업 참여 주체 및 이해관계자 간 상호협력 창의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 대상지 주변에 유사사업 및 연계사업이 있는 경우 연계방안을 사전에 협의하였는가?			
제작/설치	제작 검수	· 제작 전 색채, 재료, 그래픽 등 사전확인과정이 이루어졌는가?			
		· 설치 전 프로토타입 제작 검증 및 현장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디자인 수정 및 보완작업을 수행하였는가?			
	설치 현장 점검 및 관리	· 제작, 공사착수, 준공 등에 대한 시공일정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철거, 폐기물 처리, 교통통제 등 공사승인 요청 등의 행정처리를 이행하였는가?			
		· 시공 중 민원발생 방지대책과 갈등관리방안을 사전에 계획하여 실행하였는가?			
		· 공사일정을 미리 공지하고 시설담당자와 협의를 하였는가?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공사장 안내표지 등을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였는가?			
		· 안전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시공 완료 후 즉시 철거하였는가?			
		· 설치 전·후 현장 정리를 말끔하게 처리하였는가?			
시공/감리	사업 결과 평가	· 설계도면과 설치기준 및 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하였는가?			
		· 초기 사업기획의 의도가 사업결과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 사업기획단계에서 설정한 기준에 맞게 사업결과의 완성을 평가하였는가?			
		· 실제적 효과성 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였는가?			

③ 운영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운영	프로그램 계획	· 추진협의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주민참여 및 사후 유지관리프로그램을 수립하였는가?			
유지관리	유지관리 방안	· 공간(시설)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비용을 산출하였는가?			
		·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예산이 확보되었는가?			
		·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주체를 명확히 하였는가?			
		· 운영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조직)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는가?			
확산	사업 홍보	· 기획단계부터의 사업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수집하였는가?			
		· 콘텐츠는 다양한 매체로 제작되어 배포 가능한가?			
	사업성과 확산	· 사업실행이 지역사회의 안전환경개선과 발전에 기여하는가?			
		· 사업 결과물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적용·확산이 가능한 대상지를 검토하였는가?			
		· 군·구, 단체, 기관 등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의 확산사업 시행과 지원을 위한 잠재적 수요처 및 추진계획(예산)을 확보하였는가?			

5

모두를 위한 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표준디자인) 사업



인천1호선 안내사인 표준디자인



시민참여워크숍

① 기획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기획	사업주제 및 대상지 선정	· 해당 사업 주제가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의 추진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는가?			
		· 해당 사업이 유니버설디자인/표준디자인 대상으로서 적절한 목표를 갖는가?			
		· 지역민 요구, 연구분석의 결과 등 사업의 타당성에 부합하는가?			
		· 사업 목표에 따른 대상지 선정이 적합한가?			
		· 대상지 사용 승인 등 현실적인 설치를 위한 행정협약이 이루어졌는가?			
		· 목표성고가 적절한가?			
	시민참여 계획	· 사업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였는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조사/분석	사업수행 체계 및 추진계획	· 사업 추진 주체가 명확하고 전문성을 갖는가?		
		· 디자인 및 설계, 제작, 설치 등의 추진일정이 적합한가?		
		· 예산 집행계획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관련기관과 단체의 참여와 협업 계획이 적절한가?		
	이용자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사업의 이용자와 이용행태 분석이 적절한가?		
		· 사업추진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선정과 의견수렴과정이 적절한가?		
		· 시민체험단 체험 및 워크숍 개최 등 공간 및 시설의 이용자 불편 사항을 도출하는데 적절한 과정을 거쳤는가?		
	대상지(시설) 분석	· 사업대상지에 대한 분석이 적절한가?		
		· 지역현황 특성, 접근성, 대상지(시설)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는가?		
	사례검토	· 사업 우수사례 조사 및 반영계획이 적절한가?		
기본계획	상위 정책·제도 검토	· 사업추진 방향이 정부와 인천광역시의 정책과 제도에 부합하는가?		
		· 연계 사업 여부 및 기타 개발 현황과 부합하는가?		
	디자인 계획	· 조사분석 내용을 토대로 지역정체성 및 장소성이 반영된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심미성을 기반으로 디자인 개발이 적절한가?		
		· 현실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상지(시설)에 적합한 형태, 재료, 색채 등 세부적인 디자인계획이 구체화되었는가?		
		· 보고의견, 전문가 자문 등 디자인에 대한 보완·검증이 적절이 이루어졌는가?		

② 실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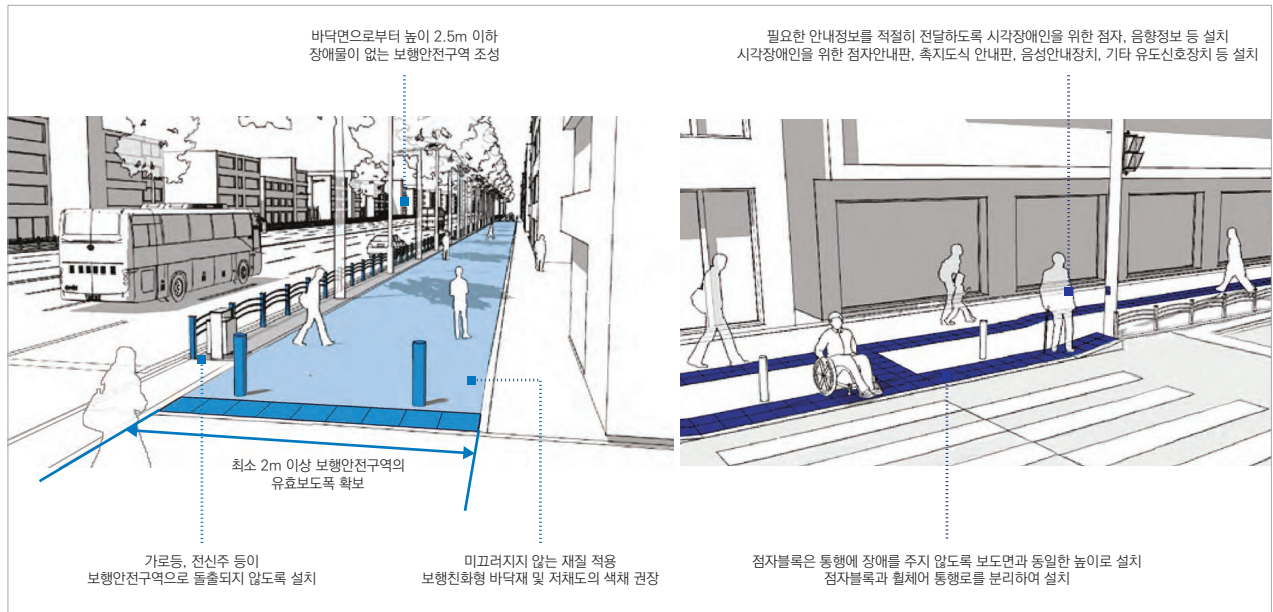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설계	관련 법규와 지침 준수	· 유니버설디자인/표준디자인과 관련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되었는가?			
	실시설계	· 구조, 형태, 색채, 마감 등 디자인 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 예산계획과 부합한 사업내역이 산출되었는가?			
		· 사업 참여 주체 및 이해관계자 간 상호협력 창의활동이 적절한가?			
제작/설치	설치 현장 점검 및 관리	· 제작 및 시공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시공 중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예측과 사전 대응이 적절한가?			

③ 운영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유지관리	유지관리 방안	· 유니버설디자인/표준디자인 사업 결과물의 장기적 유지관리 방안이 적절한가?			
		· 유지관리 주체 및 예산 등 장기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확보하였는가?			
확산	사업 홍보	· 사업 홍보를 위한 준비가 적절한가?			
	사업성과 확산	· 유니버설디자인/표준디자인 사업이 대상지 외 다른 지역에 확산·적용하기에 적절한가?			
		· 성과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5

모두를 위한 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표준디자인) 사업



보행자전용도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보행로의 장애인유도사인 및 장애인유도안내표지 설치

① 기획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기획	사업주제 및 대상지 선정	· 사업이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표준디자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가?		
		· 유니버설디자인/표준디자인에 적절한 사업목표를 제시하였는가?		
		· 사업타당성에 맞게 대상지 검토를 하였는가?		
		· 대상지 사용 승인 등 실행기반을 확보하였는가?		
		· 사업을 통한 목표성과를 계획하였는가?		
	시민참여 계획	· 사업추진과정에서 시민참여 활동을 계획하였는가?		
사업수행 체계 및 추진계획	사업수행 체계 및 추진계획	· 사업을 주관하는 조직에는 유니버설디자인/표준디자인을 위한 분야별 전문인력이 배치되었는가?		
		· 과업공정에 맞춰 디자인 및 설계, 제작, 설치 등의 추진일정을 적절하게 계획하였는가?		
		· 사업비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련기관과 단체의 참여와 협업을 계획하였는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조사/분석	이용자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사업대상지(시설)의 이용자를 예측·규정하였는가?			
		·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및 영유아동반자,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및 보행약자의 행태를 분석하였는가?			
		· 시민참여활동과 연계하여 시민체험단 등 이용자 불편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계획하였는가?			
		·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문제점 등 의견수렴을 하였는가?			
		·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관련부서별 실무협의를 하였는가?			
		· 유니버설디자인/표준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유도하였는가?			
	대상지(시설) 분석	· 유니버설디자인/표준디자인의 평가 원칙 및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대상지(시설)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였는가?			
		· 공공데이터, 현장인터뷰 및 현장검증 등을 활용하여 현장여건을 분석하였는가?			
		· 대상지(시설)의 이슈와 불편한 점 등을 파악하였는가?			
	사례검토	· 사업 우수사례를 조사하였는가?			
		· 사업 우수사례의 적용방안과 사업결과를 대조·검토하였는가?			
	상위 정책·제도 검토	·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과 인천광역시 조례, 기준·규칙·지침을 검토하였는가?			
		· 사업실행 방법이 법에 저촉되거나 규제사항에 위배되지 않는가?			
		· 연계사업 및 기타 개발 현황을 검토하였는가?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상지(시설)를 분석·반영하였는가?			
기본계획	디자인 계획	· 조사분석내용을 토대로 대상지(시설)의 이슈와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는가?			
		· 지역정체성 및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디자인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대상지(시설)에 적합한 세부 디자인계획을 구체화하였는가?			
		·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색채디자인과 정합성을 유지하여 적용하였는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디자인 계획	· 보고의견, 전문가 자문 등 디자인 보완·검증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는가?		
		· 제작, 설치, 유지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였는가?		
② 실행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설계	관련 법규와 지침 준수	·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 조례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되었는가?		
		· 인천광역시 표준형디자인 또는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였는가?		
	실시설계	· 현장 실측 등 현장여건 검토 및 기반 확인을 하였는가?		
		· 디자인 계획을 반영한 설계(안)이 도출되었는가?		
		· 사업내역 자료(시설물의 설치 위치와 수량 등)를 작성하였는가?		
		· 사업 참여 주체 및 이해관계자 간 상호협력 창의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제작/설치	제작 검수	· 제작 전 색채, 재료, 그래픽 등 사전확인과정이 이루어졌는가?		
		· 설치 전 프로토타입 제작 검증 및 현장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디자인 수정 및 보완작업을 수행하였는가?		
	설치 현장 점검 및 관리	· 제작, 공사착수, 준공 등에 대한 시공일정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철거, 폐기물 처리, 교통통제 등 공사승인 요청 등의 행정처리를 이행하였는가?		
		· 시공 중 민원발생 방지대책과 갈등관리방안을 사전에 계획하여 실행하였는가?		
		· 공사일정을 미리 공지하고 시설담당자와 협의를 하였는가?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공사장 안내표지 등을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였는가?		
		· 안전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시공 완료 후 즉시 철거하였는가?		
		· 설치 전·후 현장 정리를 말끔하게 처리하였는가?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시공/감리	사업 결과 평가	· 설계도면과 설치기준 및 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하였는가?			
		· 초기 사업기획의 의도가 사업결과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 사업기획단계에서 설정한 기준에 맞게 사업결과물의 완성도를 평가하였는가?			
		· 실제적 효과성 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였는가?			

③ 운영단계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유지관리	유지관리 방안	· 공간(시설)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비용을 산출하였는가?			
		·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예산이 확보되었는가?			
		·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주체를 명확히 하였는가?			
		· 운영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조직)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는가?			
확산	사업 홍보	· 기획단계부터의 사업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수집하였는가?			
		· 콘텐츠는 다양한 매체로 제작되어 배포 가능한가?			
	사업성과 확산	· 사업실행이 지역사회의 환경개선과 발전에 기여하는가?			
		· 사업 결과물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적용·확산이 가능한가?			



활용하기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목차 예시

- 사업구상 등 초기 기획단계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
- 본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수준에 준하며, 예산 확보 후 본 사업 수행 시에는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구체화된 기획 및 조사/분석, 디자인계획 등을 수행

구분	계획 내용
사업명	· 사업의 성격 및 주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
사업개요	· 기간, 위치, 사업유형, 사업예산, 주요 사업목적 및 내용 요약 작성
세부사업내용	1. 사업대상지 · 사업대상지 분석 : 대상지 규모 및 주요현황을 바탕으로 여건 분석 역사적·문화적·지리적 특성 등을 기초 연구·분석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주민의견수렴 내용 및 관련 서류를 함께 작성·첨부 사업대상지 관련 연계계획 및 추진내역 기재 대상지 현장사진에 기초하여 현황 분석 대상지 사용 승인에 대한 내용 확인·기재 · 사업대상지 선정 이유 : 대상지 특성을 기반으로 문제점 및 필요성 도출 대상지에 대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선정 이유 작성 2. 사업내용 · 사업 목적 : 대상지 분석에 따른 사업 추진의 목적 등을 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 및 지역 계획의 근거 명시 · 사업방향 및 추진전략 : 사업의 목적을 기반으로 주요 사업전략, 컨셉 등 기술 · 사업 내용 : 지역 현황 및 지역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사업내용 작성 국내·외 사례를 활용하여 사업내용 기재 사업 전·후 시뮬레이션 활용 사업내용에 대한 총괄 마스터플랜 제시 주민참여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계획 포함 3. 사후 유지관리 운영방안 · 사업 종료 후, 사후 운영 방안 및 운영주최 기입 · 사업 성과물에 대한 유지 관리 방안, 연계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 기재 4. 성과 활용 및 홍보 방안 · 성과 활용 방안 : 성과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 전후 자료 아카이브 등 활용방안 작성 · 홍보 방안 : 성과 파급을 위한 홍보 방안 모색

구분	계획 내용
사업추진계획	1. 추진협의체 운영 · 추진협의체 구성 : 지역의 현실과 요구를 다각도로 수용하기 위해 본 사업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사업관계자(시민, 지역 커뮤니티, 추진인력, 자문인력 등) 협의체 구성 계획 · 추진협의체 운영계획 : 사업 추진에 따른 회의, 전문가 자문 등 단계별 운영계획 작성 2. 추진체계 · 사업수행단체, 추진협의체 및 기타 협력기관의 인력 구성, 업무체계 등 기술 3. 세부 추진일정 · 주민참여과정을 포함하여 월별 계획 등 추진일정 작성
목표성과 및 기대효과	1. 정량적, 정성적 목표 · 사업완료에 대한 견인 효과 및 목표를 기술 2. 기대효과 · 사업운영 및 목표 달성에 따른 기대효과 작성
예산집행계획	1. 사업비 산출 · 사업내용에 따른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예산 내역 작성 2. 사업비 집행계획 · 시비·군비 내역, 연차별 집행계획 등 기재



활용하기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데이터란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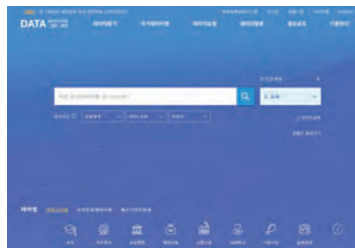
조사/분석단계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 조사/분석단계에서 대상지(시설)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장을 분석하고 대상지의 주요 이슈를 검토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
- 주요 정보를 지도에 매핑된 시각화 자료로 제공하여 현장 특성을 파악하기 용이

공공데이터 플랫폼 알아보기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

- 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하나로 통합 관리·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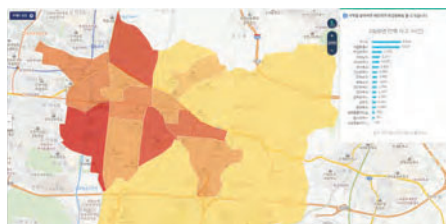
데이터 명칭, 키워드, 설명 등을 통해 검색
교육, 국토관리, 공공행정 등 테마별 데이터 제공

통계지리정보서비스 www.sgis.kostat.g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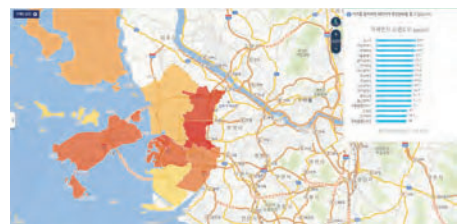
- 통계청이 보유한 인구·가구·주택·사업체 등의 데이터와 지도 서비스를 타 기관 및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6개 통계주제별(인구와 가구, 주거와 교통, 복지와 문화, 노동과 경제, 건강과 안전, 환경과 기후)로 상세정보를 제공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 예시



미세먼지 대기오염도 현황 예시

생활안전지도

www.safemap.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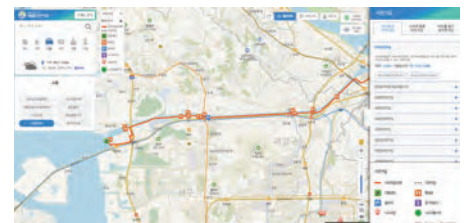
- 주변의 위험과 사고이력, 안전시설 등 안전정보들을 통합하여 지도 형태로 제공



장소, 지역에 따라 6가지 주제별(재난, 치안, 교통, 보건, 생활, 시설) 상세정보를 검색 가능
- 6대 분야 134종의 지도 서비스 제공



어린이안전지도 예시



교통-자전거길 현황 예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매핑 확장

- 커뮤니티매핑은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지도 만들기'라고 표현하며 통상적인 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역계획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법론
- 커뮤니티매핑은 여러 지역, 여러 관심 분야에서 주민들이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형식으로 공공데이터의 미흡한 부분을 채워 상호간 시너지를 창출



학교 주변 온라인 안전지도 사례(뉴저지 IMSOCIO)

학생들이 학교 주변의 보행로와 교차로에 대한 현재 상황을 평가하여 온라인 지도 위에 표시
- 학교 주변 모든 보행로와 교차로에 대한 현황과 개보수 필요 여부를 제공함으로써 시의 계획과 예산 수립에 유효하게 활용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커뮤니티매핑 사례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음식점, 카페 등을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커뮤니티매핑 지도를 만들어 공유
- 주민참여로 만들어지는 커뮤니티매핑은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마을이나 작은 지자체 단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



활용하기

인천형 '디지털트윈 서비스' 활용

인천형 '디지털트윈'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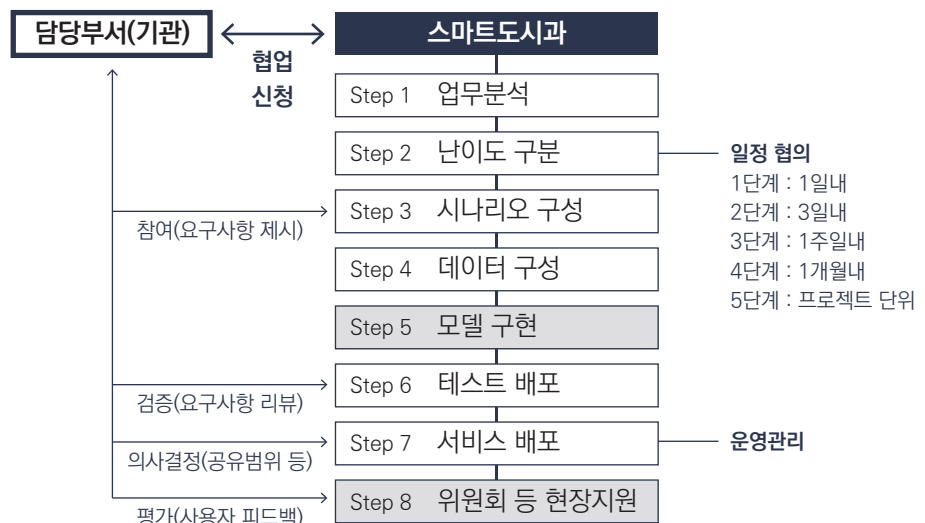
- 도시의 환경변화(도시계획, 건물·시설물 설치 등)가 예상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인천시가 구축한 3차원 가상도시에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시환경변화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구축
- GIS 플랫폼을 통해 도시를 3차원으로 구축 중으로, 건축물, 시설물 등을 추가하여 시뮬레이션 및 대상지 공간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가능
 - 3차원 지도 : 일조권 분석, 건물 높이 확인 가능
 - 사업 전·후 유동인구 등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 가능

공공디자인에 활용하기

사업 계획 시, 사전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활용	유지관리 시, 시설물을 지도에 표시하여 관리
3차원 대상지 내 건축물, 조형물, 시설물 등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예상 이미지 제공	인증제품, 표준디자인 등 공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을 시각자료로 관리

디지털트윈 서비스 지원 협업 절차

- 데이터 구축, 콘텐츠 제작, 위원회 등 현장 시연 및 운영까지 책임·협업 가능
- 업무난이도에 따라 1~5단계로 서비스 일정 협의
- 시연 지원 시, 모바일, VR 장비 포함 지원(2023년부터)



※ 협업부서(기관) 요청 시, 프로젝트 단위 GIS 플랫폼 교육 진행(송도교육센터)

시뮬레이션 지원 및 컨설팅 가능분야

기획·건축·경관분야



뮤지엄파크, 제작기간 3일 이내



무주골

도시계획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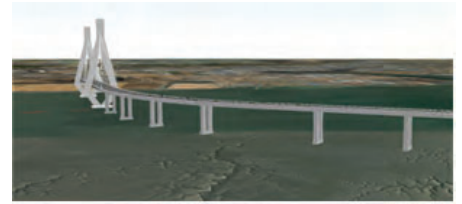


계양테크노밸리, 제작기간 1개월



송도대우자판, 제작기간 1주일 이내

시설물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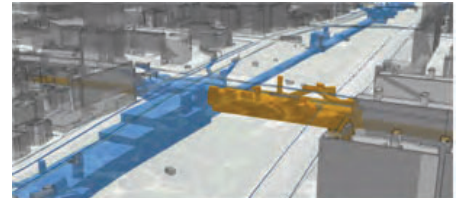


제3연육교, 제작기간 2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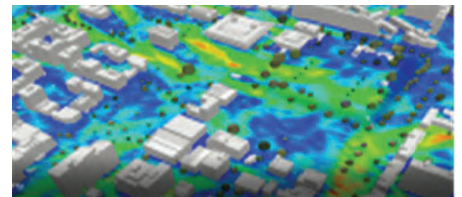


중앙공원 육교

7대 지하시설물·구조물, 바람길



시청역 주변, 즉시



시청 주변(시청 신관건물에 따른 바람길 변화 시뮬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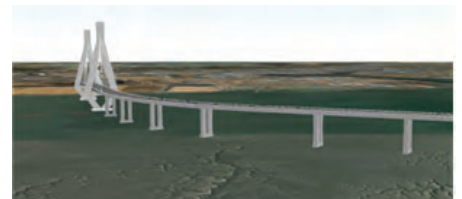
유지관리 분야

주요 시설물 관리



위험시설물, 관리용 건물 등 관리

데이터댐(데이터 자산화체계)



153종+@와 신규데이터 구축 및 지속가능한 데이터 갱신 체계 구현

발행처 인천광역시청
발행부서 도시디자인과
발행일 2022.12

기획개발 인천광역시청

고은정 도시디자인과장
임철희 도시디자인팀장
박미선 주무관

수행기관 주식회사 디자인팩토리

황규연 책임 디자이너
임혜미 책임 디자이너
김진섭 책임 디자이너
최현철 책임 디자이너
김현수 선임 디자이너
우혜인 주임 디자이너
김주연 디자이너
최수희 디자이너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영호 책임 연구원
최수나 선임 연구원
김지유 연구원